

치안정책연구

치안논단

- 경찰학의 정체성 규명에 관한 시론 / 남궁구
- 경찰부정부패에 관한 학술적 이론들과 영국경찰의 부정부패 방지책에 대한 고찰 / 표창원
- 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 오경식
- 범죄피해자화 : 그 위험성과 영향 / 박기남

치안정책연구

치안논단

- 경찰학의 정체성 규명에 관한 시론 / 남궁구
- 경찰부정부패에 관한 학술적 이론들과 영국경찰의 부정부패 방지책에 대한 고찰 / 표창원
- 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 오경식
- 범죄피해자화 : 그 위험성과 영향 / 박기남

- 일본의 즉결심판제도
-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 청소년이 바라보는 「청소년 가출」에 대한 인식조사
- 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부패구조와 생활문화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 보험범죄의 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 외국 치안의 이모저모

- 세계의 치안사정
- 총성 없는 전쟁
- 지구촌의 첩보전 -

◎ 현장제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왜 문제인가? / 조길형
- 경찰단상 / 임호선

치안논단

- 경찰학의 정체성 규명에 관한 시론 / 남궁구
- 경찰부정부패에 관한 학술적 이론들과
영국경찰의 부정부패 방지책에 대한 고찰 / 표창원
- 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 오경식
- 범죄피해자화 : 그 위험성과 영향 / 박기남

경찰학의 정체성 규명에 관한 시론

〈한양대 감사〉 남궁 구

1. 서론.

경찰학의 정체성(Identity of Police Science)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증은 경찰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져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지금까지 몇 권의 경찰학 관련 교과서와 공안행정학회지가 출간되었지만 아직까지 ‘경찰학의 정체성’에 관해 언급한 저서나 논문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하나의 시론으로서 이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학자 F. Mosher 는 분과학문의 정체성을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즉, “정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경찰학에 대한 정체성을 규명하지 않고, 경찰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경찰학이 “표류하고 있는

분야”로 전락, 결국에는 V. Ostrom 이 지적한 것처럼 “지적위기(Intellectual Crisis)”를 맞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경찰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어느 학문이든지 하나의 학문이 독립 분과학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유한 연구주제 혹은 영역(Locus)이 있어야 하며, 둘째,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하며, 셋째, 인접학문과의 개념적 경계가 뚜렷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 대학에 그 학문을 교육(혹은 연구)하는 독립된 학과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건들이 분과학문의 성립요건을 이루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찰학도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그 정체성을 규명해 보기로 한

하고, 형벌을 선고하는 판사의 결정은 법률에 구속되어야 하며, 범죄행위와 형벌은 비례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묵비권이 인정되고, 증거주의 및 당사자주의가 지켜져야 하며, 심리절차와 재판과정은 공개되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과 인간과의 관계가 조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범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가하면 ‘범죄행위자’가 줄어들 것이고, 범죄행위를 범하는 ‘범죄자’의 수가 줄면 범죄가 줄 것이라는 측면에서 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즉, 경찰의 범죄대응 방식이 「more punishment」=「less criminals」=「less crime」으로 잘못 받아들여선 안 된다. 법철학은 「99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철학은 “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에 법철학이 없을 경우에는 경찰정책의 “목적과 수단”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사회심리학.

사회심리학이란 인간행위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의미하며, 이론적 측면에서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인식, 기억, 사고, 학습, 그리고 퍼스낼리티 등의 인간행위의 원리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학이 사회심리학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 혹은 ‘개인과 조직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욕구충동을 자제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경찰은 ‘정부의 얼굴’이며, ‘움직이는 정부’로 지칭된다. 그리고 정부기능을 대표하는 경찰기능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을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경찰기관은 개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인 “사회의 큰 흐름(mega-trend)”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해야만 사회화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행위의 동기, 개인 및 집단의 통제방법, 상호작용과정에서의 갈등표출, 사회환경이 개인성장(가치관, 국가관)에 미치는 영향, 집단참여과정, 사회환경에의 적응 등에 정책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확대되면 관료들의 「태만과 낭비(negligence & profusion)」라고 하는 관료적 행태²⁾로부터 관료사회의 부패가 예상되

2) 오늘날로 치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 때문에 정부기능은 야간에 질서유지기능(야경국가)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였다. Adam Smith의 이러한 상황인식은 19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초대국무장관과 3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Thomas Jefferson에 의해 다시 한번 강조되어졌다. 그는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때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면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주장하였다. 즉, 정부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극대화 내지는 인민대중의 행복추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경찰조직 역시 국민적 신뢰를 받을 때 보다 자유로와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가? 국민과 경찰과의 관계설정을 위한 사회심리학적 지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에게서 얻을 수 있다. 그는 우리 인간에게 사회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도전’ 앞에서 생존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도전과 응전(challenge and response)」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회환경의 변동에 적응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다. 경찰조직 역시 치안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도전’ 앞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좋은 예를 일본경찰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동경시 경찰은 92년부터 매년 1회씩 지역주민의 對-警察觀을 파악

하기 위해 사회조사(survey)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경찰정책의 수립에 반영 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경찰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각계각층의 사회조직)과 단순히 상호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조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변화의 큰 흐름을 단편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인식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 진다. 정책이란 풍선과 같아서 어느 한쪽을 누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불거지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은 어느 한 측면만 봐서는 안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파급효과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찰학에서 사회심리학이 중요한 이유는 ‘질량불변의 법칙’은 자연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사회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3) 경찰행정학.

경찰행정학이란 경찰작용이 형성·전개되는 경찰목적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현실의 실용과학이다. 이러한 경찰행정학의 학문적 토대는 행정 및 행정학의 성립배경과의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 행정기능의 역사적 뿌리는 1789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과 함께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Alexander Hamilton 의 고

전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강력한 행정의 실천가로서 행정이란 활기에 넘치고 힘(energy)이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정리더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정부의 역할은 공공의 이익 혹은 국가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이란 곧 「정부의 목소리(voice of government)」라고 하였다.

행정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1887년 W. Wilson 이 발표한 논문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설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헌법은 제정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면서 T. Jefferson 대통령 이후 확대된 엽관제의 폐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였다. 이때부터 행정학은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고 사실의 문제만 다루는 관리지향적인 행정의 제원리 개발에 주력하게 되어 행정의 지도이념은 능률과 절약(economy and efficiency)으로 압축되었다. 이때부터 행정학에는 과학적 관리법, 행태과학, 발전행정론, 비교행정론, 신행정학의 등장이 그 뒤를 잇게 되었다.

다음으로 경찰행정학의 기원은 W. Wilson의 행정학 보다 앞서서 1829년의 '수도경찰법(metropolitan police act)'에서 경찰의 기본적인 조직관리 원리를 경찰관의 행위조정과 지시명령의 조정방법에서 기본명제를 설정하고, 이의 해결원리를 밝히고자 했던 Robert Peel

의 개혁에서 경찰행정학이 다루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제시한 시기를 봄이 타당하다.

앞으로 경찰행정학이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해야 할 분야는 경찰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관리기법의 향상을 위해 동기부여, 의사결정, 의사소통, 갈등관리, 리더쉽 등에 관한 이론, 그리고 경찰조직의 지역사회에 대한 행정책임을 높이기 위해 정책형성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계량행정에 기초한 관리과학까지도 확대·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4) 법경제학.

B. Russell은 대부분의 문명사회에서 國家가 社會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선택한 것이 「法」과 「財産」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제도를 기초로 해서 '政府'와 '市場'이라고 하는 조직이 형성되게 되었다. '정부기능'은 '法の 權威'를 통하여 달성되며, '시장기능'은 '재산권의 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들 두 기능의 상호관계에서 어느 기능에 더 의존하느냐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나 혹은 자본주의 체제나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두 기능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느 체제든지 사회주의적 요소나 자본주의적 요소가 混在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발생하는 개인들

의 갈등은 대부분이 재산권의 교환과정에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익중재자 혹은 이익조정자의 역할을 맡는 경찰은 법과 재산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이나 핵폐기물처분장 등과 같은 '비선호 시설물'의 건설과 관련, 건설부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재산권보호를 위한 당연한 행동이므로, 경찰력이 이것을 집단이기주의로 간주하고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경제인관'에 따르면 개인의 동기는 '합리적으로 사익추구를 극대화'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행위는 비용보다 기대편익이 적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란 가장 경제적인 행위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논리 위에서 범죄경제학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질 수 있다.

법경제학 시각에서 사회구성원의 행위를 규제(regulation)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 행위에 가격(price)을 책정하여 그 가격을 지불해야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혼잡한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와 주차위반차량에 부과하는 법칙금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특정행위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그 행위의 일정수준 이상을 규제하여 이를 어기면 일정한 제재(sanction)를 가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형벌이 해당하고, 후자는 공해업체가 일정기준을 초과해서 공해를 유발하

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5) 체력훈련.

경찰조직을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라고 할 때, 경찰관 개개인의 체력과 정신력은 곧 경찰조직의 활력소가 된다. 경찰업무의 속성은 보통 생명을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건강한 체력과 불굴의 정신력은 필수적이다. 즉, 삼손의 힘과 다윗의 용기로 무장된 경찰관 앞에서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은 범죄자와 직면해서 상대방의 저항을 순수한 체력으로 억압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법적인 뒷받침(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최소한의 자기보호적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영국 경찰은 여러 가지 무술 중 가장 방어적인 유도를 경찰체력훈련으로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체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강구하는 경찰인사정책의 연구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6) 휴머니즘.

Protagoras 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라고 하였다. 이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인간이 의미를 부여해야 만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

다. 그 만큼 인간의 존재가치는 고귀한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는 국가의 최소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족을 기본단위로 인정하여 왔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父權을 중심으로 그 외의 사람은 이에 종속됨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갖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되어 온 것이 아니라 父權에 예속된 객체로 인식되어져 왔다. 이러한 사상을 강화시킨 요인은 바로 '효사상'이었다. 가족 내에서의 효사상 강요는 우리 사회가 집단적 인맥의식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가족 속에서의 개인이나 집단 속에서의 개인은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개인행동을 하면 즉각 제재를 받게 되었고, 개인의 존재는 '존재가치'로 인정되지 못하고 '수단가치'로 인식되어져 왔다. 부모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효자로 인정받고 상관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충실한 부하로 인정받는 등 개성이 말살된 부모 및 상관과 동질적 가치를 강요받아 오히려 개인의 인권은 공동체의 희생양으로 이어져 온 경향이 있다. 또한 조직의 내부비리를 시정하기 위해 양심선언을 한 내부고발자가 조직의 혁신에 기여자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로 낙인찍혀 패썹죄의 희생양이 되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인 개인들은 양들의 침묵을 강요받아 아직도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정의가 보호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창의성은 발달할 수 없었다. 왜

우리가 노벨상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하는지 다시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부모를 존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사상'의 순기능은 이어받아야 하지만 역기능적 측면은 개선되어야 한다. 효사상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가 '아시아적 가치'로 착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고문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도 국가 혹은 조직이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은 어느 정도 희생되어도 된다고 보는 집단중심의 의식구조에서 연유하지 않나 추정해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인간은 자기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답책적 인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국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미국이 국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존중해 줌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충족한 개인들이 결국은 "부의 사회환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경제적 불평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경찰이 범집행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준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좋은 예가 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를 자기의 돈벌이 수단, 즉 '수단가치'로 인식하면 비록 '산삼'으로 처방한다 하더라도 보통의 '약초'보다도 약효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즉, 환자를 귀중한 생명을 지닌 '존재가치'로 인식한다면

비록 ‘약초’로 처방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효는 ‘산삼’보다 더 클 것이다. 같은 논리로 경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시민을 자기와 대등한 인격체로 대한다면 법을 위반한 시민은 자기의 위법한 행위를 깨끗히 승복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을 대하는데 있어 강압적 수사방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를 법집행의 기준 삼으면, 우리사회에서 종종 회자되는 소위, “有錢無罪 無錢有罪” 혹은 “無權有罪 有權無罪”라는 냉소적인 말이 나오게 된다.

경찰관에게 휴머니티가 필요한 이유는 법집행의 대상은 인간이며 법은 인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인간을 다루는 직업인 경찰관이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하고 법의 권위만 내세운다면 능률성에 입각해 인간을 학대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를 외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찰조직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개인들에 대한 인간애를 최대로 보장해야 한다. 인간애와 관련하여 경찰조직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위생계, 의료계, 공해발생업체 등의 인명경시풍조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식은 종교에서 빌어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지식은 종교에서 빌어올 수 있다. 즉,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그것이다.

3. 경찰학 이론.

이론이란 보편적인 진리를 향해 여정의 前途를 밝혀주는 등불이며,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이정표를 읽어갈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론이란 학문의 여행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지도 혹은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학문은 처녀탄생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인접학문과의 접붙임의 결과이다. 경찰학이 필요로 하는 이론도 역시 인접학문과의 접붙임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현재 경찰학이론의 실태를 경찰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찰인사행정론, 경찰조직론, 경찰예산론 등 정책결정보다는 주로 정책집행에 필요한 이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의 경찰학이론은 경찰정책의 내용 및 유형과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경찰학의 이론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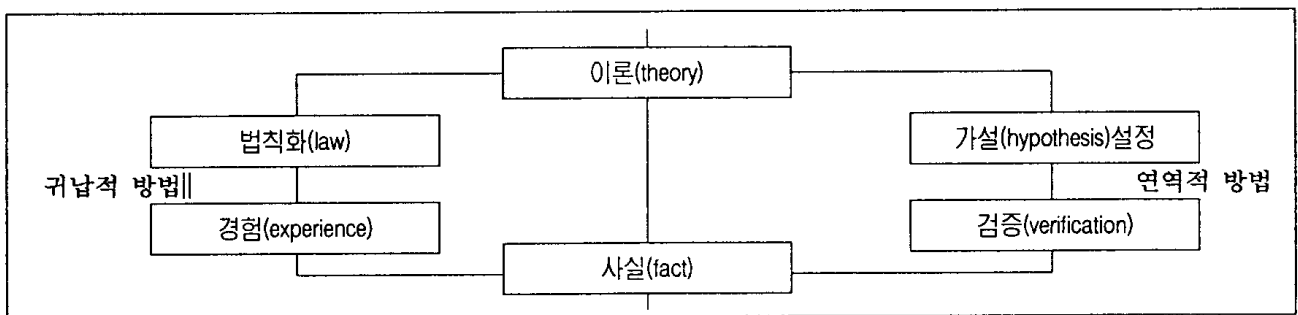
경찰학이 필요로 하는 이론의 개발 즉, 이론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경험적·실증적 접근방법(귀납적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규범적·처방적 접근방법(연역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들 두 접근방법은 상호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특히 경찰학은 중첩되고 애매한 경계를 갖는 응용학문 혹은 교차학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과 접근방법을 채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학이론의 개발에는 통계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경험적·실증적 접근방법은 귀납적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연과학에서 많이 이용된다. 즉, '주어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의 세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의 비밀을 관찰을 통해 발견해서 그것을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법칙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즉 사실로부터 여러 가지 개별사례들을 관찰함으로써 그 속에서 일정한 법칙화 현상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예로서 수은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열을 가하면 팽창한다는 것이다. 이를 응용한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온도계이다. 이들 일반적·보편적 법칙성을 잠정적으로 결론지으면 그것이 곧 이론이 되는 것이다.

둘째, 규범적·처방적 접근방법이란 연역적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사회과학에서 많이 이용된다. 이 방법은 이론으로부터 하나의 가설을 설정해 놓고 실험을 통해 그것을 검증해 봄으로서 가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전자의 방법보다 객관성의 수준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은 실험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하고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높이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지금까지 주로 연역적 방법보다는 귀납적 방법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상상력 혹은 창의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한 예로서 미국의 코메디는 talk show 가 발달한데 비해, 한국의 코메디 프로는 눈으로 직접 봐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질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코메디언들이 시청자들 앞에서 부수고, 때리고, 바보스런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이론화 과정



학문의 발전과정을 굳이 나누어 본다면, 태동기·모방기·적응기·토착기·창조기로 나누어볼 수 있겠다. 한국의 경찰학이론의 발전과정을 이 기준에 맞추어 보면 아직까지 태동기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경찰학 이론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위한 이론연구가 아니라 실제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용가능성이 높은 적실성(relevance)있는 이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희망적인 것은 경찰학 이론은 다른 분과학문에 비해 이론과 실제의 조화에 가장 모범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4. 개념적 경계.

경찰학이 무엇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인지, 인접 학문과의 개념적 경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현재의 경찰행정학과의 커리큘럼은 대부분이 법학 및 실무위주의 교과목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는 앞의 연구영역에서 이미 밝혔듯이 제 분과학문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시도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지향점은 타학문과는 구별되는 개념적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경찰학이 개념적 경계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은 경찰법 제3조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그리고 경찰헌장이 요구하는 기본정신을 들 수 있겠다. 그것은 곧 경찰의 존재이유가 될 수 있다.

경찰의 임무(경찰법 제3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경찰직무의 범위(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다섯가지로 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②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③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④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⑤ 기타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이 있다. 그리고 경찰헌장의 기본정신은 ① 친절한 경찰, ② 의로운 경찰, ③ 공정한 경찰, ④ 근면한 경찰, ⑤ 깨끗한 경찰 등이다.

이상의 임무와 직무의 범위 그리고 경찰헌장의 정신을 기본으로 경찰학의 개념적 경계를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대한 규모의 관료조직인 경찰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료제에 관한 연구. 둘째, 관료제로서의 경찰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 셋째, 경찰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넷째, 형사사법기관간의 권력구조(power structure)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치적 기능에 대한 이해. 다섯째, 경찰-시민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공공관계(PRs) 및 행정책임에 대한 연구가 다른 인접학문과의 경계로 설정할 수 있겠다.

경찰학의 개념적 경계

1. 관료제에 대한 연구
2. 경찰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
3.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정치적 기능에 대한 연구
5. 공공관계(PRs) 및 행정책임에 대한 연구

5. 대학에 학과 설치

그 동안 전국 2개 대학에 불과했던 경찰행정학과가 '96년 4개 대학과 '97년 1개 대학, 98년에 4개 대학, 그리고 '99년에도 몇 개의 대학에 추가 설립됨으로서 향후 경찰학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척되어 경찰학의 발전에 많은 기여가 전망된다. 또한, 경찰대학 부설 치안연구소가 '94년부터 연구업무를 활성화함으로써 치안환경의 변화예측과 치안정책 및

대응기법개발 등 효율적인 치안정책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대학과 연구소의 교육 및 연구활동은 교수요원과 우수한 경찰인력자원의 양성 그리고 경찰학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경찰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의 선결조건은 경찰과 대학간의 원활한 교류 즉, 관학협동이 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표 1 > 일반대학내 경찰행정학과 현황

대학교	동국대	관동대	계명대	서남대	원광대	중부대	웅인대	대구대	대불대	경운대	탐라대	한세대
설립년도	'63	'93	'96				'97			'98		

6. 결 론.

이상의 논의에서 경찰학의 정체성을 규명

해 보고자 시도해 보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론에 불과한 것이다. 솔직히 이 글을 쓰면서 지적능력의 부족으로 '논리의 언덕'을

오르면서 힘에 부쳐 여러 번 쉬어야 했다. 물론 논리의 언덕을 넘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더 밀어졌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여러 독자들의 비판과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경찰청. (1997). 「경찰백서」.
2. 남궁구. (1994). 「형사사법정책론」. 서울 : 진명문화사.
3. 박세일. (1996). 「법경제학」. 서울 : 박영사.
4. 서기영. (1981). 「한국경찰행정사」. 서울 : 법문사.
5. 서울대학교 관악행정연구회. (1986). 「한국행정연구」. 서울 : 대영문화사.
6. 이상안. (1995). 「신경찰행정학」. 대한문화사.
7. 이황우. (1996). 「경찰행정학」. 서울 : 법문사.
8. 정진환. (1998). 「경찰행정론」. 서울 : 대명문화사.
9. 치안연구소. (1996). 「치안정책연구(제5호)」.

경찰부정부패에 관한 학술적 이론들과 영국 경찰의 부정부패 방지책에 대한 고찰

〈경찰학 박사/경찰대학 교관〉 표창원

I. 경찰 부정부패에 관한 학술적 이론들

1. 경찰부정부패의 개념

Oxford 사전에선 부정부패(corruption)를 “뇌물이나 향응(bribery or favour)에 의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반되어야 할 도덕성(integrity)의 오염이나 파괴”라고 정의하며 그 ‘대가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Richard Ward같은 학자는 경찰부정부패(police corruption)를 “그 대가로 경찰관이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받든 받지 않든, 법을 집행하고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편부당하고 공정해야 할 경찰관으로써의 권한을 옳지 않게

사용하여 경찰력 행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부정한 행위를 보호해 주거나, 어느 한편을 유리하게 해주고 다른 한편을 불리하게 하는 것²⁾”라고 규정하여 그 대가성에 상관없이 경찰관이 그 권한을 불순한 의도로 사용한 모든 경우를 부정부패로 간주하고 있다. Golden Misner 역시 무엇을 받고 안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중요함을 강조하여 “경찰관이 선물 등을 받음에 있어 그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그것은 ‘뇌물’이나 ‘단순한 호의 내지는 친선(friendship)’이 동기일 경우엔 ‘뇌물’로 봐선 안된다³⁾”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경찰관의 불법적인 행동’이 널리 인정되는 경찰부정부패의 개념이

1) Oxford English Dictionary, second edition, 1989

2) Richard H. Ward, “Police Corruption: An Overview”, in Police Corruption - ‘A symposium presented to the 82nd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ublished by the Police Journal, Sussex, 1975, p. 34

3) Gordon E. Misner, “The organisation and social setting of police corruption”, 상계서, p. 27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Charles Bahn이 지적하듯, 피의자를 ‘엮어넣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illegal planting of evidence)’ 등의 잘못된 행위들도,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정부패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⁴⁾ 또한 Gerald Lynch는 ‘동료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모른척 하는 경찰관의 행위도 그로 인해 이득을 얻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직업윤리와 도덕적 의무를 팔아 동료의 환심을 샀기 때문에, 역시 부정부패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⁵⁾ 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열거하는, 런던수도경찰청의 한 고참형사가 수사간부연수과정에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적시한 ‘실무상 행해지는 경찰부정부패의 구체적 사례’들은 경찰관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경찰부정부패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돈을 받고 재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기
- 돈을 받고 결정적인 증거를 누락시키기
- 변사사건 발생시 특정한 장의사에 연락

해 주기

- 교통사고가 났을 때 특정한 정비업소나 견인업자에 연결해 주기
- 예정된 단속이나 검거의 정보 흘려주기
- 사건현장에서 귀중품 챙기기
- 가게, 식당이나 술집에서 공짜로 술, 물건이나 음식을 대접받거나 할인 받기⁶⁾

2. 경찰 부정부패의 특성(characteristics)

경찰 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다른 직종 종사자의 편중된 업무처리나 부당이득 획득, 또는 일반적인 범죄행위와 무엇이 어떻게 다르며 왜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학자들은 “부정부패가 ‘공적 신뢰(public trust)’와 관련되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경찰부정부패를 논함에 있어 빠지기 쉬운 두가지 함정이 있는데, 첫째는 부정부패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부정부패 행위자를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그 부패의 고리가 시작되

4) Charles Bahn, “The Psychology of Police Corruption : Socialisation of the Corrupt”, 상개서, p. 12

5) Gerald W. Lynch, “Police Corruption from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 in Police Studies Vol. 12, No. 4, Winter 1989, p. 166

6) E. Fletcher, Corruption within the Police Force, Advanced C.I.D. Course Project, Metropolitan Police Detective Training School, December 1977, p. 2

7) Albert J. Reiss, Jr., Foreword to Scandal and Reform - Controlling Police Corruption by Lawrence W. Sherman,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고, 형성되며 고착되어 개혁과 정화의 칼날을 피해 나가고 때로는 반격을 해 오는 복잡한 과정과 역학관계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반대로, 부정부패 문제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개혁과 정화의 의지를 꺾으려는 변명이며 논리이다. 부정부패를 연구한 학자들은 한결같이 ‘부정부패에 이르게 되는 복잡한 과정과 미묘한 상황을 핑계로 부정한 행위를 용인하거나 합리화시켜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⁸⁾

예를 들어, 경찰관들의 부정부패는 흔히 처음에는 ‘이정도쯤은’이라 생각될 만한 아주 보잘것 없는 규칙위반이나 미미한 탈선에서 시작된다. 또한 많은 경찰관들이 ‘동료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기위해’, ‘바보로 취급받지 않으려고’, ‘혼자 깨끗한척 하기 싫어서’, ‘뭘 모르는 철부지 취급받기 싫어서’, 또는 ‘썩은 세상에 혼자 맞서봐야 소용이 없어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부정부패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들은 물론 일리가 있고 반드시 신중한 논의를 거쳐 극복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태도로 부정부패를 합리화 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경찰 부정부패의 원인 (causes)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인간 본성의 탐욕성과 이기심을 꼽는다. 런던수도 경찰청장을 지낸 맥니(MacNee)경은 ‘경찰에 부정부패가 있는 것은 인간사회에 죄와 악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이는 인간본성의 탐욕과 이기심에 기인한다’⁹⁾고 주장하였으며 홍콩의 대법관을 지낸 로버츠(Denys Roberts)경은 ‘아무리 건전한 사회일지라도, 아무리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 원칙이 강조되고 지켜지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탐욕적인 자, 권한을 악용하는 자, 야망은 크나 참을성이 없어 힘든 노력 대신 뇌물을 택하고 인간적 덕목 대신 부정부패에 빠지는 자가 상당수 있게 마련이다’¹⁰⁾라고 토로하였다. 한편 영국 내 무부 경찰감사관(Home Office Inspector of constabularies)을 지낸 윌리엄슨(Frank Williamson)은 범법자의 유혹을 받기 쉬운 경찰업무의 특성을 강조하며 ‘법을 위반하는 자들은 경찰관의 코를 꺾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며 일단 한번 매수에 성공하면 그 효과가 지속되도록 끊임없이 압박하며 그런 환경 하에서 경찰관들은 다른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탐욕스러워질 수 있다’¹¹⁾고 주장하였다.

8) Gerald W. Lynch, Introduction for Police Corruption, 1975, 전게서, p. 3

9) Sir David McNee, McNee' Law, London, Collins, 1983, p. 205

10) Sir Denys Roberts, "Corruption, Law and the Community" in Police Studies, Vol. 11, No.1, Spring 1988, p. 2

11) E. Fletcher, 1977, 전게서, p. 2

경찰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2가지의 접근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전통적인 ‘썩은 사과식 개인윤리적 접근법(traditional rotten apple theory of individualistic approach)¹²⁾’ 즉 ‘사과케잍 안의 몇 개의 썩은 사과는 다른 대부분의 사과와는 달리 케잍에 넣기 전에 이미 부딪치든지 상처가 나 있던 것이듯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경찰관은 경찰관이 되기전에 이미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경찰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경찰관으로 채용하였기에 생긴 문제’라는 접근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구조주의적, 사회학적 접근방법(structural, sociological approach)’으로 경찰부정부패의 원인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그 조직의 구조적이고 사회학적인 문제때문¹³⁾’이라는 태도다. ‘구조주의 접근론자’들은 ‘개인윤리 접근론자’들의 ‘썩은 사과론’이 경찰차회자나 위정자들에게 편안한 변명거리를 제공해 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책 강구라는 골치아픈 과제로부터 비껴갈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이 꼽는 주요한 경찰부정부패의 원인은 :

- 경찰업무의 특성 : 불법영업자들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더 큰 이득을 봄

- 과중한 업무와 책임 : 분쟁의 조정자, 가정문제 상담자, 청소년 선도자, 범죄 예방 및 퇴치자인 동시에 군대식 조직의 명령 수명자로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 덕성의 습득이 불가능하여 청렴이라는 직업윤리 포기, 부패의 유혹에 쉽게 승복.
- 사회적 환경 : 경찰관의 인성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가정 환경 및 주변환경과 소속 사회집단의 도덕적 분위기.
- 경제적 여건 : 가족생계, 자녀양육 비용 및 문화적 욕구 대비 급여수준.
- 비현실적인 법률의 존재 : 도박, 매머춘, 풍속영업 관련법 등 많은 사람이 어기는 법적 규제조항의 존재는 경찰관의 묵인 없이는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초래.
- 경찰 문화 :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구조와 비밀주의, 충성주의 및 지나치게 동료애를 강조하는 분위기는 부정부패蔓延의 비옥한 토양이며 부패경찰관 적발 및 조사에 장애요인.

*런던 경시청의 고참형사 Fletcher는 “경찰관이 돈을 먹는 이유중 하나는 동료직원

12) ‘rotten apple theory’를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로는 Vollmer, German, Tappan, Sutherland와 Cressey를 들 수 있다.
참조 : E. R. Stoddard, “Blue-Coat Crime”, in R. J. Lundman(ed.), Police Behaviour - a soci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p. 226-9

13) 상계서, pp. 229-34

들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다. 소액일지라도 받아서 동료들과 나누는 것은 그 집단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용기있게 이를 거절하는 사람은 골치덩이로 취급받는다¹⁴⁾”라고 토로.

- ‘검거’와 ‘단속’ 위주의 ‘강력 대응’ 정책 : 각 경찰서별 또는 부서별로 ‘건수’ 경쟁을 시키며 강력한 단속과 검거를 강요하는 지휘관의 정책은 ‘격무’를 핑계로 그 대가로서의 부정부패를 합리화시키는 분위기를 조장하며 경찰관간에 서로를 전장에서의 ‘전우’처럼 서로 보호하고 비밀을 지켜줘야할 대상으로 여기게 함.

4. 경찰 부정부패의 국제적 관점

대부분의 저개발국가(또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경찰부정부패가 일상화 되어있다. 일례로, 본 논문 자료조사차 1994년 2월 필자가 방문했던 폴란드 그단스크시 경찰국장은 경찰관의 낮은 보수 때문에 ‘길거리 수금’이 만연되어 있고 ‘사건 봐주기’도 자주 발생하며 정부도 이러한 ‘음성수입’을 감안하여 경찰관 보수를 결정한다고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고 털어 놓으며 부패한 경찰과 유착한 마약, 총기 및 인신 매매조직이 번성하고 이들이 유출

하는 마약과 총기가 선진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저개발국가 경찰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인근 선진국들이 재정보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하지만, 경찰부정부패가 결코 개발도상국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세계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대도시에서도 연일 대형 경찰부정부패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1986년 경찰부정부패의 진상파악과 근절책 강구를 위한 Knapp Commission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술한 경찰관들이 마약거래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은 죄로 기소되었고, 보스턴에선 사창가 포주들에게 상납 받은 경찰관들이 입건되었고, 마이애미에선 직접 마약판매조직을 운영하던 경찰관들이 구속되었고, 연방수사관들이 조사에 나선 필라델피아에선 경찰관들과 도박, 매춘, 유흥업소의 조직적이고 거액이 수반된 유착, 상납구조가 드러나고 31명의 경찰관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었다.

위의 두 예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이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그 어느나라 경찰도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부패를 최대한 방지하고 통제¹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14) E. Fletcher, 1977, 전계서, p. 3

15) 여기서 필자는 경찰부정부패의 ‘근절’, ‘척결’ 또는 ‘발본색원’ 같은 비현실적인 구호 대신 부정부패를 가능한한 최소화시킨다는 의미의 ‘통제(control)’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5. 경찰부정부패 방지, 통제(control)책

(1) 경찰부정부패 방지, 통제의 중요성과 문제점

구체적인 부정부패 방지, 통제책을 논하기에 앞서 효과적인 부정부패 방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Dombrink는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태도와 경찰업무에 대한 협조, 경찰행위의 정통성 인정 등은 모두 시민들의 경찰부정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에 달려 있으며 경찰부정부패의 통제는 경찰업무의 전문성(professionalism)증대, 사기 진작(high morale) 그리고 경찰 조직의 개혁을 이루기 위한 여러 정책들과 동시에 추진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¹⁶⁾. 그에 의하면, 부정부패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진 경찰조직은 대개 그 조직이 경직되어 있음으로 인해 개혁적인 정책의 도입이나 깨끗하고 개혁적인 성향의 경찰관이 상부로 승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Misner는 경찰부정부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경찰관들에게 있어 최대의 욕구인 자신의 일과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킨다고 주장했다¹⁷⁾.

그렇지만, 경찰부정부패 문제해결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발생할 문제점도 간과할 수

는 없다. 여러 경찰학자들이 부정부패 문제해결에 치중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꼽는 것은, 경찰관들의 사기저하와 조직내 불신감 조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죄자들이나 대상업소와 끊임없이 접촉하며 정보수집을 통해 강력사건을 해결해야할 형사들의 효과성과 능률성이 저하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형사들이 감찰활동의 대상이 될까봐 건달이나 유흥업소 종사자인 정보원이나 범죄 목격자들과 접촉하기를 꺼리게 되고 사명감이 투철하고 유능한 민원형사들의 적극성을 감퇴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1970년대 부정부패 스캔들로 더럽혀진 런던수도경찰청을 혁명적으로 정화시켰던 당시 경시청장 로버트 마크(Sir Robert Mark) 경은 런던수도경찰청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해야 했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

“나는 환자를 죽이지 않으면서 거대한 악성종양을 제거해야 하는 수술을 하는 의사와 같았다. 다시 말해서, 형사국내의 부패혐의자 수백명을 숙아내는 동시에 경찰관들의 사기와 경찰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유지시켜야만 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으며, 진정한 의도를 감추기 위해 때때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말해야만 하

16) John Dombrink, "The Touchables: Vice and Police Corruption in 1980's" in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51, No. 1, 1988, pp. 206-232

17) Gordon E. Misner, 1975, 전계서, pp. 31-2

는 고통도 감수해야만 했다.¹⁸⁾

(2) 구체적 경찰부정부패 통제책

구체적인 경찰부정부패 통제책을 논의함에 있어 많은 이들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중의 하나로 꼽는 것이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정보’이다. 그러나, 혼자 또는 2인 1조로 넓디넓은 관할구역내에서 활동하는 경찰관들의 행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간접적’ 방법인데 이는 경찰관들에게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부정부패 문제 해결책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사전예방적(premonitory)조치들과 색출형(proactive)조치들이다. 사전예방적 조치들이 주로 부정부패의 기회를 사전에 제한시키는 방법들이라면, 색출형 조치들은 부정부패한 경찰관들을 찾아내어 (detect) 조치(apprehend)하는 것이다.

가. 사전예방적 조치들

Lynch는 사전예방적 조치들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경찰관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실제 마주치는 부정부패의 유혹과 압력들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⁹⁾. 이와 같은 도덕적 무장과 실천을 위한 교육 훈련은 말로 행하는 강의식이 아닌, 부정부패 고리의 시작과 전개와 심화의 각 단계별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설정하여 올바른 대처 방법과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익히는 ‘모의훈련(simulation)’이나 바른 대처를 하면 상을 주고(rewards) 그른 행동을 하면 벌을 주는(punishments) ‘역할연기훈련(role modeling)’ 등 실습을 통해서 행해져야 하며, 경찰교육기관들은 윤리에 대한 훌륭한 강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경찰교육생들 서로간에 윤리적 도덕적 규범적 생활을 조성하는 명예제도(honor systems)와 이를 규율 집행하는 자체 명예위원회(honor boards)제를 제대로 도입하도록 해야할 것이다²⁰⁾.

교육·훈련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올바른 조직의 운영(internal administration)인데, Sherman은 경찰부정부패의 효과적 통제를 위해 중요한 3가지 행정적 요소로, ‘적극적이고 사명감이 강한 지휘관의 책임있는 개혁’, ‘일선 경찰관의 근무시간과 업무수행 결과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초급간부의 장악력 강화’,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형식주의를 배격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직원은 보상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이익 받는 확실한 신상

18) Robert Reiner, The politics of The Police, London, Wheatsheaf, 1992, pp. 178-9

19) Gerald W. Lynch, 1989, 전게서, p. 169

20) Charles Bahn, 1975, 전게서, pp. 12-3

필벌의 인사제도 확립'을 꼽고 있다²¹⁾. 이에 덧붙여서 Lynch는 조직내부에서 형성되는 부정부패와 부정부패 관련자,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²²⁾. 미국 캔사스 시경국장인 조셉 맥나마라(Joseph McNamara) 역시 경찰부정부패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관 동료들(peer group) 사이에 자긍심(pride)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감찰(internal investigation unit), 경찰의 전문화와 기타 부패예방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the support of the community), 부정부패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업무 종사자의 정기적 순환배치 제도 정착(a wise policy of rotation of assignment in positions sensitive to corruption)등이다²³⁾. 호주 연방경찰청장(the Commissioner of Australian Federal Police) 로날드 맥컬리(Ronald Peter McAulay)는 경찰지휘자들의 조직운영상 문제점이 부정부패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참회성 고백을 털어 놓았다 :

“우리 경찰지휘관들은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완수해야 할 세가지 중요한 조직운영상 원칙들을 무시함으로써 부정부패라는 암적인 존재가 조직내에 퍼지도록 방치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동안 부정부패관련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만 대응하는 수동적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둘째로, 부정부패에는 적지않은 금전적 이득이 수반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확고히 하여 부정부패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는 특별한 책임감이 부여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우리 부하직원들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싶은 유혹에 빠지도록 방치해 왔습니다²⁴⁾”.

나. 색출형 조치들 (proactive strategies)

사전예방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일지 않으나 색출형 조치들은 종종 뜨거운 찬반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한다. 논객들은 종종 경찰 스스로가 경찰의 부정부패를 조사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경찰 스스로가 경찰관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

21) John Dombink, 1988, 전제서, p. 226

22) Gerald W. Lynch, 1989, 전제서, p. 167

23) Joseph D. McNamara, “The impact of bureaucratic dysfunctions on attempts to prevent police corruption” in Police Corruption, 1975, 전제서, p. 25

24) Ronald Peter McAulay, “The Impact of Management Practices on Corruption” in Police Studies, Vol. 12, No. 4, Winter 1989, p. 171

를 수집(gather)하고 조합(assemble)하여 제시(present)하고 분석평가(interpret)하여 판단(judge)한다면, 심각한 부정부패관련 제보나 민원이 제대로 조사되어 적절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 지기가 어렵다는 논리이다. 그렇지만, Stead가 주장하듯, 경찰만이 경찰의 부정부패관련 사안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²⁵⁾. Dombrink²⁶⁾ 역시 경찰 외부인의 경찰비리조사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고 ‘관리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적이라고 주장한다. Dombrink에 따르면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 시험 실시 해본 결과, 외부 조사가 경찰내부 감찰(police internal review)에 비해 경찰관 비리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내지 못하며 적발해 낸다 하더라도 그 처벌에 있어 경찰내부 징계보다 훨씬 관대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Goldstein이 주장하듯, 어떤 외부기관도 경찰지휘관처럼 경찰관들의 일상업무와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누가 조사할 것이냐의 문제를 제쳐두고서라도, 경찰관 부정부패 행위의 특성에 따른 조사 자체의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홍콩의 부정부패특위위원장(the Commissioner of

the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은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뇌물수수를 통해 이득을 보는 위법행위의 공범자이기 때문에 이를 제보하거나 신고 할리 없고, 금품의 수수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며, 특히 최근에는 자금의 출처를 숨기는 복잡한 기법이 발달해서 비리행위에 대한 적발과 구증이 무척 어렵다²⁷⁾”고 주장한다.

미국 뉴욕 존 제이 칼리지의 Dorothy Bracy교수는 ‘전향(turning)’, ‘정직성 검사(integrity tests)’, ‘첩자 부식(field associates)’의 3가지를 전통적 비리색출법으로 제시했다 :

- 전향(turning) : 비리혐의가 밝혀진 경찰관의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시켜주는 대가로 다른 동료 경찰관의 비리관련 증거를 제공케 하는 방법
- 정직성 검사(integrity tests) : 무작위로 대상 경찰관을 선정하여 집중 감사 감찰을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
- 첩자 부식(field associates) : 동료직원의 비리행위 감시 및 증거수집을 비밀임무로 부여받은 경찰관을 대상부서에 부식하는 방법²⁸⁾

25) Philip John Stead, 1975, 전계서, pp. 8-9

26) John Dombrink, 1988, 전계서, p. 227

27) D. G. Jeaffreson, "The Importance of a Three-Pronged Attack on Corruption and an Assessment of its Effectiveness", in Police Studies, Vol. 12, No. 4, Winter 1989, p. 150

Bracey 교수는, 그러나, 위와같은 전통적 비리색출법이 또다른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여러 경찰관서에서는 강력하게 전통적 비리색출법을 사용한 결과 ‘사기저하’,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악화’, ‘범죄퇴치능력 약화’, ‘동료간 불신풍조 확산’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²⁸⁾. 전 캔사스 시경국장²⁹⁾은 감찰반(police internal investigation units)의 존재 자체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경찰관들이 감찰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정직성에 대한 모욕적 불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관리자급 간부들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각종 부정부패 예방책의 실행에 장애가 되고 ‘비리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청렴한 동료 경찰관들이 협조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청렴한 경찰관들의 가치관은 비리 경찰관들의 가치관과 상반되나,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 서로 팀을 이뤄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는 경찰업무의 특성과 불공정한 언론보도나 사회 일부계층의 무조건적 경찰혐오 등 부정적 업무환경의 공유로 인해 형성된 ‘동료애’와 ‘비밀주의’의 경찰문화로 인해 동료직원의 비리행위를 밝히고 고발하는

것이 금기시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비리 경찰관 색출을 전담하는 감찰반의 존재는 여타 경찰관들로부터 ‘부정부패의 예방과 색출 책임’을 면탈하는 결과를 야기하며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감찰반은 부정부패를 예방한다는 본래 목적보다도 상관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건수위주’의 적발관행이 정착되기 쉽다.

다. 이상적 방안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가장 이상적인 부정부패 방지책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훈련, 확고한 신념에 찬 지휘관의 지도력, 경찰관 스스로가 처벌이 두려워서 아니라 개인적 도덕심과 자부심으로 부정부패 대신 정직한 업무수행을 선택케 하는 조직문화 진작 등 사전예방적 조치들의 기반 위에 효과적인 색출형 조치들을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8) Dorothy H. Bracy, "Proactive Measures Against Police Corruption: Yesterday's Solutions, Today's Problems", 상계서, p. 175

29) 상계서, p. 176

30) Joseph D. McNamara, 1975, 전계서, pp. 21-2

II. 영국 경찰의 부정부패 방지책에 대한 고찰

1. 영국 경찰과 부정부패

영국에서는 경찰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저서나 언론보도가 그리 흔히 발견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엇갈린 견해가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듯이 영국경찰은 깨끗하고 정직해서 부정부패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시각과, 영국경찰의 부정부패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이를 파악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³¹⁾.

대부분의 경찰학자와 형사사법학자들은 영국의 형사사법구조하에선 경찰부정부패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경찰부정부패가 있기만 하면 대서특필하는 영국언론의 태도와 그러한 보도의 희소성으로 미루어 볼 때 현 영국경찰에는 부정부패가 거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Stead가 면담조사한 영국의 법관들은 한결같이 영국경

찰의 청렴성과 정직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³²⁾, 미국의 경찰학자 Ward는 영국경찰이 '정직한 경찰관, 시민, 경찰의 명예'를 3대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영국경찰에는 부정부패가 거의 없고 이로인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³³⁾고 평하고 있으며, 역시 미국의 경찰학자인 Bracey는 스스로를 '영국경찰제도의 찬양자'라 자칭하며 영국경찰의 여러 면 중에서도 그 '청렴성과 정직성(integrity)'이 가장 찬양할 만한 덕목이라고 꼽으며 영국경찰은 누구도 부패시킬 수가 없을 정도³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Simpson³⁵⁾이 주장하듯, 경찰부정부패 문제는 변화하는 경찰환경과의 연관성을 포함하여 끊임없이 고찰하여야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영국경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실례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휩쓴 런던 경시청의 부패 스캔들은 수십명의 형사들을 감옥으로 보냈고 수백명의 경찰관을 파면시켰고 형사국은 치욕적인 대대적 구조개편을 당해야 했다³⁶⁾. 최근에는, 마약류 사용자의

31) James Morton, Bent Coppers, Lond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3, p. xi

32) Philip John Stead, 1975, "Some notes on police corruption: The English experience" in Police Corruption, 1975, 전계서, p. 5

33) Richard H. Ward, 1975, 전계서, p. 34

34) Dorothy H. Bracey, "Police Corruption in Britain and America: A Functional Approach" in Police Studies, Vol. 1, No. 4, December 1978, p. 16

35) Antony E. Simpson, The Literature of Police Corruption Vol. 1: A Guide to Bibliography and Theory, New York, John Jay Press, 1977, p. 7

36) B. Cox, J. Shirley and M. Short, The Fall of Scotland Yard, Middlesex, Penguin, 1977, Chapter 1.

증가와 함께 밀매조직의 수입은 엄청난 수준이며 이들에 의한 경찰관 매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Lynch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영국의 마약밀매조직이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뇌물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며 많은 수의 경찰관들이 이러한 거액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매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³⁷⁾. 많은 이들이, 영국에서의 마약류 거래량의 엄청난 증가를 고려할 때, 영국 경찰관들도 마약류 밀수조직이나 중간판매조직과 '거래' 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런던수도경찰청이나 맨체스터경찰청 형사들도 마이애미, 파리, 시드니, 홍콩의 경찰관들과 마찬가지로 부패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³⁸⁾. 경찰의 청렴성에 대한 영국국민들의 여론 변화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1960년의 왕립조사단(Royal Commission)의 조사시에는 46.9%의 국민들이 영국경찰에는 뇌물수수가 전혀 없다고 대답한 반면, 1981년 경찰학연구소(Police Studies Institute)의 런던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단 14%만이 경찰이 뇌물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응답했다³⁹⁾. 더군다나, 최근 영국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일련의 경찰부정부패 스캔들은 영국경찰이 세계 어느 나라의 경찰보다 깨끗하다는 믿음에 물음표를 던지게 한다. 1993년 11월에 방송된 BBC 텔

레비전의 "Panorama"라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숨겨진 카메라와 마이크에 생생하게 잡힌, 충격적이고 적나라한, 마약밀매 피의자와 경찰관의 뇌물수수 현장을 보여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영국경찰의 '중요 우범자 200명'에 항상 포함되어 경찰의 관리를 받아왔고 3개월에 걸친 경찰의 비밀기획수사(undercover operation)인 'India One작전' 결과 마약밀매 혐의로 기소된 범죠힌인 Kevin Cressey의 제안에 의해 제작되었다. 프로그램의 틀은 형사와 Cressey간의 비밀회합 장면과 17개의 녹음테잎에 담긴 두사람간의 대화였다. Cressey는 John Donald 형사에게 '경찰 보석(police bail)'의 대가로 18,000 파운드(한화 약 4,140만원)를 건네주고 Donald형사는 앞으로 있을 '법원보석(court bail)'의 대가로 돈을 더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장면과, Donald형사가 오직 '국립범죄정보국(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 직원만이 구할 수 있는 '경찰정보원 명부'와 '국제적 수사공조 현황' 등 정보를 구해줄테니 500파운드를 더 달라는 대화내용, 심지어는 Donald형사가 Cressey에게 마약판매사업을 동업하자는 내용까지 생생하게 방송되었다. 1994년 1월에는, "The Observer"지가 영국세관의 대대적 마약조직 수사가 경찰에 의해 수

37) Gerald W. Lynch, 1989, 전계서, p. 168

38) James Morton, 1993, 전계서, pp. 19-20

39) Robert Reiner, 1992, 전계서, p. 81

포로 돌아간 사건을 전면기사로 실었다. 기사
의 내용인즉슨, 영국세관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마약조직의 거두인 Brian Charrington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4년간의 끈질긴 수사끝에
그를 체포하고, 밀수선을 덮쳐 사상초유의
1,995파운드(약 900kg)에 달하는 순도95%의
콜롬비아산 코카인을 압수하였고, 그의 집을
수색하여 코카인 암페타민 대마초와 헤로인이
묻어 있는 2백만 파운드(한화 약 46억원)의
현금다발과 콜롬비아 마약카르텔의 판매책임
Mario Halley에게 450만 파운드(한화 약 103
억 5천만원)를 지불한 내역이 적힌 장부를 찾
아내어 환회에 찬 개가를 올리는 듯 했다. 그
러나 세관수사팀은 그동안 같은 편이라고 철
썩같이 믿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꿈에도 생각
치 못한, 불의의 일격을 당하게 된다. 1989년
이래로 세관수사팀과 공조하여 Charrington
상대 수사를 해온 런던수도경찰청의 Harry
Knaggs경위와 Ian Weedon경사는 단 한번도
Charrington이 공식 암호명 “Target One”으
로 지명된 마약밀매 용의자라는 것이외의 언
급을 한 적이 없으나 그가 체포되자 돌연
Charrington이 중요한 경찰정보원이라는 장
문의 보고서를 법정 에 제출하였고
Charrington과 10명의 공범들의 첫공판 10일
전에 담당검사는 Charrington에 대한 모든 혐
의의 기소를 철회하게 된다. “The Observer”

지는 또한 이 사건에 법무장관(Attorney
General)과 보수당 국회의원 역시 연루되어
있다고 시사했다. Knaggs경위는 스캔들이 일
자 바로 사직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Charrington소유로 밝혀진 8만7천파운드(한
화 약 2억원)짜리 BMW 컨버터블을 타고 스
페인으로 가는 카페리안에 있는 것이 목격되
었다⁴⁰⁾. 1994년 2월에는, 런던의 흑인밀집거주
지역인 Stoke Newington 주민들이 45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134건에 이르는 증거조작,
위증, 절도, 독직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의 고
소장을 제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영국에는, 경찰관의 업무나 행태를 감시하
고 잘못된 행위를 적발해 내는 감찰(미국의
internal affairs)제도가 없다. 단지,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이 ‘불만
(complaint)’을 접수시키면 해당 지방경찰청
(Constabulary) 차장(Assistant Chief con-
stable)직속의 ‘민원처리 및 기강담당’ 부서
(complaints and discipline department)에
서 이를 조사하는데, 중대한 사안인 경우엔
그 조사에 있어 내무부 산하의 독립기구인 경
찰민원소(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Authority)의 감독을 받는다.

혹자는, 이런 영국의 소극적인 부정부패 대
응책이 최근에 불거져 나온 거액 수뢰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40) The Observer, Sunday January 16th 1994

또 다른 이들은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듯, 경찰내부에도 소수의 욕심 많은 자가 존재하며 그래도 영국경찰의 부정부패 방지제도는 비리의 조직화와 일상성을 제거하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예방책과 구조적 건강성에 초점을 맞춘 영국 경찰의 부정부패 방지책을 알아 보기로 하겠다.

2. 영국경찰의 부정부패 방지 제도

(1) 기본 조건 : 보수와 처우(Basic conditions : pay and allowances)

경찰관의 보수와 처우 수준은 경찰관들이 부정부패의 유혹에 대해 얼마만큼의 저항력을 갖느냐를 결정하는 기본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영국경찰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부패저항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3월 영국 내무부 경찰보수협상위원회(the Police Negotiating Board)에서 합의된 경찰보수안을 보면 신입 순경의 초임이 연봉 13,585 파운드(한화 약 3,125만원), 고참순경은 연봉 21,500 파운드(한화 약 4,945만원), 경사 승진후 초봉은 20,750 파운드(한화 약 4,773만원), 그리고 고참경사의 연봉은 24,200 파운드(한화 약 5,566만원)에 달하며 이러한 본봉에 덧붙여서 상당한 액수의 의료수당, 피복수

당, 형사 외근수당, 승진시험 준비수당, 외국어 학습수당, 차량 유지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 받는다⁴¹⁾.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수준이 유사한 벨기에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살펴 보면, 1인당 GNP는 벨기에(16,790 달러 = 9,570 파운드 92년 PC Globe 수록 자료)가 영국(15,387 달러 = 8,771 파운드 동일 자료)보다 많으나 벨기에 경찰관의 보수수준은 영국경찰 보다 훨씬 낮다. 즉, 1인당 GNP가 9,750파운드에 달하는 벨기에 신입순경의 연봉은 6,667 파운드(한화 약 1,533만원), 고참경사 연봉은 13,131 파운드(한화 약 3,020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1인당 GNP가 8,771파운드에 불과한 영국의 경찰관 보수는 벨기에의 두배에 육박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 영국경찰에는 대상업소 업주나 교통법규 위반자들로부터의 금품수수등 일상적 부정부패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짚어 보았듯이 마약 밀매조직이나 기업형 범죄집단이 제시하는 거액의 뇌물이 주는 유혹을 단순히 좋은 보수를 받는다고 해서 뿌리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남는다.

41) Sean Howe, "Your salary at a glance", in Police Review, 4 March 1994, pp. 12-3

(2) 민주적 경찰통제 장치 (democratic accountability system)

런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저명한 경찰학자 Reiner⁴²⁾ 교수가 주장하듯, 경찰은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을 평가하여 우선순위(priorities)를 두어 경찰력을 운용하여야 하며 아무리 정치하게 마련된 법안이라 할지라도 그 실제적용에는 해석이 필요하고 지나친 법집행은 '정의'에 대한 사회통념을 깨트리기 때문에 경찰은 폭넓은 재량권(considerable discretion)을 부여 받아야 하며 그러한 경찰재량권(police discretion)을 전제로 경찰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를 심도있게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 통제장치의 형태와 기능(the style and function of the accountability system of a police organisation), 즉 '누가 경찰력을 통제하며 경찰활동의 최종평가자는 누구인가'의 문제는 경찰부정부패의 예방과 통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의 경찰통제장치에 대한 논의는 주로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경찰의 중앙집권화 여부(whether or not to centralise) 및 주민선출에 의한 민주적 통제(control by elected body)', '지역주민의 참여(community consultation)'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1829년 Robert Peel에 의해 런던수도경찰청이 창설된 이래 영국경찰은 법의 철저한 준수(adhere to the rule of law)를 제1과제(prime requirement)로 삼았으며 내부통제도 엄격한 규칙과 규율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그 근거에는 런던수도경찰청 출범당시 영국법원의 경찰에 대한 심한 불신이 깔려 있었다. 판사들은 경찰이 기소한 사건을 각하시키고 증거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삼기가 일수였기에 경시청장들은 자신의 권한과 경찰의 재량권을 대폭 제한시키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경찰행위의 법적 정통성(legitimacy)을 보장받기 위해 철저한 법절차 준수와 엄격한 내부규율의 적용을 경시청 운영의 제1원칙으로 삼아 왔으며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법조계 내에 경찰의 법절차준수에 대한 신뢰감이 폭넓게 형성되어 경찰의 기소와 경찰제출 증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⁴³⁾. 이후로도 경시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들은 '법의지배에 복종하는 경찰의 이미지(police image of subjection to the rule of law)'를 유지하는 것이 경찰의 정통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법으로 보장된 광범위한 경찰

42) Robert Reiner, 1992, 전계서, pp. 210-1

43) 상계서, pp. 63-64

의 재량권⁴⁴에 대해 경찰 스스로 대폭적인 제한을 가하는 엄격한 규칙을 제정, 적용하여 왔으며 시민들에게도 경찰관의 언행에 대한 불만을 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시민민원 및 신고를 보장하는 장치를 개발, 사용함으로써 ‘준법’을 경찰문화의 하나로 정착시켜 강력한 부정부패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와 70년대의 부정부패 스캔들과 80년대초의 고문에 의한 증거조작 등 가혹행위 사건의 연발은 더 이상 경찰 내부규칙만으로는 법의 지배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낳게 되어 잇단 왕립 조사단(Royal Commissions)의 조사와 권고에 의해 1984년에 경찰관의 재량을 법으로 규제하는 경찰과 범죄증거에 관한 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과 1985년 기소를 전담하는 독립된 변호사 기구인 국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의 창설을 골자로 하는 범죄사건 기소에 관한 법(1985 the Prosecution of Offences Act)이 제정 되게 되었다.

나. 지방분권의 확립과 중앙통제 강화의 적절한 조화

고대 앵글로색슨 시대로부터 10호장(tithing)제 등 주민자치치안의 전통을 이어

온 영국경찰은 모든 주민이 치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동체 치안’이라는 장점을 갖춘 반면 실제 경찰권을 가진 자가 지방토호와 결탁하여 부패하기 쉽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전후로 한 혼란기 부패하고 무능한 경찰 폐해의 원인이 지방분권에 의한 미약한 경찰통제에 있다고 보는 ‘경찰 중앙통제 옹호론자들(the centralised control advocates)’은 줄곧 영국도 일원화된 중앙통제하의 국가경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60년 경찰제도상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구성된 ‘왕립 조사단 (Royal Commission on the Police)’의 다수의견은 자치경찰의 전통을 살리되 중앙통제를 강화하는 절충안을 내놓았고 이는 126개에 달하던 지방경찰조직을 43개의 광역 경찰체(Constabulary)로 통폐합하고 내무장관(Home Secretary)과 지방경찰위원회(Police Authority), 경찰청장(Chief Constable)의 3자간 임무와 권한을 분담하는 3단체제(Tripartite System)의 경찰통제 장치(Police Accountability System)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964년 경찰법(Police Act)을 탄생시켰다. 이는 지방의회의원과 지역치안판사(magistrates)로 구성되는 주민대표인 경찰위원회가 지역의 치안목표 설정등 경찰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경찰지휘관이 경찰

44) 영국경찰은 1824 Vagrancy Act, 1839 the Metropolitan Police Act 등에 의해 스스로의 판단하에 무제한적인 ‘제지 및 검문(stop and search), 체포(arrest) 등을 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discretion)을 부여 받았다.

의 지휘통솔에 있어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내무장관이 전국경찰의 평준화와 수준향상을 담당하는 이상적인 경찰통제장치로 경찰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및 능률성을 동시에 확보해 경찰부정부패 예방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권한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 경찰위원회의 권한이 다른 두 파트너에 비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균형이 맞지 않아 ‘모양만 지방자치지’ 실체는 중앙집권 체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시민단체와 비판적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⁴⁵⁾. 또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경찰을 통제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냐는 일부의 의견이 있으나 모든 형태의 정치체제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영국경찰의 탈정치성(insulation from political control)은 지방정치와의 유착 및 부정부패의 창

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경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학자들과 행정가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⁴⁶⁾.

다.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

경찰의 조직구성이나 업무처리 과정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며 각종 범죄예방 및 퇴치 활동을 주민 및 관계기관 단체들과 함께하는 동반자적 접근(partnership approach) 및 다자협력적 접근(multi-agency approach)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 장치는 비밀스럽고 권위적인 경찰문화가 빚어내는 비리환경 자체를 근절하는 기저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영국경찰에서는 지역주민 경찰자문단(Police and Community Consultative Groups)⁴⁷⁾, 특별자원경찰(Special Constabulary)⁴⁸⁾, 이웃지켜주기(Neighbourhood Watch)⁴⁹⁾, 학교 지키기

45) Robert. Reiner, 1992, 전계서, p. 75

46) 상계서, pp. 90-91

47) 각 지방경찰위원회에서 지방경찰청장과의 협의하에(런던수도경찰청의 경우 내무장관의 지침에 의거 수도경찰청장이 각 버로우 및 디스트릭의회의 의견을 들어) 각 경찰서 단위(런던수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총 41개의 각 버로우 및 런던외곽 디스트릭)별로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지역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주민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주민경찰자문단(Police and Community Consultative Groups)을 설치, 운영토록 법으로 정하였는데, 이 경찰자문단은 각 지역주민대표, 지역의회의원, 지역방법위원회(Crime Prevention Panel)위원, 주민 유치장방문단(Lay Visitor Schemes), 교사, 종교인, 청년회 및 노인회 대표들로 이루어진다.

48)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여가시간을 할애하여 경찰과 함께 지역내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제도로 각 지방경찰청장이 임명하여 소정의 훈련을 마치고 경찰관과 똑같은 제복을 착용하고 부여받은 임무내에서 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순찰, 혼잡경비지원, 대 주민 방범의식고양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교통비 등 소정의 수당을 지급 받는다. 최근에는 특별자원경찰활동실적을 경찰관 채용시 반영하는 지방경찰청들의 정책으로 경찰관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49) 영국 내무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기구로 이웃간의 공동체 의식(community spirit)을 고취시켜

(Schools Watch)⁵⁰⁾ 등의 각종 주민참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 채용과 교육, 합리적 운용을 통한 비리예방책

가. 모집시 청렴성 평가: 경찰관 지원 자격요건 中에 ①前科(previous convictions) 또는 범죄나 부정직한 행위와 관련된 경찰경고(cautions)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③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 (대출금연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의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明示⁵¹⁾하여 청렴성과 정직성 및 준법성을 중요한 채용조건으로 삼고 있고 채용과정에서 까다로운 적성검사는 물론, 심리분석가(psychiatrist)와의 면담 분석조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하고 있다.

나. 교육·훈련의 강화로 근무기강 확립: 모든 경찰관은 2년간의 교육·수습기간을 거쳐야 순경으로 정식 채용되는데 최초 6개월은 경찰학교에서 이론과 실무 교육

(과정 중 비리유흥 대처요령을 모의훈련 <simulation> 통해 실습)을 이수하며 직업윤리 교육은 이론보다 교육생 상호간 규범적 생활을 조성하는 명예제도(honor systems)나 역할연기훈련(role modeling)등으로 명예심을 고취하여 생활방식 자체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 전문화 증대 및 사기진작을 통한 자부심 고취로 부패저항력 최대화: 수습기간후 警科制 실시와 분야별 전문교육·훈련 강화 및 형사·감식 등 전문능력을 우대하고 불필요한 서류 등 잡무를 줄임으로써 담당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 만족도를 최대화하며 대국민 홍보강화로 경찰위상을 높이고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자부심을 고취함으로써 경찰관 개개인의 부패저항력을 최대화시키고 있다.

라. 효과적인 업무 감독·통제: 모든 일선 경찰관이 경찰수첩을 휴대토록 하여 업무중 발생사항의 대강을 계속 기록토록 함으로

이웃간 범죄의 대상이 될 요소를 극소화시키고 지역내 경찰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자는 제도이다. 1997년 3월말 현재 영국(England & Wales)내에 161,000개가 넘는 단위 "이웃지켜주기" 조직이 활동중이며,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영국통신(BT) 및 유수한 보험회사 등 기업체들이 앞다투어 지원금과 기부금을 제공하여 전 사회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다.

50) 학교안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갈취 등 범죄로부터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학교 협력체제로 역시 무선호출기를 이용한 불량배 신고 및 정보전파 활동 등을 포함하는데 담당경찰관의 즉각적인 현장출동과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활동으로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

51) Merseyside Police 채용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erseyside.police.uk/recruit.htm> 참조

써 문제 발생시 확인 및 수사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경사를 팀장으로 한 업무 단위별 책임제 확립과 副署長 권한 강화로 係線에 의한 자율책임위주의 효과적 업무감독으로 업무상 행해지는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관할구역 순환제(rotation) 실시로 경찰대상업소와 유착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있다.

마. 非경찰 업무 담당요원의 民間人化로 비리 소지 차단: 경찰관은 모두 수사·방법·경비 등 본질적 경찰업무만 수행하게 하고, 인사·경리·경무 등은 민간인 전문계약인에게 맡김으로써 비용절감, 치안력 확충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부서간 격차 감소로 인사 청탁 등 내부비리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바. 주민참여 확대로 불특정 다수 주민에 의한 업무감독: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경찰위원회, 지역주민 경찰자문단, 주민 유치장 감시단 등 주민대표에 대한 경찰업무 처리과정의 참여 보장으로 비리요소를 근절하고 있고 전 경찰관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근무복에 부착케 하여 주민에게 언제든지 경찰관 개인에 대한 불만

이나 고마움을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4) 주민신고 위주의 비리통제제도⁵²⁾

- 경찰대상민원 조사제도 (Complaints Investigation System)

가. 민원·고발·신고 발생시에만 감찰조사: 영국경찰에는 평상시 경찰관들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통상 직무감찰이 없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깨끗한 경찰관의 사기저하를 막고 전체적 비리혐오 분위기 조성에 의한 소수 비리 경찰관 격리가 소수 감찰반의 활동보다 비리척결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전통적 믿음 때문이며, 주민신고에 의한 비리경찰관 색출이 감찰활동보다 효과적이며 경찰조직은 사회전체와 공동으로 소수 비리경찰관 척결에 노력한다는 의식확산으로 비리사건 발생시 조직전체의 사기저하를 방지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철저한 민원사건 조사로 경찰민원조사과정의 대 국민 신뢰 확보: 각 지방경찰청 次長직속으로 “경찰민원조사과”를 두

52) 영국경찰의 주민신고 위주의 비리통제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Mike Maguire and C. Corbett, A Study of the Police Complaints System, London, HMSO, 1991 및 M. Maguire, "Complaints against the Police : The British Experience", in Andrew J. Goldsmith (ed) Complaints Against the police - The trend to External Review, Oxford, Clarendon Press, 1991 참조

고 민원사건을 조사하며 중대한 비리 민원에 대해서는 독립된 “경찰민원소(Police Complaints Authority - 각계 저명인사 및 전문인 20명으로 구성된 독립민간기구)”에서 조사를 감독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보면, 모든 민원은 각 경찰관서 경위 또는 경감급 담당자가 접수, 일단 모두 기록한 후 “경찰민원 조사과”에서 조사토록 하며, 종류별 민원접수 현황과 조사처리결과 통계를 “경찰민원소”에 보고하고 각 지방경찰청 “연례보고서”에도 포함시켜야 하고, “경찰민원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관을 교체 지정하거나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형사소추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국립 기소청장(우리의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조사 과정과 처리결과를 신속히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민원인이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경찰민원소”에 제소할 수 있고, “경찰민원소”는 관계서류를 검토후 “재조사” 또는 “처리결과에 하자 없음”결정을 내리거나 해당 경찰청장이 아닌 타지역 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건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III. 끝맺으며

경찰 부정부패는 그 특성상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받으며 그래서 그 대책도 다각도의 종합적인 접근이지 않으면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영국경찰은 높은 보수수준과 민주적 통제장치, 폭넓은 주민참여 보장, 그리고 채용·교육, 합리적 근무 및 감독체계 등을 통해 경찰관 개인의 비리저항력을 높이고 조직적 부패고리가 형성되지 않는 기반을 조성한 가운데 주민의 신고에 의존하는 민원조사제도로 소수의 이기적이고 욕심많은 비리경찰관을 색출, 처벌한다는 종합적인 부정부패 방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영국 경찰의 부정부패 방지제도의 큰 특징이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개의 다른 나라 경찰과 달리 적극적(proactive)으로 비리혐의자를 찾아내는 감찰 등 색출형 비리적발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경찰민원감독기구인 “경찰민원소(Police Complaints Authority)”를 설치해 놓고 있으면서도 호주나 홍콩 등 다른 나라의 유사한 민간기구와 달리 실질적인 조사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형식적인 검토와 감독 및 권고만을 하도록 해 놓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학술적 이론들에 의하면, 색

출형 비리적발제도는 ‘사기저하’,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악화’, ‘범죄퇴치능력 약화’, ‘동료간 불신풍조 확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들은 미국 등에서처럼 지나치게 색출형 조치들에 의존했을 때 발생하기에 영국 경찰처럼 건강한 조직구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예방적 부정부패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그러한 예방적 조치들로 방지할 수 없는 마약·조직범죄 등으로부터의 거액 수뢰 등 비리행위를 차단하고 적발하기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색출형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경찰 외부의 경찰 비리 감시 및 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학술적 이론들은 장단점을 내어 놓고 있지만, 앞에서 예시한 대규모 비리 스캔들이 최근의 영국 경찰에서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단 한건의 예외없이 이러한 대형 경찰비리가 경찰내의 부정부패 방지제도를 통해 적발된 것이 아니라 언론 등 외부기관에 의해 밝혀진 것임을 고려할 때 그 독립성과 중립성 및 주민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는

“경찰민원소”에 제한된 조사기능을 부여함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경찰 부정부패에 관한 학술이론들과 영국의 부정부패 방지제도를 고찰하면서 우리 경찰의 부정부패 방지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꼽아 본다면, 먼저 우리 경찰 조직은 보다 건강하고 민주적인 조직구조를 갖추고 보다 광범위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경찰내부와 업무처리절차를 공개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무 방식과 감독체제를 갖추고 현실적인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며 보다 내실있고 현실적응성 있는 교육훈련을 통해 비리저항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추어 자부심과 명예심을 향상시키는 등의 예방적 부정부패 방지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 어느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높은 내부감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찰 비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가실 줄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한 감찰활동”에 의한 근본적인 비리척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강릉대 법학과 교수〉 오 경 식

I. 머릿 말

최근 범죄수법의 다양화와 첨단화때문에 범인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범인들의 기동성으로 인하여 범인검거를 위하여 전국적인 추적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범죄의 내용에 있어서도 고전적 의미의 종래범죄와 달리 컴퓨터범죄, 통신망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 IMF사태로 인한 신종경제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의 수단과 방법.동기가 현사회정세를 반영하여 흉포화와 잔인화 그리고 광역화, 스피드화, 국제화가 되어 있다.

도주피의자를 효율적으로 검거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과 관할 경찰서를 넘어서는 수사의 협력·공조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수배제도는 종래부터 전국을 무대로 하여 활동하는 범죄자를 조기에 체포하기 위하여 수사기법의 일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범인의 검거를 의뢰하

는 수배제도가 타 경찰관서의 수사인원을 동원하기 때문에 인적공조수사의 일원으로 불여지가 있으나 사건주무관서에서 수사를 어느 정도 진전시켜 수사자료와 정보가 상당히 모여진 이후에 행하므로 용의자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관할에 범인체포를 요구하는 긴급배치나 검문소에서 행하는 검문검색과는 구별된다.

경찰에서의 수배제도는 사법경찰관집무규칙(법무부령),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지명수배취급규칙(경찰청예규)을 법적 근거로 하며, 검찰에서의 수배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기소중지자의 수배와 검거시 신병확보방법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다.

수배제도는 기소중지자, 미체포자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수배함으로써 검거를 쉽게 하기 위한 수사방법을 말한다. 지명수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명수배통보입력요구

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¹⁾ 지명수배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²⁾ 지명수배 해제는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특히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³⁾

II. 수배제도의 개념과 절차

1. 수배의 개념

수배란 다른 경찰관서에 수사상의 공조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범인의 검거나 발견, 장물 소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범죄수사규칙에서의 수배에는 사건수배, 지명수배, 지명통보, 장물수배이며, 지명수배취급규칙에서의 수배에는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말한다. 그리고 검찰에서의 수배와 경찰에서의 수배가 있다.

수배는 이를 접수한 관서에서는 그 내용에 의해 특정의 행위를 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다시 회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에 통보의 경우 이에 대한 회보의 의무가 없다.

사건수배는 사건의 용의자와 수사자료 기타 참고사항에 관하여 통보를 요구하는 수배

이다. 이러한 사건수배는 공조수사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를 거의 원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범인미검거시 예상되는 문책을 사전에 회피할 목적으로 사건과 사소한 관련이 있는 모든 관서에 사건수배를 발한다면 결국 공조수사체제 자체를 불신하는 풍조가 생기며, 중요사건의 경우 직접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생각과 공을 타관서에 넘기지 않겠다는 공명심으로 수배를 억제하거나 직접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출장 수사하여 인원 및 경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수배를 하여도 효용성면에서 거의 없다고 판단하므로 실무에서 이를 원용하지 않는 폐습이 생긴다.

사건수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배할 사건의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범인 검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수배는 가급적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⁴⁾

2. 검찰에서의 수배제도

검찰에서의 수배는 검사가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제2항.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제3항.

3) 수사절차론, 1998, 사법연수원, 189면.

4) 황정익, 현행 광역수사의 문제점과 대책, 치안연수소, 7면참조.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 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에게 송부할 경우에 행한다.⁵⁾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송치사건 처리결과통지서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⁶⁾ 이 경우 대검찰청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경찰청장 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처분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에는 이러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으며, 또한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공소사효완성 기타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기불요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⁷⁾ 그리고 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지명수배자에 대한 지명수배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

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⁸⁾ 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에 의하여 매 분기 1회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지휘일자와 지휘관서 및 지휘관서로 부터의 보고일자와 보고내용을 기소중지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⁹⁾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소중지가 특정증거의 불명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 이를 발견한 때 또는 참고인중지의 경우에 참고인등을 발견한 때에도 동일하게 보고하여야 한다.¹⁰⁾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치 아니하고 수배검찰청에 인계하고 있다.¹¹⁾

3. 경찰에서의 수배제도

경찰의 수배제도에는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

5)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2항.

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4항.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6항.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3항.

9)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4항 . 5항.

10) 사법경찰관 직무규칙 제60조 1항 . 2항.

11) 金峻圭, 앞의 논문, 133면.

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긴급체포대상자를 체포하도록 의뢰하고 인도를 요구하는 조치를 말하며,¹²⁾ 후자는 성명 등이 명백하거나 범죄사실이 확실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수배를 말한다.¹³⁾ 지명수배는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관할구역의 경찰에게 집행을 촉탁하는 행위와는 구별된다.

지명이라는 개념은 성명과 같은 인적사항이 이미 알려져 있어 특정인을 지정한다는 뜻이므로 적어도 그 대상자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입장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 용의자의 검거를 위해서는 지명수배를 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수배를 해야한다. 또한 수사상 피의자의 비밀을 유지할 특수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적 수사라 할 수 있는 지명수배를 해서는 안된다.¹⁴⁾

지명수배는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하는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니며 실질적으로 범인검거를 위해 이용해야 하는 공조수사의 한 방법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지명통보는 지명수배와 달리 통보를 발하는 관서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특정의 사실을 고지하는데 불과한 반면에 지명수배는 이를 발하는 관서와 접수하는 관서가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공조체제에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다. 즉 지명수배는 이를 접수한 관서에서는 그 내용에 의해 특정의 행위를 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다시 회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비하여 지명통보의 경우는 이에 대한 회보의 의무가 없다.

4. 지명수배의 개념 및 대상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전제조건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¹⁵⁾ 먼저 지명수배한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 유효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¹⁶⁾ 또한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이를 지명수배로 보며 이 경우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다시 지명수배서에 의한 수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¹⁷⁾ 그리고 지명수배를 한 경우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계속 수배할 필

12) 범죄수사규칙 제27조 제1항.

13) 범죄수사규칙 제30조 제1항.

14) 황적인의, 현행 광역수사의 문제점과 대책, 경찰청치안연구소, 11면 참조.

15) 급속을 요하는 경우란 전산수배가 불능한 경우이며 이 때 요구서 취급자란을 기재하고 지명수배통보대장의 회보내용란 또는 연고지수사부 수사회보란에 수배구분(전화)을 하고 수화자의 소속과 이름 등의 근거사항을 적어놓아야 한다.

16) 범죄수사규칙 제27조 2항.

17) 범죄수사규칙 제27조 3항.

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재발부받아 그 유효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¹⁸⁾

지명수배는 종별에 따라 피의자 호송을 요구하는 1종수배와 수배관서에서 피의자를 인수하여 가는 2종수배로 나누어 진다.¹⁹⁾ 지명수배통보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를 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연2회에 걸쳐 이를 종합하여 수배하는 공개수배제도도 있다.²⁰⁾

지명수배대상은 첫째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4조 제2호 나목의 경우 제외)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자포함), 둘째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셋째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범죄혐의와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하는 피의자이다.

5. 지명통보의 개념 및 대상

지명통보의 경우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검거경찰서는 통보를 발한 경찰서에 사건내용을 조회하고 지체없이 통보를 발한 경찰서에 인

계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검거경찰서에서 통보를 발한 경찰서에 사건의 인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지명통보 대상자는 첫째 법정형이 장기 3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 결과 소재불명된 자, 둘째 제4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셋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이다.

6.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의 절차

1) 절 차

이와 같이 경찰의 수배제도는 긴급사건수배 피의자 또는 지명피의자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와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여 소재불명이 된 자로서 기소중지의 견으로 송치하는 피의자의 경우로서 수배의 주무부서는 경찰청의 경우 형사국 형사과, 지방경찰청의 경우 형사과 또는 수사과 형사계(단 서울은 도법계, 부산은 형사계, 해경은

18) 범죄수사규칙 제27조 4항.

19) 현재 지명수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종수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범죄수사규칙 제28조 2항).

20) 범죄수사규칙 제29조 제1항. 지명수배취급규칙 제9조.

수사계), 경찰서의 경우는 수사과 수사계(단 형사과가 있는 경찰서는 형사과 관리계)로 되어 있으며 수사주무자가 수배주무자에게 지명 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하면 수배주무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자를 지명수배통보대에 등재하고 전산기에 입력한 후 연고지관서에 수배를 의뢰하게 되고 연고지관서에서는 지명수배통보자연고지수사부에 등재하고 수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는 절차로 수배가 진행된다.²¹⁾

지명수배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피의자인도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검거관서가 수배관서로 피의자를 인도함이 원칙이다. 다만 검거관서의 관할구역에서 수배범죄와 동등 내지 중한 죄를 범한 경우와 체포관서에서 관련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찰의 규정에 의하면 피의자의 호송 기타 수사상 필요에 따라 다른 경찰서에 의뢰하여 그 경찰서의 유치장 또는 대기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고지 수배 또는 통보를 받은 경찰관서는 범죄수사규칙 제8호서식(지명수배 및 통보자연고지 수사부)에 등재하고 수사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요령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첫째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제28조 내지 제28조의 4 및 제30조의 2 내지 제30조의 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둘째 피의자가 동 연고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거나 호적 등 공부상 등재된 사실이 없을 때 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 새로운 연고지가 파악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수배 또는 통보관서에 회보하여야 하며, 셋째 피의자의 연고지 수사결과, 즉시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배관서에 일단 회보하고 공소권이 소멸될 때까지 무단히 수사를 계속하여 검거 또는 소재를 발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명수배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²²⁾

지명수배자 소재발견시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체포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한다.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할 수 있고, 체포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 범

21) 金峻圭, 指名手配의 運營實態와 改善方案, 형사정책연구, 1994, 가을호, 132면참조.

22) 수사절차, 앞의 책, 294면-295에서 참조.

죄사실요지, 체포이유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긴급체포한 다음 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신병과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한다.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때에는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보고하고(모사전송 또는 유선보고 가능)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체포한 때 부터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사의 신병지휘를 받아야 한다.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자는 피의자가 사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농후한 경우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지명수배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을 편철토록 한다.

검사가 지명수배한 기소중지자를 검거한 사법경찰관은 즉시 수배한 검찰청으로 피의자를 호송하여 인계한다.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i)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ii) 검거관서와 동일한 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iii)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의 순으로 피의자를 인계받아 조사한다.

지명수배자 검거시 수배관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기소중지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24시간 이내에 체포통지를

하여야 하나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도 이외의 지역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검거관서에서 체포통지를 하여야 한다.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는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3) 지명통보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지명통보자 소재발견시 피의자에게 지명통보사실, 범죄사실의 요지, 지명통보관서 등을 고지하고 발견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소재발견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지명통보관서에 송부하고 지명통보가 수건인 경우에는 각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자는 즉시 지명통보자에게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지명통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이송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지명통보를 해제한다.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

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때에는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한다.

7. 공개수배

지방경찰청은 지명수배통보를 한 후 6개월이 경과되어도 검거하지 못한 중요폭력범이나 강도, 절도범, 강력범 등을 연2회에 걸쳐 종합수배요청을 경찰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가장 최근에 입수한 사진으로 현상부 종합수배서를 작성하여 전국에 공개수배를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도 필요에 따라서는 자체적인 종합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수배서는 수사경찰 이외의 모든 내·외근 경찰에 배부하여 소지하도록 하며 숙박시설이나 터미널 등 공개장소에 비치하고 있다.

8. 수배해제의 사유 및 절차

수배·통보해제의 사유는 첫째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둘째 지명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기타 구속·체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명통보로 하며, 셋째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넷째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의 사망 또는 공소권이 소멸

된 경우, 다섯째 사건이 해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배·통보 당시 작성한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의 해제란을 기재하여 수배주무자에게 수배 또는 통보해제를 의뢰하여야 하며 지명수배·통보해제 사유가 검거일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검거한 검거자의 계급·성명 및 검거일자, 검거관서를 입력하여야 하며, 수배주무자는 지명수배·통보대장을 정리하고 해당 전산자료를 해제한 다음 연고지 관서에 지명수배·통보해제를 하여야 하며, 연고지 관서 수배주무자는 지명수배·통보의 해제요청에 의거 지명수배·통보자 연고지 수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²³⁾

수배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연락이 이루어져 피의자에 대한 반복적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수배해제가 지연되면 신원조회나 출국시 곤란을 겪는 경우는 물론이고 군과 같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공조제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검찰이 지명수배한 자를 경찰이 불심검문 등을 통해 검거하여 수배한 검찰관서에 신병인도를 한 후에도 검찰에서 수배해제를 하지 않아 재검거되는 경우도 있다.²⁴⁾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실효된 상태에서 재발부를 받지 않고 이를 요건으로 지명수

23) 지명수배취급규칙 제10조.

24) 황정익, 앞의 연구보고서, 14면.

배가 해제된 경우에도 지명수배취급규칙 제7조 1항 3호(피의자의 연고지 수사결과 즉시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배관서에 일단 회보하고 공소권이 소멸될 때까지 무단히 수사를 계속하여 검거하거나 소재를 발견하도록 한다)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여 검거하거나 소재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다.

9. 추가수배

수배관서의 경우 수배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활동에 의하여 추가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연고지 수사를 하는 관서에 연락을 취하여 수배자검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배관서와 연고지 관서사이에는 지속적인 업무연락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배 또는 통보 경찰관서에서 연고지 수사결과를 회신받거나, 기타 탐문수사에 의하여 지명수배.통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생긴 때에는 기작성된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에 수록하고 추가로 전산수배.통보를 하여야 한다.²⁵⁾ 이는 수사주무자와 연고지 수사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긴밀한 업무협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10. 수배제도의 문제점

소재수사의 불철저로 인하여 수배와 관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사건이 복잡하고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의 불출석 또는 해외출장등으로 소재불명이 된 경우 이를 이유로 기소중지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소재수사업무는 주로 일선 파출소에서 담당하나 파출소의 업무과중으로 소재수사가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경우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수배는 관련 당사자에게 사회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검거와 구속을 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수사기관의 출두요구서 등 형식적 소재수사로 인하여 소재불명 피의자에 대하여 제한없이 수배를 행하며, 지명수배의 경우 그 요건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중, 죄질, 수사정도 등에 따른 구별도 없이 무차별하게 행하는 문제점이 있다.

경찰의 수배자 검거활동에서 수배관서에서의 검거활동은 매우 저조하며 기소중지자 검거가 경찰의 검문검색 등 일반적 방법활동을 통하여 우연히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검찰자체의 수배자 검거활동도 부진한 상태이다. 거액부도사범, 특별관리대상사기사범(상습, 거액, 다수피해자, 조직사기등),

25) 지명수배취급규칙 제8조.

중요강력사범(살인, 강도, 약취유인 등)등 중요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하고 피의자 소재확인 및 검거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나 그러한 특별관리가 실질적으로 행하여지지 못하고 그에 따른 검거활동 및 실적이 미미하다. 따라서 소재불명 피의자 및 지명수배자에 대한 검거활동의 미진으로 인하여 법집행의 권위가 실추되고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²⁶⁾

III. 외국의 수배제도

1. 일 본

1) 일본의 지명수배제도의 연혁

일본의 지명수배제도는 江戸時代의 人相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昭和 23년 3월 7일 舊경찰법이 시행되어 국가경찰과 自治 警察이라는 경찰행정의 수행으로 지명수배제도도 점차 자리를 잡게된 이후 昭和29년 7월 1일 신경찰법이 시행되어 동법 제4절에 都道府縣警察 상호간의 관계가 규정되어 그 운용도 전국규모조직으로 되었다. 동경찰법에 의하여 昭和32년 7월 11일 국가공안위원회규

칙, 범죄수사규범, 범죄수사공조규칙이 제정되어 그 중에 지명수배의 의의, 종별, 共助, 신병인도원칙등이 제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江戸時代に 시작된 人相書가 사진수배로 이어지고 몽타주사진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몽타주가 초상화로 대신하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수배의 방법도 변화되어 온 것을 알 수가 있다.

2) 일본경찰에서의 수배업무

都道府縣警察은 형사부를 두고 있는데 동경경시청을 예로 들면 형사부아래 수사공조과를 두어 다른 都道府縣警察이나 외국경찰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수사협력과 지명수배, 추적수사를 담당한다.

범죄의 광역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긴급배치요강 및 광역중요사건수사요강이 작성되어 광역수사체제가 정비되고 광역수사에 관한 교육 및 훈련도 강화되었으며 각 府縣警察사이의 광역수사운영실태의 차이점 해소 및 최신과학기술장비의 도입(1985년부터 자동차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실용화), 중요사건관련 검색시스템의 실용화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과학수사기법의 도입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²⁷⁾

26) 金峻圭, 앞의 논문, 137면.

27) 컴퓨터에 의하여 지문의 특징을 자동적으로 판독, 기억, 대조하는 지문자동판독시스템과 범죄수법대조시스템의 결합으로 범인색출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일본경찰은 경찰청에 통신국을 두고 있으며 管區警察局에 통신부를 두어 경찰통신에 관한 중양집권적 관리를 계속하여 왔으며 통신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통신경찰은 경찰조직의 중추신경으로서 경찰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조회시스템, 통신지령시스템의 개발, 고속도로무선통신망정비등으로 경찰활동의 광역화.신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가. 수배의 종류

일본의 수배제도는 우리 나라와 동일하게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2종류이며, 지명수배는 체포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체포의뢰 및 신병인도요구이며 1종수배와 2종수배가 있다. 1종수배는 체포경찰이 수배경찰에 신병을 호송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2종수배는 수배경찰이 체포경찰로부터 신병을 인수하여 가는 제도로서 지명수배는 1종수배가 원칙이며 관할구역 내에서의 지명수배는 2종수배가 원칙이다. 지명통보는 피의자를 발견한 경찰에 신병처리를 일임하는 조치로서 실무상으로는 체포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지명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나. 신병인도절차

지명수배 피의자의 신병인도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범 제41조, 범죄수사공조규칙 제9

조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 범죄수사공조규칙 제9조 제1항

“지명수배가 된 피의자를 체포한 都道府縣警察(이하 체포경찰이라 한다)은 다음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의 신병을 지명수배를 한 都道府縣警察(이하 수배경찰이라 한다)에 인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 a. 범죄수사공조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체포경찰이 수배를 받은 범죄보다 법정 형이 중한 다른 범죄를 그 관할구역안에서 범한 피의자를 체포한 때)이다.

본 호의 내용은 수배를 받은 범죄와 별개의 범죄로 수배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그 체포의 이유가 된 범죄가 ① 체포경찰의 관할구역 내의 범죄일 것 ② 죄종 및 죄질이 수배사실에 비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범죄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체포경찰은 신병을 수배경찰에 인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별개의 범죄란 체포의 이유가 된 범죄를 말한다. 체포의 이유가 된 범죄라면 체포경찰이 스스로 지명수배를 하였던 범죄도 여기에 포함된다.

관할구역내란 都道府縣警察의 관할구역을 말하며 또한 피의자를 체포한다라는 것은 현

행범체포, 긴급체포, 통상체포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

- b. 범죄수사공조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체포경찰이 수배를 받은 범죄와 법정형이 동등이상의 다른 범죄로 수배를 하였던 피의자를 체포한 때)이다.

본 호의 내용은 自他縣 競合手配 피의자에 대하여 어떤 수배경찰이 체포한 경우 먼저 법정형을 비교하여 他府縣 경찰의 수배사실보다 가벼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체포경찰에서 신병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법정형의 경중은 일본형법 제10조(형의 경중)에 따르며 또한 형법시행법 제3조를 참작하여 판단하지만 둘이상의 主刑이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중 가장 중한 主刑으로 비교하며 또한 피의사실이 複數의 경우는 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에 의한다.

- c. 범죄수사 공조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 (체포경찰이 수배피의자에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 또는 공동정범인 피의자의 일부를 체포한 때)이다.

본호의 내용은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포경찰이 수배경찰에게 신병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라도 이미 관련 공범의 일부를 체포하고 있을 때에는 신병을 인도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내용이다.

수배피의자에 관련된 범죄란 일본 형사소

송법 제9조의 관련사건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미 그 정범 또는 공동정범인 피의자의 일부를 체포하고 있을 때란 체포경찰에 이미 관련공범의 일부를 체포하고 유치취조중의 경우에 한하지 않고 이미 송치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공범을 동시에 체포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B. 범죄수사공조규칙 제9조 제2항

“동일 피의자에 대하여 둘이상의 수배경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수배경찰에게 그 신병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일피의자에 대하여 둘이상의 수배경찰이 있는 경우란 둘이상의 都道府縣 警察에서 여러 가지 다른 범죄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항의 내용은 동일 피의자에 대한 他府縣에 둘이상의 수배경찰이 있는 경우에 체포경찰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수배경찰에게로 신병을 인도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수배경찰에게 신병을 인도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정된 먼저한 수배에 의해 체포된 지명수배 피의자가 他府縣에서도 수배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한 수배를 한 경찰로 신병을 인도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a. 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수배를 받은 범 죄에 대하여 그 죄종 및 죄질에 경중이 있을 경우 중한 범죄를 수배한 경찰)이다.
- b. 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죄종 및 죄질이 동등한 경우에 정범 또는 공동정범인 피의자의 일부를 먼저 체포한 경찰이 있을 때에는 그 경찰)이다.
- c. 규칙 제9조 제2항 제3호(前2호에 규정한 경우외에는 먼저 수배를 한 경찰)이다.

C. 범죄수사공조규칙 제9조 제3항

“ 제1항 제1호와 함께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서 죄종 및 죄질의 경중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법정형이 동등한 때에는 피해의 정도 또는 피해액의 多寡에 의하도록 하고 지명수배서에 기재된 피의사실 또는 체포이유가 된 피의사실 중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a. 피해의 정도 또는 피해액의 多寡에 의한 다라는 것은 경합하는 사건이 재산범의 경우에는 피해액의 多寡에 의하고 재산범 이외의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에 따르고 여러 가지 죄질의 중량을 비교한다라는 취지이다. 또한 경합하는 사건이 재산범과 그 이외의 범죄인 때 예를 들면 절도와 상해는 비교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동등하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피해액에는 유가증권도 포함되며 예금통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b. 지명수배서에 기재된 피의사실 또는 체포의 이유로 된 피의사실 중 하나가 기준으로 정한다라는 것은 한사람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배사실 또는 체포사실이 둘이상인 경우에 비교할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첫째 동일피의자에 대해 동일 府縣에 둘이상의 수배경찰이 있는 경우 둘째 하나의 지명수배서에 둘이상의 피의사실이 기재된 경우 셋째 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별개의 범죄로 체포된 경우의 체포이유가 된 피의사실이 둘이상인 경우등이다. 이 경우 수배사실 중 하나 또는 체포사실중 하나의 피의사실만이 비교의 대상이 된다.

D. 범죄수사공조규칙 제9조 제4항

“ 전3항에 규정된 신병인도의 원칙 보다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체포경찰과 수배경찰, 또는 수배경찰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명수배를 한 사실 그 자체는 작지만 수배피의자에게 결정할 수가 없는 餘罪등 특수한 사정도 있는 경우가 있으나 서로 실적을 올리는데 집착하지 않고 성실히 협의할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E. 범죄수사공조규칙 제9조 제5항

“전항의 협의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청 또는 관할 구역의 경찰국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F. 일본수배제도에 대한 경찰업무원칙

a. 신의성실의 원칙

수배제도의 근간은 경찰법 제59조에 의한 각 都府縣警察의 상호협력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관계경찰의 조직적 수사활동에 따라 수사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행함과 동시에 관계경찰이 신의를 중시하여 성실히 수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적어도 상대 경찰에게 불신감을 가지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b. 계속수사의 철저

지명수배를 완료한 것으로 수사를 종료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계속수사를 행하여 입수한 정보는 지체없이 추가수배를 행함과 동시에 수배를 받은 경찰도 추적수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c. 체포장 등의 확인

항상 체포장의 유효기간을 확인함과 동시에 시효완성과 수배가 불요하게 될 때 또는 체포장의 갱신, 범죄사실의 변경등이 생길 때에는 각 都道府縣 수배공조담당계에 그 취지를 통지할 필요가 있다.

d. 신병인도의 방법

신병의 인도는 경찰내부의 문제이므로 체포경찰이 수배경찰에게 신병을 인도하는 경우

는 체포경찰이 수배를 받은 범죄에 따라 체포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체포의 이유가 된 범죄를 48시간이내에 처리한 후 피의자를 일단 석방하여 수배를 받은 범죄로 바꾸어 체포하게 되므로 변호인의 선임등에 유의하고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일본의 지명수배 절차

지명수배의 절차는 먼저 범죄의 종류와 경중과 긴급여부에 따라서 수배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체포장발부를 전제로 지명수배서를 작성하나 긴급할 경우에는 체포장발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수배한 후 즉시 체포장을 발부받아 그 유효기간을 통보할 수 있으며, 체포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나 실무상 지명수배의 경우에는 1개월 내지 3개월의 유효기간의 체포장을 발부받으며, 주요강력사건이나 특이사건의 피의자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 등에 의하여 지명수배가 가능하다.

수배의 효력은 체포장의 유효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유효기간의 경과 후 계속수배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체포장을 재발급받고 그 유효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명수배된 자의 체포는 체포장을 제시하여야 하나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장의 발부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고 체포 후 신속히 체포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체포경찰은 체포 후 피의자의 신병을 수배경찰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인도방법은 1종수배와 2종수배에 따라 다르나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인도하지 않고 체포경찰이 수사하는 경우는 첫째 수배범죄와 죄질이 같거나 중한 다른 범죄를 관할구역내에서 범한 피의자, 둘째 수배범죄와 법정형이 같거나 중한 다른 범죄로 체포경찰이 수배하였던 피의자, 셋째 수배피의자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이미 정범 또는 공범의 일부를 체포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4) 일본의 지명통보 절차

지명통보된 사건은 발견경찰이 통보의뢰 경찰에 체포장 유무, 피의사실내용, 관계서류 기타 수사자료유무를 사전조회하여 처리한다. 통보의뢰 경찰은 지명통보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증거서류, 관계서류 등을 정리하여 발견경찰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사건인계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송부하고 있다.

2. 미 국

1) 미국의 경찰조직

미국의 경찰조직은 극히 복잡다양하여 통일적인 개념으로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결과 경찰관 수, 경찰조직의 수 및 범죄발

생건수등에 관한 완전한 전국통계가 없다. 연방경찰조직, 주경찰조직, 지방경찰조직 및 민간경찰조직(private police service)등 다양한 경찰조직이 있으며 같은 수준의 경찰조직의 경우에도 규모와 기능과 관할권도 그 역할과 임무 및 규제대상 등에 있어서 다양하고 전형적인 경찰조직을 선정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미국경찰제도의 특징을 미국의 학자들은 Nonsystem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현재 미국에는 대략 50만명이상의 경찰관이 약 40,000개의 분리된 별개의 법집행기관인 경찰기구에 재직하고 있으며, 4만개의 기구 중에는 연방정부 산하에 약50개, 주정부 산하에 약200개, 그리고 지방정부에 약 39,750개의 경찰조직이 설치되어 있다.²⁸⁾

2) 미국의 수배제도

연방수사국에서는 산하에 전국범죄정보센터(National Criminal Identification Center, NCIC)를 두어 차량, 총기는 물론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장물기록과 지명수배에 관한 전국의 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다른 수사기관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NCIC에 입력된 지명수배자는 전국적인 수배가 이루어 지고 각 수사기관에서는 컴퓨터 터미널을 통하여 수배자를 검색할 수 있다. 경찰순찰차에서도 컴퓨터를 통한 수배자확인

28) 법무자료 제98집,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법무부,1988, 401-402면 참조.

가능하며 연방수사국 뿐만 아니라 주와 지방의 수사기관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NCIC에 수배할 경우 대부분 체포영장(Arrest Warrant)을 발부받으며 그 체포영장에 의하여 언제든지 수배자의 검거가 가능하다. 미국의 체포영장은 그 유효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NCIC에 입력된 수배자가 발견된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컴퓨터 자료만으로도 영장의 제시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범인인도는 각 주 사이의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수배자가 인도된다.

따라서 수배자는 전국을 관할하는 NCIC의 수배자 파일에 올려진 이상 구속영장은 유효기간을 따로 제한받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워싱턴 D.C. 경찰국의 경우 형사부 아래 수배자반(Fugitive Squad)을 두고 있다.

미국에는 다양한 모델의 공공경찰외에 경찰의 기능을 담당하는 또 다른 유형의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데 Private Security 또는 Private Police라 불리는 민간의 경찰조직(Nongovernmental Police Agencies)이다. 이들은 공공경찰과 권한이나 실제활동등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또한 정규경찰과 경비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정규경찰과 경비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조직이 많이 있어 양자사이의 정확한 구분이 곤란하다. 또한 이들의 활동영역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재산의 보호 둘째 개인의 안전

의 확보 셋째 정보의 모집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정보의 수집은 미국의 경비산업 중 가장 중요하고 전통이 있는 분야로서 채용을 위한 신원조사, 행방불명자의 수색, 민사사건의 법정증거의 수집과 거래상대의 신용조사와 직원의 비행조사 등 많은 부분이 있으며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무기의 사용, 교통의 규제 기타 분야에 일반시민에게 주어지지 않는 권한을 주고 있는 州나 자치단체도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원에 의한 전화도청, Privacy의 침해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문제되고 있다.

3) FBI의 “10인의 주요수배자 프로그램 (Ten Most Wanted Fugitives program)”

FBI에서 시행하고 있는 “10인의 주요수배자 프로그램”은 특별한 위험성을 가진 도주 피의자를 사회 일반인들의 도움하에 체포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제도로서, 1950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1997년 6월 현재까지 많은 주요수배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한 시민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한다. 10명의 지명수배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범죄혐의에 비추어 사회일반의 안전에 특별한 위협이 되는 자로서 보통 중대한 범죄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둘째, 전국적인 공개수배가 도주 피의자의 검거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경우이다. 다

시 말해서 이미 다른 방법과 매체를 통해서 공개수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널리 일반에 알려진 자라면 새삼스럽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이 명단에 포함된 주요 수배자들은 이들이 검거되었거나 이들에 대한 지명수배가 해제된 경우 및 더 이상 특별히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아서 10인의 주요 수배자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명단에서 삭제되게 된다. 그리고 한 수배자가 명단에서 탈락하게 되면 다른 주요 범죄피의자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한 주요수배자 및 이들의 범죄의 특징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1950년대에는 주로 은행강도, 주거침입강도, 절도 및 자동차 절도 등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과격한 시대적 성격을 반영하여 국가재산파괴행위, 노동쟁의에 수반한 기계파괴행위 및 유괴행위 등이 주된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시 1970년대에는 FBI의 조직범죄 및 테러범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10인의 주요 지명수배자의 대다수는 테러집단과 연관된 조직범죄자가 차

지하게 되었다. 현재에도 이러한 조직범죄는 연쇄살인이나 약물관련범죄와 함께 여전히 이들 수배대상 범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FBI는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요금면제 전화망을 설치하여 범죄 및 수배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TV 프로그램에서 중요 범죄피의자에 대한 공개수배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그 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기적인 성격의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방영하여 일반인들의 범죄자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사건 내용의 극적 구성 등도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3. 독일

독일에는 지명수배와 관련하여 독일형사소송법 제131조에 수배장(Steckbrief) 제도를 두고 있다.²⁹⁾ 수배장은 도주 중이거나 은신하고 있는 개개의 피의자를 추적하여 체포하는 요구서이며, 이는 주거수사를 위한 제시와 비교

29) 독일형법 제131조 제1항은 피의자가 도주 중이거나 은신하고 있는 경우 검사 또는 판사는 구속영장(Haftbefehl) 또는 시설수용영장(Unterbringungsbefehl)에 의하여 수배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항은 일단 체포된 자가 도주하거나 감시를 벗어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나 시설수용영장 없이 수배장에 의한 추적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경찰서에서도 수배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3항은 수배장에는 피추적자의 특정하여 가능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야 하고 혐의사실행위와 범행일시와 장소도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4항은 수배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추적, 검거한 때에는 즉시 관할판사에게 피의자를 인치하여야 하고 관할판사에 의하여 계속구금여부가 결정된다

하여 체포를 위한 제시이다.³⁰⁾ 체포요청은 형사소추기관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되며 일반인 즉 제3자에게 추적자를 체포할 것을 대리할 수는 없다.³¹⁾

수배장은 무죄추정원칙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피의자의 인격권(Persönlichkeitsrecht)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비례성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에 따라 만약 범행이 경미한 정도이거나 보다 적은 비범죄화적 추적수단의 결과가 기대될 때에는, 수배장에 의한 추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³²⁾

수배장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 구속영장에서의 수배장과 둘째 도주에서의 수배장이다. 구속영장(§114) 혹은 강제수용영장(Unterbringungsbehl)(§126a)이 발부되었다면, 이 경우 만약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은신한 경우 독일형소법 제131조 1항에 의해 수배장이 발부될 수 있다. 수배장발부권한은 제1항에 의해 재판관 혹은 검사이다. 재판관에 의해 발부된 수배장의 유효를 위하여 검사에게 수배장의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³³⁾

구속영장이나 강제수용영장이 발부되지 않

은 상황에서 만약 일시적으로 체포된 자(vorläufig Festgenommener)가 도주하거나 감시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만 수배장이 발부되는 것이 허용된다.³⁴⁾ 단지 구인장(Vorführungsbefehl)에 의해서 붙잡힌 경우는 여기서의 체포된 자라 할 수 없다.³⁵⁾ 만약 구속영장이나 강제수용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독일 형소법 제131조 1항을 적용하면 된다.³⁶⁾

매스미디어에 의한 공개적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독일은 각 州의 경찰서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한 주요 수배자 및 피해자, 변사체와 사건기록 등을 기재하여 공개수배하고 있다.

IV. 수배피의자 검거방안

지명수배 피의자를 검거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묘책은 없으나 당해범죄의 형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성격, 심리 등 제사정을 정확히 수집·판단하여 강력한 추적의욕과 창의력 있는 효과적 추적수사법의 개발을 강구하여야

30) Paeffgen, Systematischer Kommentar Zur StPO., 131, Rn.2.

31) Paeffgen, 앞의 책, 131, Rn.2.

32) L we/Rosenberg, Wendisch, Die Strafprozedur und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 131, Rn.7; Eb.Schmidt, Nachträge und Ergänzungen zu Teil II des Lehrkommentars, 1967, 131, Rn.15; Paeffgen, 앞의 책, 131, Rn.3.

33) OLG Karlsruhe Der Deutsche Rechtspfleger, 1968, 288.

34) L we/Rosenberg, Wendisch, 앞의 책, 131, Rn.14; Eb.Schmidt, 앞의 책, 131, Rn.16.

35) Boujong, Karlsruher Kommentar zur Strafprozedur, 2.Aufl., 1987, 131, Rn.7.

36) Eb.Schmidt, 앞의 책, Rn.14; L we/Rosenberg/Wendisch, 앞의 책, Rn. 19; Paeffgen, 앞의 책, 131, Rn.6.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정확하고 상세한 수배가 이루어 져야 한다. 지명수배 피의자를 발견하여 체포하는 것은 수배서의 일부 수사요원을 제외하고는 피의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찰관에 의해 행하여 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배는 형식적으로 행하여 지도록 하지 않고 정확하고 상세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또는 직무질문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즉 신체 특징(신장, 체중, 점, 상처흔적, 의치등)과 언어의 특징, 특이한 성격, 취미, 기호, 소지품등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법자료, 지문자료등의 기재내용, 前사건의 조사담당자, 前사건에 포함된 공범자들, 교도소 동료자, 친척, 친구등에 대한 소문, 탐문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정보의 확보가 중요하다.

둘째 관계기관에 대한 수배 및 협력요청이 잘 이루어 져야 한다. 수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지명수배 피의자의 공개수사가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철도공무원과 해양관련공무원, 군인, 교도관, 세무공무원, 세관직원등 일정한 수사권을 가진 관계직원들과 범죄정보의 입수와 교환을 위한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간 도피자 중에는 취업과 거래

상의 신용을 유지하고 자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등 공적기관에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적지와 前주소의 시청등에는 가능한한 수배된 피의자라는 점을 기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연락과 협력을 구하여야 한다.

셋째 수배피의자의 친족과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관계, 은행등 금융기관의 거래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사방향을 정해야 한다.

넷째 체포된 피의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범죄자가 소지하고 있을 확률은 대단히 크다. 따라서 체포된 피의자로부터 수배피의자의 정보를 입수하려는 노력과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피의자의 주소와 전화번호의 메모에 수배피의자에 관한 것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근경찰관에게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관찰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범죄자가 잠복할 만한 예상장소와 예상 이동장소의 관리자 또는 직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관련자료 즉 유류품과 현장자료의 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무형의 범죄수법자료발견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수배피의자의 범행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하여 추적조사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일곱째 직무질문에 의한 효율적인 검거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직무질문제도는 지명수배피의자의 검거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사이다. 직무질문에 의한 지명수배피의자의 검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경찰관에 대하여 직무질문시 주의해야 할 점(특히 허위명, 변장등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기술)과 직무질문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여덟째 지방경찰청 산하의 형사기동대의 기동력과 집중수사력, 직무질문 등의 수사기술은 수배자 검거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아홉째 운전면허증이 있는 수배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교통경찰관은 교통사고 또는 교통위반처리에 그치지 않고 위반자에 대한 종합조회를 가동하여 수배자검거에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V. 맺 은 말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지명수배제도와 외국의 수배제도와 수배자검거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수배제도는 대체로 일본의 수배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체포영장제의 신설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유효기간 1년의 체포영장을 사

전에 발부하여 수배자 검거시 부당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게 만들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발부에 따른 경찰업무의 과중과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수배자의 검거시까지나 공소시효 만료시까지로 하여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수배자검거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수배의 공조체제와 수사기법의 창안이라 할 수 있다. 중요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 체포된 피의자의 범행후의 도주경로, 잠입로, 이동상황등과 도주의 구체적 수단방법과 도주중 가족과 친구 및 피해자등에 대한 감정심리 상황과 통신연락상황과 경찰의 추적저지방법과 직무질문을 받았는가 여부와 그 회피를 위한 조치와 체포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각 사건마다 분석하여 이것을 집약하여 각 경찰서의 조회자료와 수사수법의 개선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배자검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는 추적수사반활용이 현재 일선에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추적수사에 필요한 경비와 인원의 부족 그리고 동기부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추적수사를 위하여 탄력적 예산편성이나 예비비의 활용으로 수사비 부족으로 수사의 위축요인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수배자

검거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일반국민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범죄의 예방, 수사협력, 범인의 검거와 이와 관련된 유력한 정보제공자에게 상훈제도를 강화하여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일선경찰관에게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수배자검거를 위하여 공개수배영장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마스크이나 통신망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용의자나 피의자를 공개수배하면 그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한 공개수배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영장제도가 필요하다.

검사 또는 경찰이 발부할 수 있는 수배영장제도를 형사소송법에 신설하여 수배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하여는 통신망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공개수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배영장의 발부로 마스크에 의한 공개수배로 인해 용의자나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법관의 구속영장 또는 수배영장에 의하여 마스크에 의한 공개수배가 이루어 져야 한다.³⁷⁾

37) 독일 형사소송법 제131조(수배장제도)와 제163조(경찰관찰을 위한 수배)의 제1항(중대한 범죄가 행해졌다는 충분한 사실적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용된 기회에 경찰관찰을 위한 수배조치가 명해질 수 있다. 수배조치는 피의자에게만 행해지며 사실규명이나 범인의 소재탐지가 다른 방법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가 범인과 접촉하고 있거나 그러한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나 수배조치가 사실규명이나 범인소재탐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것이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허용된다), 제2항(제1항에 따라 수배된 피의자 또는 그의 접촉인물에게 승인된 자동차나 그들이나 혹은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 의해 사용된 자동차의 차량번호도 수배할 수 있다), 제3항(만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배조치된 인물이나 수배조치된 자동차의 운전자에 관한 개인신상정보가 보고될 수 있다), 제4항(경찰관찰을 위한 수배는 법관에 의해서만 명해질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에 의해서도 명해질 수 있다. 검사가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관에 의하여 3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검사의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명령의 기한은 1년이다. 이는 제100b조 제2항 5문이 적용된다)에서와 같은 법규정의 신설이 요청된다.

범죄피해자화 : 그 위험성과 영향 (Victimization : The risks and impact)

〈경찰대학 교관 : 경감〉 박기남

I. 서론

경찰관들은 어떻게 범죄인들을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피해자들을 다루는 능력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는 전문인으로서 경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경찰, 피해자의 상호일체감이 형성되어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결국 범죄인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월러는 '피해자들은 경찰에 알려진 범죄들 중 60%에 있어서 일차적인 정보원이다'¹⁾라고 하였고 스코간 등은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나 주변인 취급을 받아왔다'²⁾라고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핀은

'사건해결의 열쇠는 피해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판사도, 경찰관도, 검사도 아니며 바로 피해자이다'³⁾라고 주장하며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의 협조를 통한 형사사법정의의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사람들은 얼마만큼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범죄들중에서 어느 정도가 신고 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죄신고를 기피하게 하는 이유

1) Waller, I. "The police: First in Aid ?" in Victim of Crime:Problems, policies and programs.(California:Sage, 1990) p.141.
2) Skogan, W.G., Lurigo, A.J., Davis, R.C. "Criminal Victimization" in Victims of Crime:Problems, policies, and programs(California: Sage, 1990) p.9.
3) Finn, P. "Victims" in American Institute of Justice(Minnesota: West, 1990) p.39.

는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의 신고를 유도하고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한다.

II. 피해자화

1. 위험성

미 법무부 통계국에 따르면, 강력범죄의 희생자가 될 확률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표 1은 특정범죄의 희생자가 될 확률과 다른 일을 당할 확률 등을 비교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국은 “범죄율이 현상태로 유지된다면 현재 12세의 어린이 중 83%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고 추산하고 있다. 나아가 스코간 등은 “최근 몇 년동안 1/4의 미국가정이 개인적·재산적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다. 언젠가는 범죄가 대부분의 미국민들이나 그 친구, 안면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⁵⁾라고 주장하며 범죄피해자화의 보편성을 적시하고 있다.

전국범죄조사(NCS: National Crime Survey)의 피해자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결론을 유출할 수 있다.

- 연령은 피해자 됨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

(도표 1)⁴⁾

일생에 있어서 성인 범죄 비율과 기타 사건 발생 비

사 건	성인 1,000명당 비율
사고에 의한 부상	242
집에서 부상	79
절 도	72
직장에서의 부상	58
강력 범죄 피해자	31
폭 행	24
오토바이사고에 의한 부상	17
사 망	11
폭행치상	10
중상해	9
강 도	6
심장병 사망	4
강간(여성)	2
사고사	0.5
폐렴등에 의한 사망	0.3
자 살	0.2
화재에 의한 부상	0.1
살 인	0.1
화재에 의한 사망	0.03
오토바이 사고사	0.2
암에 의한 사망	2

4) 미 법무부 통계국 1988년 자료

5) Skogan, W.G. et al. op.cit. p.7.

은 요소로서 나이든 사람은 젊은 사람에 비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작다.

- 남성은 여성에 비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2배나 된다.
-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은 흑인이 백인에 비해서 훨씬 높다.
- 도시인들이 농촌지역사람보다 피해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
-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피해자가 될 확률은 낮아진다.

설리반과 빅토르는 “전국의 범죄 발생이 완화되리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를 통하여 계속 증가하였다. 매 5초마다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희생자를 고통에 빠뜨리고 지역사회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⁶⁾라고 주장하면서, 전형적인 어느 연도의 범죄통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발생한 범죄중 절반도 안 되는 정도만이 당국에 신고되고 있다.
- 살인, 폭행, 침입절도 같은 중범죄가 810만 건이나 된다.
- 724,000명의 성인만이 체포되었다.
- 193,000명만이 유죄판정을 받았다.
- 149,000명만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신고율은 범죄의 종류,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켈리는 “전국범죄조사(NCS)에 의하면 고작해야 50%의 범죄만이 경찰에 신고되고 있다. 신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어떻게 취급되며, 자신들의 말을 경찰이 잘 안 믿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⁷⁾라고 주장한다. 즉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범죄신고율이 저조함으로 인하여, 범죄인들이 범행후 체포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아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2. 위험 요소들

사람들이 직면하는 위험도는 개인적 요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지와 관련되는 요소들, 소위 家庭위험요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다음의 도표 2에 요약되고 법무부 통계국에 의해 관찰되었듯이 특정 개인들은 타인들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피해자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 젊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 피해자가

6) Sullivan, J.J., Victor, J.I.(eds) "Victims of Crime" in Criminal Justice. 90/91. p.57.

7) Kelly, D. "Victim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Victims of Crime:Problem, policies, and programs. (California: Sage, 1990) p.173.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노년층에서는 범죄에 대해 심한 공포감을 가지며 그들 나름대로 피해자가 되는 기회를 스스로 제한한다.)

- 흑인들은 백인이나 타인종에 비해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 수입이 낮은 사람들에게 폭력범죄 비율이 높다.
- 수입이 높은 사람들(연 5만\$ 이상)에게는 절도율이 높다.
- 학생과 실업자는 주부, 퇴직자, 직업인들보다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 농촌 주거지역 거주자는 도시 주거지역 거주자 보다 피해자가 될 확률이 낮다.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은 34세 이후에 현격히 떨어진다. 예상대로 피해자가 될 확률은 도심지에서 가장 높고 농촌지역에서 가장 낮다. 통일범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와 보건성에서의 통계는 1961년 이후 살인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증가 원인에는 '베이비 붐' 시기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1960년대 초반에 16세에 도달했다는 데 있다. 폭력범죄는 3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만연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나이에 도달함에 따라 살인사건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도표 2)⁸⁾

나이 12세 이상 인구 1,000명당 피해자 비율

		폭력	절도
총계(미국)	29	69	
성	남성	37	72
	여성	22	65
나이	12-15	63	99
	16-19	74	115
	20-24	58	118
	25-34	35	84
	35-49	21	64
	50-64	8	41
인종	65이상	4	20
	백인	28	69
	흑인	36	69
	기타	27	64
성별 결혼 여부	히스패닉	39	71
	비히스패닉	28	69
	남성	독신	70
여성	이혼/별거	56	99
	기혼	17	48
	상처	15	36
	독신	40	100
	이혼/별거	48	82
	기혼	11	52
가계수입	과부	4	26
	\$7,500미만	50	71
	\$7,500-\$9,999	32	52
	\$10,000-\$14,999	35	62
	\$15,000-\$24,999	29	66
	\$25,000-29,999	28	70
	\$30,000-\$49,999	23	68
교육	\$50,000 이상	20	78
	0-4년	17	23
	5-7년	45	67
	8년	30	53
	고졸	30	61
	1-3년 대학교육	29	83
	대졸	25	85

8) 미 법무부 통계국.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S. 1991 for 1989.

- 살인피해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 25세-34세의 사람들이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 흑인들은 백인에 비해 살인사건 피해자

가 될 확률이 5배나 높다.

도표 3은 성별, 연령별, 인종별에 따른 살인사건 비율을, 도표 4는 성별, 인종별에 따른 일

(도표 3)⁹⁾

살인사건 비율

나이	계	성			인종			
		남성	여성	불상	백인	흑인	기타	불상
계	20,045	15,628	4,399	18	9,724	9,744	345	232
%	100.0	78.0	21.9	.1	48.5	48.6	1.7	1.2
18세 미만	970	1,362	607	1	942	971	38	19
18세 이상	17,769	14,038	3,729	2	8,646	8,650	304	169
영아(1세미만)	264	148	116	-	159	98	5	2
1-4	317	176	140	1	169	136	10	2
5-9	118	51	67	-	61	51	2	4
10-14	270	162	108	-	138	125	7	-
15-19	2,348	1,994	352	2	918	1,376	28	26
20-24	3,472	2,923	549	-	1,485	1,911	52	24
25-29	3,405	2,736	669	-	1,519	1,818	40	28
30-34	2,773	2,140	633	-	1,307	1,386	53	27
35-39	2,051	1,615	436	-	991	994	44	22
40-44	1,400	1,108	292	-	774	575	29	22
45-49	894	695	199	-	537	322	21	14
50-54	586	469	117	-	358	206	17	5
55-59	451	332	119	-	271	159	18	3
60-64	422	322	100	-	261	152	5	4
65-69	284	195	89	-	180	98	5	1
70-74	234	129	105	-	167	61	5	1
75세이상	450	205	245	-	293	153	1	3
불상	306	228	63	15	136	123	3	44

9) FBI, Crime in the U.S. 1990.

생 동안의 살인사건 위험도를 각각 나타낸다.

(도표 4)¹⁰⁾

일생동안 살인피해자가 될 위험도

백인 남성	1 / 179
흑인 남성	1 / 30
백인 여성	1 / 495
흑인 여성	1 / 132

1) 가정 위험 요소

특정 유형의 가정은 타에 비해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위험도가 높은 부류에는 히스패닉, 흑인, 세입자, 가장이 젊은 경우, 가족수가 6명 이상인 경우, 도심지가정인 경우가 속한다.

2) 피해자가 되는 기타 요소들

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서 걱정할 때는 대부분 이방인에 의해서 공격당할까봐 걱정할 때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근거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살인이나 강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강력범죄가 이방인에 의해 자행되기 때문이다. 흑인의 남성, 젊은 사람은 이방인에 의한 강력범죄의 위험에 가장 강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흑인들은 백인에 비해 강도를 당할 위험성이 2배나 된다.

강도의 위험은 노년층에는 미약한데, 이는

대부분의 노년층이 육체적으로 집밖으로 나다니기가 힘들며 범죄의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활동적이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노년층의 사람들은 다른 일반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안면 있는 사람이나 친척들에 의해 폭행당할 위험성이 높는데, 그중 2/3는 이혼녀나 별거중인 여성에 대해 행해진다.

살인사건에 있어 반 이상의 경우는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 안면 있는 사람이 39%, 친척들은 17%를 차지한다.

나. 무기의 사용

살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강력범죄에는 무기가 사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설명은 피해자들이 총 또는 도검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범인들의 요구조건에 따르기 때문이다.

다. 자기 방어책

피해자들은 도표 5에 나타나듯이 무기를 휘두르며 저항하기 어렵다. 그러나 강간 피해자들은 물리력을 사용하기 쉬우며, 구두표현적 반응을 시도하며, 주위 이목을 끌려는 행동을 하여 자신의 보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른 피해자들과는 다르다. 대표적으로

10) 미 법무부 통계국. The risks of violent crime. 1985.

강도피해자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 치명적인 힘(deadly force)의 사용

각 주에서는 자신의 거주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치명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을 때와 통상의 물리력(physical force)을 사용할 수 있을 때를 구분하고 있다. 치명적인 힘이란 죽음 또는 중한 신체 손상을 야기하는 힘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통상의 물리력은 치명적이 아닌 것으로서 타인에게 향해지는 힘으로서 감금을 포함한다.

몇몇 주에서는 강제침입이 거주자로 하여금 정당하게 치명적인 힘을 사용할 정도로 거주자가 급박한 위협에 처해 있다고 본다. 다

른 주에서는 치명적인 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침입자가 거주자를 직접 공격하거나 위협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계침범자는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경계 침범자에 대한 치명적인 힘은 통상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만약 공격자가 제3자를 공격한다면, 시민은 그 제3자가 생명을 잃을 정도의 급박한 위협 상황하에서 그리고 그 제3자가 공격을 도발하지 않았다는 상황하에서 치명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도표 5)¹¹⁾

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가? : 피해자가 취한 방어수단 유형과 범죄 유형에 의해 분류

자기방어수단	자기 방어 수단의 비율			
	폭력범죄	기수의 폭력범죄	시도된 폭력범죄	강 간
계	100.0	100.0	100.0	100.0
무기로 가해자 공격	1.4	1.7	1.1	0.8
무기 없이 가해자 공격	10.3	13.0	8.5	13.4
무기로 가해자 위협	1.4	1.2	1.6	0.9
무기없이 가해자 위협	2.4	2.2	2.5	3.0
가해자에 저항 또는 체포	21.1	30.3	14.9	16.2
가해자를 겁주거나 경고	8.5	8.6	8.3	10.6
가해자를 설득하거나 유화	14.7	11.3	17.0	14.2
도망하거나 숨기	16.3	11.6	19.5	11.2
구원요청 또는 경보	10.7	9.4	11.6	9.7
고통 또는 공포에 의한 비명	2.9	5.4	1.2	10.4
다른 수단 강구	10.3	5.3	13.7	9.5
자기 방어 수단의 총수	6,544,660	2,640,670	3,903,980	239,930

11) 미 법무부,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S. 1989.

계	강도		계	폭행	
	상해 있음	상해 없음		복합	단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9	0.7	1.0	1.5	2.6	0.8
10.9	12.1	9.8	10.1	8.4	11.1
2.1	1.1	3.1	1.3	2.3	0.8
3.1	2.6	3.5	2.2	1.8	2.4
28.5	35.3	22.2	19.8	18.6	20.4
7.9	10.1	5.9	8.5	8.2	8.7
12.0	6.4	17.3	15.3	13.3	16.5
11.8	7.9	15.3	17.5	20.8	15.5
9.8	10.4	9.2	11.0	11.6	10.6
4.0	7.4	0.7	2.3	3.1	1.9
9.1	6.0	11.9	10.6	9.4	11.4
1,097,320	528,740	568,580	5,207,400	1,960,070	3,247,320

III.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영향

1. 피해자

전국범죄조사(NCS)와 통일범죄보고서(UCR)의 자료들은 개인적·가정적 범죄의 손실은 1985년에 13억 달러를 넘으며, 강력범죄에 의해 200만명 이상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직장에서의 시간손실, 치료비용, 향후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들은 육체적 고통, 경

제적 손실, 그리고 감정적 좌절감 등을 복합적으로 경험한다. 리스와 킬패트릭은 “피해자들은 본질적으로 직후, 단기, 그리고 장기의 문제점들을 경험한다. 직후의 반응은 쇼크, 부정, 초조, 분노, 좌절, 무기력함 등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몇 시간에서 며칠동안 지속한다. 피해 후 수 주에서 수 개월 사이에는 피해자들은 감정의 급변, 즉 두려움, 분노, 슬픔, 의기양양함 등을 경험한다. 피해자들은 죄책감, 자신감 상실, 나약함, 초조, 좌절감을 경험하고 악몽 또는 환각의 재현 등으로 지난날의 사건을 기억하게 된다.¹²⁾

12) Riggs, D.S. and Kilpatrick, D.G. "Families and Friends: Indirect victimization by crime" in Victims of Crime: problems, policies, and peoples.(California: Sage, 1990) p.121

핀에 의하면 감정적 좌절은 범죄피해자의 가장 심각한 결과이며 두려움, 분노, 수치심, 자기비난, 무기력, 우울함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때때로 장기적으로 불면증, 집중력해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포함한 감정적 무능력이 생겨나기도 한다.¹³⁾

2. 간접적 또는 2차적 피해자

식구들 또는 친지들은 직접 피해자와 더불어 고통을 겪는 간접적, 2차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릭스와 킬패트릭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겪는 어려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법률적, 심리적 원조를 얻게 하고 그들이 형사절차 내에서 겪게되는 스트레스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¹⁴⁾라고 주장한다.

3.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폭력범죄가 발생하면 그 영향은 피해자 이외의 자에게도 미친다. 즉 그가 속한 지역사회 자체도 고통을 겪게 된다. 만약에 조그만 도시의 한 젊은이가 전가족을 몰살한다면 그가 속한 지역사회 전체는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지역주민들이 나약함을 느끼고 두려움이 엄습하며 도덕률이 떨어질 것이다.

4. 범죄피해자화에 대한 두려움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범죄를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대체로 그들의 이웃사회를 비교적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통계국에 따르면 ‘미국민의 1/3이 이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나머지 2/3의 미국민이 안전치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웃의 누군가가 피해를 당한다면 전체 이웃사회가 더 나약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통계국은 또한 위험에 많이 노출된 젊은 남성들은 실제 위험을 느낀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위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도가 약한 노년층의 여성들이었음을 밝혀냈다. 그들이 보호수단을 취함으로써 위험에 덜 노출되어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늙은이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밖으로 나다니기를 꺼린다면, 그 자체로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통계국은 또한 “범죄에 대해 듣게 되는 친척, 친구, 이웃들 역시 피해자와 같이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5. 형사사법체제에 의한 피해자화의 심화

13) Finn, P. op.cit. p.39.

14) Riggs, D.S et al. op.cit. p.135.

마과이어는 “피해자의 고통은 공공기관 또는 지역사회의 무관심에 의해 한층 강화된다”라고 말했듯이 뉴튼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¹⁵⁾

「피해자는 절뚝거리면서 바쁘게 돌아가는 경찰서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위협함과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한다.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사건은 오직 수많은 것 중의 하나이며, 피해조사를 위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가혹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강간피해자는 병원검사를 -더군다나 자기 돈으로- 받아야 한다는 부가적인 수치심이 기다리고 있다. 경험자들은, 범죄현장에서 녹초가 된 형사들에게서 무뚝뚝하게 취급을 당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시에갈은 우리의 형사사법구조의 불공평성과 그 안에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취급받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나약하고 화난, 불안정한, 자기를 잃어버린 피해자는 범인이 배식을 받고, 수감되며, 법적·의료적·심리적 원조 - 나아가 교육, 직업훈련까지 받는 것을 보게 된다. 피해자는 혼자서 고통받는 것이다.”¹⁶⁾ 편에 따르면 형사사법구조하에서 피해자가 겪는 비이상적 대우를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심문사항에 비이성적 질문이 있다.

- 피해자의 실수가 있다라는 빈정거림이 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경찰은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피해자가 가해자인지 또는 피해를 유발하였는지 모른다. 다만 도발적 질문이 조사기법상 필요하기도 하다.)
- 피해자는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 장물(피해품)이 증거라서 장기보관되거나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법정에서의 증언시간동안만큼 받게되는 임금의 손실이 있게 된다.
- 재판이 연기되거나 기각됨으로써 피해자는 시간적 손실을 받게 된다.
- 피해자는 관계당국과 협조함으로써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 피해자는 공개된 법정에서의 증언을 꺼리게 되며, 변호인측으로부터의 심문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상의 이유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된다. 심지어 범죄가 신고되어도 범법자의 처벌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설리반과 빅토르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해도 사건을 처리하는데는 1년이상이 걸린다”라고 했다. 심지어 90%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죄인정협상(plea bargain)

15) Newton, E. “Criminals have all the rights” in Criminal Justice. 87/88, p.59.

16) Siegal, M. “Crime and violence in America: The Victims” American Psychologist 38(1983). p.1271.

을 통하여 피고인이 법정에 갈 필요조차 없다. 피고인이 법정에 가더라도 밀집한 교도소 때문에 대부분이 생각하는 형기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으며, 기히 수감된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해서 더 일찍 석방된다.

게다가 우리의 사법체계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보다 많은 신경을 쓴다. 뉴튼에 따르면 “일단 범죄가 실행되면 강도나 살인자는 무고한 피해자 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된다”고 했다. 뉴튼은 범죄인의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를 도표 6에서 비교했다.

로버츠는 “원시시대에는 사회통제, 배상, 복수 등이 제멋대로 가해져서 사실상 처벌이

복수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했었는데 중세기 말까지는 피해자가 커먼로(common law)를 통해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¹⁸⁾라고 설명한다.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은 영국법의 전통(즉 사법절차에서 피해자는 제외시키고 대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게 하는)에서 기원한다. 피고인보다 국가가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증인으로서 제외하고는 형사절차에서 들어설 자리가 없다.

(도표 6)¹⁷⁾

범죄인의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 비교

범죄인권리	피해자의 권리
- 체포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통보받는다.	-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없다.
- 변호인에 의해 대표됨(가난한 경우 국선변호인 제공)	- 개별소송에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대표됨
- 수감중 음식, 의복, 의료 무료제공	- 치료비, 시간손실 등으로 인해 재정적 손실
- 심리학적 상담	- 극히 제한된 ㅅ에서만 상담치료제공
- 유죄를 인정하고 형기를 협상	- 유죄인정협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없음
- 신속한 재판	- 재판절차의 지연사례가 많고 긴 경우는 7년까지 가는 경우 있음
- 재판상에 출석하고 고소인을 대면	- 재판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가해자를 대면함.
- 선고를 번복하기 위해 상급 법원에 항소가능	-피고인의 석방에 대해 항소제기 불가

17) Newton, E. "Criminals have all the rights". Ladies Home Journal. Sept. 1986.

18) Roberts, A.R. Helping Crime Victims: Research, policy, and practice(California: Sage, 1990) p.23.

IV. 피해자의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

1. 입법을 통한 노력

피해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2개의 연방법과 1개의 대통령직속기획단이 구성되었다. 피해자와증인보호연방법(The Federal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은 다음에 의해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고자 한다.

- 피해자나 증인을 위협하는 것을 중범죄로 다룸.
- 기소장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삽입토록 함.
- 연방법원이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배상토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배상을 명령하지 않는 판사로 하여금 이유를 기록하게 함.

켈리는 동법의 통과과정에서 의회는 “피해자의 협력없이 형사사법체제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라고 선언함에 주목하였다. 그녀는 나아가 “연구들에 의하면 일종의 참여감이 피고인이 심하게 처벌받는 것 보다 피해자의 형사사법체제에 대한 만족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이 나타났다”라고 주장한다.¹⁹⁾

또한 1982년에 레이건 대통령은 ‘범죄피해자에 관한 특별기획단(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을 출범시켰다. 케링턴과 니콜슨이 “로널드 레이건은 피해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힘쓴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했듯이 동기획단은 60명의 피해자를 비롯하여 약 200명의 목격자들로부터 증언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68개 항의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1989년 현재 약 75%의 권고안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권고안들 가운데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 경찰기관에서는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민감하고 현존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해 알고 있으며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실행하여야 한다.
- 경찰기관에서는 검사의 승인하에 피해자들을 사진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일련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경찰기관에서는 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수사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경찰관들은 목격자에 대한 협박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하여야 한다.

1984년의 범죄피해자법(VOCA: Victims

19) Kelly, D. op.cit. p.174.

Of Crime Act)은 對人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에 과해진 벌금을 재원으로 범죄피해자기금을 조성 1년에 1억달러씩 적립하도록 하였다. 이 돈은 피해자 보상에 쓰여진다. 핀에 의하면 “보상은 의료비, 장례비, 수입상 손실, 피해자 유족 지원 등에 쓰여진다. 재산손실은 배상되지 않는다. 오직 몇 개의 주에서만 심리치료가 제공된다. 법에 의한 최대 배상액은 1만달러에서 1만 1천 달러 사이이다.”²⁰⁾라고 말하고 있다.

무라스킨에 의하면, 1988년 국회는 VOCA를 6년 더 존속키로 하고 기금도 매년 상향시키기로 하였다. 1991년 그 기금은 144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엘리야스가 얘기했듯이 모두가 이러한 발전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캐링톤과 니콜슨은 “최근까지만 해도 대법원을 포함한 미국의 사법체계는 범죄피해자가 어떤 법률적 권리를 갖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²¹⁾라고 말한다.

2 국제 경찰장 협의회의 피해자 권리장전

경찰에 대한 피해자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국제 경찰장협의회(IACP)는 각국의 경찰기관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룰 수

없는 피해자의 권리”를 이행하도록 그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대해 훈련시키도록 촉구했다.

1.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재정지원 및 기타 서비스와 그 이용절차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3. 조사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한 장소를 제공받아야 하며 법정 출두가 필요시에는 미리 통보를 받아야 한다.
4.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없으면 피해품에 대한 환부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5. 신속한 재판 및 재판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력과 재원이 허락한다면 강력범이 출소시에는 이 또한 피해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6. 강간 등 성 폭력 사범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여성 경찰관에 의해야 한다.

3. 형사 절차에서 특정한 피해자의 권리

켈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많은 주에서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 유죄인정협상 - 23개 주에서 유죄인정협상 절차에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법정참석 - 제6차 수정헌법에 의해 피고

20) Finn, P. op.cit. p.39.

21) Carrington, F. and Nicholson, G. "Victim's rights: An idea whose time has come 5years later: The maturing of an idea" in tasking sides, clashing view on controversial issues in crime criminology.(Conneticut: Dushkin, 1991) p.340.

인이 법정에 참여하는 권리는 보장되어 있으나 많은 주에 있어서 용의자들은 그런 권리를 갖고있지 않다. 피해자 현장 수정 네트워크(VCAN: Victims Constitutional Amendment Network)은 형사절차의 전단계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용인하는 쪽으로 주 헌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선고에의 개입: 1987년 8월 현재 96%의 주에서, 피해자 영향진술서(VIS: Victim-Impact Statement)와 피해자의 견서(VSO: Victim Statement of Opinion) 등의 형태로 가해자에 대한 형선고에 개입하고 있다.

켈리에 의하면, “피해자영향진술서(VIS)는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의료, 재정, 감정적 손실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동 보고서는 보호기관에 전달되고 다시 판사에게 전달되어 양형의 자료로 삼는다.”

엘리아스에 의하면 2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35개 주에서는 피해자의견서를 채택하고 있다.

웰즈는 “아마도 수사관과 피해자를 연결시키고 피해자를 사법행정에 활발히 참여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피해자영향진술서이다. 제대로 준비되고 제출된다면 피해자 영향진술

서는 검사나 판사로 하여금 범죄로 인한 실제 영향을 체험케 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판결을 할 것이다.”²²⁾라고 주장한다.

켈리는 나아가 “범죄피해자의견서는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 피고인이 받아야 할 형량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이는 구두나 서면진술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경계하고 있다.

예를들어 미네소타 주의 한 사건에서는 살해당한 어린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담당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의 진술을 했다.

“나는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내 아이 마가렛은 이 세상 전부였으며 그녀를 무척 그리워하고 있으며 사랑하고 있어요 ... 저 괴물같은 존 졸리는 내 딸에게 행한 죄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아이가 살해당한 부모라면 제 심정을 이해 할 겁니다. 누군가가 제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은데 저기 검은 심장을 가진 괴물같은 놈이 그것을 한 거예요. 그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짓을 또다시 저지를 겁니다. 판사님은 우리 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2) Wells, R.C. “Victim impact: How much consideration is it really given ?” The police chief. Feb. 1991. P.44.

4. 가해자와 사법절차에 대한 피해자 권리의 영향

피해자들의 권리가 향상됨에 따라, 그만큼 가해자나 그 밖의 형사절차가 그 댓가를 치르고 있다. 카르멘은 “누구의 비용으로 그런 권리가 얻어졌는가?” 라고 물음으로써 새로이 얻어진 피해자의 권리를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 입안된 피해자 권리들 중에서 일부는 가해자의 손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예를들면, 소위 ‘샘의 아들’이라는 법에 의하면 대부분 주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악명으로 유명해진 후 그들의 말을 언론매체에 팔아서 얻어지는 이익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권리, 이를테면 ‘진행절차에 대해 통보 받을 권리’는 관계기관의 예산이나 인력의 손실이라는 기초에 의해 이

루어 진다. 제3의 권리들 즉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은 가해자 또는 관련공무원의 손실에 기초한다.”라고 주장한다.

5.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들

메클러나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한 정보와 그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력, 손실에 대한 배상, 범죄예방 정보,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는 감정과의 비교·환류” 등이다. 나아가 메클러나한은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의 거주, 차비·식사비 등의 금전지원, 경험이나 피해영향 등을 이야기할 사람 등’ 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²³⁾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로버트에 의하면, 많

(도표 17-10)²³⁾

피해자의 권리 : 누구의 비용으로 얻어졌는가?

형사사법기관과 관련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통보관련 권리들	가해자 또는 기관,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참여적 권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권리로 문서화 된 것 : 손해배상, 상담소에서의 상담 치료, 의무에 대해 통보받는 것. 2. 가해자의 소재에 대해 통보받음 3. 중요한 결정에 대해 계속 통보받음 4. 피해자를 대표해서 관련 공무원이 고용인 등과 중재를 하는 형식을 통해 원조를 받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석이 결정될 때 조건 등에 관해 의견 진술을 들음 2. 유죄인정협상 절차에서 의견을 들음 3. 피해자영향진술서를 제출함 4. 재판정에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함 5. 가석방 위원회에 의견 개진을 함

23) Karmen, A. Issues in Justice. Chapter4.

24) McClenahan, C.A. "Victim Services - A positive police-community effort". The police chief. Oct. 1990. p.104.

은 州에서 실행되고 있다.

“수 십년동안 무시되어 왔던 범죄피해자들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동안 잊혀져 왔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연방, 주 또는 지방에서의 각종 시도에 의해 미국 전역에서 피해자 또는 목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왔다.”

데이비스와 헨리는 “이런 서비스 프로그램들의 발달은 계속되고 있다. 20여년 전에는 전혀 없었지만 오늘날은 약 5000 여개를 넘는다”라고 말한다. 스코간 등에 의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형사절차상의 영구적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거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의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 이행은 조금 미흡한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두 가지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완성되었다. 하나는 피해자나 목격자들로 하여금 형사 절차 진행 과정들을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로부터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재정지원이다. 엘리어스가 말했듯이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재정적 지원, 물적지원, 개인적 접촉을 통한 처우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로버트는 1986년 184개의 피해자·목격자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조사하면서 특정 11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지를 물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11개의 서비스 중 5-6개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도표 8은 서비스의 종류와 그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를 나타낸다.

(도표 8)²⁵⁾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들

서비스 종류	프로그램 수	비율
재판절차 설명	131	71
상담 등 알선	126	69
법정출두시 호송	120	65
피해보상신청에 조력	118	64
공공교육	112	61
고용인과 조력	111	60
법정까지의 교통수단 제공	109	59
위기상황시 개입	99	54
유아보호	69	38
비상금전제공	45	25
잠금장치 등 수리	22	12

25) Roberts, A.R. Helping crime victims: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피해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고려할 때 맥과이어의 말 즉 “피해자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증거들이 나타나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범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6. 배상 프로그램

힐렌브랜드는 피해자들에 제공되는 현행의 배상프로그램의 4가지 기본 유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피해자 원조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배상
- 피해자/가해자 조정(합의) 프로그램
- 배상 고용 프로그램
- 보호관찰 감독의 일환으로서의 배상

7.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1965년 캘리포니아는 최초로 주 단위의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강간피해자센터, 검찰의 피해자 원조 프로그램 등과 같은 피해자 관련 프로그램을 보충하고 있다. 미 법무성에 따르면 거의 모든 州들이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들을 원조하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

대체로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 피해자와 목격자들에게 재정적 지원 제공
-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권리 보호
- 강간, 가정 폭력 등의 피해자와 같은 특별범주의 피해자들에 대한 현체제의 미비점 보완

피해자/목격자 들을 위한 서비스는 비사법기관들, 즉 주·지방의 보건관련 부서 등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게다가 많은 사설기관들 또한 생겨나고 있다.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장례관련 비용이 지급된다. 종종 범죄예방활동 중 또는 범인체포 과정에서 부상당한 사람들도 또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보상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재산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통상 범법자가 체포·기소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금이 지급되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범죄가 적정기관에 신고되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1984년 연방 범죄피해자법은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주들은 피해자들이 재물손괴등의 범죄관련 손실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선고로서 가해자에 의한 보상을 조건으로 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보상은 범법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재정적으로 무능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많은 주에서는 또한 범법자들이 자신의 얘기를 출판해서 벌

어들이는 이익을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정비용이나 피해자에 야기된 범죄관련 비용을 보전하는데 쓰여진다. 도

표 9는 현행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의 특징들을 요약하고 있다.

(도표 9)²⁶⁾

각 주의 보상프로그램.

주	피해자 보상위원회 위치	금전지원(\$)	재정적 지원 필요성	경찰에 신고 해야 하는 기한	요청서 제출 기한
알라바마	알라바마 범죄피해자 보상위원회	0-10,000	부	3일	12개월
알래스카	공공안전부	0-40,000	가	5	24
아리조나	아리조나 형사사법위원회	**	가	3	**
캘리포니아	주 조정위원회	100-46,000	가	*	12
콜로라도	사법위원회	25-10,000	부	3	6
코네티컷	범죄피해보상위원회	100-10,000	부	5	24
델라웨어	폭력범죄위원회	25-20,000	부	*	12
D.C.	범죄피해보상과	100-25,000	가	7	6
플로리다	노동고용안전부 노동자 보상과	0-10,000	가	3	12
하와이	교정부	0-10,000	부	*	18
아이다호	산업위원회	0-25,000	부	3	12
일리노이스	틴원을 다루는 법원	0-25,000	부	3	12
인디애나	산업위원회	100-10,000	부	2	24
아이오와	공공안전부	0-20,000	부	1	6
캔사스	집행부	100-10,000	가	3	12
켄터키	피해자 보상위원회	0-25,000	가	2	12
루이지애나	법집행위원회	100-10,000	부	3	12
매릴랜드	범죄피해보상과	0-45,000	가	2	6
메사추세츠	지방법원	0-25,000	부	2	12
미시간	경영예산부	200-15,000	가	2	12
미네소타	범죄피해체제위원회	100-50,000	부	5	12
미저리	노동자 보상국	200-10,000	부	2	12
몬타나	범죄통제국	0-25,000	부	3	12
네브라스카	법집행 및 형사정의 위원회	0-10,000	가	3	24
네바다	행정부 및 검사위원회	0-15,000	가	5	12

26) 법무부 범죄통계국. Report to the Nation on Criminal Justice(1988)

주	피해자 보상위원회 위치	금전지원(\$)	재정적 지원 필요성	경찰에 신고 해야 하는 기한	요청서 제출 기한
뉴저지	집행부	0-25,000	부	90	24
뉴멕시코	집행부	0-12,500	부	30	12
뉴욕	집행부	0-30,000	가	7	12
노스캐롤라이나	범죄통제 및 공공안전부	100-20,000		3	24
노스다코타	노동자보상국	0-25,000	부	3	12
오하이오	탄원을 다루는 법원	0-25,000	부	3	12
오클라호마	범죄피해자위원회	0-10,000	부	3	12
오레곤	법무부/노동자보상위원회	250-23,000	부	3	6
펜실베이니아	범죄피해자위원회	0-35,000	부	3	12
로드아일랜드	상급법원	0-25,000	부	10	24
사우스캐롤라이나	범죄피해자 조언위원회	100-3,000	부	2	6
테네시	탄원을 다루는 법원	0-5,000	부	2	12
텍사스	산업재해위원회	0-25,000	부	3	6
유타	행정서비스부	0-25,000	**	7	12
버진아일랜드	사회복지부	25,000육박	부	1	24
버지니아	산업위원회	0-15,000	부	5	24
워싱턴	노동산업부	0-15,000	부	3	12
웨스트버지니아	탄원을 다루는 법원	0-35,000	부	3	24
위스콘신	법무부	0-40,000	부	3	12

주법과 1984년 연방피해자및목격자보호법(Federal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은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육체적·구두적 위협을 보호하고 있다. 많은 주에서 피해자가 재판의 진행절차 및 범죄인이 석방되거나 도망한 경우에도 통보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상의 변동 뿐 아니라 법정에 출두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비용 등에 관해서도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몇몇 주에서는 피해자들이 신고절차, 가석방, 구금결정 등의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특정 범죄의 재정적 감정적 영향을 묘사하는 ‘피해자 영향 진술서’도 많은 주와 연방 사건 절차에서 조사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도록 채택되고 있다.

또한 종합적인 ‘피해자 권리장전(Victim’s Bill of Rights)’은 피해자가 계속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료적·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판동안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옵브즈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V. 경찰의 역할

경찰과 피해자간의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접촉은 초동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대할 때 사실적일 필요성이 있다. 어느 경찰기관이 ‘초기 사건 종결 제도 (early case closure system)’를 갖고 있으면, 피해자들은 추가정보가 나오지 않는 한 아무것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사건번호와 범죄와 관련해서 추가정보를 얻기 위해 접촉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통보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가용한 원조의 형태들에 대해 통보 받아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도록 조언을 들어야 한다. 만약에 피해자가 법률조언을 요한다면 경찰관들은 피해자들에게 법률자문공단 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수사중인 사건이 법원에 넘겨지고 나서도 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와 접촉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해품이 회복되면 가능한한 빨리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하기전 피해자들은 그들의 할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통령 직속의 기획단은 최종 보고서에서

“경찰은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한다. 그들은 임무수행중에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

의 임무이며 피해자들을 따뜻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을 다루는 방법여하에 따라 사건해결 및 기소여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관과 피해자가 상호작용의 기초는 경찰관들이 그런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임용되었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스코간 등은 “경찰은 전략상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보상신청서 작성시 도와주거나, 장애의 피해예방법 교육, 보복을 회피하는 방법 교양 등 실제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경찰이 피해자들과 계속 접촉하고 사건진행에 대해 계속 알려주며, 다른 서비스 기관들을 알선하고 보상프로그램 등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윌러는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위기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피해자와 최초로 이야기를 나누는 공무원이며 지역사회의 적절한 서비스 기관 등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²⁷⁾라고 말하고 있다.

경찰은 초동조치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지역응급서비스센터, 열쇠공, 범죄피해보상, 방법 관련 부서 등의 전화번호가 새겨진 카드를 제공토록 하고, 피해자들을 지역 사회에의 다른 서비스 기관에 알선하게 함으

27) Waller, I. op.cit. p.151.

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들 또한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경찰관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폭행을 당하거나 강도를 당할 수 있다. 메이저는 “많은 경찰관들이 직무수행중에 많은 대가를 치른다.”라고 얘기한다.

콘로이와 헤스는 “경찰관들이 제1의 희생자가 되는 것은 직업과 관련된 육체적 위협에 의해서이다. 폭행당할 수도 있고 총을 맞을 수도 있으며 칼에 찔릴 수도,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 보다 더 심한 것은 심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다. 이런 형태의 피해는 경우가 드

물고 최근에는 그 존재가 알려졌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목숨을 걸고 불타는 자동차에서 어린이를 구출하고 나서 그 어린이가 죽는 것을 목격하는 경찰관은 제2의 당사자 이상이다. 그의 희망이 산산히 부서지고 깊은 좌절과 실패감을 겪는 것은 바로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피해자가 되는 방법은 제2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콘로이나 헤스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사례를 계속적으로 다루는 동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음이 황폐화되어 가는 것이다.”²⁸⁾라고 지적하고 있다.

28) Conroy, D.L. and Hess, K.M. Officers at risk: How to identify and cope with stress.(California: Custom, 1992) p.40.

해 외 정 책 정 보



- 일본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관과 검찰관의 관계 / 최선우
- 일본총리부 [交番・駐在所에 관한 世論調査]와 평석 / 박병식
- 일본의 경찰관을 위한 私法研究 / 배성인
- 일본의 여경과 근무부서 / 황규정
- 미국에서의 경찰과 청소년 / 조성호

일본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관과 검찰관의 관계

- 검찰관은 수사의 중지를 경찰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가? -

〈치안연구소 경정〉 최 선 우

I. 경찰의 뺑소니신고수사에 대한 검찰관의 수사중지

최근 흥미있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시청 관내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생도가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덤프트럭은 그대로 달려갔으나 약 40분 후 교통사고현장에서 2km 떨어진 장소에서 운전기사가 뺑소니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다. 운전기사는 도쿄지검에 송치되어 10일간의 구류만을 살고는 석방되었다.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은 초등학생이 횡단 보도를 청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중 직진해 온 덤프트럭의 좌측 뒷바퀴에 치어 사망한 것으로서 덤프트럭의 타이어에는 혈흔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운전기사는 핸드폰으로 통화하느라고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도 밝혀졌다.

경찰의 수사결과 사고직전에 횡단보도를

건넜던 여사원 4명의 목격자증언도 얻었으나 운전기사는 사람을 친 것을 알아 차리지 못했다고 뺑소니혐의를 부인하였다. 그래서 경시청에서는 목격자를 더 찾아내는 수사를 하고 있었으나 도쿄지검의 담당 검찰관으로부터 목격자를 찾는 수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가 있어 수사는 중지되었다.

결국 운전기사는 10일간의 구류만으로 교통사고발생으로부터 20일후 [혐의-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보도된 신문 기사를 토대로한 것이어서 그 정확성을 검증할 방법은 없으나 보도내용에 의하면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이 수사의 중지를 경찰에 지시한 것은 의문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움직임도 있어 검찰관에 의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중지의 지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경찰관과 검찰관의 관계

1. 경찰관의 제1차적 수사권

1) 경찰관의 수사권과 검찰관의 수사권

예전에 수사권한은 검찰관에게만 있고 경찰은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이른바 보조기관적 입장에서 수사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관(일반사법경찰직원)은 검찰관의 지휘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검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제1차적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책무와 권한을 지니는 것으로 하였다.

일반 검찰관은 제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도쿄지검 특수부로 상징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찰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 수사를 행하는 권한도 있다.

2) 경찰관과 검찰관의 협력관계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검찰관과 경찰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고 각각 독립한 수사기관이며 협력관계에 있다(형소법 제192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에 관한 협력관계는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협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 수사방침의 책정 등 수사에 관계되는 사항일반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검찰관은 그 목적에 합치되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경찰관에게 지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을 지휘하지 않으면 잘못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형사소송법은 검찰관이 경찰관에 대하여 지시 지휘권을 갖는 것으로 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검찰관의 지시 지휘권

형사소송법 제193조는 검찰관이 경찰관에 대하여 갖는 지시권 지휘권을 정하고 있다.

1) 일반적 지시권

검찰관은 그 관할구역에 의거하여 경찰관에 대하여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 지시를 행할 수 있다.(형소법 제193조제1항)

이 일반적 지시의 내용은 공소관으로서의 검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①범죄수사를 적정하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②수사서류의 서식에 관한 사항, ③사건 송치에 관한 사항, ④증거보전을 하여야 할 사건의 증거수집에 관한 사항, ⑤공소를 실행하기 위한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2) 일반적 지휘권

검찰관은 그 관할구역에 의거하여 경찰관에 대하여 수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지휘권을 갖는다(형소법 제193조제2항)

이 지휘가 가능한 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관이 스스로 수사를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검찰관의 수사에 경찰관의 협력을 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은 경찰관이 행하는 수사에 대하여 검찰관의 일반적 지휘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개개 경찰관을 지휘하는 근거조문인 것은 아니다.

3) 구체적 지휘권

검찰관은 스스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를 보조시킬 수 있다(형소법 제193조제3항)

구체적 지휘를 받는 경찰관은 그 고유의 관할권의 범위에서만 검찰관을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수사의 단서가 어떠한 것인가를 묻지 않기 때문에 검찰관 스스로 수사의 단서를 얻은 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를 묻지 않는다.

검찰관이 현재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 또는 관계자의 소재수사를 경찰관에게 지휘하는 것도 구체적 지휘권의 행사로서 당연히 인정

되어진다.

검찰관의 구체적 지휘를 받는 경찰관은 구체적 지휘의 범위내에서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의 지휘를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3. 경찰관의 검찰관의 지시 지휘에 대한 복종의무

검찰관이 적법한 일반적 지시, 일반적 지휘 또는 구체적 지휘를 한 경우에는 경찰관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형소법 제193조제4항)

이 경우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위법한 지시 지휘에 따를 필요는 없다.

1) 검찰관의 지시 지휘의 우선

검찰관의 지시 지휘와公安위원회(공안위원회)의 지시, 경찰조직상의 상사의 지휘 명령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법한 것인 한 검찰관의 지시 지휘가 우선한다.

2) 검찰관의 경찰관 징계파면의 소추

검찰관은 경찰관이 지시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관을 스스로 징계파면할 권한은 없으나 公安위원회에 대하여 징계파면의 소추를 할 수 있다.

공안위원회는 경시총감 경찰본부장에 대하여 징계파면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하고 경시총감 경찰본부장이 소요(所要)의 처분을 하

게 된다.

징계파면의 소추는 징계파면의 청구를 하는 것이고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행해진다. 청구에 있어서는 검찰관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 징계처분의 종류 정도에 대하여 의견을 기술하나 징계권자는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없고 검찰관의 지시 지휘에 경찰관이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있는 이상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Ⅲ. 검찰관이 일단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지?

검찰관의 사건처리의 종국(終局)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검찰관이 한번 불기소처분으로 결정했다면 그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재개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검찰관이 일단 불기소처분하였다고 하여 그것에 의해서 공소권이 소멸하거나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찰관이 일단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훗일 기소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접촉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제39조 소급처벌의 금지 일사부재리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최

고재판소는 소화 32년 5월24일 판결)

또한 일단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재수사에 착수할 것인가의 여부는 통상 검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검찰심사회에 있어서 기소상당(起訴相當)의 의결이 있을 경우라도 기소를 강제하거나 수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Ⅳ. 뺑소니사고수사에 대한 검찰관의 지시의 성질과 타당성

경찰(관)은 독자적 입장과 권한으로 수사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이 경찰관에게 수사를 중지시킨 것은 검찰관의 일반적 지시권, 일반적 지휘권 또는 구체적 지휘권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의 문제이다.

구형사소송법에서와 같이 검찰관만이 수사의 주재자여서 경찰관은 그 보조자라면 언제 어떠한 수사를 할 것인가는 검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관과 검찰관은 각각 독립한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관이 특정한 수사를 행하도록 구체적으로 경찰관을 지휘하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거꾸로 검찰관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검찰관이 목격자를 더 찾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하여 그 수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검찰관이 경찰관에게 소정의 수사를 행하도록 지휘하는 것은 구체적 지휘권으로서 할 수 있으나 경찰에게 수사를 중지하도록 지시 지휘한 것은 다음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된다.

1. 경찰수사권의 침해

검찰관이 경찰관에게 특정한 수사를 중지하라(하지말라)고 지시 지휘하는 것은 경찰의 독립수사권 제1차적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수사의 종료(중지)를 경찰관에게 지시 지휘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은 수사의 중지를 검찰관으로부터 지시 지휘받았다고 하여 그에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다.

2 [혐의 불충분]상태의 수사중지

검찰관은 [혐의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으며 혐의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되므로 그 단계

에서 수사를 종료(중지)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결국 새로운 목격자로부터의 증인이 얻어지면 운전기사를 기소함에 충분한 증거를 얻을 수 있으며 반대로 운전기사에게 과실책임도 없는 것이 밝혀지는 증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이건 수사를 철저히 하면 혐의 불충분이라는 회색(灰色)의 재정(裁定)을 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종국처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월간 경찰시보 1998년 7월호[사회와 형사법/수사에 있어서 검찰관과 경찰관의 관계~검찰관의 수사의 중지를 경찰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가](上村卓也, 92~96항)를 요약 전제한 것임

'사법경찰 검찰소속' 안될말

얼마전 검찰은 '수사지휘론'이라는 내부 책자를 통해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사법경찰을 경찰조직으로부터 떼내어 법무부에 소속시키고 경미한 사건에 대한 즉결심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방안은 결코 형사사법의 개선책이 될 수 없다.

우선 검사가 경찰의 초동수사까지 일일이 개입해 지휘하려는 것은 후진적인 발상이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사법 영역에서 상명하복의 관계는 있어서도 안된다.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권력자의 지휘가 아니라 법과 자기 양심에 따라서만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경찰은 범죄예방을 임무로 하는 예방경찰이 있

는 경찰조직내에 위치해야 한다.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는 떼어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경미한 범죄까지 검사가 수사지휘권과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더욱 안될 말이다.



손 동 권
(건국대교수·법학)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발상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오히려 경찰이 입건한 사건은 송치전에 한하여 사법경찰이 독자적인 초동수사권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더라도 검사의 보강수사 지시권과 공소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종한 업무에 시달리는 검사가 원거리 수사지휘를 하는데 따르는 현재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의견내언

경찰 수사권 독립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해묵은 논제다. 20여년은 된 것 같다. 이 문제는 언제나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권력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힌 세력다툼 정도로 비쳐졌던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언제나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라는 이중적 수사절차를 통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의 자질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에 독립수사권을 보장해 검찰과 경찰 양자의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을 때 국민의 인권이 오히려 더 잘 보장될 수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단계적인 수사권 독립을 원한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국민의 정부 출범을 전후해 다시 첨예하게 재연됐다. 여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가 제 15대 총선과 대선 때 '국민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고 범죄수사의 능률을 높이며 두 기관의 상호협력차원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여당은 이와 함께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대국민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경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공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전직 경찰관 등 민간인 31인으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경찰제도와 인사체계·기강확립 부분 등

경찰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개혁작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권 독립문제도 이들 민간인 위원들에 의해 활발하게 토론되고 있다.

이런 때 법무부가 9월 국회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통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는 불가하다'고 경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검찰의 주장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다고 하고 경찰 역시 효율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느 편이 국민을 더 위하는 제도 인지를 토론해야 한다.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데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검찰에도 많은 책임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 **崔弘運** 논설위원 hwc@daehanmaeil.com



일본 총리부 「交番・駐在所에 관한 世論調査」와 평석

〈법학박사/용인대학교 교수〉 박 병 식

1. 서

본고는 일본 총리부가 1997년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20세 이상의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고오방·주재소의 경찰관 및 경찰관의 활동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交番・駐在所에 관한 世論調査」¹⁾를 소개하고 평석을 한 것이다.

국민의 신변에 대한 불안감, 경찰관의 순찰 활동, 경찰관에 대한 의식, 고오방에의 방문, 경찰관의 순회연락(방문심방), 경찰관과 지역 주민과의 접촉, 그리고 고오방에 대한 요망 등을 대상으로 한 본 설문조사를 직접적으로 우리 파출소의 경찰관 및 경찰활동에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의 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소개하기로 하였다. 다만, 제도나 용어에서 다소 생소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해설을 덧붙였다.

최근의 일본사회는 정보화·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도시화 및 농촌지역의 과소화(過疎化)·고령화 등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모습이 변모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경찰활동과 경찰관에 대한 요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일본 경찰은 고오방(交番)과 주재소(駐在所)²⁾를 단순한 경계활동의 거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 및 평온을 종합적으로 수호하는 「생활안전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주민의 요망을 기초로 한 지역안전활동을 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안전과 평온의 확

1)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을 취했으며, 유효회수율은 73.3%(2,198명)으로 나타났다.

2) 고오방은 원칙적으로 교대로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이, 그리고 주재소는 원칙적으로 근무장소와 동일한 시설내에서 거주하는 지역경찰관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활동을 행하는 거점이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고오방과 주재소를 구분하지 않고 「고오방」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보에 지역주민의 협력이 불가결하며 지역경찰관이 그 지역사회에 융해되어 주민의 고충과 요망을 경찰활동에 반영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발적 안전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오방에 전직 경찰관을 배치하는 고오방 상담원 제도, 팩시밀리·PC 외에 부재전화 전송장치, 전광식 지리안내표시판, 화상전화 대화시스템, 미니순찰차의 도입확대에 의해 고오방 기능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2. 조사결과 및 평석

1) 국민의 불안감

〈Q 1〉은 국민들이 얼마나 신변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의 74.2%는 불안을 느끼지 않으나, 25.4%는 신변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이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과거 '세계 제1의 안전국가'라고 자부하던 안전신화(安全神話)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련의 흉악사건에 대한 불안감의 증폭현상이라고 판단된다.

2) 고오방의 활동과 향후 중점활동에 대한 요망

국민들이 고오방을 어떠한 활동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활동을 강화해 주길 바라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경찰행

정의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경찰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 결정하여 그 수요를 충족하는 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무엇을 요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Q 2〉는 고오방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 국민들은 순찰(82.6%), 유실물·습득물 신고접수(71.8%)를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꼽고 있으며, 그에 뒤이어 불법주차 단속(57.7%), 지리안내(56.8%), 피해신고의 접수(54.3%), 가출인·미아·만취자의 보호(51.4%), 112 통보에의 대응(49.5%), 마을축제에서의 혼잡경비(46.3%), 방문심방(48.1%), 고오방에서의 경계(45.1%), 교통사고 부상자의 구호(45.0%), 통학로에서의 교통지도(43.4%)로 나타났다. 고충상담에의 대응, 반상회에서 방법강습이나 고오방 홍보지의 발행은 상대적으로 소수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향후 강화해주길 바라는 활동을 보던 순찰이 63.4%로 압도적으로 많고, 통학로에서의 교통지도(37.8%), 불법주차 단속(33.2%), 방문심방(26.7%), 고충상담(26.2%), 112 통보에 대한 대응(24.5%)이 그 뒤를 이었다. 특징은 복수응답임에도 불구하고 순찰을 제외하고는 30%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반대로 일본국민들

이 얼마나 경찰관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오방 경찰관의 인식도 및 반응

〈Q 3〉은 관할 고오방 경찰관의 숙지도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경찰관과의 교류를 알아본 것이다. 얼굴과 이름을 모두 모른다는 응답이 77.9%를 차지하여 일본에서도 지역주민과 경찰관간에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오방 경찰관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서 적극적인 응답으로는 복장·자세가 좋다(27.3%), 친절하다(24.2%), 고생 많은 일을 하고 있다(23.9%), 믿음직하다(19.8%)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부정적인 응답으로는 친근감이 없다(12.8%), 융통성이 없다(8.4%)는 반응을 나타냈다.

외형적으로 복장·자세가 좋으면 친근감을 느끼기 어렵고, 법률집행기관으로서 대응하다 보면 융통성이 없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반응이라 할 것이다. 아무튼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와 피의자에 대한 엄격함을 양립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4) 고오방 건물에 대한 인상과 개선방향

〈Q 5〉는 고오방 건물에 대한 인상을 질문한 것이다. 밝기와 청결성에서는 적극적인 응답이 더 많았으나, 넓이와 출입 그리고 눈에 띄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Q 6〉은 고오방 건물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질문이다. 상담 및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정비(22.5%)와 지리안내판 정비(22.4%)를 제시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방문자를 위한 주차장 확보(19.8%), 경관과 조화된 외관정비(17.1%), 장애자를 위한 시설정비(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근래 고오방을 경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지역의 안전을 걱정하고 대화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경찰관의 주거성과 안전성 등 고오방 건물에 대한 전통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입지 조건, 주민과의 접촉가능성, 그리고 지역의 역사 및 경관과 조화된 건물형태를 고려하여 고오방을 신축·개축해 나가고 있다.

5) 고오방 이용도와 용건, 경찰관의 대응태도

〈Q 7〉은 최근 2~3년 동안의 고오방 이용도를 묻는 질문이다. 전혀 없다는 대답이 71.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1회(16.7%), 2~3회(9.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오방을 찾아간 요건을 묻는 질문(〈Q 7-1〉)에 대해서는 유실물·습득물 신고(40.7%)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지리안내(18.6%), 자동차 면허증의 갱신 및 차고증명발행절차 문의(15.6%), 교통사고 신고(13.5%)가 그 뒤를 이었다.

앞서 고오방의 활동(〈Q 1〉)에 대한 질문에서 불법주차 단속활동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7.7%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막상 불법주차 등의 고충으로 고오방을 방문한 사람은 4.2%에 불과하여 고오방을 별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오방을 방문했을 때의 경찰관의 대응에 대한 질문(〈SQ 7-2〉)에 대해서는 좋았다가 81.1%를 차지하여 좋지 않았다는 반응(14.3%)을 압도하였다. 그리고 좋았던 점을 묻는 질문(〈SQ 7-3〉)에 대해서는 친절성(66.1%), 말투 및 태도의 성실성(36.7%), 업무처리의 신속성(36.2%), 공평성(12.5%)을 든 반면에, 좋지 않았던 점을 묻는 질문(〈SQ 7-4〉)에 대해서는 말투 및 태도의 불성실(44.0%), 업무처리의 지연(37.4%), 불친절(36.3%), 불공평(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6) 경찰관 부재시의 대응과 고오방상담원 제도

〈Q 8〉은 고오방 방문시 경찰관의 부재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부재였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6.1%로 같았다. 그리고 부재시의 대응을 묻는 질문(〈SQ 8-1〉)에 대해서는 단념하고 돌아간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으며, 나중에 다시 갔다(27.6%), 고오방 전화로 경찰관을 호출하였다(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경찰은 최근 비교적 고오방 방문자가 많은 도시지역의 주요 고오방에 「고오

방 상담원」을 배치하여, 경찰관이 순찰활동 등으로 고오방에 부재인 동안에도 주민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오방 상담원은 경험이 풍부하고 경찰업무에 정통한 경찰관 OB로서 고충상담, 사건·사고의 인계, 피해자에 대한 조언·지도 등을 행한다.

이에 고오방 상담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Q 9〉)한 결과, 도시의 보다 많은 고오방에 배치하길 바란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지역에만 배치하길 바란다는 응답도 10.8%에 달하였다. 반면에 경찰관이 상시 대기하면 고오방 상담원은 필요없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19.1%였으며, 화상전화 등을 이용한 보완방법을 제시한 응답도 9.5%에 달하였다.

7) 순찰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중점시간·장소

〈Q 10〉은 경찰관의 순찰활동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것이다. 강화를 요망한 응답이 전체의 6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31.7%에 달하였다. 반면에 현재보다 순찰활동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0.8%로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한편, 중점적으로 순찰할 시간 및 장소를 묻는 질문(〈Q 11〉)에 대해서는 야간순찰이 71.2%로 압도적이었으며, 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유흥지 순찰(50.5%), 유괴예방을 위한 공원 등지의 순찰(49.2%),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혼잡지역 순찰(33.9%), 폭력배 활동

지역 순찰(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8) 순회연락(방문심방)의 실시와 경찰관의 태도

순회연락이란 고오방의 경찰관이 관할구역의 가정,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거주자의 신분을 조사하고 방법 및 사고방지에 대해 지도하며 주민의 고충, 요망,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의 「방문심방」과 같은 제도이다.

먼저 순회연락을 위해 경찰관이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Q 12〉)에 대해서는 49.1%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없다는 응답도 40.1%에 달하였다.

그리고 순회연락시의 경찰관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SQ 12-1〉)에 대해서는 친근감(51.6%), 근면함(24.3%), 듬직함(15.6%)을 느꼈다는 적극적인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사무적(19.0%), 말투 및 태도의 불성실(4.5%), 프라이버시의 침해(1.8%) 등의 부정적 응답도 있었다.

우리의 방문심방이 그 본래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협조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별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의 순회연락도 년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다.³⁾ 이는 일본의 순회연락 제도가 가정을 방문한 경우에는 가족수와 관계, 연령, 성별, 취직 여부,

자동차 번호 등을 묻고, 사무소를 방문한 경우에는 종업원명부와 경력을 입수하고 영업시간과 숙직자의 유무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9) 경찰관과 주민과의 접촉

〈Q 13〉은 순회연락 및 고충상담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접촉을 더욱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9.6%를 차지한 반면에, 현재 상태로 좋다는 응답도 34.8%에 달하고 있다.⁴⁾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접촉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질문(〈SQ 13-1〉)에 대해서는 안심(66.0%), 상담 및 협력의 용이(55.3%), 경찰관에 대한 친근감(36.7%), 지역실정의 파악에 의한 대처(3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한 경찰관의 노력사항을 묻는 질문(〈SQ 13-2〉)에 대해서는 순찰강화(57.9%), 따뜻한 대응(47.9%), 지역집회에의 적극 참가(35.8%) 등을 들었다.

10) 지역사회 안전활동에의 참여

일본의 고오방에는 지역의 문제나 의견, 요망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을 목적으로 지역

3) 사실 필자의 경험으로도 10년의 체류기간 동안에 순회연락으로 경찰관이 방문한 것은 1회였다.

4) 주민과의 접촉에 소극적인 34.8%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결여된 사실은 본 설문조사의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사회의 각계 각층의 주민들로 구성된 「交番・駐在所 連絡協議會」가 설치되어 있다.

〈Q 14〉는 「交番・駐在所 連絡協議會」에의 참가 경험 여부를 묻고 있다. 조사 결과,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은 0.3%에 불과하며 92.3%가 참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회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交番・駐在所 連絡協議會」에 참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Q 15〉)에 대해서는 참고하고 싶다는 사람이 46.5%로 나타나, 참가 열의는 그런대로 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안전 활동에 협력해 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에 협력하겠는지를 묻는 질문(〈Q 16〉)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응답이 88.6%에 달하여 협력하지 않겠다는 응답의 7.7%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지역안전 정보의 전달방법에 대한 의견

일본 대부분의 고오방은 독자적으로 제작한 미니 홍보지를 발행하고 상점가의 안내지를 활용하는 등, 지역실정에 알맞게 지역안전 정보를 발신하는 이른바 「고오방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지는 관할구역의 사건·사고 발생상황과 그 방지책, 주민의 목소리 등 주변의 화제를 전함으로써 범죄의 방지

와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자나 청각장애자에게 지역안전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점자홍보지를 발행하고 팩시밀리 등의 장비를 정비하여 팩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건·사고 등의 발생상황을 신속하게 게시하는 「고오방속보(速報)」, CATV와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Q 17〉은 지역안전정보 전달방법을 묻는 질문으로, 조사 결과 고오방신문(44.3%), 게시판(40.3%), 순회연락(35.4%), 주민과의 직접대화(30.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 어

일본의 치안상황은 음진리교에 의한 사린 독가스사건과 중학교 소년에 의한 흉악살인사건, 매상금 호송중에 권총발포로 사망하는 사건 등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소년 약물사범과 전화방(telephone club), 투샷다이얼(two-shot dial), 전언(傳言)다이얼⁵⁾ 등에 의한 여중고생의 성적 피해가 증가하는 등 시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 제1의 안전대국이라는 신화가 무너진 데 따른 국민의 불안감도 상대적

5) 일본에서는 90년부터 0990 국번(우리의 700국번)에 의한 음란전화 서비스인 「Q2 다이얼」과 전화방에 해당하는 「텔레폰 클럽(telephone club)」, 그리고 폰팅에 해당하는 「투샷 다이얼(two shot dial)」과 전언(傳言) 다이얼 등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음란전화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의 고오방·주재소 시스템과 우리의 파출소 시스템은 근무제도 등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과거 일제시대의 마이너스 유산이라는 역사적인 측면 외에도, 해방 이후 일본의 제도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 실정에 맞게 도입해 온 경찰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때문에 고오방 제도 및 경찰관의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소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는지 모른다.

오히려 필자가 일본의 설문조사를 소개한 의의는 일본 국민들이 고오방과 경찰활동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 파출소제도 및 경찰활동의 모습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양국의 생활관습과 사회실정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고오방과 파출소 제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조사결과는 상당 정도 우리의 문제로서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기회가 부여된다면 일본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봄으로써 양국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설문내용 및 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설문내용 원문 및 결과〉

〈Q 1〉 최근 신변에 불안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다음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오

- | | |
|-------------|---------|
| ① 자주 느낀다 | (3.5%) |
| ② 가끔 느낀다 | (21.9%) |
| ③ 별로 없다 | (33.6%) |
| ④ 거의(전혀) 없다 | (40.6%) |
| ⑤ 모르겠다 | (0.3%) |

〈Q 2〉 고오방의 경찰관은 주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오방의 경찰관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다음 중에서 고르세요(복수 응답).

- | | |
|----------------------|---------|
| ① 112 통보에 대한 대응 | (49.5%) |
| ② 교통사고 등에 의한 부상자의 구호 | (45.0%) |

③ 순찰	(82.6%)
④ 불법주차 등의 단속	(57.7%)
⑤ 통학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지도	(43.4%)
⑥ 반상회 등에서의 방범강습	(25.2%)
⑦ 순회연락(방문심방)	(48.1%)
⑧ 마을축제 등에서의 혼잡경비	(46.3%)
⑨ 고오방에서의 경계	(45.1%)
⑩ 가출인, 미아 및 만취자의 보호	(51.4%)
⑪ 고충상담에의 대응	(28.6%)
⑫ 지리안내	(56.8%)
⑬ 유실물·습득물 신고접수	(71.8%)
⑭ 피해신고 접수	(54.3%)
⑮ 고오방활동에 대한 홍보지의 발행	(20.2%)
· 기타	(0.3%)
· 특별히 없다(2.2%)	
· 모르겠다 (1.4%)	

〈Q 3〉 당신은 관할 고오방의 경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다음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오

① 얼굴은 물론 이름도 알고 있다	(4.0%)
② 얼굴은 알지만 이름은 모른다	(15.1%)
③ 이름은 알지만 얼굴은 모른다	(0.8%)
④ 얼굴은 물론 이름도 모른다	(77.9%)
· 기타	(0.1%)
· 모르겠다	(2.1%)

〈Q 4〉 당신은 고오방의 경찰관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복수응답).

① 복장·자세가 좋다	(27.3%)
-------------	---------

② 친근감을 느낀다	(16.3%)
③ 친절하다	(24.2%)
④ 믿음직하다	(19.8%)
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7.6%)
⑥ 고생많은 일을 하고 있다	(23.9%)
⑦ 복장·자세가 나쁘다	(0.2%)
⑧ 친근감이 없다	(12.8%)
⑨ 품을 잡는다	(5.0%)
⑩ 융통성이 없다	(8.4%)
· 기타	(1.0%)
· 특별히 없다(19.9%)	
· 모르겠다	(9.6%)

〈Q 5〉 당신은 고오방의 건물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있습니까?(복수응답)

① 밝다	(16.7%)
② 넓다	(3.8%)
③ 출입하기가 쉽다	(11.6%)
④ 눈에 띈다	(11.4%)
⑤ 깨끗하다	(13.9%)
⑥ 어둡다	(11.5%)
⑦ 좁다	(18.4%)
⑧ 출입하기가 어렵다	(27.3%)
⑨ 눈에 띄지 않는다	(17.2%)
⑩ 더럽다	(3.4%)
⑪ 오래됐다	(9.6%)
· 기타	(0.7%)
· 특별히 없다(17.0%)	
· 모르겠다	(6.1%)

〈Q 6〉 당신은 고오방을 시민들이 더욱 활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복수응답)

- | | |
|------------------------------------|---------|
| ①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정비한다 | (19.8%) |
| ② 지역의 경관 이미지에 걸맞게 외관을 정비한다 | (17.1%) |
| ③ 고오방 시설을 넓힌다 | (13.9%) |
| ④ 노후화됐으므로 개축하여 깨끗하게 만든다 | (10.2%) |
| ⑤ 상담 및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공간을 정비한다 | (22.5%) |
| ⑥ 장애자를 위해 경사로와 점자 인터폰을 설치한다 | (17.1%) |
| ⑦ 지리안내판을 정비한다 | (22.4%) |
| ⑧ 프라이버시를 위해 상담실에 커튼을 붙이고 방음장치를 한다 | (7.6%) |
| ⑨ 경찰관 부재시에 경찰서에 연락하기 위해 화상전화를 설치한다 | (3.4%) |
| · 기타 | (3.1%) |
| · 개선할 필요가 없다 | (15.2%) |
| · 모르겠다 | (11.6%) |

〈Q 7〉 당신은 최근 2~3년 사이에 몇번이나 고오방에 갔습니까? 다음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오.

- | | | | |
|---------|---------|--------|-----------|
| ① 1회 | (16.7%) | —————→ | (SQ 7-1로) |
| ② 2~3회 | (9.3%) | —————→ | (SQ 7-1로) |
| ③ 4회 이상 | (2.9%) | —————→ | (SQ 7-1로) |
| ④ 없다 | (71.1%) | —————→ | (Q 8로) |

〈SQ 7-1〉 고오방에 간 용건은 무엇이였습니까? (복수 응답)

- | | |
|----------------------------|---------|
| ① 사건·사고의 통보 | (8.5%) |
| ② 지리안내를 받으러 | (18.6%) |
| ③ 유실물·습득물의 신고 | (40.7%) |
| ④ 범죄피해의 신고 | (8.3%) |
| ⑤ 교통사고의 신고 | (13.5%) |
| ⑥ 면허증 갱신, 차고증명 발행절차를 듣기 위해 | (15.6%) |
| ⑦ 고충 상담 | (5.3%) |

- ⑧ 위법주차 등의 고충 상담 (4.2%)
- ⑨ 폭력단에 관한 상담 (0.6%)
- ⑩ 부상자, 위급환자, 만취자 등에 관한 통보 (1.7%)
 - 기타 (9.7%)
 - 모르겠다 (0.3%)

〈SQ 7-2〉 고오방을 방문했을 때 경찰관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다음 중 하나만 고르시오.

- ① 좋았다 (43.9%) → (SQ 7-3으로)
- ② 그런대로 좋았다 (39.2%) → (SQ 7-3으로)
- ③ 그다지 좋지 않았다 (10.7%) → (SQ 7-4로)
- ④ 좋지 않았다 (3.6%) → (SQ 7-4로)
 - 기타 (1.7%) → (Q 8로)
 - 모르겠다 (0.9%) → (Q 8로)

〈SQ 7-3〉 경찰관의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복수 응답)

- ①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66.1%)
- ② 말투와 태도가 성실했다 (36.7%)
- ③ 신속하게 대처해 주었다 (36.2%)
- ④ 공평하게 대처해 주었다 (12.5%)
 - 기타 (0.9%)
 - 모르겠다 (1.3%)

〈SQ 7-4〉 경찰관의 어떤 점이 좋지 않았습니까? (복수 응답)

- ①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36.3%)
- ② 말투와 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다 (44.0%)
- ③ 대응이 늦거나 절차에 시간이 걸렸다 (37.4%)
- ④ 공평하게 대처해 주지 않았다 (15.4%)
 - 기타 (8.8%)
 - 모르겠다 (1.1%)

〈Q 8〉 당신이 고오방에 갔을 때 경찰관이 부재중인 적이 있습니까? 다음 중에서 고르세요.

- | | | | |
|----------------|---------|--------|-----------|
| ① 부재중인 적이 있다 | (26.1%) | —————→ | (SQ 8-1로) |
| ② 부재중인 적이 없다 | (26.1%) | —————→ | (Q 9로) |
| ③ 고오방에 간 적이 없다 | (47.9%) | —————→ | (Q 9로) |

〈SQ 8-1〉 경찰관이 부재중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 응답)

- | | |
|----------------------|---------|
| ① 다른 고오방으로 갔다 | (7.9%) |
| ② 경찰서로 갔다 | (7.0%) |
| ③ 공중전화로 112 통보를 하였다 | (4.0%) |
| ④ 고오방의 전화로 경찰관을 호출했다 | (15.0%) |
| ⑤ 메모를 남기고 돌아왔다 | (6.3%) |
| ⑥ 나중에 다시 고오방에 갔다 | (27.6%) |
| ⑦ 용건이 있었지만 단념하고 돌아왔다 | (33.2%) |
| · 기타 | (4.7%) |
| · 모르겠다 | (1.2%) |

〈Q 9〉 사건·사고가 많은 대도시의 주요고오방에는 경찰관이 순찰 등으로 고오방에 부재중일 때에도 고오방을 방문한 주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오방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 | | |
|--|---------|
| ① 도시지역이 아니라 다른 많은 고오방에도 배치하는 것이 좋다 | (48.1%) |
| ② 사건·사고가 많은 도시지역의 고오방에만 배치하는 것이 좋다 | (10.8%) |
| ③ 경찰관이 상시 고오방에 있으면 되므로 상담원은 필요없다 | (19.1%) |
| ④ 화상전화 등을 설치하여 경찰서와 연락하면 되므로 상담원은 필요없다 | (9.5%) |
| · 기타 | (1.0%) |
| · 모르겠다 | (11.6%) |

〈Q 10〉 고오방의 경찰관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지키기 위해 가두에서 순찰을 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순찰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 | | |
|------------------|---------|
| ① 대폭 강화해 주었으면 한다 | (27.6%) |
|------------------|---------|

- ② 조금 더 강화해 주었으면 한다 (34.5%)
- ③ 현재 정도로 됐다 (31.7%)
- ④ 현재보다 축소해 주었으면 한다 (0.8%)
 - 기타 (1.1%)
 - 모르겠다 (4.4%)

〈Q 11〉 당신은 경찰관이 순찰을 행할 때에 어느 시간대나 장소를 중점적으로 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복수 응답)

- ① 도둑이나 변질자의 예방을 위한 야간순찰 (71.2%)
- ② 소년비행 등의 예방을 위한 유흥지의 순찰 (50.5%)
- ③ 유괴예방을 위한 공원 등 아이들의 집합장소의 순찰 (49.2%)
- ④ 위법주차 방지를 위한 교통 혼잡장소의 순찰 (33.9%)
- ⑤ 폭력단의 범죄방지를 위한 폭력단원의 활동지역 순찰 (28.5%)
 - 기타 (2.9%)
 - 특별히 없다(4.0%)
 - 모르겠다 (1.3%)

〈Q 12〉 고오방 경찰관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 및 요망을 듣기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순회연락을 행하고 있습니다만, 경찰관이 집을 방문하려 온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49.1%) → (SQ 12-1로)
- ② 없다 (40.5%) → (Q 13으로)
- ③ 모르겠다 (10.4%) → (Q 13으로)

〈SQ 12-1〉 그때 경찰관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졌습니까? (복수 응답)

- ① 친근감을 느꼈다 (51.1%)
- ② 듄직함을 느꼈다 (15.6%)
- ③ 근면함을 느꼈다 (24.3%)
- ④ 사무적이었다 (19.0%)

- ⑤ 말투와 태도가 좋지 않았다 (4.5%)
- ⑥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질문까지 받았다 (1.8%)
 - 기타 (2.4%)
 - 특별히 없다 (10.5%)
 - 모르겠다 (2.3%)

〈Q 13〉 당신은 고오방 경찰관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순회연락이나 고충상담을 통해 더욱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많이 해 나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지역주민과 더욱 접촉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59.6%) → (SQ 13-1로)
- ② 더 접촉할 필요가 없이 현재 정도로 좋다 (34.8%) → (Q 14로)
 - 기타 (0.1%) → (Q 14로)
 - 모르겠다 (5.5%) → (Q 14로)

〈SQ 13-1〉 당신은 고오방 경찰관이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더 많이 하면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 ① 경찰관에게 친근감을 느낀다 (36.7%)
- ② 경찰관의 존재가 가까이 느껴져 안심할 수 있다 (66.0%)
- ③ 경찰관에게 상담이나 협력을 하기 쉬워진다 (55.3%)
- ④ 경찰관의 지역실정 파악이 밝아져 사건·사고에 대처해 준다 (35.3%)
 - 기타 (0.5%)
 - 모르겠다 (0.9%)

〈SQ 13-2〉 당신은 고오방 경찰관이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 ① 지역을 빈틈없이 순찰한다 (57.9%)
- ②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따뜻하게 응대하고자 노력한다 (47.9%)
- ③ 겸손한 말투와 태도를 갖춘다 (18.2%)
- ④ 명함을 돌리는 등 자신을 지역주민이 알게끔 노력한다 (23.3%)
- ⑤ 고오방을 청결하게 하고 방문자시설을 만드는 등 주민의 방문을 쉽게 한다(19.5%)

- ⑥ 지역의 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35.8%)
- ⑦ 지역주민과 연락·협의하는 기회를 가진다 (31.2%)
 - 기타 (0.9%)
 - 특별히 없다 (0.8%)
 - 모르겠다 (1.0%)

〈Q 14〉 지역주민의 요망과 의견을 듣고 지역차원에서 범죄나 사고없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고오방별로 「交番・駐在所 連絡協議會」가 설치되어, 주민과 고오방 경찰관이 상호 교류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참가한 적이 있다 (3.0%)
- ② 참가한 적이 없다 (92.3%)
- ③ 모르겠다 (4.7%)

〈Q 15〉 당신은 「交番・駐在所 連絡協議會」에 참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만 고르시오.

- ① 꼭 참가하고 싶다 (5.6%)
- ② 가급적 참가하고 싶다 (36.9%)
- ③ 별로 참가하고 싶지 않다 (37.0%)
- ④ 전혀 참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12.8%)
 - 기타 (0.6%)
 - 모르겠다 (7.0%)

〈Q 16〉 당신은 고오방 경찰관으로부터 지역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협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협력하겠습니까? 하나만 고르시오.

- ① 반드시 협력하겠다 (22.5%)
- ② 가급적 협력하겠다 (66.1%)
- ③ 별로 협력하지 않겠다 (6.2%)
- ④ 전혀 협력하지 않겠다 (1.5%)
 - 기타 (0.6%)

· 모르겠다 (3.1%)

〈Q 17〉 당신은 고오방이 지역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복수 응답)

- ① 고오방신문 등의 홍보지를 발행한다 (44.3%)
- ② 사건·사고 정보를 공공건물의 게시판에 붙인다 (40.3%)
- ③ 팩시밀리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5.5%)
-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4.6%)
- ⑤ CATV나 유선TV 등의 지역미디어를 활용한다 (8.3%)
- ⑥ 지역주민과 대화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갖는다 (30.2%)
- ⑦ 경찰관에 의한 순회연락을 적극적으로 행한다 (35.4%)
- ⑧ 지역안전 정보를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한다 (4.5%)
- 기타 (1.5%)
- 정보를 전할 필요가 없다 (3.1%)
- 모르겠다 (7.5%)

〈Q 18〉 당신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고오방 경찰관이 어떤 활동을 강화해 주길 바랍니다? (복수 응답)

- ① 112 통보에 대한 대응 (24.5%)
- ② 교통사고 등에 의한 부상자의 구호 (17.1%)
- ③ 순찰 (63.4%)
- ④ 불법주차 등의 단속 (33.2%)
- ⑤ 통학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지도 (37.8%)
- ⑥ 반상회 등에서의 방법강습 (24.2%)
- ⑦ 순회연락(방문심방) (26.7%)
- ⑧ 마을축제 등에서의 혼잡경비 (13.1%)
- ⑨ 고오방에서의 경계 (13.6%)
- ⑩ 가출인, 미아 및 만취자의 보호 (16.2%)
- ⑪ 고충상담에의 대응 (26.2%)
- ⑫ 지리안내 (17.2%)

⑬ 유실물·습득물 신고접수	(18.1%)
⑭ 피해신고 접수	(17.6%)
⑮ 고오방활동에 대한 홍보지의 발행	(16.7%)
· 기타	(2.2%)
· 특별히 없다	(6.4%)
· 모르겠다	(0.6%)

경찰관을 위한 私法研究

- 수사권행사주체로서의 당연한 경찰 -

〈치안연구소 경정〉 배성인

I. 수사권행사주체로서의 경찰

1. 經緯

경찰은 昭和24年(1849년) 1월 현행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차의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제2절에서 기술하겠지만 그 전에 경찰수사권의 經緯를 살펴보자

一. 明治元年

明治元年(1868년) 1월 明治新政府가 중앙집권국가로서 발족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안확보가 우선 필요하였다. 그래서 형벌을 명확히 하여 민심이 귀착하는 곳을 하나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통일된 형벌을 가져야 하였다. 그것이 明治3년(1870년) 12월 제정된 新律綱領이었지만 이것은 明律(明의 律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律令系 법률로서, 明治6년(1873년)에 改定律令으로 수정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동시에 치안을 직접 담당할 중앙기관이 필요하였다.

이 요청에 부응하여 明治4년(1871년) 7월 司法省이 설치되었다. 東京에는 同年 10월, 邏卒 3,000명을 둔 것이 근대경찰의 始初라고 말하여지나 지방에서는 아직 警察의 창설정후는 없고 廢藩置縣의 과도기였다.

明治5년(1872년) 8월 司法省에 警保寮를 설치하여 전국경찰사무를 중앙정부 手中으로 통일시켰다. 당시는 藩閥정부에 대한 不平 반대운동의 기운이 왕성하고 도처에서 폭동·蜂起가 일어났으며 국내치안은 반드시 충분하게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일관되게 非常한 열의와 實行力을 가지고 경찰권의 강화·확충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일본 최후의 內戰(현행법하에서는 내란죄로 論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할 수 있

는 西南戰爭은 明治10년(1877년) 2월 15일 勃發하였고, 初代司法省 長官을 지낸 江藤新平에 의한 佐賀의 亂이 前年인 明治9년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 당시의 치안상황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무렵부터 지방인 府縣에「團束出張所(屯所) 및 團束組(경찰관에 해당)」를 두어 近代警察이 창설되게 되었다.

한편 明治5년(1872년)의 司法省職制章程으로 檢事를 두어「검사는 재판을 요구할 權限은 있으나 재판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고 되어 있었으나, 그 임무는 判事의 심판을 감시하고 司法警察을 管掌하는 것이며 公訴를 독점할 국가기관인 지위는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의 起訴없이 裁判所가 직권으로 심판을 개시하는 糾問主義的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해석된다.

明治6년(1873년) 11월 內務省이 설치되어 明治 7년(1874년) 1월에 司法省에서 警保寮가 移管되었다. 그 때 司法警察規則이 제정되었다. 行政警察規則(太政官達29號, 경찰관에 해당하는 捕亡吏·團束組·番人 등의 명칭을 邏卒로 改稱하였다)의 제정은 이듬해인 明治 8년(1875년) 3월이었다.

二. 明治13年 治罪法

明治13년(1880년) 7월 절차법 성격을 가진 治罪法이 프랑스법을 繼受하여 舊刑法과 함께 제정되어, 明治23년(1890년)에 이에 근본

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고 繼承된 舊刑事訴訟法과 대체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治罪法은 검찰관에 의한 國家訴追主義와 독점주의를 明記하였다(제1조). 그밖에 수사는 검찰관 직무로 하였다(제34조).

또한 東京警視本署長(후에 警視總監에 해당) 및 府縣長官(東京府에서는 東京警視本署長으로 補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東京府長官은 제외되어 있다. 이런 立法形式의 기본은 약간의 字句 修正은 있었으나 舊형소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되었다)은「司法警察官으로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검사와 동일한 權限을 가지고(제60조①)」、「警視·警部」는「檢事의 補佐로서 그의 지휘를 받아 제3편에 정하는 규칙에 따라 司法警察官으로서 범죄를 수사(제60조②)」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었다.

舊형법이 범죄를 違警罪·輕罪·重罪로 분류함에 따라 제1심재판소를 違警罪裁判所(2章)·輕罪裁判所(3章)·重罪裁判所(5章)로 구분하였다. 違警罪裁判所 檢察官의 직무는 그 재판소 소재지의 警部가 행하였다(제51조).

三. 明治23年 明治刑訴法

明治23년(1890년)의 刑事訴訟法(법률96호 「明治刑訴法」라고 함) 및 종래의 형사소송법(大正11년<1922년> 법률75호 「舊刑訴法」이라고 하고 현행법은 「刑訴法」이라고 함)은 수사에 있어서의 검찰관과 경찰관의 관계에

관하여 약간의 字句修正은 있었으나 기본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은 채, 治罪法이래 형소법이 개정될 때까지 실시되었다.

四. 大正11年(1922년) 舊刑訴法

舊刑訴法下의 수사에 있어서의 검찰관과 경찰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관은, 巡査인 경찰관과 그 이외의 경찰관으로 구분한다.

그 이외의 경찰관으로서 府縣(警視廳은 警視總監과 巡査이외의 경찰관)의 警察部長이하의 巡査이외의 경찰관을 가리키나, 이들의 「경찰관은 檢事の 補佐로서 檢사의 지휘를 받아 司法警察官으로서 범죄를 수사하였다(舊刑訴法 제248조 제1호)」.

(2) 「巡査는 檢사 또는 司法警察官의 명령을 받아 司法警察吏로서」수사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다(舊刑訴法제249조 1호).

(3) 「警視總監과 地方長官(知事を 말함. 단 東京府知事は 제외)은 司法警察官으로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지방재판소 檢事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舊刑訴法 247조)」것으로 되었다.

(4) 裁判所構成法 제84조제1항은「司法警察官은 檢事が 직무상 그 檢事局 관할구역 내에서 發한 命令 및 그의 상관이 발한 명령에 따르도록」하였다.

(5) 治罪法이래 舊刑訴法이 제정될 때까지의 수사에 있어서 檢察官을 中心機關으로 자리잡게 하려는 思想을 답습하였는데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가. 수사는, 수사를 위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一切의 수사는 국가형벌권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의 제1단계이다. 형벌권 행사는 공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公訴는「檢事が 行」하며(舊刑訴法제278조. 현행법 제247조와 同一) 검찰관이 독점한다.

모든 수사는 公訴官인 검찰관이 적정하고 능률적인 公訴遂行을 할 수 있도록 搜查를 다하지 않으면 검찰관의 공소가 不適當하고 비능률적인 것으로 될 수도 있고 공판에 결과를 미침은 물론, 피의자·피고인의 人權에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검찰관측이 搜查側에 注文을 하게 된다.

이것이 司法警察官 및 司法巡査에 대한 지휘·명령의 第1의 근거가 되었다.

나. 수사는 형벌법령에 따라 범죄사실 중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법률적 素養이 높은 검찰관을 搜查中心機關으로 하지 않으면 형벌법령의 해석·운용상 잘못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관을 수사의 中心機關으로 하고 다른 기관은 그의 지휘·명령하에서 일원

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성과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된다.

이것이 司法警察官을 검찰관의 補佐로 하고 그의 지휘명령하에 司法巡查를 검찰관 또는 司法警察官의 補助로 하는 第2의 근거가 되었다.

五. 內務省警察

內務省警察은 「警察」作用을 司法警察과 行政警察로 구분하고 있었다.

司法警察은 형사소송법(治罪法)에 의해 규제를 받고, 형사재판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司法大臣의 所管下에 두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경찰의 취지는 「人民의 凶害를 예방하고 安寧을 保全하는데」 있고, 「행정경찰의 힘이 미흡하므로 법률을 위반한 者가 있을 때 그 범인을 探索逮捕하는」 것은 司法警察의 직무라고(행정경찰규칙, 제1조, 제3조, 제4조)하고, 행정경찰은 행정집행법(明治33년<1900년>법률84호, 泥醉者等の 검거구속, 凶器등의 假領置등), 치안경찰법(明治32년<1899년>법률36호, 政治結社·集會등의 단속)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경찰, 위생경찰, 출판경찰, 풍속경찰등을 비롯한 講學上에서 警察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 內務大臣의 소관으로 하고 있었다.

六. 司法警察 分離論

上記에 대하여 司法警察分離論이 일찍이 舊헌법시대부터 대두되었다. 즉 司法警察官을 직무상은 물론, 신분상에 있어서도 司法大臣下에 두어 검찰관의 지휘·명령권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게 하고, 경찰관에 의한 인권유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그 자질향상을 기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 주장은 昭和20년(1945년) 10월에 司法省이 형소법개정 構想을 굳히기 시작하여 昭和21년(1946년) 10월의 형사소송법개정에 관한 臨時法制調査會의 答申에서「司法警察官은 검찰청 소속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는 附帶決議가 敷衍되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한 것이 현행 형소법 제191조 2항의「檢察事務官」제도인 것이다.

七. 內務省 解體

점령정책에 의한 내무성 해체후의 司法警察事務는 국가지방경찰본부 및 크고 작은 업청난 數의 자치체경찰본부에 계승되게 되었다.

八. 昭和28년(1953년) 改正

昭和27년(1952년) 4월 28일 對日平和條約이 발효되어 점령정책은 끝나고 점령중에 있었던 입법이 재검토되기 시작되었다.

昭和28년(1953년) 법무·검찰측으로부터 경찰수사불신의 소리가 높았다. 형소법 제193조제1항과 同 제199조제2항 등을 포함한 형소법일부개정안이 정부제안으로 16회 국회에

서 제출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즉

(1) 종래의 同 제193조제1항 후단 규정의 「이 경우의 일반적 지시는 공소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죄수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준칙을 정하는데 한정된다」를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하였다.

※ 현행규정: 제193조(검찰관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지시 지휘) ①검찰관은 그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指示는 수사를 적정히 하고 기타 공소의 수행을 완전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準則을 정하는 것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가. 改正案의 이유

「개정전의 규정에서는 수사와 공소를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司法警察職員의 수사가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검찰관이 필요사항을 지시하는 것은 本條의 一般的 指示權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수사와 공소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수사가 적정하게 행하여져야 비로소 공소가 적정하게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本條의 개정을 통하여 一般的 指示權의 범위가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의 適正, 나아가서 공소의 적정을 기하려고 한다」고 逐條說明書에 기재되어 있다.

나. 齋藤 國警長官(註, 國家地方警察本部長官)의 反對意見 陳述(7월 16일 衆議

院 法務委員會. 筆者要約)

① 本규정 개정관련 배경 사정설명

「公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 準則」에서 破防法(註, 破壞活動防止法)違反事件의 수사의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그 수사의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검찰측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면 선거위반의 단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193조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해석이 이 一般的 準則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하면 금후 이것이 다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甚大하다.

일일이 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수사에 착수하여서는 안된다는 指示를, 一般的 準則으로서 發하여진다는 것은 현재의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그르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당시 木村 法務總裁 및 清原 檢務長官(법무차관 제도는 없었다)에게도 이의를 제기하고 最高檢(註, 우리의 大檢察廳)에게도 나(齋藤國警長官)는 이 점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大臣(法務總裁)측으로부터 한번 의견을 듣고 나서 大臣의 決裁를 얻어 주기 바란다고 하였는데도 그 다음날 檢事總長이 법무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 나는 법무총재에게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물었더니 지금 방금 결재하였다고 대답하므로 나는 「그것은 경찰측 특히 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가」라고 묻자, 법무총재는 「경찰과의 이야기는 끝났다고 하기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여기에 清原氏를 불러 지금까지의 經緯를 들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선 그 전에 그 문서를 시행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大臣을 통하여 最高檢에게 말하였으나 「방금 시행하여 버렸다」라고 들었다.

그 施行文의 내용은 (破防法違反事件의 수사에 관해서 ……司法警察職員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를 바란다. 이하 筆者 要約)

- ㉗ 檢事正으로부터 수사착수에 관하여 事前承認을 얻을 것
- ㉘ 체포·압수·수사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에 관하여 사전에 檢査官과 협의할 것
- ㉙ 同法위반사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수시 檢査官에게 연락할 것

라는 것으로 各地方의 檢事正이 都道府縣警察隊長, 各管區自治體警察長, 特別司法警察職員의 長앞으로 通牒하도록 하는 檢査總장의 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취지이다.

② 국가공안위원회의 반대

나는 「하여튼 지금 한번 다시 再考하여 줄 수 없는가」하고 大臣에게 말하였지만 「벌써 지시하여 버렸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래서 국가공안위원회에 보고하였더니 국가공안위원회는「이러한 지시는 경찰을 검찰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라고 하므로 그런 취지의 답변을 最高檢에

보냈다.

自警(註, 자치체경찰)의 쪽에서도 크게 반대를 하였기 때문에 指示의 實際는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가 되어 버렸다.

③ 사실상의 밀접한 연락

우리는 本趣旨를 끝까지 관철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檢事正과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행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조치를 취해 두고 있었다. 원래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이 獨斷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검거한 例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왜 이를 제193조의 指示로 하려는 것인가, 상기의 指示와 같은 해석을 꼭 취하려고 한다면 국회의 意見으로 결정하여 주기 바란다.

다. 衆議院의 附帶決議

① 지방행정위원회(7월 23일 決議하여 법무위원회에 提議함)

금번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刑事訴訟法一部를 개정하는 법률안 中, 제193조 및 제199조에 관한 부분은 新警察制度가 實施된 以來 5년간 민주적으로 육성되어 온 경찰을 檢査官의 隸屬下에 두고 刑事訴訟法中 불과 數個의 條文을 개정함으로써 경찰제도 그 자체를 총력을 다하여 강대한 권력조직에 봉사시키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의 적정화 및 인권의 존중은 모두 지극히 중요한 사항이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찰자체에서 자발적·자율적인 肅清의 결실을 올리게 하는 것이 유효적절하며 그렇게 하므로써 경찰·검찰의 상호독립·상호억제라는 원칙을 유지시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정치의 要諦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위원회는 以上の 見地에서 상기의 개정안에 대하여 反對意思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검찰·경찰이 서로 그 입장을 존중하면서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여 인권보장과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기대한다.

② 법무위원회(7월 25일 決議)

검찰관이 정하는 一般的 指示를 행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이 미리 긴밀히 연락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政府는 원칙으로 삼기 바란다.

상기의 一般的 指示에 따라 개개의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지 않도록 留意하기 바란다.

(2) 종전의 同제199조 제2항은 以下와 같았다.

「前項의 체포장은, 검찰관 또는 司法警察員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發한다」

다음의 취지로 개정하려는 政府(法務省)案이 제안되어 경찰측도 같은 政府員이면서 국

회에서 반대하는, 즉 政府部內의 意見이 조정되지 못한 채 국회에 제안된 것으로 異例中の 異例라고 하여야 할 진기한 일이었다. 國會審議에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現行규정으로 개정되게 된 것이다.

가. 改正案(法務省)要旨

- ① 「司法警察員이 통상체포하는 경우에 체포장을 청구함에는 원칙적으로 검찰관의 동의를 요할 것」
- ② 「재판관은 체포장 청구가 검찰관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 명백할 때는 체포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였다.

나. 개정안의 이유

「최근 체포장 남용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고 유력한 法曹界에서도 本案과 같은 규정을 제정하기를 희망하는 소리가 높았기」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다. 齋藤 國警長官의 反對意見陳述(7월 16일 衆議院 法務委員會).(1의(2)에 계속하여 筆者 要約)

① 法制審議會提案前의 協議方法 提議나는(齋藤國警長官) 금년들어 형소법개정으로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附加되고, 특히 令狀의 濫用防止가 규정된다는 취지의 소문을 듣고 法務次官에게「경찰과 검찰이 직접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심의회에 제안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서로 연구하여 좋은 案을 냅시다. 위원회에서 갑자기 案이 나와 서로 싸움을 하는 꼴사나운 짓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제의, 法務次官이 찬성을 하였다. 그러나 들연 통지가 있었고 本案과 현재 제안되어 있는 제193조제1항의 指示관련 案외에

㉞ 「개개의 구체적 사건수사에 관해서도 검찰관의 판단에 의하여 中止나 承認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

㉟ 「檢察官의 경찰관에 대한 實務指導」 취지

㊱ 「검찰관의 指示·指揮에 불복종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파면의 청구」 취지

의 각 취지의 권한을 검찰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案이 제출되었다.

② 事前協議 未實施

이 결과 令狀의 남용방지를 위해 실제적으로 兩者가 연구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法案이 提案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국회의 의결

가. 一般的 指示(제193조 제1항)의 개정안은 제안대로 가결되었으나 그 해석에는 衆議院의 附帶決議가 있다.

나. 令狀請求(제199조 제2항 關係)의 개정안은 衆議院에서 현행법(當時 存在하였던 市町村·特別區公安委員會에 관한 規定과 警察吏員은 現在 削除되어

있음)의 規定으로 修正되어 參議院으로 송부되었다.

參議院에서는 衆議院의 修正案(현행법)에서 「명확히」를 삭제한 후, 「재판관은 司法警察員으로부터 제1항의 체포장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검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再修正案을 의결, 可決시킨 후 衆議院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衆議院은 상기의 參議院의 再修正案을 동의할 수 없다고 하여 衆議院 修正案을 헌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결시켜 현행법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2 警察에게 第1次 搜查權을 賦與한 理由

외 舊형소법상의 검찰관중심의 수사가 현행법과 같이 개정되었던 것일까.

一. 警察力 分散化를 도모하는 占領政策과 無關하지는 않았다는 점

(1) 昭和22년(1947년) 4월 30일 占領軍司令部 히트니 政治部長이 發한 「內務省 分권화에 관한 건」에 따라 內務省 分權에 관한 改編案등이 제시되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內務省은 중앙집권적 통제기관으로서 戰爭 遂行機關이었기 때문에 이를 해체하여 지방 분권화시킴으로써 일본이 다시 軍事國家權力이 되지 않도록 일본의 약체화를 피하려고 한

것이다.

예를 들어 總司令部 民生局 보고서의 「내무성 폐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警保局만으로도 일본의 국내경제 모든 면을 통제하고 일본에서의 모든 家庭의 일상생활까지 지배하였다」라고.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경찰을 所管하였던 警保局의 해체는 피할 수 없었다.

(2) 同年 9월 16일 경찰제도에 관한 맥아더 書翰이 발표되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都市 및 町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한 자치체경찰을 보유하며, 그의 長은 當該 自治體의 長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공안위원회에 의해 任免될 것.
- 나. 지방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국가지방경찰을 설치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가지방경찰에 대하여 행정적 권한을 보유하는데 그치고 各 都道府縣內에 있는 국가지방경찰에 대해서는 當該 都道府縣의 공안위원회가 지휘권을 行使할 것.
- 다. 국가지방경찰과 지방경찰間에는 지휘 명령관계를 설정하여서는 안될 것.
- 라. 이를 骨子로 한 舊경찰법(昭和22년 법률 196호)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및 공안의 유지를 담당하는 것을 그 책무로 한다(제1조)」라고, 明治의 경찰제도 발족 이래 처음으로 수사에 대한 경찰의 책무를 명기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소송법은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은 서로 독립한 수사기관이 되어 원칙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司法警察職員(警察官)은 제189조 재2항에 의해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 되었음에 반하여, 檢察官은 제2차적 즉 補正的인 수사기관이 되었다(제191조제1항).

그리고 檢察官에게는 司法警察職員에 대하여 限定的 指示·指揮權이 인정되었다(제194조)

舊경찰법은 立法形式으로서 前文이 첨부된 異例的인 법률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입법 형식상 制定文이나 前文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헌법이 前文을 둔 以來, 이 형식을 따라 制定의 由來 및 그 법률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 원칙을 특히 강조하여 천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드물게 두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기본법, 일본학술회의법, 국립국회도서관법 등을 들 수 있으나, 舊경찰법은 그 數가 적은 例를 따라 前文을 두었다.

「憲法精神에 따를 것과 지방자치의 眞意를 추진하는 觀點에서, 「국민에 속하는 민주적

權威 組織을 확립할 목적으로」 경찰법을 제정하였다는 취지가 규정되었다. 당시의 입법자의 非常한 熱意의 표명이라고 보여지지만, 현행법으로 改正될 때에는 前文을 두는 습관이 적기 때문에 삭제되었다.

舊경찰법은 昭和22년(1947년) 12월 8일 성립되어, 昭和23년(1948년) 3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二. 憲法이 昭和22년 5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점

(1) 지방자치의 本旨에 適合

舊경찰법은 立法動機에 있어서 점령정책에 起源을 두고 있었으나 헌법의 기본원칙인 민주주의의 근본에 입각하여 權力集中을 가능한 한 피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92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의 本旨」에 적합한 것이었다. 즉 「지방자치의 本旨」라고 함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단체자치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단체의 존재를 인정하여, 그 지역에서의 행정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主體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의 원칙」이라 함은 그 단체의 組織이나 권한행사에 있어서 주민의 참가·통제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의 兩者는 상호 의존하며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중앙정부로부터

터 獨立되어 그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團體內部에서 住民自治인 參加·統制가 없는 경우는 물론, 團體內部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있을지라도 그 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로이 그 權能을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前述의 一의 經緯에 근거를 두어 다음의 骨子로 이루어진 舊경찰법은, 「市 및 인구 5,000명이상의 市街的 町村」에 경찰을 유지시킨다는 점 등에서 협소하고 재정적으로도 경찰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치체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本旨」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현행 경찰법은 都道府縣單位 자치체경찰로 개정된 것이 주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舊경찰법을 계승하여 헌법상의 「地方自治의 本旨」는 그대로 살리고 있다. 舊경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國家地方警察(제2장)과 自治體警察(제3장)으로 구분한 것.

나. 국가지방경찰은 국가공안위원회(同章 제1절, 同제2절)와 都道府縣公安委員會(同章 제3절)로 구분하여 搜查등의 운영관리(제2조제2항)는 都道府縣公安委員會가 행하고(제20조제2항), 國家公安委員會는 그를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사무를 관장(제4조제2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

다. 자치체경찰은 市町村公安委員會(特別區公安委員會)가 관리하고(제43조·제51조), 국가지방경찰의 운영관리 또는 행정관리(인사·조직·예산에 관한 일체의 사항. 제2조제1항)에는 따르지 않을 것(제54조).

라. 國家公安委員會는 內閣總理大臣의(제4조제1항), 都道府縣公安委員會는 都道府縣知事の(제20조제1항), 市町村公安委員會(特別區公安委員會)는 市町村長(都知事)의 각각 「所轄(당해기관의 독립성이 강하여 總理大臣등과의 관계가 가장 약한 것으로 행정기구의 配分圖로서는 일응 總理大臣등의 밑에 속하는 정도의 것. 따라서 지휘·명령의 관계는 없음)」하에 둬으로써 中央·地方의 정치로부터 중립확보를 도모할 것.

(2) 檢察官一體의 원칙과의 關係

가. 검찰관은 그 한사람 한사람이 검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 獨任制 官廳인 반면 전국적으로 통일적·계층적인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항상 一體로서 활동한다. 이를 檢察官一體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검사총장이 모든 검찰청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다(검찰청법 제7조). 이 中에는 「개개의 사건의 조사 또는 처분에 관

한」 수사가 당연히 포함되어(同法 제14조의 對比) 검사총장이 통일적인 수사기관의 최고책임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나. 상기와 같은 통일적 수사기관이, 만약 舊형소법시대와 같이 司法警察職員의 수사를 지휘·감독하게 되면 검찰관에 의한 경찰수사 지휘·감독의 통일이 달성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경찰법이 기대하는 지방분권에 근거한 수사권의 多元化는 저해되고 검찰관에 의한 경찰수사 지휘·감독의 통일이 달성되게 된다.

이것은 前述한 衆議院地方行政委員會 附帶決議가 지적하고 있듯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법을 시행하는 이상, 舊형소법시대와 같은 검찰관에 의한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피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검찰청법 제14조는 法務大臣(昭和22년 법률19호로 法務總裁로 개칭되어, 昭和27년<1952년> 법률268호로 다시 現名稱으로 還元됨)의 검사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事件이나 搜查中인 사건에 관하여 法務大臣이 同條에 의거하여 개개의 사건조사 또는 처분에 관하여 검사총장에게 지휘한 경우에, 그 指揮內容이 위법이 아닌 한 검사총장은 경찰을 지휘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는 경찰법이 정치로부터 중립

확보를 기하고 있는 것을 저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찰법은 과거 政黨政治下의 경찰에 대한 영향이 강하여 그 폐해를 받은 예를 피하기 위하여 國家公安委員會·都道府縣公安委員會 및 市町村公安委員會(현행 경찰법에서는 都道府縣公安委員會로 되어 있지만)에 의한 管理制를 취하는 한편, 內閣總理大臣, 知事(市町村長)와의 관계는「所轄」이라는, 違法·合法를 불문하고 指揮·命令關係가 없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도 上記의 法務大臣이 검사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介入시키면 당시의 정치권력은 적어도 위법이 아닌 한 경찰수사에 대하여 지휘·명령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서 「所轄」을 배제하고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경찰법이 존재하는 이상, 舊형소법시대와 같은 검찰관의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피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舊형소법시대와 같이 검찰관의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이 행사되고 있었던 때에도 實際 運用에 있어서는 檢察官의 지휘·감독이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司法警察官吏의 수사에 관한 책임의 불명확화를 초래하고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과 갭(Gap)이 있는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책임의 명확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民主主義下에서는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다.

II. 형소법이 경찰에 부여한 구체적 수사권의 내용

형소법이 경찰에게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여 경찰을 제1차 수사기관으로 인정한 실질적인 의의는 단지 舊형소법이 수사에서의 경찰관 지위를 검찰관의 補佐 또는 補助者로 되어 있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수사의 主體者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은 課하여진 重責을 새삼 돌이켜보고 더욱더 研鑽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調査權의 賦與

一. 舊형소법은 司法警察官 및 司法警察吏에게 검사의 補佐(구형소법 제248조 제1호) 또는 補助(舊형소법 제249조제1호)의 지위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현행법과 같이 범죄가 있다고 思料될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한다(형소법 제189조제2항)라고 규정한 조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補佐 또는 補助는 수사에 대하여 책임있는 지위라고는 할 수 없다.

二. 司法警察官 및 司法警察吏에게 피의자·참고인 조사권을 부여한 규정이 없었다.

明治初년에 경찰제도가 발족된 이래, 「警察」이라는 말이 점차 普及되어 「警察」이라고 함은 범죄를 수사하는 官署이고 피의자·참고인을 조사, 그 내용을 調書化할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라는 것이 국민의 常識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률적으로는 뒷받침되어 있지 않았었다.

현행 형소법 제197조제1항, 제198조제1항 및 제223조제1항은 上記의 국민의 상식을 입법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입법화될 때까지의 기간을 잘 음미하여 주기 바란다.

원래 현행 형소법 제197조는 舊형소법 제254조의 규정을 거의 承繼한 것이며, 현행 형소법 제197조제2항도 舊형소법 제254조제2항의 규정 그대로 「公務所 또는公私의 단체에 照會」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해석을 둘러싸고 司法巡查일지라도 照會할 수 있다고 하면서 司法巡查로는 「타당하지 않은 점이 많다」라는 비판도 있다.

나는 이 비판에서 주장되는 타당하지 않은 사례를 많이 듣지 못하여 잘 모르겠지만 搜查官의 能力向上으로 이 비판에 대응하고자 굳이 소개한다.

三. 현행법 제198조제1항의 司法警察職員의 조사권과 舊형소법상 司法警察官吏의 피의자의 조사권은 다음과 같은 相違點이 있다.

(1) 현행 형소법 제198조제1항 본문의 규정과 舊형소법상의 조사의 차이

舊형소법에서는 현행범체포의 경우에 以下の 조치가 취하여졌으나, 현행 형소법 제198조제1항 본문과 같은 조사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다. 즉 司法警察官이 직접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또는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즉시 訊問하여……留置의 필요가 있다고 思料될 때에는 늦어도 48시간내에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하였으나 이때 「訊問」 즉 피의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었다(舊형소법 제128조).

舊형소법 제254조는 「搜查에 관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형소법 제197조제1항 본문과 同一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舊형소법상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補佐로서 필요한 조사를 하였던 것임에 반하여 현행 형소법상의 사법경찰직원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커다란 차이점이다.

(2) 현행 형소법 제198조제1항 단서의 규정과 舊형소법상의 조사의 차이

舊형소법상 피의자는 訊問時에 陳述義務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단지 그 의무에는 制裁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搜查方法을 해설하는 학설 중에, 최근 糾問的 搜查觀과 彈劾的 搜查觀이라는 입장에서 논쟁되는 것이 있다. 그 때 例示로 드는 것이 현행 형소법 198조 1항 단서이다. 즉

「피의자는 체포 또는 勾留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후 언제라도 퇴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舊형소법에는 이에 상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었다. 현행 형소법은 舊형소법보다도 검찰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상 권한이 강화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에 (例示되는) 몇 안되는 規定中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해석을 둘러싸고 身柄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는 調查의 受忍義務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와 같은 입장을「糾問的 搜查觀」이라고 한다), 실무적으로도 受忍義務가 있다고 하여 司法警察職員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에 반대하여 身柄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도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의 受忍義務는 없다. 따라서 피의자가 調查室에 가더라도 조사를 거부하면 조사실에 잡아 두지 말고 留置施設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論(平野龍一「刑事訴訟法」有斐閣, p.106. 이와 같은 입장을「彈劾的 搜查觀」이라고 한다)이 대두하기 시작하여 재판관 중에서도 同調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兩論의 當否는 제쳐놓겠지만 舊형소법에서는 검찰관이 강제처분이 필요하다면

豫審判事에게 豫審을 청구하고 있었다(舊형소법 제255조제1항).

豫審은 검찰관이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예심판사라고 한다)이 공판전에 피고사건을 공판에 付하여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審理하였다(舊형소법 제195조). 거기에서는 공판에서 조사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행하여졌다.

즉 현행법에 대해서는 예외로서 수사기관에게도 강제처분이 허용되었으나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재판소의 權限下에 두었다. 따라서 성질상 수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심판사가 실질적인 수사의 강제처분으로서의 訊問을 하였다. 司法警察官吏는 舊형소법 제139조가 「피의자를 訊問」하는 경우에 「被告人訊問」의 규정을 準用(제139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조사는 인정되지 않았었다.

四. 鑑定·通譯·翻譯을 囑託(제223조제1항 후단) 할 수 있다.

이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재판소가 命하는 鑑定·通譯·翻譯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通說이다(小野清一編「刑事訴訟法上」有斐閣 p.513).

舊형소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은 없었다. 이것이 피의자·피고인측도 당사자로서 공평하게 이용이 허용되어야 할 증거물을 수사측(검

찰관도 포함하여)이 獨占·保管하여 때로는 開示조차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隱匿등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대응조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逮捕權 賦與

舊형소법이 수사관에게 피의자 체포를 인정한 것은 현행범 체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私인과 똑같이 취급하였던 것이다(舊형소법 제124조·同제125조).

단지 「要急事件(舊형소법 제123조)」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음의 각호에 열거되는 경우로써 급속을 요하여 판사의 勾引狀을 요구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가 勾引狀을 發하거나 이를 다른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 명령 또는 촉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 (2) 현행범이 그 場所에 없을 때
- (3) 현행범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건의 共犯을 발견한 때
- (4) 卽決의 囚人 또는 本法에 의하여 拘禁된 者가 도망한 때
- (5) 死體 檢證에 의하여 범인을 발견한 때
- (6) 피의자가 상습으로 강도 또는 절도의 죄를 범한 때

舊형소법은 피의자 「訊問」을 압수, 수색, 증인신문등과 同列에 두어 원칙적으로 그 권

한을 재판관(豫審判事. 舊형소법 제255조제1항)에게만 인정되었다.

檢事は 상기의 要急사건으로 판사에게 勾引狀을 요구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勾引狀을 발부하든가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하여 勾引狀을 發付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勾引狀」이라 함은 오늘날 일컬어지는 「逮捕狀」에 해당된다. 즉 舊刑訴法下에서는 要急事件의 경우에 검사에게도 체포장 발부가 인정되어 있었다. 이것이 검찰관도 司法官으로 보여지는 理由中の 하나가 되었다. 이 때문에 헌법시행당시 제35조 제2항의 「司法官憲」에 檢察官도 포함되어 체포장 발부가 檢察官에게도 인정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겼다. 오늘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더욱이 형법 제98조의 「勾引狀」은 舊형소법이 피의자에 대한 勾引狀을 발부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체포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온 연혁으로 볼 때, 형소법 제62조등에서 말하는 勾引狀외에 오늘날의 「逮捕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留意하여 주기 바란다.

3. 調書 證據能力의 立法化

舊형소법은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有無에 관해서 언급이 없었으나 현행 형소법에서는 제321조에서 明文化하였다.

피고인이외의 者의 진술서면에 관하여 검

찰관의 面前調書에 대해서는 제321조제1항 제2호의 요건으로 능력이 인정되지만, 사법경찰직원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一般私人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호의 규정에 속한다.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증거능력을 충족시키게 되기 때문에 舊형소법보다도 다소 법적으로는 整備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제2호조서와 함께 「특히 信用하여야 할 狀況」을 들고 나와 다투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어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이 현행형소법과 舊형소법상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관의 권한과 책임을 비교한 개략적인 내용이다. 이것을 현행 헌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현행 형소법은 수사에 관해서는 勾留期間을 20일로 한 것을 포함하여, 舊형소법보다도 수사에 관해서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고 보여지는 점도 상당히 눈에 띈다. 특히 경찰관(司法警察職員)에 관해서는 舊형소법에서는 想像도 할 수 없었던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것은 점령정책을 起點으로 하는 헌법개정과 경찰법개정과 無緣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前述한 대로이다.

Ⅲ. 警察을 搜查主體로 함에 관한 批判

1. 비판의 整理

一. 法務省등의 비판(昭和28년<1953년> 형소법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 설명)

昭和28년의 형소법개정 國會審議에서 경찰수사권 行使의 제한에 관하여 政府委員間 뜨거운 攻防이 전개되었는 바 이는 드문 例中の 하나이다. 그 상황의 일부는 제1장 八에서 기술하였지만 거기에 以下와 같은 비판도 附加되었다.

法務省側 政府委員·參考人은 「경찰의 체포장 남용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昭和26년(1951년) 9월 27일 法制審議會

경찰관이 債權回收와 관련하여 회사의 담당자에게 출석요구하여 「그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장도 전부 체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변호사를 통하여 담당검사에게 相談하였더니 「공평하게 하도록」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2) 昭和28년(1953년) 7월 18일 衆議院 法務委員會

가. 法務省側 설명

① 체포장 남발이 많은데에는 피의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갑자기 체포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② 「체포장 운용에 관한 조사(後述)」에 의하면 체포되고 나서 起訴段階까지 身柄拘束이 계속된 人員數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不當逮捕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처음부터 체포할 필요가 없었던 者에 대하여 체포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추측된다.

具體的인 事件에서는 民事事件이 많다.

調査資料(實人員數등은 필자 요약)

□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의 총인원 44,601명 中

身柄과 함께 送致(家庭裁判所 送致)	55.6%
勾留된 者	41.8%
勾留된 채 起訴된 者	16.5%
(釋放)	83.5%

【內 譯】

- 통상체포
 - 勾留된 채 起訴者 24.8%
 - (釋放 75.2%)
- 긴급체포
 - 勾留된 채 起訴者 30.1%
 - (석방 69.9%)
- 현행범체포

勾留된 채 起訴者 8.6%
(석방 91.4%)

不拘束 搜查 人員	35.1%
현행범 체포 인원	31.8%
체포장 청구 인원	33.1%
• 通常逮捕 請求 人員	24.2%
• 긴급체포 청구 인원	8.9%

- 불구속 수사 인원
 - 國警 49%
 - 自警 29%
- 현행범 체포 인원
 - 國警 19%
 - 自警 37%

□ 6大都市間(합계 27,334명)에 상당히 差가 있음이 눈에 띈다.

- 不拘束搜查 人員 6,065명
 - 東京 3,430명
 - 大阪(오사카) 350명
 - 名古屋(나고야) 668명
 - 橫濱(요코하마) 577명
 - 京都(쿄토) 561명
 - 神戶(코베) 479명
- 現行犯 逮捕 13,929명
 - 東京 9,244명
 - 大阪(오사카) 1,608명
 - 名古屋(나고야) 579명
 - 橫濱(요코하마) 1,132명

京都(쿄토)	547명
神戸(코베)	819명
○ 通常逮捕	5,344명
東京	3,200명
大阪(오사카)	441명
名古屋(나고야)	564명
横浜(요코하마)	412명
京都(쿄토)	335명
神戸(코베)	392명
○ 緊急逮捕	1,996명
東京	801명
大阪(오사카)	279명
名古屋(나고야)	184명
横浜(요코하마)	334명
京都(쿄토)	68명
神戸(코베)	330명

上記 조사는 국가지방경찰과 자치체경찰장 연합협의회 협력으로 인권옹호국이 昭和26년(1951년) 10월 1일부터 同月 末日까지의 1개월에 한정하여 道交法 위반피의자를 제외한 79,088명의 수사대상자에 대하여 체포에서 勾留를 거쳐 기소(不起訴)에 이르는 동안 身柄이 처리된 상황을 조사한 것이다. 이에 의하여 경찰의 체포권 운용과 관련하여 被逮捕者 中에는 처음부터 체포할 필요가 없는 者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체포 그 자체에 관하여 우리의 반성을 촉구하는 자료가 되었다.

나. 馬場 東京地檢 檢事正
舊형소법에서는 검사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지만(舊형소법 제 255조), 수사관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檢束(檢舉拘束)을 수사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 小林 東京地裁判事

개정안을 지지한다. 理由는

- ① 경찰관은 身柄을 확보하고 나서 調査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 ② 재판소로서 영장은 발부하였으나 그 결과가 걱정된다. 나중에 연락하여 보고 싶은 點도 간혹 있다. 그러한 경우 검찰관이 介在하고 있다면 즉시 그 檢事에게 連絡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의 법률적 素養이 충분하지 않다. 판에 박은 듯한 청구서를 가지고 오나 그것이 범죄구성요건으로서 不備된 것이 상당히 있다.

라. 團藤 東京大 교수

검찰관의 同意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행하여질지 걱정이다.

재판관은 검찰관의 同意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않고 도장을 찍는 경향이 없는가. 그러면 책임문제에서 경찰인지 검찰인지 明確하지 않아 피의자의 利益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마. 島田 武夫 辯護士

占領下の 입법에는 지나친 점이 있었다. 형소법 제193조제1항은 검찰관이 경찰직원에 대하여 指示權을 인정하고 있지만 제199조제2항에 의하여 경찰관이 검찰관에게 연락없이 독자적으로 체포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검찰관은 체포장 청구에 관하여 指示權을 갖지 않는 것처럼 해석되기에 이르렀다.

이 의미를 확대하여 警察員은 수사의 全權을 가지며 검찰관은 公訴權을 행사한다는 分業을 인정하는 듯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찬성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警察員은 수사를 행하고 검찰관은 수사 결과에 근거하여 公訴權을 행사하지만 일본에서는 警察員이 독립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다. 검찰관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現狀이다. 형소법개정전의 경찰관이 개정후에도 그대로 눌러 앉아 그의 素養, 能力이나 人物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

체포장 남용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新瀉(니가타)縣 某警察署에서 昭和25년(1950년) 11월 30일 방화범 피의자를 체포하여 하룻밤 유치하였으나 令狀執行은 이튿날인 12월 1일 오전 9시 45분이었다.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不起訴되었다.

②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채무자를 橫領하

였다」고 囑령죄의 고소장을 내었더니 昭和25년 11월 18일 靜岡(시즈오카)縣 三島경찰서는 확실한 증거없이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고소장에는 사실과 相違한 점이 다수 있었다. 조사할 당시 고소인을 조사실에 들여보내 辨濟를 강요케 하였다.

③ 상기와 유사한 例는 群馬(군마)縣, 福岡(후쿠오카)縣에도 있었다. 警察員이 체포장을 이용하여 民事合議를 하게 하였다. 그 裏面에는 不正이 상상된다.

④ 16세와 14세의 소년이 캐치 볼을 하던 중에 볼이 발에 들어갔다. 발 소유자가 그 볼을 주어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소년이 그 소유자를 세계 잡아 끌었더니 발에 엉덩방아를 찌 상처를 입었다. 이를 배트로 때렸다고 하여 경찰에 고소하였다. 사건발생은 昭和25년(1950년) 5월 5일이지만 5월 18일의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 점에도 상당한 의혹이 있다. 고소를 受理한 兵庫(효고)縣 鳴尾村 警察員은 이 두사람의 친권자에게 어떤 통지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소년을 교실에서 체포하였다.

⑤ 昭和24년(1949년) 8월 31일 大阪府 某警察署長은 日通의 직원이라고 속여 國鐵의 패스券을 받아 東京등으로 여행하였다. 이를 詐欺라고 하여 署長 部下인 巡查部長이 청구한 체포장으로 체포되

었다. 이것은 署內에 署長派와 反署長派의 反目이 있어 反署長派인 巡查部長이 巡查 名義로 체포장을 청구한 것이다.

- ⑥ 昭和26년(1951년) 5월경 某家の 소년을 竊盜容疑로 東京의 某警察署員이 체포하러 갔다. 저녁식사중이었기 때문에 식사를 마칠 때까지 現관에서 기다렸으나 소년은 2층 지붕을 타고 도주하였다. 화가 난 警察署員은 母親이 범인을 보호하여 도주시켰다고 트집을 잡고 지붕의 구석에서 進駐軍의 煙草 빈 봉투가 굴러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進駐軍物資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令狀없이 가택수색을 하였으나 進駐軍物資는 없었다.

二. 河井의 비판

경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河井信太郎『檢察讀本』p.43, p.145. 商事法務研究會出版 昭和54년)으로서, 前檢事長 河井信太郎氏가 傾聽할 만한 이야기(「河井批判」이라고 함)가 있으므로 이를 소개한다.

(1) 河井批判의 要約

다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 정치권력 개입에 약한 것, 두번째는 法律的 素養, 특히 私法的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私法的 판단을 搜查 前提로 하

는 수사는 말길 수 없는 것이다.

상기 두번째의 비판은 기이 前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昭和28년(1953년) 형소법개정시에도 지적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以下에서는 河井批判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보자.

이 비판이야말로 경찰수사에 대한 비판의 焦點이고, 경찰수사의 약점을 찌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誤解라면 다행이다.

- (2) 형소법 제191조(검찰관등의 수사권)에 관하여 河井氏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1차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나, 그 中에는

가. 경찰의 上司와 연루된 범죄

나. 경찰내부의 범죄

다. 民事, 商事와 관련된 특히 고도의 법률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건

라. 경찰에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건

마. 경찰에 수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

바. 검찰관이 직접 수사를 하여야 하는 사건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형소법 제191조제1항)에 의거하여 搜查處理를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 (3) 검찰관 직속의 사법경찰관

河井氏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明

治이래 검찰관 직속의 사법경찰관은 없었다. ……우리의 선배는 異口同聲으로 검사직속의 사법경찰관을 원한다. 경찰의 손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범인 체포 또는 가택수색,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현행의 형사소송법시행과 동시에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한다」라고.

제2장에서도 언급하였으나 檢察事務官의 제도가 이에 상당한다.

2 비판의 解釋

一. 要 旨

昭和28년(1953년)의 형소법개정관련 國會審議에서는 경찰이 第1次 搜查權 行使者로서의 所任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舊형소법시대에 있어서와 같이 검찰관에 의한 체크를 필요로 한다는 비판이 法務·檢察 및 辯護士界가 중심이 되어 舉論되었다.

때마침 점령정책의 지나침에 대하여 是正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되었고 明治刑訴法·舊刑訴法이래 검찰과 경찰과의 수사관계에 길들여져 온 期間이 현행 형소법시행후 4년간에 비하여 훨씬 길기 때문에 관계자 의식에는 현행 형소법이 경찰을 제1차 수사권 행사자로 한 意義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제1차 수사권 주체자로서 경찰의

自肅과 努力 不足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울러 경찰법이 「지방자치의 眞意를 추진하는 관점(舊경찰법 前文)」에서 제정되었음에도 거기에서 말하는 地方分權의 올바른 意義가 普及되어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때이기도 하였다. 덧붙여서 말하면 舊경찰법은 前文에서 「지방자치의 眞意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제정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헌법이 기대하는 「지방자치의 本旨」(헌법 93조)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기술하였다.

이러한 경찰수사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의 理由가 경찰관 수사를 매우 염려스러운 것으로서 國會審議에서 거론되어 一部改正되게 되었다.

二. 調査資料에 관하여

(1) 前節에서 기술한 국회심의를 위한 체포권 운용에 관한 조사자료(체포장에 의한 피체포자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검찰관의 勾留請求가 있기까지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勾留되어 검찰관의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취급되었는가)는 경찰관에 의한 「체포권의 남용이 있다」는 推論을 내렸다.

나는 上記의 推論의 도출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심을 품어왔다.

가. 「체포권 남용」의 定義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解釋에 따라 수집되는 자료가 다르고 推論도 달라질 우려가 있다는 것.

「체포장 남용」이라 함은 私見으로는 체포가 형식적으로는 수사권의 행사에 속하고 있으나 목적·방법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 定義에 따르면 체포장청구시에는 「罪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昭和28년<1953년>개정전의 법에서는 「명백히 체포의 必要性」을 요구한 明文規定은 없었고 해석상으로만 다투어지고 있었다)」고 하여, 체포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수사한 결과,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체포하지 않아도 「체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 ① 체포장이 발부되어 수사한 결과,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임의수사로 종결한 경우

예를 들어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소재를 몰라 도주하였다고 생각하고, 체포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였더니 피의자가 그것을 알고 출석하였기 때문에 조사하였다. 그 결과 피의사실은 解明되었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도 없는 것도 명백하므로 임의수사로 종료하였다.

- ② 체포장 발부후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이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어 「容疑가 없어졌다」고 하여 수사를 중지한 경우, 예를 들어

- ① 뺑소니를 친 용의차량을 차적조회로 소유자를 밝혀내고 그 자를 피의자로 하여 체포장을 발부받았으나 운전하고 있었던 범인은 다른 사람이었다.

- ② 소송조건(친고죄로 고소할 수 없는 때. 이것을 결하면 실제적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免訴·공소기각·관할위반의 형식적 재판으로 소송은 종결된다. 예, 형법180조)이나 처벌조건(친족간의 장물죄에 있어서 親族의 신분이 있을 때. 이를 결하면 무죄, 형의 면제의 재판이 선고된다. 예, 형법제 257조)을 결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중지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체포장을 발부받았으나 그 후의 수사에 의하여 체포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체포하지 않은 것이 해당된다. 따라서 수사권의 행사로서 인정된 범위 내의 권한 행사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체포장 발부후의 수사로 체포가 不必要하다는 것등이 판명될 정도라면 처음부터 좀더 시간과 수고를 들여 수사를 해라, 그러면 청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은가, 그와 같은 수사가 신증을 결한 수사이다. 이와 같은 체포장 청구를 「체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 주장의 當否는 별도로 하고 이 주장에 따르더라도 결국은 「체포권의 남용」이라는 定義의 문제가 된다.

어떠한 정의를 취할 것인가는 무엇을 목적

으로,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등의 조사항목에 의해 조사자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경찰관의 「체포권의 남용」에 의해 어떻게 부당한 인권침해가 행하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조사목적이라면,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를 조사목적으로 選定하여야 할 것이며, 간접적으로 다른 자료로부터 추론하는 것은 그 자료와의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본 項에서 열거하는 체포장 발부후의 事情變化는 수사의 각단계에서 항상 생기는 법이다. 수사의 단계에서는 피의자 心理·被疑事件 내용등 一切가 유동적이며 순간이라는 시간변화의 포착여부가 수사의 成敗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容疑 단계에 이르게 되면 법이 인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수사관이 체포장을 청구하는 것은 수사의 時機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해석된다.

前記의 例의 경우에 체포장을 청구하여 그 발부받은 후, 수사를 전개하여 체포 할 필요가 없다면 체포를 하지 않는 수사방법은 목적·방법등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前記의 例의 경우에 체포장을 발부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관과 재판관에게 수고를 끼치게 되지만 피의자의 인권에는 조금도 침해하는 바 없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定義로서는 체포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체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前節의 一의 1 법제심의회에 있어서의 「債權回收」의 사례, 마찬가지로 2 (5)의 참고인 島田 辯護士가 열거한 ②, ③의 사례가 私見의 定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게 한다. 그 중에서도 ③의 사례가 典型的이다. 즉 그 事例가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는 채무자를 횡령죄 피의자로 체포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고 조사실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변제를 요구케 한 것」이라면 형식적으로는 재판관이 발부한 체포장에 의한 체포이기 때문에 체포권행사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채권회수라는 목적을 수사목적으로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있어서 위법하다. 또한 대출금에 관하여 횡령죄 성립의 여지가 없음에도 그 죄명으로 체포장을 청구한 것이라면 사실을 왜곡하여 발부받은 위법한 청구방법을 강구하였다는 의심이 생긴다. 그래서 목적·방법과 함께 실질적으로 위법하다는 의심이 있어 私見인 「체포권 남용(당해 경찰관에 대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형법제194조등의 문제도 발생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上記는 「체포권 남용」의 定義를 私見에 의하여 분류한 경우에, 「체포권 남용」의 成否를 구분한 예이다.

따라서 조사자료가 다음의 ㉠과 ㉡에 대하여 「체포권 남용」의 의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만약 이를 定義하려고 한다면 前記의 ①, ②의 예는 「체포권 남용」이 되며, ③은 「체포권 남용」이 되지 않아 私見의 결과와는 반대가 될 것이다.

- ㉠ 「체포되고 나서 起訴段階까지 신병구속이 지속된 인원수가 상당히 감소」한 경우
- ㉡ 통상체포장의 청구가 허가된 者(19,037명)中, 체포하지 않은 理由中, 임의수사에 의하였기 때문(702명)과 용의가 없어진(167명) 경우

상기의 조사자료의 숫자 중에는 私見으로 말하는 체포권 남용이 混入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혼입되어 있지 않을지 모르는, 즉 체포권 남용에 관한 조사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만으로는 개인적 立場에서의 해석은 할 수 없다.

私見과 조사자료의 입장과의 차이를 반복하여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자료의 ㉠에는 상기의 체권회수 목적을 수사목적으로 속인 의심이 있는 ③의 예 등은 포함되지 않고 ㉡에는 流動的인 搜查實情에서 보아 체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도 포함된 것이다.

나. 조사기간이 짧고 특수한 경찰활동의 時期에 해당되어 있었던 의심이 있는 것.

調査기간을 昭和26년(1951년) 10월의 한 달만으로 한 것은 기간부족이라는 문제가 없

는 것일까. 특히 조사한 昭和26년 10월경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농업생산이 한창일 무렵이어서 많은 경찰(특히 國警은 都市部이외의 전원지역을 널리 담당하고 있었다)은 수확기의 警戒와 관련하여 「盜犯檢舉 月間」을 설정하는 등 통상의 활동과 다른 달이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만약 전국적인 「盜犯檢舉 月間」이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하여, 이와 「체포권 남용」과의 間에 어떠한 관계가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추측할 수 없다. 그러나 특수한 경찰활동을 장기간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한 警察事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모처럼의 조사이므로 조사항목·기간등을 경찰·法務間에 사전에 검토하였다면 보다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느낌이 든다.

다. 본 조사에서 배워야 할 것

경찰은 本調査와 같은 時系列的인 조사법을 搜查管理(疫學的 解明, 형사·민사의 재판에서도 활용되고 있다)에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경찰청의 컴퓨터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의 하나이기도 함). 時系列的인 통계조사법의 장점은 수사개시로부터 체포·송치·공판청구의 유무·결과를 통하여, 발생·사건·피의자의 各票에의 기입·수사상황등에 대하여 時系列的인 관찰을 할 수 있어 動的인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측(소년비행 판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시점의 통계조
사만으로는 靜的인 관찰은 할 수 있어도 어느

사건이 언제 검거되어 그 피의자는 어떻게 되
었는가를 해명할 수 없다.

일본의 여경(女警)과 근무부서

〈치안연구소 경위〉 황 규 정

1. 여경 수(數)의 추이

1) 1975년까지의 동향

- (1) 1947년 2월 경시청(東京)에서 경찰민 주화의 일환으로 63명을 채용, 그후 2년간 40개 도·도·부·현(都·道·府·廳) ⇒ 우리나라의 시·도)경찰에서 약 1,800명의 여경을 채용하였고
- (2) 이후 대규모 도·도·부·현경찰을 제외하고는 채용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57년에는 19개 도·도·부·현 경찰에 약 400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 (3) '59년에 경시청에서 5년만에 채용을 재개하고 '65년을 전후로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 여경채용을 하여 '75년에는 21개 도·도·부·현 경찰에 약 3,700명이 근무하고 있었음.

2) 1985년 이후의 동향

- (1) 일본 여성은 근로기준법상 심야근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22:00 이후에는 근무케 할 수 없어 근무부서가 한정적이었음.
- (2) 그러나 '86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여성에 대한 심야업무금지규정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여자근로기준규칙이 시행되어 경찰업무에 있어서도 심야근무가 가능케 되었으며
 - 여자근로기준규칙 제4조 제5호에 의거하여 경찰업무에 있어서도 여경의 업무, 여경 이외의 여성직원의 업무 중 여성의 유치 또는 보호에 관한 업무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심야근무를 인정케 되었고
 - 이로 인하여 종래에는 근무시간의 제약으로 지장을 초래하였던 범죄수사, 청소년선도, 여성요인(要人)에 대한 경위·

경호(警衛·警護)등에서의 여경심야근
 무가 가능케 되었음.

(3) 이에 따라 여경채용을 실시한 도·도·
 부·현경찰도 '89년부터 급증.

- 그 수도 '89년까지는 4,000명 전후에서
 추이하였으나 '94년에는 5,800여명(경찰
 관 총 정원의 약 2.6%)으로 증가하였고
- '94년도에는 새로이 2개 현에서 여경채

용을 개시하여 전국의 47개 도·도·
 부·현경찰 전부에서 여경이 근무하고
 있음.

* 경찰청에서는 '89년에 최초로 고시(국가 I 종시
 함)출신 여성을 채용하였으며 '98년말 현재 19
 개 도·도·부·현경찰에서는 여경채용시 학력
 구분을 설정하고 있음.

경찰관 총정원 중 여경의 비율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1.9%	1.9%	1.9%	1.9%	1.8%	2.0%	1.9%	2.1%	2.4%	2.6%

2. 여경근무부서의 확대

(1) 여경의 채용과 근무부서의 확대는 수레
 의 두 바퀴와 같은 관계로서 근무부서
 를 확대해 나가면서 채용을 적극화하는
 것이 중요함.

- 즉, 채용인원을 증가시키더라도 그 근무
 부서가 한정되어 일에 대한 책임감과 보
 람을 찾을 수 없다면 여경의 활용은 불
 가능하고
- 따라서 지금까지 근무의 불규칙성 등의
 이유만으로 남자경찰관 특유의 직종이
 라고 간주되어 온 분야에 대하여서도 남

녀의 생리적 차이를 고려한 근본적인 재
 검토를 통하여 정말로 여경이 행하는 것
 이 불가능한 영역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 또한 단순히 새로운 부서에 배치한다는
 것에 끝나서는 아니되고 직장에 있어서
 여경이 책임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운용하고 근무부서 확대에 따른 제도·
 시설면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함
- 2) 현재 각 도·도·부·현경찰에서는
- 지금까지 여경 배치선의 중심이 되었던
 교통·청소년 등의 분야에 그치지 아니
 하고 형사·방범·경비 등 이제까지 남
 자경찰관의 직종이라고 여겨온 분야에

까지 여경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 또한 범죄의 악질·교묘화에 신속·적절히 대처하고 나아가 경찰조직의 전문

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능력을 지닌 인재의 중도채용을 전국적으로 추진, '94년 6월 현재 재무(財務)수사관 등으로 채용된 12명 중 여경은 3명

여경 중도채용 현황

총채용인원	여 경 채 용	
	재무수사관	국제수사관
5개 도·부·현(都·府·縣) 12명	공인회계사 2명(경시청)	중국어 전문가 1명(京都)

입.

- 아울러 '94년 4월 현재 도·도·부·현 경찰에서 경부(警部⇒우리나라의 경감) 이상의 계급에 있는 여경은 경시 1명,

경부 9명으로 모두 10명이며 '94년 봄에는 일본 최초의 여성경찰서장도 탄생하는 등 승진시험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이 없으므로 앞으로 우수한 여경의 간부 진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함.

〈여경의 근무부서 확대 현황 ('94년 봄)〉

- 전국 최초의 경찰서장, 경찰서 방법과장으로 등용 (경시청)
- 파출소장으로 배치 (경시청, 千葉, 神奈川, 愛知, 京都 등)
- 여경만으로 구성된 여성특수대 신설(宮城, 神奈川, 大阪)
- 여경만으로 구성된 여성경호대 신설(京都)
- 여경만으로 근무하는 파출소 창설(경시청, 大阪)
- 기동수사대 배치 (경시청, 神奈川, 京都 등)
- 기동대への 배치(경시청, 大阪, 福岡 등)

3. 여경근무부서 확대에 따른 제도·시설의 정비

1) 신입 및 전문화 교육

- (1) 여경의 채용시 신입교육은 종래 초임교육은 남자경찰관 단기과정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직장실습 및 초임종합교육은 각 도·도·부·현경찰의 재량에 맡겨 왔음.
- (2) '95년부터는 여경의 근무부서 확대 등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초임교육 및 초임종합교육은 원칙적으로 남자경찰관과의 공학으로 똑같이 실시하고 직장실습은 가능한한 남자경찰관과 같은 실습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3) 이에 따라 여경의 채용시 신입교육이 보다 충실·고도화되었고 또한 전문화 교육과정도 남녀공학이 진전되고 있음
 - * 전문화과정의 경우 형사전문화과정에 여경을 입교시켜 여성형사를 계획적으로 양성하는 곳도 있음 (千葉, 廣島)

2) 육아지원

- (1) '92년 4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육아휴업(休業⇒휴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 1세미만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가가 법제도면에서 정비되었으며 이에 따라 육

아휴가를 개시할 때에 근무하던 직위 또는 육아휴가 기간 중 이동된 직위를 보유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게 되었음.

- 1세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경에 대한 육아지원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는 상태이나 여경의 근무부서 확대에 따른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키 위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여경에 대하여는 베이비 시터 파견업자와 계약을 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음(경시청, 京都, 愛知).
- (2) 경찰로서는 여경이 근무와 육아를 양립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가제도를 가일층 활용케 하기 위한 환경정비, 기타 육아지원제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아휴가자의 업무대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하고 있음.
 - * 퇴직한 여경을 임시적으로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곳도 있음(경시청, 大阪, 愛知 등).

3) 시설면의 정비

탈의실, 휴게실, 당직실, 세면장 등 각종 시설의 개선을 비롯하여 독신자 관사 등을 정비해 나가고 있음.

4. 여성 일반직원에 대한 배려

(1) 여성 일반직원은 '94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13,300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일반직원 전체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음.

* 여성 일반직원 중 교통순시원은 약 1,900명.

소년선도원은 약 730명이고 그외에는 사무·기술직 또는 그 보조직임

(2) 여성 일반직원에 대하여도 여경과 똑같이 제도·시설면의 정비를 비롯하여 책임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등을 배려하고 있음.

美國에서의 警察과 靑少年

〈김포국제공항경찰대/경위〉 조 성 호

I. 시작하는 말

경찰관과 대면하는 첫 순간부터 범죄자의 갱생 과정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청소년은 또한 그러한 곤경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만약 그런 청소년이 법률과 대면하는 첫 순간이 우호적이고 동정적이라면, 아마도 그가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좀 더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대하는 경찰관은 진정으로 자신의 일과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좀더 우호적인 태도로서 임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은 범법자를 선량한 시민으로 만드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형사사법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첫 단계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찰은 범죄를 방어하는 최일선에 있다. 경찰은 체포권 및 막강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며 지역사회 내의

평화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다. 통상 텔레비전 프로들은 경찰직을 매력적이며 직무만족도가 높은 직종으로 묘사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업무의 대부분이 따분하고 좌절감을 불러 일으키기 쉬우며 또한 위험하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범죄를 다루는 업무가 가장 부담스럽고 좌절감을 불러 일으키기 쉬운 영역으로 보일 수도 있다. 우선, 소년범죄 및 청소년비행은 경찰서에서의 업무를 심각하게 왜곡시킨다. 그 예로서 경찰서 업무의 50-75%가 직·간접적으로 청소년과 관련이 있다. 청소년법원이 법률적용을 관대하게 해주는 것도 경찰이 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어렵게 한다. 경찰관들의 공통된 불만은 경찰관들에게 조서를 완전히 꾸밀 기회도 주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된 청소년범죄자들이 거리로 되돌아 간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더하여 각 부서에서 소년범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낮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면 순찰업무를 수

행하는 경찰관들의 대부분은 소년범들을 골치거리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려 한다. 비록 청소년담당 경찰관들이 종종 자신이 '진정한'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경찰과 청소년 간의 상관관계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체로 청소년범죄자들이 청소년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최초로 접촉하는 사람은 경찰관이다. 그러한 시스템에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서의 경찰관들은 청소년들을 방면하거나 처벌할 수도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관들은 소년범들을 다룸에 있어서 즉석에서 검사, 판사, 그리고 교정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곤 한다.

이하에서는 미국에서의 경찰과 청소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찰과 청소년 관계에 있어서의 그 역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17-18세기에 걸쳐 북미대륙의 식민지 주민과 이민자들은 작은 식민마을에서 상호서약제도, 감시감독제도, 순찰제도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비공식적 통제방법들은 18세기 말과 19세기까지는 그것으로 충분하였으나 그 이후에 마을이 팽창함에 따라 무질서와 범죄가 급증하게 되었다. 뉴욕, 보스턴,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는 그들 도시 내의 범죄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1830년대 - 1840년대에 경찰을 설립하였고, 1870년대까지는 모든 주요 도시들이 상근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때의 경찰관들은 사회 내에서 가장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에서 선발되었고 박한 대우에다 월급마저 적었다. 거기에 더하여 그들은 정치적 부패의 도구로 이용되었고, 사리사욕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되곤 하였다. 19세기 말에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들은 순찰경찰들에게서 다양한 처벌을 받았다. 청소년들은 성인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고 단지 말성쟁이 째름으로 치부되어 손목을 몇 대 맞고 끝날 수도 있었다. 또 어떤 때는 교구 목사님들 앞에 끌려가 훈계를 듣거나 정신교육을 받을 때도 있었다.

20세기 초반부에 뉴욕, 포트랜드, 오레곤, 그리고 워싱턴 D.C.의 경찰국에서는 소년범문제를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1914년 까지 미전역의 90%에 해당하는 도시들이 각종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게 되었다. 1920년대에는 경찰체전이 개최되었고 193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대형 경찰서들이 빈민촌에다 복지경찰관을 배치하였으며, 소년들을 위한 취업사무국을 출범시켰다. 또 소년 법원에 경찰관을 선임하거나 소년범죄를 다루기 위한 전담반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에 어거스트 볼머는 경찰에 의한 범죄 방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청소년국의 개념을 캘리포니아 버클리경찰국에 도입하였다. 곧이어 소년범의 집행을 위한 경찰 전담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른 도시의 경찰국에도 청소년국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청

소년 전담반들은 범죄예방국, 소년국, 청소년 지원국, 소년 지도국, 소년부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 졌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청소년 전담 경찰관들의 역할은 다양화 되었고 1955년에는 일련의 소년전담 경찰관들이 중앙소년전담경찰협회를 결성하였고, 1957년에는 국제청소년전담경찰협회를 결성하면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각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 협회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소년전담 경찰관들은 소년범들을 다루기 위한 의무, 표준, 절차, 그리고 훈련 등을 개발해 내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게 되었다. 경찰관들 스스로가 표현하였듯이 청소년전담 경찰관들의 기본적 책무는 소년범들을 다룸에 있어서 처벌이 아닌 선도였다.

1960년대에는 청소년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 프로그램들이 미국 전역에서 개발되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상호 의견교환과 범죄에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공립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경찰체전 프로그램들은 심화된 오락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지도력 훈련, 전업 및 부업 기회의 부여, 도덕성교육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또한 경찰은 범죄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무단결석방지프로그램, 마약중독갱생, 그리고 소년범들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을 하게 되었다.

1970년대 전반에 걸쳐서 각 경찰국에서의

소년 대상 업무에 대한 관여 정도는 다양한 것이었다. 비록 어떤 경찰국에서 소년대상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지만, 1970년대 후반 및 1980년대의 경향은 소년관련 업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전문화에 따른 경영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제약은 많은 경찰국들이 소년부서를 없애거나 소년학대 사건에만 국한시키게 하였다. 이로 인해 이러한 경찰국에서의 형사계는 일반적으로 소년범 뿐만 아니라 성인범들의 조사까지도 떠맡게 되었다.

1980년대의 젊은이들 사이의 약물남용의 확산은 경찰이 다시 학교로 들어 가도록 하였다. 청소년-경찰 간의 연관관계에 있어서의 이러한 경향은 마약을 음용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사법체계에 들어 가는 것을 막아주기 보다는 약물 사용의 방지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후술하는 D.A.R.E 프로그램이 널리 적용되었고 경찰과 청소년 간의 작업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D.A.R.E 프로그램에 더하여 1990년대의 경찰은 학교에서의 보안과 안전의 제공, 약물방지법 및 총기방지 법령의 집행, 그리고 다양한 학교 출석 프로그램의 시행을 요청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국에 걸친 마약거래 갱들의 범람과 사춘기 소년들의 보다 잦아진 총기사용은 학교 및 학교 관계자의 안전 및 범집행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지역사회는 10대들에 의해 저질러 지는 소수민족, 유태인에 대한 범

죄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에 대해 저질러지는 혐오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관심을 경찰에게로 돌리고 있다.

II. 警察과 靑少年의 相互態度

1.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태도

전반적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경찰은 소년범에 대해서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다음에서 말하는 세 가지 직업적 요소들은 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첫째, 경찰은 그들 자신이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능력에 있어서 노련하지만 청소년법원의 법전이 너무나 관대하게 되어 있어서 청소년의 위법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이상 체포된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경찰들은 청소년형사사법제도의 관대함으로 인하여 소년범죄는 통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는 일에 내재된 위험성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청소년범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고 있다. 노련한 경찰관들은 소년범들의 비예측성과 저항이 그들의 체포를 어렵게 하므로 경찰-청소년 간의 대치에 있어서 특별한 엄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강력범은 경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폭력조직의 구성원들은 경찰관을 죽이는데 있어 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경찰은 10대 청소년이나 성인들로부터 말이나 물리력에 의해 자행되는 모욕을 참고 억누름으로써 그들 스스로의 권위를 지켜 나가야 한다. 특히 과거에 선도 프로그램에 들어 간 경험이 있는 청소년 범죄자들은 경찰관들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 대체로 그들은 자신이 경찰을 어느 정도까지 억압할 수 있고, 그들이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지 알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있을 경우엔 경찰의 권위에 보다 쉽게 저항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신입 경관경관들은 소년범이 집단으로 있을 때는 말을 걸지 않도록 충고 받고 있다. 순찰경관들은 청소년과 맞닥뜨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들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소년범 전담 경찰관들을 부르곤 한다. 그러나 매일 매일을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청소년범 전담경찰관이나 형사들은 일반 순찰경관들에 비해 보다 서비스 지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청소년 전담경관이나 형사들이 소년범들에 대해 보이는 보다 우호적 태도는 때때로, 소년범들과의 괄목할만한 교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 경찰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청소년의 경찰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제는 상당한 검증을 거쳐 왔다. 1971년에 신시네티에서 약 1000명의 중학생들에 대해 행해졌던 로버트 포춘의 연구에 의하면, 흑인 보다는 백인들이, 소년 보다는 소녀들이, 그리고 하류층 보다는 중, 상류층 가정의 학생들이 경찰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1969년에 도널드 H. 바우만과 그의 후학들에 의해 미시간 주 10개 도시의 10000명의 학생들에 대해 시행되었던 설문에서, 비록 결론에 있어서는 포춘과 일치하는 바가 있었지만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경찰에 대해서 “대단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친구가 아닌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했다면 경찰에 협조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R. L. 후블러는 샌디에고에서 시행된 1973년의 연구에서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진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이미 경찰과 접촉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경찰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마스 윈프리 2세와 커트 T. 그리피스가 1977년에 17개 고등학교에 대해 행한 연구에 의하면, 상당 부분에 걸쳐서 경찰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경찰과의 접촉에 의해 각인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윈프리와 그리피스에 의하면 부정적 접촉이 성별이나, 인종, 거주지역, 사회적 지위 등에 비해 청소년의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긍정적 접촉에 비해서 불쾌 경찰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두 배 가량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6년에 패기 지오다노는 199명의 청소년 형사사법제도 무경험자와 119명의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경찰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는 형사사법제도의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보다는 범법의 정도 및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1960년대 후반에 수행된 두 개의 연구에 의하면 특히 범죄집단이 경찰에 대해 적대적임을 알 수 있다.

윌리엄 T. 러신코와 그의 후학들은 1978년에 미시간의 랜싱의 3개 중학교의 1200명(9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찰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경찰 태도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백인 청소년들이 경찰과 긍정적 접촉을 갖게 된다면 나쁜 느낌을 가지는 접촉을 확실히 중립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흑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찰의 긍정적 접촉이 경찰에 대한 그들의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고 하였다.

면접에 응한 소년범들은 가장 흔히 경찰을

비난하는 부분으로는 학대 및 잔인성을 든다. 경찰의 학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한 소녀는 이렇게 말한다. “날 가만히 놔 두지 않는 경찰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도망갈 때 나를 잡은 경찰의 행동은 바보스럽게 느껴져요. 난 거처가 있고 아무 문제점도 없다구요.” 또 다른 소녀는 이렇게 말한다. “난 내 인생 전반에 걸쳐 경찰을 증오했어요. 경찰은 날 무수히 기소했고, 내가 경관을 보면 난 그들이 날 파멸시킬 것이라고 생각돼요.” 한 16살 내기 매춘부는 경찰의 야만성을 다음과 같이 비난한다.

“경찰은 전혀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난 그들이 내 오빠를 체포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한 사람이 오빠의 머리채 붙잡고 이리 저리 끌고 다녔어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마구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일단 수감되면, 그들은 수감자들에게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해요. 그들이 비번일 때도 예외는 아니죠. 그들은 그들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픈 것은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경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 청소년들이 보다 나이든 청소년에 비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백인이 흑인에 비해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소녀들이 소년들에 비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중상류층 자녀가 빈민층 자녀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중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일수록 경찰에 대해서 보다 더 호전적이다. 그러나 경찰과의 접촉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양하다. 몇몇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경찰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경찰에 대해 더 부정적이 된다고 하며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백인청소년이 경찰과의 긍정적인 접촉으로 인해 부정적 접촉의 영향을 중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Ⅲ. 青少年犯罪의 處理過程

청소년법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가 처리과정 및 청소년 범죄자 취급방법에 영향을 주는 주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경찰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

일단 경찰이 청소년이라고 결정하고 나면 최초의 법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재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관은 자기에게 주어진 광범위한 재량권을 사용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청소년사법제도를 우회하게 할 수도 있고 접촉하게 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경찰재량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 청소년의 경찰과의 접촉은 비인간적이고 비공식적이어서 “구석에 있어,” “해산해라” “집에 가라” 등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의 평가에 따르면 경찰과의 접촉건수의 10-20%만이 공식적 접촉이라고 한다. 예를들면 Bordua의 디트로이트경찰 연구에 의하면 106,000건의 접촉에서 공식적인 것은 5282건 뿐이었다. 청소년사법제도는 경찰재량 없이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주안점이 되고 있다. 도시의 법원은 특히 업무가 과중하다. 보호관찰관의 사건 배당건수가 너무 많고 교정시설의 수용능력도 한계에 달해 있다. 만일 경찰관이 법원이나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청소년의 수를 2-3배 늘린다면 사건처리 능력은 마비될 것이다.

경찰관의 청소년 범죄자처리는 다음의 9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범죄의 심각성

비행청소년 처리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범죄의 심각성 정도이다. Donald J. Black과 Albert J. Reiss는 경찰의 청소년 접촉 건수의 대부분이 경미한 위법사항이지만 범죄행위의 심각성으로 인해 체포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의 고소

청소년 관련사건 처리시에 시민의 참관 또

는 시민의 불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한 시민이 고소를 하여 그 청소년을 체포해줄 것을 희망한다면 그 청소년이 체포되어 사법절차를 받을 가능성이 크진다. 만일 경찰관이 순찰을 돌다가 체포하게 되면 그 청소년은 경고를 받아 훈방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성 별

전통적으로 소녀가 소년보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체포되어 소년법원에 이송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여성의 가출, 부모에 대한 반항 그리고 문란한 성관계 등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위반할 경우엔 법원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한마디로 말해 소녀는 순결해야 하며 비도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부모의 의견을 경찰이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것 같다.

인 종

청소년 처리문제에 있어서 인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가 많다. 경찰은 소수민족 출신인 청소년을 체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여럿 있다. 인종을 결정요인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필라델피아의 일단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1972년 마빈과 그 동료들의 판단에 의하면 “경찰에 의해 교정도 받지 않고 청소년 사법절차를 완전하게 밟도록 처리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가 백인이 아니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인종 차별적인 증거는 많이 발견치 못하였다. 흑인과 소수민족계 청소년이 백인보다 강력범죄에 더 자주 연루되고 있기때문에 사건처리에 있어서 인종의 중요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인종적 편견이 소수민족계 청소년으로 하여금 경찰의 표적물이 되게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지위

연구의 대부분이 인종과 사회경제적지위를 동시에 조사하기 때문에 청소년과 연루된 사건을 처리할때 사회계층의 영향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청소년사법제도 전문가들에 따르면 빈곤층 청소년은 중·상류층 청소년이 받는 사법절차와는 다른 절차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중·상류층 백인청소년이라면 흔히 귀가조치 시킬만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빈곤층 젊은이일 경우에는 사법제도의 틀 내에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킨다. 순찰경찰관들과 청소년경찰관들은 빈민층 청소년보다 중·상류층청소년의 구제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경찰관들은 중·상류층 청소년이 저지르는 문제행동은 그들의 부모가 심리요법등을 감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교정이 쉽다고 말하면서 재량권의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범죄자의 개별적 특성

체포기록, 전과, 연령, 교우관계, 가족관계, 부모의 품행등의 개별적 요인은 경찰관이 개개의 청소년을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 연령이 높고 여러번의 전과가 있는 청소년은 소년법원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크다. 메리 모레쉬는 연구결과 비행적이고 위험스런 청소년의 공통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체포기회를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가정환경도 중요한 변수이다. 오랫동안 청소년경찰관 근무경력이 있는 어느 한 경찰관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문제는 부모로부터 생겨난다. 여러분은 부모를 성공적으로 끌여들여야 한다. 여러분은 자식으로 인해 염려하고 있는 부모를 만나게 되면 그들이 문제를 처리할때 충고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만일 여러분이 이 업무를 진척시키기를 원한다면 청소년의 가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과 청소년간의 교감

경찰관에 대한 청소년의 상호교감의 정도가 청소년 처리를 결정짓는데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64년에 Irving Pilavin과 Scott Briard의 연구결과, 청소년이 예의가 바르면 비공식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1967년 Carl Werthman과 Pilavin의 연구결과 흑인청소년이 경찰에 대

해 보인 적대감과 조롱은 높은 법원 이송을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리차드 린드만과 존 클락스의 1980년 연구결과 청소년이 범죄와 연루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태도가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

경찰관의 인성도 경찰과 청소년간의 상호작용의 성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을 괴롭히는 경찰관도 있다. 청소년이 이러한 경찰관의 행동에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면 경찰관은 공식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경찰의 방침

경찰국마다 비행청소년을 처리하는 지침은 다양하다. Malcom Kline은 1970년에 남가주의 45개 경찰국을 연구하였는데 5명중 4명을 소년법원에 이송하는 경찰국이 몇몇 있었으며 반면에 접촉하였던 거의 모든 청소년들을 경고·훈방하는 경찰국도 있었다. 1969년 나단 골드만의 4개의 페실베니아 지역사회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체포율이 지역사회마다 9%에서 71%까지 다양했다. 1968년 제임스 윌슨의 조사에 의하면, 더 전문화된 경찰국일수록 더 많은 청소년을 소년법원에 이송했다. 왜냐하면 비전문화된 경찰국보다 재량권을 덜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지역사회를 통한 외부의 압력

언론이나 시민의 태도, 고소자나 피해자의 지위 및 이송기관의 태도 등이 청소년의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언론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강경책을 장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 강력범죄나 갱단의 활동에 대한 일련의 기사는 시민에게 경고를 줄 수 있고 또한 경찰국에 거리의 불량청소년을 제거하라는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게다가 불평자나 피해자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체포되어 사법절차를 받을 확률이 높다. 더구나 소년법원이 너무 관대하다고 경찰관이 믿을 경우 청소년 범죄자의 체포를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봉사국과 같은 지역사회기관과 유대관계가 있는 경찰관은 지역사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찰관과는 다르게 청소년 접촉에 반응한다.

경찰관의 청소년 처리에 영향을 주는 9가지 요인중에서 범죄의 심각성과 시민의 불평 요인이 기타 7가지 요인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지만 경찰국의 지침과 지역사회의 외부적 압력 뿐만아니라 범죄자 개인의 특성도 경찰과 청소년간의 접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2. 청소년 범죄에 대한 공식적 처분과 비 공식적 처분

순찰경관이나 청소년경관이 청소년에 대한 고소사건을 처리할 경우나 범법행위를 하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적어도 5가지의 선택권이 있는데 경고후 지역사회에 훈방하는 경우, 경찰서에 넘기는 경우,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에 넘기는 경우, 소환장을 발부하여 소년 법원에 넘기는 경우 및 구류시설에 데려가는 경우 등이 있다.

경고와 훈방

이것은 가장 약한 제재수단으로서 청소년에게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본 후 훈방하는 경우이다. 흔히 이것은 청소년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용되는 것이다. 보통 순찰경관은 거리에서 청소년을 나무라거나 경찰서에 데리고 와서 장시간 물어보기도 한다.

1970년대까지 순찰경찰관은 청소년에게 종종 경고를 하였다.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다음에 붙잡히면 때릴거야.” 순찰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불량청소년에게 한두대 때리는 일은 종종 있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순찰경찰관이 아무때나 청소년을 때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매를 맞은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서에 넘기는 경우

청소년을 경찰서에 데리고 와서 인지사항을 기록하고 부모에게 인계하는 경우이다. 이 상황에서 청소년이 경찰관에 출두하는 즉시 해야 할 첫번째 일은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이다. 몇몇 경찰국에서는 청소년을 경찰의 감독하에 두는 곳도 있고 보호관찰에서 해제될 때까지 경찰의 감독하에 두기도 한다.

기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에 넘기는 경우

청소년을 훈방조치하면서 청소년봉사국(YSB), BBS, 가출자 보호소, 정신건강센터에 이송할 수 있다. 경찰관은 청소년을 청소년형사사법제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상방법법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YSB에 이송시킬 경우 순찰경찰관이나 청소년경찰관이 YSB에 연락을 하면 YSB직원이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일리노이의 여러 경찰국은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상담과 사회봉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부서를 두고 있다. 이들 지역사회의 경찰관들은 비행청소년들을 이런 부서로 보내기도 한다.

소환장 발부 및 청소년법원에의 이송

경찰관은 소환장을 발부하여 청소년을 소년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소년법원의 상담관은 대개 보호관찰관인데 공식적인 탄원이 제기되어야 하는지와 소년판사 앞에 출두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처리로 청소년은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구류시설에 데려가는 경우

경찰관은 소환장을 발부하여 소년법원에 이송하거나 청소년을 구류시설에 데려갈 수 있다. 구류시설 근무자는 어린이를 부모에게 보내야 할지 구류시설에 머무르게 할지를 결정한다. 청소년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의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는 구류시설에 남게된다.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우범소년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다. 구류시설이 부족한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을 軍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데려가는데 양쪽 모두 청소년에게는 부적합한 시설이다. 청소년을 그들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구류시설에 두는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IV. 警察과 靑少年의 權利

경찰서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취해진 이후 수감중인 청소년의 권리가 많이 바뀌었다. 일부 경찰국에서는 수감중인 청소년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는데 소극적이긴 하나 대부분의 경찰국은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사건은 항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실은 그 지역 내에서만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1. 수색과 몰수

미국 헌법의 제4차 개정에 의해 부당한 수색과 몰수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받게 되었다. 1961년 Mapp 대 Ohio사건에 대한 Supreme Court의 판결에서 이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 판결에서 부당한 수색과 몰수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67년 State대 Lowry사건에서 Supreme Court 판결은 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수색과 몰수를 금하는 제4차 수정헌법을 적용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수색에 동의하지 않고 또한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는 한 유효한 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청소년에 대한 판결을 뒤집는다. 예를들면, 콜롬비아 지역 판결에서 새벽 5시에 영장없이 청소년의 아파트에 들어가 수집한 증거를 인정치 않았다. 법원은 미국 헌법의 제4차 수정이 경찰의 부당한 수색과 몰수로부터 청년 및 성인의 가택과 그들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 휴스톤 경찰관은 라이트없이 달리는 차량을 세워서 청년인 운전

자에게 무면허 운전 및 라이트 없이 운전했다는 이유로 스티카를 발부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이 차량소유권에 대해 질문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은 경찰서까지 가게되었다. 최초접촉이 있은지 5시간 지나서 또다른 경찰관이 그 운전수의 동의 없이 그리고 수색영장도 없이 신체수색을 해서 50밀리그램의 마리화나를 찾아냈다. 마리화나 소지를 이유로 이 청년은 텍사스 청소년 위원회로 보내졌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그를 훈련학교에서 석방시켰다. 왜냐하면 라이트 없이 운전한 것을 이유로 체포된지 5시간 지나서 수색한 사실은 교통법규위반자의 체포와 부수적인 법집행으로 보기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2. 학원수색

마약과 무기사용으로 인해 교내에서의 경찰과 학생과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에 와서 경찰은 연방으로부터 『총기없는 학교구역법』의 집행 요구를 받아왔으며 전국적으로 지역수를 늘리면서 마약없는 학교구역법의 집행요구를 받고 있다. 마약없는 지역이란 통상적으로 학교와 반경 1,000피트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 알라바마가 가장 적극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와 반경 3마일이내의 마약없는 지역으로 선포했다. 마약냄새를 맡기 위한 개의 사용, 음주탐지기, 비디오카메라

의 사용과 일상적인 학생의 주머니, 지갑, 학교사물함, 책상, 학교 구내에 세워져 있는 차량의 수색은 학교직원들이 학교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결과 증가하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몇몇 경우에는 학교직원이 직접 수색을 하며 다른 경우에는 경찰이 수색을 하기도 한다.

1985년의 New Jersey 와 T.L.O간의 판결에서 미 Supreme Court은 부당한 수색과 몰수에 대한 미헌법의 제4차 수정으로 인정된 권리를 학교사건에 적용시킬지의 여부를 검토했다. 1980년 3월7일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 선생이 2명의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발견해서 학교규칙위반사항을 교장실에 보고하였다. 두 여학생은 부교장보를 만나도록 소환받았다. 한 여학생이 잘못된 게 없다고 주장하자 부교장보는 그녀의 지갑을 보자고 요구했다. 지갑을 조사하던 중 담배한갑, 종이로싼 담배, 마리화나, 파이프, 많은 돈, 그녀에게서 돈을 빌려간 학생들의 명단 그리고 마리화나 매매에 그들이 연루되었음을 알 수 있는 편지 등이 나왔다. 나중에 그녀는 학교교정에서 마약판매를 했다고 경찰에서 자백했다.

소년법원은 그녀가 범죄자임을 인정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에 처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뉴저지 고등법원에 지갑수색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사건을 항소했다. 뉴저지 고등법원이 그녀의 항소를 지지하자 주에서는 이사건을 Supreme Court에 상고하였는데

Supreme Court는 학교직원은 법률이나 학교 규칙이 침해된다고 사료되는 한, 학생들의 사물함, 책상 및 학생들을 수색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수색의 적법성은 수색영장을 취득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색의 범위, 학생의 성별, 연령 및 학생의 행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래서 Supreme Court는 학교직원과 경찰에 대해 학교규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세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985년 이래 뉴저지 고등학교 여학생 사건의 판례를 적용한 18건 사건중에서 학교직원의 개입이 지지를 받은 것은 15건이었다. 마약과 총기의 학원내로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수색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3. 심문절차

미 헌법의 14차 개정으로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적정절차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기준도 자백을 이끌어 내는 상황이 자백의 적정성을 결정하는데 고려요인이 되고 있다. Haley 대 Ohio 사건에 대한 Supreme Court 판결은 경찰심문의 가혹함을 나타낸 최초 예이다. Haley 사건에서 15세 소년은 가게에 권총강도가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후 자기집에서 체포되었다.

5-6명의 경찰관은 약 5시간 소년을 심문했다. 소년은 다른 두 소년의 자백사실을 들은 후에 자백했다. 심문하는 동안 부모나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다. Supreme Court은 이 자백을 무효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소년의 연령, 조사받은 시간대, 심문시간, 친구등 충고해 줄 사람이 없다는가 소년의 권리에 대한 경찰관의 냉담한 태도 등은 모두 법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볼 것이다. 누구든지 헌법상의 適法節次 (due process of law)를 무시한 방법에 의하여 비난 받아서는 안된다.』

Supreme Court은 Brown 대 Mississippi건에 대하여도 자백을 얻어 내는데 있어 폭력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했다. 다른 자백들도 무효로 결정되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너무 지쳤 있었고 또 너무 오랫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 또는 자백을 할 당시에 배우자, 친구, 변호사와의 면담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수차례의 법원판결에서 “해당 청소년이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지위가 자백의 유효성에 대한 절대적 장애물은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어느 스페인계 출신인 2명의 청소년이 한 자백을 인정했다. 둘다 체포되었던 경력이 있었지만 한명은 IQ가 65에서 71이며 정신연령이 10년2월이었다. 그리고 North Carolina

의 항소법원이 트럭의 창문을 향해 총을 쏜 혐의를 가진 12세 소년의 자백에 대해 그 유효성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다.

청소년을 경찰의 가혹한 심문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의 심문시에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하는 법적인 요건을 두고 있는 곳이 여럿 있다. Common wealth 대 Guyton(1989) 사건에서 메사츄세츠 법원은, 다른 청소년, 심지어 친척도 관련자로 활동할 수 없다고 판결하는가 하면 다른 법원에서는 관계 있는 성인은 어린이의 친척이 될 수도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어떤 주에서는 청소년이 즉시 부모의 보호하에 돌아갈 수 없을 경우에만 소년원이나 소년법원으로 보내져야 한다면서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때 분명한 것은 경찰의 심문이 경찰서에서보다 소년시설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4. 지문채취

공판전 신원확인 절차인 지문채취는 청소년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청소년 법원의 법령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판사가 청소년의 지문채취를 인정하고, 지문기록의 이용을 통제하고, 특정상황에서의 지문파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74년의 “청소년 사법 및 비행방지법”에

의하면 지문채취는 판사의 동의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청소년의 지문은 범죄경력으로 기록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지문채취의 목적이 달성되면 곧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시시피 판결을 뒤집은 1969년 Supreme Court의 판결은 청소년의 지문을 다른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강간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년이라고만 설명했다. 경찰수사 착수의 유일한 단서는 피해자 집의 창문에서 발견된 지문과 손바닥 장문(掌紋)이었다. 영장없이 경찰은 24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경찰국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지문을 채취하고서는 무혐의로 석방시켰다. 피해자를 위해 마당일을 했던 14세의 소년이 사건발생 하루 뒤에 경찰서로 불러와서 조사를 받고 지문 채취후에 석방되었다. 그는 그후 4일간 여러번 심문을 받았으며 또, 여러번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갔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를 자신의 공격자라고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90마일 떨어진 다른 도시로 그를 데려가서 교도소에 밤새 감금시켰다. 다음날 소년은 자백문서에 서명했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도소로 돌아왔다. 그는 두 번째 지문채취를 당했으며, 처음 채취한 지문과 함께 그의 지문은 창문에서 채취한 잠재지문과 비교하기 위해 FBI로 보내졌다. FBI측은 소년의 지문이 창문에서 채취한 지문과 동일하다고 통보했다. Supreme Court은 공판때 사용된 지문 증거는 두 번째 채취한 지문임을

알아냈고 경찰이 제4차 헌법수정에서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5. 공판전 신원확인절차

청소년의 사진을 진열해 놓는 것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청소년 사법 및 비행방지법에서는 청소년판사의 서면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서는 안되며 청소년 범죄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대중매체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판전 신원확인 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사건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다. 경찰이 강간피해자에게 다른 사건으로 입수한 남자(소년)의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할수는 없었으나 며칠 뒤에 이 소년은 출석한 시간에 보호관찰 사무실로 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번에 그녀는 그가 가해자임을 확인했다. 약 6주 지나서 소년보호소 심리에서 그가 가해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1대1 확인절차는 헌법적으로 불완전하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미국대 Wade 건이었는데 Supreme Court는, “피고인은 기소후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권을 가진다” 라고 판결했다. Kirby 대 Illinois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기소후 절차에서 변호인 선임권은 고소

나 기소가 행해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추가했다. In re Holley 에서 강간 피의자인 청소년은 항소법원에서 그의 유죄를 반복시켰는데, 왜냐하면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에 조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Ⅵ. 靑少年犯罪의 豫防과 抑制

청소년범죄는 경찰에 어려운 문제를 던져 주고 있다. 경찰관들은 마약밀매 그리고 STREET GANG에서부터 우범소년, 가출 등 여러 형태의 청소년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총을 소지하고 있으며 더 많이 폭력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 두가지가 오늘날의 경찰이 직면한 중요 문제에 속하고 있다. 경찰과 청소년과의 관계는 Community policing(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하여 많이 형성된다. 1992년 2월 뉴욕 시경회보지에서 Brown 경찰장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뉴욕시경의 관할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범죄감소, 범법자 체포, 범죄위협감소 및 삶의 질의 향상에 목적을 둔 시민과의 동반자 관계”라고 정의했다. Vincent J. Webb와 Nante Graham에 따르면 Community policing은 오늘날 미국의 경찰정책이라고 일컫고 있다. 1992년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25개의 경찰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78%는

Community policing을 시행하고 있으며 13%는 community policing 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이며 90억불을 지원계획으로 내놓은 것은 이미 놀랄 일이 아니다.

Community policing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청소년형사사법처리에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Community policing은, 시민이 경찰을 바라볼 때 경찰관을 단순히 순찰차에 탄 익명의 사람에서 지역문제에 대한 정보와 해결책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시킨다.

- Community policing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소극적인 반응체제에서 해방시켜 적극적인 범죄예방에 직접적으로 종사토록 허용하고 있다.
- Community policing은 경찰활동은 경찰관을 시민의 더 자주 눈에 띄게하여 시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성을 증가시킨다.
- Community policing은 경찰활동을 분업화시켜 경찰관들로 하여금 자기일에 더 친숙하게 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도 알게 해준다.
- Community policing은 시민과 경찰과의 관계를 향상시켜 시민을 동반자로 간주하게 한다.
- Community policing은 거리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의사결정권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경관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지역사회를 통한 경찰활동, 학원을 중심으로한 경찰활동 및 갱집단에 기반을 둔경찰활동은 경찰이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저지하는데 필요한 Community policing전략이다.

1. 지역사회를 통한 경찰활동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주요관심사이다. 경찰관들은 학교행정담당자 및 교사,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간부, 청소년 보호소직원, 소년법원,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집의 고용원들과 좋은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한다. 물론 청소년 담당경찰관은 청소년 범죄자의 부모 및 범죄자 자신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회의 청소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경찰관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것이며 곤경에 처한 젊은이들로 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될 것이다.

대도시의 여러 경찰국에서는 청소년 범죄를 담당할 청소년부서를 만들었다. 이러한 청소년 전담부서 (범죄예방국, 청소년국, 청소년지원국, 청소년 통제과 또는 청소년과로 알

려짐)는 청소년 사건의 탐지, 수사 및 처리를 맡고 있다. 이 부서는 청소년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의 수사, 아동학대사건 수사 및 가출 청소년의 수색 등의 책임을 지고 있다. 청소년 전담부서 직원은 청소년들을 지역 사회의 적절한 사회복지기관에 이송한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감독하며 청소년 우범지역을 감시하고 범죄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법집행기관들은 청소년 상습범에 초점을 맞춘 특별프로그램을 고안해 내고 있다. 가장 인기있고 논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중증의 상습마약범죄자를 다루는 프로그램 인데(SHODI) 인데 밴츄라의 '청소년 사법 및 범죄예방국'이 주창한 것이다.

S.H.O.D.I.는 이미 알려진 청소년범죄자의 행태를 관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안점은 비행소년을 검문하기 위해 정지시켰을 때는 과거에 체포되었던 체포기록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한 것이다. 청소년이 1년 내에 4번 이상의 강력범죄를 범하였을 경우엔 경찰관은 이 청소년을 관찰해야 한다. 일명 추적자(tracks)라고 불리는 사회사업가가 1일 24시간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도록 청소년범죄자에게 배치된다. 표적이 된 젊은이가 체포되면 법원출두 동안에 억류되며, 성인 법원으로 이송되어, 장기적인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게 된다. 비록 청소년을 담당하는 변호

사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 경찰이 청소년을 괴롭히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부당하게 낙인찍게 만든다고 불평하지만 경찰관들은 이것이야말로 청소년범죄자들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청소년의 범죄 중에서 총기와 관련된 강력범죄의 단속이 현재 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다. 실제로 15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에 의한 살인사건의 약 80%가 총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 합동조사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청소년 총기소지자가 증가되었는데 시내 고등학교 남학생 3명중 1명이 여학생 10명중 1명이 거리에서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여러 연구에서도 근교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총기소지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Joseph F. Sheley와 Victoria E. Brewer에 의하면 5개 도심지역에서 4명의 남학생 중 1명 이상이 총기를 소유했으며 6명 중 1명이 자동 또는 반자동 권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2. 학원을 중심으로한 경찰활동

현재 경찰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중의 하나는 효과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1970년대 지역사회의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 교과과정속에 학교안전, 지역사 회관계, 마약 및 알콜남용, 市行政, 법원절차, 자전거안전 및 청소년범죄에 관한 내용을 담 고 있다.

어린이들과의 좋은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경찰관 친화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켄터키주 경찰은 10세에서 14세 까지의 빈곤층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일할 목적으로 섬캠프 (island camp)를 설립했다. 그 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프로그램에는 보이 스카우트와 경찰국에서 후원한 자동차 함께타 기와 범집행 탐험 포스트 등이 있다. 1990년 대에 들어와서는 약물남용예방 프로그램의 필요로 인하여 경찰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D.A.R.E.(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 프로그램은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경찰의 시 책이다.

D.A.R.E.프로그램은 마약남용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의 한 예이다. 이러한 약물남용 예방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담배, 마약, 알콜경험을 강요하는 동료친구들 의 압력을 피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있다. L·A.경찰국과 L·A.통합학구가 공동으로 1983년에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정복경찰관 으로 하여금 학교 정규수업시간에 교육하게끔 되어 있다. 주당 17시간으로 이루어진 교과과 정을 활용하여 D.A.R.E.프로그램은 5,6학년 학생들에게 중학교 입학준비를 위한 특별교육

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학교시기가 마약경 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프 로그램이 개설된 이래 D.A.R.E.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 갱예방, 갈등해결, 부모교육, 방과후의 레크리에이션과 공부 등에 까지 확 대되어 갔다. 자신의 관내에서 D.A.R.E.프로 그램을 활용하는 중서부지역의 한 경찰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L·A.경찰국에서 정립된 D.A.R.E.프로그 램은 어린학생들에게 자신있게 마약을 거절하 수 있도록 하는 자기주장 훈련을 교육시키는 데는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효율적인 것으 로 보인다. 모든학교에서 똑같이 D.A.R.E.커 리클을 적용한다면 차후 10년간 마약남용 건수가 상당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뉴욕시가 실시했던 마약남용에 대한 교육 및 단속을 위한 학교프로그램인 S.P.E.C.D.A. (A School Program to Educate and Control Drug Abuse)는 시경찰국과 시교육 위원회간의 협력프로젝트인데 이는 상당히 성공적인 마약방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 에는 5학년과 6학년간에 균등히 배분된 16시 간의 커리클이 있는데 여기서 마약남용의 위험과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알려주고, 학생들에게 마약사용을 조장하는 사회적 압력을 인식시키고 또한 마약흡식을 강요하는 동료학 생들을 피하는 방법도 교육시키고 있다.

마약예방프로그램 이외에도 경찰은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교내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수색하고 복도를 감시하며, 필요시 싸움을 중재하며 등하교시의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종종 학교건물 내에서 무기와 마약의 수색을 위하여 학원관계자의 지원을 받고 있다.

3. 갱집단에 기반을 둔 경찰활동

1980년 후반 이래 전국적으로 거리갱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했다. 이들 갱의 특징은 지역마다 매우 다르다. 거리를 배회하며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청소년 갱집단이 있고 또한 광범위한 마약행위에 종사하는 갱도 있으며 몇몇은 차에 탄채로 강력하게 사격을 가하여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1992년에 전국에서 규모가 큰 79개 도시의 경찰국을 조사한 결과 갱문제가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를 받은 경찰국의 91.1%는 청소년과 연루된 갱의 출현이 있다고 답변했다. 볼티모어등 3개 경찰국은 갱문제는 없지만 범죄행위에 연루된 청소년 집단이 있다고 답변했다. 오직 4개 경찰국(Memphis, Newark, Pittsburgh, Richmond) 만이 갱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다.

갱이 개입된 강력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사회는 갱문제의 심각성을 알게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경찰에게 압력을 가한다. 이

렇게 되면 경찰국은 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의 3가지 개입전략 중 한가지를 활용하여 이러한 압력에 대응하게 된다.

첫째, 청소년봉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는 특별히 갱문제 처리를 위하여 구성된 것이며 경찰국 내의 상설기구는 아니다. 경찰관들은 일상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지 따로이 갱문제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둘째, 갱 전담 부서를 활용한다.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형사계나 청소년계에서 차출된다. 셋째, 갱 경찰대는 갱문제만 처리하며 기타 일상업무는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봉사국과는 다르다. 갱 전담부서는 이부서의 세 번째 형태로서 이 부서의 직원들은 자신들을 갱 문제의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여러개의 갱 전담부서에서는 지역사회의 갱단원들간에 광범위하게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다.

VI. 맺는 말

경찰과 청소년과의 관계를 과소평가 하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형사사법제도와 최초로 접하는 단계가 바로 경찰이기 때문이다. 경찰과 청소년간의 관계는 과거 200년, 적어도 20년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지금의 청소년은 과거의 청

소년보다 경찰에 대하여 호의적이다. 심지어 청소년 범죄자들도 경찰에 대해 그들이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찰과 청소년 간의 최초 접촉건수의 약80-90%가 청소년 사법제도로부터 이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의 청소년업무 처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경찰이 저지른 잘못이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도 체포시에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범죄방어의 최일선으로서의 경찰은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990년대에 와서 경찰은 강력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범죄를 예방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청소년들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수의 지역사회에 갱단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마약음용을 회구하고 있으며 그들은 증오범죄(hate crime)를 통해 그들의 불만이나 갈등을 분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 제 동 향

□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1998. 6. 1, 대통령령 제15805호]

사상 초유의 국가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부족한 실업대책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의 기말수당의 지급액을 삭감·조정하고,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직수당을 인상·조정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으로 부처의 명칭 또는 인용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영 제 3조 등).

둘째,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을 월 19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영 별표11의 제2호자목).

셋째, 1998년 6월·9월·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을 차관급이상의 보수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80퍼센트를,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60퍼센트를, 4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40퍼센트를 각각 삭감·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영 부칙 제2항).

□ 의료보험법중개정법률

[1998. 6. 3, 법률 제5548호]

최근 산업전반의 경기침체 및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 및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인한 실업자가 종전 직장의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료의 50퍼센트를 1년간 경감함으로써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법을 개정하였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본인이 원할 때에는 퇴직일부터 6개월간은 퇴직조합의 임의계속피보험자로 남아 있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실업자의 의료보험혜택을 확대하고(법 제8조제1항).

둘째,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실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그 중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구직신청이 수리된 직장조합의 임의계속피보험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의료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료보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함은 물론 분기별로 이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1998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법 제52조제2항·제3항, 제55조제2항 및 부칙 제1조).

□ 사무관리규정중개정령

[1998. 7. 1, 대통령령 제15823호]

현행 사무관리규정상 기안문에는 결재선상

에 있는 관련자는 표시되나, 그외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참여한 다른 관련자들의 실명 및 의견은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 및 관련 기록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요 국정현안 사항,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 주요정책에 관하여는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있어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종전에는 문서작성시 정책발의자와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자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책임자를 알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령 제14조제4항).

둘째,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소속·직급·성명 및 의견을 기록하도록 하고,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실무자를 참석시켜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령 제34조의2).

셋째, 주요 국정현안 사항, 대규모의 국책공사 기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외교 및 통상협상의 내용, 법령의 제·개정, 국민생활에 큰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추진배경·추진경과·관련자·관련문서·회의기록(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의 기록) 등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존하게 함으로써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유사한 정책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령 제34조의3).

넷째,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는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등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령 제34조의4).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8. 7. 1, 대통령령 제15826호]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7.12.31, 법률제5487호)됨에 따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영을 제정하였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긴급히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임시보호 할 수 있는 기간을 3일이내로

하되, 당해 시설의 장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이내로 하고(령 제2조).

둘째,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장은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하도록 하여 피해자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령 제2조 제3항).

셋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의 범위를 가정폭력피해자의 일시보호와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등으로 하고(령 제3조제1항).

넷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일시보호 기간은 2월이내로 하되, 당해 시설의 장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령 제3조 제2항 및 제3항).

다섯째, 이 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으로 하였다(령 제5조).

□ 검찰사건사무규칙중개정령

[1998. 7. 3, 법무부령 제463호]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1997.12.13, 법률 제5435호)됨에 따라 피의자심문신청의 절차를 마련하고, 고등검찰청의 장이 소속검사로 하여금 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1997. 12. 13, 법률 제5430호)됨에 따라 그 경정절차를 정하는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7. 12. 13, 법률 제5436호)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1995. 12. 6, 법률 제5011호)이 제정됨에 따라 고소인 지정절차 및 마약류범죄 관련 보전절차 등을 마련하며, 기타 항고·재항고사건에 대한 각하결정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였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고소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고소인지정서등본을 교부하고, 신청인외의 자를 고소인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제10조제2항).

둘째, 검사가 피의자신문외의 기회에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신청인이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의 기재

를 생략하고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43조제6항).

셋째, 검사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구두·전화·전보·모사전송·서면 기타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제43조제7항).

넷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권의 고지여부 및 피의자의 심문신청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검사가 이를 보완하도록 지휘하거나 직접 피의자의 심문신청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제43조제9항).

다섯째,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있어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직접 이를 경정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을 변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제91조제1항).

여섯째,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거나 고소·고발·항고 및 재항고가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각하 하도록 하였다.(제91조제3항).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중개정령

[1998. 7. 3, 법무부령 제464호]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

이 있는 경우에 구속용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1997.12.13, 법률 제5435)됨에 따라 피의자심문신청의 절차를 마련하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997. 12. 13, 법률제5436호)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1995. 12. 6, 법률 제5011호)이 제정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 관한 임시조치 등의 절차 및 마약류범죄관련 몰수보전 등의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였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사법경찰관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의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제22조제2항).

둘째, 사법경찰관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호인 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구두·전화·전보·모사전송·서면 기타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으며(제22조제5항).

셋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 관한 임시조치의 신청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였으며(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

6).

넷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마약류범죄관련 몰수·부대보전절차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였다(제74조 및 제75조).

□ 행정심판법시행령중개정령

[1998. 7. 29, 대통령령 제15,848호]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1998. 2.28, 법률 제5529호)으로 내무부와 총무처가 행정자치부로 통합되고,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공무원위원의 소속기관을 조정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위원으로, 공공분야에 대한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위원으로 각각 지명하려는 것이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8. 7. 9, 대통령령 제15,832호]

외국금융기관이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법인도 국내금융기관이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법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신용정보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1998. 8. 1, 대통령령 제15,856호]

국민들의 다양한 치안욕구 충족을 위하여 현장치안활동 강화를 통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업무가 과중한 일부 경찰관서에 형사과를 신설하고,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경찰관서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대신 행정지원인력을 상계·감축하기 위하여 본 직제를 개정하였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치안수요가 증가하여 업무가 과중한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및 울산소재 3개 경찰서에 형사과를 신설하고(영 제57조 및 별표 3)

둘째, 서울 등 대도시 일부 파출소의 3교대 근무제를 확대실시하고, 날로 증가하는 컴퓨터범죄 등 첨단신종범죄 및 국제성범죄와 뺑소니 교통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따르는 피의자의 원활한 호송 및 정부대전청사의 효율적인 경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현장치안인력 954인(총경 2, 경정 4, 경감 5, 경위 14, 경사 244, 경장 465, 순경 209, 4급 2, 6급 2, 7급 5, 8급 2)을 증원하는 대신 행정지원인력 954인(기능직 10등급 △136, 고용직 △818)을 상계·감축 하였다.(영 별표 2 및 별표 3)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1998. 8. 1, 행정자치부령 제12호]

국민들의 다양한 치안욕구 충족을 위하여 현장치안활동 강화를 통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업무가 과중한 일부 경찰관서에 형사과를 신설하고,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경찰관서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대신 행정지원인력을 상계·감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였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치안수요가 증가하여 업무가 과중한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및 울산소재 3개 경찰서에 형사과를 신설하고(제34조 및 별표 3)

둘째, 교통과 및 경비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여 오던 제주지방경찰청과 일부 경찰서의 경비과 명칭을 경비교통과로 변경 하였으며(제34조 및 제49조)

셋째, 서울 등 대도시 일부 파출소의 3교대 근무제를 확대실시하고, 날로 증가하는 컴퓨터범죄 등 첨단신종범죄 및 국제성범죄와 뺑소니 교통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따르는 피의자의 원활한 호송 및 정부대전청사의 효율적인 경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현장치안인력 954인(총경 2, 경정 4, 경감 5, 경위 14, 경사 244, 경장 465, 순경 209, 4급 2, 6급 2, 7급 5, 8급 2)을 증원하는

대신 행정지원인력 954인(기능직 10등급 △136, 고용직 △818)을 상계·감축하였다(별표 7 및 별표 8)

□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8. 8. 10, 대통령령 제15863호]

고등검찰청에 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이 개정(1997.12.13, 법률 제5430호)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부를 설치하고 그 분장사무를 정하며, 기타 검찰청의 일부 기구와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관리과를 범죄정보과로, 환경과를 환경보건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영 제6조제1항·제4항 및 제7조제1항·제3항).

둘째, 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공판부 및 송무부를 신설하고, 송무부밑에 소송사무제1과·소송사무제2과를 두며,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지방검찰청의 소송사무과를 폐지 하였으며(영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별표 2의2 및 별표 3).

셋째, 서울지방검찰청의 송무부를 폐지하고, 소년부를 신설하며, 의정부지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설치하고(영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의7).

넷째, 부산지방검찰청 및 대구지방검찰청의

공판송무부를 공판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영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제8항,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1항·제8항).

다섯째, 대검찰청의 감정·감식요원중 별정직 5급상당 2인을 연구직 5급 2인으로 조정하고, 울산지방검찰청의 사건과장 및 공안과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5급정원 2인을 4급 정원으로 조정하고 (영 별표 1 및 별표 2).

여섯째, 지방화시대의 본격화에 따른 각 지역의 검찰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경 4개 지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조사과를 수사과로 개편하였다(영 별표 3).

□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98. 9. 19, 법률 제5570호]

국가공무원법의 개정(1998. 2.28, 법률 제 5527호)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되고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경감이하의 연령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경찰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과도한 승진경쟁 및 그로 인한 조직안정성의 저해, 경험이 축적된 전문인력의 조기 퇴직 등 계급정년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경은 2년, 경정은 3년씩 각각 계급정년을 연장하여 총경은 11년, 경정은 14년으로 하고, 경감이하의 계급정년은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1998. 9. 16, 법률 제5556호]

최근 금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고, 보험금계산시기를 조정하며,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을 양수하는 정리금융기관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등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예금자보호 및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법을 개정하였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현행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과 외부의 자금지원이 없이는 예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도 부실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법 제2조제5호).

둘째,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 금융권별로 매년 예금등의 잔액의 1만분의 5 내지 1만분의 100으로 차등화되어 있는 예금보험료율의 상한을 모두 1만분의 50으로 조정하였으며(법 제30조제1항).

셋째, 보험금의 계산시점을 보험사고가 발

생한 날(지급정지된 날 또는 파산한 날)에서 보험금지급공고가 있는 날로 변경하여 예금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금지급공고가 있는 날까지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법 제32조제1항).

넷째,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기 위한 정리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의 작성, 주식인수대금의 납입, 현물출자재산의 인도,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 상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법 제36조의8제1항).

□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

[1998. 9. 12, 행정자치부령 제15호]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제복에 이름표를 달도록 하고,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경사이하 경찰관의 정모 턱끈 및 모자표장의 제식 등을 경위와 동일하게 하며, 전투경찰순경의 임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순경외의 전투경찰순경도 임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일반경찰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중 개정령

[1998. 9. 12, 대통령령 제15880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력감축

등으로 퇴직인원이 대량 발생함에 따라 연금 재정수지의 악화가 예상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부담을 상향조정하여 연금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영을 개정하였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종전에는 급여수급권자가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가서 이를 수령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영 제25조).

둘째, 19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의 율을 보수월액의 1,000분의 65에서 1,000분의 75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율을 보수예산의 1,000분의 65에서 1,000분의 75로 각각 상향조정 하였다. (영 제59조제1항 및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8. 11. 3, 보건복지부령 제8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87호)과 동법시행령(1998.7.1, 대통령령 제15,826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였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가정폭력관련상담소는 피해자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과 피해자의 임시보호를 위하여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상담원은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서 국가·대학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개설·운영하는 상담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하고(제3조 및 별표 1).

둘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소정원 1인당 3.3제곱미터이상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상담원의 자격 등의 기준은 상담소의 상담원의 자격 등의 기준과 동일하게 하였으며(제5조 및 별표 2).

셋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자 또는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로서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거나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받게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제6조).

넷째,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상담원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업무정지 1월, 3차위반시에는 상담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으며(제11조).

다섯째,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가정·가족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3년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부칙 제2항).

□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8. 10. 10, 법무부령 제467호]

공안사범에 대한 전향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가석방심사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상의 전향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를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1998. 10. 10, 대통령령제15,9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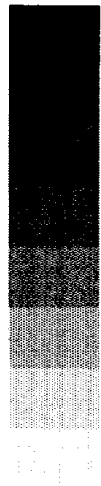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예금보험금의 예금보험금의 예산시점을 보험사고 발생일에서 보험금지급공고일로 변경함으로써 예금자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1998. 9. 16, 법률 제5,556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보험사업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영을 개정하였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보험사고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산출근거를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발생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영 제16조제3항).

둘째,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험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당해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영 제18조제1항).

셋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예금보험금의 계산시점이 보험사고 발생일에서 보험금지급공고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영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치안시책자료

- 
- 노숙자 실태 및 대책
 - 초등수사 요령
 - 즉심제도 개선방향안에 대한 고찰
 - 일본의 즉결심판제도
 -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 청소년이 바라보는 [청소년 가출]에 대한 인식조사
 - 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부패구조와 생활문화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 보험범죄의 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치안연구소 시책자료('98-1)

노숙자 실태 및 대책

〈범죄대책실 경감〉 이 돈 일

- ◎ IMF의 여파로 기업의 도산, 기업구조 조정에 따른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실직노숙자들이 '98. 8월말 현재 3000명선을 돌파
- ◎ 향후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됨에 따라 실직노숙자들이 더욱 증가하고 이에 따른 범죄등 사회적 일탈행위의 증가가 예상되어 이들의 범죄연계 차단 불순분자 침투 방지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I. 노숙자 현황

1. 전국 노숙자 현황

가. 전국 노숙자의 대부분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집중.

나. 이는 국철·지하철역·공원 등 노숙하기가 용이하고 정부기관, 각종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에서 무료급식, 취로사업 알선 등 노숙자 보호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전국 노숙자 현황

구 분	총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경 기	대 전
노숙자수	3,050	2,400	300	120	100	100	30
비 율	100	78.7	9.8	3.9	3.3	3.3	1.0

* '98. 8. 31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임.

2) 서울시내 노숙자 출신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현황

22.9%로 자녀양육비와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30~40대 가장들이 실직으로 인해 노숙생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1) 출신지역별 분포

서울시내 노숙자 출신지역별 분포는 서울출신이 39.7%로 가장 많고 경기출신이 17.4%로 수도권 지역출신이 약 60%를 점유.

3) 직업별 분포

노숙자들이 실직전 가졌던 직업별분포는 일용직 9.8%, 노무직 7.9%,

생산직 6.8%등으로 전직이 노동적인 사람들이 IMF이후 일거리가 많이 없어지면서 실직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연령별 분포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27.8%, 30대가

■ 서울시내 노숙자 출신지역별 현황

구 분	총 계	서울	경기	경남	전남	충남	경북	강원	전북	충북	제주	무응답
인 원	2,073	824	360	133	97	80	73	57	46	22	10	371
비 율	100	39.7	17.4	6.4	4.7	3.9	3.5	2.7	2.2	1.1	0.5	17.9

* '98. 3. 30~6.18까지 사랑의전화 복지재단에서 서울시내 노숙자 중 1:1 면접에 응한 2,0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임.

■ 서울시내 노숙자 연령별 현황

구 분	총계	40대	30대	50대	60대	20대	10대	무응답
인 원	2,073	577	474	266	108	104	10	534
비 율	100	27.8	22.9	12.8	5.2	5.0	0.5	25.8

■ 서울시내 노숙자 직업별 현황

구 분	총 계	일용직	노무직	생산직	자영업	기능직	사무직	서비스직	공무원	요리사	무직	농수산업	전문직	기타 무응답
인원	2,073	204	165	139	108	100	98	92	68	42	38	26	13	980
비율	100	9.8	7.9	6.8	5.2	4.8	4.7	4.5	3.3	2.1	1.8	1.3	0.6	47.2

II. 노숙자 실태 및 문제점

1. 노숙자들은 대체로 19:00시부터 역 터미널 공원 등 노숙지역에 모여 잠을 잔후 출근시간대인 07:00시를 전후해 3~5명 단위로 해산하는 등 개별행동보다는 집단화하는 경향.
2.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식구들을 볼 면목이 없으며 집으로 가기를 꺼려하고, 취로 사업 등 일자리가 있음에도 일당이 낮다, 힘이 든다는 이유로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등 재기의지 부족 등 나태화.
3. 자신들의 처지를 비판, 소주 등 독한 술을 상습적으로 마셔 건강을 해치고 패싸움 등 소란을 일으켜 시민들에게 혐오감 및 불편 야기.
4. 노숙자들끼리 결탁하거나, 단독으로 부녀자 혼자 있는 집 또는 빈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강 절도범죄 자행.
5. 다수의 위력을 과시 구걸을 강요하거나, 타인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집단으로 대항하는 등 폭력세력화 할 수 있는 가능성 잠재.

※ 노숙자 범죄사례

▣ 외출했다가 귀가하는 부녀자 상대 3인조 노숙자 강도

피의자 이영길(27), 이종기(24), 방상현(28) 등은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는 자들로써 '98. 9. 9, 12:50분경 서울 광장구 구의3동 현대프라임 아파트 단지내에서 일당 2만원씩을 받고 이발소 선전광고지를 배포하던 중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20대 부녀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아파트문을 여는 순간 안으로 밀고 들어가 비닐테이프로 입을 막고 상반신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히고 가스총으로 위협, 귀금속 및 현금 등 559만원 상당을 강취 도주 → 2명 검거, 1명 수배중.

▣ 노숙자가 야간에 빈사무실에 침입 수표 등을 절취후 교도소에 가기 위해 파출소에 자수

피의자 김길환(33)은 영등포역 일대에서 노숙을 해 오던 자로 '98. 9.18, 21:00경 영등포구 문래3가 소재 서일금속 1층 사무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내에 있던 2,950만원권 약속어음 1매, 500만원권 가계수표 3매 등 도합 4,4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후 IMF로 인해 살기 힘들어 교도소에 가기 위해 고의로 범죄를 하였다며 영등포경찰서 문래파출소에 자수.

Ⅲ. 전 망

1. 경제난 악화 및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실직 노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생계형 강 절도, 무전취식, 분풀이식 폭력범죄 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2. 실직자, 노숙자들의 자포자기에 의한 준 범의식 희박화, 의지력 상실 등으로 불순분자 침투 또는 범죄와 연계될 우려가 높음.

Ⅳ. 대 책

1. 노숙지역 방범활동 강화

- 1) 국철 지하철역 공원 등 노숙지역 관할 파출소에서 취약시간대(19:00~익일 07:00) 특별순찰실시 범죄유발분위기 사전 제압.
- 2) 무료급식소등 노숙자 일시 집결장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결시간을 파악, 도보순찰 및 112순찰차를 탄력적으로 운영.
- 3) 노숙지역에서 범죄시 집단화 속성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이 출동하고, 형사기동차 등 가용경력의 즉각적인 지원체제 구축.

2. 노숙자 현황 상시파악, 적극대처

- 1) 외근활동시 노숙지역 규모, 특이양상 등을 세밀히 관찰하고 새로운 노숙지역 발생시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취업알선 또는 귀향조치하고 집단화 사전예방.
- 2) 상습부랑인등 발견시는 관할 행정관청과 협조, 부랑인 선도시설 등에 인계조치.

2. 노숙자에 대한 범죄조직 및 불순분자 연계침투등 대책 추진

- 1) 실직자 등 집단노숙장소에 수사 정보 보안형사 배치, 범죄예방 감시 및 첩보수집 활동 강화 → 사전차단.
- 2) 사회복지사 등의 노숙자 상담과 관련 경찰관서에 신변보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치안연구소 시책자료('98-6)

초동수사요령

〈범죄대책실 경감〉 이 돈 일

I. 초동수사 의의

초동수사란 사건발생의 시초에 있어서,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긴급한 수사활동.

- 4) 주야간을 막론하고 수사형사의 행선지를 파악, 사건 발생시 신속 즉응.
- 5) 대도시 형사기동대 기동순찰 확행 사건 접보 즉시 현장출동.

II. 사전준비태세 확립

1. 기동력 등 즉응태세 유지

- 1) 경찰서 단위로 긴급사건 출동용 차량 확보 대기.
- 2) 수사용 차량이 없을때에는 경찰서장차 또는 112순찰차 등을 항상 1대씩 초동수사용 차량으로 지정 대기.
- 3) 경찰서 단위로 형사대기근무제 및 파출소직원 대기근무제 확행.

2. 현장감식장비 정비 확보

- 1)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는 수사함 또는 감식가방을 비치하여 신고수리 즉시 휴대임장 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

가. 감식기구 : 사진기(필름), 전지, 현장 지문 채취기, 족흔적 채취기, 석고, 5만분의 1 관내지도.

나. 필 기 구 : 만년필 또는 볼펜, 연필, 모필, 색연필(적색), 백묵(각색), 인주

다. 제도기구 : 도판, 줄자, 분도기, 콤파스

라. 용 지 류 : 도화지, 조서용지, 백지, 지문 채취용지, 투명지, 기름종이, 포장

지, 피해통보표, 현장 자료수집 일람표, 대소봉투.

마. 기타기구 : 고무장갑, 편셋, 알콜, 비누, 가제, 탈지면, 붕대, 반창고, 소독 및 구급약품, 확대경, 자석, 후랏쉬, 가위, 칼, 풀, 성냥, 양초, 노끈, 번호표, 재료수집용 초자기, 목상자 공병 등.

2) 지 파출소 정비사항

- 가. 용지(16절지, 전지)
- 나. 만년필, 연필, 백묵, 인주, 매직잉크
- 다. 관내지도
- 라. 회중전등, 성냥, 양초 기타 투광기 등
- 마. 현장보존용 로프
- 바. 출입금지 표지판
- 사. 장갑

3) 지방경찰청 보유 현장감식차량은 입장출동에 즉응할 수 있도록 항시 점검 실시.

Ⅲ. 각종 범죄사건 초동조치 요령

1. 인지자(認知者)의 조치

1) 신고자의 신속접수 : 신고접수시간을 기록하고 내용을 최단시간내 청취기록.

가. 본서에의 제1보

- 흉악 중요사건 등 긴급사건인 경우에는, 우선 그것이 어떠한 사건인가를 청취하는 동시에, 그 상세한 것을 듣기 전에 본서에 전화보고(제1보).
- 만약 같이 근무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용원을 부탁하여 상황 청취와 본서 전화 즉보를 분담해서 실시.

나. 청취사항 : 신고인의 확인, 주거, 직업, 성명, 연령, 신고사건과의 관계, 신고시각의 확인.

다. 청취내용 : 범행일시(언제), 범행장소(어디서), 범인(누가, 누구와 같이, 인상착의 특징, 一見한 품채 등), 동기(왜), 피해자(누구에 대하여), 피해품 피해정도(무엇을), 방법(어떻게 하여), 행위(무엇을 하였다), 결과(어떻게 되었다), 범인의 도주방향 승용차량, 부근에 있었던 자, 현재의 상황 등.

2) 보고수배

가. 즉시 본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사건 사고의 개요 특히 수배를 요하는 사항, 보고자의 조치 행동 등을 간결하고 요령 있게 보고.

나. 본서에서는 이 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수배 수사 긴급배치의 실시 수사요원의 입장 비번자의 소집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3) 현장출동

가. 신고접수나 112출동지령 접수시는 발생 장소로부터 최근거리에 있는 외근근무자가 신속히 출동.

- 사소한 신고라도 목살하지 말고 현장 출동 상황파악.

나. 경찰장구등 휴대품을 소지하고 출동

- 현장출동시는 도착전 경찰장구나 무기를 점검하여 범인의 반격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

다. 상황에 따라 경력의 지원을 요청

라. 신고인은 길안내, 현장설명 등을 위해 가능한 동행하고, 동행도중에 상세한 사정을 청취.

마. 출동도중에 범인이라고 의심나는 자는 반드시 확인.

2. 입장자의 조치

1) 현장입장

가. 대소경중 사건을 막론하고 피해신고 수리 즉시 제1차적으로 파출소 직원 또는 형사가 신속 출동 입장.

나. 중요사건 발생시는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이 출동 입장.

다. 특히 중요한 사건 발생시는 지방경찰청장이 입장하여 현장 수사지휘.

2) 현장입장 확인

가. 접보 즉시 현장에 출동한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방경찰청 서 수사(형사)과장, 지 파출소 직원의 출동시간 및 임장 도착시간을 사건 발생보고서에 첨기, 경찰청에 보고(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 보고대상사건 기준).

■ 보고시간 엄수

- 1보 : 지 파 $\xrightarrow{15\text{분}}$ 경찰서 $\xrightarrow{15\text{분}}$ 지방청 $\xrightarrow{15\text{분}}$ 경찰청 = 45분
- 1보시 지휘보고와 참모보고 반드시 병행
- 보고는 최초상황을 보고후 2보, 3보로 속보

나.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현장 입장상황을 수시 현지도 확인.

3) 현장조치요령

가. 현장상황파악과 보고

- 현장도착시 도착시간 확인, 출입자를 2명 이내로 제한하고 장갑 착용 범인의 예상 출입통로를 피하여 출입.
- 사체, 흉기, 현장의 물건, 출입문의 상태를 그대로 현장보존 (출입자의 유류물을 남기지 말 것 : 족적, 모발, 담배꽂초, 지문 등).
- 출입자에 의한 현장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후 보고.

- 현장상황 보고 : 형사(수사) 과장, 종합상황실, 지방청 수사(형사)과.
- 수사 긴급배치 여부 판단(수사간부) 및 필요한 속보 이행.

나. 피해자 구호조치 및 주의사항.

- 의사, 구급요원 요청 구호조치 : 유무선 통신, 112 119 등 이용.
- 중상자로부터 청취해야 할 사항 : 메모 및 녹음.

- 범인(인상, 특징, 흉기, 도주방향 및 수단)
- 피해자의 성명, 주소, 친척관계
- 원인 및 피해품
- 부근에 있었던 관계자

- 피해자 현장상황 메모, 표시, 사진촬영
- 피해자 현장변경은 최소한도로 하고, 변경전 부위표시, 사진촬영.
- 의견상 사망여부 판단 금지 : 의사 확인.

다. 현장보존범위의 결정

- 사건현장 방실로부터 가족 격리.
- 출입금지 표식을 한 로프(포승줄, 새끼줄, 빈상자 등)로 보존범위 표시.
- 보존범위내 출입통제
 - 허용범위 : 경찰서장, 형사·수사과장, 필수 수사요원.
 - 나중에 도착한 외근경찰관 및 형기대요원은 경비근무.
- 관찰수사간부 도착시 먼저 도착한 외근 경찰관은 보고후 철수 : 현장보존지원.

• 범죄현장보존시 유의사항

- 현장도착시간과 현장보존임무를 마친 시간 및 현장감식시간과 관찰을 마친 시간의 기록
- 불필요한 대화금지
-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 것
- 가래침을 뱉거나 휴지를 버리지도 줍지도 말 것
- 현장의 전화기는 사용하지 말 것
- 변소는 채증이 완료때까지 사용하지 말 것
- 주방 등 물이 나오는 장소는 사용하지 말 것
- 현장에 있는 술잔, 컵 등을 사용하지 말 것
- 현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말 것
- 중상자를 병원에 이송중 사망하면 시간을 기록할 것
- 사체를 부득이한 경우 흩어붙이나 광목등으로 덮을 것
- 현장보존 직원의 교체나 관찰직원의 교체시는 건문한 내용, 관찰기록, 주의사항, 진행정도 등을 인수인계할 것
- 이미 보고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인지하면 즉시 추가보고할 것

라. 목격자 등의 파악

- 제1차 발견자, 목격자, 사건관계자들의 신명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및 사건내용 탐문
- 가족들로부터의 사정청취는 사건과 관련없는 장소에서 실시.

마. 수사자료의 보존

- 인멸, 변질, 이동 등의 우려가 있는 옥외의 혈흔, 족적, 흉기, 기타 유류물 보존(우천시 : 덮개, 빈상자, 세수대야)

이용) 및 사진촬영.

- 현장수사자료는 감식요원 입장시까지 수집, 채취 금지.

바. 현장감식

- 수사책임 간부의 지휘하에 관찰 실시
- 현장사진 촬영(또는 VTR 촬영)
- 현장 경비원의 배치
- 수사요원의 관찰
- 채증활동
- 범행수법의 검토

사. 출입금지구역 표시

- 출입금지구역 설정(로프등으로 표시) : 침입로, 도주로, 수색의 필요성 고려, 광범위하게 설정.
- 수사관은 출입완장 착용.
- 사건관계자의 출입은 현장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허용.
- 기자 등 보도관계자는 대기선을 설정하여 통제 및 취재 지원.
- 교통정리 : 교통혼잡의 경우 차량통행 고려.
- 출입금지구역 경계시 목격자, 사건관계자 발견에 노력.

아. 민중에 대한 처우

- 현장에서의 경찰관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의연하면서도 언사는 부드럽고 공손하게 응대하여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도록 유의.

Ⅳ. 범죄현장 관찰요령

1. 현장관찰시 유의사항

- 1) 현장은 증거의 보고라는 신념에 의한 관찰
- 2) 냉정침착한 관찰
- 3) 선입감을 피한 객관적인 관찰
- 4) 질서있는 관찰
- 5) 광범한 관찰
- 6) 치밀한 관찰
- 7) 반복적인 관찰
- 8) 관찰수단의 총활용
- 9) 전주의력을 집중한 관찰
- 10) 수사지휘관의 통제하에 움직일 것
- 11) 범행시와 동일조건하의 관찰
- 12) 모순과 불합리점 발견에 노력하는 관찰
- 13) 분석적인 관찰

2. 현장관찰전 준비사항

- 1) 사건개요에 대한 준비지식 획득
- 2) 범죄구성요건 검토
- 3) 관찰계획의 수립
- 4) 영장이 필요한 경우와 그 준비
- 5) 관찰기재의 준비

3. 현장관찰에서의 사전조치

- 1) 상대방의 승낙 또는 영장제시
- 2) 입회인의 참여
- 3) 현장보존의 적부와 현장변경 유무의 조

사확인

- 4) 현장출입자의 확인
- 5) 출입제한의 조치
- 6) 관찰 기초사항의 확인

4.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

- 1) 현장의 위치 및 부근상황 관찰
- 2) 외곽에서 중심부로
- 3) 위에서 좌로, 좌에서 우로
- 4)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 5)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 6)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 7) 소멸되기 쉬운 자료부터(눈 위의 족적 등) 관찰

5. 현장관찰의 요령

1) 범인에 관한 사항

- 가. 범인의 신체적 생리적 특징을 나타내는 자료 : 유류된 지문 족적 모발 치흔.
- 나. 혈액형과 관련된 자료 : 혈흔 정액 타액 담배꽂초 등.
- 다. 범인의 착의 소지품 등의 유류물
- 라. 범인의 지식 직업 생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
- 마. 범인의 수, 공범의 유무가 추정되는 자료
- 바. 범행수법 등.

2) 범행일시에 관한 사항

- 가. 범행일시 : 시계의 정지상태, 일력 일기 메모, 신문 우편물의 투입상황 등
- 나. 침입시간 : 취침 기상 상태, 식사상태, 족적 혈액의 상태, 기차 자동차 등의 통과소리, 공장의 작업소리 등
- 다. 도주시의 상황
- 라. 범행소요시간의 지정자료
- 마. 범행일시를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축제일 등)

3) 범의장소에 관한 사항

- 가. 현장의 위치 및 주위상황
- 나. 피해자를 지목할 이유가 될 상황
- 다. 피해장소의 구조와 피해품의 소재상황

4) 범의동기에 관한 사항

- 가. 피해품의 유무
- 나. 신체적 피해상황
- 다. 우발적 계획적 범행의 여부

5) 범행 방법에 관한 사항

- 가. 침입구의 특징 및 시정관계
- 나. 범구의 사용상황 및 흔적
- 다. 물색 목적물의 특징
- 라. 특수한 행동의 유무
- 마. 범의행동의 상황 및 경위
- 바. 피해의 반출경위
- 사. 도주의 경로

치안연구소 시책자료('98-5)

即審制度 改善方向에 대한 考察

〈사회안정대책실 경감〉 이 동 권

I. 첫머리에

최근 대검 검찰제도개혁위원회에서는 즉심제도 개선책으로

- 1) 즉심청구권자를 현행 경찰서장에서 검사가 직접 청구하거나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되 검사의 지휘 및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 시·군법원에 대응하는 시·군검찰청 또는 유사제도 도입도 검토

- 2) 즉심대상 기준을 법정형(현행 선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

- 3) 장기적으로는 현행 약식절차와 즉심절차를 통합한 경미사건 신속처리절차 마련 등 세부안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 검찰에서는 '98. 1.19 검찰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 이원성 대검차장)을 발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즉심제도, 특별검사제도 등 14대 과제를 선정 토의중에 있음.

경찰에서는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제도운영상의 개선책을 조기에 확정·추진하여 경미사건 독자성 확보 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II. 즉심처리현황과 검찰의 주장내용 및 배경

1. 즉심처리 현황

- 1) 즉심대상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

(죄명별 : 경범죄, 특별범죄, 형법범 등 총 133개 항목 및 법률)

* '57. 2.15.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정 당시 "5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가 '94. 7.27. 7차 개정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 제정시부터 경찰서장을 청구권자로 규정.

- 2) 매년 즉심인원은 기소인원과 비슷한 비

을로 처리.

* 96년기준 즉심인원 : 832,005명, 기소인원 : 973,843명(불
임자료 2의 표1참조)

3) 즉결사건중 도로교통법(80.9%)·경범죄
처벌법(15.9%) 위반이 총인원의 96.8%
를 차지.

* [자료1·2] 즉심청구대상 및 처리현황.

을 배제하는 사례가 없음.

- 독일은 1975년 질서위반법을 제정하
여 모든 질서위반행위는 행정제재화.
- 프랑스는 위경죄 소추권을 검찰이 갖
고 일부만 경찰에게 위임.
- 일본은 1947년부터 [부검사]가 경미
사건소추전담.

* 각계의 비판 및 검찰의 입장 불임자료 4 참조.

2. 검찰측 주장내용

1) 즉심절차에 검사의 관여를 배제한채 진
행됨은 인권유린 소지가 높음.

2) 선고형 벌금 2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하여
경찰서 예심관 재량에 의해 즉심청구여부
가 결정.

- 법정형이 아닌 법률상·재판상 감경
사유와 정상참작사유까지 고려한 법
관의 선고형량이 즉심기준.
- 기준이 애매하여 훈방·즉심회부·형
사입건(약식)여부가 경찰서장 및 예
심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선택되고 즉
심대상이 과도하게 확장.

* 자료3 경찰즉심처리절차 참조

3) 즉심청구 및 구류를 별건인 중요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신병확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

4) 독·불·일에서는 경미사건에 대하여
우리의 즉심제도와 같이 검찰의 소추권

3. 검찰의 즉심제도개선 추진 배경

1) 예상선고형을 기준으로 한 경찰서장의
즉결청구권남용방지와 적정한 공소권행
사를 기하기 위해 제도보완을 해야한다
는 학계·법조계 일각의 입법론을 반영
함.

2) 향후 즉심업무과중을 이유로 검사의 직
무를 대행(대리)하여 경미사건(약식·즉
결사건)만을 전담처리하는 부검사(일본),
구검사(독일)제도등 검사직무대행제 도
입을 추진.

* 독·일은 사법연수생 또는 검찰청 직원중 일정한 자격
을 갖춘 자를 직무대행검사로 임명, 경미사건에 대한
검사직무대행을 하도록 하는 제도운영.

검사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중요사건수
사·수사지휘·공소유지에만 전념할 수 있
어 검찰의 질적 도약을 기하기 위함.

* '98. 11. 18 문화일보는 '검찰에서 검사직무대리제도 도
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Ⅲ. 현행 즉결심판제도 운영상 문제점

1. 즉결심판 출석담보 및 형집행을 위하여 보호조치 활용

- 1)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어야만 즉결심판 청구 접수 관행.
- 2) 서면 청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2. 즉결피의자를 법정에 강제 인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 전무

- 1) 즉심피의자중 주거가 불일정한 자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 조사완료후 즉결심판시까지 강제구금 불가.
- 2) 즉심피의자중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을 즉심피의자 법정 강제인치에 활용하는데 탈법소지.
- 3) 불출석자에 대해 출석요구서 발부 및 소재수사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강제구인은 불가능.
- 4) 강제력 행사가 불가능하고 불법구금에 따른 책임문제를 의식 적극적인 법집행 미흡(꼭 처벌해야 하는 피의자도 훈방하는 사례).

3. 즉결심판법정 비상설화로 업무처리 효율성 저하

- 1) 서울의 경우 통상 매일 1회 08:00(토·일 09:00) 즉결법정이 개정되므로 피의자 장시간 대기 불가피.
- 2) 중소도시, 군단위 경찰서의 경우 월 1~2회 불규칙적으로 개정하므로 즉심 피의자 귀가조치후 다시 별도 출석기일 통보해야 하므로 업무가중.

4. 유치명령과 구류기간의 불일치로 탈법 구금 시비소지

- 1) 유치명령은 5일 이내에만 가능하여 구류기간이 더 긴 경우 일시 석방후 형확정시(선고일로부터 7일) 재소환하여 형집행을 계속해야 하는 실정.
- 2) 일부 피의자들이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하지 않고 유치명령기간 종료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경우 석방조치 불가피(불법구금 시비우려).

5. 불출석 심판대상 한정으로 경미사범에 대한 인권보호 한계

- 1) 즉결심판결과 벌과금 선고가 전체의 96.2% 차지함에도 불출석심판 대상자는 경범·교통범칙금 미납자로 한정.
- 2) 즉심피의자 출석에 따른 경찰의 출석요

구서 발부, 벌과금징수 등 업무부담 가중(경찰서 즉심담당자는 1명에 불과하고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타업무와 겸무하는 실정).

- 유치기간 7일로 연장하여 형집행 실효성 확보(즉심선고 즉시 형집행 실시로 유치명령기간 경과를 이유로 석방요구하는 사례방지).

IV. 즉심제도 개선 방향 검토

1. 현행즉심제도에 대한 청구권 남용시비가 없도록 운영상의 제도개선 필요

1) 즉심기준으로 기존 경찰업무편람외에도 법원·검찰과 협의하여 공동기준 마련하여 객관화·투명화하고 청구권 남용시비 차단.

- 구류형선고를 제한 폐지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등 새로운 제재수단 강구, 경미한 일반형사범에 대한 “미처분제도” 도입 고려 등.
- 즉결법정 상설화 또는 야간개정 필요 (별도 법 개정없이 법원예규로 가능).
 - * 지방의 경우 즉심예정일을 경찰서별로 미리 지정, 피의자 귀가조치시 출석기일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함.
- 즉결심판 피의자 보호조치근거규정 신설 .
- 귀가후 불출석자에 대한 법원의 구인장 발부방안 강구
-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어야 즉심청구를 접수하는 법원의 관행 해소.

2) 즉심구류가 별건구속수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감독장치를 정비하고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지양 등 인권침해 최소화.

- 현지도 및 훈방확대, 예심제 엄격실시, 불출석제도 적극 활용, 일시귀가 등 비보호대상 확대 등.

* 불출석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키위해 벌금 과료선고 후 형집행을 위한 예납금 납부제도, 양형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선고와 예납금차이 최소화 필요.

3) 법정형기준 심판대상 확정은 즉심제도 취지와 심판범위 확대의 연혁적 발전과정에서 비추어 시대에 역행할 우려.

* 1949. 9.26. 법원조직법 제정 당시에는 법원의 즉결심판 시물관할은 [법정형] 기준 5,000원이하 벌금으로 하다가 도박 단순폭행, 행정사범 등 경미사건 처벌에 대한 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1959. 1.13. 동법 개정시에는 [선고형] 기준으로 변경.

4) 즉심청구권자로 검사를 포함할 경우 즉심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어남에 따라 경미한 형사사건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보장적 기능이 저해될 우려.

2. 경찰의 경미사건처리 독자성 확보를 위한 홍보방안

1) 형사사법서비스제고 및 예산절감 등 장점을 제시.

* 국민의 전과자화 방지, 번잡한 형사절차에 따른 국민불편해소, 검찰의 공소 제기·경찰의 일건 송치절차업무 부담경감.

2) 현행 제도상으로도 경찰의 즉심청구권 남용방지는 보장되며 그 남용례는 미미함.

• 즉심절차법에는 판사의 즉결심판청구 기각(제5조제1항)·무죄선고(제11조 제2항)·정식재판청구권(제14조 제1항), 형소법 : 검사의 구속장소감찰(제198조의 2) 등의 권리구제 장치가 있음.

* '98. 1. 1~10. 31간 총 889,453건의 즉심청구 중 무죄 및 청구기각은 1,537건(0.17%)에 불과함.

3) 약식명령청구가 가능한 검사에게 즉심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이 거의 없음.

* 단, 약식명령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主刑에 구류형 추가로 검사의 즉심청구권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소 가능.

4) 일정범위의 벌금형만을 즉심대상으로 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 저해.

* 법정형 20만원이하 등으로 한정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이외에는 사실상 즉심회부 불가능하므로 즉심제도 유명무실화 초래.

* [자료5] : 현행 즉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료 1]

즉심청구대상 및 처리현황

1. 즉심청구 대상

- 1) 범위 :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한 사건.
 - 2) 죄명별 청구대상.
 - 경범죄처벌법 : 50개항목(범칙금미납자 포함)
 - 특별법범 : 도로교통법위반범등 60개범죄
 - 형 법 범 : 23개범죄
- * 합의부관할사건, 고소고발사건, 송치관련사건은 제외

2. 즉결심판청구현황

1) 즉결사건 접수현황

(표 1) (단위 : 명)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즉 결 사 건	715,600	573,440	823,589	1,096,585	1,032,789	832,005
기소형사사건	819, 195	841,814	946,845	888,942	906,330	973,843

2) 즉결청구 범죄별 현황('97)

(표 2) (단위 : 명, %)

계	경 범	특 별 범 범			형법범
		소 계	교 통	일 반	
1,143,652	181,681	943,085	925,048	18,037	18,886
(100)	(15.9)		(80.9)	(1.5)	(1.7)

* 도로교통법위반(80.9%), 경범죄처벌법위반(15.9%)로 총인원의 96.8%를 차지하고형법범 행정법 등은 3.2%에 불과

3) 즉결사건 처리내용('97)

(표 3)

(단위 : 명)

계	벌 금	구 류	과 료	청구기각	무 죄	선고유예 형 면제
1,143,652 (100.0)(34.0)	389,043 (2.9)	33,314 (62.6)	716,213 (0.05)	686 (0.08)	889 (0.33)	3,507

* 벌과금의 선고가 총 인원의 96.6%이고, 구류 2.9%, 청구기각 0.05, 선고유예0.33%, 무죄 0.07%로 나타남

[자료 2]

즉결심판 청구사건

1. 특별법 : 60개 범죄

번호	죄 명	처 벌 조 항	
		조 문	행 위 태 양
1	도로교통법 위반	제108조 제109조 제63조 제2항	과실로 타인의 재물손괴 *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1조(사고처리기준) : 피해액 20만원 미 만일 경우 즉심 회부 교통방해물 노상방치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 제57조	공동사용 허가
3	도 로 법	제82조 제47조 제54조의4 제54조의4 제3항 제84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10명 미만의 일시점용에 한함) 자동차 전용도로 출입행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제한 조치 위반 차량의 운행제한 등
4	식품위생법	제74조 제23조 제1항	무허가 영업(노점상에 한함)
5	하 천 법	제83조 제45조 제1항 제84조 제71조	연안구역안에서 행위제한 하천감시원의 조치
6	자연공원법	제59조 제3호 제36조 제2호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7	전염병예방법	제55조 제4호 제10조	예방접종 강제적 건강진단

번호	죄명	처벌조항	
		조문	행위태양
		제55조 제6호 제9조	
8	계량법	제42조 제1호 제11조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금지
9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제90조 제1항	입목벌채 등의 허가과 신고(자기산림 내에서의 낙엽 채취에 한함)
10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주민등록증 담보제공

* 기타 : 향군법, 철도법, 사형행위단속법, 윤락행위방지법, 어선법, 집시법,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2. 형법범 : 23개 범죄('95년 29,867건, '96년 23,445건 단속 실시)

- 1) 폭행죄 : 96년 7,531건(32.1%)
- 2) 손괴죄 : 3,910건(16.7%)
- 3) 도박죄 : 10,638건(45.4%)
- 4) 주거침입죄 : 943건(4.02%)
- 5) 업무방해죄 : 739건(3.15%)
- 6) 기 타 : 316건(1.37%)

*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회복된 사건에 한함

3. 경범죄처벌법(범칙금 미납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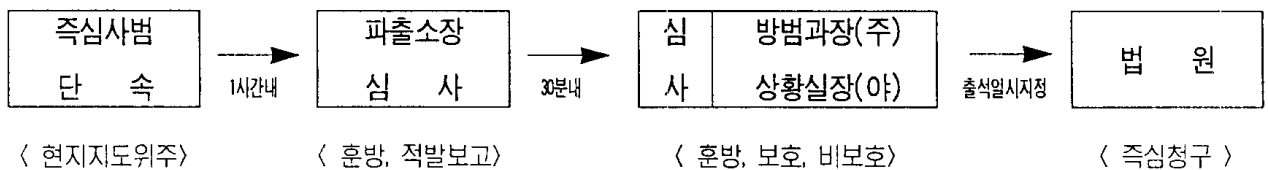
호	즉결심판항목(29개 유형)	호	통고처분항목(21개 유형)
1	반집등에의 잠복	16	오물방치 ① 쓰레기, 죽은짐승투기 50,000 ② 담배꽂초, 껌, 휴지투기 30,000
2	홍기의 은닉휴대	27	노상방뇨등 ① 대소변행위 50,000 ② 침뱉는행위 30,000
4	폭행등 예비	20	자연훼손 50,000
5	허위신고	22	수로유통방해 20,000
6	시체현장변경 등	24	불안감 조성 50,000

호	즉결심판항목(29개 유형)	호	통고처분항목(21개 유형)	
7	요부조자 등 신고 불이행	25	음주소란 등	50,000
8	관명사칭등	26	인근소란등	30,000
9	출판물의 부당게재등	28	물건던지기등 위험행위	30,000
10	물품강매 청객행위	29	공작물등 관리소홀	50,000
11	허위광고	30	글뚝등 관리소홀	50,000
12	업무방해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50,000
13	광고물 무단첨부 등	34	무단소등	50,000
14	음료수 사용방해	35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50,000
18	의식방해	36	공무원 원조 불응	50,000
19	단체가입 강청	38	전당품 장부허위 기재	50,000
21	타인의 가축, 기계등 무단조작	39	디신요법	20,000
23	구걸 부당이득	40	야간통행제한 위반	30,000
27	위험한 불씨사용	48	새치기	50,000
31	정신병자 감호소홀	49	무단출입	20,000
33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52	뺨등 진열행위	30,000
37	성명 등의 허위기재			
41	과다노출			
42	지문채취불응			
43	자릿세 징수등			
46	비밀 증교습 및 장소제공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	
47	암표매매		① 지하철역 구내	30,000
50	총포등 조작장난		(승강기, 버스등 대중교통수단, 가스등	
5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위험물 저장판매시설, 병원시설내)	
53	장난전화 등		② 역대합실, 실내체육관 등 기타 장소	20,000

[자료 3]

경찰 즉심사범 처리절차

1. 즉심사범 처리절차



1) 즉심사범에 대한 처리구분

가. 훈방 :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92.12.3.경찰청 훈령 제93호)

-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선의 정이 현저한 자
 - ① 연령상 고령자, 미성년자(초범)
 - ② 신체상 정신박약자, 보행불구자, 질병자
 - ③ 신분상 주거 및 신원이 확실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자, 무지한 노총부, 유아동반, 또는 임신부녀자
 - ④ 죄질상 공무방해 또는 상습범이 아닌자, 고의성이 없는 자
 - ⑤ 경찰서장이 특히 훈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즉심청구

- 보호 심판청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에 해당하는 자(주취자, 정신착란자, 요구호자등).
 - * 단순히 주거·신원이 불확실한 자는 보호심판청구대상자가 아님에도 실무상 신병확보를 조건으로 즉심청구서류를 접수하는 법원관행에 따라 경찰은 소재수사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즉결보호실에 구금하는 관행 보편화
- 비보호 심판청구(범칙금 미납자 포함) : 신원이 확실한자, 타기관고발사건으로 형집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다. 최초 즉심청구대상으로 보고된자라도 예심에 의해 형사입건

[자료 4]

각계의 비판 및 검찰의 입장

구 분		학계 법조계	검 찰
제 도 상	연 혁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의 영향으로 국가기관의 편의위주로 형성, 개선 필요 • 7차례에 걸친 보완을 거친 제도로써 소송경제와 피의자 보호에서 장점이 있고 법관의 사법적 통제를 받으므로 현행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의 식민통치수단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미군정기를 거쳐 진지한 검토가 없이 유지되어 왔으므로 식민지 사법청산차원에서 개정 필요
	즉 심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고형이라는 즉심기준이 애매하여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즉심대상이 무제한 확대되므로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되 그 결과로서 종래 즉심사건중 제외되는 사건은 약식사건으로 흡수처리

구 분		학계 법조계	검 찰
제		정범죄에 한정 • 관행상 처리되는 즉결사건은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회복된 경우에 한하므로 범죄한정 不要 • 고소 고발사건은 명시적으로 제외조항 신설	• 고소 고발사건 제외
	청 구 권 자	• 기소독점주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검사즉심청구권 보장 - 부족한 검사로 인한 업무량 가중은 일본의 부검사제도를 도입하여 해결 • 비정규검사인 부검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소송경제와 절차의 신속성이라는 즉심의 장점을 감안, 현행대로 유지	• 경찰서장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형벌권의 통일적 행사라는 관점에서 - 검사가 모든 즉심사건에 대한 청구권을 갖되 우선 즉심사건 중 일부는 약식으로 흡수하고 나머지는 경찰서장에게 즉심청구권 행사를 위임(프랑스식) - 장기적으로는 부검사제를 도입, 모든 즉심사건에 대한 청구권 행사
도	즉 결 피 의 자 피 고 인 의 이 의 제 도	• 일본의 교통사건 즉결수속법처럼 피의자가 즉심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즉심청구를 할 수 없는 제도 도입 필요 • 정식재판청구권이 보장되므로 이의제도 不要	
	피 고 인 의 재 판 상 방 어 권	• 경찰자백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선고가 가능 하도록 하고 경찰조서의 증거능력은 불인정 • 절차의 신속이라는 제도의 취지에서 현행대로 자백보강법칙배제와 경찰조서 증거능력 인정을 유지	
상	유 치 명 령 제 도 폐 지	• 구류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를 이유로 한 유치명령제도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집행정지가 되지 않아 사후 무죄가 되더라도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폐지 • 구류의 집행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그 기간도 5일정도이므로 현행 유지	
	구 류 형	• 약식에도 없는 자유형인 구류형을 즉심에서	• 즉심에서 자유형인 구류형을 제외하고 약식

구 분		학계 법조계	검 찰
단 용 상	폐 지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 인권침해이므로 폐지 • 즉결대상에 형법범까지 포함되어있으므로 구류형제도는 타당	절차에 구류형을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무 죄 선 고 에 대 한 검 사 의 정 식 재 판 청 구 권 인 정 여 부	• 정식재판청구시에만 검사승인을 요하는 현 행제도 유지	• 경찰서장의 정식재판청구권 여부에 대한 검사의 사전승인 의무화
	보 호 실 대 기 관 행	• 비보호대상 즉심피의자 보호실 대기는 불법 구금이므로 불출석 심판제도 활용	• 검사의 지휘감독 및 구속장소 감찰 강화
	즉 결 청 구 권 남 용	• 경찰서장의 즉결청구권을 박탈 또는 제한하 여 검사가 청구권 행사 • 즉결청구권 남용에 대해서는 구속장소 감 찰, 즉결심판청구기각, 무죄선고, 정식재판 청구제도로 대처하면 충분	• 경찰서장의 즉결청구권을 박탈 또는 제한 하여 검사가 청구권 행사

[자료 5]

현행 즉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問 題 點	改 善 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심피의자 단속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권위 주의적인 태도로 중죄인 취급 - 단속경찰관 및 담당자의 청구서류 부실기 재, 업무태만 - 실적위주의 단속 및 증거확보 결여 - 임의동행 아닌 강제연행 시비 빈발 - 진술거부권 불고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제도 적극 활용, 단속경찰관 및 담당자 교양 지도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손한 언어와 태도로 상대방이 납득하도록 단속 - 단속요령 및 처리과정 교양 지속 실시 - 범죄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히 명기하고 증거사진 및 약도와 형태 등을 첨부 - 불법연행 엄격감독 및 당사자 책임부과 : 경미범은 주거 확인되 면 구속영장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강제연행이 불가하며 임의동행 거부시 현장에서 서류작성 단속 - 진술거부권 고지, 이의신청 등 피의자 권리 보장 검토(법개정시 반영)

問 題 點	改 善 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도 및 훈계방면 실시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출소장 등 소신이 결여, 권한행사 기피 - 일부 파출소 직원이 소장 허락없이 임의 훈방하는 등 훈방권 남용사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 [즉결사무처리지침]에 의거 [훈방기준]에 해당할 경우 최대한 훈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심사 미 실시 사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 변명기회 미부여, 피의자 서명날인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심피의자 직접 개별 면담후 충분한 변명기회 부여 등 책임간부의 실질적 예비심사 확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장시간 대기 물의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파출소, 본서 사무실, 대기실에 장기대기 등으로 업무지연 처리 - 비보호처리원칙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직법상 보호조치(제4조) 대상자만 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업무편람의 “대기실 시설의 개선” 규정을 삭제하여 불법감금 합법화 시비를 해소하거나 보호유치의 법적근거 마련(법개정시 반영) • 주거 신원확실자 등은 출석요구서 발부후 귀가조치, 경범 및 교통 범칙금 미납으로 즉심회부된자는 범칙금 1.5배액 예납시 불출석 심판청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칙금 통고처분제도 미활용 및 소재수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직법 규정에 위반한자에 대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미출석시 소재수사 확행으로 지연처리 방지-담당인원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범죄사건에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사건 용의자를 우선 편법으로 즉심회부하여 인권침해 논란 - 즉심청구권이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편의보다 증거확보후 조치 - 납부기한내 범칙금 미납시 형사처분인 즉심청구보다 통고처분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종결 필요(법개정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20만원 이하의 벌금~처할” 의미와 관련 해석기준 모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법정형으로 개정안을 검토중이므로 선고형 또는 처단형으로 규정 명시 필요(법개정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심처리 대상자의 연령제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상 14세 미만이 아닌한 소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심처리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심대상자가 소년일 경우 소년법의 적용배제 규정을 명문화(법개정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심절차에 대한 홍보 미흡 - 즉심 및 통고처분업무 전산관리운용 미흡 - 청탁이나 정실에 의한 업무처리, 피의자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빈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담당창구, 사무실, 파출소에 홍보물 게재로 처리내용과 권리관계 설명 고지 - 즉심사범 적발시 기초자료 정확히 전산입력 및 경찰관서 상호 간 긴밀한 협조 필요 - 지도 감독 강화

치안연구소 시책자료('98-4)

일본의 즉결심판제도

〈범죄대책실 경감〉 이 돈 일

- ◎ 일본은 제2차 대전 패전후 점령군 사령부의 일본 민주화 개혁의 일환으로 1948년 형사소송법을 개정, 경찰을 제1차 수사 주재자로 명문화하여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고
- ◎ 동시에 간이재판소가 설치됨에 따라 종래의 즉결심판제도(⇒ 현행 우리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유사한 미죄처분제도(微罪處分制度) 및 구(區)검찰청제도와 교통사건 즉결재판제도를 각각 도입

I. 미죄처분제도

1. 미죄처분제도란

경찰이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 범죄사실이 극히 경미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正]이 송치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미리 지정한 것은 송치를 하지 않고 경찰에서 종국처리하고 미죄처분사건 월보(月報)만 검찰에 보고하는 제도로써, 미죄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기준은 大檢[최고검찰청]이 설정한 기준

에 따라 지방검찰청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경찰에 통보.

2. 관련근거.

1) 일본형사소송법 제246조(사건송부)단서규정

사법경찰원은 범죄의 수사를 할 때에는 이 법률에 특별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검찰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일본범죄수사규범(국가공안위원회 규칙) 제 198, 제199조

가. 제198조(미죄처분할 수 있는 경우)

-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범죄사실이 극히 경미하고 검찰관으로부터 송치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사전에 지정된 것에 관하여는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제199조(미죄처분의 보고)

- 전조(제198조)의 규정에 의해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는 그 처리년월일, 피의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거,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매월 일괄하여 미죄처분사건 보고서에 따라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미죄처분요건(검사장 명의 ‘송치절차 특례에 관한 件’)

- 1) 피의자가 성인(成人)일 것.
- 2) 범죄사실이 경미할 것.
- 3) 통상체포(=체포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한 사건 또는 고소 고발 자수사건이 아닐 것.
- 4) 최종 범정(犯情)이 다음에 해당될 것.
가. 절도, 사기, 횡령죄 및 이에 준하는 장물죄 중 다음 각 사항을 충족할 것.

- 피해액이 근소할 것('90.12월부터 1만 엔 이하)
- 犯情이 경미할 것
-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것
- 피의자가 소행이 불량하지 않을 것
- 우발적 범행일 것
- 재범의 우려가 없을 것

나. 도박죄 중 다음 각 사항을 충족할 것

- 得失의 목적인 재물이 극히 근소할 것
- 犯情이 경미할 것
- 공범자 모두가 재범의 우려가 없을 것

4. 미죄처분시의 조치

- 1) 피의자에 대하여 엄중히 훈계를 하고 장래에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경고.
 - 2) 친권자, 고용주, 기타 피의자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자를 대신할 자를 출석요구하여 장래에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를 주고 각서[請書]를 징구.
 - 3) 피의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사죄, 기타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훈계.
- ※ '93년도 일본의 미죄처분 : 80,124건(검찰관 송치 사건 2,179,214건 대비 3.7%).

II. 구(區)검찰청 제도

1. 구(區)검찰청 제도란

구검찰청제도는 미국의 순회 재판소를 모방하여 경미한 사건은 주민의 생활근거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지는 서민을 위한 취지에서 간이재판소에 대응하여 설치된 제도로 경미사건을 수사하여 간이재판소의 약식 재판절차에 의해 처리.

2. 관련근거

1) 일본검찰청법 제2조

- 가. 최고검찰청은 최고재판소에, 고등검찰청은 각 고등재판소에 각 지방검찰청은 각 지방재판소에, 구검찰청은 각 간이재판소에 각각 대응하여 이를 설치한다.
- 나. 법무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는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또는 가정재판소의 지부에 각각 대응하여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지부를 설치하고, 당해 검찰청의 사무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3. 취급사건의 범위

1) 사물관할(재판소법 33조)

가.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

나. 선택형으로서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 죄다. 주거침입 동미수, 상습도박 도박개장, 절도 동미수, 횡령, 유실물횡령, 장물수수등, 전당포영업법위반의 일부, 고물영업법위반의 일부중 3년이하의 징역을 과할 수 있는 사건.

2) 배당에 의한 취급사건

가. 원칙적으로 검사취급사건이나 부검사가 지방검찰청검찰관 사무취급 부검사로서 배당받은 경우.

4. 업무처리

- 1) 동경구 검찰청등 규모가 큰 구검찰청에는 관할지방검찰청의 고참검사가 상석검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하고 있어 사실상 부검사(副檢事)가 구검찰청의 업무를 관장.

※ 부검사제도

- 일본의 패전후 새로운 재판소법의 시행과 더불어 즉결심판제도가 폐지되어 종래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된 위경죄, 즉 구류나 과료에 해당하는 죄가 전부 간이재판소에 의하여 처리됨에 따라 검찰관이 취급하는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종전의 검사자격을 가진 검찰관을 임용하는 것이 인적으로나 예산상 극히 곤란하여 일정한 사건은 종래의 검사의 임용자격을 완화하여 필요한만큼의 검찰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

- 임명자격 :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정령에 정한 2급관
리 기타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부검사선고심사회(副檢事選考審査
會)의 선발을 거친 자.

Ⅲ. 교통사건 즉결심판(재판)제도

1. 교통사건 즉결심판(재판)제도란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광범위한 대
상에 걸친 즉결심판제도는 폐지되고 다만, 도
로교통법 제8장(제115조~제124조)에 규정된
5년이하 징역 또는 20만엔이하 벌금에 해당하
는 교통에 관한 형사사건의 신속 적정한 처리
를 위해 도입한 제도임.

2. 관련근거

1) 교통사건즉결재판수속법(제1조 및 제2조)

가. 제1조

- 이 법률은 교통에 관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나. 제2조

- 이 법률에 있어서 [교통에 관한 형사
사건]이라고 함은 도로교통법 제8장
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3. 즉결심판 청구권자 및 심판

- 1) 즉결심판은 검찰관이 청구하고 간이재
판소가 심판하도록되어 있으나
- 2) 즉결심판에 대하여 소수의 정규검사가
일일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부검
사가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도로교통
법 위반사건을 처리.

4. 형 벌

교통사건 즉결심판형벌은 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몰수 기타 부수처분을 과할 수 있음.

치안연구소 시책자료('98-2)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 '98. 9.23 서울특별시청소년 종합상담실 개원 1주년기념 심포지엄 자료 소개 -

〈범죄대책실 경감〉 이 돈 일

1. 집단따돌림(왕따)의 정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은어인 ‘왕따’란 단어는 ‘왕따돌림’의 준말로 일본의 이지메 현상과 같은 집단따돌림을 말하며, 두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속한 집단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를 지칭.

2. 학교에서의 따돌림 실태와 특성

1) 따돌림 실태

- 가.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 '97. 11월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학생 2,5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왕따’ 즉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1%(중학생 13.8%, 고등학생 8.7%)이며, 특히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16%로 따돌림을 당한 학생들이 가장 많음.

- 학급당 ‘왕따’의 숫자는 1~2명의 경우(56%)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4명(21.1%)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보다 큰 문제는 전체 76.5%의 학생이 자기주위에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있어도 교사에게 알리지 않고, 35.8%의 학생(여자중학생의 경우는 50.8%)이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친구로 사귀지 않는다고 응답.

나. 일본 청소년연구소에서 '98. 4월 한국, 중국, 일본 등 세 나라의 중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 학교내에서 학생들끼리 구타 등 폭력

- 학교내에서 학생들끼리 구타 등 폭력 행위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한국이 49%로 가장 많고, 중국 38%, 일본 28% 순이며
- 폭력을 동반한 금품갈취도 한국이 32%, 중국 11%, 일본 4%순으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폭력 및 금품갈취 행위가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2) 따돌림의 유형

가. '97년도 청소년 대화의 광장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상대를 하지 않는다가 5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약을 올린다가 42.1%,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가 40.8%, 여러사람 앞에서 무시하고 창피를 준다가 39.8%,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면서 조롱한다가 39.3%순으로 나타남.
- 남녀 학생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남학생들의 경우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약을 올린다”(55.6%)와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하면서 조롱한다”(54.9%)가 가장 많고 → 남학생은 적극적, 공격적.
- 여학생의 경우는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상대를 하지 않는다”(61.9%)와

“물어봐도 대답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47.7%)가 가장 많음 → 여학생은 수동적.

3) 따돌림 피해자의 특성

가. 따돌림의 대상

- 잘난 척하고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는 아이(70.7%)
- 선생님한테 고자질을 잘 하는 아이(35%)
- 공부만 잘 하고 똑똑한 척하는 아이(28.9%)
- 이친구 저친구에게 째짜거리는 아이(30.5%)
- 어병해 보이는 아이(28.9%)
- 특하면 엄마한테 이르는 아이(24.5%)
- 내숭떠는 아이(24.5%)

나. 따돌림 피해자의 공통적 특성.

- 자신이 타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해 지나치게 민감해 하고 걱정이 많음.
- 자기는 매력이 없어서 아무도 자기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믿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의외모에 대해 자기애적(自己愛的) 경향.
-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자기를 낮게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

- 대인관계에서 자기노출을 과도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노출을 두려워하여 꺼리는 경향.
-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고 요구해봤자 배척을 당하거나 피해를 볼 것이라는 믿음을 지님.

다. 따돌림 현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 따돌림의 가해학생들이 끈질기게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소외시킴으로서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게 만들 정도로 매우 집요.
- 따돌림의 형태나 수법, 괴롭히는 언행의 내용이 음습하게 이루어지고 점차 집단화 정도가 심화.
- 따돌림의 가해학생들이 별 죄의식 없이 행위를 자행.
- 전혀 저항할 힘이 없는 박약아나 지체부자유아를 대상으로 할 정도로 따돌림의 정도가 매우 잔인.

3. 집단 따돌림현상의 사회 심리적 원인

1) 가정 : 처벌위주의 양육태도가 가해자를 양성

가. 지나치게 명령적이거나 비난을 자주하

며 책임질 수 없는 말로 자녀를 위협하는 부모들의 양육방식은 자녀들에게 타인을 조절(control)하려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전략을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

2) 학교 : 통제위주의 교육이 동조자를 양성

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되어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을 계발하고 인격도야와는 거리가 먼 합목적성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간으로 양성.

- 학생들이 자기를 객관화시켜 바라보는 능력 부재.
- 교사의 룰에 맞지 않으면 문제아로 취급하는 학생관리체제의 문제.
- 학생들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이고 규격적인 교육풍토.

4. 해결방안

1) 학부모의 원인진단과 교사상담

가. 학부모 입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아이와 함께 차분히 생각, 아이의 태도나 행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정하는 것이 우선.

나.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사와 상담하고 혹시 따돌림이 있다면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그 원인을 따져 대응.

다. 학기초에 자녀가 산만하거나 수업능력이 떨어져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의 부모는 반드시 교사를 방문, 미리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

나.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면담과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된 원인과 개인적 가정적 특성을 파악.

다. 소집단 활동을 통한 특별활동의 강화

- 각종 씨클 활동을 활성화시켜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Peer - Group Therapy(同類집단 치료)

가. 또래집단 전체를 치료대상으로하여 —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 부족한 대인관계기술, 자기확신감 회복, 열린 마음과 적절한 의사소통 등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유도.

나. 일반학교 상담교사들과 지역사회의 청소년 상담기관의 종사자들이 동류집단 치료법에 대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등 전문적인 상담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 경주.

다. 학급담임이 정기적으로 교실내 학생들의 친구관계 형성과 그 특성을 파악.

라. 개인과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실시

- 학교에서의 지도방안 중 가장 궁극적인 해결은 교사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학생을 관찰하고 지도.

3) 학교에서의 지도활동

가. 교내에서의 따돌림 실태를 파악, 따돌림 예방과 대응전략 수립.

- 따돌림의 빈도 유형,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확인.

치안연구소 시책자료('98-10)

청소년이 바라보는 「청소년 가출」에 대한 인식조사

〈치안연구소 경위〉 황 규 정

- ◎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 가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으나 정확한 청소년 가출 현황 조사가 없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91,'96년 서울 YMCA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각종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
- ◎ 서울 YMCA에서는 그 동안의 조사결과 및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요즘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청소년 가출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의 가출실태, 청소년들 입장에서의 가출의 이유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

1. 조 사 개 요

1) 조사대상

서울시내 23개 중.고등학생 2,374명

학 교 별	중학교 9개교	인문고 9개교	실업고 9개교	비 고
인 원(%)	1,065명(44.9%)	865명(36.4%)	444명(18.7%)	

2) 조사기간

'98. 10. 7~10. 31.

2.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

1) 청소년의 가출 경험

가. 응답자의 11.7%가 가출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성별로는 남학생 15.6%, 여학생 9.0%
- 학년별로는 중학교 8.6%, 인문고 12.4%, 실업고 18.8%

※ 재학생에 한정된 것으로 가출후 학교에 결석, 휴학, 자퇴는 불포함.

2) 친한 친구의 가출 경험

가. 응답자 중 52.3%가 친한 친구 중에 가출했거나 가출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고, 중학생이나 인문고에 비해 실업고가 높음(74.1%).

나.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85.6%가 가출 경험이 있는 친구를 갖고 있음.

3. 청소년 가출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1) 청소년 가출에 대한 생각

가. “상황에 따라 가출할 수 있다” 71.8%, “청소년기에 해볼만한 자연스러운 일” 11.2%로 허용적 태도.

나. 가출 청소년에 대한 생각

- 응답의 93%가 주위의 가출 청소년의

인식을 이해하고 수용,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은 7%에 불과.

-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 청소년들이 자신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입장.

다. 가출후 귀가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

- 청소년들이 호의적인 태도에 비해 문제아 취급(45.0%).

라.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이유

- 가정, 부모로 인한 것이 직접적 요인
 -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가출 원인의 51.3%, 청소년들이 가출 충동을 느끼는 상황의 60.3% 점유.
 - 학교의 규율과 통제, 친구들의 유혹.

4. 청소년 가출의 문제점

○ 가장 큰 문제점은 유해환경에 쉽게 접하게 되어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47.9%).

○ 유흥업소 취업은 남학생 (4.6%)에 비해 여학생(14.5%)이 쉽게 취업, 문란한 성관계와 유흥업소 미성년자 고용의 또 다른 문제 야기.

○ 학업 중단, 학교 복귀, 졸업은 중학교, 인문고 보다는 실업고가 더 곤란.

1) 청소년 가출의 문제점 - 성별 -

내 용	계(%)	남	녀
나쁜 친구를 사귀기 쉽다	266(12.1)	166(17.0)	100(8.2)
유해환경에 쉽게 접하게 되고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1,056(47.9)	466(47.7)	590(48.1)
유흥업소에 쉽게 취업할 수 있다	223(10.1)	45(4.6)	178(14.5)
문란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185(8.4)	86(8.8)	99(8.2)
학업을 중도포기 하게 되거나 학교복귀, 졸업이 어려워진다	434(19.7)	191(19.5)	243(19.8)
기 타	40(1.8)	23(2.4)	17(1.4)
계(%)	2,204(100.0)	977(44.3)	1,227(55.7)

2) 청소년 가출의 문제점 - 학교별 -

내 용	중 학 교	인 문 고	실 업 고
나쁜 친구를 사귀기 쉽다	181(18.9)	51(6.1)	34(8.2)
유해환경에 쉽게 접하게 되고 가능성이 높다	비행으로 연결될 428(44.8)	467(56.1)	161(38.7)
유흥업소에 쉽게 취업할 수 있다	101(10.6)	61(7.3)	61(14.7)
문란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66(6.9)	74(8.9)	45(10.8)
학업을 중도포기 하게 되거나 학교복귀, 졸업이 어려워 진다	161(16.8)	166(20.0)	107(25.7)
기 타	19(2.0)	13(1.6)	8(1.9)
계(%)	956(43.4)	832(37.7)	416(18.9)

5. 청소년 가출 대책

1)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환경이 우선

- 청소년 가출의 주요한 원인이 가정환경이므로 가족간에 신뢰를 쌓고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환경 조성.

2) 사회적 지원 체제 확립

- 가족의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고, 가정에서의 불만을 완화시키는 사회체제가 필요.

3) 청소년 문화시설, 쉼터설치 확대

-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청소년들의 휴식, 놀이, 만남, 학습을 위한 작은 공간 마련.

4) 교육제도 및 학교교육환경 개선

- 학교 징계제도 개선과 전반적인 교육제도와 학교환경의 변화.
- 학교에 가기 싫고 공부가 부담스러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받아들여주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

5)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 외부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휩쓸려서 비행과 탈선의 현장으로 빠져들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되므로 불법단속, 처벌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와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관심이 필요.

6) 청소년에게 건전한 일자리 제공

- 본인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치안연구소 시책자료('98-3)

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부패구조와 생활문화

〈치안행정연구실 경감〉 박희룡

◎ 한국의 부패구조는 오랜시일에 걸쳐 누적되어 형성된 사회문화 또는 생활문화이며, 일관되고도 지속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청산할 수 있으며

* 구조적 요인 : ① 경조사문화 ② 회식문화 ③ 접대문화 ④ 사교육비 ⑤ 교제비 ⑥ 청탁문화 ⑦ 선물문화 ⑧ 공사구분 혼동 ⑨ 촌지문화 ⑩ 적당주의 문화 ⑪ 과도한 행정규제

◎ 우리 사회에 내재하는 전근대적 문화 및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부패원인을 고찰하여 합리주의적 생활문화 정착, 전 국민의 의식개혁 등 구조적 부패 생활문화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제언

1. 우리나라에 특유한 부패의 구조적 요인

1) 慶弔事 文化

- 가. 경조사시 과도한 초청으로 생계비 지출 요인 증가.
- 과도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직책 남용, 가렴주구형 부패 발생.
 - 경조사를 공공연한 뇌물 제공의 기회

로 활용, 비리 발생.

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4①)에서는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을 금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에서 친·인척이나 가까운 친지를 하객으로 초청하는 경우를 허용하고(시행령§3)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2) 會食文化

가. 직장 회식이 유관기관에서 가림주구할 명분을 제공하며, 회식후 잔액을 횡령 착복함.

나. 잦은 회식으로 예산의 변칙운영 초래
 • 출장비, 일용인부 인건비, 수용비 등을 변칙운용하여 회식비용 충당.

다. 예산, 경리부정에 의한 직장회식에 대하여 공무원 사회의 문제의식 부족.

3) 接待文化

가. 각종 명목의 감사, 지도방문, 상관접대 등은 하부기관이 관련업자에 대하여 경비충당의 명목으로 부조리의 원인 제공.

나. 법에 허용되지 않은 감사, 너무 잦은 감사는 지양되어야 함.
 • 심지어 1년 중에 240일간 각종 감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음.

4) 私教育費

가. 지나친 자녀보호 및 일류대학병에 의한 사교육으로 생계비 총액의 1/2~1/3을 사교육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있으며

나.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각종 비리 기회 모색현상 발생.

5) 交際費

가. 學緣, 地緣, 血緣, 人緣, 軍緣, 특정 종교연, 특정 직장연 등 각종 모임에 가입, 회비·가입비등 명목으로 지나친 경비지출 → 지출경비 조달이 부패의 원인이 됨.

나. 특정집단에 의한 비리 발생
 • 세우회(퇴직 세무공무원 모임)는 세관의 국가창고를 무상사용 또는 일반업자에 대여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6) 請託文化

가. 정해진 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탁에 의한 비원칙적 해결방안 모색.

• 인사, 세금, 각종 공사, 재판, 각종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청탁에 의한 비리 발생.

나. 청탁에 대한 범죄의식 부족
 • 청탁을 받은 사람은 청탁내용에 대하여 해야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어 범죄의식 희박함.

7) 膳物文化

가. 전래의 미풍양속을 빙자한 각종 뇌물 제공의 기회 제공.

나. 공직자윤리법상 외국인으로부터 100달러이상, 국내 싯가 10만원 이상의 선물

은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내국인에 의한 선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현실임.

8)公私區別混同

가. 각종 인허가는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수행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성 뇌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소위 '괘씸죄'의 빌미가 됨.

나. 회계 공무원의 공사 혼동

- 회계공무원이 국고계좌가 아닌 본인계좌에 입금후 이자를 착복하다가 나중에 원금을 잠식하고 결국에는 거액을 횡령하는 사례 발생.

다. 공공기관의 낭비문화

- 인공위성직원(보직없이 장기 해외연수, 유학중인 직원)은 국고낭비의 요인.

라. 과도한 해외공관문제

- 브뤼셀에 2명(벨기에대사, EU대사), 로마에 2명(이탈리아대사, 로마교황청대사), 파리에 3명(OECD대사, NATO대사, 프랑스대사)등 중복현상
- 각종 정부기관의 과도한 해외 사무소(해외 사무소가 없는 정부기관은 대법원과 감사원밖에 없음).

마. 상설 선관위는 비상설기관화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됨.

바. 국립대학, 병원, 연구소 등의 사무직원도 감축하여야 됨.

- 국책은행의 보수도 미국의 경우보다 50%나 많은 실정임.

9)寸志文化

가. 학교, 병원, 쓰레기, 교통위반 등 사회 전반에 만연.

나. 국민의 60% 이상이 20~30만원은 '떡값'이며, 이에 대하여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다. 적은 것도 범죄라는 의식이 정착되어야 하며 소위 '떡값문화'는 불식되어야 함.

10)適當主義文化

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적당주의는 각종 부실설계 → 불법담합 → 부실시공 → 부실하도급 등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각종 비리의 온상구실을 함.

나. 남해대교의 경우 감리를 미국인 회사에서 미국인이 담당하여 국내 교량중에 최고의 견고성을 유지하고 이후 보수비도 거의 안드는 실정.

다.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직업정신, 장인정신이 필요함.

11) 過多한 行政規制

가. 식품위생법(§30)의 시간제한 규정은 단속과정에서의 각종 부정과 비리발생의 기회를 제공.

- 업주자율에 맡기고 위법에 대해서만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함.

나. 농지법상 농민만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하여 매매과정에서 각종 편법 및 부정 발생.

다. 각종 특혜규정으로 비리발생

- 조세감면특례법으로 인하여 특례를 받고자 세무공무원과 야합을 하고
- 각종 저리융자 특혜를 위해 금융기관과 야합하며
- 산업시설자금도 한보의 경우처럼 비적절하게 운용될 경우 엄청난 부패현상을 초래하며
- 농어촌 구조개선기금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됨.

2. 부패 구조의 해결방안

1) 관용주의 형사사법정책은 신중하게 적용해야 됨.

가. 연중 행사화된 가석방, 사면, 복권 등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나. 영국의 경우는 금세기 1~2번밖에 사면한 경우가 없음.

2) 국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 필요

가. 선진 제국의 합리주의적 생활문화를 배워야 하며

나. 법과 절차를 존중하고, 규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분위기 형성.

3) 사회 구조적 부패원인 해결

가. 우리나라에 특수한 각종 사회구조적 부패원인을 불식하고

나. 지구촌 전체에 통용되는 공통·보편·타당한 생활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됨.

치안연구소 시책자료('98-8)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치안연구소 경위〉 황 규 정

- ◎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시·도 광역자치단위에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일반 주민의 요구를 교육현장에 반영하기 어려워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통제의 강화를 위해 기초단위 지방교육자치
- ◎ 교육행정에 있어서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구하고 직접적·기초적 교육 서비스 제공단위인 일선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
- ◎ 교육행정(교육감)과 일반행정(시·도지사)과의 연결 고리가 없어 시·도지사의 자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이끌어 낼 제도적 통로의 마련이 필요

I.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요 및 의미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요

- 1) 지방교육자치 실시 : 1991. 3. 8 법률 제정. 시행
 - 지방교육자치 실시단위: 광역자치단

체(시·도 한정)

- 교육위원 임기[1차 '91~95(4년), 2차 '95~'98(3년), 3차 '98~2002(4년)]
 - 교육감 임기 [1차 '91~95(4년), 2차 '95~'99(4년)]
- 2) 지방자치제 실시
 - 지방의회 [제1기 '91. 7. 8~95. 6. 26

(4년), 제2기 '95. 6. 27~98. 6. 26(3년),
제3기 '98. 6. 27~2001. 6. 28(3년)]

• 민선단체장[제1기 '95. 6. 27~98. 6. 26
(3년), 제2기 '98. 6. 27~2001. 6. 26(3년)]

	교육위원회	교육감
성격	심의·의결기관	독임제 집행기관
관장사무	시·도의회에서 교육·사무에 대한 의결권을 위 임받아 의결	교육규칙의 제정 등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 집행
정수	시·도별 7~15인(총146명)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시·도별, 권역별(전국 총57개)로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 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구성	1/20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 인 자	교육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인 자

* 현행 교육위원회·교육감의 성격과 구성방법

2. 지방교육자치의 의미

- 1)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교육의 전문성, 특
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
- 2) 지역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기구가 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적 성격
을 지닌 교육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
- 3) 지역주민, 학부모의 소망사항을 교육현
장에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
- 4) 분권과 참여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교육행정에 대
한 주민통제를 강화하여 교육이 지역주
민과 학부모를 위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근본 목적.

II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의 목표

1. 현행제도의 문제점

- 1) 광역지역으로 한정된 불완전한 교육자치
 - 현재 시·도 광역차원에서만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어 실제 학교현장 및 주민생활과 직결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지나친 분리, 독립
으로 연계성 상실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완전히 배

- 제되어 있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
- 3) 의결권의 중복.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이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교원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 쓰여져야 할 행정력이 크게 낭비.
- 4) 교원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자치
- 현재 교육위원회는 법령상으로는 그 구성원의 1/2이상을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10년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70.5%가 교육경력자 등 공급자중심으로 구성.
 - 교육의 실제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사가 지방교육의 의사

결정과정에 투영되기 곤란.

- 5)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제도의 문제
- 후보난립, 공정 선거관리의 어려움, 후보검증 기회의 부족.

2. 개편의 목표

- 1) 교육현장에서 교원과 학교의 책임자가 교육에 관련된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 교육행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과 업무부담 최소화, 교육행정의 서비스적 측면을 강화.
- 3)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잠재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

Ⅲ. 개선방안 - 2개안

구 분		제1제안 (기초)	제2제안 (광역:시.도)
교육위원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의제 집행기관
교육 감		독임제집행기관	사무처리 책임자
교 육 위 원	정 수	7~9인	5~7인
	임용방법	주민직선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선출
	자 격	일반주민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10년 이상(1/2)
교육감	임용방법자격	교육위선출: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 10년 이상 주민직선: 자격 비제한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 10년 이상

※ 기초와 광역의 교육자치 비교

<제1안> 실시단위를 일반기초자치단체로 하는 안

1. 기초교육자치의 성격: 집행기관의 독립성 확보
2. 교육위원회: 합의제 집행기관
 - * 기능: 현행과 동일(조례,예산,주민부담만 지방의회에서 최종의결)
3. 교육감: 교육위원회의 사무처리 책임자

1) 장. 단점

가. 장점: 지방교육자치의 단위가 현행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일치로 일반자치와의 연계강화.

나. 단점

- 현행 180개인 교육행정 기관수가 232개로 증가함에 따라 막대한 재정소모 예상.
- 과도한 행정운영 경비지출에 따라 예산 손실 우려.
- 교직원 인사교류의 경직성으로 교직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양양 저해.

2) 교육위원회의 구성

가. 교육위원의 선출방법: 교육에 있어서 주민대표기관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주민직선에 의한 방법.

나. 교육위원의 자격: 단결의결기관인 기초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위원은 주민대표로 직선에 의해 선출되므로 자격

제한 없음.

다. 교육위원의 정수: 7~9명

3) 교육감의 선출방법과 자격

가. 교육위원회

- 선출: 단일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선출.
- 교육감의 자격: 교육, 행정, 연구경력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

나. 주민직선

- 선출: 단일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와 대등한 위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기관도 주민 직선으로 선출.
- 교육감의 자격: 자격 비제한

4) 교육.학예 대표권: 독임제 집행기관인 교육감

5) 기능 배분

- 지역적으로 서비스의 범위가 한정되고 주민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심을 가진 사무.
- 장학집행과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까지를 관장함으로써 교육업무의 통합성.
- 교원인사권: 전보, 휴직

6) 기초교육자치 단위의 획정

- 기초교육자치단체수: 60여개 정도
- 구역획정의 기준: 인구수, 학생수, 교육

행정수요 유발요인과 생활공동체의식, 국회의원선거구, 학군 등을 고려

- 구역획정 방법 : 대도시형, 단층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제2안> 실시단위를 광역 교육자치단체로 하는 안

교육자치의 단위를 60여개 단위로 광역화 하여 기초 교육자치를 실시.

1. 기초교육자치의 성격: 특별지방자치단체화(독자적 교육자치)
2. 교육위원회: 독립의결기관화
3. 교육감: 독임제 집행기관

1) 장·단점

가. 장점

- 현재 180여개 교육행정기관을 60여개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 제고.
- 행정·재정적 자원확충으로 교육 정상화.
- 기초 단위로 고등학교 업무이양으로 초·중등교육의 통일성 확보.

나. 단점

- 교육행정기관의 통합이 지나치게 효율성만 의식한 방안.
- 교육자치의 단위가 일반자치단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게 되어 교육위원

회에 대응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존재하지 않음.

2) 광역 교육자치단체의 성격

가. 교육위원회 합의제 집행기관

- 교육행정기관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관계 강화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 기대.
- 현행 의결기관 대 집행기관으로 분리, 독립 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통합함으로써 양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책임체제를 구축.
-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을 통합, 운영 예산을 줄여 학교 교육 발전에 투자.
-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문제 전반에 걸쳐 업무 관장토록 하여 그 역할 활성화로 교육수요자에 대한 대응성 강화.

3) 교육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 전원 참여 선출함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부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4) 교육감의 임명방법

가. 교육감의 임명 :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에 교육기관 구성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그에 상응한 책임과 교육에 관심

유도.

-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권으로 교육이 일반행정에 예속화 우려.
- 지방화·종합화 추세에 비추어, 교육의 자주성을 이유로 교육 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지나치게 거리를 두는 것보다 시·도지사의 지역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교육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

나. 교육감의 자격

-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

5) 기능 분담

- 광역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업무.
- 교육기획 및 조정기능 학교평가 등의 기관평가, 장학기획, 특수학교에 관련된 업무,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
- 교원인사권 : 교원임면과 교감 이상의 승진.

IV. 정책대안

1. 기초 교육자치에서 교육위원 선출 방법은 학교 운영위원 전원의 선거 참여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감 선출도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선출.

2. 광역 교육자치에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연직 교육위원과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참여케하여 지방자치와의 연계를 원활, 선출직 교육위원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교육감 선출은 지방자치 교육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3. 위원회 안을 보완하면 교육자치가 일반행정에 예속된다는 우려도 불식시키고 자주성과 전문성이 제고되어 개선의 의미와도 부합.

V.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미칠 영향

1. 지방경찰의 실시단위

현재 시·도 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교육자치 제도를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당위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경제적 현실과 자치 역량에 비추어 단번에 지방교육자치를 시·군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의문시됨.

- 자치경찰제도를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는 것은 예산부담문제, 날로 증가하는 광역성 범죄, 조직범죄, 안보문제 등 1개 경찰서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치안

사안의 증가, 자치단체의 위법행위의 감시기능의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행정경비를 절감하고 행정관리가 용이한 광역시 단위를 초기에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시·군·구 단위로 확대.

2. 시·도교육위원회와 경찰위원회

개선안은 시·도교육위원회를 의결기구에서 합의제 집행기구로 변경, 새로 도입하는 기초교육자치구의 교육위원회를 독립의결기구로 상정,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에 의결권이 중복됨으로써 생기는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교육감과 교육위원들간의 대립 갈등을 해소, 비용절감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작업이 필요.

- 1) 경찰법 개정법률안(국민회의정책기획단)에 의하면 지방경찰의 조직 형태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시·도경찰위원회를 두어 지방 경찰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각 지방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지방치안문제에 관한 정치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책임을 지도록 위원의 인선에 대한 권한도 부여.
- 2) 경찰위원회 제도의 경찰청안은 의결기구에서 의결·집행기구인 합의제로 독단

적 의사결정의 병폐를 방지, 신중·공정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며 전문가의 지식도 활용하여 독립성을 보유.

- 3)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지사가 경찰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보다는 경찰위원회 구성시 관여를 할 수 있고, 경찰위원회에서는 일반적 방침을 정하고 시·도경찰청에서는 그 방침에 따라 집행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됨.

3. 광역 시·도의 교육감과 시·도경찰청장 선출방법

교육부는 현행 선거제를 임명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으로 시·도지사가 교육감 임명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시·도지사가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도지사는 특히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으므로 교육감이 정치적인 영향권 내에 들어가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

- 1) 시·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경찰위원회의 제청,추천,동의 등 임명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행정권의 독단을 방지하고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 2) 경찰청장은 임의로 경찰사무를 집행할 수 없고 경찰위원회의가 정한 일반적 방침에 따라야 하므로 독임제의 전제와 독단이 견제되어 민주성이 제고됨.

치안연구소 시책자료('98-9)

보험범죄의 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치안연구소 경위〉 황 규 정

◎보험범죄의 추세

'90년대 후반들어 급증세를 보이는 보험범죄행위가 확산·증대되고 있어 사회적 물의뿐만 아니라 보험사업의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 도덕적 위험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

◎ 보험범죄의 특성

보험범죄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 발생하며 보험회사와 다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는 피해를 주게 됨은 물론 보험범죄의 피해자들의 인명상,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됨

◎ 보험범죄의 발생 형태

보험범죄는 사기로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 위장. 날조하는 유형과 보험사고 발생시에 부보되지 않은 손해를 부보한 것으로 변경시키고, 사기하는 유형으로 분류

◎ 보험범죄 방지대책

보험자와 정직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 보험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기적, 중. 장기적 대처방안과 보험업계의 공동대응방안을 마련

◎ IMF사태이후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노숙자와 실업자 대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목격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 국가정책적으로도 방지대책이 필요

1. 보험범죄 및 도덕적 위험의 개념

1) 보험범죄 = 보험사기

- 보험금을 의도적·악의적으로 사취하기 위하여 보험제도를 악용·남용하는 행위.

2) 도덕적 위험(Moralischen Risiko)

- 가. 보험범죄나 보험사기 행위의 결과로 경제, 사회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
- 나. 내적 도덕적 위험: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들이 직접적으로 보험을 악용·남용하려는 행위.
- 다. 외적 도덕적 위험: 피보험자와 관계되어 있는 의사, 병원, 자동차수리업자, 변호사 등이 간접적으로 보험을 악용·남용하는 행위.

2. 보험범죄의 특성

1) 보험범죄성향은 일반범죄성향에 비하여 매우 높음

- 가. 보험의 특수성인 불확실성이 사기를 자극.
- 나. 보험범죄가 타범죄보다 발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음.

2) 여러 가지 다른 범죄를 유발

-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살인, 자살위장, 방화, 고의적 사고의 유발, 물건과 재산의 손상 등 범죄를 유발.

3) 다수인에게 피해

- 보험회사와 다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

4)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 발생

- 개인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보험범죄성향을 자극하고 충동.

5) 국민들의 도덕적 책임의식과 윤리적 책임의식이 저하될수록 증대·확산

- 국민들의 건전한 의식, 도덕적 책임의식, 윤리적 책임의식이 저하될수록 약화.

3. 보험범죄의 발생형태

1) 사기로 보험계약을 체결

- 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을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
- 나. 중복보험형태로 가입,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을 사용.

2)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

가.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범행방법도 잔인, 조직화.

- 보험범죄 중 가장 악의적인 유형.

나. 보험사고를 위장·날조

- 전통적 보험범죄 형태.
-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보험사고

위장·날조.

- 사고경위, 사고일자 등을 기만적으로 진술.

다. 보험사고 발생시 부보되지 않은 손해를 부보한 것으로 변경

-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
- 발생한 날자 이후로 자동차사고 발생일시 등을 조작 변경.

4. 보험범죄의 현황

1) 유형별 보험범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유 형 별	'96			'97			증 감 율	
	건 수	금 액	구성비	건 수	금 액	구성비	건 수	금 액
위장·가공사고	1,004	6,675	24.1	1,070	8,719	26.8	6.6	30.6
교통사고 악용	2,464	19,283	69.6	4,025	21,809	67.1	63.4	13.1
기 타(폭력배)	12	1,730	6.3	14	1,997	6.1	16.7	15.4
합 계	3,480	27,688	100.0	5,109	32,525	100.0	46.8	17.5

2) 보험범죄 수사내용(언론보도: '98.1~'98.7)

수사기관	범 죄 내 용	관련자 처벌	수사건수	편취금액
검 찰 청	위장교통사고유발, 허위진단서발급 등을 통한 보험금 편취	구속 : 63명 불구속 : 23명 수배 : 243명	163건	39억원
경 찰 청	방화, 위장교통사고유발, 허위진단서발급, 미수살인 입원 확인서 허위 발급을 통한 보험금 편취	구속 : 68명 불구속 : 3명 수배 : 37명	124건	32억원

5. 보험범죄추세

- 1) '90년대 후반 들어 급증세를 보이면서 '97년에는 전년보다 47% 증가한 5,000여건이 적발되었으며 올해에 더욱 증가.
- 2) 도덕적 위험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
- 3) 고의성 보험범죄자들이 급격하게 증대, 범죄형태가 다양화 되고 조직적이며 범행방법은 매우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

6. 보험범죄 방지대책

1)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기본 전제조건과 기본 대책방향

- 가. 모든 보험분야에서 보험범죄가 확산·증대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대응방안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 나.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제 노력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
- 다. 도덕적 위험의 유발·촉진요인을 제거 경감시키는데 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당국과 언론기관의 상호 유기적 노

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인식.

2)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단기적 대책방안

가. 보험범죄 전담 감독 부서의 설립

- 감독당국에 보험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일정한 조사권,체포권을 부여하여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방지.
-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개개 회사의 노력과 업계공동의 노력, 행정당국의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범죄 방지.

나. 보험범죄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설립과 정보시스템 전담기관의 설립.

- 보험범죄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생.손보간에 교환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범죄 예방과 방지에 제약.
-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운영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전산시스템 운영에 중복 투자로 비효율적으로 운영.
- 보험회사의 정보자료 제공과 활용상에 번잡성과 혼란성의 문제.

다. 보험범죄 대책위원회설치와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계몽·선전홍보활동의 강화.

- 보험협회 또는 보험개발원 등에 보험

범죄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범죄행위의 심각성과 범죄대책을 협의.

- 범죄성향을 제어하고 억제하기 위한 계도활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

라.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보험범죄 지표의 작성 활용.

- 현재 보험감독원, 양 보험협회(생명, 손해보험), 보험개발원 등에 산발적으로 범죄사례가 수집 보관되어 있으나 정보검색과 정보처리가 되지 못함.
- 수집 가능한 보험범죄사례를 사고유형별로 분류. 전산입력하고 사고유형별로 범죄자의 행동의 특성과 범죄수단 및 방법을 분석 조사하여 보험범죄 지표화하여 활용.

3) 중·단기적 대처방안

가. 업계공동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보험계약 심사업무와 손해사정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정보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위하여 사전동의를 보험약관에 규정화.

나. 조사자 활동의 합법화 추진

- 조사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자료열람권을 확보

4) 보험업계 공동의 대응방안

가. 생명보험업계의 공동 대응방안

- 보험범죄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정보 교환제도 시행.
-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조사 연구 활동.

나. 손해보험업계 공동의 대응방안

- 자동차보험, 도덕적 위험방지 대책위원회 구성·운영과 지방보상 공동협의체 구성 운영.
- 고용계약 조회 시스템.
- 장기손해보험 다수계약조회 시스템.
-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 조회시스템.

외국치안의 이모저모



- 세계의 치안사정 / 황수정
- 총성없는 전쟁
 - 지구촌의 첩보전 -

세계의 치안사정

〈청장보좌관실〉 황 수정

I. 지구촌의 테러

중남미·아시아, 언론인 5년간 407명 테러로 사망

- 국제 언론인 협회(IRI)는 “언론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종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언론인은 많은 나라에서 박해와 심리적·육체적 억압을 받고 있다”고 ‘98년 5월 3일 국제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빈에서 성명을 발표.
- 지난 5년 동안 취재기자가 중남미에서 171명, 아시아에서 236명이 각각 테러로 희생됐으며 러시아에서는 62명이 사망했으나 범죄자들은 대개 법정에서 서지 않았다고 부연설명.

미 FBI, 요인 암살 기도자 체포

- 미 연방수사국(FBI)은 ‘98년 7월 13일 첩보영화에서나 봄직한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대통령과 법무장관 등 정부 요인들을 암살하려던 미국내 무장분리주의자 올리버 딘 에미그(63), 잭 애보트 그리비 2세(43), 조니 와이즈(72) 등 3명이 대량 파괴무기 사용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
- 이들은 「민병대」로 불리는 무장단체의 하나인 「텍사스공화국」소속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과 재닛리노 법무장관, 루이스 프리 FBI국장, 모럴리스 텍사스주 검찰총장 등에게 E-메일을 통한 암살위험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 암살수법은 가스라이터로 선인장 가

시를 발사 하는 것으로서 가스 대신 공기가 분출되게끔 라이터를 개조하고 그 구멍에 치명적인 에이즈균·탄저균·보툴리누스균을 바른 선인장 가시를 꽂아 발사하는 방법이였다 하며

- FBI는 조니 와이즈의 거주지인 이동 트레일러에서 투명한 액체가 든 드럼통과 병들을 압수했고 썩은 고기와 에이즈균이 감염된 혈액·탄저균 광견병균을 압수.

○ 이번 사건으로 또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이들 분리주의 무장단체들은 주로 저학력 빈곤계층이 중심을 이루고 백인우월주의와 반(反)연방주의를 주창하는 극우집단으로 40여개 주에 걸쳐 2만명 정도가 가입해 있는 것으로 추정.

미, 특수부대를 전쟁기술 가정교사로 각국에 파견

○ 미국은 '61년 평화봉사단을 창단,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현지 문물을 배우는 한편 미국의 문화를 심도록 했고

○ '90년대에는 특수부대인 그린베레·델타포스·레인저스 등이

- 세계 각지에서 각종 전략·전술·노하우·조직관리 등을 전수해주고 있으며

- 「합동훈련교환(JCET)」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미 특수부대 요원들이 나가 있는 나라는 줄잡아 1백 10개국이나 되고

- 이들은 현지 군대에 마약조직·게릴라 등을 제압하는 전쟁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는 중.

<미 특수부대 활동지역>

지 역	국 가
아 시 아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한국 등
남 미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북 중 미	혼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아이티, 도미니카, 과테말라 등
유 럽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덴마크, 스위스 등
아 프 리 카	짐바브웨, 나미비아, 보츠와나, 콩고, 케냐, 에티오피아 등
오세아니아	솔로몬 제도 등

○ 냉전 종식 이후 이들 특수부대는 총 한 방 쏘지 않으면서 국방의 새로운 「개입

(engagement)」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활동도 미국 대외정책의 하나로서

의회와 국무부의 감독·규제·지시를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여 인권탄압·지역분쟁·독재·내란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 최근 반정부 유혈폭동 끝에 수하르트

독재체제가 마감된 인도네시아에서 미 특수부대는 '91년 이후 지금까지 41번의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대부분은 반정부 인사들의 납치·폭행으로 악명 높았던 인도네시아의 정예부대「코파서스」와의 합동훈련이었고

<미 특수부대 해외 주요활동>

인도네시아	· 특수부대와 도시전 훈련 · 해상상륙작전
에콰도르	· 콜롬비아 마약게릴라 소탕 · 정규특수훈련
파키스탄	· 올 핵실험 때 정부군과 특수훈련

- '95년 5월 에콰도르의 콜롬비아 접경 정글지대에서는 미 특공대 정예요원 1백43명과 에콰도르군 6백45명이 블랙호크 전투헬기 등 미국 첨단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에 함께 참가, 정글에 숨어 활동하는 마약조직과 국경지대에 자주 출몰하는 콜롬비아의 마르크시스트 게릴라들을 겨냥한 훈련의 마지막 날 에콰도르군은 마약조직이나 게릴라 대신 오랜 국경 분쟁국인 페루를 향해 “단 한치의 땅도 내줄 수 없다”는 구호를 외쳐대게 하였으며
- 파키스탄의 핵실험으로 한창 긴장이 고조되던 '98년 5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외곽에서는 6명의 미군과 200여명의 파키스탄군이 특수훈련을 실시

하였고 미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98년 8월에도 같은 훈련을 다시 실시.

콜롬비아, 최대 부자는 좌익 반군조직

- 콜롬비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조직은 대기업이 아니라 좌익반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좌익반군이 지난 해 유괴·강탈과 마약거래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9억1천만달러(약1조2천4백40억원)에 달한다고 콜롬비아군이 '98년 7월 8일 보고서를 공개.
- 좌익반군의 수입은 지난 4년간 130% 증가했으며 이는 콜롬비아 7대 대기업의 총수입을 합한 것보다 많은 규

모로서

- 반군들은 이 수입을 바탕으로 세력을 규합하고 신병을 모집할 수 있었으며 활동영역의 확장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 풍부한 자금을 이용하여 반군들이 암시장에서 구입한 무기 가운데는 군이 보유한 것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무기도 있었다고.

- 퇴역장성인 조지 살세도르 로라는 “콜롬비아 반군의 수입규모는 중앙아메리카의 다른 어느 나라의 반군보다 크다”고 지적하였으며
 - 반군단체중 최대 수입을 올린 조직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콜롬비아 혁명군(FARC)」으로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억1천5백만달러이고
 - 2위는 3억8천만달러의 「민족 해방군(ELN)」이며 3위는 1천4백40만달러를 번 「모택동 해방군(EPL)」의 순.
- '60년대부터 등장한 좌익반군들은 선거 방해 폭력사태 등으로 이 나라 정정 불안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반군중 ELN과 FARC는 '98년 6월 중순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12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자 내전종식 협상을 제의하는 등의 자세를 보이기도.

테러, 불특정 다수 살상으로 변화

- 최근의 테러는 특정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다고 정치테러 전문가인 미국의 브루스 호프먼은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유형의 테러를 전통적 테러인 「올드 테러」에 대비해 「뉴 테러」로 명명.
- 올드 테러는 테러리스트들이 자신의 이념이나 주장을 널리 알리거나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 이들은 테러목적이 분명하여 비행기 납치 인질극 등을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무고하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였으며
 - 테러범들은 범행후 자신들의 소행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흔히 장문의 성명을 발표했고
 - 이들은 특정 국가나 단체에 소속되어 조직적으로 훈련받은 「전사」들이었으며
 - 과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테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들의 인종차별에 저항해 전개한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 테러가 대표적 케이스.
- 뉴 테러는 목적, 수단, 테러범의 신분, 테러 대상자의 무차별성과 테러의 무제

한성 등에서 올드 테러와 뚜렷이 구별되며 최근 일본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독극물 테러가 그 대표적인 예.

- '98년 8월 8일 일본 나가노현에서는 슈퍼마켓에서 산 우롱차를 마신 50대 남자가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하고

- '98년 7월 25일 와카야마현에서 여름 마을축제를 즐기던 주민들이 비소화합물이 든 카레라이스 도시락을 먹고 4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중독된 사건도 그 예.

○ 뉴 테러는 이와 같이 「아무나 먹고 죽어라」는 식의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누가? 왜? 범 죄를 저질렀는지도 알 수 없으며 누가? 얼마나? 희생되는지도 개의치 않는 것으로서 테러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형적이고

- '95년 3월 옴진리교에 의한 도쿄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처럼 잘못된 종교적 믿음에서 대형 살상무기를 이용한다는 점도 뉴 테러의 특징이며

- 전문가들은 '98년 9월 7일의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대사관에 대한 테러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살상을 노린 점에서 뉴 테러에 속한다고 설명.

북아일랜드, 반복되는 테러

○ 영화 '마이클 콜린스'는 아일랜드 독립운동가 마이클 콜린스의 비극적 생애를 다룬 것으로서

- 런던에서 공무원생활을 하던 콜린스는 1916년 4월 24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발생한 부활절 봉기에 참가해 옥고를 치른 뒤 독립투사로 변신, 민족주의정당 신페인과 무장조직 아일랜드 공화국(IRA)의 지도자로서 영국군에 대한 테러와 요인암살을 행하고 영국에 협력한 아일랜드인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반복.

- 영국이 아일랜드의 독립을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하자 협상 대표가 된 콜린스는 아일랜드가 영연방의 일원으로 남을 것과 아일랜드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타협안을 수용.

• 1921년 아일랜드 남부 26개군(郡)은 아일랜드자유국으로 독립을 얻었으나 북부 6개군은 합류하지 않았고

• 국토분할에 반대하는 세력은 콜린스 진영과 내전을 벌였으며 IRA 역시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둘로 갈라졌고 콜린스는 '22년 8월 반대파에 의해 암살.

- '49년 아일랜드는 영연방에서 탈퇴해 완전 독립국이 되었고 신교도가 다수인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남았으며 소

수인 구교도에 대한 차별적 사회구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아일랜드가 통일된 독립국가이기를 바라는 IRA는 지하활동을 계속.

- '68년 구교도 민군(民軍) 봉기를 계기로 북아일랜드는 내전에 빠져들었으며 지금까지 3천명 이상이 희생되는 유혈참극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

○ IRA는 신교도에 대한 폭탄테러활동을 벌리는 한편 영국본토까지 활동범위를 넓혀 나갔으며

- 이에 대해 얼스터 의용군(UVF) 등 신교도 무장 조직들도 무자비한 테러행위로 맞서 피로 피를 씻는 보복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평화적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끈질기게 추진.

- '98년 4월 극적으로 체결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은 평화정착의 꿈을 부풀게 했으나 '98년 8월 15일 발생한 폭탄테러로 북아일랜드 평화는 또 한번 위기에 봉착.

- 이번 사건은 IRA가 평화협정을 수용한 것에 대하여 반발한 IRA내 과격파의 소행으로 드러났고

- 희생자 28명 중엔 어린이가 9명, 부녀자가 14명이나 있어 테러의 처참함을 다시금 증언.

테러단체, 인터넷 이용해 활동

- 국제테러 조직의 상당수가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개설,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홍보하는 한편 인터넷 상거래로 운영자금 모금에 나서고 있어 대테러기관들이 비상.

- 유정(油井) 폭파 및 외국기업 중역납치로 악명이 높은 남미의 콜롬비아 반군조직「ELN」은 '역정보로 인해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 잡기 위해' 인터넷에 웹사이트(www. voces. org)를 개설, 운영중.

- 페루의 반군단체 「빛나는 길(센테로 루미노소)도 웹사이트(www. blythe. org)를 통해 '선전-사보타지-교전-선별적인 섬멸'의 4단계 투쟁형태를 소개하고 인터넷 상거래를 통한 기금모금도 계획.

- 멕시코의 「사파리스타스」는 이미 웹사이트를 통해 조직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와 머그잔을 판매.

- '83년 베이루트에서 두 차례 폭탄테러로 약3백명의 미국인을 숨지게 했던 「헤즈볼라」 게릴라들도 인터넷 상거래로 자신들의 저작물을 판매.

- '98년 6월 22일 현재 미 국무부가 특별관리 하는 30대 테러그룹 가운데 12개가 웹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 정보국은 현재 70개에 이르는 국제 테러조직의 웹사이트를 파악, 정보를 수집중.

- 한편 미 정부의 테러리즘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젠킨스는 “테러집단은 그들의 교리나 주장을 언론의 여과나 해당국 정부의 간섭 없이 직접 대중에 전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려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있고
- 미 연방수사국(FBI)은 일부 테러집단이 테러공격계획의 수립에 암호화된 전자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
- 각국 정부당국은 테러집단의 인터넷 활용을 단속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중으로서
- 뉴욕 주립대의 서버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콜롬비아 혁명군(FARC)이 이를 삭제당하자 캘리포니아 주립대로 서버를 옮겨 다시 운영한 사례는 ‘인터넷 검열’의 어려움을 잘 말해 주고 있고
- 스리랑카 정부는 분리주의자 집단인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TTE)」의 웹사이트(www. eelm. com)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대신 관련 정보를 캐는 데 최대한 활용.

프랑스, '70년대 국제 테러리스트 클라인 체포

- 「자칼」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카를로스과 함께 '70년대 서방 자본주의 진영을 공포에 떨게 했던 테러리스트 한스 조아킨 클라인(51)이 '98년 9월 9일 국립대테러공작반(DNAT)에 의해 체포.
- '95년 7월부터 클라인은 독일 사법당국에 의해 국제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주민이 1백명도 채 되지 않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생트 오노린 라 기이용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더크」라는 가명으로 5년 넘게 생활해 왔고 시청측은 “그가 주민들과 잘 화합했으며 8월 추수때는 자원봉사자로 일했다”고 설명.
- 「양지」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클라인은 독일 극좌파들과 함께 '75년 12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의에서 각료들을 인질로 잡은 적이 있으며
- '94년 8월 카를로스가 수단에서 전격 체포되자 클라인은 '95년 2월 「나는 (영원히) 잠적한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가 이번에 잡힌 것.

미, 케냐·탄자니아 미 대사관 폭파범 수사 허탕

- 미국은 지난 '98년 8월 케냐와 탄자니아

아 주재 미 대사관을 폭파한 범인들을 잡느라 혈안이 돼 있고 현재 2명의 용의자가 체포돼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

- FBI는 검거된 용의자들로부터 하룬 파질이 폭탄테러의 실질적인 행동대원이었음을 밝혀 냈으며

- 미 국무부는 파질의 목에 200만달러라는 거액의 포상금을 내걸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사건발생 다음 날 “폭탄테러범인을 끝까지 색출해 단죄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국무부로서는 애간장이 탈 수 밖에 없는 상태.

○ 파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부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국제테러단체 「알 라이다」의 일원이며

- 그에게는 현재 12개 항목의 죄목이 붙어 있고 케냐 주재 미 대사관을 공격해 미국인을 살해한 죄, 살해음모에 가담한 죄 따위가 그것.

- 게다가 그는 폭탄을 실은 트럭을 몰고 미 대사관을 향해 돌진한 실제적 행동대원이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눈엣가시 같은 존재.

○ 하지만 파질의 은신처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어 FBI가 수주일동안 그를 추적해왔지만 현장을 덮칠 때마다 번번히 허탕.

- FBI는 테러사건이 발생한 2주일 뒤 파질이 나이로비의 한 빌라에서 다른 폭파 용의자와 함께 은닉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나 빌라를 덮쳤을 때는 이미 그가 다른 곳으로 피신한 상태였으며

- FBI는 빌라에서 폭탄을 제조하는 데 사용한 화약만 발견했을 뿐이었다고.

프랑스, 50대 항공사 전 직원이 비행기 납치

○ 프랑스 세르쥐 다소 항공사의 해고사원이 '98년 10월 2일 낮 12시 30분경 이 회사 비행기를 납치해 마르세유공항에 비상착륙시킨 사건이 발생.

○ 소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범인(55)은 파리상공에서 이 비행기를 납치해와 비상착륙시킨 후 일부 인질을 잡고 긴급출동한 대테러 진압부대와 대치하다 변호사의 설득으로 투항

○ 범인은 비행기납치 동기와 요구조건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말했다며 함구로 일관.

이태리, 「붉은 여단」창설자 석방

○ 알도 모로 전 이탈리아총리를 납치, 살해하는 등 '70~'80년대에 악명 높았던 이탈리아 도시계릴라단체 「붉은 여단」

의 창설자 레나토 쿠르치오가 30년형 가운데 24년간을 복역한 끝에 자유의 몸이 됐다고.

- 로마법원은 '98년 10월 9일 쿠르치오를 석방하면서 일정기간 법원의 감시를 받도록 했으며 그의 행동이 만족할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완전히 석방할 계획이라고 발표.

II. 교통문제는 곳곳에서

중국·인도·한국, 아시아의 위험운전 「워스트 쓰리」

- 한국 운전자들이 아시아 11개국 중에서 세 번째로 위험하게 운전하며 음주운전이 위험운전의 두드러진 특징인 것으로 지적.
-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지가 '98년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3번째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국가로 꼽혔고 일본은 11위로 가장 위험도가 낮은 국가로 밝혀졌다고.
- 보고서는 특히 위험도 상위 3개국에 대해 중국에서는 만원승객, 인도에서는 속도위반, 그리고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이 상위에 각각 랭크된 이유라고 지적.

유럽, 교통대책에 부심

- 유럽은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중.
 - 영국은 '98년 7월 20일 현재의 교통체계를 거의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새로운 교통백서를 내놓았으며 골자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관련 세금을 추가징수하는 것을 비롯, 수송체계를 통합하고 도심 주요 도로의 주차차량에 대해 주차세를 부과하는 것.
 - 자동차세 추가는 대중교통수단의 확보를 위해 기존의 세금 외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며
 - 수송체계 통합은 교통관련 비용을 줄이면서 러시아워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와 기차,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 또 도심이나 회사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며
 - 이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포함.
 - 백서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존 프레스코트 부총리는 “차량을 무조건 규제하기 보

다는 가구당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 하려는 경향을 줄이는 것이 주목적" 이라고 언명.

- 독일에서는 「카풀제」인 자동차 나눠 타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교통혼잡을 막는데 크게 기여.
 - 8년전 베를린에서 처음 자동차 나눠 타기 클럽이 생긴 이래 현재 전국적으로 30개 이상의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
 - 1개 클럽당 1만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스타타운」이라는 클럽은 7년전 회원 20명에 차량 2대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회원 1천5백명에 차량 80대 규모로 발전.
- 한편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며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광고시 업체들이 차의 스피드나 가속기능 등을 과다하게 강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유형의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
 - 그러나 EU내 일부 국가는 광고가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반박.

영, 자가용과의 전쟁 선포

- ‘자가용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2차대전 이후 50년 남짓 지속돼 온 교통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 자가용과의 일대 전쟁을 선포.
 - 자가용 운전자에게 무거운 벌금을 물리고
 - 거기에서 조성된 돈을 대중교통 여건 향상에 쏟아부어 교통량의 억제와 환경오염의 감소를 유도하겠다는 것.
- 영국 정부가 '98년 7월 20일 발표한 교통백서에는
 - 도심건물 주변 불법주차차량의 벌금 부과
 -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통행료 신설
 - 승용차와 트럭 전용도로 통행료 인상 등 동원할 수 있는 「불이익」은 거의 모두 망라.
 - 다만 슈퍼마켓의 주차장은 소매업자들의 로비로 벌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요금등은 오는 2005년까지 각 지방정부가 결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모두 10억파운드(약 2조1천억원)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
 - 대신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17억파운드를 들여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 특히 도로확장과 교통체계 개선등 버스서비스 향상에 10억파운드를 투입할 계획.
- 존 프레스코트 부총리는 “부리는 말에서 경주마로 바꾸겠다”며 “버스의 황금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 또 철도수송에도 4억파운드 이상이 투자되고
- 더 안전한 자전거 도로와 인도 확보 등에도 예산을 새로 배정.
- 물론 여기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문제라든가 가계부담만 늘릴 뿐이라는 식의 환경단체나 자동차업계의 비판도 거센 실정.
- 그렇지만 노동당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중산층의 표를 의식해 이미 폐기한 것으로 보였던 정책들을 과감하게 시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 또 앞으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지만 「대중교통 우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북경, 교통지옥 점점 더 해

-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 텐안먼(天

安門) 양편의 창안(長安)대로변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역사 유적과 초현대식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베이징 시당국은 건국 5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 주요 건물과 도로를 재정비해 면모를 일신한다는 계획.

- 하지만 베이징의 이런 야심찬 계획도 「교통문제」 때문에 차질을 초래.
 - 베이징의 교통문제는 이제 출퇴근 러시아워 만의 문제가 아니고
 -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거의 하루종일 교통체증이 발생해 사람을 짜증나게 하며
 - 교통체증은 가뜩이나 좋지못한 베이징의 공기를 더욱 오염시켜 이 때문에 베이징에 처음 온 사람들은 한두달내에 감기나 천식을 앓는 것이 보통.
- '98년 현재 베이징의 인구는 1천3백만명, 차량 숫자는 1백20만대로서 시민 10명마다 한대꼴인 셈이고 여기에다 매년 20만대의 속도로 차량이 늘고 있는 실정.
 - 거기다 중국의 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 손수레 등이 뒤섞여 있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로가 하루 24시간 내내 이런 모습이고
 - 베이징시의 자전거와 손수레 숫자는 자동차의 7배가 넘는 9백만대.

- 출퇴근 시간의 자동차 평균속도는 시간당 5km에 지나지 않고
 - 전기로 움직이는 무궤도 전차의 경우 지난 '94년 시간당 평균 16.7km에서 지금은 9.2km로 속도가 떨어졌으며
 -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걸리던 시간 역시 10년전 40~50분대이던 것이 요즘은 1시간을 훨씬 넘어선 실정.

방콕, 교통체증 막으려 도로공사 10년 금지

- 교통지옥으로 악명 높은 방콕시는 걸핏하면 도로를 파헤치는 데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내 30개 주요도로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굴착 및 포장 공사를 전면 금지시켰다고 비치타쿨시장이 '98년 9월 14일 공개.
- 비치타쿨시장은 곧 2백개 도로를 굴착 및 포장공사 금지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력회사가 공사를 마치고 도로를 포장하고 나면 전화회사가 다시 같은 곳을 파헤치는 마구잡이식 도로공사는 이번 조치로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

런던, 「차 없는 거리」 실시계획

- 런던의 도시계획가들은 시 중심부의 자동차운행을 금지함으로써 보행자들이 마음놓고 걸으면서 트라팔가광장 주변

의 역사적 건물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존 프레스코트 부총리는 '98년 8월 20일 근처의 웨스트민스터 성당과 의회광장도 교통 통제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 트라팔가광장과 이곳에 접해 있는 관광지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 그는 이 조치가 7년내에 이행될 것이라며 “거리를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

프랑스, 「차 없는 날」 성공

- '내 차가 없는 도심에서' 라는 구호 아래 '98년 9월 22일 파리 등 프랑스의 35개 도시에서 치러진 「차 없는 날」행사는 일부 부작용 속에서도 비교적 큰 호응.
 - 파리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 동안 생제르맹과 몽마르트 거리 등 도심 28개 지역 62km에 대하여 자가용 통행을 전면 금지했으며
 - 대신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버스가 증편 운행됐고
 - 파리시청은 1천대의 자전거를 대여용으로 내놓았으며

- 도심 거주민 차량과 긴급차량,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 차량들의 도심진입만 허용.
- 이날 행사로 자동차에서 해방된 파리의 도심도로에선 롤러 스케이트를 탄 젊은이들이 보행자들과 자전거를 탄 사람들을 헤집고 다녔으며 파리경찰당국은 시 전체에 15%의 교통량 감소효과가 있었다고 발표.
- 지난 해 대서양 연안의 아름다운 조그만 항구도시 라로셀에서 처음 실시된 차 없는 날의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된 이번 조치는 도미니크 부와네 환경장관의 야심작.
- 그러나 시 인구 200만, 수도권 인구가 1천만명에 이르는 대도시 파리에서 이뤄진 행사인만큼 “바보같은 일”,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짓”이라는 등의 냉소와 반발도 만만치 않았으며
 - 도심상가에 배달하는 차량,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차량의 운전자들과 곳곳에서 입씨름이 벌어졌고
 - 프랑스 특유의 “경우에 따라”(싸데팡)관행이 적용되기도.

뉴욕, 노점상 금지 조치

- “공공의 안전상 문제가 있다”며 뉴욕시

가 최근 맨해탄 지역 1백44곳에서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음식행상을 금지키로 결정하여 핫도그, 중동지방의 야채 샌드위치, 중국음식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없게 되었다고.

- 이 탓에 시 전체의 허가업소 3천1백곳 중 3백50곳 정도가 타격을 받게 되었으나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는 각 지역별 상가 번영회들이 「가게앞 혼잡을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활동을 전개한 것이 주효.

미, 상습 음주운전자에 종신형

- 미국 법원이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가출옥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
- 미 노스 캐롤라이나주 더햄법원은 '98년 4월 17일 음주운전 사고를 9번째 저지른 디모시 블랙웰(37)에 대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마주오던 차와 충돌한 것은 치명적인 흥기로 저지른 흉악범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
- 블랙웰은 지난 해 2월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소형 밴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4살난 미전 대일리 양이 현장에서 숨지고 대일리의 부모와 두 남자형

제는 중상.

- 당시 블랙웰의 혈중 알콜농도는 노스 캐롤라이나의 운전허용치 0.08mg을 넘는 0.13mg.

○ 배심원들은 블랙웰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 마주오던 차와 충돌한 행위는 치명적인 흉기로 저지른 흉악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법에 따라 1급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싱가폴, 상습 음주운전에 금고형

○ 싱가포르의 앞으로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무조건 최고 12개월의 금고형에 처하기로 결정.

○ 이같은 초강경 방침은 용풍호우 대법원장이 '98년 6월 30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금고형 선고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엎고 의무적으로 금고형을 선고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

프랑스, 배우 드파르디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 프랑스 최고의 남자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에게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사고를 낸 혐의로 집행유예 3개월에 벌금 1만프랑(약 2백10만원)과 운전면허정지

15개월의 무거운 벌을 선고.

○ 드파르디외는 '98년 5월 클레르폰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충돌사고를 내 발과 얼굴에 상처를 입었는데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의 5배를 넘을 정도로 만취된 상태였다고.

미, 이민자 음주운전 3회면 국외추방

○ 미국 연방이민국(INS)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은 영주권을 가졌어도 추방하기로 결정.

- INS 서부지국은 '98년 9월 4일 "INS는 지난 '96년 제정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 의무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자를 엄벌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경우 즉시 중범(felony)으로 간주, 추방될 수 있다"고 언명.

- 텍사스주 INS 당국은 현재 한국인들을 포함하여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백명의 이민을 가중범죄 혐의로 체포한데 이어 앞으로 1백50명을 추가 검거할 계획인데 이중 일부는 빠르면 1주일 안에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INS 관계자들은 지난 해부터 교도소를

방문, 수감자 면담을 통해 음주운전자의 시민권 유무를 가린 뒤 비시민일 경우 영주권 소지자라도 추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민의무법에 따르면 INS는 재판 없이 범법자를 추방하는 것이 가능.

이태리, 음주운전 봉쇄장치 개발

- 운전자가 술에 너무 취해 있으면 자동차의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하는 전자장치를 한 이태리 공학도가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 그의 발명품은 운전자가 시동키를 돌리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 핸들 뒤에 부착된 음주측정기가 운전자의 숨을 감지해 알콜농도가 짙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원리이며
- 카메리노대학에 재학중인 마시모 자르디니군은 매주 말 디스코테크가 끝나고 손님들이 귀가하는 이른 새벽시간에 발생하는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이 전자장치를 발명했다고 설명.

스페인, 100세 노인 운전면허 갱신 성공

- 올해 1백살인 스페인의 한 노인이 운전면허갱신에 성공, 세계 최고령 운전자가 됐다고.
- 바르셀로나 근교에 위치한 센트메나트

에 살고 있는 호셉 쿠쿠레야옹은 지난 '31년 운전면허를 처음 딴 뒤 택시운전사 생활을 18년이나 한 베테랑 운전자로 최근 운전면허 갱신에 성공했다는 것.

- 아직도 르노 R-4 승용차를 거의 매일 운전하고 있다는 이 노인은 “번잡한 바르셀로나에서도 운전할 자신이 있다”고 기염.

아르헨티나, 부정 운전면허 천국

- 아르헨티나에서는 공무원의 부정이 극심해 선천성 맹인이 신체검사를 받지도 않은 채 돈을 주고 운전면허증을 따내는 사태까지 발생.
-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라마탄사시에 사는 맹인 훌리오 세사르 페레스씨는 신분증 사본, 사진 2장, 현금 1백80달러(약 23만원)만 가져오면 아는 공무원을 통해 면허증을 만들어 주겠다는 시의원 운전사의 제의에 응해 면허증을 취득했으나 텔레페TV 기자의 몰래카메라 취재에 걸려 들어 들통났다고.

미, 비아그라 먹고 교통사고 났다며 손해배상 청구

- 데이트 상대와의 정사를 예상하고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미리 복용했으

나 뜻을 이루지 못한 50대 미국인이 약의 「부작용」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며 제약회사 화이자를 상대로 1억1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 뉴저지주 출신의 이 남자는 '98년 7월 1일 비아그라를 먹고 데이트에 나갔으나 「애무의 선」을 넘지 못한 채 귀가하던 중 카오디오에서 카세트를 꺼내는 순간 손가락끝에서 푸른 섬광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정신을 잃고 자동차를 들이 받아 부상했다고 주장.

아르헨티나, 세살배기 교통위반에 벌금 1,500달러

- 50cc 엔진을 부착한 장난감 자동차를 집앞 도로로 몰고나온 3살배기 아이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돼 1,500달러의 벌금처분을 받았다고.
- 지난 '98년 4월 16일 추부트주 코모도로 리바다비아시 남쪽 20km에 있는 라다 탈리시 당국은 이 어린아이가 교통법규상 무등록 운전, 보험료 및 차량세 미납 등의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벌금을 부과.
- 장난감 자동차를 모는 아이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시 공무원의 행위가 무리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아이의 아버지인 로베르토 시스타리는

“우선 시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벌금부과의 부당성을 따지고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며 불만을 토로.

미, 빌 게이츠 나쁜 운전습관 공개

-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게이츠 회장이 지난 '77년 운전중 정지신호 위반으로 체포됐을 때 경찰이 찍은 사진이 한 잡지 9월호 표지에 게재돼 그의 나쁜 운전습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기 시작.
- 게이츠는 지난 '75년 과속과 면허증 미소지, '77년 정지신호 위반과 면허증 미소지, '89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체포된 적이 있었으며 문제의 사진에서 게이츠는 귀를 덮는 장발에 색안경을 끼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고.

사우디 아라비아, 낙타 - 자동차 충돌사고로 골치

-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아피프지역에서 지난 '98년 7월 17일 차량이 낙타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7명이 다쳤다고.
- 사우디 정부당국은 매달 평균 5명이 낙타와의 교통사고로 숨진다고 밝히고 낙타들이 고속도로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인들에게 당부.

영국, 도로에 귀금속 깔렸다고

- 런던 등 영국 주요 도시들의 거리는 금 등 귀금속으로 덮여 있다고 영국 카디프대학의 지질학자 헤이젤 프리차드박사가 '98년 9월 12일 카디프 과학축제에서 주장.
- 프리차드박사는 자동차에서 귀금속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촉매컨버터라는 장치를 통해 배기가스가 나올 때 이 귀금속 성분이 묻어 나오고 있는 것을 검출했다면서 곧 도로에서 백금을 채취하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일, 찾김에 도로에 6,700만원 뿌려

- 일본 남부 기타큐슈에서 '98년 6월 15일 한 50대 남자가 6백 70만엔(약 6천 7백만원)을 도로에 뿌리는 바람에 이 돈을 주우려는 사람들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고.
- 택시 운전사인 이 남자는 친척들과 유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오다 이날 은행에서 1만엔권 6백70장을 인출한 뒤 육교 위에서 돈을 뿌렸으며 수십명이 차를 세우고 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 든 것.

독, 아우토반 속도제한 놓고 티격태격

-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 무제한으로 질

주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독일에서 속도제한을 두자는 주장이 제기돼 많은 사람들이 반발.

- 녹색당은 '98년 9월 27일 총선에서 승리하자 사회민주당과의 연정구성 조건으로 아우토반에서의 시속 1백km의 속도제한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 그러나 게르하르트 슈뢰더 사회민주당당은 녹색당의 속도제한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잇슈가 없는 여름철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
- 또한 모든 것이 철저한 시간개념에 따라 규율·관리되고 있는 독일사회에서 아우토반에서의 질주를 일종의 「피난처」로 여겨 온 독일인들도 녹색당의 주장에 반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아우토반에서 속도제한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50% ('91년에는 71%)만이 긍정적으로 대답.

스위스, 과속감시 카메라 칼라화

- 스위스 제네바 경찰당국은 시 일원에 설치한 레이더 과속감시 카메라를 흑백 얼룩무늬의 젓소와 구멍이 뚫린 노란 치즈색으로 단장해 운전자들이 이를 쉽게 발견,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
- 제라르 람세예 제네바 시경국장은 '98

년 7월 12일 단속용 레이더 카메라는 위반자 적발보다는 과속예방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감찰 의도가 없다”고 강조

싱가폴,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몰수

싱가포르 경찰은 '98년 5월 18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불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적발되는 운전중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벌금부과와 함께 휴대폰을 몰수할 방침이라고 발표.

뉴질랜드, 노인 운전면허 특별관리

- 생일을 한달 앞둔 지난 '98년 4월 22일 오후 프레드 허드슨은 오클랜드병원을 찾아가 주치의에게 시력·청력·지각력·반응력·운동력 등 각종 테스트를 신청.
- 2시간 뒤 그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주치의의 진료의견이 첨부된 의료증명서를 손에 들고 귀가하였으며
- 이는 71세가 되는 그의 생일인 6월 22일 전에 의료증명서를 들고 운전면허국을 찾아가 노인용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한 것.
- 뉴질랜드의 노인 운전자들은 허드슨처럼 71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노인식'을 치르며

- 면허를 갱신하는 위해서는 만 71세가 되기 60일 전에 「운전면허용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아 면허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 새로 발급된 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
- 76세가 되면 한 번 더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 이때는 60일 이내의 의료증명서 제출은 물론이거니와 운전면허 시험관을 태우고 15분동안 도로에 나가 운전능력을 평가받는 「실전운전 테스트」까지 받아야 하며 감독관이 안전운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합격.
- 76세 이후에는 매년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의료증명서는 해마다 내야 하지만 실전테스트는 2년에 한번씩만 받으면 OK.
- 테스트에서 떨어진 노인 운전자는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지만 정도에 따라 제한운전면허를 발급해 주기도 하며
- 제한운전면허는 일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 운전을 허락하는 면허증으로서 예를 들어 낮에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집에서 일정거리를 벗어난 운전을 금지하는 것 등.
- 운전면허 갱신비용은 17뉴질랜드달러(약 1만 7천원)정도이고실전운전테스트를받을경우9달러추가.

노인 보행 10계명(뉴질랜드 도로교통안전청)

- ① 출퇴근 시간 등 교통혼잡시간을 피해 나들이 계획을 세우십시오.
- ② 될 수 있으면 횡단보도를 이용하십시오.
- ③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에도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④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로를 건너되 젊은이들을 따라 건너지는 마십시오.
- ⑤ 도로를 건널 때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 ⑥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이나 버스의 앞뒤에서 건너지 마십시오.
- ⑦ 당신이 도로를 건널 때 운전자들이 당신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⑧ 다른 사람이 앞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다고 당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⑨ 필요하다면 안경이나 보청기를 사용하십시오.
- ⑩ 야간에는 밝은 색 옷을 입으십시오.

3. 「경찰관 대여」·대학에 「탐정」 과정

전쟁범죄, 집단학살과 여성 성폭행이 주류

- 보스니아·알제리·르완다 등 냉전종식 후 세계 곳곳에서 인종·종교 분쟁이 계속되면서 반인륜적인 전쟁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 '70년대에는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가 2백만명 이상을 학살,
 - '94~'95년 알제리 냉전과정에서는 정부 보안군이 5천여 명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살해,
 - '94년 르완다내전에서는 후투족이 50만명의 투치족을 무차별 학살,

- '91년 ~ '95년의 보스니아 내전에서 는 20만명이 희생,
- 인도네시아 폭동에서도 군인들이 화 교여성들을 강간한 것등이 그 예.
- 최근의 전쟁범죄는 민간인 살해·투항 고문 등 전통적인 범죄행위에 더해 성 추행·강간·강제임신 등 여성에 대한 공격이 전쟁수행전략의 일환으로 계획 적으로 자행되는 것이 특징이고 전쟁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야만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실정.
-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는 보 스니아인 추방을 위해 보스니아 여성 을 강제 추행하는 전략을 사용했던 것으로 유엔에 의해 밝혀져 국제사회 에 충격을 주었으며

- 르완다에서도 후투군이 투치족 여성에 대한 강간행위를 자행했으며
- 알제리에서는 이슬람혁명을 주창하는 반군에 의해 비이슬람계 여성이 집단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고
- 최근 유혈극이 벌어지고 있는 유고연방내 알바니아계 코소보주에서는 인권단체와 여성 단체들이 성폭행 여부를 감시중.
- 「인권 감시」라는 단체의 워드니 브라운 여성담당관은 “보스니아와 르완다 등지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전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이는 여성들을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
- 여성운동단체 「이퀴티 나우」의 켄 프랜즈브라우는 “성폭행은 처녀성 유지가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전통·종교사회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고 분석하고 많은 성폭행이 가족들 앞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

남아공, 백인들 수난시대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백인 농장주들이 잇단 수난을 당하고 있으며 농장주들을 공격하는 이들은 대부분 정체불명의 흑인들로 17세기 중반 남아공에 들어와 흑인들을 거느리며 번영해온 후어

트랙커(네덜란드계 남아공 개척자) 또는 보아(남아공 백인 농부들)의 후예들이 이제는 그들이 지배했던 흑인들의 공격으로 인해 공포와 분노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 남아공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농장피습사건은 일반 강력범죄와는 그 양상이 다르고 군사작전처럼 범행계획이 치밀하고 치명적이어서 피해자들은 물론 다른 농장주들에게까지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고 젊은 흑인들이 쇠약한 노인을 손도끼로 살해하거나 어린이들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 범인들이 사용하는 흉기도 끔찍한 것들로서 쇠파이프, 군용 칼, 창, 도끼, 권총, 심지어 AK-47 군용소총까지 사용하고
 - 범행피해가 치명적이고 잔인한 것에 비해 재산피해가 별로 크지 않고 약간의 현금과 귀금속, 픽업 종류의 중고차량, 총기류, 경작물이나 가축 몇 마리 등이 고작이라는 점도 특징.
- 현재 남아공 농업경제는 이중구조로 6만여개에 달하는 선진국형 상용(商用)대농장들과 약4만여개의 전통적인 소규모 자경농장이며 이들 농장의 소유주는 70%이상이 백인 정착자들이고 나머지는 인도인과 혼혈인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어 흑인 소유는 극소수.

- '98년 8월 「남아공업인조합(SAAU)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장피습사건은 '94년 이후 매년 평균 500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연간 120여명이 사망했으며 특히 '98년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424건이 발행해 89명이 살해되고 20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재산피해는 차량 96대와 무기탈취 220정 등으로 집계.
- '98년 들어 농장폭력사건이 급증하는 추세이고 남아공 전체의 일반폭력 범 죄율이 예년과 흡사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백인 지주들을 겨냥한 피습 사건에는 숨겨진 동기가 있다는 것이 남아공업인조합쪽의 주장.
- SAAU에 근무하는 코버스 피서는 “백인과 흑인이 피습현장에 같이 있어도 흑인들은 피해가 없다. 백인들만 살해된다”고 말해 일련의 농장피습사건에 정치적 동기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정 집단이 관계돼 있다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 만델라 대통령의 지시로 발족한 정보기관 특별조사팀의 조사보고서는 “농장피습사건의 99%가 흑인들의 빈곤과 소득 불균형, 흑백간 불화 그리고 실업에 기인한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고하였지만 흑인들을 제외하고는 이 보고서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
- '98년 8월 17일 백인 주요정당인 자유전선(FP), 국민당(NP), 흑인야당인 인카타 자유당(IFP) 등은 “농장주 살해의 배후에는 분명 정치적 요소가 있다”고 반박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고 SAAU 산하 지주들은 사설경찰 형태의 자체 방법조직을 만들겠다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시민권기운동도 전개.
- '99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흑인 정치단체들이 토지개혁 문제를 잇슈화하고 있는 것도 농장피습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94년 총선부터 투표권을 확보한 흑인들에게 토지개혁은 매력적인 구호임에 틀림없고 실제로 일부 사회주의 계열의 흑인단체들은 대부분 백인의 소유인 토지의 무상몰수와 재분배를 주장.
- '99년 총선을 앞두고 과거 만델라의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함께 흑인해방 운동에 앞장섰던 전아프리카회의(PAC)는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농장습격은 피할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이 개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만델라 대통령은 “정부는 농장주들 편에서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하네콤 농무장관 등 일부 정치인들은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네콤 장관은 최근 시민운동을 호소하는 농장주들을 겨냥해 “과거 흑인 어린이들이 돈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 맴돌 때, 또 해방운동가들이 죽어갈 때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세금을 더 내 불쌍한 흑인들을 돕자고 시민운동을 주창했는가”라고 비난.

- 농촌피습범죄가 정치문제화되자 만델라 대통령은 '98년 8월 13일 9월중에 관계자 수뇌회담을 열자고 제의하기에 이르렀으나 SAAU는 회담 참여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대통령과의 회의가 말잔치에 불과할 뿐 회의에서 얻어질 결론은 회의적이라는 것.
- 농장사회의 위축은 가뜩이나 어려운 실업문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지난 1년간 0.25%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남아공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
- 경제전문가들은 “농촌지역을 파괴하는 강력범죄로 인하여 남아공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농업생산의 위축뿐 아니라 해외자본의 유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걱정}
- 요하네스버그 농작물 도매시장의 50대

백인 판질은 “이제 올 때까지 온 것 아닌가? 우리는 코너에 몰려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내 땅을 놔두고 남들처럼 이민을 갈 수도 없다.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법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는 등 농장주 등 백인들은 격앙된 상태이며

- '98년 9월 8일 트란스발지역 농업조합(TAU)은 행정수도 프레토리아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이제 정부는 법질서 회복 능력을 상실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98년 9월말부터 전국적으로 항거하겠다고 발표했다
- SAAU와 3개 야당은 농장사회 자체 방법조직의 군경합동 운영, 농장지역에 대한 경찰의 증강 배치, 피의자에 대한 중벌 적용등의 방안을 내놓은 상태이나 이런 움직임들도 취약한 농촌사회에 대해 정부가 비중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

뉴욕, 「경찰을 빌려 드립니다」

- 미국 뉴욕시 경찰국이 경찰관들을 비번 일에 민간기업들에서 일하도록 하는 「경찰관 대여제」를 실시.
- 경찰관 대여제는 약 1만명의 경찰관

총 없이는 일상생활도 없다

< 어느 백인 농장주와의 인터뷰 >

- 남아공 저지대(Lowveld)의 광활한 초원에 외따롭게 자리한 농장들은 멀리서 보기엔 낭만적이고 평화롭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농장피습사건의 여파를 알아보기 위해 요하네스버그에서 약 50여km 남쪽에 있는 한 농장을 찾았다. 대부분의 농장들은 국도에서 한참 동안 비포장도로를 달려 들어가야만 그 모습을 가까이 대할 수 있다.
- 멀리서는 아름답고 평화롭게만 보이던 농장은 다가가 보니 군부대를 방불케 할 만큼 살벌했다. 이중 전기철조망에 둘러싸인 채 굳게 닫혀 있는 철문에는 「무단침입자는 발포함」이라는 경고판이 붙어 있었다.
 - 경적을 울리자 권총과 탄띠를 휴대한 농장 일꾼인 듯한 백인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차주위를 으르렁대며 맴도는 서너마리의 개들 때문에 차에서 내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 이윽고 주인이 나와 집무실로 안내했다. 집 안에는 권총과 람보칼을 옆구리에 찬 50대 농부 로버트(양계업)가 있었고, 책상 옆에는 망원경까지 부착된 엽총이 눈에 띄었다. 차를 내오는 그의 부인도 허리에 권총을 두르고 있었다.

「농장피습사건이 빈번한데 피해는 없는가?」

몇년 전에 무장강도들이 침입해서 혼란 적이 있지만 차량만 빼앗기고 무사했다. 농장 둘레에 전기철조망을 설치한 뒤로는 괜찮다. 그러나(총기를 가리키며) 이게 사는거냐. 불안한 마음에 한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다. 생존을 고심하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이니...

「농장피습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선은 고용부족으로 인한 생계범죄 증가와 연계된 것으로 생각한다. 먹어야 사는 것 아닌가. 하지만 농장피습의 잔인성은 이해하기 힘들다.

「농장끼리의 자체방범기구가 있는가?」

지역별로 방범순찰조직(Command System)을 운용하고 있지만 피습에 대해 법 테두리 안에서 경고하는 정도다. 피습사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사후조사와 범인 체포권도 보장받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만약에 정부가 토지개혁을 위해 토지를 무상몰수해 분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의하한 표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공산주의 나라인가.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토지를 사겠다면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팔겠다.

들이 민간기업들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계획에 등록, 시간당 27달러를 받고 일하도록 하는 「유급 파견 프로그램(PDP)이며

- '98년 4월 이 제도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2천1백여명이 병원, 상가, 경기장, 백화점, 극장 등에서 고용경찰로 활동중.

- 경찰간부들과 지지자들은 이 계획이 시 예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민 봉사와 치안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 「순경자선협회(PBA)」재무담당 브루스 로버트슨은 이 계획이 기업과 시민에게 도움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봉급이 적은 경찰관들에게 수입도 늘려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고 설명.

프랑스, 「셜록 홈스」양성키로

- 「셜록 홈스를 꿈꾸는 탐정 지망생들은 파리대학으로 모여라」- 미행 실습과 지문(指紋)학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탐정양성과정인 '98년 9월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 파리 제2대학에 개설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대학에 탐정양성 과정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
- 프랑스의 사립탐정연맹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탐정은 정확한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하는데 전문 양성기관이 없어 부작용이 많다”며 명문 파리대학에 협조를 요청, 대학측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학과 개설이 실현되었다 하며

- 이 과정에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 탐정들이 강사로 초빙돼 미행, 감시, 조사기술 등을 지도하며 이 대학 법대교수들이 민·형사법, 심리학, 회계학 등을 강의하고
- 학생들이 1년간의 이 과정을 수료하면 탐정조수로 채용되고 조수로 2년을 근무하면 탐정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

영, 술집 영업시간 철폐 움직임

- 영국의 규제개선위원회는 최근 술집의 영업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 “술집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이라고 지적하고
- “술집이 내국인은 물론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외식문화의 중심지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 이 주장을 채택할 경우 영업시간은 일단 자정까지로 연장되고 궁극적으로는 철폐된다는 것.

- 영국의 선술집은 모두 16만개소이고 이 가운데 극히 일부는 새벽까지 영업이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의 업소는 밤 11시면 문을 닫게 되어 있으며
 - 술집의 영업시간이 밤 11시로 굳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80여년전인 1910년대 중반이었고
 - 세계 제1차 대전중이던 당시 영국정부는 군수공장 근로자들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폭발물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킬 것을 우려, 술집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했던 것.
- 심야영업 허용 움직임에 대해 이번엔 금주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들이 “심야 영업이 허용되면 취객이 증가, 각종 범죄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 정당들은 밤 11시만 되면 술집에서 취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교통난과 무질서를 유발하는 현재의 폐단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

태국, 구걸행위 금지법안 승인

- 태국정부는 거리에서의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으며 곧 헌법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98년 7월 29일 발표.

- 경찰은 '98년 7월 28일 방콕 일원에서 거지 소탕에 나서 캄보디아 출신 걸인 40명을 체포했으며 그렇지 않아도 방콕에서는 혼한 풍경인 거리의 걸인은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로 증가 추세에 있고 심지어는 조직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멕시코, 살인마 마침내 검거

- 지난 '90년 이래 2백여 차례에 걸쳐 잔혹행위를 저지른 멕시코 최대의 납치범 다니엘 아리즈멘디(39)를 드디어 검거.
- 멕시코경찰은 합동작전 끝에 '98년 8월 17일 밤 수도 멕시코시티 외곽 나우칼판시에서 수배인물 제1호로서 신출귀몰하던 아리즈멘디를 체포하는데 성공했으며 그의 범죄에 연루된 다른 혐의자 16명도 '98년 8월 18일 아침에 검거.
 - 아리즈멘디는 경찰관 출신으로 몸값을 요구하며 납치극을 일삼아온 인물로 특히 납치된 사람들의 귀를 잘라 가족에게 보내거나 아예 죽이는 엽기적 행위로 전 멕시코를 전율하게 만들었고
 - 희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생살을 도려내는 잔혹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하며
 - 간호사 출신으로 알려진 그의 아내가

귀를 자르는데 한몫하는 등 주변 인물들도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아내와 아들 등 다른 가족은 이미 체포됐고 아리즈멘디의 형제와 친구들도 일부 납치극에 가담한 이유로 '98년 7월에 검거된 상태.

- 경찰은 아리즈멘디가 살던 집에서 4백 70만달러(약 61억원)를 발견하였고 멕시코에서 보안이 가장 철저한 감옥으로 이송하여 수감.
- 멕시코에서는 납치가 제법 흔한 범죄로서 연방경찰에 따르면 납치나 유괴에 따른 몸값이 매년 2천 5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멕시코에서 발생한 납치 및 유괴사건은 공식통계로만 1천4백60건이 발생했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이 두배쯤 될 것으로 추정.

멕시코, 경찰만행 아무도 못말려

- '98년 7월 19일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10대 소녀 세명이 순찰차를 타고 있는 네명의 경찰관에게 길을 물었고 경찰들은 '친절하게도' 소녀들을 목적지로 데려다 주겠다며 순찰차에 태워 멕시코시티 동부에 있는 경찰 마굿간으로 데려가 나홀간 소녀들을 가둬놓고 운간.
- 18세의 한 소녀가 극적으로 도망쳐

사건이 알려졌고 13세와 15세의 두 소녀는 반라의 몸으로 거의 실성한 채 길에서 헤매다 발견.

- 이 사건으로 16명의 경찰이 구속됐으며 문제의 경찰관들이 소속된 기마경찰단은 해체.
- 멕시코경찰이 범죄단속보다는 잭밥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 조직범죄단에 협력해 직접 범죄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멕시코시티 인근 모렐로스주에서는 경찰 수뇌들이 납치 등 중범죄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전원 구속되었고
- '97년에는 마약조사국의 국장이 멕시코 최대의 마약 밀매조직으로 부터 정기 상납을 받고 이들을 비호해온 것이 드러나 32년형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 매달 평균 7백명의 경찰들이 마약 복용으로 파면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면된 경찰관이 다른 지역 경찰로 채용되기 일쑤이거나 옷을 벗은 경찰관이 아예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경우도 다반사.
- 최근에는 경찰관을 양성하는 경찰학교가 범죄 은폐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와 경찰학교 폐쇄 여론이 들끓기도 했으나 2만 8천명의

멕시코시티 경찰관 평균월급은 3백달러(약39만원)로 박봉인데다 무교육자와 정신이상자, 전과자 등도 다수 채용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IV. 술과 담배와의 전쟁

미, 폭력범죄 원인 음주·마약이 37%

- 미국에서 일어나는 폭력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 음주인 것으로 미법무부 통계국이 '98년 4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6년 미국에서 일어난 7백 70만건의 폭력범죄 가운데 37%가 술에 취하거나 술과 마약에 같이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 또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집행정지·보석 등으로 풀려난 성인폭력범 5백30만명 가운데 36%가 폭력을 행사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 또한 음주폭력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많아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 여자친구에 대한 폭력의 40%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
- 술은 전 배우자나 옛 애인 등 여러 친

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의 더 큰 발생요인이 되고 있어 이런 폭력의 피해자들 중 3분의 2가 술이 원인이었다고 언급했고

- 배우자에 의한 폭력 한 분야만 볼 경우에도 폭력을 휘두른 사람의 4분의 3이 음주상태.
- 전체적으로 볼 때 매년 술과 연관된 폭력 사태의 희생자가 50만명이고 이들이 입는 경제적인 손실은 모두 4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발표.

호주, 남편잃은 여성 약물 과다복용

- 남편을 잃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호주 여성들중 25%가 잠들기 위해 수면제 처방을 받고 있으며 20%는 진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 멜버른 대학 수전 펠드만 여성노화연구소장은 '98년 5월 11일 1만2천명의 호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의사들은 남편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수면제와 진정제 등의 약물을 처방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 특히 이들에 대한 수면제 처방 비율은 일반인의 25배 달한다고 전언.

미 과학자, 알콜중독 유전이라고

- 알콜중독에 대해 연구해온 미국과학자들은 알콜중독이 유전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체 유전자 지도에서 알콜중독 유발 유전자군으로 보이는 부위를 발견했다고 '98년 5월 26일 발표.
- 이로써 알콜중독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높은 청소년들을 미리 가려내어 이들이 장래에 알콜중독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며
- 에노크 고디스 미 알콜남용·중독연구소장은 “알콜중독이 유전적 영향에 의한 것인지 환경적 영향에 의한 것인지 그동안 불분명했으나 이제 과학자들은 알콜중독에 유전적 요소가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알콜중독 유발 유전자군으로 보이는 부위를 식별해 냈다”고 언급.
- 그는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알콜중독 유발 유전자의 소재가 정확히 확인되면 알콜중독 치료와 예방의 길이 보

다 넓게 트일 뿐 아니라 환경의 역할과 인간 두뇌의 작용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

프랑스, 「술은 헤로인·담배는 대마초와 같다」고

- 프랑스 정부는 술은 코카인, 헤로인 등과 같은 1급의 위험성을 지닌 「마약류」로 분류되며, 담배는 대마초보다 더 해롭다는 보고서를 공개.
- 보고서는 마약류를 세 그룹으로 분류, 위험도에 따라 1급에 헤로인, 코카인, 알콜, 2급에 심리자극제, 환각제, 담배, 정신안정제 그리고 3급으로 대마초를 열거했으며
- 알콜류는 다섯 가지 기준중 육체적·정신적 의존도등 첫 2가지에서 「매우강함」, 나머지 3가지에서 「강함」으로 분류됐고
- 담배는 정신적 의존도 및 일반 독성에서 「매우 강함」으로 나타나 대마초

< 마약류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들 >

구 분	헤로인	코카인	흥분제엑스타시	알콜	정신안정제	대마초	담 배
육체적 의존도	매우강함	약함	매우약함	매우강함	중간	약함	강함
정신적 의존도	매우강함	강함	?	매우강함	강함	약함	매우강함
신경계 독성	약함	강함	매우강함(?)	강함	없음	없음	없음
일반 독성	강함	강함	매우강함(?)	강함	매우약함	매우약함	매우강함
사회적 위험도	매우강함	매우강함	약함(?)	강함	약함	약함	없음

〈영어로 보는 담배세계〉

- 오래 전부터 미국은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금연운동을 펼쳐 왔다.
 - TV의 담배광고 금지를 비롯하여 단거리 국내선 비행기 내에서 흡연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다수 음식점, 회사에서도 흡연금지다.
 - 「흡연하다」는 「smoke」인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smoke」외에도 「light up」(담뱃불을 붙이다)이 「담배를 피우다」의 뜻으로 쓰인다.
 - 또한 우리말의 「담배를 배우다」의 뜻으로는 「(몸에 해로운 담배 피우는)습관을 시작하다」를 말하는 「pick up the habit」또는 「take up the habit」이 있다.
- 「여성 흡연자 수가 매년 늘어가고 있다」는 「The number of women who light up is increasing each year.」이며
 - 「담배는 배우지 말아라.」는 「Don't take up the habit.」이고
 - 「일단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가 힘들다.」는 「Once you pick up the habit, it's tough to quit.」이다.
- 「담배를 끊다」는 「stop smoking.」이라고 하나 「stop」은 흔히 동의어인 「quit」로 많이 쓰여 「담배 끊어요.」는 「Quit smoking.」이다.
- 담배가 마약같은 중독성이 있어 담배 또한 마약류로 취급해야 하는지는 계속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견해는 「담배는 중독성이 있다.」(Cigarette smoking is addictive.)이고 예전에는 「중독성이 있다」라는 뜻의 「addictive」보다 「habit forming」(나쁜 습관이 생기는)이라는 단어를 썼었다.

보다 종합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

- 또한 이 보고서는 습관성 마약류의 합법·불법 등과 전혀 무관하게 위험도에 따른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

클린턴 대통령, 담배회사와 전쟁 개시

- 클린턴 미국정부와 담배회사들간의 전쟁이 다시 불붙었다고.
 - 클린턴 대통령 '98년 6월 22일 현재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담배 중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가장 즐겨 피우는 것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으며
 - 매일 3천여명의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한다는 통계도 있지만 어떤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
- 담배와 관련하여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청소년 흡연.
 - 클린턴의 의도는 이와같은 국민정서를 이용,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담배를 골라내겠다는 것이고 담배회사들이 발끈한 것은 당연한 일.
 - 담배업계 대변인인 스코트 윌리엄스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며 클린턴 행정부를 강력 비난하면서 “담배업계는 청소년 흡연이 줄도록 하는

연구·조사 등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이처럼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

- 클린턴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주 종합적인 담배 규제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끝내 사산(死産)때문.
 - 이 법안은 각 담배회사별로 청소년 흡연을 저하목표를 정하고 이를 못지킬 경우 최고 3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혹한 처벌조항으로 가득 차 있고
 - 담배회사들은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집중 로비를 벌이는 한편, 4천만달러 규모의 TV광고를 계속했으며 결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3명이 의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Filibuster)하여 법안통과가 좌절.
- 이밖에도 담배회사들은 울들어 공세로 전환, 만만치 않은 기세로 나서고 있으며 우선 이날 법정 공방에서 첫 승리.
 - 플로리다주 소재 연방고법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변호인들의 집단피해소송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며
 - 현재 36개 주정부로부터 흡연피해 보상과 의료비용 청구 등을 요구받고 있는 담배업계로서는 대단한 성공.
- 결국 지난 수년동안 담배와의 전쟁에서

일방적 승리를 거뒀던 클린턴 행정부가 최근 잇따라 패전을 기록한 셈이나 클린턴이나 민주당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도 담배 문제를 최대 이슈로 부각시킬 계획.

태국, 담뱃갑에 성불능 유발 경고

- 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담뱃갑에 「흡연은 성교불능을 일으킨다」는 경고문을 '98년 11월 5일부터 부착.
- 새 경고문은 담배회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10개의 문구 중 하나로 나머지는 흡연은 「살인이다」, 「폐암을 유발한다」, 「심장병을 유발한다」, 「노화를 촉진한다」등이며
- 국가담배통제위원회의 간사인 프라킷 와티사툽킷 박사는 흡연이 정자의 감산과 변형을 초래하고 활동력을 떨어뜨리며, 음경내의 혈액 유입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설명.

V. 검은 돈 · 위조한 달러

스위스, 돈 세탁 · 피난에 최고는 옛말

- 예금자 비밀보호 · 검은 돈 피난처로 알려진 스위스에서는 '98년 4월 1일 돈세탁 방지법이 발효되었으며

- 이 법은 은행을 비롯 보험회사, 금융중개상 · 환전상, 변호사 등 금융관련 모든 당사자에게 냄새나는 검은 돈은 금융당국에 신고토록 하였고
- 당국은 신고된 거래 · 구좌에 대하여는 즉시 5일간 입 · 출금을 동결시키고 조사를 개시, 범죄조직이나 독재자 등의 검은 돈 세탁 여부를 조사.

- 이제까지 스위스 은행법 제47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행원은 고객의 비밀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 이 「침묵의 법칙」에 따라 고객의 비밀을 지켰고 스위스 법에 위배된 경우에만 수사기관 등에 넘기도록 되어 있었으나 새법은 신고의무를 어긴 경우 2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

일, 새 100달러 위폐 나돌아

- 미 재무성이 위폐방지를 위해 '96년부터 유통시킨 새 100달러 지폐의 위조달러가 '96. 4월 상순 및 '97년 12월 달러감정 전문은행 리퍼블릭 뉴욕은행의 도쿄지점의 감정시 발견되어 일본은행들이 비상.
- 이 새 100달러 지폐는 「수퍼-K」라 명명된 구 100달러 위폐가 세계각국에 대량으로 나돌고 있어 고도의 위폐방지기술을 채용한 것이었으나 이 달러도 결

국 위폐범들의 공략에 무너진 셈.

미, 「위조지폐와의 전쟁」선포

- 미국이 「위조지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재무부는 '98년 4월 5일 “위폐방지를 위해 새로 도안한 20달러짜리 새 지폐를 5월 20일 공개한 뒤 올 가을부터 유통시킬 계획”이라고 발표.
- 지폐 앞면에는 앤드루 잭슨 7대 대통령의 초상화를,
- 뒷면에는 백악관 전경을 넣은 이 신권은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위폐를 방지하기 위해 복사할 경우 위폐방지 실선이 나타나게 돼 있도록 고안.
- 미국 하원은 이 달초 청문회까지 열여 하루가 다르게 첨단화하는 위폐 제작기술에 대항하기 위해 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로 달러를 만드는 대책마련을 논의했고
- 재무부 비밀검찰국도 “위폐범 처벌강화를 위한 법령정비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으며 비밀검찰국 데니스 린치 특별수사관은 “최근 위폐범들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아왔다”며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
- 미국정부가 이처럼 「위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96년 위폐예방을 위해 1백달러 신권을 선보인지 2년만의 일.

- 위조지폐 감식기마저 따돌릴 정도의 정교한 위폐인 「슈퍼 노트」의 등장인 결정적 계기가 됐으며
- 미국 조폐국은 의회청문회에서 플라스틱 화폐의 장점으로 ①컬러복사가 어렵고, ②수명이 길며, ③잘 구겨지지 않아 자판기 사용에 편하고, ④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등을 거론.

유럽연합, 유로화 위조방지장치 도난

- '99년에 도입될 예정인 유럽연합(EU) 단일통화 유로의 위조방지 장치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홀로그램 프린터가 도난 당해 차질을 초래.
- 무게 1kg의 이 홀로그램 프린터가 지난 3월 12일 에어프랑스에 실려 파리에서 뮌헨으로 공수되던 도중 사라졌다하며 이 홀로그램 프린터는 유로 지폐에 홀로그램을 새겨넣어 위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

미, 20달러 새 지폐 발행

- 미국의 20달러짜리 새 지폐가 '98년 9월 24일부터 유통되기 시작.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달러짜리 신권 20억장(4백억 달러)을 '98년 9월 24일 은행 등 금융업체에 공급, 이날부터 유통시킨다고 밝혔으며

- 신권유통과 함께 20달러짜리 구권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통될 예정.
- 미국 지폐 가운데 사용빈도가 1달러짜리에 이어 두번 째로 높은 20달러짜리 신권은 컴퓨터 스캐너나 컬러 복사기 등을 이용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것으로서
 - 20달러짜리 신권은 앞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달러 지폐에 담겨있는 앤드루 잭슨 7대 대통령의 사진을 크게 확대했고
 - 뒷면에는 백악관 북쪽(구권은 남쪽) 모습을 담았으며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 「20」이라는 숫자를 밝은 배경에 검은 색 글자로 크게 인쇄.

일, 북한의 위조달러 나돌아

- 잠수용구 부품의 북한 부정수출 사건을 수사중인 일본 경시청公安부는 '98년 10월 14일 다이신(大進)상사가 '95년 5월 북한에서 일본으로 반입한 달러 가운데 「슈퍼-K」로 불리는 정교한 위조 지폐 54장이 포함된 사실을 밝혀내고 유입 경위 등을 수사.
- 경찰에 따르면 '95년 발견된 「슈퍼-K」는 다이신상사가 도쿄의 시중은행에 반입한 5만달러 중의 일부로서 이 화폐들에는 위조방지를 위한 작은 글자까지

정교하게 인쇄돼 있다 하며

- 이에 대하여 다이신 상사측은 “당시 평양측 상사와 중고차 매매계약을 할 때 사원이 현지에서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
- 「슈퍼-K」는 '80년대부터 아시아와 중동에서 발견된 정교한 위조 100달러 지폐를 일컫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90년대 초부터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상태.

Ⅵ. 세계를 중독시키는 마약

영, 대마 합법화 요구 10,000명 데모

- '98년 3월 28일 런던의 중심가에서 약 10,000명이 참가한 대마합법화를 요구하는 데모가 있었으며 이는 영국에서 마약류 합법화요구 데모로서는 최대규모.
- 대마 합법화 캠페인을 펴고 있는 영국의 고급지 「인디펜던스 온 선데이」가 기획, 여당 노동당의원이나 팝송 가수와 의사등이 참가한 이 데모에는 참가자들이 대마를 피우면서 행진했으나 경찰은 묵인.

중국, 「마약과의 전쟁」전개

- 마약에 관한 한 그 어느 나라보다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마약과의

전면 투쟁을 다시 선언.

- 최근 공안부와 검찰부를 비롯한 공안 당국은 잇따라 회의를 열고 '98년 5월말부터 7월초까지 「마약의 고장」 윈난성(雲南省)을 비롯해 전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마약사범을 단속하기로 결정.
- 특히 이번에는 강력한 단속 뿐 아니라 마약의 폐해를 홍보하기 위한 전람회 등의 계몽사업도 병행.

- '97년말 현재 적발된 마약관련 범죄는 총 18만여건으로 압수된 마약은 5만5천여에 달하고 또 24만4천여명이 마약관련사범으로 처벌받았으며 이중 상당수는 보호 치료를 받고 있는 중.

독, 마리화나맥주 적법여부 공방

- 「맥주의 나라」독일에서 마리화나를 첨가한 맥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중으로서

마약상식

< 중독은 유전 >

- 약물중독은 습관이나 기호가 아니라 유전자에 의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마약의 유혹에 빠져드는 부류도 있다는 과학적인 주장이 나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 과학전문지 「네이처」 최신호에서 뉴욕 콜롬비아대 린 헨 박사팀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전적으로 변형된 쥐가 정상인 쥐에 비해 코카인에 중독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 이에 따라 약물 중독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를 규명해 약물 남용 및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길에 한걸음 다가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연구팀은 칸막이 안에 코카인과 연결된 지렛대를 설치했고 쥐가 지속적으로 코카인을 얻기 위해서는 매번 지렛대를 그 이전보다 더 많이 눌러야 하도록 했다.
 - 이 결과 「세로토닌 1B 수용체」가 없는 쥐는 「힘이 들더라도」 지렛대를 25번이나 눌러 코카인을 모두 8번 주입받은 반면 정상인 쥐는 9번 눌러 4번 밖에 주입받지 않았다.
 -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쥐는 단순히 식염수나 음식물에 대해서는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 헨 박사는 「세로토닌 1B 수용체가 없는 쥐는 스스로 코카인을 섭취하는 방법을 훨씬 잘 터득할 뿐만 아니라 약물에 대한 행동반응이 정상인 쥐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 이 연구팀은 코카인 소량을 두 부류의 쥐에게 주입한 결과
 - 세로토닌 1B 수용체가 없는 쥐는 정상인 쥐보다 심하게 뛰어다니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돌리는 등 불안한 행동을 보였다 하며
 - 이는 정상인 쥐가 코카인을 여러 번 주입을 했을 때 보이는 행동과 비슷하다는 점으로 미뤄 연구팀은 세로토닌 1B 수용체가 없는 쥐는 코카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생화학적 변형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96년 맥주에 소량의 마리화나 성분을 첨가하는 것이 합법화된 이후 양조업자 아스브뢰른 게를라흐(30)는 전통적인 맥주원료인 보리·효모·홉에 마리화나를 첨가한 새로운 맥주 「턴(Turn)」을 만들어 인기를 끌어 그의 맥주는 멀리 영국에까지 수출되고 있는 중이다
- 게를라흐의 맥주를 문제 삼은 곳은 마약을 단속하는 경찰이 아니라 독일 맥주연합으로서 게를라흐를 「순수맥주법」위반으로 제소할 뜻을 비치고 있는 것이며
- 연간 10만 l, 14만병의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게를라흐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 병당 6천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판.
- 맥주연합이 소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 법은 1516년 제정된 것으로서
 - “맥주 제조시 보리·홉·효모, 그리고 물 이외에는 다른 어떤 첨가물도 넣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법은 지난 '93년 첨가물을 넣은 밀러 등 외국 맥주가 인기를 끌면서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맥주연합이 게를라흐에게 다시 이를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
- 베를린 공대에서 양조학을 공부한 게를라흐는 수년 전 중세의 마리화나 첨가

맥주제조법을 재현하는데 성공, 마리화나 없이 그려진 「턴」맥주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 그는 맥주연합이 문제를 제기하자 상표에서 「맥주」라는 글자를 없애고 「마리화나가 첨가된 알콜 음료」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팔고 있는 중이고
- 맥주연합측은 「턴」의 제조회사 이름에 「맥주회사」가 들어가 있고 마치 「전통적인 맥주 제조방식」을 따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

스위스, 전 멕시코태통령 형에게 마약범죄 혐의

-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전 멕시코대통령의 형이 불법적인 마약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돈세탁을 3년간 조사해온 스위스는 라울 살리나스가 수t의 코카인을 실은 트럭과 심지어 화차들이 방해받지 않고 멕시코를 통과하여 미국내 목적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결론.
- 스위스 수사관들은 라울은 1988년 자기동생 카를로스가 멕시코대통령이 된 뒤 “멕시코를 경유하는 사실상의 모든 마약수송을 지배했다”고 주장.
- 라울은 콜롬비아의 막강한 2대 마약

카르텔이 생산한 코카인의 안전통과를 마련해주는 자신의 절대적인 협력의 댓가로 수송되는 코카인 가격의 30~40%나 되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받아냈다고 스위스당국은 비난.

- 그는 적어도 6개의 가짜 신분증과 2개의 가짜 여권의 도움으로 스위스, 미국, 멕시코를 포함한 10개국의 무수한 은행과 신용카드 계좌를 통해서 자신의 이윤을 돈세탁했다는 것이며
- 스위스당국은 스위스은행 비밀계좌들에 숨겨둔 9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압수하고 런던에서 영업하는 스위스금융기관들에게 라울이 예치해둔 또 다른 2천3백만달러를 압수하게 허용해 달라고 영국당국에 공식 요청.
- 스위스 수사당국은 한 공식성명에서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라울 살리나스가 자기 동생이 6년간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마약거래의 중심인물로 활약하면서 마약과 관련된 이익과 뇌물로 「적어도 5억 달러」를 착복했다고 공개.
- 라울 살리나스는 그의 전 매제 호세 프란시스코 루이즈 마슈의 살해를 지시한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난 3년간 멕시코 교도소에서 복역중.

- 아일랜드에 자진 망명, 불명예스럽게 살고있는 전 멕시코대통령 카를로스 살리나스는 자기 형의 범죄에 관해서 전혀 모른다고 거듭 주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당국의 보고서는 “우리들의 견해로는, 살리나스 전대통령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이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여러 마약 카르텔로부터 체포되지 않게 비호해 주고 마약거래의 안전을 지켜준 댓가로 당당하게 돈을 받은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재 미국의 중요한 마약 문제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소견을 개진.

미, 마약 복용「찰리 신」을 아버지가 고소

- 미국의 유명배우 찰리 신이 보호감찰 기간에 마약을 복용했다는 아버지의 고소에 따라 '98년 5월 28일 법정에 출두
- 역시 배우인 아버지 마틴 신은 아들 찰리가 지난 해 폭행죄로 2년간의 보호감찰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마약을 복용했다며 처벌을 요구했으며
- 찰리는 지난 주부터 마약남용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
- 병원에서 손의 고통과 보행의 어려움을 호소함으로써 전해진 찰리는 지난 해

<영어로 보는 마약세계>**Drugs international****Barry R. McCaffrey****<director,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The scope of the worldwide drug problem is difficult to overstate. Internationally, illegal drugs involve 200 million users and \$500 billion a year—a sum that exceeds the gross national product of most countries. UN Secretary General Kofi Annan notes that the illegal drug trade is larger than the oil and gas industry worldwide and twice as big as the motor vehicle industry. The 4 million Americans who are chronically addicted to illegal drugs cause enormous damage to themselves and the rest of society. We estimate that drug abuse costs the United States more than \$110 billion a year, causes approximately a third of all crime, and results in 1.5 million arrests a year. No nation can afford the social hemorrhaging caused by drug abuse.

The U.S. success in reducing drug use shows that a concerted effort can make a difference. Overall drug use in the United States declin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two decades. In 1979, more than 25 million Americans used illicit drugs on a casual basis. Today, about 13 million Americans (6.1 percent of our population) use drugs—a 50 percent reduction.

The U.S. 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aims to reduce drug use rates by 50 percent in the coming decade. This will result in the lowest levels of use recorded in the past 30 years. Our strategy defines reduction in demand as the main focus of drug-control efforts. The strategy also recognizes that no single approach can solve the drug-abuse problem.

Rather, drug prevention, education, and treatment must be complemented by supply reduction abroad, interdiction on the borders and strong law enforcement within the U.S.

The problem of drug abuse, like illness or warfare, will not go away in the foreseeable future. Like education, efforts against drug abuse must be ongoing in every generation. By way of example, we do not close schools, claiming we lost the "war on ignorance," because history, science and math must be taught year after year.

Our global challenge is to reduce drug use substantially and cripple the trade in illegal substances. Rather than each country working alone against drug dealers, we must unite in a common effort. This transnational problem deserves a global solution. We see the special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as the start of serious, large-scale efforts against addictive and toxic drugs that threaten our children and our entire planet.

마약은 범세계적 과제

베리 매카프리 <연방 마약통제정책국 국장>

- 세계 전반에 걸친 마약문제의 파장은 과장해서 말하기 어렵다. 불법 마약류는 2억명이 복용하고 매년 5천억달러, 그러니까 대부분 국가들의 국민총생산을 초과하는 규모가 거래된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불법 마약거래는 전세계 유류 및 가스산업의 그것보다 규모가 크고 자동차산업의 2배나 된다고 지적한다. 불법마약에 만성 중독되어 있는 미국인은 4백만명으로 자신들과 사회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고 있다. 약물남용은 미국에 한해 1천1백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가져오며 모든 범죄의 3분의 1에 원인을 제공, 이로 인해 한해 1백50만명이 체포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마약사용이 빛는 이런 사

회적 출혈을 감당할 만한 국가는 없다.

- 미국은 마약사용을 줄이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일치된 노력을 하면 국면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미국에서 전반적 마약사용은 지난 20년 사이에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1979년 당시만 해도 미국인 2천5백만명 이상이 수시로 불법 마약을 사용했다.
- 오늘날엔 약 1천 3백만명(전인구의 6.1%)이 마약을 복용한다. 50%가 줄어든 것이다.
- 연방 마약통제 전략본부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마약사용비율을 50% 낮추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것이 달성되면 마약사용비율은 지난 30년중 최저수준에 이르게 된다.
- 우리의 전략은 마약억제 노력의 주요 핵심을 수요의 억제에 두고 있다. 또 별개 현안으로 접근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마약 예방, 교육 및 치료에다 외국으로부터 공급원 축소, 국경지대에서 유입차단, 강력한 국내 법집행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질병이나 전투와 마찬가지로 약물남용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처럼 약물오용 억제 노력은 여러 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 예를 들자면 「무지와 의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문을 닫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와 과학, 수학은 해마다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당면한 세계적 과제는 마약사용을 현저하게 줄이고 불법물질의 유통을 못하게 하는 일이다. 마약거래 단속을 나라마다 따로따로 행하기 보다는 단합해서 공동노력을 벌여야 한다. 국가를 초월하는 이 문제야말로 마땅히 범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상이다. 유엔의 특별총회는 우리 자녀들과 지구전체를 위협하는 중독성 및 독성 약물류를 처치하기 위한 진지하고 대대적인 노력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재판에서 여자친구 브리터니 애실랜드를 폭행한 혐의가 인정됐으며 할리우드의 매춘사건에도 연루되는 등 좋지 못한 처신으로 구설수.

○ 미 마약단속국 직원들에 따르면 미시시피강 서쪽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헤로인은 사실상 멕시코 마약 마피아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

미, 마약두목 「쿤사」에 현상금 200만 달러

- 미국은 '98년 6월 3일 미얀마에 은신중인 것으로 알려진 쿤사를 비롯한 아시아 마약밀매단 두목 5명의 체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2백만달러의 상금을 주기로 결정.
- 미국 국무부는 5명중에는 악명높은 쿤사를 비롯, 쿤사와 함께 마약밀매에 관여했던 4명의 미얀마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쿤사는 현재 미얀마 정부와의 밀약에 따라 산악지대의 군대 안가(安家)에 은거중.

영, 「부룩 쉘즈」마약기사 썼다가 망신

- 영국의 「더 메일 온 선데이」지는 미국 영화배우 브룩쉴즈의 마약복용설을 게재했다 물의를 빚자 최근 「상당한」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개사과까지 했다고.
- 이 신문은 지난 '98년 5월 24일 “쉴즈가 칸영화제 참석 후 니스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조사받느라고 비행기 이륙이 늦어졌다”고 보도했다가 쉘즈가 소송을 제기하자 1주만에 허위기사였음을 시인하고 1면에 공개사과문을 게재.

미, 멕시코가 두번째 마약공급국이라고

- 멕시코의 마약 마피아들은 순도가 높고 약효가 더욱 강한 헤로인을 다루면서 미국 시장에서 두번째로 큰 마약 공급세력으로 떠올랐다고.
- '98년 6월 5일 미국 마약단속국 당국자는 멕시코가 미국으로 반입되는 헤로인의 약 42%를 공급함으로써 콜롬비아 다음으로 두번째로 큰 공급선이 되었다 하며

미·영, 양귀비 고사시키는 균 개발

- 미국과 영국은 해마다 급증하는 국제 아편거래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식물만을 골라 죽이는 독성균류의 살포계획을 추진중.
- 유엔 마약통제계획(UNDCP)이 최근 밝힌 세계 아편생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으로 생산된 아편은 '90년보다 53% 증가한 4천8백61t 이며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2개국에서 전체의 90%

- 를 생산.
- 전문가들은 '98년 7월 5일 “영국과 미국이 오래전부터 각각 5백만달러의 연구비를 들여 우즈베키스탄의 국립유전자연연구소와 함께 양귀비의 천적 균류를 개발, 내년쯤 살포할 계획으로 이미 실험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전하였으며

- 이 균류는 양귀비에 극히 미량만 달아도 줄기와 열매가 말라 비틀어져 아편 원료로 쓸 수 없게 되는데다 일시적인 화학 제초제와는 달리 항구적인 효과를 발휘.
- UNDCP는 그러나 서방세계의 이같은 균류 살포가 자칫 또 다른 형태의 세

마약상식

<복용자는 1억 6천 250만명>

- 마약의 대표격인 양귀비의 원산지는 본래 지중해 연안이었다고 한다.
 - 기원전 1500년대의 파피루스에는 어린아이가 심하게 울 때 양귀비즙을 먹이면 좋다고 해 이미 이 지방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이용됐음을 기록하고 있다.
 - 비로황제의 주치의였던 안드로마쿠스도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조제할 때는 아편을 섞었다고 하는 문헌도 있다.
 - 그러나 이 때도 역시 아편이 「독약」으로 이용돼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 「황금의 양모피」를 구하기 위해 「아르고선(船)」을 탔던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중 대장격인 「이아손」의 얘기 중에는 버림받은 조각지처 「메데아」가 이아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을 학살하고 머느리까지 마약으로 독살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 또 암살을 뜻하는 영어「assassination」및 프랑스어「assassinat」는 11세기 말 하산사바하라는 인물이 페르시아에서 비밀결사를 만들어 대원들에게 마약의 일종인 「하시시(아라비아어 hashshashin)」를 주고 정부요인을 암살토록 한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하지만 아편의 심각성에 대한 인류의 경각심이 본격화된 것은 중 · 영간 아편전쟁(1840~1842)을 겪고나서도 한참 뒤의 일이다.
 - 1912년에 비로소 헤이그에서 국제아편회의가 열려 「아편조약」을 체결했으나 이 조약의 이행을 감시기로 한 것은 30여년이 지난 '46년 구성된 「30개국 마약위원회」였다.
 - 유엔차원에서 「마약에 관한 단일조약」이 마련된 것은 '61년이다.
-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마약복용자는 1억6천2백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 유엔마약특별총회가 지난 '98년 6월 8일부터 유엔본부에서 18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죽음의 백색가루」라는 인류공동의 적인 마약퇴치전략에 전 세계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균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중.

미, 곰팡이로 마약퇴치

- 미 행정부가 마약전쟁의 「신병기」로 사용할 신종 곰팡이균의 개발에 착수.
 - 유전공학에 의해 탄생하는 이 곰팡이균은 헤로인 성분을 가진 양귀비와 코카인을 추출할 수 있는 코카 나무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말려 죽이며
 - 미 농무부의 주관 아래 아이오와 주립대연구소가 개발중으로 의회는 '98년 10월 22일 2,3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
- 연구소측은 “특정한 잡초만을 제거하기 위한 곰팡이균을 연구하던중 양귀비와 코카만을 공격하는 곰팡이균을 발견했다”며 “이르면 1년 이내에 실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 또 “현재 실험단계에 있는 이 곰팡이균은 마리화나(대마)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 “앞으로 이 곰팡이가 마약퇴치에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장담.

콜롬비아, 마약퇴치자금 유엔서 10억달러 지원

- 유엔은 향후 10년에 걸쳐 콜롬비아정부에 마약퇴치 지원금으로 10억달러를 제공하기로 콜롬비아정부와 합의했다고 '98년 9월 23일 발표.
- 콜롬비아 대통령궁은 이번 합의가 파스트라나 콜롬비아 대통령과 피노아르라치 유엔 마약담당관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98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억달러씩 제공될 자금은 여러 금융기관과 민간부문을 통해 모금될 것이라고 공개.

VII. 여전한 마피아의 범죄

G8, 「마피아 환경범죄」근절

- G8(서방 선진 7개국+러시아)은 '98년 4월 5일 「환경 마피아」들에 의해 자행되는 환경범죄를 근절하기로 결정.
 - G8 환경장관들은 이날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 리즈캐슬에서 이틀간 열린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과 금지된 독성 화학물질의 거래에 대처하는 제재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으며
 - 존 프레스코트 영국 부총리 겸 환경장관은 “지구환경이 조직적인 환경범죄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G8 국가들은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공개.

〈영어로 보는 마약세계〉

○ Vancouver Becoming Drug Mecca

Vancouver is quickly gaining a reputation as a haven for illicit drugs and those who use them. From the brazen addicts shooting up and buying heroin and cocaine around the intersection of Hastings and Main Street to the enormous amount of high-potency marijuana that is raised, sold and openly smoked on streets and in cafes, Vancouver's tolerance of drugs is attracting attention.

Adam, 19-year-old from Seattle who came with two friends for an overnight trip, easily bought marijuana on the street around Hastings, then - somewhat shyly - entered the Cannabis Cafe, a marijuana mecca for many West Coast Americans.

벤쿠버, 마약메카로 부상

- 밴쿠버가 불법 마약과 마약 이용자의 은신처로 빠르게 명성을 얻어가고 있다. 헤이스팅스 지역의 네거리와 중심가에서 주사를 맞고 헤로인을 사는 뻔뻔스러운 마약 중독자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효능이 뛰어난, 재배된 대마초들이 길거리와 카페에서 공개적으로 팔리고 흡연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마약에 관한 밴쿠버의 관용이 매력을 끌고 있는 것이다.
- 시애틀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하룻밤 예정으로 이곳에 들른 19살의 애덤은 헤이스팅스 지역의 길거리에서 쉽게 대마초를 구입해 약간은 수줍은 듯 미국 서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대마초의 메카로 알려진 캐너비스 카페로 들어갔다.

- 국제 멸종 동식물 보호기구(CITES)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밀거래는 매년 50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마약과 무기에 이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마피아들에게 중요한 거래품목으로 등장한 것을 입증.

대만, 「갱들의 전쟁」조짐에 긴장

- 타이완 최대의 갱조직 「죽연방(竹聯幫)」 두목의 장남을 라이벌 갱조직이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잔뜩 긴장.
 - '98년 4월 12일 저녁 죽연방 두목 창안러(張安樂)의 장남 지엔허(建和·28)가 12일 저녁 타이베이(臺北) 한 술집 엘리베이터 안에서 라이벌 갱조직 「사해방(四海幫)」의 행동대원들의 칼에 찔려 사망했고
 - 목격자들은 “사소한 시비끝에 칼부림이 벌어졌다”고 증언했으며 계획살인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살해범 중 한명은 현장에서 체포.
 - 살해된 지엔허는 이미 미국에서 마약밀거래로 10여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각종 정치살인사건의 연루자로 지목되고 있는 등 일찌감치 범죄세계에 뛰어든 인물.
- 현재 타이완 정부가 벌이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소탕작전을 피해 중국 본토에 은거중인 아버지 대신 사업을 운영중인

있으며

- 그의 아버지 창안러가 두목으로 있는 죽연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륙에서 건너온 본토인들로 조직하였고
- 이후 전 세계 차이나타운에 지부를 둔 타이완 최대폭력조직으로 성장했으며 사해방은 그에 버금가는 세력.

미, 뉴욕 5대 마피아 쇠락

- 뉴욕의 지하세계를 분할통치해 온 마피아 5대 패밀리가 최근 2년 동안 공식회합을 갖지 않아 '98년 4월 27일 수사당국은 이들의 종말이 가까워진 것으로 분석.
 - 5대 패밀리는 지난 60년 동안 「위원회(Commission)」라고 부르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어 왔으며
 - 1931년 피비린내나는 마피아들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전설적인 마피아두목 찰스 럭키 루치아노가 만든 이 「위원회」는 어느 한 패밀리가 패권장악을 시도할 경우 벌어질 내전을 피하기 위한 것.
 - 「마피아판 유엔안보리」라고 불리는 이 위원회를 통해 5대 패밀리들은 성공적으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이권배분과 분쟁조정을 처리.
- 수사당국은 통신감청 결과 위원회가 최근 2년 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공개했으며

- 그 이유는 5대 패밀리 중 감비노, 루크 헤세, 콜롬보 등 세 패밀리의 보스들이

마약상식

○ 전 세계 마약류의 생산·유통 및 소비유형이 변하고 있다.

- 전통적으로 불법 거래돼온 3대 마약류는 헤로인 (소비자 8백만~9백만명), 코카인(1천3백만~1천4백만명), 마리화나(1억4천만명)이고
- 미국 마약단속청 추산에 따르면 한해 불법으로 거래되는 마약은 4천억달러로 전 세계 한해 무역량의 8%나 된다.
- 전통적인 마약류는 콜롬비아, 미얀마 등 몇몇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농장에서 재배돼 「시칠리아 마피아」나 중국계 삼합회, 미얀마의 군사 등 대규모 마약조직에 의해 전세계로 유통됐다.
- 그러나 대규모 농장에서 재배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제되는 전통적 마약류가 화학적으로 합성제조되는 환각물질(ATS)에 의해 차츰 대체되고 있다.
 - ATS란 「암페타민류 환각제」를 통칭하는 것으로 히로뽀으로 더 잘 알려진 백색가루 형태의 메스암페타민, 주사기로 주입하는 액체상태의 스피드, 알약형태인 엑스터시, 미세 결정체로 흡입용인 아이스 등을 말한다.
 - ATS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양귀비나 코카나무, 대마초 등 원료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대규모 농장이 필요 없다.
 - 인공적으로 화학물질을 합성하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도 주로 선진국에서 이뤄진다.
 - 생산 장소가 바뀌면서 이들 마약류의 유통루트도 기존의 「개도국→선진국」에서 「선진국→선진국」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
 - 환각제를 생산해온 개도국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 ATS는 주로 유럽의 젊은이 수천만명에 의해 소비되고 있으며 한해 16~21%씩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 ATS는 처음에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에서 집중적으로 생산·소비됐으나 최근에는 러시아 등 구소련 국가들의 과거 화학무기 생산시설에서도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 ATS 소비가 이처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존 환각제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과 값이 싸다는 이유 때문이다.
- 그러나 의료계나 단속경찰은 ATS의 장기 사용에 따른 영향이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뇌손상이나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많다고 설명한다.
- ATS의 생산 및 거래는 소규모 범죄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이들은 기존 마약관련 범죄집단에 비해 조직화도 덜 되어 있지만 마약단속반의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아 포착이 잘 안된다.
 - 이들은 이 때문에 대규모 조직보다 훨씬 쉽게 조직의 우두머리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합법적인」지위에 진출시키기가 용이하다.

○ 과거에는 마약류가 대규모 농장과 대규모 조직을 통해 생산·거래됐기 때문에 단속에 관여하는 공무원이나 경찰이 부패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통제 및 소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마약상식

< 유엔 마약 특별총회 >

-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98년 6월 8일~10일까지 열린 유엔마약특별총회는 전 세계 1백85개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최대규모의 「마약정상회담」이다.
 - 미국·프랑스·영국·이탈리아·캐나다·스페인 등 서방선진국은 물론 멕시코·콜롬비아·볼리비아·페루 등 마약의 생산·유통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나라 등에서 참가하는 각국 정상만 30명이 넘는다.
 - 이처럼 많은 정상들이 모여 10년만에 마약의 생산·소비를 철저히 막는다는 데 합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피노 알라치 유엔부총장은 “각국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를 고려할 때 마약과의 전쟁은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 이번 회담은 공식적으로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에 의해 조직됐다.
 - 그러나 이번 회담이 이처럼 「성황」을 이루는 데 실질적으로 「힘을 쓴」 사람은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라는 것이 유엔 외교가의 정설이다.
 - 지난달 초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G8회의에 참가한 시라크 대통령은 각국의 정상들이 다음 달 유엔마약회의에 불참할 계획임을 알게 된다.
 - 이때만 해도 마약회의는 정작 영향력 있는 주요국 정상들은 모두 빠진 「반쪽회의」가 될 운명이었던 셈이다.
 - 자국내의 정치적 입지 강화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가 필요했던 시라크 대통령은 즉각 설득로비작전에 들어갔다.
 - 결국 빌 클린턴 미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등 정상들은 참석을 허락했고 마약회의에서 각각 7분씩 연설했다.

- 마약 소비·생산현황 -

- 마약소비 ('97) - 복용자는 전 세계 인구의 3.3~4.1%
 - 헤로인 800 만명
 - 코카인 1,330 만명
 - 마리화나 1억4,120 만명
- 마약생산 ('97) - 아시아·중남미 70만 가구 400만명이 종사
 - 아편 4,861t ('90 대비 1,000t 증가)
 - 코카인 302,523t ('90년대 들어 감소 추세)
 - 헤로인 3,300t
 - 마리화나 500,000t
- 이번 특별총회 기간중에는 확산일로에 놓인 마약밀매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35개국 정상들을 포함, 모두 1백50개국 대표들이 모여 국제 공조체제 강화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이번 총회에서는 또 지난 3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1백30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국제마약대책회의에서 마련된 행동강령을 승인하였으며
- 이 강령은 2003년까지 각국이 돈세탁 단속강화 및 사법공조 공고화를 위한 입법조치를 완료한 뒤 2008년까지는 코카인, 양귀비, 마리화나 등의 비밀경작 및 암페타민(히로뽕)류의 유통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 사실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으며 다국적 마약카르텔(TDC)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국제적인 규모로 커진 마약관련 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 마약의 주요 생산국은 중남미, 동북아, 동남아 및 중동지역에 몰려 있으며 주요 소비국은 북미, 유럽, 호주 등이다.
 - 코카나무잎에서 추출한 코카인은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세계 공급량의 70%를 생산하고 있으며
 - 양귀비의 열매껍질에서 추출한 아편은 중국 및 미얀마, 태국, 라오스를 잇는 「황금의 삼각지대」가 전체 공급량의 95%를 생산하고 있다.
 - 일본에서 처음 생산된 히로뽕은 대만, 한국 등 인접국으로 생산지역을 넓혀가고 있고
 - 생아편에 화학물질을 첨가해 만들어지는 헤로인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에 걸친 「황금의 초승달 지대」가 주요 생산지역이다.
- 그동안 마약 소비국은 생산국을 향해 「생산을 막아라」라고 주장해왔고 생산국은 소비국에 「시장이 있으니 생산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맞서왔다.
 - 하지만 '90년대 들어 생산국과 소비국이 공동전선을 펴야만 마약퇴치가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급속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 유엔은 지난 '90년 2월 사상 최초로 마약에 관한 특별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96년 12월의 정기총회에서 마약의 불법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특별총회를 계획했다.

- 마약 생산 · 반출 · 소비루트 -

- 황금의 삼각지대(미얀마 · 태국 · 라오스 : 헤로인)→파키스탄 · 아프리카 · 중국→호주 · 북미(→유럽) · 유럽(→북미)
- 황금의 초승달지대(아프가니스탄 · 이란 : 헤로인)→유럽(→북미)
- 환태평양지대(한국 · 대만 · 일본 : 히로뽕)
- 실크 삼각지대(카자흐 · 키르기스 · 타지크 : 헤로인)→ 유럽(→북미)
- 코카인 삼각지대(콜롬비아 · 페루 · 볼리비아, 메틸린 카르텔 · 칼리 카르텔이 주도 : 코카인)→중미→북미(→유럽)

- 최근 기소되거나 체포된데다 보스들의 회합 정보가 자주 새어 나가 체포될 위험이 높아진 때문.
- 또 마피아들이 서로 나눠가져야 할 이권이 크게 줄어든 것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이유로 거론.
- 마피아들은 그 동안 노동조합을 배후에서 조종, 회사로부터 「산업평화」의 대가로 돈을 뺏거나 입찰과정에서 농간을 부려 건설, 트럭, 청소용역회사들로부터 돈을 상납받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겨왔으며
- 수십년에 걸쳐 집요하게 단속을 벌여온 수사당국의 포위망이 좁혀짐에 따라 마피아의 사업이 불법도박이나 고리대금업, 자동차부품 절도 및 암거래처럼 위험한 대신 이윤은 많지 않은 「하찮은」 분야로 축소된 상태라고.

마카오정부, 「암흑가와의 전면전」

- 최근 치안공무원이 잇따라 피살되는 등 포르투갈령 마카오의 치안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마카오 정부가 마침내 갱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고.
- 마카오 경찰은 지난 '98년 5월 2일 마카오 최대 조직범죄단인 14K파 두목 완 쿠옥 코이(43)와 간부급 조직원 5명을 살인교사 및 마약밀매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
- 이날 경찰의 일제검거작전은 전날 마카오 최고 치안책임자인 안토니오 마르케스 뱀티스타 사법경찰국장의 승용차가 갱들이 설치한 폭발물에 의해 폭발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으며
-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아침 조깅을 마친 뱀티스타 국장이 차에 오르기 몇분 전 강력한 폭음과 함께 차량이 폭발했고
- 경악한 경찰은 뱀티스타 국장의 진두지휘로 방탄조끼와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수십명의 경찰을 동원, 시내 중심가에 대한 일제수색을 벌여 완과 간부들을 체포.
- 「부러진 이빨 코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완은 특유의 잔혹함과 대담성으로 마카오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
- 최근 그의 암흑가 인생을 담은 「카지노」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으며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듯 괴물이 아니다. 나는 부드럽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 4일 예비재판에서 완의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고 단지 범죄조직결성 혐의만 인정됐으며 범죄조직 결성 혐의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완은 최고 10년형을 받게 된다고.
- 또 이날 정부는 검사의 중요 범죄자 기소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반조직범죄법 제정을 공시.

- 내년 12월 말 중국으로 반환되는 마카오는 지난 해부터 큰 이권이 걸린 도박장과 매춘사업의 주도권을 놓고 우론히 파와 14K파 등 양대 갱조직이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벌여왔으며
- 특히 지난 3월말 이후에는 카지노 업계를 관장하는 고위 검사관과 세관경찰 등 보안공무원 3명이 잇따라 피살돼 주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고
- 갱들이 이와같이 공무원에게 총을 겨누는 것은 더 이상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라는 것이 마카오인들의 말이며 경찰국장 차량 폭발도 같은 메시지라는 것.
- 갱들의 활보에도 불구하고 내년 12월 중국귀속 시기만을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거센 비난을 받아온 마카오 정부가 갱들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지 주목.

미, 돈세탁·마약등 밀매조직 적발

- 미국당국은 '98년 5월 18일 멕시코 대형은행 관계자들이 포함된 사상최대규모의 국제 돈세탁 및 마약밀매 조직을 적발, 모두 1백12명을 체포하고 3천5백만달러를 압수했다고 발표.
- 재무부는 발표를 통해 지난 3년간 6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세관의 집중수사 과

- 정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다수 검거하고 거액의 불법세탁자금, 2t의 코카인과 4t 여의 마리화나를 압수했다고 밝혔으며
- 특히 멕시코에서는 콘피아, 방코메르, 방카 세르핀 등 3개 대형은행과 직원 26명이 「카사블랑카」라는 암호명으로 수행된 암행단속에 적발됐고
- 그외 19개 은행에서 12명이 돈세탁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기소장은 밝혔으며 이와 함께 콜롬비아의 마약조직 칼리등도 수사망에 걸렸다고.

이태리, 「마피아 불법투견 막자」 캠페인

- 「마피아로부터 건권(犬權)을 지키자. - 이탈리아의 동물 애호가들이 '98년 5월 20일부터 마피아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투견(鬪犬) 반대운동에 나섰다.
- 이들은 이탈리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도박꾼, 구경꾼, 개 사육자와 거간꾼」으로 이뤄진 패거리를 돕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 작년 한해 「개싸움」산업에서 거래된 돈은 5억6천8백만달러로서 '95년보다 10배 늘어난 규모.
- 동물 보호단체들은 해마다 5천마리의 개들이 「강도 높은」훈련을 통해 싸움판에 투입되며 대부분 마피아가 싸움용으로 키운 개들이라고 주장.

-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3월 투견추방을 위한 새 법안을 마련, 투견 조직원에 동물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도박꾼에 대해 1년이하 징역형을 내리고 있으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이같은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

이태리, 마피아 보스 잇만 도주로 정부 비난

- 두 명의 마피아 보스가 재판을 앞두고 유유히 사라져 이탈리아 「사법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AP 통신이 '98년 5월 24일 보도.
 - 더구나 도망친 두명 중 한명은 휠체어를 타고 도주한데다 한명은 80이 다된 노인이어서 이탈리아 국민들이 경악.
 - 마피아 보스 파스 레 쿤트레라(63)는 국제적인 마약조직을 만든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던 중에 사라졌으며 그가 휠체어를타고 사라진 뒤에야 그에게 21년형의 유죄가 선고됐고
 - 이에 앞서 지난 달에는 리치오 겔리(79)라는 마피아보스가 사기사건 재판 평결을 앞두고 도주.
- 이 두 사건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과 보석이 쉽게 허용되는 이탈리아 사법제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국민들은 비난.

이태리, 법정출두 마피아두목 땅굴로 도주

-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던 이탈리아 마피아 두목 2명이 부하들이 미리 파놓은 지하터널을 통해 탈출에 성공.
- 네아폴리탄과 두목 페르디난도 체세라노와 주세페 오토리노는
 - '98년 6월 21일 44명의 부하들과 살레르노시 법원에 출두하여 난동과 탈출 등의 사태에 대비해 철장 속에 갇힌 채 재판을 진행했으며
 - 판사의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부하들이 두목을 에워싸는 사이에 2명이 마루바닥을 뜯고 미리 파놓은 터널을 통해 연기처럼 도주하였으며 터널에는 탈출용 총기도 미리 준비.
- 법원경내를 벗어나기 직전 두 사람은 경찰과 잠시 총격전도 벌였으나 그들은 지나가던 자동차를 뺏어타고 유유히 도주.

홍콩 트라이어드, 야쿠자와 손잡고 일본에서 활개

- 홍콩의 세계적인 범죄조직인 트라이어드(三合會)가 일본의 야쿠자들과 제휴하여 중국인들의 일본 불법이민, 보석상 강도, 신용카드 위조 등 일본내의 범죄에 깊숙

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의 경찰관계자가 '98년 7월 9일 언급.

- 트라이어드는 홍콩의 카이탁(啓德)공항을 통해 중국인들을 일본에 불법 입국시켜 술집,안마시술소 등에 취업시켜 왔다는 것이고
- 트라이어드가 야쿠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이 「불법 이민사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
- 또 홍콩의 각기 다른 트라이어드 조직들은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도시에 거점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위조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 도쿄와 오사카에서 적발된 대규모 신용카드 위조사건은 트라이어드의 최대 파벌인 수니온과 14K 조직원 등이 저지른 것이라 하며
- 5월 28일 오사카 보석상 무장강도사건의 경우도 트라이어드의 파벌들인 워싱 워파와 푹 이싱파의 공모라는 것.

- 홍콩과 일본 경찰은 트라이어드의 일본 진출에 경각심을 갖고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고민중이라고.

유럽연합, 돈세탁 규제 강화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98년 7월 13일 내년으로 예정된 유럽단일통화의 출

범에 대비, 돈세탁을 더욱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돈세탁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자, 회계감사관, 부동산업자, 변호사 등은 고객을 대신해 거래할 때 의심쩍은 돈거래는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 '91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이같은 보고를 의무화.
- 현재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핀란드 등은 다른 국가들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집행위원회는 또 15개 모든 회원국의 금융정보기관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

스페인, 동양계 탈세조직 검거

- 스페인 정부는 한국 등지에서 상품을 구입해 유럽연합(EU)에 팔면서 1억3천만달러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국제 탈세조직을 적발했다고 '98년 7월 17일 발표.
- 모두 7백여 업체가 연루된 이 조직은 모두 2백억페세타(1억3천만달러)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 하며 그 수법은 한국, 대만 및 필리핀에서 금붙이, 전자제품 및 기타 제품들을 구입해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에 EU에서 판매한 후 해당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었다고.

러, 범죄단체 기업 수천개 장악

- 러시아 범죄단체들은 국민 총생산(GNP)의 40%를 차지하는 수천개의 기업을 장악하고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장이 연방회의(상원)에서 공개.
- 푸틴 국장은 또 FSB가 현재 약 2천5백명의 관리들을 부패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특히 전직 군인들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고 설명.

중국, 「흑사회(黑社會)」소탕령

- 장쩌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가 지난 '98년 9월 공안부에 밀명을 내렸으며 암호명은 「S계획」.
 -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를 3각으로 누비며 살인·납치·마약·매춘·밀수 등 악질 범죄를 일삼는 「흑사회」(黑社會·조직폭력배)를 소탕하라는 특명이며
 - 「S」는 공안(security)또는 비밀(secretcy)의 뜻으로 조직폭력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은밀하고 신속한 작전으로 뿌리 뽑겠다는 의미.
- 국가원수가 특명을 내릴 만큼 이 삼각지역내 폭력배들의 준동은 심각.
 - 특히 내년 12월 20일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되는 마카오는 대낮

에도 비젯이 공권력에 대한 폭탄테러·살인이 자행될 정도.

- 중국 입장에서 폭력배 소탕은 국내 치안문제를 넘어 마카오 반환을 순조롭게 마무리짓기 위한 대전제이기도 한 셈.
- 중국은 강주석의 지시후 지난 9월 8일 마카오에서 불과 1백m 떨어진 주하이(珠海) 형친(橫琴)섬에 무장폭동·안보 관련 범죄진압을 전문으로 하는 정예 무장경찰 2백50명을 주둔시켜 압박작전에 돌입.
- 폭력조직은 크게 홍콩·마카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삼합회(三合會)와 중국 본토내 조직으로 구분되며
 - 트라이어드(triad)로도 불리는 삼합회는 14K·죽련방(竹聯幫)등 총 50~55 개파로 복잡하게 구성된 조직.
 - 조직원들은 화교거주지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약 5만~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 이들이 움직이는 자금도 수십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
 - 중국 본토의 경우 광둥(廣東)·저장(浙江)성 일대의 문도회(門徒會), 산시(山西)성내 남방(狼幫), 장쑤(江蘇)성내 오씨가족(吳氏家族), 구이저우(貴州)의 금정방(金井幫), 하이난(海南)의 남패천(南霸天)등이 대표적.
- 중국계 국제 밀항청부조직으로 중국인의

- 일본밀항에 깊숙이 개입해 일본 경찰당국이 골치를 썩이고 있는 「사두」(蛇頭·뱀머리)도 이들 폭력조직과 음양으로 연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폭력조직들은 서로 암투를 벌이다가도 공권력이 덮치면 긴밀히 협조하는 공생관계로 돌변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해도 추적과 체포가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고
 - 홍콩·마카오·본토의 3개 지역 중 한 곳에서 일을 저지르고 다른 조직의 도움으로 경계선을 넘어 달아날 경우 속수무책.
- S계획의 요체는 삼각지역내에 공안·국가안전부 요원 수만명을 동원, 광둥성 이남 유흥가·우범지역에서 대대적인 기습

단속과 검거선봉을 통해 흑사회 두목급들을 마카오에 몰아넣는 작전.

- 일종의 토끼몰이 방식으로 “내년에 마카오가 반환되면 두고 보자”는 계산이 깔려 있으며
 - 문제는 중국공안이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느냐는 점으로서 이는 중국의 공안과 폭력배간 결탁이 뿌리깊기로 유명하기 때문.
-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소탕을 추진중인 만큼 삼각지역의 폭력배들에게는 상당기간 흑한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98 마카오 피습사건>

일 자	피 해 자	범 죄 상 황
2.26	경찰관	사제폭탄폭파 사망
2.28	경찰관	차량폭파 사망
3.4	문화청 관리	운전중 피격 사망
3.24	감찰청 청장	보행중 피격 사망
3.26	해양경찰관	운전중 피격 사망
4.15	보안경찰 간부	외출중 피격 사망
5.2	경찰관	보행중 피격 사망
8.14	검찰총장 부부	보행중 피격 부상
9.8	경찰·기타 15명	수사·취재중 원격조종폭탄 폭파 부상

VIII.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미, 펜타곤은 해커들의 놀이터

- 미 국방부가 「다운로딩(Downloading) /2016216의 대가들」이란 국제해커그룹이 최근 전산망에 침입, 군사위성의 지구위치 추적 및 감시시스템(GPS) 소프트웨어를 빼낸 후 이를 테러분자들에게 판매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등 해커들의 잇따른 침입으로 심각한 보안위기를 맞고 있다고.
- 이 그룹은 지난 '97년 10월 국방부 전산망에 침투, 정보를 빼냈으나 지난 주 컴퓨터 보안전문가 존 브래너세비치가 이 사실을 밝혀냈으며
- 이들이 훔친 소프트웨어에는 수십개의 군사위성을 이용, 가상 적국 미사일을 파괴하는 요격망과 군부대 배치에 관한 정보 등 걸프전 이후 구축된 미군의 주요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사건은 그동안 유사한 해커침입사례 중 최악의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
- 이 그룹은 일반적인 해커들보다 나이가 많은 19~28세 가량으로 미국인 8명, 영국인 5명, 러시아인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급이며
- 웹사이트를 통해 이들과 대화한 브래너

세비치는 해킹의 전형적 유형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낙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이번 경우는 전혀 다른 부류에 속한다면서

- 이들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문제의 도난 소프트웨어 사진을 띄우는 등 과감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고
- 이들 중 한 멤버는 “국제테러단체들은 우리의 정보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외국 정부들도 이를 구입하려 할 것”이라고 훔친 정보를 판매할 의사를 표시.
- 미 국방부는 사태가 의외로 심각하자 대책마련에 고심.
- '98년 4월 22일 수전 핸슨 국방부 대변인은 도난당한 소프트웨어에는 기밀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변명하고
- 현재 연방수사국(FBI)이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라고 발표.
- 미 국방부 전산망에는 일년에 약 15만~25만건의 해커침입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검거는 평균 150건밖에 되지 않다고 있다 하며
- 지난 2월 이스라엘인 해커「애닐라이저」(분석가)가 침입하자 현상수배를 하는 등 고생끝에 그를 체포한 바 있고
- 현재 50여명의 해커추적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커들의 기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어 검거와 예방에 애를 먹

고 있는 중.

미, 여고생이 인터넷으로 힐러리에 협박 편지

- 미국 메인주 스카버러 고교의 여학생 2명이 '98년 5월 12일 퍼스트 레이디 힐러리 여사를 협박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이 발각돼 5일간의 정학처분을 받았다고 학교 이사회가 발표.
- 이들은 학교 컴퓨터를 이용, 힐러리 여사의 인터넷 주소로 문제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 SS 요원들에 인지돼 지난 주 교내에서 연행됐으나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석방.

미, 인터넷 시위 증가

- 인터넷 시대를 맞아 각종 항의집회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벌어질 기미.
 - 관청 등 특정장소를 점거하며 벌어지던 농성이 시·공간을 초월, 온라인으로 전개될 판이며
 - 미국 뉴욕의 「전자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운동가들은 멕시코 정부 웹사이트 점령계획 수립을 완료.
 - 목표는 메기코의 농민반군 사파티스타 국가해방전선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탄압정책 저지이고 D데이는 오는 10일이며
 - 몇시에 어느 웹사이트를 기습할지는 개시일 직전에 공개할 예정.
- 사이버 연좌농성을 위해 개발해 놓은 소

< 해 킹 대 책 >

- 「해커을 막아라」 - 사이버테러리즘(Cyberterrorism), 인포워(Infowar) 등의 생소한 단어들 세계 각국의 안보기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 때문에 각국은 해킹을 막고 해커들을 처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고
 - 해킹을 막기위해 사생활 보호 및 공공비밀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 해킹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미국은 현재 이같은 취지의 법률을 만들어 범죄 예방과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통신의 자유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는 해커들과 법정 공방을 하고 있다.
 - 또 다른 방법은 기술적으로 특수 보안장치와 2중 암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하지만 해킹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어 정부와 해커의 대결에서 해커의 승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법무부 장관을 책임자로 하고 연방수사국(FBI)과 국가안보국(NSA)등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보장그룹(Cyber Security Assurance Group)을 출범시켰으며 이들은 해커들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대비해 통신, 은행, 수송 등 국가의 주요 컴퓨터망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플러드 넷(Flood Net)으로서
-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 「리로드」(Reload · 재접속)버튼을 7초에 한번씩 자동클릭하는 프로그램이며

- 플러드 넷은 추적을 피해 예정된 시간에 한시적으로 인터넷에 뜨게 되고
- 수천명이 플러드 넷을 통해 한꺼번에 리로드를 눌러대면 해당 사이트는 작동 마비.

○ '98년 4월 10일 시험작전에서는 전 세계에서 8천1백41명이 「집결」, 세디요 멕시코 대통령의 웹사이트를 점거.

미, 최초 사이버범죄자에 유죄

○ 미국에서 사상 최초의 「사이버 스페이스 기결수」가 탄생하였다고.

- 미국 샌타애나 연방지법은 '98년 5월 4일 인터넷에 아시아계 학생들을 협박하는 편지를 띄운 혐의로 기소된 리처드 마차도(21)에 대해 징역 1년과 보호관찰 1년의 유죄를 선고.

- 마차도는 지난 '96년 60여명의 아시아계 캘리포니아주립대 재학생들 앞으로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한사람씩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이메일을 송부.

○ 이 학교 중퇴생으로 당시「아시아인을 증오하는 사람」이라는 ID를 사용했던 그는 법정에서 “무료한 나머지 장난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 뿐 실행에 옮길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미, 해커들 「30분이면 인터넷 마비」

○ 미국 보스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7명의 해커들이 '98년 5월 19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 30분만에 인터넷을 마비시켜 이들 동안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컴퓨터 보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

- 인터넷 사용자 이름으로 상원에 출석한 이들 해커는 “우리 혹은 다른 누군가가 그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면 나라 전체가 큰 문제점에 봉착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강력한 컴퓨터 보안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이들은 4년 전 「로프트」(Lopht) 그룹을 결성, 현재 미국에서 가장 실력있는 해커 단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동안 안전한 제품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상원에 초청됐다고.

일, 해커막는 「사이버경찰」등장

○ 하이테크 범죄는 「사이버 경찰」에게 맡겨

- 라. - 일본 경찰이 '98년 6월 5일 국가방위 기밀과 고급 산업기술 등을 빼내는 컴퓨터 해커들과 전면전을 선언.
- 사이버 경찰은 경찰청 내에 설치될 하이테크 범죄전문기술센터(HITEC)의 전적인 지원을 받으며
-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수십명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포진하는 이 센터는 최첨단 슈퍼 컴퓨터를 사용해 추적한 단서 등을 사이버 경찰의 일선 조직인 해커 대책반, 사이버 테러 대책반 등에 전달하게 되고
- 이에 따라 컴퓨터 범죄가 발생하면 곧바로 전 경찰서를 잇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가 입력되며 즉각적인 수사 착수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
- 경찰은 하이테크 범죄의 특성상 해외 조직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제 수사기관과도 24시간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
- 이밖에 경찰은 부정 침입에 대한 처벌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산업비밀을 탈취당한 기업체가 수사를 의뢰할 경우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면서 「산경(産警)합동검거 작전」을 펼 계획이며 사이버 경찰은 예산과 조직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99년 초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
- “어린이들은 길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응하지 말라고 교육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 아이들은 집안에서 낯선 사람과 거리낌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미국 연방 상업위원회는 인터넷 산업이 어린이들을 통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98년 6월 8일 발표.
- 이 위원회는 이번 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올 3월 1천4백개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85%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그중 14%만이 자료 사용처를 알려준다”며
- “개인 신상에 관한 제도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웹사이트는 오직 2%뿐”이라고 지적.
- 이 위원회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어린이로부터 정보를 얻을 때 부모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사실상 인터넷 검열을 입법화할 예정.
- 이는 이대로 가면 21세기 들어 미국 성인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산업에 유출됨으로써 뉴미디어 시대의 사회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고
- 이같은 움직임은 당장 어린이 보호단체의 지지를 획득.
- 미디어교육센터에 따르면 어린이용 사이트 상당수가 게임을 통해 개인 정보를 뽑아낸다는 것이며 가령 아이스케이크회사 팝시클 웹사이트는 어린이들에게 우주선

미, 어린이 통해 개인정보 입수

선장과 승객 중 택일하라고 한 뒤 선장을 원하는 아이들에겐 나이, 성별,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좋아하는 아이스케이크 등을 입력하도록 요구한다고.

술의 향상은 물론 틈새시간에 휴식을 취함으로써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대리만족을 통해 성희롱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

미, 인터넷 포르노 업무시간중 이용자 62%

- 인터넷을 이용하는 미국 직장인 대부분이 업무시간에 은밀히 포르노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 인터넷 소프트웨어 회사인 엘론사가 '98년 6월 9일 조사한결과 인터넷 포르노사이트 접속 이용자의 62%가 업무시간에 몰래 접근하는 네티즌들이므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으며
- 엘론사가 설문조사에 응한 1백여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7%가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처벌의 종류는 구두 경고에서 징계에 이르기까지 다양.
- 이같은 인터넷 접속에 대해 고용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근무시간을 개인오락을 위해 허비함으로써 생기는 업무생산성의 저하.
- 또 거기에 드는 비용도 적잖고 직장내 성희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
-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론도 만만찮아 포르노사이트 탐색을 통해 인터넷 검색기

한국, 청소년보호용 소프트 개발

-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도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를 보면서 비행을 일삼아 사회문제화.
-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모어 시립도서관의 경우 한 소년이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포르노물을 출력해 보다 부모에게 들켰는데 부모가 음란 사이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았다고 도서관을 고소해 화제.
- 국내에서도 그동안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특별한 대책없이 방치해 청소년 비행이 증가, 사회문제로 대두.
- 그러나 이제 청소년들을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
- 벤처기업인 플러스기술(대표 박형배)이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인 「네아구스」(Net Argrs)1.을 개발, 최근 국내외 시장개척에 나섰다.
- 이 제품은 학교의 인터넷 환경에 알맞은 제품으로 교사의 컴퓨터에 설치하면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상황을 감시할

수 있고

- 또 학생이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경우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

해 무려 17만장 이상의 포르노 사진을 검색한 사실을 적발.

- 군수사관들은 지난 해 연구소 직원들이 「Sucker」라는 특수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200개의 가짜 신분을 동원한 사실을 적발해냈다고 전했으며 전쟁기술 개발이 본업인 이들 과학자들은 컴퓨터 온라인 사용 시간의 70%를 인터넷에서 포르노 사진을

영, 인터넷 포르노 스캔들

- 영국 국방평가연구소는 '98년 7월 9일 소속의 과학자들이 근무시간중 인터넷을 통

<해커들에 지구촌안보「구멍」>

- '98년초 미 국방부, 항공우주국(NASA)의 사이트가 해킹을 당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미 육군과 인도 핵연구센터의 컴퓨터망마저도 해커들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 게리 길모어 미 육군 대변인은 '98년 6월 6일 지난 달 28일 해커들이 육군 컴퓨터망에 침입해 부대 웹사이트를 바꿔 놓았고
 - 영국과 뉴질랜드 등의 10대 해커들이 인도의 바바 핵연구소 컴퓨터에 침입, 과학자들이 주고 받은 수천개의 전자우편을 훑어보고 홈페이지에 반핵 메시지를 남겨놓았다고 설명.
 -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커들이 인도의 핵연구센터 컴퓨터에 침입할때 미 육군과 NASA의 컴퓨터망을 통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 길모어 대변인은 “해킹을 한다면 특이한 루트를 통해 들어갈 수 있으며 그들은 분명히 육군 컴퓨터를 통해 침입했다”며 두 사건이 연관됐음을 시사.
- 밀웜(Mil Worm)그룹으로 알려진 해커의 주장에 따르면 컴퓨터의 보안망을 뚫는 데 겨우 14분 걸렸다는 것으로서
 - 한 해커는 “기밀정보를 기계에 저장하려면 최소한 보안에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조롱했고
 - 해커들은 앞으로 1주일간 인도 컴퓨터망에 대한 해킹을 계속할 것이며 인도의 라이벌인 파키스탄의 컴퓨터망도 겨냥할 것 이라고 경고.
- 이들 해커가 어느 정도까지 침입했는지와 이들이 입수한 전자우편들이 실제로 인도의 최근 핵실험에 관련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 미 육군당국도 미국안보가 위태로운 수준까지 침입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상태.
 -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해커들에게 「성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떤 컴퓨터망이라도 자기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다는것이 사실이라서 충격.

찾느라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 NYT 웹사이트 포르노소동

- 뉴욕 타임스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98년 9월 13일 해커가 침입, 기사가 사라지고 엉뚱한 포르노사진이 떠오르는 바람에 일대 소동.
- 「아가씨들을 위한 해킹」이라는 단체 소속이라고 자신들을 밝힌 해커들은 이날 오전 7시50분부터 오후 7시40분까지 12시간 가까이 타임스지 사이트를 장악하고 검은 바탕화면에 여자의 나체사진들과 함께 뜻모를 단어와 위협조의 글들을 뒤범벅해 올렸으며 타임스지 간부를 조롱하는 글까지 실었다는 것.

미, 인터넷 포르노 규제법 승인

- 미국 하원은 '98년 10월 7일 컴퓨터 온라인에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성인 여부를 확인한 후 열람을 허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인터넷 포르노 규제 법안을 언론자유 침해라는 논란속에 통과.
- 이 법안의 포르노 규제조항은 기업들이 「해로운」정보를 웹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제공하기 전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방문자들의 나이가 17세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미, 출판업계등,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 시행금지 소송

- 미국 출판업계와 의학계, 동성애 단체들은 '98년 10월 22일 인터넷의 음란물 규제를 위한 법률이 언론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시행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 이들 단체는 미 의회를 통과한 총 5천억달러 규모의 '99회계연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제정된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지 하루만에 연방법원에 법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 이들은 문제의 법률이 성문제에 관한 여성의 자유와 예술품,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유방암 등에 관한 인터넷상의 토론을 규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난.
- 미 민권자유연맹의 내딘 스트로센 회장은 “이 법률은 어린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보다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시행반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 이들 단체는 지난 해에도 인터넷 음란

물을 규제하기 위해 「통신품위유지법」이 제정되자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 법안을 폐기토록 한 전력이 있다고.

미, 인터넷 음란물 검열 「표현의 자유」논란

- 미 상원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검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논란이 다시 한번 불붙을 조짐.
 - 상원은 '98년 7월 23일 미성년의 컴퓨터 이용자가 인터넷의 성인 음란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그러한 정보제공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 그 주요 골자는
 - ① 「미성년자에게 유해한」(Harmful to Minors)정보를 유포하는 상용 웹사이트의 소유주를 처벌한다.
 - ② 만약 그들이 성인 음란물을 제공하고 있다면 미성년자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접속이용자들에게 신용카드 번호나 접근 코드 등 성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의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③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 ④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일선 학교와 도서관은 어린이들의 음란 사이트 접근을 자동으로 막아

주는 여과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등이다.

- 아울러 상원은 법무부가 인터넷상의 「사이버범죄」(Cybercrime)를 단죄 하고 음란 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6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 인터넷 음란물 처벌 법안을 추진했던 덴 코츠 상원의원은 “인터넷에 횡행하는 외설적이고 천박한 형태의 음란물로부터 어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성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목표였다”라고 말했다
 -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00년에는 1500만명의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상원의 결정은 곧바로 논란의 불씨를 지피며 여러 시민 단체들과 비평가들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상원이 추진하는 수정법안은 2년전 입안했다 좌절된 「통신품위법」(CDA로 약칭)의 재판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여러 언론들도 이를 「CDA II 논쟁」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

미, 출산 인터넷중계 여인 수배자로 밝혀져

- 자신의 출산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로 공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엘리자베스 올

리버(40)를 부정수표 남발혐의로 '98년 7월 1일 체포.

- 올리버 부부는 지난 '89~90년 플로리다주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25장의 부정수표(약 1천3백달러)를 사용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하며
- 이날 자수 형식으로 체포된 올리버는 9천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으나 남편 길버트의 소재는 미확인 상태.
- 올리버는 지난 6월 16일 미국건강채널(AHN)이 제작한 인터넷 출산 생중계 방송을 통해 선이라는 사내아이를 낳았고
- 당시 출산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2백만명 이상이 접속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며
- 경찰은 당시 인터넷을 통해 클로즈업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수배자임을 알아내고 체포에 나섰으나 이들 부부는 이미 퇴원, 잠적한 뒤였다고.

미, 공군컴퓨터에 해커 침입

- 미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의 컴퓨터 시스템에 지난달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가 침입했으나 공군이 이를 즉시 발견, 접근을 차단했다고 공군 당국자가 '98년 7월 11일 공개.
- 폭탄, 미사일등의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에글린 공군기지 컴퓨터에 해커가

침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커는 공군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려 했으나 시스템내의 자동보안장치가 이를 감지해 접근을 차단했다는 것.

미, FBI가 한국등 기업·대학침투 해커 추적

-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존 더 리퍼」라는 해커가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의 기업과 대학의 컴퓨터에 침투하여 비밀번호 등 고객정보를 훔쳐가고 있다"며 그를 추적하고 있다고 공개.
- FBI는 "이 해커는 정부 컴퓨터에는 침투하지 않고 기업과 대학에만 침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훔쳐낸 비밀번호가 4만8천여개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으며
- 이 해커는 미국의 하버드, MIT, 칼텍 등 유수 대학, 실리콘밸리의 기업체, 인터넷사업체 등을 해집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

중국, 해커로 골치

-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98년 6월말 현재 1백8만명으로 작년 10월의 62만명에 비해 두배로 폭증했고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과 함께 사이버 세계의 무법자 「해커」들의 활동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중.
- 그 예로는 최근 중국내의 한 해커가 웨이저우성(貴州省)의 홈페이지에 들어

- 가 그 사이트에 포르노 사진을 띄운 것.
- 또 상하이(上海)의 한 해커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중앙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 각종 경제정보를 훔쳐간 것 등.
- 과교흥국(科教興國)을 부르짖는 중국 정부는 인터넷 사용을 적극 권장하지만 그와 더불어 각종 불법활동이 증가한다는 점이 고민.
-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터넷 사이버 세계를 이용해 공산당 체제의 전복을 도모하지 않을까 하는 점.
- 홍콩에서 활동하는 「홍콩 블론디」란 해킹 그룹의 지도자는 중국의 인권(人權)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중국과 거래하는 서방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
- 이 그룹의 지도자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내 인권유린에 항의하기 위해 우리는 중국과 거래하는 서방 기업의 컴퓨터체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 이같은 해킹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 인터넷 도박에 3개월 징역

- 컴퓨터 보급이 급속도로 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돼온 인터넷 도박이 엄격히 규제될 전망.

- 미국 상원은 '98년 7월 23일 수십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도박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90, 반대 10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 인터넷 도박은 규제가 어렵고 미성년자들에게 개방돼 있는데다 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도박사는 3개월의 징역 또는 5백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운영업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달러의 벌금, 도박자금의 3배에 해당되는 돈을 물게 된다고.
- 이번 법안통과는 인터넷 이용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주목.
- 현재 인터넷에는 1백40여개 도박사이트가 개설돼 있고
- 고객들은 수백달러가 입금된 통장을 개설, 게임 참가자격을 얻은 뒤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컴퓨터나 무료전화로 각종 게임에 베팅을 하게 되며
- 이렇게 해서 지난 한햇동안 슈퍼볼과 미국 프로농구 등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서만 '96년의 10배에 해당하는 6억달러가 불법적으로 투기된 것으로 추정.
-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도박사이트를 숨아내기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고

- 또 도박사이트를 찾아내더라도 이들 사이트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운영·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미, 불법복제 단속정보 인터넷에 공개

- 불법복제물에 대한 처벌이 가장 엄격한 나라는 미국이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경우 불법복제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
 - 애플, 컴팩, IBM, 인텔사등 쟁쟁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참여한 미국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BSA)가 인터넷을 통해 '98년 8월 10일 발표한 「최근 3년간 불법복제율과 피해액 보고서」에 따르면
 - 미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조사대상 80여개국중 가장 낮은 27%.
 - 전세계 평균은 40%, 베트남이 가장 높은 98%, 한국은 67%였다고.
 - 미국의 불법복제물 단속·처벌근거는 물론 저작권법으로서
 - 이미 '76년 10월 저작권법이 발효됐을 정도로 불법복제물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단호하며
 - 저작물을 불법복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달러 이하의 벌금형

이 내려지며

- 2,500달러 이상의 저작물을 10개 이상 불법복제해 유통시켰을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
- 미 연방수사국(FBI)과 BSA 산하 소프트웨어 제작자 협회(SPA)는 합동단속반을 구성, 수시로 단속하며 단속결과는 SPA 인터넷 홈페이지(www. spa org)를 통해 전세계에 공개.
 - 지난 달 24일 플로리다에서 불법 CD롬 복제자가 기소된 데 이어 30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소프트웨어 소매상을 수색했을 만큼 불법복제물 단속은 광범하게 수시로 이루어지고
 - BSA와 SPA는 단속활동외에 상설 불법복제 신고전화(1-888-NO -PIRACY, 800-388-7478) 운영, 인터넷(www.spa.org/intl/priacy)을 통한 불법복제 근절캠페인을 계속중.
- 그러나 불법복제물이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엄격한 실정법이나 단속때문만은 아니며 「불법복제는 절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철저하기 때문.

국제상업회의소, 인터넷범죄 특별대책반 구성

- 국제상업회의소(ICC)는 '98년 9월 24일 급증하는 인터넷 이용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발표.

- 런던에 있는 ICC 상업범죄대책부의 에릭 앨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반이

- ICC 회원기업들이 있는 1백30개국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 범죄대책 전문가들을 훈련시키는 한편 사이버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조사해 이를 경고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개.

- 세계 각국의 7천여 기업 및 단체들을 회원으로 두고 국가간 상업행위를 증진시키는 업무를 맡고 있는 ICC는 앞으로 인터넷범죄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

○ 한편 선진 8개국은 지난 해 내무·법무장관회에서 인터넷상의 5대 범죄유형으로

①어린이에 대한 변태행위 및 불법섹스 거래, ②마약 밀매, ③돈세탁, ④정치 스파이, ⑤전자 사기행위 등을 지적.

지구촌 '사이버 경찰', 인터넷 불법사이트 단속

○ '98년 10월 22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28개국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강화될 계획.

- 공정위는 '98년 9월 23일 28개국이 참여

하는 국제상거래감시 네트워크가 10월 22일을 「인터넷 불법사이트 일제 검색의 날」로 지정해 피라미드 판매, 건강보조식품 관련 허위광고 사이트 등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

- 이에 따라 28개국의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당국은 상거래관련 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실시해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경고하고 주관 국가인 호주에 이를 통보.

○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통신 및 전자상거래 표시광고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피해사례를 수집·분석 중이고

- 또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약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올해 안에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약관을 시정하도록 할 계획.

○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각종 국제회의에서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달 3,4일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선언을 채택했다”고 전언.

미, 「인터넷 증권 사기」로 골치

- 「신종 거래」는 「신종 사기」를 부른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98년 10월 28일 인터넷 증권사기범 44명을 기소하는 등 요즘 「인터넷 증권사기」와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
- 증권시장의 주식거래 주문과 정보교환에 인터넷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SEC 산하의 「사이버 경찰」이 인터넷 사기범을 대량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 인터넷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은 「스캘핑(Scalping)」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우량주」로 추천하는 것.
- ‘스톡투워치’라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스티븐 킹은 올 5월 20만명의 네티즌에게 미들랜드사의 주가전망을 띄웠으며 “현재의 주가는 96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재료」가 있어 앞으로 76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 그는 이 전망의 말미에 “나는 이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증권전문가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 붙였으며
- 킹의 전망을 믿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바람에 미들랜드사의 주가는 며칠만에 2.02달러까지 올랐고 킹은 즉각 보유

주식을 팔아 17만달러의 차익을 확보.

- 그러나 이 회사 주가는 곧 폭락했고 킹의 말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본 실정.
- 킹은 올 4월에도 텍사스주 소재 의료가기 제조업체의 주가가 1달러에서 18개월내에 20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조언하는 수법으로 57만달러를 챙긴 전과자.
- SEC의 헤럴드 페겔하트는 “인터넷을 통해 이같은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곧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처음 정보를 유통시킨 사기범들이 차익을 챙기는 일은 가능하다”며 SEC는 인터넷 증권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 SEC는 “찰스 스와프 증권사의 경우 올해 전체 주문의 54%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만큼 인터넷 주식거래가 확산되고 있다”며 “따라서 인터넷 증권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

미, 해킹비즘(Hackivism; 해킹+액티비즘)에 대처키로

-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네티즌(netizen)들이 특정 정부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침범해 정치구호를 내걸거나 컴퓨터 서버를 무력화하는 소위 「해킹비즘(hackivism)」이 본격화.
- 기존의 컴퓨터 해킹(hacking)과 정치행

동주의(activism)의 합성어인 「해티브리즘」은 정치·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킹하거나 목표물인 서버(server) 컴퓨터를 무력화하고 이런 기술을 만드는 주의를 뜻하며

- 「혁명의 디지털화」를 꿈꾸는 이들은 따라서 자기만족 차원에서 허술한 컴퓨터 보안장치를 뚫던 기존의 해커들과는 다르다고.

- 예컨대 미국 보스턴 소재「죽은 소의 숭배」와 「홍콩 블론즈(Blondes)」등 중국의 인권탄압에 반대하는 해외 중국계가 결성한 해킹 그룹의 1차 목표는 중국과 교역하는 미 기업의 웹사이트.
- 이들은 지난 '98년 10월 26일 중국정부 산하 한 인권기구의 웹사이트에 침범하여 “중국인민은 전혀 인권이 없는데도 미국이 어떻게 중국인민과 무역의 최대국 조항을 맞바꿀 수 있는가”라는 구호로 중국정부의 인권 입장을 교체해 놓았다고.

○ 「네트(Net)전쟁」의 사례들로는

- ① 이달초 인도정부의 「캐시미르 지역」 정보제공 웹사이트가 「캐시미르를 구하라」는 슬로건과 인도군에 처형된 캐시미르인들의 사진들로 교체된 일
- ② 지난 6월 네덜란드·영국의 대학생들이 인도의 한 핵무기 실험센터의 웹사이트에 버섯구름 사진을 게재한 것.

- ③ 포르투갈의 해커들이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정부의 40개 서버에 「동티모르에 자유를」이라는 구호와 인권유린 실태 내용을 연결해 놓은 것 등이 있고
- 이는 “점차 교역과 홍보를 위한 각국의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정치적 목적의 약탈행위가 시작됐다”는 것을 입증.

- 미 정부가 지난 2월 리노 법무장관의 지시로 「정보보호센터」라는 연방기구를 새로 설립키로 한 것은 “정치집단들의 대미 공격이 종래의 군사수단보다 인터넷상에서 더욱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도 한몫.
- 멕시코 반군(자파티스타) 지지세력의 경우에는 오는 '98년 10월 22일 미 군사요원 훈련센터의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이후 세디요 멕시코 대통령과 미 국방부의 서버 컴퓨터를 무력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할 정도.

X. 아동학대 · 아동매춘

미, 차안에 딸 방치한 남자에 1급 살인죄

- 미국 아칸소주에서 '98년 4월 29일 햇볕이 따가운 더운 날씨에 두 여자아기를 자동차 안에 내버려둬 결국 사망케 한 20대 남자 2명이 1급 살인죄로 기소됐다고.
- 두 남자는 각각 생후 4개월과 16개월된

딸을 자동차 안에 놓아둔 채 8시간 동안 근처 동굴에서 버섯을 찾다가 돌아와 아이들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등 사고를 가장하려 했다고.

한 성 착취도 언급, 동남아와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이가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시아 어린이 1백만여명이 섹스 거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충격적 자료도 공개.

ILO, 아시아 어린이 100만명이 매춘

- 전 세계 어린이의 약 4분의1이 시간제 또는 상근제 형태로 노동하고 있으며 이중 3분의2는 위험한 여건에 있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98년 5월 27일 지적.
- IL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 "5~14세의 개발도상국 어린이 2억5천만 명이 현재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 "그 비율을 대륙별로 보면 ①아시아 61%(1억5천3백만명), ②아프리카 32%(8천만명), ③라틴아메리카 7%(1천7백50만명) 등"이라고 보고.
- 어린이 노동에 항의하기 위한 국제 행진단의 미국방문에 맞춰 공개된 이 보고서는
 - 어린이들의 노동분야가 농업, 건설업, 광업과 도자기·유리·성냥공장 등 다양하며
 - 심지어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등에서는
 - 고기를 잡기위해 심해에 잠수하고
 -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강제노동을 하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
- ILO는 경제적 착취와 함께 어린이에 대

태국, 소년 성추행 영국인 33년형

- 무인도에 태국의 어린 소년들을 끌어들여 성적학대를 일삼아온 영국인에게 '98년 5월 7일 33년형을 선고.
- 푸켓 지방법원은 영국 귀족출신인 제임스 프레이저 달링(47)에게 9명의 소년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죄를 물어 33년형을 선고했으며
-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프레이저 달링은 4년 전 한 대학에 영어교사 자리를 얻어 이 지역에 들어온 뒤 바닷가에 집을 하나 얻어 알몸으로 수영하곤 하는 어린 소년들에게 접근해 먹을 것이나 옷가지 또는 자전거 등을 사주며 유혹.
- 그를 고발한 8~15살의 소년들은 그의 손에 이끌려 안다만해에 있는 무인도로 끌려가 성폭력의 희생자들이 됐다 하며
- 스스로 로마의 폭군 네로에 비유하기를 즐긴 그는 무인도에서 어린 소년들과의 질탕한 향연에 탐닉했고
- 이 즐거움을 묘사한 그의 글은 아동 성학대자들의 단체가 발간한 책에 포함돼

있음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되기도.

- 그러나 그의 반인륜적 행위는 아동 성추행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인 푸케트 아동감시기구와 아동권리보호센터에 의해 '95년에 적발돼 고발됐으며
-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날 재판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더 이상 외국인들이 동남아 어린이들을 노리개로 삼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 그러나 프레이저 달링은 “태국당국은 영국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영국 외무부의 정보담당 고위관리인 프레이저 달링의 형 역시 자신의 동생이 비정부기구의 마녀사냥 희생자라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네덜란드, 한살배기 강간포르노 인터넷 공개

- 갓 돌이 된 아기를 강간하는 장면을 인터넷을 통해 보여주는 포르노조직이 네덜란드에서 검거돼 충격.
- 네덜란드 경찰은 '98년 7월 16일 “어린이 대상 포르노조직을 검거하고 12개월짜리 유아의 강간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압수했다”고 발표.
- 경찰은 잔트보르트의 한 아파트를 급습, 이

같은 내용의 사진 수천장과 디지털 영상을 담은 플로피 디스크를 찾아 냈다는 것.

영, 찰스왕세자 어린이창녀 지원 모금 운동

- 찰스 영국왕세자가 '98년 7월 16일 어린이 창녀들을 위한 지원기금 모금운동을 시작.
- 다이애나 왕세자빈의 돌연한 사고사 이후 1년간 자비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 노력해온 찰스는 인도 사창가출신의 네팔 소녀들이 수용돼 있는 카트만두 보호소에 5만파운드(8만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
- 지난 2월 네팔을 방문, 창녀 보호소를 시찰한 찰스는 영국 최대 발행부수의 타블로이드신문 선지에 실린 공개서한에서 자신이 직접 그린 히말라야산맥 풍경수채화의 한정판 판화 5백장을 1백50파운드씩을 받고 판매한다고 밝히는 등 모금을 위한 본격적 활동에 돌입.
- 찰스는 “매춘시장에서 고통받는 소녀들의 처지가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비참했다”고 솔회.
- 찰스왕세자는 「자비의 천사」아누라다 코이랄라(47)여사가 운영하는 이 창녀 보호소에서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바이러스 감염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과거 자선사업에 열정을

바쳤던 다이애나빈을 상기시켰으며 영국의 지원으로 설립된 이 보호소에는 가난한 여성과 소녀 1백35명이 수용돼 있다고.

미, 친권회피 부모들 철창행

- 앞으로 자녀 부양책임을 나몰라라 하는 미국의 부모들이 중범죄자로 분류돼 교도소에 갇히게 된다고.
-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98년 6월 24일 중국방문길에 나서기 직전 상·하 양원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친권회피 부모 처벌법」에 서명.
 - 이 법은 1년이상 빚을 갚지 않거나 빚이 5천달러 이상인 상태에서 자녀양육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주나 외국으로 도주하는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빚이 1만달러 이상이고 채무불이행기간이 2년이상이면 최고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
- 미국이 부모 - 자식관계에까지 사법권을 발동키로 한 것은 자녀 양육책임을 회피한 부모가 '96년 현재 무려 1백만명에 달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92년 80억달러에서 '97년 1백34억달러로 크게 늘고 있기 때문.

안보리, 어린이 전쟁동원 실태 고발

- “지난 10년간 무력분쟁에서 숨진 어린이 (18세 미만)는 2백만명, 1천2백만명은 집을 잃었다. 6백만명의 어린이가 중상을 입거나 영구 불구가 됐다. 심리적 충격은 헤아릴 수도 없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쟁과 어린이」를 주제로 최초로 가진 '98년 7월 29,30일 회의에서 이 분야의 사무총장 특사인 오투누는 지난 10년간의 「성적표」를 발표.
- 그 결과는 이들 어린이에 대한 특별 보호와 치료를 명시한 「어린이 권리 협약」('89년)이 유명무실함을 입증.
 - 오투누와 그라샤 마셀 전 모잠비크 교육부 장관이 작성한 보고서들에 따르면
 - 현재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30만명의 소년병들이 동원돼 있고
 - 지난 '45년 이래 전쟁에서 사망한 2천만명 중 민간인은 80%였으며 이 가운데 대다수는 여자와 어린이로서 유니세프의 한 보고서는 어린이 희생자의 비율을 40%로 추정.
 - 지난 '81~'88년 모잠비크 내전에서만 45만명의 어린이가 사망.
 - 중남미 분쟁에서 정부군은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어린이까지 고의로 살해했고 반군(叛軍)들은 “조종하기 쉽다”는 이유로 술과 마약으로 이들의 무모함을 선동.
 - 이밖에 어린이들은 각종 부역과 성인

병사들의 성(性)노리개용으로 납치되며
우간다 북부의 반군인 ‘신(神)의 저항
군’이 지금까지 납치한 어린이는 모두
8천여명.

- 유니세프의 스티븐 루이스 부총재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여 어린이를
희생양으로 삼는 전쟁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

○ 오투누 특사는 “성인은 전쟁이 끝나면 예
전 생활로 복귀하지만 부모를 잃고 전쟁
에 휩쓸린 어린이들은 되돌아 갈 곳이 없
다”며 “각국이 징집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올릴 것”을 강조.

○ 안보리는 지난 29일 의장성명을 통해 무
력 당사국 어린이의 전쟁동원과 성적 학
대 등을 규탄하고 각국의 국제법 준수를
촉구.

ILO, 아동학대·노동·매춘 철폐 주장

○ 국제노동기구(ILO)아동노동위원회는 '98
년 6월 16일 최악형태의 아동노동 철폐를
촉구하는 보고서 초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했다고 ILO 간부가 언급.

- 이 간부는 “최악형태의 아동 노동에 관
한 확고한 국제 노동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의미있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 “이 보고서는 이르면 오는 2000년 시행

하게 될 최악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새로운 협약의 서곡이 될 것”이라
고 지적.

○ 보고서 초안은 각 회원국에 대해 최악형
태의 아동노동을 「즉각」철폐하기 위한 조
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최악형태의 아동노동이란 노예노동, 매
춘과 음란물 이용, 마약 거래와 위험한
노동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보고서 초안은 또 각 회원국에 대해 18
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최악의 학대적
인 노동을 「우선적으로」철폐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이행하도록 촉구.

○ 현 ILO협약은 최소 노동 연령을 1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경우는 최소 연령을 18세로 규정.

- 그러나 62개 국가들만이 이 협약을 비
준했으며

- 이번에 처음으로 분명하게 규정된 위험
한 아동 노동에는 육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과 지하나
수중 또는 위험한 높이에서 노동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

호주, 전후 영국어린이 1만명 강제노역

○ 30~50년전 영국에서 자선단체들에 맡겨
진 어린이 1만여명이 호주의 가톨릭수녀
회 부설 고아원으로 송출돼 인간이하의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

- 특히 자선단체들은 어린이들을 송출한 뒤 부모에겐 자식이 영국 중산층 가정 에 입양돼 잘 살고 있다고 하고
- 어린이들에겐 부모가 죽었다고 해 서로 연락할 길조차 차단하여 더 충격.

○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2차대전 직후인 '45년부터 '67년까지 호주의 자선수녀회 와 나자렛수녀회로 송출된 어린이가 1만 여명에 이르며

- 이들은 호주 각지의 고아원에서 매를 맞아 강제노역에 동원됐었다고 했고
 - 테레사 위트필드(여)는 “어릴 때 말을 듣지 않는다고 수녀들이 발에 끓는 물을 부어 몇달 동안 걸지도 못하고 그 흉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증언.
 - 호주 도착 당시 흉안에서 이제 흰머리가 희끗거리는 중·장년으로 변한 이들은 “도난당한 청춘을 보상하라”며 수녀회와 영국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호주에 송출됐던 폴 포트럴(53)은 “영국은 자신의 혈육을 해외로 추방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분개.

- 이에 앞서 한 수녀는 성적 학대혐의로 고소당해 현재 재판계류중.

○ 수녀회측은 처음엔 관련사실을 부인하다가 이제 개별 고아원 차원의 문제로 호도

하는데 급급하고 있으며

- 호주 퀸즐랜드주 니어콜의 고아원이 처음으로 가혹행위사실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고
- 영국 의회대표단은 호주를 방문해 이들을 위로하고 송출경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이들중 85%가 송출당시 고아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 이들의 「생애 마지막 꿈」은 생존해 있다면 70~80대인 부모들과 재회하는 것으로 의회대표단은 이들에게 영국의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

UNICEF 「아시아 윤락여성 100만명이 미성년」

- 어린이 성학대는 아시아에서 특히 심하여 유엔아동기금(UNICEF)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윤락여성(2백만명)가운데 절반이 미성년자.
- 가장 많은 태국은 80만명으로 이로부터 연간 15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어린이를 사고 팔며 미국·유럽 등에 밀수출하는 국제 범죄망이 구성돼 활동.
- 미성년자 섹스산업의 주된 수요자는 선진국으로 '89~'96년 아시아에서 미성년자 섹스관광을 즐기다 체포된 외국인의 국적을 조사한 결과 미국이 1위, 그리고 독

일·영국·호주 순 이었고

- 독일은 매년 30만명이 해외 섹스관광을 떠나 그중 5천명이 미성년자를 상대하고 영국의 피도파일(paedophile)들은 매년 수천명씩 태국으로 원정을 떠나며 개중엔 상주하는 자들까지 있고 일본에선 전화를 통한 여학생 섹스 알선업 「테레크라」가 성업중.

EU, 어린이 성적 학대 근절 논의

- “유럽인들이여 각성하라.” - 유럽 각국이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
 -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장관들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 장관들은 예산집행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어린이 성적 학대방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EU집행위원회 결정을 번복하고 기금적립을 결의.
- 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슈에셀 외무장관은 회의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어린이 포르노 비디오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각국이 강력한 공동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
- 유럽 각국도 나름대로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 독일은 어린이를 이용한 음란물 근절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토 하우스 정부대변인은 경찰당국이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해 어린이를 이용한 음란물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할 것을 촉구.

- 벨기에 관광당국은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에게 해외에서 어린이 매춘행위를 하면 귀국한 뒤 기소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책자를 배포.

- 유럽에서는 최근 어린이 성적 학대와 관련된 두 개의 큰 조직이 적발돼 “어른들이 각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으며

- 이 두 개의 조직은 벨기에에서 적발된 음란비디오 유통조직과 네덜란드에서 경찰에 잡힌 인터넷 음란물조직.

- 벨기에 조직은 3백4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판매하다 적발됐고

- 인터넷조직은 심지어 한 살짜리 아기를 묶어놓고 강간하는 끔찍한 장면을 담은 인터넷사이트까지 제공.

ILO, 동남아 어린이 인신매매 급증

- 동남아에서 매춘과 앵벌이, 강제노역, 포르노 영화촬영을 노리는 어린이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국제노동기구(ILO)

가 '98년 7월 22일 공개.

- ILO는 22일 방콕에서 3일 일정으로 열린 어린이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
 - 이 보고서는 인신매매된 어린이의 대부분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지에서 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지난 '90년 이래 매춘을 위해 태국으로 유입된 어린이와 부녀자가 8만명에 달하고 있고 베트남 소녀 3,000여명이 매춘을 위해 캄보디아로 팔려갔으며 이중 15% 이상이 15세 미만이며
 - 태국내 외국인 매춘부중 30% 가량은 18세 미만이고 에이즈나 성병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오지의 소녀들이 매춘조직의 목표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
- 한편 스리랑카 의원들은 7월말 콜롬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측에 공동 어린이 보호단체 설립을 촉구.

미, 10대 소녀 성병 만연

- 미국의 10대 소녀 3명중 한 명 꼴로 성행위에 의해 옮겨지는 흔한 성병의 하나인 트라코마 클라미디아(CT)에 감염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
-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의과대학의 소아과

전문의 게일 버스테인 박사는 미국의학협회(AMA)회보에 '98년 8월 14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볼티모어지역에 거주하는 12~19세의 10대 소녀 3천2백2명을 대상으로 33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29%가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CT에 감염돼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고.

미, 홈런황제 맥과이어 학대아동 보호에 앞장

- 메이저리그 마크 맥과이어 선수가 '98년 9월 7일 시즌 최다홈런 타이 기록을 세우고 아들을 번쩍 안아올리는 순간 미국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축하하면서 대기록과 함께 어린이에 대한 그의 사랑에 격려를 표시.
- '87년 시즌 마지막 날 50개 홈런기록에 단 하나를 남겨 놓고 있던 맥과이어는 아들 매튜(10)의 출생이 더 중요하다며 게임출장을 포기.
 - 하지만 1년후 맥과이어는 어린 매튜의 가슴에 이혼이라는 아픈 상처를 남기고 말았으며
 - 그는 “죄책감을 사랑으로 보상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아들을 위해 홈런을 친다고 언급.
 - 그리고 아들 사랑은 모든 어린이에 대한 사랑으로 영글어 갔다고.

〈영어로 보는 담배세계〉

- 사춘기는 흔히 만11세 쯤에서 만 18세 쯤에 일어나는 심리적·신체적 변화를 말하고 이 두가지 변화를 모두 말하는 「사춘기」는 「adolescence」이며 사춘기의 신체변화만 말할 때는 「puberty」이다.
- 미국의 중학교에서 사춘기 학생들에게 성교육(Sex Education)을 목적으로 읽기를 권장하는 책 중 하나가 「Growing Up」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 이 책의 목차를 보면 puberty female and male sex organs (여성·남성의 성기), periods(여성의 월경) 등이 나열되어 있다.
- 아울러 aphrodisiac(최음제), birth control(피임·contraception 또는 family planning 이라 하기도 한다), B.O.(body odor, 잘 씻지 않아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말하는데 약자로 많이 쓴다), brothel(매춘의 집), celibacy(금욕, 육체적 순결), erogenous zones(성적으로 민감한 신체의 부분들), French letter(콘돔의 속어 표현), French kissing(혀를 이용한 깊은 키스), impotence(남성의 성적 무능력, 발기불능), libido(성적 에너지, 힘), missionary position(성관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남자 상위의 자세), necking (touch와 kiss를 동반하는 애무), nymphomaniac(성을 보통 이상으로 원하는 여성), perversion(변태, 도착), premature ejaculation(조기사정), rape(강간), wet dreams(몽정)등도 설명하고 있다.

- 지난 해 9월 소속팀과 4년간 3천9백50만 달러(약 5백30억원)에 계약한 그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매년 1백만달러씩 내놓겠다고 약속.
 - 학대아동 보호운동을 벌인 베이브 루스처럼 그도 「맥과이어 어린이재단」을 설립하고 어린이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 경기가 없는 날이면 어린이 시설을 방문해 불우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 최근 데이트중인 애인도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여성.
- 어느 곳에서든 게임 전 3시간 동안은 아동학대에 관한 편지를 쓰고 있고 아동학

대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에도 출연.

런던, 「아시아 아동매춘 근절」국제회의

-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이 지역 아동매춘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사회단체들이 이의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과 아시아 국가 전문가들은 '98년 10월 6일 런던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 아동매춘 불법거래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으며 EU와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원인 제공자인 유럽의 유아 성도착자들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아시아 경찰에 통보하는 등 어린이 매춘관광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간 상호 공조체제 수립을 다짐하였고
 - 데릭패킷 영국 외무차관은 “아동매춘을 단속하지 못한 아시아 국가를 비난하기 전에 그 같은 수요를 만들어 낸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

일, 부모폭력으로 1년 9개월새 어린이 57명 숨져

- 일본에서 부모의 폭력 등 「가정내 학대」로 지난 해부터 '98년 9월까지 57명의 영유아와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밝혀져 사

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고.

-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버지(계부 포함)에 의한 살인이 32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2세밖에 안된 아기를 6시간동안 맥주병으로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거나 한겨울에 옷을 모두 벗기고 밤새 방치해 얼어 죽게 하는 등 끔찍한 사례도 많았다 하며
- 이들의 자녀 살해 이유는 “우는 것이 시끄럽다,” “장난감을 잘 정리하지 않는다”는 등 사소한 것이었다고.

일, 아동학대 7년전보다 5배 늘어

- 지난 해 일본에서의 아동학대 건수가 7년 전에 비해 5배로 증가했다고 일본 후생성이 '98년 10월 26일 발표.
- 전국 1백74개 어린이 복지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는 '90년 1천1백1건이던 것이 지난 해에는 5천3백52건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사회 분위기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권장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며
- 유형별로는 폭력이 전체의 절반 정도였고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방치한 것이 3분의 1을 차지.

XI. 성희롱 · 매춘 · 성폭행

미, 성폭행범 운전면허증에 「Y」표시

- 미 델라웨어주는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운전면허증에 특별한 표시를 하도록 하는 새 법률을 '98년 4월 22일 도입했다고.
- 이에 따라 성폭행 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석방될 때 신분증 겸용 운전면허증에 「Y」표시를 받아야 한다고.

미, 「성희롱 보험」 인기

- 미국기업들이 늘어나는 직장내 성희롱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성희롱 보험이 인기.
 - 제약회사 아스트라사는 최근 여직원들이 제기한 성희롱 배상소송을 해결하는데 배상액과 소송비 등을 합해 사상 최대규모인 1,000만달러를 소비하였고
 - 이는 이 회사 간부들이 수년동안 직장내 여성들에게 섹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 불리한 부서배치 등 보복을 했기 때문이며
 - 성희롱을 당한 직장여성들의 제보로 균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측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희롱배상보험에 가입.

○ EEOC에 따르면

- 성희롱을 거부함으로써 해고나 해고위협, 불리한 부서배치, 승진제한 등의 피해를 입어 제기한 소송건수는 '91년 6,883건에서 지난 해 1만5,889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 기업들의 배상액도 7년전 700만달러에서 지난 해에는 5,000만달러로 7배이상 증가.

- 이처럼 성희롱소송이 갈수록 늘어나자 보험사들은 「성희롱 특수」를 누리고 있으며
- 미국내 기업들가운데 연간 성희롱 소송비로 50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은 다반사
- 뉴욕의 스틸링보험사는 빌클린턴 미대통령의 폴라 존스양에 대한 섹스 스캔들이 터진 후 1주일만에 4건을 계약.

미, 「호경기때 돈 챙기자」고 정부들 소송 러시

- 미국 뉴욕에 있는 페인웨이버 금융회사의 러시아 투자자문역 오르한 사디크 칸 이사(68)는 요즘 골치 아픈 일로 고민중이며 이는 '98년 4월 하순 러시아출신의 정부(情婦) 바나세비치(28)가 3백5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기 때문.
- 최근 이같은 소송이 늘어 돈 많은 주식브로커의 성적인 노리개 노릇을 하던 여성들이 호황을 맞아 제몫을 요구하는 일이

찾아지자 이는 번 돈을 나눠 갖자는 「권리찾기」식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

- 뉴욕의 한 이혼 전문변호사는 “미국의 경기는 앨런 그린스펜 연방준비제도가 사회 의장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내 사무실을 찾는 여인의 숫자만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 이같은 산업을 「지표(인덱스)산업」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는 전체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붙은 명칭이라고 설명.

- 여성의 소송량으로 경기를 읽는 뉴욕 월가의 현실은 돈이 들 때 「성(性)산업」도 흥청거림을 보여주는 「사회지표」라 할 수 있다고.

미, 50대 남성 청소기에 성기 잘려

- 미국 뉴저지주의 한 남자(51)가 '98년 5월 19일 술에 취한 채 휴대용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을 이용, 자위행위를 하려다 청소기 내부 회전날개에 성기를 잘리는 불운을 당했다고.
- 이 남자는 사고가 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집에 강도가 침입, 성기를 잘렸다고 신고.
 - 경찰은 즉각 상황을 파악, 병원으로 옮겨 접합수술을 받게 했지만 1.2cm가량 잘린 부분을 다시 붙이는 데는 실패.
 - 이 남자가 사용한 진공청소기는 흡입호

스를 연결하는 본체 바로 아래에 회전날개가 고속으로 돌아가는 구형 싱어 A-6 휴대용 모델.

일, 여성 2,600여명 신상명세 수집광 덜미

- 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면 무조건 뒤쫓아가 이름과 주소를 파악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여성 2천6백여명의 신상명세를 개인용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혼자 「음미해 온」 일본의 51세 남자가 '98년 5월 21일 경찰에 체포됐다고.
- 수사관들은 최근 한 철도역에서 23세 여성을 아파트까지 따라 들어가다가 체포된 이 남자의 방에서 여성 수백명의 사진 등 관련자료를 압수했는데 그는 취향에 따라 여성들의 순위를 매기기도 했다고.

이란, 데이트여성 40명 체포

- 이란경찰은 '98년 5월 18일 테헤란 번화가에서 「사회악페」단속을 실시해 젊은 남자와 데이트를 하거나 전통 회교복장을 하지 않은 여성 40여명을 체포.
- 남녀 한조로 편성된 경찰관들은 이날 시내 번화가에서 검문을 벌여 동행한 남성이 친척으로 확인되지 않은 여성들과 회교 전통복장인 차도르로 발 끝에서 머리 끝까지 온몸을 가리지 않은 여성들을 모두 연행했다는 것.

- '79년 발효된 회교 혁명법에 따라 이날 체포된 여성들은 위반의 정도가 심할 경우 곤장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네덜란드, 농민회 여자 유혹하는 법 강습

- 네덜란드 북동부에 위치한 드렌테주 청년 농민회는 장가를 못가는 농촌 총각들을 위해 「여자를 유혹하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 청년농민회는 힘든 농촌일 때문에 배필을 만날 기회가 적은 농촌 총각들을 위해 저녁시간을 이용해 여자와 눈맞추는 법과 말을 거는법, 데이트 신청 등에 대한 실전적인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다고 소개.

대만, 매춘권리 요구 세계대회

- 대만 여성운동가 수백명과 미국 등 13개국에서 온 수십명이 타이베이(臺北)에서 '98년 5월 26일 3일간의'98 섹스산업종사자 세계행동포럼」회의를 마치고 “직업 여성의 투쟁은 인권을 위한 국제적 투쟁의 일환”이라는 폐막성명을 발표.
- 참가자들은 “섹스산업 종사자를 처벌하지 말 것과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면서 지난 해 섹스산업에 철퇴를 가한 천 쉼비안(陳水扁) 타이베이 시장에 항의하기 위해 가두 시위를 벌였으며 시청진입이 어렵게 되자 총통부 청사로 갔다고.

중, 매춘여성 1,000만명

- 중국사회에 개방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돈을 좇는 매춘여성들이 중국 전역을 누비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춘여성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등 매춘을 합법화하는 움직임마저 있다고.
 - 중국당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매춘 여성은 약 1,000만명
 - 최근 몇년동안 경제발전이 빠른 연안 지방을 중심으로 「싼베이 샤오제」(三 倍 小姐:노래부르거나 춤추고 술마시는 아가씨)수가 크게 늘어 쓰촨(四川)성에만 100만명에 이르고
 - 매춘부의 활동범위와 호객방법, 가격도 다양해져 열차역이나 국도변의 이발소 등은 100위안(1만7,000원), 헤이룽장(黑龍江)성 도로변 주점 등에서는 10~20위안(1,700원)에 유혹하기도 하며
 - 최근엔 도시의 여공이나 농촌의 잉여인력마저 뛰어들고 있는 실정.
 - 매춘의 성행으로 성병환자 또한 크게 늘어 매년 400만명이 감염되고 있고 지난 해 말까지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무려 25만명.
- 매춘여성의 세금징수는 매춘의 합법화 문제와 맞물려 있고
 - 푸젠(福建)성 세무서는 '97년 5월부터

- 매달 1인당 100위안씩 개인 소득세 명목으로 「샤오제세(小姐)」를 부과하고
- 선양(瀋陽)시는 유흥업소 종사자 10만명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세금을 징수.

일, 33%가 「매맞는 아내」

- 일본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액은 연간 3천2백만원(3백4만엔)이나 뭍에도 불구하고 일본 남편은 아내 고마운 줄 모르고 3명 중 한 명꼴로 아내를 때린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 일본 경제기획청에 따르면
 - 일본 전업주부의 연간 가사노동의 평가액은 ①취사가 1백만엔, ②세탁 43만엔, ③육아 41만엔, ④장보기 38만엔 ⑤청소 26만엔 등으로 집계됐고
 - 직장을 가진 주부의 가사노동은 평가액은 1백99만엔으로 전업주부보다 1백5만엔 적은 상태.
- 한편 도쿄(東京)도가 성인 남녀 4천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내의 33%가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
 - 폭행 내용은 ①때밀리거나 꼬집힌 경우 20.7%, ②손으로 맞은 경우 17.6%, ③심하게 목을 졸린 경우 2.2%, ④흉기로 위협받은 경우 1.1%(복수응답) 등이었고 남편의 폭력으로 얼굴이 찢어지거나

골절상을 입은 여성도 적지 않았으며
- 남편의 폭행 이유는 말다툼, 가사문제 등 대체로 사소한 것들.

- 남편의 연령, 학력, 수입 등 사회적 배경과 아내 구타 사이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어 「저학력자가 아내를 많이 때린다」는 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며
- 한편 일본 남성의 하루평균 가사노동시간은 30분으로 여성(3시간50분)의 8분의 1에 불과해 남편들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지 않는 편이었다고.

필리핀, 포르노 잡지로 성경책 제작

- 필리핀의 한 공항에서 압수된 포르노 잡지들이 성경책 등을 만드는 데 재활용될 것이라고 관세청장이 '98년 5월 26일 발표.
- 파라이노 청장은 압수된 약 3천권의 포르노 잡지들이 파쇄돼 필리핀 성경협회에 넘겨졌으며, 이 파지들은 성경과 다른 종교서적으로 만드는 데 재활용될 것이라고 설명.

스위스, 컴퓨터 종사자에 성범죄 많아

- 성 범죄자 가운데 컴퓨터 전문가가 다른 직업군보다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
- 스위스 바젤의 심리학 대학병원의 폴커 디트만 교수는 '98년 5월 31일 지난 수년간 비정상적이고 가혹한 성 범죄자 수백

명을 조사한 결과 스위스의 성 범죄자 가운데 30~50%가 컴퓨터 산업에 종사하거나 여가시간 대부분을 컴퓨터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으며

- 취리히의 공판 검사 안드레아스 부루너도 많은 성범죄자가 전산학을 배운 적이 있었다고 지적.
- 디트만 교수는 “성범죄자들은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하고
 - 그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익명성을 즐기게 된다는 것이며
 - 성범죄와 컴퓨터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또 하나의 이유로 왜곡된 성심리를 가진 사람이 인터넷과 멀티 미디어

를 통해 불법 사진 등을 접촉할 수 있는 점을 거론.

- 그는 또 “컴퓨터 산업에 종사하는 성범죄자는 대단히 지능이 뛰어나 경찰이 추적하기 어렵다”며 “이들 범죄자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더욱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

미, 비아그라로 사창가 성업

-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유곽의 업주들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나온 이후 매출이 20% 정도 증가했다고 희색이 만면.
- 유곽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놀라운 작은 알약이 최고의 사건을 연출했다”고

< 성추행 후유증 최소 6개월 >

- 직장여성이 겪는 성추행 스트레스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예일대 의대 정신과 앨런 폰타나 교수팀은 베트남전쟁 및 걸프전에 참전 후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에 걸려 치료를 받은 3백27명의 여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 정신과학회지인 사이키애트릭서비스 '98년 5월호에 따르면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동료의 죽음을 지켜보는 공포를 경험한 것보다 성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입원한 여군이 4배나 많았다는 것이다.
 - 성추행의 정도는 강간이나 강간에 준하는 행위가 43%였고 기타 신체적 접촉이나 심한 음담패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이란 극심한 스트레스상황을 경험한후 발생하며 흔히 악몽·사람회피·공포심·불안·대인관계 불능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정신과 질환이다.
 - 짧게는 6~12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이같은 증상이 지속되기도 하며
 - 폰타나 박사는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은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이 추행당할만한 일을 했던 것은 아닌가’ 등 주변의 편견으로 인해 심한 배신감·환멸을 느껴 증상이 더 악화될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주변의 따뜻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영어로 보는 성(SEX)〉

The confident defense attorney approached the witness stand. "My client is only five feet tall and you are five feet, eleven-and yet you claim that he raped you standing up," rasped the lawyer. "Could you explain to the court how this was possible?"

The woman blushed and squirmed in her chair.

"I gress I might have stooped a little," she admitted.

화 간?

- 변호사는 자신만만해서 증인석으로 다가갔다.
 - "내가 변호해 드리고 있는 분은 키가 5피트밖에 안되는데 당신의 키는 5피트 하고도 11인치나 됩니다.
 - 그런데도 당신은 그가 서있는 상태에서 당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실까요?" 하고 변호사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따졌다.
- 여자는 흥당무가 되면서 의자에서 몸을 꿈틀거렸다.
- "제가 몸을 좀 굽혔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라고 그녀는 실토했다.

「혼전섹스」엔 너그러우면서도
○ 「애국」보다는 「자기성취」를 중요시하고

미, 혼전섹스「OK」· 혼외정사「NO」

기사를 읽었다고 답변.
- 베이징 시내 직업여성 45명을 대상으로
- 더구나 증인도 없고 불응문제
- 사생활이 어렵다고 베이징의 한 의원
- 공작 여직원은 불평.

- 더구나 증인도 없고 불응문제
- 사생활이 어렵다고 베이징의 한 의원
- 공작 여직원은 불평.
- 더구나 증인도 없고 불응문제
- 사생활이 어렵다고 베이징의 한 의원
- 공작 여직원은 불평.

○ 중국여성들은 직장 성희롱으로부터 자신
- 베이징(北京)소재 지원학대학 교수이기
- 한 좌부주임은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 섹스문제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점
- 를 지적하고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타인
- 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지적.

○ 부주민 권 재이권의 판을 인용, 보도.
- 신화(新華)통신은 이와 관련 “음란연해
- 으로 여성을 공격하거나 권위와 권력을
- 이용하여 여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 사생활 인종외의 범죄”라고 광시장주(廣
- 西壯族)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것이라고 했으며
- 전국 인민대표대회(衆人大) 상무위원회
- 의 한 의원은 중국에 성희롱에 대한 처
- 별전제가 없으므로 불구하고 성희롱 공
- 제가 인법기관의 산의 의제로 선정된
- 것이라 했으며

○ 중국은 섹스문제를 무대화하지 않는다는
- 오랜 끈기를 깨고 사상 처음으로 성희롱
- 처벌 입법화를 검토중.

중, 성희롱 처벌 입법화 모색

응객들을 보호.
- 일부 도선에 아예 개인물품 만들어 다른
- 상황이 이쯤 되자 버진 애들한테 항공은
- 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

- 모든 승객이 착석해야만 출발할 수 있
- 다는 비행원칙 때문에 이들이 나올 때
- 앙았기 때문이며
- 죽어도 불구하고 화장실에서 나오지
- 한 좌석이 오를 커튼이 승무원들의 재
- 료를 무용에서 밖이 붙었던 것.

- 지단 해 호를 불부를 경유해 포스엔체레
- 스포 가던 텔타항공의 한 항공기는 호
- 하며

○ 문제는 기내 음란행위가 단지 소동에 그치
- 지 않고 기장과 승무원의 신경을 거슬러
- 안전 공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 특히 배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커튼을
- 때문에 항공기 출발시간이 지연되기도

자 큰 조련을 위해서는 사장이 가장 높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 우제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으로 사영
 돈 것으로 평가.
 사업은 전개하여 나폴레옹, 셉공, 거
 스 등에 60여개의 가게를 두고 맨틀의
 체는 독일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스웨
 - 같은 이들의 70대 여성이 설립한 이
 사가 그 주인.
 등을 운영해 온 「비아테 우제」라는 회
 - 섹스 비디오 춤과 섹스 춤, 섹스 박물관
 라고 있어 화제.

○ 독일의 한 섹스 업체가 기업공개를 준비

독일, 섹스업체 상장추진

하지 않다"며 소수름 기각.
 고의 주장처럼 사치를 일회 정도로 따파
 를 늘 두 개로 연어 맞는 것 같았다"는 원
 펜서의 가슴이 아무런 크더라도, 시멘트
 드워드 카치 전 뉴욕시장(72)은 "스트립
 ○ 미국 TV시리즈물 「시민법정」의 편사 에
 수 없다"는 이유로 '98년 7월 18일 기각.
 음을 썼으나 "부드러운 가슴은 윙기가 될
 국인 남자가 TV법정에 순해배사청구소
 가슴에 맞아 부상했다고 주장하는 한 미
 ○ 토를리스 바에서 스트립댄서의 「조대형

나다고

미, 「스트립댄서의 큰 가슴은 윙기가 아

있다고.
 이 큰 세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클중하고 단 뒤의 해외 정사에 대해선 나
 산대적으로 관대한 젊은 세대들이 일단
 정사에 대한 태도로써 해외 섹스에 대해
 ○ 또 하나 대조적인 것으로는 해외 · 해외
 단한 상관관계가 성립
 젊은이들의 자기성취와 돈 사이에는 상
 • 20대 에서는 48%나 되는 것을 보면 미국
 지 않았으나
 한 비율이 65세 이상에서 23%에 지나
 아니겠지만 돈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
 • 자기성취가 꼭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은
 대로 내려놓을수록 더욱 확고.
 • 반면 자기성취를 중시하는 가치관은 20
 는 음 젊은 을 얻을 수 늘 낮아져가고 있고
 서 67%, 18~29세에서 55%로 나타나
 85%, 50~64세에서 75%, 30~49세에
 다고 대답한 비율은 65세 이상에서
 • 자신의 가치관에 「애국」이 매우 중요하
 대적으로 떨어져 간다는 것.
 - 가장 돈에 띄는 변화는 「애국심」이 상
 게 변해가는지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며
 - 미국인들의 가치관이 나이에 따라 어떻
 게 변하는지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 '98년 6월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이 합
 미국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고.
 의 정사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쪽으로

시대가 열릴 것이다

- 21세기에는 사이버섹스가 유행해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현실 속에서 원하는 파트너를 마음대로 만나 섹스를 즐기는 양의 전자동식 기구까지 나오기도 했다.
- 20세기에는 전자조로 움직이는 자동차 버이브레이터 인공페니스가 나와 인기를 끌었고 한편 더 나아가 뛰뛰리 또
- 19세기에는 전통식 페니스가 발명돼 그 속에 따뜻한 물을 넣어 행위시 물까지 불을 수 있는 화려한 제품이 나왔다.
- 18세기에는 가죽에서 탄성고무로 개량됐다.

○ 과학의 발달에 따라 섹스보조기구도 발전해 왔다.

- 비벌의 발명품에서 중요한 여성인공페니스를 손에 쥐고 있었다.
나와 있으며

- 인도의 성(性) 「카마스트라」에는 여성의 쾌락을 높이는 성기구로 하나나 큰축으로 만든 인공페니스가 있다고

○ 섹스보조기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특이점이 많다.

하며 한편 때문에 공간에서 여성의 성감을 높여 주었다고 한다.

- 19세기에는 사람들이나 미인이나 단자를 성기에 착용하거나 조자를 박기도 했으며 이것을 「비브레이터」라고
- 19세기에는 이것을 「인공페니스」라고 부른 한 부속이 사용된 「공통그라」이며 공통그라는 성양의 손으로 만들어 출아

음은 더욱 자극시키기도 했다.

- 또한 케스케르에 작은 조개껍질 전식용 턱이 성행위를 할 때 음부에 부딪쳐 발음처럼 소리가 나게 만들어 성적 관

다는 것이다.

- 가느다란 끈에 말의 꼬리털을 여겨져서 성기 음근 단색 성기에 감아 성행위에 이용함으로써 여성에게 쾌감을 주었
- 남미 파라과이의 인디언들이 즐겨 사용한 「게스케르」라는 섹스보조기구는 단색들이 사용했다.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 또 식물인 토란 줄기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토란 속에는 「호모겐화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질종의 최음제

있다.

- 동양에서는 여성들이 무소의 뿔이나 소귀축으로 성기 모양을 본뜬 기구를 만들어 따뜻하게 데워 이용했다는 설이

○ 섹스보조기구의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오래 됐다.

섹스보조기구의 도움으로 성생활을 채운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 성체질의 의무를 막론하고 여성의 절반 이상이 남성으로부터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해 자위행위를 하거나

< 여성 절반이 섹스보조기구 사용 >

< 스 와 핑 >

- 스와핑이란 교환한다는 뜻으로 중고품을 물물교환할 때 쓰던 말이고 부부교환이라는 성타락 용어로 둔갑해 쓰이기 시작한 것은 '60년대로서 미국에서의 스와핑은 광고 스와핑, 파티 스와핑, 회원 스와핑으로 발전했다.
 - 뉴욕의「스크류」,로스앤젤레스의「프리 프레스」, 샌프란시스코의「버클리바브」 같은 지하신문에 부부간의 체격, 용모 나이, 머리색깔, 취미, 학벌 등을 광고하여 스와핑 짝을 구하는 것이 광고 스와핑이고 노름방 빌리듯이 생활보호자인 흑인 집을 빌려 날을 정해 모여 즐기는 것이 스와핑 파티이다.
 - 파티에는 입장 의식을 치러야 하며 “21세 이상인가” “질병을 갖지 않았는가”, “이곳에서 있었던 일의 망각을 신에게 맹세하는가” 등의 서약을 하고 중세 포르노 벽화가 걸린 음산한 방에서 논다.
- 당시 스와핑 알선 조직들은 「성해방 동맹」등 이름도 전위적이었고
 - 회비는 독신 남성이 40달러, 독신 여성은 무료, 부부 35달러, 연회비 1백달러이며
 - 이밖에도 스와핑 바가 있어 이곳에서 성명 부지의 부부가 만나 짝을 바꾸어 태우고 나가기도 한다.
- 로마시대의 박물학자 프리니우스는 주변에 난교가 정상인 민족들이 적지 않다 했고 자매끼리 맞바꾸고 형제가 공동처를 바꾸어 가며 사는 교환혼은 근대까지 남아 있었다.

울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 이 회사는 상장 요건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게 그녀의 설명.
 - 종업원 수는 약 6백여명이고 지난해 매출도 7천1백만달러(약 9백20억원)에 달하며
 - 더구나 섹스 관련 멀티미디어 사업(CD롬 타이틀 제작등)에도 진출할 예정이어서 사업전망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 2차대전후 산아제한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해 점차 섹스 관련 사업으로 돌아선 이 업체가 도약의 계기를

맞은 것은 독일 통일로서 통일후 억제됐던 욕구가 분출됐던 동독 시장을 파고 들면서 성장의 발판을 다졌다고.

인도네시아, 폭동때 여성 20명 강간사망

- 인도네시아 부녀자 20명이 지난 '98년 5월 폭동 당시 강간당한 직후 목숨을 잃었으며 이밖에도 강간피해자는 1백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 「박애를 위한 자원 운동가들」에 의하면 부녀자 20명이 불량배들에게 강간당한 직후 불에 태워지거나 심한 상처의 후유증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확고한

증거가 있다고 했으며

-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산디아완 수마르디 신부는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서는 여성 1백52명 가량이 강간을 당하거나 성적으로 학대받았으며 솔로·메단·팔렘방·수라바야에서도 16명이 강간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급.
- 강간-성폭력 사례에는 별거벗은 채 춤과 체조를 시키는 모욕 행위에서부터 윤간한 뒤 불타는 건물 속으로 던져 살해하는 잔혹한 만행이 포함돼 있으며
- 일부 여성들은 중국계 상업지역인 「글로독」가(街)에서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집단윤간.
- 아울러 “수백여명의 여성이 병원에서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았으며 보복을 두려워해 강간사실을 민간단체에조차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
-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폭동 당시 피해자들이 주로 화교계였음을 상기시키고 이날 알려진 강간피해자들에 대해 우려와 동정을 표명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아 달라고 당부.

프랑스, 직장여성 「성폭력피해」가장 심해

- 전 세계에서 직장내 폭력이 가장 심각한 국가는 프랑스,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순

인 사실이 국제노동기구(ILO)가 '98년 7월 20일 1백65쪽 분량의 「직장폭력보고서」를 통해 공개.

- 이 보고서는 '96년 ILO가 3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와 같은 해에 유럽연합(EU)보고서, 국제범죄조사(ICS)의 최근 통계치 등을 근거로 작성됐으며 지금까지 나온 직장폭력실태 보고서로는 가장 방대한 규모.
-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폭력은 산재(産災), 강도에 의한 상해, 성폭행, 해고위협, 스트레스 등이고
- 또 직장폭력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직종은 택시기사, 보건 및 의료직 종사자, 교사, 사회사업분야 종사자, 해외취업가사노동자, 심야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라고.
- 보고서 공동작성자인 던컨 채펠, 비토리오 디 마르티노는 “최근들어 경기불황으로 인해 직장내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
- 국가별로는 프랑스 직장인 가운데 업무 중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남성은 11.2%, 여성은 8.9%였으며 여성 직장인 중 성폭력 피해자가 2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2위인 아르헨티나는 남성 직장인의 6%, 여성의 12%가 폭력 피해경험이 있으며

여성중 16.6%가 성폭력을 경험.

- 이밖에 직장폭력 발생빈도가 높은 국가는 루마니아, 캐나다, 영국, 미국 순이고
- 특히 미국에서는 매주 업무중 각종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20명, 부상자는 1만 8천여명에 이르며
-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자살자의 10~15%가 직장에서의 집단 따돌림에서 비롯되며 영국 직장인 53%도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공개.
-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92년 한 해에 직장폭력으로 4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독일의 한 직장은 직원 1천여명의 정신적폭력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1년에 11만2천달러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

뉴욕, 여성경관 직장성희롱 손해소송

- 미국 뉴욕시의 일부 경찰관이 관내 여성과의 매춘스캔들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여자경찰관이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98년 7월 22일 시경을 상대로 2억달러(약 2천6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 미셸 자먼 브라운 경사는 "상관이 짧은 스커트 차림으로 모임에 나와 달라고 했으며 동료들은 컴퓨터에 여성의 성행위 장면을

찍워 놓거나 도색잡지 「허슬러」를 책상속에 넣어두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

인도, 강간범 사형언도 제안

- 영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인도에서 강간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랄크리슈나 아드바니 인도 내무장관이 강간범에 대해 사형을 언도할 것을 '98년 7월 28일 제안.
- 아드바니 장관은 범죄증가 문제에 관한 의회의 토론에서 현행법상 최고형인 중노동 10년형으로 강간범죄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이같이 주장.

인도네시아, 화교들 정조대 인기

-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중국계 기업인인 사이먼 산자야가 개발한 정조대가 화교들 사이에 인기
 - 이 정조대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리는 자물쇠와 인조가죽, 스테인레스 강철로 만들어졌고
 - 가격은 10만 루피아(미화 7달러50센트)로 지금까지 5백개 이상 판매.
- 화교들이 정조대를 찾는 이유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시위사태 당시 상당수의 중국계 여성들이 일부 인도네시아인 시위대들에 의해 강간을 당했기 때문.
 - 당시 인도네시아의 시위대들은 상권을

장악한 화교들이 외화를 빼돌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 보복으로 168명의 중국계 여성을 강간 또는 강간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 이 사건 이후 중국계 남성들은 집을 비울 때나 시위사태에 대비해 정조대를 준비한다는 것.

쿠바, 택시운전사·매춘부의 「송금달러」로 지탱

- '59년 공산화 이후 '62년부터 미국으로부터 40년 가까이 경제제재를 당하면서도 미국의 개방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인 공산쿠바도 「목구멍이 포도청」일 수밖에 없는 모양.
- 7월26일은 쿠바가 자국을 테러국가로 지정한 적대국 미국의 달러화를 쿠바 페소와 함께 공식통용화폐로 지정한지 5년이 되는 날이며 그 이전에는 달러를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 공식통용화폐 지정이란 단순히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고 달러로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와 물건이 지정되어 있고 달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식용유, 우유, 대부분의 고기, 샴푸, 치약, 가죽끈 등 외제 생활필수품.
- 쿠바 자체에서 생산된 품목도 살 수는 있지만 거의 구할 수 없거나 조악해서

쓸 수 없는 실정.

- 쿠바의 월 평균 임금은 불과 10.5달러이나 관광호텔에서 벨보이가 한번에 받는 팁이 3~5달러이고 관광객을 상대로 달러를 직접 벌어들이는 「달러 귀족」들이 등장.
-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해 오는 사람들은 물론 택시운전사, 매춘부, 불법 민박업자 등이 사실상 쿠바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ILO, 동남아 매춘산업 번창일로라고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매춘산업은 이들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2~14%를 점하고 있다고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가 '98년 8월 7일 발표.
-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경우 20만~30만 명에 달하는 도회지 매춘여성들이 가정에 송금하는 돈은 연간 약 3억달러로 정부예산에 따른 지역개발비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미, 병영내 포르노물 판매금지

미국 국방부는 '98년 9월 25일 「군인의 명예와 품위에 관한 법」에 따라 펜트하우스, 허슬러 등 1백 50여 종류의 성인용 잡지와 비디오테이프 1종 등 일부 「노골적인」포르노물의 병영내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미, 14살 제자와 두번 째 아이 출산

사 케이 르투어노가 '98년 9월 17일 두번 째 아이를 낳았으며 아이 아빠는 역시 그 제자라고.

- '98년 5월 14세 제자의 아이를 낳은 뒤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복역중인 전직 여교

< 이란의 합법적 매춘 >

- 회교 율법이 국가의 통치이념인 이란에서 공창(公娼)을 두고 있거나 법적으로 매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합법」적인 매춘사업이 번창하고 있다.
 - 회교 율법에서 매춘은 죄악으로 매춘부들은 채찍을 맞거나 돌에 맞아 죽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 지난 '78년 회교혁명 직후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명을 받은 혁명수비대들은 테헤란 시내의 홍등가(紅燈街)를 깨끗하게 「청소」하였다.
- 그러나 회교 율법학자들은 인류사회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라는 매춘을 사실상 합법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냈으며 이는 「욕망의 법(Law of Desire)」을 근거로 「향락을 위한 혼인(marriages of enjoyment)」을 하는 것이다.
 - 정식 혼인이 아니라 향락만을 위한 혼인이기 때문에 남자는 이로 인해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지않고 다만 회교 율법을 관장하는 종교법원에 일정한 양식의 서류를 제출, 형식적인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하며
 - 일반적인 혼인신고와 다른 점은 얼마 동안 상대방에게 쾌락을 제공하겠다는 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의 매춘부들을 찾는 남성들은 「10분」정도의 혼인기간을 정해 합법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성행위를 위한 시간 동안만 형식상의 부부가 되는 것이다.
- 이란에서 향락혼을 빙자한 매춘이 등장한 것은 지난 '80년대 이라크와 8년 전쟁을 치르면서 생긴 많은 전쟁미망인들이 특별한 생계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향락혼(享樂婚)제도의 위선에 대해 특히 아야톨라 호메이니옹은 강력한 비판을 가했었으며
 - 반면 회교 성직자들중에는 이 전통적인 제도에 대한 지지가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이란의 한 저명 회교 율법학자는 “향락혼의 파트너들은 특별히 축복받을 것이니 그들이 목욕할 때 몸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70명의 천사로 바뀌어 심판의 날에 그들을 위해 증언해 줄 것이다”고 매춘부들을 찬양하기까지 했다.
-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회교 성직자들 자신이 향락혼을 즐기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 최근 이란에서는 매춘부 출신의 한 여성이 자신이 접했던 고위인사들과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책을 출간되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 이 여성은 군 정보기관의 장성이었던 남편이 호메이니옹 축출 쿠테타 음모에 연루된 혐의로 처형된 뒤 불과 1천~3천 토만(15~45달러)을 받고 몸을 팔았고
 - “한 명의 아야톨라와 21명의 고위 성직자, 5명의 유명 상인, 수백명의 대학생, 한 명의 병원장이 일시적으로 내 남편이 됐었다”고 고백하였다.

-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르투어노는 '96년 시애틀 지역의 하이라인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던 당시 6학년이던 소년과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남편 및 네 명의 자녀와는 결별한 상태.

미, 도색잡지 발행인 스타검사 스카우트제의

- 도색잡지 「허슬러」의 발행인 래리 플린트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보고서 내용에 감탄한 나머지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98년 9월 25일 제의.
- 플린트는 스타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고서를 유심히 읽어 본 결과 호색적인 관음증에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당신이 보고서에 모아 놓은 자료들은 허슬러 인터넷 사이트에 등장하는 것보다 훨씬 포르노적인 내용”이라고 평가.
- 그는 이어 “우리가 포르노물을 좀 더 넓은 성인층에게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포르노 확산에 신기원을 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극구 찬양.

독, 포르노물 공개로 스타검사 고소

- 독일의 한 언론인은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 성추문보고서 같은 포르노물을 일반에 공개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를 고소하겠

다고 선언.

- 독일 북부도시의 일간지 플렌스부르거 타게블라토의 벤젤 플라일 기자는 '98년 9월 26일 변호사를 통해 스타 검사 고소 의사를 미 연방검사들과 성추문사건 관계자들에게 밝혔으면서 이는 성추문사건에 휘말린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심경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스라엘, 「살갓만 닿아도」성희롱

-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다고 평가될 만한 성희롱처벌법이 이스라엘에서 채택돼 논란.
 - '98년 9월 20일부터 전격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성희롱처벌법은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 최고 4년형에 처하는 것이 골자이고
 - 성폭행이나 승진 등을 미끼로 한 직장 내 성희롱처럼 명백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공적인 장소에서 누구를 꺼안거나 애무하는 행위, 성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 등도 처벌 대상.
 - 심지어 고의가 아니더라도 여성에게 가벼운 신체접촉을 가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트를 함부로 요청하는 것도 고소 대상.
- 지난 3월 이스라엘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여권단체가 초안 마련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등 여성계의 입김이 많이 반영

된 것.

- 여성계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희롱처벌법이 도입됐다”며 환영하는 가운데 이 법 채택을 여성계의 개가라고 평가.
-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규정한 성희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 데이트 요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매우 모호한 경우마저 포함하고 있다고 반발.

없이 웬 남자로부터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다”거나 “당신의 살냄새를 맡고 싶다”는 등의 음란한 전화가 걸려 왔다고 하면서

- 그는 참다못해 전화 발신지를 추적, 남자의 신원을 밝혀내고보니 다리현 농업국에서 일하던 때의 동료.
- 지메이리는 고소장을 통해 음란전화 중단, 공개사과와 함께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조로 모두 1만7천8백위안(2백86만원)의 지급을 청구.

중, 사상최초 성희롱 재판

-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화 성희롱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지게 됐다고.
- '98년 10월 2일 중국의 한 여성사업가가 옛 직장 동료로부터 매일밤 2시간씩 20여일간 음란전화에 시달린 끝에 남편과 별거, 가정이 파탄됐다고 그를 고소.
- 피해여성은 산시성 다리현 소재 한 회사의 경영자인 지메이리(43)
- 그녀는 지난 8월부터 한밤중이면 어김

미, 「저명인사 간통정보」구입

- 포르노 잡지 「허슬러」의 발행인 래리 플린트가 최근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내고 미국의 저명한 정치지도자들의 간통에 관해 「입증할 수 있는」 비밀정보를 제공하면 1백만달러(약14억원)를 주겠다고 제의.
- 30년전 외설 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른 바 있는 플린트는 최근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으로 탄핵 위기에 처한 빌 클

< 창녀도 「외상후 스트레스」 >

- 창녀들 대부분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 보건연구기관이 '98년 8월 18일 발표했다.
- 미국의 보건연구기관인 「카이저 퍼마넌테」가 미국, 남아공, 태국, 터키, 잠비아 등 5개국 창녀 4백75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67%가 우울증, 걱정, 불면증 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조사 대상자중 62%는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고, 73%는 공격을 당했으며 68%는 무기로 위협을 당하 적이라고 밝혀 창녀들이 전쟁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되었다.

린턴 미국대통령을 옹호하면서 클린턴이 자신과 비슷한 「마녀사냥」의 희생자라고 주장.

미, 10代임신 크게 줄어

○ 미국 10대들의 성관계가 줄어들고 피임이

< 왜 매춘부를 찾는가 >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든 인간이 있는 곳에 매춘이 있었다.

- 고대 그리스와 로마, 팔레스타인, 중국에서는 매춘부들에게 한정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독특한 의복을 입을 것을 요구했다.
- 로마시대 초기에는 국가에서 매춘에 대해 면허를 주고 과세했으며 지금도 이런 제도를 갖고있는 나라들이 있다.
- 동양에서는 기원전인 전한시대에 이미 매음이 시작됐다.
- 능력있는 관리나 장군이 되거나 거대한 장원을 가진 경우 혹은 장사로 큰 돈을 번 사람은 많은 여성을 거느릴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남성은 강요된 독신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매춘에 대한 현대의 법률은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

-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매춘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
- 구(舊) 서독에서는 매춘은 합법이되 매춘부에게는 등록과 의무적인 건강진단을 요구했다.
- 네덜란드에는 매춘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으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는 매춘부가 손님을 유인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 미국에서는 관련 법률이 주 혹은 도시마다 다르다.

○ 남성이 매춘부를 찾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 미국의 성의학자 마스터즈와 존슨에 따르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평소에 아내나 애인이 해주지 않는 성행동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라고 한다.
- 또한 남성은 비즈니스 관계로 아내와 애인 곁을 떠나있을 때, 감정적 교류없이 부담없는 성관계를 원할 때, 가족관계를 위협받지 않고 성욕의 발산을 바랄 때 윤락여성을 찾는다.
- 외모나 신체의 결함 때문에 여성의 호감을 살 수 없어 파트너를 구하기 어려운 남성들이 사창기를 찾는 경우도 있다.
- 어떤 문화권에서는 미혼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여성은 물론 남성 자신도 중대한 결과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매춘부를 찾는다.

○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남성이 매춘부를 찾을 때 직접적인 성교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성 행동이었고

○ 최근 키제이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남성들이 성교보다는 오럴 섹스를 더 많이 요구한다.

- 매춘부도 고객과의 성교보다 오럴섹스를 더 좋아한다.
- 오럴 섹스는 옷을 벗지 않아도 되므로 간편하고 피로도 적은데다 꼭 방을 빌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이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남성의 3분의 1가량이 적어도 한차례는 매춘부와 성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 50세 이상 남성 가운데 7%가 50세 이후에 적어도 한번은 매춘부와 성접촉을 했으며
 - 34%는 이때껏 살아오는 동안 적어도 한번은 성행위에 대해 돈을 지불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늘어나면서 지난 '95년 10대들의 임신이 2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낙태율도 '90년대 전반기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 '98년 10월 17일 비영리기관인 「앨런 구트마커 연구소」에 따르면 '95년 15~19세의 임신은 정점에 달했던 '90년의 1천명당 1백17명에 비해 1백1명으로 줄어들어 지난 '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낙태율도 '90~'95년 사이에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칠레, 여점원 옷 야하다고 창문에 검은 칠 명령

- 칠레 수도 산티아고시에서는 최근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웨이트리스들이 레이스 달린 속옷 바람으로 커피를 나르는 광경을 훑쳐보지 못하도록 시내 모든 카페에 대해 「창문에 검은 색을 칠하라」고 '98년 10월19일 지시.
- 몸에 꼭 맞는 짧은 치마에 하이힐을 신은 웨이트리스들이 양복 입은 신사들에게 에스프레소 커피를 대접하는 것은 칠레의 독특한 풍경.
 - 여권 운동가들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째 굳건히 「제 모습(?)」을 지켜왔으며
 - 웨이트리스가 레이스 달린 속옷 바람으

로 차를 나르는 업소가 등장하고 「매춘」까지 적발되면서 비난여론이 고조.

- 하이메라비넷 산티아고 시장은 “이렇다 할 처벌법규가 없어 카페를 폐쇄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궁여지책으로 창문에 검은 페인트칠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

브라질, 경제위기로 남자성기 짧아진다고

- 브라질 남성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스트레스와 실직의 두려움 때문에 지난 1년동안 성기의 길이가 평균 2cm 정도 짧아졌다고 한 비뇨기과 의사가 '98년 10월 21일 주장.
- 로베르토 트롤리라는 이 의사는 “1년 사이에 발기전 평균 길이가 7cm에서 5cm로 줄어든 음경축소 환자가 32%나 증가했다”면서 “스트레스 등은 자존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본능 에너지인 리비도를 떨어뜨리고 성적 무능력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

미, 수년째 뇌사상태 여자가 출산

- 장기간 뇌사상태로 요양원에 수용된 한 여성이 강간당해 '98년 10월 23일 미숙아를 출산.
- 미국 매사추세츠주 로렌스에 위치한 타운 메이노어 요양원에 수용돼 있는 24세 된 이 여성은 수년전부터 뇌사상태에 빠져

장기간 입원중이었는데 지난 19일 의사의
검진도중 임신 5개월임이 발견돼 의사들
의 유도로 여아를 출산.

-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보건당국은 위
독한 상태인 이 미숙아를 치료하는 한편
이 요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
며 범인은 이 요양원의 남성 간호사이거
나 간호보조원일 것으로 추정중.

영, 성적매력 「몸무게 대 키」비율로 측정

- 유명한 영국의 과학저널 「란셋」은 뉴캐슬
대학의 심리학자인 마틴 토비박사와 그의
동료가 쓴 섹시함의 표준에 관한 두편의
보고서를 게재했으며 두 보고서의 골자는
「여성의 성적 매력은 몸무게와 키의 관계
에서 결정된다」는 것.
- 뉴캐슬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신체 체
적지표(body-mass index)라 불리는 성
적 매력의 표준은 몸무게(kg)를 키(m)
의 제곱으로 나눈 몫.
- 연구팀은 ‘플레이보이’를 비롯한 여러
잡지에서 모델의 체형을 조사한 뒤 평
균적인 신체 체적지표 일람표를 작성.
- 그 결과 ①패션모델 17.57, ②누드모델을
비롯한 다른 모델 18.09, ③마른 체격의
여성 14.72 ④뚱뚱한 체격의 여성 23.66
⑤보통 여성 21.86 등으로 나타났다고.
- 과거에 연구자들은 여성의 매력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허리와 엉덩이
의 비율로 보았으며

- 그 배경은 이 비율이 클수록 다산(多
産)을 상징하기 때문으로 다산성과 성
적 매력을 같은 것으로 여겼던것.
- 그러나 뉴캐슬대학 연구팀의 연구결과
는 이 가설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결론.
- 연구팀은 40명의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얼굴은 가리되 체형과 신장별로 분류한
50명의 여성 누드사진을 보고 각기 성적
매력을 점수로 환산하도록 하였고 그 점
수를 도표로 작성해 신체 체적지표와 허
리-엉덩이 비율과 각각 비교한 결과 체적
지표가 허리-엉덩이 비율보다 더 학생들
이 평가하는 성적매력의 정도에 가까웠다
는 것이다.
- 아울러 리버풀대학은 섹시한 배우자를 고
를때 「인체측정학」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
는 여성은 남자의 허리 위, 그것도 손을
주시해야 한다고 추천.
- 대중적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에
게재된 이 논문은 불임남성에 관해 연
구하는 존 매닝박사팀이 쓴 것이며
- 그는 논문에서 정자의 수가 적고 활동
성이 약한 남성은 양손이 대칭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 매닝박사는 또 손의 약지가 집게손가락
보다 긴 사람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

카사노바 사망 200주년 재평가 열기 고조

- 서양의 호색한 또는 사기적 방탕아의 대명사로 불리는 조반니 자코모 카사노바(1725~1798)가 올해 200주기를 맞아 재평가 작업이 한창이다.
 - 카사노바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태어나 현재의 체코 뉘메지방의 독스에서 73세를 일기로 사망했고
 - 당시 베네치아의 유명한 연극배우가 부모였던 총명한 카사노바는 16세에 파두아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능통해 고전들을 줄줄 외울 정도였으며
 - 대단한 독서가이자 바이올린 연주자로도 활동했고 의학과 자연과학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을 소유했다.
 - 그가 일정한 작위 없이도 베네치아 귀족사회의 살롱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천재적 언변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뛰어난 연극적 소질 덕분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 질투하는 사람도 많아 30세되던 해에 정치적 음모에 말려 재판도 없이 구금되었으나 악명높은 베네치아 감옥을 일년반만에 탈출해 파리로 피신하자 카사노바를 하루 아침에 전설적인 존재로 만들었으며
 - 1757년 파리에 도착한 카사노바는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프랑스를 위해 복권제도를 만들고 해당관서의 책임자가 된 뒤 그 자신도 백만장자가 되었고
 - 이때 카사노바를 연금술의 핵심요소인 「지혜의 돌」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오해한 어느 남작부인으로부터 10년 동안 100만프랑 이상을 받아내었으나 결국 그녀의 조카에 의해 사기행각이 발각나 1767년 파리에서 추방되었다.
- 그러나 그의 재력, 지력, 그리고 대화술 앞에 귀족사회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으며
 -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러시아의 카타리나 여제와 만나고 볼테르와 며칠씩 토론을 벌였으며 유럽 곳곳에서 여성들과 열렬히 사랑을 나누기도하였고
 - 모험심과 투기심으로 인해 의심스런 사업에 종종 말려들어 런던에서는 교수대에서 사라질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늘 행운의 여신의 비호를 받으며 위기를 모면하였다.
- 생활원칙은 「감각적 쾌락」이었고 극예에 가깝게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돈을 번 뒤 이를 쾌락에 아낌없이 쏟아부은 했으며 끝없는 여행과 낭비와 쾌락의 생활을 보낸 뒤 1774년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왔을 때 그는 무일푼의 상태,
- 작가로서, 극장장으로, 종교재판의 첩보원으로 활동하다 1782년 어느 후작과의 갈등으로 다시 베네치아에서 추방되었고
 - 60객인 카사노바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없어 1785년 발트슈타인 백작의 제안으로 그의 독스 성에서 도서관리를 맡았으며
 - 이곳에서 임종때까지 13년 동안 저술에 전념하면서 프랑스어로 공상소설과 정치논문 등을 쓰는 틈틈이 회고록을 집필하였다.
- 카사노바의 회고록 완역본이 처음 출간된 것은 1960년이었으며 수많은 여성들을 사랑한 카사노바는 “나는 「다른 성」(즉 여성)을 위해 태어났다고 느낀다”고 회고록에 쓸 정도로 상대방 여성의 쾌락을 중시했고 여성들로부터 유혹당하는 것을 즐겼다는 것이며 이런 자유로운 사랑과 쾌락의 추구는 청교도적 부르주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도덕할지 몰라도 당대엔 꼭 비난받아야 할 패륜도 아니었다는 것이고
 - 오히려 여성의 성적 즐거움을 무시한 부르주아시대와 비교하면 카사노바는 페미니스트에 가깝다는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성호르몬이 많이 생산돼 정력이 세다고 주장.

XII. 폭력화 다양화하는 청소년 범죄

미, 학원폭력 계속 증가

- 지난 '89년부터 '95년까지 6년 사이에 미국 학원내의 범죄단체 회원들은 2배로 증가했고 폭력범죄의 희생자가 된 청소년들은 25%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98년 4월 14일 발표.
- 미 법무부 조사국과 국립교육통계센터가 12~19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 '89년의 경우 조사 대상 중 15.3%가 학

교 내에 범죄단체 회원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96년에는 28.4%가 되었고

- 육체적 가해, 폭력이나 무기를 동원한 강탈 등 학교 내의 폭력범죄 희생자도 '89년에는 3.4%였으나 '95년에는 4.2%로 늘어 전체적으로 약 25% 가량 증가.

- 학원 내의 범죄단체 회원 존재와 폭력 발생은 상관관계를 보여 '95년의 경우 범죄단체 회원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7.5%가 폭력범죄에 희생된 반면에 범죄단체의 회원이 없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2.7%만이 범죄에 노출.
- 마약사용은 경미한 증가를 보여 '89년 63.2%의 학생이 학교 내에서 마리화나, 코카인, 크랙 등 마약이 통용되고 있다고 말했으나 '95년에는 65.3%가 응답했고

< 좋은 가정 폭력범죄자는 뇌생리학적 결함 때문 >

- 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폭력 범죄자가 됐다면 이는 가정교육이 잘못된 탓이라기 보다는 뇌의 생리학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이 나왔다.
 - 미 서던 캘리포니아대학(USC) 심리학과와 아드리안 레인 교수는 「신경정신과학, 신경심리학 및 행동신경학」지 최신호를 통해 '98년 4월 9일 발표한 남녀 살인범 38명의 양전자 방사단층촬영(PET) 연구결과에서 이같이 주장하였으며
 - 레인 교수는 이 PET검사를 통해 이들의 뇌 각 부위의 혈당 흡수치를 측정한 결과 어린 시절 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란 살인범들의 가정에서 학대받았거나 가난하게 자란 다른 살인범들에 비해 뇌내 2개부위의 활동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고
 - 혈당은 뇌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혈당 흡수치는 뇌세포의 활동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 연구대상이 된 이들 살인범 38명중 26명은 좋은 가정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이들은 공격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중간 전두엽 전부(前部) 피질등 뇌내 2개 부위의 활동이 성장환경이 나빴던 다른 살인자들에 비해 약한 것으로 측정됐다는 것이다.

- 또 95년 조사에서는 20명당 1명이 다른 학생들의 총기소지를 보았다고 대답.

프랑스, 「청소년범죄 부모에 책임」

- 자식이 죄를 저지르면 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 프랑스에서 검토되고 있는 청소년범죄 대처방법의 하나.
 - 리오넬 조스팽 총리 지시로 사회당 의원들이 작성, '98년 4월 16일 공개한 청소년범죄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자녀의 비행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거나 묵인한 부모들은 벌금을 내거나 최고 2년형에 처하도록 건의.
 - 그러나 자녀의 비행이 그대로 부모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을 포함, 부모의 감독책임이 명백한데도 이를 막지 못했을 때 죄값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고
 - 보고서는 또 자녀교육에 지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의 책임을 물어 사회보장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
- 가정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지난 수년간 성인범죄율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소년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

- 또 전체 절도의 30%를 청소년범죄가 차지하고 폭력, 마약거래, 패싸움 등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이 끼어들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이며
- 보고서는 가정은 물론 학교와 경찰, 행정기관 등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범죄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 이중 가정은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적용시키는 1차적인 장소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 프랑스 정부는 내달말까지 보고서 내용을 심의, 정부안으로 확정한다는 계획.

미, 네살배기의 권총살인 충격

-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총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98년 4월 26일에는 6세 짜리 남자 어린이가 자신의 생일날 4세 짜리 놀이친구가 쓴 권총에 맞아 숨졌다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 경찰이 발표.
- 주민들은 4세짜리 어린이가 진짜 총인지 모르고 38구경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 끔찍한 사고를 낸 것 같다고 말했고
- 경찰은 권총이 숨진 어린이의 집에 있던 핸드백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성년자의 손에 총이 닿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기 소유자를 처벌(최고 징역 2년)할지 여부를 검토중.

- 이에 앞서 25일 펜실베이니아주 에딘버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권총을 난사해 교사를 숨지게 했으며 지난 달에도 아칸소주 존즈버러에서도 중학생 2명이 소총을 마구 쏘아 교사와 학생 5명이 사망.

- 처음에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 듯해 못마땅해 하던 학생들도 요즘은 향상된 「안전」에 더 고마워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언.

미, 고등학교 무인카메라

- 미국의 각급 학교가 잇단 폭력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완벽한」안전 시스템을 자랑하는 고등학교가 등장.
- 뉴멕시코주 엘부케르크 소재 벨른고교에서는 핵무기 보안방법을 연구하는 한 연방 연구기관의 도움으로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개발해 냈다 하며
- 교직원들은 인근 경찰서와 직접 연결된 무전기를 들고 수시로 순시, 사고 발생 시 경찰이 즉각 출동하고
- 교내 곳곳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16대가 학생들과 「검문」을 거친 방문객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 총기나 마약보관을 막기 위해 사물함도

미, 어린이 총기사고 보호자 입건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아이들이 권총을 갖고 놀다 실수로 발사, 6세 소년이 숨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98년 4월 27일 총기관리 부실책임을 물어 보호자를 입건.
- 경찰은 이날 희생자의 대모이자 가해자인 4세 소년의 할머니인 블라 린지를 입건했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손이 미치는 곳에 총기류를 놓아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총기의 소유자는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중국, 한 자녀정책 10대범죄 양산

< 미국 어린이 총기사고 >

- 매일 평균 10명의 어린이(18세미만)가 총기가 사용된 자살, 살인, 사고로 사망.
- 16세 이하 어린이의 총상은 1986년 이래 대도시 지역에서 300% 증가
- 매년 거의 3,000명의 10대가 자살을 위해 총기사용
- 최소한 2,500만 미국가정이 총기를 보유하고 소지자의 50% 실탄장전

- '80년초부터 시작된 중국의 한자녀정책이 10대들의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고.
 - 최근의 청소년범죄가 문화혁명('66 ~ '76) 당시 홍위병들의 광란적 행동, '80년대 중반 경제성장의 과실 배분에서 배제된 젊은이들의 무법적 행위에 이은 제3의 청소년범죄 물결로까지 불려질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 중국정부는 신법 제정을 통해 일탈행위로 악명높은 14살에서 18살 사이의 소년들에게 형법조항을 적용할 계획으로 이들은 바로 '80년대 초부터 한 가정에 한 자녀만을 두도록 한 인구정책의 산물.
- 중국은 한자녀정책을 어긴 가정에는 벌금 부과, 의무교육과 의료보험의 박탈등 강한 보복적 조치를 취했고
 - 한자녀 정책은 인구증가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쉽게 비화될 수 있는 도시지역에서 특히 엄격하게 취해졌으며
 - 이 때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들이 금이야 옥이야 하며 길렀다고 해서 「소공자」, 「소공녀」로 불리고
 - 이들은 부모들이 거는 유일한 꿈과 희망의 대상으로서 지난 20년간 이뤄진 소득증대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성장.
- 한 학자는 이들이 호사스럽게 크는 과정에서 인내력과 절제력을 잃었으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법의 무시와 범죄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

- 중국정부는 지난 주 100만명의 경찰을 청소년범죄 퇴치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했고
 - 공안부는 지방관서에 범죄조직 색출과 화약물 관리를 철저히 해 공공질서 바로잡기에 배전의 노력을 하라고 지시.
 - 그러나 중국의 시장경제 추진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청소년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

영, 여대생들 「몸팔아 학비 마련」

- 지난 '98년 6월 BBC는 주말 시사고발프로 「몸파는 대학생들」을 방영.
 - 런던 시내 한 마사지 미용원에 들이는 대학 2학년생 제시카의 뒷모습을 카메라 렌즈가 뒤따라 들어가고 어둠 속에 묻힌 제시카가 불 꺼진 마사지실에서 기자에게 “나는 언제나 손님들에게 내가 학생임을 떳떳하게 밝힌다. 학생이라는 점이 고객들에게는 신선하고 마음도 편한 모양이다. 학생들에게 몸값이 아니라 장학금이나 자선 기부금을 지불했다고 자위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죄의식을 덜고자 하는 것이 고객의 심리가 아닐까?”라고 고백.
 - BBC의 민완 여기자 수 로버트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고

취재원을 물색했으며 제시카를 비롯한 여자 대학생 3명과 여성 고객으로부터 몸값으로 적잖은 생활비를 받고 있다는 남자 대학생 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

- 현재 시간당 1백50파운드 이상 벌고 있는 제시카의 고백은 기성 세대의 성 모델·윤리관·가치판단이 낡았고 학업을 계속하면서 생활을 꾸려 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요즘 대학생들의 자기중심적 견해를 대변하며
- “학년 초 커피숍에서 일했을 때는 1주 일 내내 밤일을 하여 고작 백파운드 벌이었다. 공부에 지장이 많았고 빚만 늘었다. 이 마사지 서비스가 현재로서는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금전적 고통도 해결하는 방법이다”고 주장.

- 대도시 대학생들의 흥등가 진출이 지난 1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 호스텔스 바, 스트립 쇼 클럽, 마사지 미용실 등 매춘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가운데 여자 대학생이 이미 40%선을 넘어섰고
 - 서섹스대학과 브라이튼대학에서만도 여대생 3백~4백 명이 매춘은 물론 성인 사회의 각종 섹스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며
 - 미들섹스대학의 로저 메추 사회학교수는 「대학생들의 학교밖 섹스산업 참여 실태」에 관한 자신의 최근 연구 보고서

에서

- 영국 청소년들이 혼전 섹스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지나친 관용이 상업주의적 대중 매체의 「섹스 상품화」전략과 맞물리면서 건전해야 할 대학 사회조차 이제는 섹스산업의 손길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주장.
- 영국 사회의 혼전섹스는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조차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해 말 현재 10대 미혼모가 20세 이전 출산여성의 87%를 차지했고 실제로 10대 미혼모 비율이 가장 높은 사회가 영국.

미, 교내 총기반입 2년간에 6,093명

- 지난 '96~97년중 미국내 학교에서 총기를 소지하다가 적발, 퇴학당한 학생이 6천93명에 달한다고 미 교육부가 '98년 6월 8일 공개.
- 미국은 '94년 학교내 총기휴대 금지법을 제정, 모든 주가 학교안에 총기를 반입하는 학생들에게는 1년간의 퇴학조치를 규정.

영, 무단결석 사회문제화

- “학교에 자주 빠지는 아이를 둔 부모는 호출기를 갖고 다녀야 한다” - 영국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무단결석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결석률을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 학부모의 「호출기 소지 권장」은 아이가 결석할 경우 즉시 학교와 학부모간에 「통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
- 토니 블레어가 제시한 방안중에는
 - ① 수업시간중 학교밖을 배회하는 어린이는 경찰관들이 학교로 데려갈 것.
 - ② 어린이들의 결석시기와 이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학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것. ③ 법원이 상습결석생 부모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할 것 등을 포함.
- 블레어 총리는 “학교에 빠지는 남자 어린이의 78%, 여자 어린이 중 53%가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부연 설명.

미, 시민단체 「반(反)TV운동」큰 호응

- 미국에서 반(反)텔레비전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 시민단체 「TV 없는 미국」(TV-Free America)은 지난 '98년 4월 22~28일 「전국 TV끄기 주간」행사에 이어 현재 「더 읽고 덜 보자」(More reading, Less TV) 운동을 전개중.
 - 이 운동의 취지는 초등학생들에게 TV가 빼앗은 독서의 즐거움을 되돌려 주는 것이고
 - 지도교사가 6주 동안 초등학생들에 독

서지도를 하면서 서서히 TV시청시간 줄이기를 도와 준다는 것.

- 교사는 어린이들이 책 한 권을 땀 때마다 색종이띠를 건네 주고
- 아이들은 자기 집 TV에 그 종이띠를 붙여 점차 화면 전체를 가리며
- 교육이 끝나면 6주 동안이나 TV시청을 자제한 것을 자축하는 아이스크림 파티를 열거나 체육행사 등을 갖는다는 것.
- 이 교육방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공립학교에서 처음 실시됐고 「TV 없는 미국」을 통해 전국에 확산되고 있으며
- 이미 올봄 15개 학급을 선정해서 이 운동을 실험했고 다른 학교의 참가를 홍보.
- 한편 이 단체가 지난 달 실시한 「전국 TV끄기 주간」에는 5백만명이 참여했고
 - 3만 5천개 학교와 도서관, 종교단체등이 동참했으며
 - 미국의학협회 등 43개 전국 조직이 후원.
 - 이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3천여명의 참가자들이 본부로 편지를 보냈고
 - 한 초등학생은 “저녁 식사시간에 TV를 켜지 않으니깐 엄마와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했으며
 - 한 시민은 “시간은 전보다 천천히 흐르는 듯 했고 매사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표현.

미, 「암흑가 뒷골목」뺨치는 학교

- 미국의 학교에서 올해 들어 벌써 4번째 총기 살인사건이 발생.
 - '98년 5월 21일 오리건주 스프링필드의 서스터고교 구내식당에서 이 학교 퇴학생인 키크랜드 키크(15)이 소총과 권총을 난사해 여학생 1명이 숨지고 2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 현장에서 체포된 키크는 전날 총기소지를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하며 키크의 집에서 둘 다 교사출신인 그의 부모가 총에 맞은 시체로 발견되어 주위 사람들이 경악.
 - 그의 아버지는 얼마전까지 바로 이 서스턴고에서 교편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으며 경찰은 키크가 자신을 야단치는 부모를 살해했다고 추정.
- 미국의 교육·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여론의 호된 질책에 직면하였으며 이는
 - 지난 3월 24일 아칸소주 존스버러에서 11,13세 소년의 총기난사로 교사와 학생 5명이 살해된 뒤 교내 총기규제와 정신교육 강화 운운하며 법석을 떨었지만 오히려 유사 모방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고
 - 한달 뒤인 지난 달 24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중학생이 졸업파티장에서 살

- 인국을 벌여 교사 한명이 숨졌으며
- 지난 19일 테네시주에서는 고교생이 여자친구문제로 다투던 친구를 쏘죽이는 사건이 발생.
- 미국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미국 학교 10곳 중 1곳의 비율로 총기살인등 「중대 폭력」사건이 발생.
 - 조사대상으로 삼은 공립학교 1천2백곳에서 무려 1만1천건의 총기공격사건과 4천건의 성폭행사건이 보고되었고
 - 총기를 사용하지 않은 폭력 19만건, 절도 11만6천건, 기물파괴 9만8천건까지 합치면 미국의 학교가 교육의 전당인지 범죄의 온상인지 헷갈릴 정도인 실정
 - 미국의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 유례 없는 경제호황속에 청소년 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를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교육과정에서 찾고 있고
 - 부모와 교사의 과보호속에 남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란 학생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

요르단, 시험 중압감에 가족 12명 살해

- 졸업시험의 중압감에 시달리던 요르단의 한 고교생(19)이 '98년 6월 11일 부모 등 가족 1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
- 지난 해 졸업시험에 실패, 재수중인 사에

< 일, 오늘의 청소년상 >

■ 노상에 할 일 없이 몇 시간이고 주저앉아 있는 노상정거족(族)

- 여고생들이 하의를 엉덩이에 걸쳐 입은 채 혈령한 양말을 신고 가방끈을 땅에 닿을 정도로 길게 하여 어깨에 매는 「저항성 패션」, 데이트·성교의 대가로 여고생들이 금전을 받는 것을 원조(援助)로 표현하여 매춘성을 희석시키는 「원조교제」(援助交際)가 규범감각을 무너뜨리고 따라서 죄의식·죄감각도 마비되거나 얽어져 각성제에까지 손을 뻗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이는 중학생도 마찬가지로서 ① 규범감각이 없다, ② 인간관계가 없다, ③ 성취의욕이 없다는 「3무족」(三無族)도 등장하고 있다.

■ 아동의 칩거현상

- 방과 후 학원등에 다녀오는 외에는 자기 방에서 TV를 보거나 만화를 읽는 등으로 저녁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문제는 이 현상이 청년기에도 지속된다는 점이다.
- 전문가들은
 - “투명한 캡슐에 들어가 앉아 자아를 고수”하는 「캡슐인간」
 - 또는 “풍족함 속에서 무엇인가 하려는 의욕을 상실”한 「무기력 인간」으로 진단하고 있다.
- TV, 만화 이외에 워커맨, 퍼스컴, 카타로그 잡지 등 자기 혼자서 완결시킬 수 있는 자폐(自閉)문화의 상품에 둘러 싸여 생활한다.

■ 집단놀림

- 「희롱이나 따돌리기」에서부터 「일탈도가 높은 비행성(非行性)」까지 포함하며
 - 「희롱」은 어린이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현상으로 이것마저 단속하면 어린이들이 위축된다.
 - 「집단놀림」은 이 「희롱」이 「집단놀림 비행」(非行)으로 이행하기 쉬운 점에 문제가 있으며
 - 「희롱」과 「집단놀림 비행」을 구별하여
 - 「희롱」을 묵인하는 일방 「집단놀림 비행」은 금지시키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한다.
- 집단놀림에는 ①가해자, ②피해자, ③관중, ④방관자의 4층구조(四層構造)를 형성하며
- 대책으로서는
 - ①긴급재난으로서의 결석, ②양호실 휴식, ③교장실등에서의 보호등이 피해아동을 위해 활용되고
 - 가해아동등 문제아는 특별실을 설치하여 TV, TV-Game 등을 준비, 그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격리교실」또는 「격리지도」가 효과적이라고 한다.

■ 아동학대와 CAP

- 구미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문제 - Child Abuse -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학대·폭력으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려고 하는 운동이 CAP (Child Assault Prevention)으로 '78년 미 오하이오주에서 시작, 세계각지에 지부가 설치되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중이다.

■ gang group

- 어린이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노는 모습에는
 - ① 각기 일정한 지역·장소가 있고
 - ②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 ③ 집단으로서의 규칙이나 계율이 있으며
 - ④ 함께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등의 면이 있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gang group으로 지칭한다.
- 또한 이와 같은 형태로 노는 시기를 gang age라 하며 gang age에 gang group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드 알카샤시라는 고교생은 올해 2차례의 시험중 첫 시험을 치른 이후 아버지가 올해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부담을 주자 부모, 형제자매, 자형, 외조카 등 가족들을 차례차례 자기 집 지하실로 유인하여 사살.

미, 청소년들 인터넷 과다 접속

- 미국 인터넷 사이트 「토크시티 커뮤니티」가 13~19세의 청소년 4백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8년 6월 11일 발표한 인터넷 이용실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중 32%가 하루 4시간 이상, 42%는 하루 2~4시간 가량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74%가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 또 부모로부터 인터넷 이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밝힌 조사대상자는 4.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인터넷 접속에 전혀 간섭을 받지 않거나 부모의 감시가 미미했다고.

미, 청소년 「심야통금 효과」찬반논란

- 청소년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미국에서 미성년자 심야통금제의 효과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비등.
 -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17세 이하 청소년의 무단 외출을 금지하는 이 제도는 현재 미국의 2백대 도시 중 1백50곳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 시당국과 경찰은 청소년 강력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며 실시지역과 시간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 반면 교육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막대한 경찰력과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 효과가 적고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고 지적.
- 이 논쟁에 불을 댕긴 것은 권위 있는 사법정책연구소가 '98년 6월 11일 발표한 '64년부터 '96년까지 32년간의 캘리포니아주 청소년범죄 통계분석보고서.
 -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금 실시 이전보다 이후의 범죄발생건수가 줄지 않았고

<대화방 용어>

- 친구목록(Buddy List): 목록에 수록해 놓은 친구가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면 즉시 알려주는 AOL의 기능이다.
- IM: 인스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e)의 약어. 보통 친구목록에 올라 있는 사람과의 1대1 채팅을 말한다. 그러나 이방인의 IM은 조심해야 한다.
- 비공개 대화방: 초대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여러 명이 동시에 채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펀팅(Punting): 특수 프로그램을 사용해 특정 사용자의 화면이 정지하도록 만들어 접속을 끊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스크롤링(Scrolling): 채팅을 방해하기 위해 같은 문장이나 횡설수설을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영어로 보는 청소년세계〉

More U.S. kids finishing school and smoking, drinking

A new report on U.S. children is a mix of good and bad news. More are being immunized, read aloud to and finishing high school. But more teenagers are smoking and drinking, and there are more low birth weight babies.

The findings, released on Tuesday, are part of the government's annual report on the well-being of the nation's children 69.5 million of them in 1997.

Infant mortality is down. So are deaths among 15-19 year olds. Still, over 60 percent of the deaths in the teen years grouping are caused by automobile accidents and guns.

미국 아동의 흡연과 음주 늘어

- 미국 아동들에 대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섞인 새 보고서가 나왔다.
 - 예방 접종을 받고 글을 읽을 수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숫자는 늘어난 반면
 - 더 많은 수의 10대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고 체중 미달 신생아도 늘고 있다고 한다.
- 목요일 발표된 이 조사 결과는 지난 해 6,950만명에 이르는 미국 아동들의 복지에 관한 정부 연례보고서의 일부이다.
- 영아 사망률도 줄어들었고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사망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10대 사망의 60퍼센트가 자동차나 총기사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금 실시도시보다 미실시도시의 범죄 발생률이 약간 낮았으며
- 통금시간대중 백인·아시아계보다 흑인·히스패닉계 청소년의 체포비율이 훨씬 높아 인종차별의혹도 제기.
- 보고서는 대안으로 방과후 밤 늦게까지 학교를 청소년들에게 개방, 문화센터로 활용하는 「풀서비스 학교제」가 범죄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안.
- 이에 대해 전미(全美) 시장협의회는 통금 실시이후 청소년범죄 발생비율이 30% 정도 하락했다는 정반대의 통계수치를 내놓으며 반격을 가하고 있으며 사법정책연구소의 통계는 단속건수를 발생건수로 착각했거나 통금에 대한 불리한 여론조성을 위해 일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지난 달 워싱턴주 고등법원이 청소년 심야통금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한 이후 통금에 반대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

영, 명문 기숙학교는 「감옥」

- 이튼, 해로우, 윈체스터 등 영국의 명문교들은 세계 각국의 최상류층 자녀들이 거쳐 간 사립기숙학교들이며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를 가리지 않는 전천후 운동, 기숙사의 엄격한 기율, 냉수욕 등 전통은 웰링턴공작이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한 후 「승리는 이튼 운동장에서 나왔다」고 말했을 정도

- 그러나 최근 교육전문가들은 6세 밖에 안된 어린 아이를 수개월씩 부모들에게서 떼어내 때로는 귀족승배사상에 안주하고 때로는 약자 괴롭히기와 성폭력의 무대가 되기도 하는 학교 울타리 안에 넣는 기숙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
- 어린이 상담전화「차일드 라인」은 명문 기숙학교에 재학중인 소년 289명이 지난 1년간 전화를 걸어 왔으며 이중 다수가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발표해 문제를 증폭.
- 언론인 조지 먼즐롯은 영국 기숙학교들이 유엔 어린이권리 협약중 11개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튼 출신의 한 대학생은 “우린 애정에 굶주렸다”면서 “매일 저녁 6시면 모든 문은 잠겼고 기숙사는 감옥처럼 느껴졌다”고 회상.

미, 10대 여학생 남학생화(化)

- 미국 10대 소녀들의 「소년화」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 지금까지 남학생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수학, 과학과목에서 이제 여학생들이 비슷한 학습능력을 보이고
- 음주, 흡연, 마약복용, 범죄 등 여학생의 비행도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 남학생처럼 생각하고 공부하며 남학생처럼 행동하는 여학생이 늘고 있는 것.
- 특히 여학생범죄는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런 측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여성범죄율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
- 미국 국립 여성문제연구소(NCRW)가 '98년 9월 17일 발표한「소녀 보고서」(Girl Report)에 따르면
 - '96년 전국의 8~12학년(한국학제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 및 과학 테스트 결과 남녀학생의 평균점수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없었고
 - 같은 해 국립 교육개발평가소(NAEG)가 13세 남녀학생을 위해 실시한 수학 시험 평균점수도 남학생 2백76점, 여학생 2백72점.
- 한편 여학생들은 흡연, 음주, 마약복용, 범죄 등에서도 남학생들의 비행빈도를 따라가고 있다 하며
 - 남학생 흡연자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13세 여학생 중 흡연자는 '91년 13%에서 96년 21%로 증가했고
 - 마리화나를 피운 여학생은 같은 기간 7%에서 17%로 모두 2배 안팎까지 늘

어났으며

- 여학생 범죄 전반을 보더라도 '86~'95년간 남학생의 범죄증가율을 뛰어넘고 있다고.
- 「소녀 보고서」를 작성한 린 필립스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인해 사춘기 여학생들이 예전보다 더 대담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비행빈도까지 비슷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부모와 교사의 관심을 촉구.

프랑스, 비행청소년 가정에 수당지급 유보 논란

- 청소년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프랑스 조스팽 정부가 얼마 전 복지보조금인 가족수당을 비행청소년의 제재와 연결하는 내용의 개혁시안을 발표해 프랑스사회에 논란.
 - 개혁안의 핵심은 날로 늘어나고 폭력화하는 청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청소년범죄에 대해 부모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 자녀교육과 청소년비행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프랑스 대도시 근교의 빈곤지역에서 청소년 범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최근 통계는 이런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고

- 문제는 소외계층이 밀집한 이 지역이야말로 가족수당을 비롯한 모든 복지보조금의 최대 수혜지역이라는 점.
- 가족수당은 프랑스 특유의 가족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자녀양육비와는 별도로 자식이 둘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복지보조금.
- 말하자면 대가족 우대 보조금 같은 것이며 흔히 제4세계라고 불리는 선진국의 소외계층이 가족수당의 우선적인 수혜대상.
- 조스팽의 사회당 정부가 눈여겨 본 부분은 이 보조금이 자녀교육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서민가계의 생계비로만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 이에 따라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족수당의 지급을 미루면 부모가 자녀 선도에 적극 나서게 되리라는 계산을 하게 된 것.
- 청소년비행의 연대책임을 부모에게 지우겠다는 원칙론에 대해서 프랑스인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서민층 생계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족수당을 청소년비행의 제재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복지정책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혼돈이라며 비난

코트디부아르, 초등학교생들이 시험부정 규탄시위

- 코트디부아르 정부당국은 「시험부정」을 규탄하며 '98년 7월 15일부터 며칠째 수도 아비장 거리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초등학교생들의 「무서운 파워」에 당혹.
- 학생들은 “교사와 시험관들이 중학교 입시문제를 사전 유출해 불공정한 시험이 됐다”면서 교육부장관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선 것.
- 학생들은 또 정부당국이 빈민층지역 학생들만 재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에 대해 반발, “시험면제 대상인 부유층 학생도 포함해 모두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

미, 10대들은 「키보드 세대」

- 시장조사기관인 파인드/SVP는 '98년 5월 30일 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9백80만명을 웃돌며 4년내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웹 조사업체인 PC미터에 따르면 미국 최대 온라인 서비스회사인 AOL은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12~17세 온라인 이용자의 52%를 점유하고 있고 그들 중 일부는 TV 대신 컴퓨터를 택한 케이스.
- CNN방송과 USA투데이가 공동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TV없이 지낼 수 있다고 응답한 10대가 28%인 반면 컴퓨터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응답한 사

람은 23%에 불과.

- 문제는 「음란사이트」에의 접속으로서 AOL에 따르면 52%의 부모가 통제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며
 - AOL은 지난 해 12월 10대 초반 연령층을 위해 감시자가 없는 비공개 대화방 사용권한을 제한하고 선정적인 자료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특별 서비스를 개시했고
 - 또 부모들은 자녀가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보내오는 불필요한 메시지「스팸」의 차단이 가능.
 - 캐서린 보세크닉 AOL 부사장은 온라인 서비스업체가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부모도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며 “온라인 서비스 업체와 부모의 공동노력이 없이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
- ‘부모를 위한 인터넷 가이드’(A Parents’ Guide to the Internet)의 저자 패리 애프탐은 “문제는 자녀들의 기술력이 판단력을 훨씬 앞지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 아무리 통제장치를 마련해도 10대 초반 청소년들은 성인용 사이트에 접속하고 각종 규제를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내게 마련이고
 - 결국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컴퓨터를 공동의 공간에 놓고 가끔씩 둘러보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부모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감시했던 것과 다른 방식이라고.

아르헨티나 「수업싫어」폭발물 설치

- 아르헨티나의 12세 소녀와 13세 소년이 수업받기가 싫어서 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험박 전화를 걸고 이 때문에 학교가 폭발물을 수색하면서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재미를 붙여 험박을 계속하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고 경찰당국이 헤럴드가 '98년 7월 19일 발표.
- 이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에세이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폭발물 전문가가 동원되는 소동을 빚었는데 경찰의 의뢰를 받은 전화회사의 발신지 추적으로 마침내 지난 17일 밤 체포.

미, 청소년범죄 「단속에서 선도」로 전환

-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98년 7월 22일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범죄에 대해 단속·처벌 위주에서 선도·예방 중심으로 정책 수단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발표.
- 클린턴은 이날 시민·지역사회·종교단체들이 활발한 청소년 선도활동을 벌이고 있는 16개 「시범도시」에 각각 13만

5천달러씩 총 2백16만달러의 연방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미국의 문제는 결코 감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

- 특히 자신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당장의 인기만을 의식해 청소년선도 대신 처벌법규 강화나 교도소 확충등의 손쉬운 사후조치에만 급급했다고 자성.

○ 클린턴은 각종 연구보고서를 인용,

- 전국 평균에 비해 일부 지역의 범죄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비결은 바로 자생적 청소년 선도단체의 공동체의식교육 덕분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 보조금을 지급받는 16개 도시는 살리나스,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마이애미, 시카고, 인디애나폴리스, 볼티모어, 디트로이트, 캔자스시티, 햄스테드, 포틀랜드, 필라델피아, 찰스턴, 샌안토니오, 리치먼드, 시애틀이라고 설명.

미, 학원폭력 위험 1순위는 중학교사

○ 청소년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미국의 학원에서 중학교 교사가 가장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 미국 법무부가 '98년 7월 27일 발표한 「'92~'96년 직장폭력백서」에 따르면 실제 폭행이나 폭행위협을 받은 교사는 학교별로 중학교가 매년 1천명당 평균

57명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 특수교육학교 41명, 고등학교 29명, 초등학교 16명순이 있으며 대학교수 피해자는 3명.

○ 전체 직업중에서는 경찰관이 1천명당 3백6명꼴로 폭행피해를 당하고 있고

- 사설경비원(2백18명), 택시기사(1백84명), 교도관(1백17명), 바텐더(91명), 정신병원 근무자(80명), 주유소 직원(79명)도 「위험한 직업」리스트에 꼽혔으며

- 산매점 점원도 매년 평균 33만명이나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분석.

○ 직장폭력은

- 유형별로는 특수폭행(39만5천5백건), 강도(8만3천7백건), 강간(5만5백건), 살인(1천23건)순이었고

- 특히 근무중 사망사건 6건중 1건은 살인에 의한 것이었으며

- '90년대 중반이후 직장폭력은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평균 1백70만명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고 백서는 공개.

미, 7-8세 최연소 살인용의자 사법처리 논란

○ 미국에서 「1급 살인에 해당하는 청소년범죄로 기소되는 최연소자」로 기록된 살인 용의자들은 7살과 8살짜리 소년들.

- 평소 알고 지내던 11살 소녀의 자전거

를 탐낸 나머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고

- 이들은 '98년 7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라이언 해리스에게 돌을 던져 의식을 잃게 한 뒤 목졸라 살해했다고 자백.
- 시카고법원은 두 소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일리노이주에는 10세 미만 어린이 범죄용의자 수용시설이 없어 고민중.
- 법률 전문가들도 “어린 아동들에게 「죽음」이란 개념에 대한 판단능력이 있겠느냐”며 사법처리를 반대하고 있으며
- 한편 이날 아칸소주 존스보로 법원은 지난 3월 중학교에서 총기를 난사, 학생과 교사 등 4명을 사망케 한 미첼 존슨(14)과 앤드루 골든(12) 두 어린 학생에게 21세까지 소년원에 구금하는 구류감호 판결을 언도.

미, 남대생은 「요리·섹스 좋아하는 여성」이 최고

- 미국 남자 대학생들이 원하는 이상적 여성상은 요리를 잘하고 성적으로 미숙하면서도 섹스를 좋아하는 커리어 우먼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 앨라배마주 오번대학 심리연구진이 '98년 8월 18일 남자대학생 68명에게 이상적 여성상을 물은 결과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도 가사를 완벽하게 하는 「비현실적인」 여성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 대학생들은 또 이상형의 조건으로 큰 가슴, 날씬한 몸, 커다란 눈, 탄탄한 히프 등을 꼽았으며 금발보다 거무스름한 머리를, 밝은 미소보다 좋은 몸매를 높게 평가했다고.

미, 교내총기사건 「골머리」

- 미국의 학교들이 양상이 더 심각한 교내 총기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의 총기난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최근 일선학교에서는 금속탐지기와 음주측정기를 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 인디애나주 에번스빌의 학교에서는
 -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동원, 등교길 학생들의 무장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음주측정기를 도입하는 학교도 등장.
 - 등교시 마치 항공기를 탈 때처럼 경찰관이나 보안관 사이를 통과해야 하는 살벌한 풍경도 벌어지고 있으며
 - 스프링필드의 미주리학교에서는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학생은 바로 청소년 당국자에게 넘겨져 학교로부터 격리되고
 - 이밖에 사진이 박힌 신분증 및 투명한

가방을 사용케 하거나 아예 책가방을 없애려는 학교도 나오고 있다고.

- 이같은 움직임은 '97년 10월 이후 11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교내총기사건이 원인.
- 지난 '98년 3월 아칸소주 존스버러의 중학교에서는 학생 2명이 총기를 난사, 교사 1명 등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미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고
- '97년 12월에는 켄터키주 파두카에서 14세 소년이 학교 안에서 기도중이던 학생들에게 마구 총을 쏘 동급생 3명을 숨지게 했고 '98년 6월에는 미시시피주 펄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16세 소년의 무차별 총격으로 2명이 피살.

이런, 「소년-소녀 대화」비합법적 행위라고

- 소년-소녀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은 비합법적인 행위이며 죄가 될 수 있다고 이란 고위 성직자(아야톨라) 마라시 나자피가 '98년 8월 31일 지적.
- 그는 “소년과 소녀들은 마치 불과 솜 같아서 서로 바라보는 것조차도 욕망 때문일 수 있으므로 나는 학교나 공공장소가 부도덕한 곳이 되지 않도록 이같은 장소에서 남녀를 분리하도록 주장한다”고 강조.
- 그는 “이같은 종류의 관계를 합법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케”라고 지적하고 「시케」는 주로 여성들이 반대해 온 임시 결혼제도로 짧은 경우 불과 30분간 지속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미, 성경험 없는 고교생 50% 넘어

- 미국 고교생 중 성경험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가 '90년대 들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미국 질병관리센터(CDC)가 '98년 9월 17일 발표.
- CDC가 '97년 미국 전역의 고교생 1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응답자의 52%가 성경험이 없다고 밝혔으며
 - 성관계를 자주 갖는 학생 중 콘돔을 사용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57%로 지난 '91년 익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프랑스, 고교생 시위에 비상

- 프랑스 고교생 시위가 격화되어 '98년 10월 15일엔 파리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50만명이 거리로 뛰쳐 나왔으며
 - 순수한 학생 시위대와 불량 난동꾼들이 섞이면서 가게, 차량등이 파괴되고 경찰과의 충돌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 이날 하루 150명이 체포됐으며 지난 12,

13일의 시위규모보다 5배에 육박.

- 학생 대표 10명은 15일 클로드 알레그르 교육장관, 세골렌 루아얄 학사장관 등을 만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8개항에 합의했으나 오는 20일 또 다른 전국 동맹휴학 및 가두시위를 예고.
 - 학생 대표들은 “(그들은) 우리 주장을 듣기 시작했지만 아무 것도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이제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때다. 전국 고교생들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일단 15일 시위를 「성공」으로 자평.
 - 알레그르장관은 사태수습을 위해 “교사들의 근무지 이동을 원활히 하고 내달부터 학사일정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고 “학생들의 요구는 합당하지만 모든 것을 한달 안에 개혁할 수는 없다”고 언명.
- 고교생 시위로는 8년 만에 최대 규모라는 이번 사태 때문에 정치권도 크게 대립.
 - 야당인 우파진영 청년운동 사무총장 뱅상 로저는 “교육장관은 학생시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공화주의는 지나친 관용주의도 무질서도 아니다”고 말했으며
 - 반면 교사노조, 학부모 협의회 등은 “학생 입장에 동조한다며”교육부에 개혁조치를 촉구했고
 - 사회당과 집권「복수(複數)좌파」를 형성

하고 있는 공산당은 15일 학생 시위를 지휘하는 대표단을 파견.

- 우선 급한 불은 치안으로서 성인들 시위에 비해 「10대들」은 사고위험이 높고 자체질서유지 조직이 거의 없는 상태.
 - 장 자크 케란 임시 내무장관은 파리에만 2,500명의 경찰을 동원했고
 - 내무부는 “휴대폰을 소지한 불량배 그룹들이 시위대와는 무관하게 기동력을 바탕으로 파괴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으며
- 시위 자체가 갈수록 규모가 확산되고 격렬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
 - 심지어 15일 파리시가 자랑스럽게 개통한 무인 지하철 노선이 사고위험 때문에 무기한 운행중단됐고
 - 학생들은 내달 초 방학때까지 시위계속을 공언.

태국, 학점 잘 받으려 교수에게 돈주고 섹스까지

- 태국 대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기 위해 교수들에게 돈을 바치고 섹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향응을 베푸는일에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 방콕 시내 사립대 재학생 9백40명을 대상으로 '98년 10월 21일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학생의 17%가 좋은 학

점을 받기 위해 교수들에게 돈을 주거나 섹스를 포함한 향응제공을 하는 학생들을 목격했다고 대답.

독, 170건 범행 비행소년에 해외유람

- 절도, 강도 등 1백70건의 범행을 저지른 14세 독일소년이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일 다름슈타트의 예산을 받아 아르헨티나의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신선놀음을 즐기고 있다고.
- 수 많은 소년원을 전전한 이 소년을 더 이상 받아주겠다는 소년원이 없자 다름슈타트가 7만2천마르크(약 5천 7백만원)를 지원, 동행 2명과 함께 고래구경으로 유명한 발데스반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의 관광명소를 둘러보게 했다고.

독·영, 자녀체벌 불법여부 논란

- 「사랑의 때」나「인권침해」냐? - 독일·영국 등 유럽국가에서 자녀체벌에 대한 불법성을 놓고 논란이 한창.
 - 독일 공영 ARD TV는 '98년 10월 15일 독일 사민당과 녹색당이 제6차 연정협상에서 자녀체벌을 불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하면서 논쟁의 계기를 제공.
 - 양당 관계자들은 “아이들에게 폭력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합의배경을 밝혔으며

- 이에 대해 보수정당들은 일제히 반대 깃발을 들고 나섰고 27일 신정부 출범과 함께 퇴임한 클라우디아 놀테 가족 장관은 “부모의 자녀체벌은 때로는 필요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 또 기사련의 불프당 차이틀만 국내정책 담당 대변인은 “자녀 양육방법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
- 영국도 유럽 인권재판소가 최근 새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아들과 친아버지가 영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녀체벌은 인권 침해행위”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실정.
 - 이 판결은 특히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려는 목적이라면 상처를 입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때릴 수 있다”고 규정한 영국내 아동·청소년 관련법과 배치 되어 법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 유럽 인권재판소는 “영국법은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며 소년에게 보상금과 소송비 5만 400달러를 지불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명령.
 -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체벌을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보수적인 영국민들은 “상식적인 수준의 체벌은 꼭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 하버드대 잇단 학생자살에 슬렁

○ 학사행정 및 논문지도가 엄격하기로 '악명'이 높은 명문 미 하버드대가 최근 학생들의 잇단 자살에 충격받아 학사행정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고.

교육전문가들은 '98년 10월 21일 "하버드대학원 화학부 박사과정 5년차인 제이슨 엘톱(27)이 최근 지도교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극약을 먹고 자살, 하버드대의 엄격한 학사행정에 경종을 울렸다"고 지적했으며

- 엘톱은 사후에 발견된 유서에서 "교수들이 대학원 학생들의 삶에 너무 많은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며 "인간적 속박을 강요하는 지도교수제 대신 지도교수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 장학금 지급 여부에서 논문심사, 취업에 이르기까지 마치 중세의 장인과 도제관계처럼 학생들의 인생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의 지도교수제도보다는 여러 명의 교수가 한 학생을 동시에 지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

○ 관계자는 "엘톱을 포함해 지난 해 이후 세번째 교내 자살사건이 발생하자 하버드대는 지도교수위원회 제도의 도입 등 스트레스가 심한 대학원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학사행정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 특히 자살한 엘톱이 재학중이던 화학부는 교수위원회 제도 도입 등 9개항의 학사개선책을 발표,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하며

- 명문대일수록 치열하고 가혹한 경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현재의 교육여건에서는 이같은 학사행정의 개선만으로는 제2의 엘톱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부연 설명.

싱가포르, 소녀갱단 을 상반기만 310명 체포

○ 남자로 착각할 정도의 짧은 머리에 남자 셔츠와 바지를 차려 입으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대신 주먹과 발로 치고 받으며 때로는 단검을 휘두르는 무서운 소녀들.

- 싱가포르의 학교관계자가가 '98년 10월 22일 전한 최근 소녀 깡패들의 모습이며 범죄율이 낮은 싱가포르에서 부모의 통제와 관심 부족으로 10대 소녀갱단의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폭력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 올 상반기 강탈, 강도, 절도 등으로 체포된 소녀의 수는 310명으로 지난 해 전체 「소녀범죄」건수보다 많고 이들의 연령은 13~17세가 대부분이며 강도 16명, 절도 25명, 소매치기 236명, 공갈·강탈 15명 등.

- 한 경찰은 기껏해야 꼬집고 싸우던 소녀들이 이제는 차에 몰래 침입해 절도를 하고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위협해 돈을 갈취하는 등 범죄수법이 점차 대담무쌍해지고 있다”고 개탄했으며
- 전문가들은 “문제소녀의 대부분은 집에서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많았다”며 “아이들에게 좀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

XIII. 좌익(左翼) 와해 · 우익(右翼) 기승

캐나다, 백인우월단체 「화이트 파워」기승

- 복합문화주의를 내세우며 다양한 인종의 언어와 문화를 포용해 온 캐나다에도 최근 인종문제가 대두되기 시작.
 - 수년 사이에 홍콩계 중국인 등 동양인의 진출이 급격히 늘어난 밴쿠버 인근 지역이 특히 심하며
 - 그 계기는 밴쿠버 근교 서리(Surrey)시의 한 힌두교 사원에서 올해 초 변시체로 발견된 한 인도계 노인의 사망사건.
 - 미궁을 헤매던 이 사건은 경찰조사 결과 백인우월주의자 5명의 집단 구타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고

<「공포의 딱딱머리」스킨헤드족>

- 서리시 인도노인 살해사건의 주범인 스킨헤드족(Skinheads)은 현재 전 세계 6대륙의 33개 국가에 모두 7만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이들은 머리카락을 완전히 민 외모 외에도 신나치주의 군인복장 등 위협적인 치장, 유색인종 혐오와 폭력, 백인우월주노래가사의 해비메탈 등으로 특징지워지며
 - 백인 스킨헤드들은 70년대 영국에서 처음 나타나 노동계급의 거칠고 애국적인 인상을 상징으로 삼아 백인의 우월성과 강인함을 보여준다며 주로 아시아계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다.
- 캐나다에 현재 보고된 스킨헤드들은 약 600명이고 독일의 5,000명, 미국의 3,500여명 등에 비하면 아직 적은 수지만 인터넷, 우편, 국제집회 등을 통해 급속도로 국제적 연대를 도모하며
 - 이들은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선전매체는 음악으로서 비트가 강한 록과 해비메탈에 백인우월주의를 찬양하는 가사를 실어 퍼뜨리는 것.
 - 인도노인 살해사건이 일어난 서리시에서 활동하는 록그룹 「오딘의 법」(Odin's Law)의 대표적 음반인 「백인혁명」(White Revolution)만 해도 모든 백인이 들고일어나 자신들이 타인이다.
- 캐나다의 한 인권단체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신나치주의자들은 '80년대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 확인된 단체만도 「노던 헤머스킨스」, 「헤리티지 프론트」, 「아리안 내이션스」, 「화이트 파워」등 다양하며
 - 이밖에 미국에도 「아리안 저항운동 스킨스」, 「노던 헤머스킨스」, 「파이널 솔루션 스킨헤즈」등이 보고되어 있다고한다.

- 최근 체포된 용의자들은 17~25세 사이의 스킨헤드족 백인 남성들로 모두가 백인우월단체 「화이트 파워」의 회원.
- 백인우월주의와 유색인종 혐오주의로 무장한 이들은 범행 당일 “누구든 오늘 우리 눈에 띄는 유색인종을 해치우자”고 다짐했다는 것.
- 캐나다 인종차별 반대협회의 상임이사인 앨런 듀통씨는 “이제 유색인종을 혐오하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활동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가 이들의 낙원”이라면서 한 예로 지난 해 서리시의 곳곳에 백인우월주의 포스터가 부착됐던 사건을 지적.
 - BC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급격히 늘면서 그들에 대한 거부감정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C주가 적대감정 또는 적대행위의 선전에 대한 캐나다 형사법 상의 제재조항을 강력히 적용하지 않아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듀통씨는 설명.
 - 경찰조사에 의하면 백인우월주의자 극우단체들은 백인 청소년들 가운데 가정과 사회에 불만이 큰 문제아와 빈곤층을 규합해 이들을 극렬분자로 만들고 있고
 - “백인들이 가난한 것은 유색인종들이 몰려 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고 또 그렇게 세뇌받고 있다고.

- 인도노인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서리시의 도그 맥컬럼 시장도 인종주의 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 보이고 있고
 - 경찰 역시 서리시가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근거지로 부각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인종차별단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 인도계인 우잘 도산스 BC주 법무상은 증오감을 자극하는 구호 등은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며 연방정부에 「증오범죄의 발본 색원」을 촉구.

일, 옴진교가 숨겨둔 독가스원료 발굴

- 일본 경찰은 지난 '95년 도쿄 중심가 지하철에 사린 독가스를 살포해 5천여명의 사상자를 낸 옴진리교가 땅에 묻어 놓은 컨테이너 8개 분량의 사린가스 원료를 발굴하였다고 '98년 5월 27일 공개.
- 사린가스의 원료로 쓰이는 불화수소가 든 컨테이너들은 도쿄에서 북쪽으로 125km 떨어진 닛코산에서 발견됐으며
- 옴진리교 신도들이 이 컨테이너를 12명의 사망자와 5천여명의 부상자를 낸 직후 증거인멸을 위해 땅속에 묻은 것으로 추정.

독, 「극우범죄」지난 해 전후 최고

- 신나치주의자와 인종차별주의자 등 극우 세력에 의한 독일내 범죄가 지난 해 2차 대전후 최고조에 달했다고 독일 내무부가 '98년 5월 6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발표.
- 만프레드 칸터 내무장관은 우익 과격주의자들의 범죄율은 '97년의 경우 '96년에 비해 34%나 증가했으며 극우단체에 의한 과격한 공격행위도 27%나 늘어났

다고 지적하였으며

- '97년에 신나치주의자 또는 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는 1만1천7백19건으로 이는 가장 극심했던 지난 '93년의 1만5백61건보다 1,000여건이나 높은 수치.
- 1만1천7백19건의 범죄중 거의 90%에 해당하는 건수가 극우를 찬양하는 유인물과 서적을 배포한 사건이라고 강조한 칸터장관은 극우단체 동조자도 '96년에

< 일, 우익(右翼)단체 현황 >

- 「천황숭배」·「반공산·사회주의」국가주의적 입장에 선 일본의 우익은 명치유신 전부터 존재, '97년 6월 말 현재 약 800개 단체에 12만명이다.
-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존속해 온 단체도 있으나 '70~80년대에 급증하였으며
 - 폭력단 단속의 강화, 부정이익 제공을 금지한 상법의 개정등으로 폭력단이나 (주주)총회꾼의 대부분이 우익정치단체로 변신, 이권활동을 은폐한 것이 그 이유이며
 - 활동적인 우익은 약 320개 단체 4,200명으로 폭력단 계열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 '60년대 후반 대학투쟁을 계기로 신좌익에 대항하여
 - 일수회등 소위 신우익이 탄생,「전후의 YP(알타·포츠담)체제타도」를 내걸고 기존체제를 비판하였고
 - 재계·기업 등을 공격하는 등 새로운 운동형태를 보여 주목되고 있다.
- 신우익은
 - '68, '69년의 전공후 대학투쟁시 신좌익에 대항하는 조류로서 각 대학의 민족파학생에 의하여 조직되어 종래의 우익과는 다른, 우익의 새로운 조류이며
 - 기성우익은 「친미반공」이나 신우익은 「YP체제 타도」가 기본이념으로 일본민족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서는
 -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결정한 아메리카·소련의 “2대국에 의한 전후세계의 분렬지배”라는 알타체제.
 - 점령하의 「반천황·반민족·반국가적 전후상황」이라는 포츠담체제를 타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 이 YP체제 타도의 이념하에 현행 헌법, 일미안보조약, 정·재·관계와 역대 보수정권과 유착된 기성우익을 YP체제 긍정세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YP체제 타도 청년연맹의 명의로 '97년 3월 경단련, '88년 1월 스미토모 부동산, '93년 10월 아사히신문사, '94년 4월 아사히신문사 등에 대한 습격·농성사건과 자살·발포사건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비해 약 7%나 증가한 4만9천여명에 달했다고 부연설명.

년보다 7% 늘어난 4만8천4백명이고 절대다수는 15~24세의 칠부지 청소년.

독, 주변국서 더 요란한 「네오나치」

- 독일 내무부는 작년 극우파 범죄가 '96년에 비해 34%나 증가한 1만1천7백19건으로 전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최근 발표.
- 그러나 90%는 극우파 찬양 유인물이나 서적을 배포한 행위이고
- 화염병이나 각목, 난투극 또는 외국인에 대한 폭행 등이 없진 않지만 아직은 불량청소년들의 패싸움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며
- 작년 독일 전역의 네오나치 숫자는 '96

- 동독지역의 네오나치가 점점 창궐하고 있는 것은 사실.
- 이미 외국인 출입이 금지된 「해방구」까지 수십개나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
- 「비외국인지대」는 특정 거리나 청소년 클럽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네오나치들은 인터넷까지 동원, 「이곳은 외국인 출입금지구역」이라고 공포.
- 동독지역에서 창궐하는 이유는 고질적인 고실업과 통일에 대한 환멸 때문이고
- 나치에 이어 40년의 동독시절까지 너무

<적군파와 신나치주의>

- 독일 적군파를 만든 안드레이스 바더와 울리케 마인호프는 출신 배경이 전혀 달라 바더는 절도를 일삼고 등학교를 중퇴한 마르크시즘이나 마오쩌둥이론과는 전혀 무관했던 인물이고 마인호프는 대학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기자출신으로 백화점 방화사건 취재 도중 바더를 알게되며 이들이 적군파의 전신인 「바더-마인호프 그룹」을 결성한 것은 1968년이다.
 - 「바더-마인호프 그룹」의 사상적 모태는 '60년대 서독의 신좌파 학생운동.
 - 술집을 배회하다 우연히 학생들의 극좌테러리즘을 접하게 된 바더는 무분별한 행동주의자로 변신하고 마인호프는 이론을 제공한 것이고
 - 여기에 상당수의 학생, 지식인들이 가담, 적군파는 맹위를 떨쳤으며
 -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다면서 '80년대 중반까지도 각종 폭탄테러, 요인암살 등 도시게릴라 작전을 전개하였다.
- 적군파의 정반대편에 극우 신나치주의자들이 있고 유태인에 대한 이들의 폭력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 러시아 신나치주의자들은 히틀러 탄생 1백9주년인 '98년4월29일까지 러시아 거주 아시아인들을 하루 한명씩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적군파가 사라진 지구촌을 신나치주의자들이 긴장시키고 있고
 - 세계 각국의 신나치주의자는 통틀어 5만여명, 이들이 '97년 한해 저지른 테러가 5천여건이나 된다.

오래 민주주의를 체험하지 못한 특수상 황도 원인.

독, 적군파 막내려

- “적군파(RAF)는 28년전인 '70년 5월 14일 해방운동으로 출범했다. 오늘 이 과업을 종료한다. 적군파 형태의 도시게릴라 투쟁은 이제 역사가 됐다... 해방투쟁은 사회 계 세력들이 이를 받아들일 때에만 유용하다. 정치·사회조직을 건설하지 아니하고는 채 불법·무장투쟁에만 집중한 것이 오류였다”고하는 편지가 '98년 4월 20일 독일 본의 로이터통신에 배달되었으며 독일 공안당국이 아직 조사중이지만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적군파의 진짜 해산선언문으로 결론.
- 좌파 학생운동이 맹위를 떨치던 '68년 직업운동가 안드레이스 바더와 여기자였던 울리케 마인호프는 「바더-마인호프그룹」을 결성했고 곧 이름을 적군파로 개명.
 - 당시 서독정부를 파시즘으로 규정하고 공산당마저 반동으로 본 이들은 대도시에서의 무장투쟁을 내걸었고
 - 정치인, 기업인, 법조인 등 기득권세력에 대한 암살테러와 독일주둔 미군기지 공격 등으로 30여명의 목숨을 제물로 하였던것.
 - '77년 11월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승객 91명을 태운 루프트한자 여객기를 소말리아로 납치해 적군파 석방을 요구하다 서독 특수부대에게 사살된 사건이 생길 정도로 이들은 전 세계 테러세력의 동지였고

- '69년 이탈리아에서는 사회학도 레나토 쿠르치오가 이들의 영향을 받아「붉은 여단」을 창설했으며
- '69년 9월 세계동시혁명을 내세우며 「일본 적군파」도 결성되어 결성 직후인 '70년 3월 일본 적군파는 일본항공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망명, 지금까지 5명이 살고 있는 상태.
- '7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일어난 일본적군파의 프랑크대사관 점거사건 때 서독 적군파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군 기지에서 훔친 자동소총과 폭탄을 제공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고 두 조직을 연결시킨 자가 바로 '97년 12월 프랑스에서 재판에 회부된 전설적 테러리스트 가를로스 자칼(48).
- 서독 적군파 창시자인 바더와 마인호프 등 지도부 4명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76년, '77년 옥중자살을 했고
- 독일 통일후인 '91년 4월 동독지역 산업민영화 책임자이던 데블레프 카르스텐 로베더를 사살한 것을 끝으로 독일 적군파는 활동을 중단.

- 이탈리아 붉은 여단도 지도자 쿠르치오가 옥중에서 '91년 사실상 「운동의 실패」를 시인한 뒤 와해.
- 한편 극좌파의 몰락과 대조적으로 극우파는 최근 더욱 기승을 부려 '98년 4월 20일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내 극우파

들은 지난 해에 전년보다 3,000여건이나 많은 1만 7,000여건의 폭력행위에 연루됐고 나치즘을 신봉하는 신나치주의자들도 늘어나 현재 7,6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 미, 세계 30개 테러조직 발표 >

○ '97년 10월 미 국무부는 전 세계 30개 조직을 테러단체로 발표하였다.

미, 국무부 지정 30개 테러조직

지역	조직
중 동 13개	아부니달(팔레스타인계), DELP(필), 하마스(필), PELP-GC(필), 헤즈볼라(신이란계), 무자헤딘(반이란계), 가마알 - 이슬람이아(이집트계), 알 지하드(이집트계), 카츠 (유대인계), 카하네(유대인계)
아 시 아 (6개)	움진리교(일본), 적군파(일본), 아부사야프(필리핀 회교회) HUA(친파키스탄계), 크메르루주(캄보디아반군), LTTE(스리랑카반군)
유 럽 (5개)	ETA(바스크분리주의자), PKK(쿠르드반군), 혁명11월 17일(그리스좌파), ELA(그리스좌파), DHKP(터키마르크스파)
남아메리카 (5개)	FDMR(칠레좌파반군), FARC(콜롬비아좌파), MRTA(페루좌파) ELN(친카스트로계), 빛나는 길(페루좌파)
북아프리카(1개)	GIA(알제리 회교회)

- 오클라호마 연방건물 폭파사건을 계기로 '96년 제정된 「테러단체 지원 금지법」을 적용할 대상으로 17개월간 작업끝에 선정한 것이며
 -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와의 전쟁으로 유명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 등 회교원리주의 조직이 많고
 - '92년 이후 군인, 민간인은 물론 부녀자와 유아 등 6만여명을 무차별 살육하고 있는 알제리 회교조직(GIA)도 포함되어 있다.
- '96년 12월 리마의 일본대사관저를 점거하며 100여일동안 각국 외교관을 인질로 잡았던 페루의 투팍아마루혁명운동(MRTA)등 남미 국가에 일부 좌파테러집단이 남아있을 뿐 종교·민족적 색채를 띤 테러집단이 대부분이다.

X IV. 이런 사건 · 저런 범죄

68세대, 세계정치 주름잡는다.

- 「위대한 실패」로 끝난 유럽의 「68혁명」세대들이 국제 정치무대의 전면에 등장, 새로운 실험에 도전.
 - 기성질서에 대한 저항과 좌파적 이념으로 무장했던 이른바 「68세대」들은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정계를 차례로 점령하며 자신들의 이념을 현실에 접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월남전 참전을 거부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범주에 속하는 인물.
 -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이 세대는 지난 30년동안 「거리의 투사」에서 벗어나 법률 · 교육 등 전문분야에서 조용히 자신들의 역량을 축적, 뚜렷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고
 - 생태주의 · 성 해방 · 제3세계주의 등 자신들이 내걸었던 주장들을 실현시키는 「혁명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
- 독일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요슈카 피셔 외무, 오토 실러 내무, 오스카 라퐁텐 재무, 위르겐 트리틴 환경장관 등은 68세대의 선두 주자들.
 - 슈뢰더와 실러는 '70년대 테러로 악명을 떨쳤던 독일 적군파(RAF)를 적극 옹호하며 변호사로 자임했던 인물.
- 슈뢰더는 '86년도 당시 동독 공산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에게 「감명받고 있다」는 편지를 썼고
- 피셔는 '60대말 공포의 테러범 「카를로스 자칼」과 함께 '72년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의장 테러사건을 저지른 공범으로 최근 체포된 한스 요하힘 클라인과 좌익운동을 전개.
- 파리의 68혁명을 주도한 다니엘 콘 밴디트는 현재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4년 수감중이던 적군파의 창설자 안드레아스 바더를 방문하는 등 극좌파와 친밀한 관계.
- 영국의 피터 맨델슨 무역, 고든 브라운 재무, 로빈 쿡 외무, 잭 스트로 내무장관 등은 68정신에 심취했던 정치인들이며
 - 브라운은 '68년 글래스고대 급진적 학생노조 회장이었으며 스트로는 좌파성향의 전국 학생연맹 의장 출신이고
 - 일부에선 스트로 내무장관의 이와같은 전력을 들어 최근 영국정부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칠레 대통령을 체포하게 된 한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린 피노체트는 좌파들이 가장 혐오하는 극우 독재자였기 때문.
- 프랑스 68세대의 활약도 두드러져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68혁명에 영향을 받아 외

무부 관리직을 버리고 대학강단으로 돌아갔다가 정치인으로 복귀한 경우로서 조스 팡내각에는 장 클로드 가이소 교통주택담당 장관 등 공산당 출신의 68세대 4명이 입각.

- 이탈리아의 마시모 달레마 총리도 '60년대 말 좌익 청년시위를 주도한 골수 공산주의자로 이탈리아 68세대를 대표.

일 하늘의 별을 일반인들에게 팔아 온 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미국 일리노이주 「국제 별 등록사」(ISR)는 '79년부터 이름 없는 별 50여만개를 개당 48달러(약 6만 5천원씩)를 받고 일반인에게 분양해 왔는데 별을 분양받은 사람은 자신의 취향대로 별의 이름을 짓고 ISR사로부터 별의 위치가 표시된 천체지도를 받았다는 것.

미, 밤하늘 별을 판 「미국판 붕이」피소

- 미국 소비자보호 단체들이 '98년 5월 25

미, 유치원생 처벌양심 살해기도

< 68세대 >

- 「68세대」란 '68년 5월 프랑스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대학생들과 이에 동조해 시위와 청년문화를 이끌어갔던 당시 유럽과 미국 등의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 그해 3월 파리 근교 낭테레대 운동권 학생이 당시 미국계 은행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자 이에 대한 항의투쟁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5월 들어 파리 소르본대 점거농성과 경찰개입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 공장노동자와 시민들의 합류로 파리에서만 하루 최고 80만명의 노동자들이 시위에 가담했고 전국 총파업에는 1천만명이 참가했다.
 - 이 운동에는 학생뿐 아니라 노동자·공무원·지식인·예술가 등이 총망라됐으며 사상적 주류를 이뤘던 사회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마오쩌둥(毛澤東)주의자·무정부주의자들까지 가담, 사회문화혁명으로 발전했다.
- 이 '혁명'은 서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반전(反戰)운동으로 번졌고 멕시코와 당시 공산권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 68세대는 전후 경제적 풍요 속에서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권위주의를 거부하며 체제에 도전,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의 청년운동을 주도했다.
- 68세대는 또 산업사회의 인간소외와 자본주의 문화행태를 비판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이론을 토대로 자본주의체제의 극복을 주장하는 정치적 색깔을 띠기 시작했다.
- '80년대 들어 이들은 전통적 사회주의자들과 연대해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생태주의, 여성의 권리와 남녀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하는 페미니즘, 제3세계의 빈곤·저개발의 원인을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찾는 제3세계주의 운동 등으로 분화하면서 정치세력화 하였다.

-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시의 다섯살배기 유치원생이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교사의 꾸중을 앙심을 품고 교사와 학생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탄환이 든 권총을 소지하고 유치원에 갔다가 발견돼 체포됐다고.
- 교사 마기 포스터씨는 지난 '98년 5월 8일 한 남자 유치원생의 가방에서 25구경 반자동 소총을 발견하고 이를 물어보자 이 어린이는 포스터씨가 지시한 시간지키기 훈련을 따르지 않아 처벌을 받은 것이 억울해 살해하려 했다고 대답했다.

미, 여성갑부 「푼돈」법정싸움

- 미국에서 두번 재로 부유한 여자가 벌리고 있는 이색 재판이 화제.
 - 주인공은 유통재벌 월마트의 상속녀인 엘리스 월튼(48)으로서 그녀의 재산은 무려 63억달러(약8조8천억원)로 미국 최고의 여류갑부인 어머니 헬렌(64억달러)에 버금가는 재력.
 - 월튼이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분쟁사안은 아칸소 주당국이 그녀에게 부과한 음주운전 벌금 6백50달러(약 90만원)이며
 - 천문학적 재산가가 「잔돈」을 놓고 주정부와 정면대결을 벌이는 형국.
- 사연은 지난 1월27일 월튼이 회식에서 와인 4잔을 마신뒤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

고를 내 길가의 전화박스를 들이받아 코뼈가 부러졌고

- 즉각 출동한 경찰은 그녀에게 음주측정을 하려했으나 거부.
 - 그녀는 “당신, 나를 모르느냐”고 오히려 호통을 쳤고
 - 경찰은 그녀의 눈동자를 면밀히 관찰, 음주운전으로 판정해 기록을 보존.
 - 이후 월튼에게는 벌금과 이틀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떨어졌으나 그녀는 음주운전에 걸릴 만큼 취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에게 호통을 친 일은 교통사고의 충격 때문에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
- 정식재판을 청구한 월튼은 아칸소주의 쟁쟁한 변호사들을 동원, 대대적인 법정대결에 돌입.

미, 하원 「파파라치 법안」 논란

- 미국에서는 지난 '97년 파파라치(유명인사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사진기자들)에 쫓기다 교통사고로 숨진 다이애나 황태자비사건을 계기로 개인의 사생활을 폭넓게 보호하는 「파파라치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중.
- '98년6월1일 현재 하원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유명인사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법률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

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으며

- 영화배우 마이클 제이 폭스는 이 법안을 놓고 최근에 벌어진 토론회에서 “파파라치는 나의 일거수 일투족은 물론 차안에 까지 쫓아다닌다. 나의 가족들에게 심한 말을 하고 나의 집을 24시간 감시한다. 그들은 오로지 돈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라고 파파라치의 행태를 비난.

- 그러나 미국 언론계에서는 그러한 법안이 정부나 개인의 부패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처벌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며 극력 반대.
 - 전국사진기자협회 데이비드 루트먼회장은 “법을 준수하는 기자들의 합법적인 취재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고
 - 언론계에서 이 법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미 존재하는 법으로 사생활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미, 교도소에 연감비치 금지

- 최근 간행된 미국 텍사스주 연감이 도로, 강, 산, 철길 등 에 대한 너무 상세한 정보를 담아 수감자들의 탈주에 이용될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98년 9월 4일 주교도소가 연감의 구내 비치를 금지.
- 텍사스주 관계자는 “탈주하려고 한다면 연감의 지도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면서 “교도소 담 밖으로 나간 수감자는 이 지도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 있으니 다음은 어디지’ 하며 탈주에 긴요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

미, 엘비스는 밀고자

- “「로큰롤의 황제」엘비스 프레슬리는 동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미 연방수사국(FBI)에 일러바친 밀고자였다”는 기록이 공개되어 충격.
 - FBI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취급기한이 지난 1만6천쪽의 ‘X파일’ 37건을 '98년 6월 23일 인터넷에 올려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으며
 - X파일중 가장 흥미를 끌고있는 부분은 냉전시대 이념문제를 둘러싼 인기 스타들의 이면 행적에 관한 내용이며
 - 파일에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당시 FBI국장인 에드거 후버에게 제인 폰다와 스마더스 브라더스등 좌파 연예인들이 미국을 음해하며 청소년들의 사상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몰래 알려 준 사실.
 - '72년 신좌익 운동단체에 대한 비틀스 멤버 존 레논의 7만5천달러 기부금 제공 경위
 - '36년 희극배우 루실볼의 공산당 입당 이유

- 프로야구선수 미키 맨틀이 받은 협박 편지에 대한 조사결과,
- 유명화가 파블로 피카소와 FBI에 연결된 혁명단체와의 커넥션
- 배우 존 웨인의 반공산주의 활동등도 포함.

○ FBI는 이밖에 지난 '47년 뉴 멕시코주에서 목격된 미확인 비행물체(UFO)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파일도 공개.

미, 뉴욕시 「외국 동전」골치

- 미 뉴욕시가 시내 주차미터기에서 수거된 외국 동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중.
 - 외국 동전들은 양심 불량의 시민들이 25센트(쿼터)짜리 동전을 대신해 미터기에 사용한 것이고
 - 뉴욕시 당국은 이로 인한 손실액만도 25만달러로 추정.
- 뉴욕시 운수국이 현재 보관중인 외국 동전은 8톤이 넘으며 지난 4년간 모인 동전을 일일이 세는것은 일찌감치 포기한 상태로 무게로만 환산하고 있으며
 - 어렵잡아 백만개는 족히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고
 - 또한 국제도시답게 종류도 다양해 한국의 100원 및 500원 짜리를 비롯해 캐나다, 일본 등 60여개국의 동전들이 쌓여 있는 실정.

○ 운수국은 일단 환전을 고려했으나 동전 분류작업만 해도 만만치 않고 대부분의 은행이 동전은 취급하지 않아 일단 포기했고 다음 내놓은 아이디어가 외국동전을 무게로 판다는 계획.

- 운수국은 외국 동전 1파운드(453g)당 1달러만 내고 퍼담아 갈 것을 공고했지만 아직까지 구매 희망자가 없어 고심하고 있고
- 한편으로는 운수국은 외국 화폐를 쓰레기 취급한다는 비난을 우려, 동전의 보관장소는 아예 비공개하고 있으나 아직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 뉴욕 흑인집회 끝내 강제해산

- 지난 '98년 9월 5일 뉴욕시 맨해튼 북부의 할렘 지역에서 열린 「백만청년 행진 (Million Youth March)」은 시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시당국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할 수 있는 가를 보여준 극명한 예였다고
 - 이 행진을 조직한 사람은 급진 흑인운동가이자 평소 반백인-유태계 독설로 유명한 칼릴 압둘 무하마드.
 - 그런 그가 한달 전 이 집회를 신청하자 뉴욕시는 할렘 대신 한적한 장소와 시간대에 갖도록 제안
 - 무하마드가 흑인 청소년 갱집단들의 집

회참석을 공개적으로 권고하자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아예 그를 「증오를 파는 자(hatemonger)」로 공격하였고 이 집회를 「폭도집회」로 규정.

- 이후 법원이 조직위촉의 행진권리를 인정하자 시당국은 이번에는 「실제 참석자수는 5만명 수준」이라는 행진측 변호사들의 법원증언을 토대로 집회 허용시간을 애초의 12시간에서 4시간으로, 장소의 규모도 애초의 25% 수준으로 바짝 줄였던 것.
- 당일 집회는 사실상 「경찰들의 행진」처럼 되어 참석자 6천명에 집회장소 곳곳에 배치된 정·사복 경찰이 5천5백명.(뉴욕시의 평소 경찰 배치인원은 집회인원 30~50명당 1명)
- 이날 행사에서는 “흑인 청소년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주자”, “학교에 충실하고 마약을 멀리 하라”는 발언이 훨씬 더 많았으며
 - 할렘의 흑인 지도자들이나 참석자 대부분도 처음부터 무하마드의 인종갈등 부추김에는 반대했고 이번 행사를 「흑인 청소년의 단합」계기로 삼고자 노력.
 - 하지만 집회종료 시각인 4시가 됐을 때 중무장한 경찰병력이 서서히 시위군중을 압박하자 이를 본 무하마드는 “경찰이 위협하면 총을 빼앗아 쏘라”, “오늘이 거리에서 시장과 경찰을 함께 싸워 버리자”고 선동.

- 상공엔 경찰 헬기가 떴고 경찰은 연단에 진입해 확성기를 뒤엎고 강제해산작전에 돌입해 끝내 유혈 충돌로 종료.

미, 클린턴이 스타검사 비리캐기 위해 명탐정 고용

- 성추문으로 곤경에 처한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미국 최고 명탐정을 고용, 「음해세력」을 뒷조사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뭐든지 꼬투리가 될만한 것은 모두 조사해주시오.”라고 클린턴은 친구이자 변호사인 로버트 베넷을 통해 「국제탐정회사(IGI)」 테리 렌즈너 회장과 수사의뢰 계약을 맺었으며
 - 스타 특별검사와 르윈스키, 폴라 존스 등 자신에게 섹스스캔들 올라미를 씌우려는 인물들의 약점을 찾아내 그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했던 것.
- IGI는 세계적 기업들간의 정보 및 약점 빼내기, 백만장자 배우자의 위자료 확보를 위한 사생활 추적 등 굵직굵직한 사건만 수임하는 국제적 탐정회사.
 - 시간당 1백25달러로 웬만한 사건은 최소한 40만달러를 수고비로 받으며
 - 상대방의 혼외정사 여부부터 부도수표 전력, 세금이나 교통법칙금 미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거 사냥」을 의뢰했다고.

미, FBI에서 DNA자료 수사이용 개방

- 미 연방수사국(FBI)은 '98년 10월 3일부터 DNA데이터 베이스를 범죄수사에 이용하도록 개방.
 - 수사당국은 이에 따라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 범인이 남긴 DNA 샘플을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된 모든 DNA와 비교할 수 있게 되며
 - FBI의 DNA 데이터 베이스는 각주에서 운용하는 50개 데이터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 내용이나 사용방법은 FBI에 의해 표준화.
- DNA 데이터 베이스는 DNA 채록이 범인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한 건물이나 같은 지역 전체 주민들의 DNA를 채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반인 모두에게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전문가 지적.
- 또 현재 각주마다 범죄자에 대한 DNA 채록기준이 달라 어떤 유형의 범죄자들의 DNA를 채취할 것이냐도 문제점으로 부상.

미, 교역국 뇌물 단속 법안가결

- 미국 상원은 '98년 10월 21일 하원에 이어 미국이 다른 주요 선진 공업국들과 국제 상거래과정의 뇌물단속에 관한 협정을 체결토록 승인하는 법안을 가결.
 - 백악관은 클린턴 대통령이 「뇌물방지

경제개발 협력기구 협약」으로 알려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협정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뇌물을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각국 의회가 가결하도록 촉구.
- 법안 발의자인 콘래드 번즈의원은 이 법안으로 미국의 기업들이 뇌물을 주지 않고서도 외국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상거래를 하게 됐다고 말했으며
 - 미국은 외국과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뇌물을 이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가진 몇 안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 미 기업인들은 '77년에 제정된 이와 같은 대외 부패행위법이 외국에서 계약을 딸 때 자신들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고 불평해 왔었다고.

미, 낙태의사 피살

- 낙태수술 문제로 인한 미국내 갈등이 결국 살인으로 번져 '98년 10월 23일 밤(산부인과 의사) 바네트 슬레피안(51) 이 뉴욕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저격범이 쏜 총에 피살
 - 슬레피안박사는 이날도 버펄로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후 가족과 함께 유대인 교회당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 부엌 창문 밖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아 사망했으며

- 사건 후 법무부는 “의사들의 낙태수술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 캘리포니아를 방문중인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잔혹한 살해행위」로 규정, “미국은 헌법에 보장된 의료행위를 한 의사들에 대한 테러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
- 미국내 단체들은 “자신들의 특정목적 성취하기 위해 살인을 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고
- 심지어 낙태 반대론자들과 단체들도 이번 사건에는 동조하지 않아 「낙태구조대」의 플립 벤햄 목사도 “슬레피안박사가 수 많은 생명들을 죽였지만 박사를 살해한 행위는 결코 정당하지 않다”고 비난.
- 이날 살해사건은 정부가 낙태시술자에 대한 경호와 주의를 당부한 지 며칠 안돼 발생한 것.
- 낙태 반대론자들의 테러위협이 가중되자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98년 10월 20일 낙태시술 병원과 의사 등을 상대로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창문 가까이 있지 말 것, 병원의 커튼과 블라인드를 걷지 말 것」 등의 세부 안전지침을 전달해 놓고 있으며
- 경찰은 이번 사건도 지난 '94년 이후 캐나다 남부와 뉴욕을 중심으로 4차례 발

생한 낙태 반대론자들이 저지른 테러사건의 동일범으로 추정.

- 사건은 모두 공교롭게도 재향군인의 날 (11월11일)이 있는 주에 발생.
- 데이비드 보언 온타리오주 헤밀튼 웨스트 워드 경찰국장은 “이는 낙태 반대론자들이 「재향군인의 날을 낙태수술로 숨진 태아들에 대한 위령제를 겸한 공휴일로 정하자」는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 슬레피안은 여성들의 낙태선택권을 적극 지지해 온 소신있는 의사로 알려졌으며 '80년대 이후 낙태수술을 해와 낙태 반대론자들이 테러대상으로 지목.

미, 「아빠가 차 훔쳐요」

- 뉴욕에 사는 30대 남자가 다섯 살된 아들을 데리고 남의 차를 도둑질하던 중에 경찰관이 검문하자 아들이 「너무 정직한」대답을 하는 바람에 붙잡혔다고.
- 존 클리프턴(38)씨는 지난 '98년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쯤 아들과 함께 거리에 세워 놓은 붉은 색 지프를 훔치기 위해 차 문을 열려고 애쓰던 중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들에게 걸렸다 하며
- 클리프턴은 열심히 발뺌했지만 아들이 “경찰 아저씨, 우리 아빠가 사실은 차를 훔치고 계셨어요”하고 고자질(?)하

는 통에 체포.

- 나사를 풀고 죄는 스크루 드라이버를 몸에 감추고 있던 클리프턴은 당장 뉴욕시 몬트클레어 감옥에 수감됐으며 절도 미수 혐의와 함께 「아들의 복지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

미, 입양산업 돈벌이 전략

- 미국에서 「어린이 입양」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하는 등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입양될 어린이는 적은 반면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
- 입양관계 전문가들은 '98년 10월 26일 「입양산업이 번창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태생 백인 아이들의 인기가 높아 「통상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공개
- 미국 법에 따르면 입양을 둘러싼 돈거래는 금지되어 있고 정부는 입양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들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 생모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여 입양을 놓고 「장사」를 하지 말도록 하고 있고
- 또 아이를 입양한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법원에 신고하도록 규정. 그러나 입양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1만5천달러에서 2만달러가 지불되며 경

우에 따라선 10만달러가 지급되기도 하는 실정.

- 캘리포니아 입양협회 그레이엄 라이트 회장은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돈이 충분하면 원하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언급.
- 공급부족은 시장원리에 따라 수 많은 중간 상인을 만들어냈고
- 이들 중간상인은 아이를 원치 않는 미혼모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또는버스 정류장이나 상가벽, 그리고 인터넷에 광고를 내어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집.
- 입양에 관한 전국적인 통계는 없으나 지난 '92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12만7천4백41건의 입양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1백만 가구가 입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
- 중간 브로커의 상업성이 개입되면서 홀트 등 전통적인 입양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조차 아이를 「확보」하기 위해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 입양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필라델피아의 아티 엘가트는 「임신했습니까, 젊은 부부가 입양을 원합니다」라는 광고를 전화번호와 곁들여 지역신문에 내기도 하며
- 「진정한 입양」이라는 회사는 직원 33명에 7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올해에만 광고예산으로 37만1천달러를 쓸 계획.

- 입양시장에서 피부색과 문화적 배경은 주요한 가격결정 요인이 되어 미 국적의 백인 아이가 가장 비싸 최근 한 부부는 백인 아이를 10만달러에 입양.

○ 미국내의 공급부족으로 해외입양도 증가하여 오리건주 홀트 아동복지회의 수잔 콕스 국장은 최근 수년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러시아로부터의 입양이 늘고 있다고 설명.

캐나다, 배심원이 살인혐의 정부(情夫) 편들어

- 사랑에 눈먼 캐나다 여자 배심원이 살인 혐의자인 정부(情夫)를 돕다가 옥살이를 하게 됐다고.
- 재판부는 “그녀가 성적인 모험에 탐닉해 사법정의를 모독했다”는 이유를 들어 '98년 8월 24일 징역형을 언도.
- 길리언 게스는 '95년 마약 거래상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 6명이 선 재판정에 배심원 자격으로 섰으며 이들 가운데 전직 경찰관인 애인이 포함된 기구한 재판.
 - 그녀는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을 가로막는 등 의심할 만한 행동을 반복.
- 6개월이 걸린 공판에서 혐의자 6명은 모두 무죄로 석방됐고
- 두번의 이혼 경험과 세명의 자녀가 있

는 게스는 이후 경찰 수사로 피의자의 애인임이 드러나게된 것.

- “ 부도덕한 점은 인정하지만 범죄행위는 아니었다”고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항소할 뜻을 피력.

영, 갑부 카쇼기 노름빚 떼먹어

- 런던 리츠호텔 카지노가 8백만파운드(약 1백92억원)의 도박빚을 회수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억만장자인 국제무기 거래상 아드난 카쇼기(63·파리거주)를 추적중.
- 리츠호텔 변호인은 '98년 6월 2일 카쇼기가 지난 '86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1천만 파운드(약2백40억원)에 달하는 도박을 하면서 운이 따르지 않자 20만파운드짜리 스위스은행의 수표 16장(총 320만 파운드)을 발행했으나 은행측이 잔액부족으로 수표 결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당초 3백 20만파운드의 빚은 이자가 붙어 8백만파운드로 늘어났다고 설명.

영, 살인누명 쓰고 23년간 옥살이

- 영국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98년 6월 12일 살인 누명을 쓴 채 23년간 복역해온 패트릭 니컬스(69)에 대해 당시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 영국 사법 사상 최장기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니컬스는 '75년 가족의 친구인 74세의 할머니를 목조르고 구타해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연사했을지도 모른다는 유력한 증거가 제시돼 살인 누명을 벗게 된 것.

영, 항공기내 「옐로 카드제」

-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BA)항공사는 기내에서 술에 취하거나 흡연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승객들에게 「옐로 카드」를 제시하고 경고를 두번 받으면 차례시 구속까지도 가능한 고객 처벌제도를 마련했다고 '98년 8월 16일 발표.
- 항공사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국제선 전 구간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3년간 기내 사고가 400% 늘어나는 등 증가 일로에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고객들에게 이해를 당부.
-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이번 조치는 런던~리우데자네이루 노선 비행중 취객이 조종실 진입을 기도, 대서양 카나리아 제도의 섬인 테네리페에 비상 착륙한 사건이 일어난 지 한달여만에 나온 것.

영, 돈내고 옥살이 체험

- “50파운드(약 10만4천원)만 내면 하룻동안 죄수가 될 수 있습니다.” - 1백77년 역

사의 유서깊은(?) 브릭스톤 교도소는 '98년 10월 1일 하룻 동안 2백명에게 유료개방.

- 브릭스톤 교도소는 '91년 피어스 매콜리 등 IRA 테러리스트 2명이 탈옥한 사건으로 유명해진 감옥이며
- 수감자 자살률이 높고 감방이 비좁은 것으로 악명.
 - 일반인들은 독방이나 2인실에 수감되며
 - 일반죄수와 마찬가지로 10시에 취침해 다음 날 6시30분에 기상하고
 - 아침식사를 마친 후 7시30분 「석방」.
- 마이크 오설리반 브릭스톤 교도소장은 “감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은 감옥안이 어떤지 체험할 권리가 있다”며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수익금은 맥밀란 암(癌) 재단에 기증될 예정.

영, 범죄 싹부터 자른다

- 「신사의 나라」영국이 「무(無)관용」(zero tolerance) 작전을 개시.
 - 토니 블레어 총리는 '98년 10월 1일 블랙폴스에서 진행된 연례 노동당 대회 연설과 대(對)국민 TV연설에서 「무(無)관용」을 원칙으로 향후 3년 동안 범죄추방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

- 전국에서 우범 지역(도시) 25개를 선정, 「작은 범죄도 가볍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치안원칙을 세운 것은 총리 재임 5백일째를 지나고 있는 블레어가 「강력하고 공평한 영국」건설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
- 「무(無)관용」치안정책은 원래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것으로
 - 미성년 범죄, 작은 범죄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용서하지 않아야 큰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정책의 기본 뜻.
 - 뉴욕에서는 소위 「깨진 유리창」이론에 근거하여
 - 지하철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는 것은 곧 법 질서의 부재를 반증하고
 - 잠재적 범법자를 부추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하철 유리를 깨는 경범죄부터 발본색원해야만 치안 확립의 큰 기둥을 세우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
 - 지난 주 뉴욕을 방문했던 블레어는 범죄 추방의 주역인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과 오랜시간 면담했고 「무관용」치안정책의 의지를 이때 더욱 확고히 다졌다고 주위에서는 추측.
- 블레어의 무관용 정책은 먼저 「타깃 지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개시.
 - 뉴욕경찰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의해 범죄 다발거리, 범인 유형, 범죄 유형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후 「문제점 해결」방식으로 목표지역을 설정하고
 - 그 결과로 드러난 타깃 지역에는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 단순 무작위로 순찰경관을 늘려 범인 체포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없다는 과거의 경험을 살린것.
- 「무관용」치안 3개년 계획의 2단계에는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신설, 청소년범죄 초기 선도, 반(反)사회적 사범 단속, 마약 사범 강제치료 등도 포함.
 - 아울러 자동차 범죄도 특별 단속대상이 될 예정으로
 - 자동차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판에 특수 인식용 바-코드를 넣고 자동차의 각 부품에도 일련 번호를 새겨넣는 등 자동차 기록관리를 개선하는 동시에
 - 안전 주차장 2천 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 앞으로 5년 동안 자동차 도난율(현재 10만대당 연간 4백80대꼴)을 3분의 1 가량 낮추는 것이 목표.
- 「무관용」정책에 비판적인 경찰 간부도 적지 않아 이들은 무관용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경찰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
-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서 무관용 치안정책의 「임상실험」은 대성공.

- 뉴욕은 지금까지 살인 40%, 절도 33%의 감소를 보였고
- 영국의 허더스 필드, 스톡 포트 2개 도시에서도 「주택 야간절도」를 타깃으로 정한 결과 각각 30%, 21%의 발생건수 감소가 있었다는 것.

앞으로 경찰관들이 중범죄자를 잡을 때마다 3백페소(3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대신 뇌물을 받고 범인을 풀어주는 경찰관은 추방할 방침.

- 신임 멕시코시티 경찰국장이 '98년 9월 13일 마련한 이 개혁안 중 현금 보너스 지급제는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멕시코시티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조치.

멕시코, 중범죄자 잡으면 특별보너스

- 멕시코시티는 경찰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영국은 왜 좌측통행?>

- 영국 자동차가 좌측통행을 하고 핸들이 오른 쪽에 있게 된 유래에는 몇 가지 설이 있으며 어느 것도 확증되진 않았으나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은 「마차 기원설」이다.
 - 자동차가 나오기 전 대중 교통수단은 마차였고 쌍두마차건 사두마차건, 마차를 모는 마부의 자리는 오른 쪽에 있었으며 오른 손잡이가 채찍을 잡고 말을 다루는 데는 오른쪽 자리가 편했던 것이다.
 - 자연히 통행방법은 좌측통행이 됐고 마주보며 교행(交行)할 때 접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왼쪽통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 산업혁명이후 영국은 마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동차를 만들었고 말은 엔진으로 바꾸고 마부석은 운전석이 된 셈이다.
 - 그러나 이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영국식 자동차는 불합리한 점을 노정했다.
 - 마차와 달리 자동차는 기어 조작을 하여야 하고 왼손으로 기어를 넣는 것이 오른 손잡이 기준으로 보면 불편했다.
 - 그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왼쪽 핸들 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영연방 국가나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왼쪽 핸들이 보편화했다.
- 영국의 좌측통행 기원에 대해서는 다른 설도 있다
 - 템스강을 남북으로 잇는 런던교는 17세기 초 집과 상점들이 다닥다닥 들어서 복잡하기 짝이 없었다.
 - 사람과 마차는 무질서하게 밀치고 다녔고 1625년 어느 여름날 말 한마리가 마차를 끌다 쓰러져 죽었다.
 - 그러자 런던시와 지방을 잇는 유일한 교통로가 한동안 완전히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이를 계기로 당시 런던시장이 “시내로 들어가는 마차는 강 상류쪽(즉 왼쪽), 나가는 마차는 하류쪽으로 진행하라”는 런던교 통행원칙을 선포했다
 - 이것이 영국 최초의 교통법규였으며 곧 영국 전역과 바다 건너까지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 멕시코, 범죄예방 운전교육 >

- 서서히 움직이던 자가용 승용차가 갑자기 시속 80km로 속력을 높이면서 급커브를 돈다.
 - 타이어가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면서 고무 타는 냄새가 물씬 풍긴다.
 - 이어 시속 40km로 후진하다가 1백80도 회전한뒤 다시 급가속한다.
-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지만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북동쪽으로 1백km쯤 떨어진 파추카라는 지역의 한 운전연습장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 스텐트맨들에게나 어울릴 듯한 곡예를 가르치고 있는 이곳의 학생들은 대기업 종역이나 그 가족, 또는 이들의 운전기사들이다.
 - 돈 많고 별로 남부러울 것 없는 이들이 매우 위험해 보이는 곡예운전기술을 배우느라 땀을 흘리는 것은 범죄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 멕시코에서 몸값을 노린 납치나 강도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같은 기술을 가르치는 운전학원들이 성업 중이다.
 - 이중 하나인 파추카의 오가라 서비스사는 지난 1년반 동안 수강생이 모두 1천여명에 달했다.
 - 멕시코인들뿐 아니라 멕시코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간부나 운전기사들도 적지 않다.
 - 수강료도 상당히 비싼 편이어서 기업체 임원이나 그 가족들을 위한 1일 코스가 9백달러, 운전기사들을 위한 2일 코스는 1천4백 달러에 달한다.
- 미국 아리조나에 있는 유사한 훈련코스에서는 3일에 3천5백달러, 6일에 5천5백달러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 이곳 역시 주대상은 멕시코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 오가라에서의 훈련코스는 우선 강의실에 시작된다.
 - 위험한 상황을 미리 판단하고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친다.
-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비좁은 다리에 접근할 때 등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인물이 주위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 핸드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거는 듯한 시늉을 한다거나, 교통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완전히 정지하지 않도록 속력을 늦추며 서서히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다음으로 확실히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갑작스런 후진이나, 급회전, 급가속 등을 통해 가능한 빨리 빠져나가야 하며 이 부분은 강의가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오가라 서비스에서는 자동차 경주트랙에서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플라스틱 판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가 갑자기 판을 치우면서 눈앞에 나타난 원추형 고무장애물을 피해 나가도록 하는 등 다양한 코스 훈련을 시키고 있다.
 - 훈련의 목적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지만 수강생들은 놀이공원에 놀러온 어린이들처럼 들뜬 기분으로 처음 해보는 곡예운전을 즐기게 된다고 한다.

멕시코, 「귀자르는 납치단」 횡행

- 귀를 자르는 납치단이 멕시코에서 경찰의 단속망을 뚫고 계속 범행을 저지르며 공포감을 조성.
 - 가족을 놀라게 하여 빨리 돈을 받아내려고 귀를 자르는 이 납치단의 두목 다니엘 아리스멘디(39)의 체포는 국민적 관심사.
 - 그러나 그는 군경이 벌린 최근 대규모 체포 작전을 빠져나가 아직 건재.
- 그가 납치로 모은 돈은 약 4천만달러에 이르고 납치단이 몇 회나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지난 8년간 약 2백회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당국은 추계.

아르헨티나, 불량상품 교환요구하다 횡사

- 불량상품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던 고객이 이에 불만을 품은 가게주인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에서 '98년 6월 4일 발생.
- 비운의 주인공인 국립 로사리오대학 음악과학생 페데리코 주사(22)는 시내 한 주유소 편의점에서 접착제를 샀으나 접착제 용기뚜껑이 없어 내용물이 말라 있는 사실을 알고 교환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에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것.

콜롬비아, 48m 터널 뚫고 금고 털어

- 콜롬비아 북동부에 있는 도시 부카라망가에서는 도둑이 무려 48m나 터널을 뚫고 금고에 있던 7백30만달러를 감쪽같이 털어 달아난 사건이 98년 7월 2일 발생.
- 문제의 도둑은 금고보관 회사에서 여덟집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가게를 사가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같이 긴 터널을 파나간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달 30일 금고에 접근, 마침내 엄청난 돈을 터는데 성공.

독, 17년전 벌금형양심 판사 살해

- 17년 전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심을 품고 있던 독일 노인(69)이 끝내 분을 삭이지 못하고 당시 담당판사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 이 노인은 '98년 5월 7일 에센의 사무실로 이 판사를 찾아가 권총을 발사, 4발 중 2발을 명중시켜 그를 숨지게 한 뒤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는 것.

콜롬비아, 경찰 개혁 착수

- 중남미 지역 경찰은 부패와 고압적인 자세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경원시되고 있으며 경찰 조직이 유괴나 살인 등 범죄에 관련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이 사실.

- 그러나 최근 들어 이와 같은 경찰의 부정적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는 중이며
 - 멕시코시티에서는 최근 자전거 순찰 경찰을 시험운영 중으로서
 - 순찰을 이용할 때와는 달리 자전거를 타고 관할구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 주민들과 안면을 익히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범죄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하며
 - 베네수엘라에서는 가장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약 담당 경찰조직 일부를 일선 경찰로 전환, 강력범죄 발생이 크게 줄고 있는 상태.
- 남미 경찰개혁의 선두주자는 콜롬비아이며 콜롬비아 경찰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미에서 가장 평판이 나빴으나 지금은 남미 최고로 평가될 정도로 면모를 일신.
 - 과거엔 당연한 일이었던 뇌물이 자취를 감췄음은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조직의 자체 정화 및 개혁으로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로 탈바꿈.
 - 콜롬비아 경찰 개혁은 '94년 12월 로소 호세 세라노 장군이 경찰국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 마약담당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콜롬비아 최대 마약조직인 메데인 카르텔을 분쇄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던 세라노는 경찰국장 취임과 함께 의회에 경찰개혁을 위한 특별권한을 요구, 의회에서 이를 인정.
 - 콜롬비아에서는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만 경찰관을 해고할 수 있었지만 세라노는 취임 첫해 10만명의 경찰관중 10% 가까이를 해고했고 일반 시민들이 악질 경찰을 고발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 활용하기도.
 - 이와 함께 과거의 수직적 조직을 개편, 일선 경찰관서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주요 범죄 발생건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실적평가를 하기 시작했으며
 - 또 미국,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물론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칠레의 교통경찰 등의 사례를 연구하고
 - 이를 토대로 콜롬비아 경찰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교외의 경찰서를 모델로 수도 보고타시에서 가장 범죄가 심한 지역을 담당하는 6백명의 도보순찰 경찰조직을 창설, 10월부터 배치했으며
 - 여기에는 과거의 「때」가 묻지 않고 의욕이 넘치는 신참들만을 배치,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새로운 경찰상을 구축.

프랑스, 미술박물관 모네그림 도난

- 프랑스 남부 니스의 미술박물관에 '98년 9월 21일 무장괴한 2명이 침입해 소장하고 있던 인상파 거장 클로네 모네의 1897년 작품 「디에프의 절벽」과 알프레드 시슬레의 1890년 작품 「포플러 오솔길」 등 유화 2점을 강탈해 도주.
- 괴한들은 이날 오전 7시 복면 차림으로 장 푸르니 미술박물관 관장 집에 침입해 푸르니관장을 인질로 잡아 박물관으로 끌고 간 뒤 근무직원 2명과 함께 묶어 놓고 프랑스 국가재산인 그림들을 빼앗아 갔다는 것.

프랑스, 포도주에 설탕·물·우유등 섞어

- 프랑스 포도주업계는 세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브르고뉴 적포도주의 '95년도 2차 생산품 일부에 설탕과 타르타르산(酸)이 첨가한 것이 들통나 야단법석.
 - 지난 해 11월 오스피스 드 본 경매소에서 팔린 보르도 포도원중 마르고 지역의 샤토 기스쿠르 포도원 직원이 포도주에 우유, 물, 산 및 값싼 적포도주를 섞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 포도주에 한 두 종류의 물질을 섞는 것은 허용되지만 유럽연합(EU)의 규정상 두 가지 물질을 한꺼번에 섞는 것은 불법.
 - 그러나 이번의 경우 첨가물을 한꺼번에 섞은 것이 아니라 포도주 제조단계에서

시차를 두고 섞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

- 보르도 지역에서 지난 해 수확된 포도중 일부는 너무 일찍 따 당도(糖度)가 낮은 탓에 이 지역 최대의 포도주 제조자인 앙드레 포르세레는 생포도즙에 설탕과 타르타르산을 섞은 사실을 인정했고
 - 이중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타르타르산은 포도주의 특성과 질을 급격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불법.
 - 그러나 포르세레는 첨가물들을 동시에 섞은 것은 아니고 제조단계에서 시차를 두어 섞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

프랑스, 「섹스 로비」로 발칵

- 빌 클린턴 대통령 섹스 스캔들을 파헤치는 미의회와 매스컴에 조소를 보냈던 프랑스 언론에 요즘 정치인의 섹스 스캔들이 비등.
 - 법질서의 최후 보루인 헌법 위원회의 롤랑 뒤마(76) 위원장이 '91년 외무장관 당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과 관련 국영석유회사인 엘프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른바 엘프-뒤마 스캔들이 발단이며
 - 「공화국의 창녀」라는 자서전에서 뒤마의 정부(情婦)였다고 밝힌 크리스틴 드

비에-종쿠르(50)는 자신이 무기판매를 위한 로비스트로 뛰면서 뒤마에게 「섹스 로비」를 한 과정을 자세히 폭로.

- 그의 임무는 프랑스정부내 무기금수론자들을 설득하는 것.
- 대만에 프리깃함 6대를 팔려는 톰슨사가 광범위한 국제로비망을 갖고 있는 엘프사에 중개브로커 역할을 맡겼고
- 엘프사는 총 6,600만프랑을 그에게 주어 주며 주요 타깃으로 뒤마 외무장관을 지적.
- 뒤마는 평소 미모와 화술에 호감을 갖고 있던 드비에-종쿠르의 「육탄공세」에 맥없이 무너졌다 하며 뒤마가 무기수출에 도장을 찍은 이후에도 이들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오랜기간 관계를 지속했다고.

프랑스, 불법체류자 7만명 양성화

-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프랑스 좌파정부는 지난 1년간 약 7만7천명의 「무자격」 외국인들의 국내체류를 양성화.
- 프랑스정부는 지난 해 8월 마련된 장 피에르-쉬베느망 내무장관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리 지침 및 지난 5월 발효된 외국인 이민에 관한 「쉬베느망법」을 근거로 그동안 약 14만명의 무자격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류 허가 심사를 벌여 왔다 하며
- 프랑스 당국은 이 심사를 통해 '98년 10

월 25일까지 7만7천명의 무자격 외국인의 국내체류를 양성화했으나 6만3천명에 대해서는 체류 신청을 거부.

이태리, 6세 어린이 은행강도 가담

- 여섯살 난 어린이가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98년 4월 27일 발생한 한 은행강도 사건에 가담했으나 공범들과는 달리 은행이 대기 고객을 위해 마련한 사탕 바구니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 이 아이는 최근 시칠리아 카타니아주 아치레알레의 한 은행에 어른 3명과 함께 스타킹을 뒤집어 쓰고 침입, 한화 약 5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

스페인, 폭력범에 관대한 법관명단 공개

- 스페인 여권운동단체는 가정에서 아내 구타 및 살해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성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경고.
- 진보 여성연맹회의 엔리케 타치카노 회장은 '98년 9월 25일 스페인 상원의 「여성 의원의 날」 개막식에서 올해 가정폭력으로 최소한 40명의 여성이 살해됐다면서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법관들도 가정폭력의 공범이라고 성토.

스페인, 호화 교도소 등장

- 수영장, 테니스 코트 체육관에다 컴퓨터실, 슈퍼마켓, 미용실까지 딸린 초호화판 교도소가 '98년 10월 13일 스페인에 등장.
- 마드리드 근교의 아란후에스교도소에는 이같은 호화시설외에 죄수들이 배우자나 애인,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일반가정에서 처럼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가정용 아파트형 감방도 있다고.

벨기에, 불법이민자 죽이는 경찰 비디오 공개

- 불법이민자에 대해 가차없이 국외추방명령을 내려온 벨기에 정부의 악명높은 망명정책이 '98년 10월 10일 경찰의 과잉 집행과정에서 나이지리아 여성이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되어 파문.
 - 세미라 아다무(20)라는 이 처녀는 65세 노인과의 강제결혼을 피해 벨기에로 도망쳐 왔으나 그녀는 벨기에에서 안식처를 얻는 대신 세명의 경찰과 함께 로마행 사베나항공기에 강제로 태워졌고
 - 저항하는 그녀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은 뒤로 양팔을 돌려 수갑을 채우고 발에도 족쇄를 채웠으며
 - 그것도 모자라 경찰관의 무릎에 올려놓은 베개 위에 그녀의 머리를 처박았고
 - 20여분 동안 질식의 고통 속에서 그녀

가 죽어가는 동안 경찰들은 잡담을 늘어 놓으며 웃고 떠들었던 것.

- 이 장면은 함께 탑승한 다른 한명의 경찰이 갖고 있던 비디오에 고스란히 담겨져 벨기에의 한 통신사에 넘겨졌고 이 사건이 폭로되자 벨기에의 망명정책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
 - 담당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됐고
 - 사베나항공도 승객의 자유로운 비상탈출권을 보장한 국제항공규칙을 위반하고 아다무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것을 용인한 혐의로 수사.
- 브뤼셀에서는 5000여명의 벨기에인과 아프리카인들이 아다무 추모미사를 갖고 정부에 압력을 넣었으며 결국 루이 토마크 내무장관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지만 망명정책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지 않는 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덴마크, 「멋진 경찰 엉덩이」 만진 여성 벌금형

- 덴마크의 한 여성(28)이 길거리에서 만난 경찰관의 「멋진 엉덩이」를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해 엉덩이에 슬쩍 손을 댔다가 모욕 및 풍기문란혐의로 기소당해 '98년 6월 29일 3백크로네(약 6만원)의

별금형을 신고받았다고.

- 제복을 입은 남자만 보면 성욕을 느낀다는 이 여성은 “앞으로도 제복을 입은 남자의 엉덩이를 만져 보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

네덜란드, 「자전거도둑 천국」

- 자전거가 주요한 교통수단이자 스포츠 도구로 자리잡은 자전거의 나라 네덜란드가 「자전거 도난」으로 골치.
 - 네덜란드에서는 해마다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18만대, 전국적으로 100만대의 자전거가 도난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 익명의 한 도둑은 “멋진 자전거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며 “자물쇠를 열 수 없을 땐 그냥 들고 간다”고 고백.
- 이렇듯 자전거 도난이 빈발하자 법무부가 대책마련을 위해 최근 비공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불행하게도 뾰족한 묘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 이 조사작업에 응한 38명의 자전거 도둑들은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있다”고 기염을 토하기까지 했으며
 - 범인을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도난사건 중 단지 4%만이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를 분실한 5명 중 4명은 아예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대

신 다른 자전거를 「슬쩍」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

- 정부는 고민하다 못해 요즘 텔레비전을 통해 흠친 자전거를 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암스테르담 당국은 암거래 근절을 위해 길거리 매매를 금지.

네덜란드, 강제키스 남성 강간혐의 징역형

- 올해 46세인 한 네덜란드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 세례를 퍼부었다가 법원에서 강간혐의를 적용받아 18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고.
- 네덜란드 대법원은 '98년 5월 27일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이 피해여성의 입에 혀를 밀어넣는 등 진한 키스를 한 것은 「신체의 불가침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간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

스웨덴, 낙서제거 회사가 건물에 낙서

- 경찰의 효과적인 낙서행위 단속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스웨덴의 낙서 제거회사가 일감을 잃지 않기 위해 시내 건물들에 몰래 낙서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
- 소규모 낙서 제거회사를 운영해왔던 30세 사장은 '98년 9월 10일 경찰조사에서 “경찰의 낙서단속이 워낙 효과적이어서 일감을 잃게 되자 스스로 낙서를 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회사가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스웨덴, 디스코텍 방화로 60여명 사망

- 스웨덴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의 한 디스코텍에서 30일 새벽 1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 최소 60여명이 숨지고 1백 90여명이 부상.
 - 불은 극장 뒤편 2층에 위치한 디스코텍에서 발생했으며 화재당시 10대들을 포함, 4백여명의 젊은이가 춤을 추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구조대의 렌하트 오린 반장은 “불길의 일반 화재때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번져간 점등으로 불 때 이날 화재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방화에 의한 것 같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방화로 단정할 만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디스코텍안에 있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한 생존자는 천장에서 불길의 치솟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디스코 자키가 곧 대피를 지시했으나 처음에는 곧이 듣지 않다가 불꽃이 떨어지면서 손님이 출구쪽으로 몰려 아비규환이 벌어졌다고.

노르웨이, 탈옥범 “무사하다” 교도소에 전화

- 노르웨이의 한 죄수가 오슬로에 있는 교도소에서 절벽 밑에 있는 강을 건너 탈출

한 뒤 교도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은 무사하다면서 탈출에 이용한 교도소의 작은 보트가 “너무 무거웠다”고 불평했다고.

- 이 죄수는 '98년 10월 14일 밤 강변에 있는 교도소의 나룻배를 이용해 강을 건너 탈출한 뒤 교도소에 전화를 걸었으며 교도소와 탈주자 간에는 탈주자가 무사히 탈출하면 반드시 전화를 거는 목적이 있다고.

러시아, 개고기 파이 팔다 식고랑

- 러시아 북부의 아르항겔스크에서 밀도살한 개고기로 파이를 만들어 팔던 부부가 '98년 5월 27일 경찰에 체포됐다고.
- 이들은 주로 주인 잃은 개들을 도살해 만든 개고기로 파이를 만들어 팔다 적발됐으며 이를 모르고 파이를 사 먹었던 사람들은 이같이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체첸, 외국인 납치와 전쟁중

- 러시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체첸에 외국인을 노리는 납치범들이 설치고 있다고.
 - 체첸에 파견된 국제적십자 요원, 엔지니어, 기자 등이 며칠 뒤면 사라지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하며
 - 지난 '98년 9월 영국 구호요원 카밀라

〈영어로 보는 치안〉

Quality-of-life factors(‘생활의 질’ 요건들)

- 미국의 Money지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The Best Places to Live in America)을 선정했다.
 - 살기 좋은 곳을 선정하기 위해 동부에서 서부까지(from coast-to-coast) 5백12개 미국의 대표적인 가정(representative households)을 골라 전화설문을 실시하였으며
 - 이들에게 「quality-of-life factors」(생활의 질을 형성하는 요건들) 37가지를 주고 각각에 1~10점의 점수를 매기라고 했다.
- 그 결과와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연방수사국)의 범죄기록,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환경보호청)의 공해기록, 상공회의소연구원협의회(Association of Chamber of Commerce Reseachers)의 집값(housing prices)자료를 비교해 리치먼드, 시애틀 등 살기 좋은 12개 도시를 뽑았다.
- 37가지 「quality-of-life factors」 중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변수는 「Clean water」(물이 깨끗한 곳)이었다.
 - 두번째는 「Low crime」(범죄율이 낮은 곳),
 - 세번째는 「Clean air」(공해없는 곳)였다고
 - 이어 「Good public schools」(좋은 공립학교가 있는 곳), 「Low property taxes」(재산세가 낮은 곳), 「Low cost of living」(물가가 낮은 곳) 등의 순이었다.
 - 「직장~집의 출퇴근」을 「commute」라고 하는데 「Short commute」는 18번째였으며, 「공공교통수단이 좋은 곳」(Good public transportation)은

카와 제임스가 납치됐다가 250만달러의 몸값을 주고 석방되었고

- 지난 해에는 「러시아의 아만포어」로 유명한 종군기자 엘레나 마슈크기자 등 3명이 납치되자 NTV방송사는 몸값으로 100만달러를 지불했으며
- 러시아 대통령 특사인 발렌틴 블라소프를 비롯 영국, 프랑스인을 포함한 103명이 아직도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
- 배후에는 국제사회에서 독립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데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동시에 자금 확보를 노리는 체첸 반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 체첸 정부는 마침내 지난 주 납치-테러범들과의 전쟁을 선포, 대대적인 납치범 소탕에 나섰다. 납치방지기구 책임자 샤이드 바르구이세프 장군이 '98년 10월 25일 수도 그로즈니에서 폭탄테러로 사망하는 등 납치범들의 저항이 만만찮아 당국이 바짝 긴장.

일, 월요일 오전 작업장사고 조심

○ 도쿄의 한 복지재단이 지난 3월로 끝난 '97년도 회계연도중 발생한 1만4천4백35건의 작업장 사고를 조사한 결과 사고가 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일 및 시간대는 월요일 오전 10시~11시로 나타났다는 것.

○ 이 재단은 전체 사고중 2천4백17건이 월요일에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요일, 금요일 순으로 집계됐다고 보고.

일, 살인죄 결백 입증위해 뇌검사

- 일본에서 지난 '48년 집단살인극 범인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중 사망한 히라사와 사다미치라는 노인의 가족이 그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뇌와 장기의 검사를 전직 법의학교수에게 의뢰할 것이라고 이 가족의 변호인들이 '98년 5월 7일 발표.
- 히라사와는 당시 데이코쿠(帝國)은행 지점에서 12명을 죽인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 '87년 95세에 숨졌으나 「코르사코프 정신병」에 걸려 본의 아니게 거짓으로 범행을 자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 「생활고 자살」 급증

- 지난 '97년 일본에서 경제문제등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7년전에 비해 3배로 급증하는 등 자살자수가 2만4천3백91명으로 과거 10년동안 최고를 기록.
- '98년 6월 11일 일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자살자 중 신병비관이 9천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정신장애가 4천6백1명, 경제·생활문제가 3천5백56명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을 원
인별로 보면 채무가 3년전보다 1.6배가
늘어난 1천8백78명, 도산이 1.6배인 64
명, 사업부진이 1.4배인 6백64명으로 집
계.

- 경찰청에 따르면 자살자 총수는 '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이후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냄.

일, 가부키배우 흡모 여성에 관람 금지령

- 오사카 지방법원은 '98년 6월 30일 일본
전통연극 「가부키」배우를 6년동안 집요하
게 쫓아다닌 한 여성에게 문제의 배우로
부터 “떨어져있으라”고 판결.
- 법원측은 이 극성팬에게 정상급 가부키
배우 이치카와 에노스케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50만엔을 지불하라
고 명령하면서 그의 공연장 입장은 물론
그로부터 2백m 이내의 접근도 불허하는
엄한 처분을 내린 것.
- 이 여성은 지난 '92년 2월부터 이치카와
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공연때는 맨
앞줄에 앉아 관람하면서 웃기는 장면이
나와도 무표정하게 그저 이치카와만 쳐다
보곤 했다는 것.

일, 도박 불황없다는 신화 깨져

- “도박은 불황을 타지 않는다”는 일본의

신화가 깨지고 있다고.

- 일본인들이 즐기는 3대 도박은 경마, 파
친코, 복권이고 이중에서도 특히 경마
는 고객수와 매상고에서 단연 앞서 도
박의 왕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
- 그런데 이런 경마가 울들어 처음으로
매상고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 이는 경마가 '73년 석유파동 등 전후
몇 차례 찾아온 불황에도 40년간 매상
을 확대해 온 사실에 비춰볼 때 도박
업계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
 - 올 5월까지 경마의 매상고는 전년에
비해 약 5%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
되고 있고
 - 불황의 여파는 도쿄경마장 옆의 주차
장에서도 나타나 20년전 폭주하는 경
마고객의 승용차를 노리고 배밭을 주
차장으로 개조한 한 70대 노인은 “울
들어 손님이 크게 줄었다”며 “하루
2,000엔씩 받던 주차료를 1,500엔으로
내렸으나 그래도 손님이 없어 고정자
산세를 내기 힘든 실정”이라고.
 - 복권과 파친코도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매상이 감소.
 - 당첨확률이 높은 것으로 소문나 고객
들의 줄이 끊이지 않는 도쿄 신바시역
오모리방면의 복권가게에는 여전히 손
님이 북적거리나 내용을 뜯어보면 영
판판.

- 이곳에서 32년간 복권을 팔아 온 아사오 미지코는 “손님이 줄지는 않았으나 한 사람당 복권의 구입 장수가 크게 줄었다는 것.
- 파친코도 '96년 매상고 26조엔을 최고로 계속 퇴조
- 사회심리학 교수는 “인간의 경제행동은 당시 소득보다도 장래 소득에 좌우된다”면서 지금의 불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도박고객들의 돈주머니 끈을 푹푹 묶고 있다고 분석.

일, 일본판 O. J. 심슨 13년만에 無罪

-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 일본 남성이 13년만에 무죄로 방면.
 - 사건 당시 각종 정황증거로는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컸으나 물증이 없었고 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법리(法理)를 따른 것.
 - 「일본판(版) O. J. 심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81년 11월로 당시 33세이던 미우라 가즈요시 수입잡화판매상)는 결혼 3년째인 부인 가즈미(당시28세)와 미국을 여행중이었고
 - 두 사람이 LA의 한 건물 주차장에 내려섰을 때 돌연 괴한이 나타나 총격을 가했으며
- 부인 가즈미는 머리에 총탄을 맞고 혼수상태에 빠져 결국 1년 뒤 숨졌고 미우라 역시 다리에 총상.
- 사건은 단순 강도살인으로 처리됐으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던 사건이 다시 터져나온 것은 그 3년 뒤
- 주간 분순(文春)이 「의혹의 총탄」이란 제목의 연재 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고 나섰기 때문.
- 감춰졌던 진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여 부부 사이가 안좋았고 미우라가 사건전 부인 명의로 들어둔 1억6천만엔의 생명보험금을 타갔으며 총격 사건 3개월 전엔 미우라 부부가 머물던 LA 호텔방에 누군가 침입, 부인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도 노출.
-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결국 구타사건의 범인을 잡아냈으며 망치를 휘두른 범인은 미우라와 내연의 관계에 있던 전직 여배우.
 - 이 여배우는 경찰에서 “미우라로부터 부인을 살해해 달라고 부탁받았다”고 자백했고
 - 검찰은 미우라와 여배우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여 1,2심 모두 유죄판결.
 - 3년 뒤에는 미우라를 총격살인을 교사한 살인공범으로 추가 기소.
- 하지만 총격사건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것.

-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청부를 받고 총을 쏜 범인도 찾아내지 못했으며
- 대신 검찰측은 살해를 부탁받았다는 여배우의 증언과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
- 1심 법원은 검찰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인 도쿄 고등 재판소에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
- “간접사실(정황증거)이 아무리 많더라도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결이유였으며 미우라는 인생의 전성기를 감옥에서 보내고 만 50살이 되어 석방.

일, 「얼굴 없는 살인」 공포

- 움진리교의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 이후 잠잠해지던 독극물사건이 다시 발생, 일본 열도가 또 다시 대소동.
- 특히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살인을 노리는 이런 유형의 범죄가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음에도 얼굴 없는 범인을 추적중인 일본경찰은 구체적인 단서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사태가 더 심각.

중국, 청년이 목숨걸고 일본밀항

- 중국 상하이(上海)를 떠나 '98년 7월 29일 일본 도쿄 신국제공항에 도착한 노스웨스트 점보 여객기의 바퀴집에서 온몸이 반쯤 얼어붙은 중국인이 발견돼 공항 관계자들이 경악.
- 비행기 바퀴를 접어 넣어두는 차륜실(車輪室)에 몰래 숨어들어 일본행 밀입국을 시도한 이 청년(23)은 3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최고 1만m 상공에서 영하 27℃의 추위를 견뎌냈다는 것.

중국, 다단계 판매로 홍역

-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 가장 자본주의적인 판매형태인 「다단계 판매」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다고.
- 지난 '98년 4월 21일 중국정부가 다단계 판매 전면금지조치를 내린 이후 피해자들의 항의시위 및 납치와 폭행으로 수십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
- 다단계 판매 피해자가 가장 많은 후난(湖南)성 장자제(張家界)시의 경우 판매 금지령이 내려진 직후 판매회사 책임자가 돈을 갖고 출행량치자 소요사태가 일어나 1백여명이 사상.
- 이웃한 형양(衡陽)시에서도 피해자들의 격렬한 항의시위가 소요사태로 번져 30여명이 숨졌으며 주룽지(朱鎔基)총리의 고향인 창사(長沙)시에서

도 큰 충동을 초래.

- 소요사태는 광둥(廣東)성 광저우시(廣州),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시, 상하이(上海)이 등 중국 곳곳에서 발생.

○ 중국당국은 즉각 언론보도를 금지시키고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항의의 기세는 수그러지지 않고 있으며

- '90년부터 중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암웨이, 메리케어, 터퍼웨어 등 세계적 다단계 판매 회사들은 중국 전역에 거미줄 같은 판매망이 있고

- 방문판매원만도 약 1천만명에 이르며 암웨이의 경우 지난 해 중국에서 약 1억 8천달러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일본의 주요 독극물 사건>

○'48년 1월 도쿄 데이코쿠 은행 직원 12명 이질 예방약이 주입된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

○'61년 3월 미에현서 농약이 주입된 포도주를 먹은 여성 5명 사망

○'77년 1월 도쿄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청산가리가 주입된 콜라를 마신 고교생 2명 사망

○'95년 3월 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테러사건, 사망 1백12명 및 부상 5천5백여명

○'98년 7월 와카야마시 카레 독극물 사건, 4명 사망

- '98년 7월 25일 밤 와카야마(和歌山)현 와카야마시 주택가 빈터에서 열린 자치회 주최 여름축제에서 카레라이스를 먹은 주민 60여명이 구토와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자치회장·초등학생 등을 포함한 4명이 사망.

- 사건 발생 직후 병원측은 집단 식중독 사고로 잘못 판단, 6시간 이상 응급조치를 미루는 바람에 희생자가 더욱 늘어났고

- 사망자 부검 결과 위에서 혈액에 응고된 청산화합물이 검출됐으며 남은 카레에서도 같은 독극물성분이 검출.

- 경찰 조사결과 자치회원 20여명이 25일 오전 차고와 회원집에서 3개의 대형 냄비에 끓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차고에서 끓인 카레에만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

- 주민들은 "최근 자치회가 쓰레기 수거와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자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자치회장 집으로 협박전화를 자주 걸어왔다"고 제보

○ 이에 앞서 지난 4월 30일 오전 4시쯤 일본 신칸센(新幹線)의 기후현 하행선 곡선구간에서 선로점검원들이 철도침목의 볼트 25개가 빠진 사실을 발견, 신칸센 운영을 전면 중단시키는 사건이 발생.

- 이 사건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대량살인을 도모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당시 일본 사회에 큰 충격.

- JR도카이(東海)측은 "신칸센이 시속 2백km이상으로 달리는데다 볼트가 빠진 곳이 커브지점이어서 선로점검원들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대량참사를 피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 경찰은 부근의 높이 1.8m 철조망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 대형 열차사고를 노린 의도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으나 범인은 아직도 오리무중.

남중국(海), 해적 들끓어

- 홍콩-필리핀-인도차이나 사이의 남중국해에서 해적떼가 최근 더욱 기승.
- '98년 6월 말 현재 올 상반기(1~6) 전 세계적으로 선박이 해적떼의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은 건수가 86건(인질 108명, 부상 20명, 사망 2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40건이 남중국 해상에서 발생.
- 런던 소재 국제해상처 포텐글 무쿤단씨는 “올들어 홍콩 선적의 선박만 다섯

번 공격을 받았으며 해적들의 강탈도 더욱 잔인해질 뿐 만 아니라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공개.

- 해적떼들은 주로 값진 물건을 선적한 대형 화물선이나 갓 출고된 선박을 제물로 삼으며
- 일부 해적들은 약탈 목표로 삼은 선박이 출항지에서 선적한 화물명세서까지 미리 파악하는 「정보력」을 발휘하고 있고
- 심지어는 이렇게 파악한 화물명세서를 바탕으로 해적들은 유령회사와 가짜서

〈영어로 보는 치안〉

야심적 보안관

Before his daring escape from prison, an infamous criminal had been photographed from four different angles. The FBI sent copies of the pictures to police chiefs all across the land, with orders to notify Washington the moment an arrest was made.

The next day the bureau received a teletyped reply from the ambitious sheriff of a small southern town : "PICTURES RECEIVED. ALL FOUR SHOT DEAD WHILE RESISTING ARREST"

- 악명높은 죄수가 대담무쌍하게 탈옥을 감행했는데 탈옥전에 각도를 달리해서 찍어놓은 네장의 그의 사진이 있었다.
 - 연방수사국은 그 사진들을 복사해 전국 경찰서장들에게 보내면서 그가 체포되는 즉시 워싱턴의 수사본부에 알리라고 지시했다.
- 이튿날 연방수사국은 남부의 작은 도시를 맡고 있는 야심적인 보안관으로부터 텔레타이프를 통해 회신문을 받았다.
 - “사진들을 받았음. 체포에 불응해서 네명 모두 사살했음”

류를 만들고 약탈할 물건의 선매(先買) 행위까지 자행.

- 국제해상처에 신고된 피해사례를 보면
 - 홍콩특구 행정수반 등젠화 집안이 경영하는 OOCL 연합사 소속의 컨테이너선은 지난 2월 마닐라만으로 향하던 중 로켓포로 무장한 4대의 쾌속정(해적선)의 공격을 받고 지그재그 향해 등으로 간신히 도망쳤으나 20일 후 마닐라 근처에서 다시 공격을 받았으며
 - 해운업계에선 해적들이 주로 중국 남부 지역을 근거지로 한 중국인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중국군으로부터 흘러나온 중국제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다고 주장.
- 전 세계의 해적피해 사례는 '96년 113건, '97년 117건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

중국, 북경에 첫 자전거 통금(通禁) 도로

- 중국은 자전거 왕국으로 어느 곳을 가도 자전거행렬이 흘러 넘치며 「쯔싱차」(自行車)라고 부르는 「자전거」왕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의 자전거 대수는 약 9백만대로서 1천만 인구수에 거의 육박.
 - 그런 자전거 왕국의 수도에 마침내 자전거 통행금지 도로가 생겨 '98년 10월 21일 베이징시 교통관리국은 오전 7시부터 시쓰(西四) 동대가 구간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 없도록 금지.

- 이 길 옆에 사는 주민들에 한해 자전거를 타지는 못하지만 끌고 다닐 수는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 하며

- 시쓰 동대가는 혼잡하기로 악명이 높아 1시간에 평균 5천~6천대의 자전거가 이 길을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 중국인들에게는 「차」(車)라는 말은 곧 자전거를 뜻하고 「자동차」는 따로 「기동차」(機動車)라는 말로 구분하며
 - 길거리 곳곳의 「존차장」(存車場:주차장)은 자전거를 세워두는 곳이며
 - 「차수리」라고 써붙여 놓은 곳은 자전거를 수리하는 곳이고 자동차 수리소에는 「자동차 수리」라고 써붙여 놓을 정도로 중국에서 「차」라는 글자는 자전거의 대명사.
 - 그런 자전거 왕국의 수도에서 자전거 통행금지 도로가 생겼다는 것은 마침내 중국에서 자전거 세대의 종말이 시작됐다는 뜻.
- 경제가 베이징보다 빨리 발전한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는 벌써 3~4년 전부터 러시아워때 시내일원의 자전거 통행을 금지.
 - 광저우보다 다 빨리 발전한 타이완은 이미 오토바이시대로 넘어갔다 하며
 - 베이징시 교통관리국도 아침 저녁 러시아워 때 도심을 가득 메우는 자전거행렬을 교통체증의 「주범」(主犯)으로 진

〈영어로 보는 치안〉

Poll finds support for gun regulations

Americans want some form of firearms regulation, according to a poll published Thursday i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In the survey, 1,200 people, including 338 gun owners, were questioned about legislation they would like to see: 88% want firearms child-proofed so small children can't fire them. 71% favor a law requiring that firearms be personalized. Personalization prevents guns from being fired by an unauthorized person. 73% support a law requiring that all new handguns be equipped with indicators that tell whether the weapon is loaded.

여론조사 결과 총기 규제에 대한 지지 밝혀지다

- '98년 9월 18일 뉴잉글랜드 의료저널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은 일정 형태의 총기규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8명의 총기 소지자가 포함된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사람들은 입법화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며 88%가 어린이들이 쓸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된 총기를 원했고, 71%가 총기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을 요구하는 법에 찬성을 했다.
- 개인 이름이 붙게 되면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총기가 발사되는 것을 막게 된다.
- 73%가 모든 신조 권총에 대해 장전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기를 달 것을 요구하는 법을 지지했다.

단하여 이번에 조심스럽게 자전거 통금을 시도해 보았다는 것.

대만, 인질범 1명 살해후 애완견 넣어주자 투항

- 인질 4명을 잡고 경찰과 대치하던 한 대만인이 인질을 사살하는 등 극렬한 저항을 계속하다 경찰이 그가 기르던 애완견 세마리를 넣어주자 투항.
- 이 대만인은 '98년 6월 22일 방콕 시내 사무실에서 여자친구 등 4명을 인질로 붙잡고 그 중 1명을 사살하기도 했으나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애완견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면 투항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경찰이 개를 넣어 주자 곧바로 항복하고 나왔다는 것.

대만, 우편배달부가 편지 수천통 소각

- 대만의 20대 우편배달부가 배달할 편지가 너무 많은 것에 불만을 품고 며칠에 걸쳐 수천통의 편지를 태우다 체포됐다고 현지 경찰당국이 '98년 8월 6일 발표.
- 경찰에 따르면 대만 중부 타이중에 사는 26세의 이 우편배달부는 올해 들어 월급은 오르지 않고 편지량만 2배 가량 늘어나자 들과 길가에 수천통의 편지를 쌓아 놓고 태우다 방화혐의로 5일밤 체포됐다는 것이며

- 경찰조사 결과 그의 가방 안에는 아직도 배달하지 않은 편지가 들어 있었고 정부 신용위배혐의로 기소될 상황에 처한 이 배달부는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해고도 당하게 된다고.

대만, 납치여객기를 승객과 함께 중국 송환

- 승객 95명과 승무원 9명 등 1백 4명이 탑승한 중국 에어 차이나(AC) 905편 보잉 737 여객기가 '98년 10월 28일 기장에 의해 공중납치돼 대만의 중정(中正)공항에 착륙.
- 대만당국은 이날 베이징(北京)을 이륙하여 쿤밍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 대만 공군기의 유도에 의해 이날 오전 11시 17분쯤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으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 당국은 1차 조사결과 기장 위안 빈이 열악한 임금 수준 등에 불만을 품고 여객기를 납치했으며 부인 쉬메이도 동승했다고 공개했으며
- 이날 오후 기장과 부인을 제외한 승객 전원을 사고 여객기에 태워 중국으로 송환.

홍콩 6세 소년이 강도 잡아

- 홍콩에서 여섯살 난 소년이 컴퓨터로 강도를 잡았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98년 10월 22일 보도.

〈영어로 보는 치안〉

Pinochet's arrest raises new issues on tracking crimes rights

Augusto Pinochet, the former Chilean dictator arrested here at the request of a Spanish judge, remained sequestered under police guard Sunday, awaiting a court hearing to weigh his extradition on charges of genocide, terrorism and murder. British officials have not said where Pinochet is, but scores of Chilean emigres gathered Sunday outside the up-scale London Clinic where the 82-year-old general underwent back surgery Oct. 9. The demonstrators jubilantly demanded Pinochet's extradition to Spain.

피노체트 체포, 범죄 추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문제 야기

-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스페인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곳 런던에서 체포되어 경찰의 격리 감호를 받고 있으며 대량학살, 테러, 그리고 살인죄로 기소된 죄목들에 대한 범인 인도를 결정할 법원의 심문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 영국 관리들은 피노체트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수 많은 칠레 망명자들이 이 82살의 장군이 10월 9일 등 수술을 받은 부유층이 이용하는 런던클리닉 밖에 일요일 모여 들었다.
- 시위대들은 기쁨에 넘쳐 피노체트를 스페인으로 넘겨줄 것을 주장하였다.

- 지난 7월 21일 대낮에 어머니·파출부와 함께 집에 있던 라우 춘인군은 흉기를 든 강도가 열린 문으로 침입, 파출부와 어머니를 노끈으로 결박하는 사이 안방으로 몸을 피했다.
- 곧바로 컴퓨터를 켜 라우군은 컴퓨터통신을 이용, 회사에 있던 아버지의 컴퓨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
- 덕분에 강도 마카람(17)은 집안을 뒤져 2백달러를 훔쳐 달아나려던 순간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체포.
- 홍콩지방법원은 22일 마카람이 전과가 없고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점을 참작, 2백시간의 사회봉사령을 내렸다고.

태국, 차도둑 선호도 1위는 「혼다」

- 태국 수도 방콕에서 자동차 도둑들이 가장 선호하는 승용차는 일본제 혼다라는 통계를 경찰국이 '98년 7월 12일 발표.
- 올 상반기 도난당한 승용차 2백23대중 절반에 가까운 1백2대(45.7%)가 혼다 자동차이며 그밖에 닛산(38대)·도요타(27대)·메르세데스 벤츠(27대)등의 순.

필리핀, 10세 소년 무장강도 2명 사살

- 필리핀 남부 사라가니라는 농촌에서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10세 소년이 '98년 5월

23일 이웃집으로 들이닥친 무장 강도 3명 중 2명을 엽총으로 사살했다고.

- 소년은 이웃집에서 비명소리가 나자 아버지가 쓰던 엽총을 들고 나가 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강도들을 향해 쏘으며 2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1명만 간신히 줄행랑쳤다고.

필리핀, 천천히 간다고 기사에 권총 발사

- 아시아 최악의 교통혼잡 도시인 마닐라 번화가에서 한 성급한 버스 승객이 러시아워에 서행하는 버스의 운전기사에게 권총을 발사하고 도주했다고 경찰이 '98년 8월 6일 발표.
-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승객은 지난 4일 시내 번화가에서 버스가 서행하는데 격분, 가방에서 45구경 권총을 꺼내 한 발을 발사한 뒤 황급히 버스에서 뛰어내려 도주.
- 근접거리에서 발사된 탄환은 운전기사 아르라함 플로레스(21)의 목 옆을 스치고 지나갔으며 입원중인 플로레스에 따르면 이 승객이 “버스가 공원을 산책하는것 같다”, “더 빨리 갈 수 없는가”라면서 욕설을 퍼붓고 총을 쏘았다는 것.

인도, 여덟살짜리 어린이에 강간죄

-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여섯

살배기 소녀를 과수원 망고 나무 아래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덟살배기 소년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98년 5월 31일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 이 소년은 「강간」의 정확한 뜻도 모르고 있었으며 과수원에서 망고를 훔친 죄로 붙잡힌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

싱가폴, 비행기서 「블랙잭」 즐기라고

- “기내에서 전자오락은 물론 도박도 즐기세요”. - 비행기를 타면 잠부터 청하고 보는 승객들이 적지 않으며 이는 「자는게 남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
 - 그러나 이제부터 싱가포르항공(SIA) 등 몇몇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승객들은 잠을 자기에는 아까운 여러 가지 유희를 만나게 됐다 하며
 - 그 첫째가 비디오, 오디오, 컴퓨터게임 시설을 갖춘 기내오락시스템이고 둘째는 도박시설.
- SIA는 최근 싱가포르~홍콩 등의 단거리 노선에 취항하는 보잉 747기에 블랙잭, 포커 등을 즐길 수 있는 전자도박장치를 설치.
 - 승객들은 좌석마다 설치돼 있는 비디오 스크린과 조종장치를 이용해 갖가지 도박을 즐길 수 있다고.
 - 한번에 0.25~3달러, 1인당 3백50달러

(약 49만원)까지 걸 수 있으며

- 한 사람이 딸 수 있는 금액은 최고 3천 5백달러로 제한.
- 딴 돈은 고객의 은행계좌에 입금되며 잃은 돈은 그만큼 계좌에서 빠져나간다고.
- SIA는 조만간 오락시스템을 갖춘 모든 항공기에 도박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며 오락시스템에 소프트웨어만 추가하면 되므로 시설은 간단하다고.
- SIA에 앞서 지난 해 기내에 첫번 째로 전자 도박장치를 도입한 항공사는 스위스에어였으며 올 3월 오스트리아 라우다항공이 뒤따랐고 서비스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이들 항공사는 이 도박장비로 짹짹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베트남, 손수레등 느림보차량 통행금지

-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 당국은 교통난 완화를 위해 '98년 7월 1일부터 발동기가 없는 이륜 짐마차와 손수레, 다른 도시번호판을 단 자전거식 3륜 택시, 광고용 확성기를 부착한 자전거 등 일부 느림보차량의 시내도로 통행을 금지.
- 물품운송에 이용되는 자전거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만 운행이 허용되며 컨테이너 트럭도 같은 시간대에 주요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고.

베트남, 19년간 밀림서 원시생활 월남장교 체포

- 베트남 경찰은 '98년 10월 30일 '79년 재교육수용소에서 도망친 후 밀림속 동굴에서 살아 온 전 월남군 특공 70대대 사령관이던 팜 반 앵(70)을 불법나무꾼 단속과정에서 체포.
- 앵은 주로 과일과 나뭇잎으로 연명하면서 동물을 덫으로 잡으면 도끼를 돌에 비벼 불을 일으켜 구워먹는 등 19년간 원시인 생활을 했다고.

인도네시아, 굶주림에 희귀동물도 마구 사냥

- 경제위기, 산불, 가뭄, 홍작, 혹독한 식량난으로 이어진 인도네시아의 「국난」이 환경파괴와 야생동식물 집단 멸종으로 번지고 있다고.
- 인도네시아 식량위기는 2억 200만 전체 국민중 8,000만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
 - 홍작과 쌀값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北) 술라웨시 주민들은 짧은 꼬리 원숭이, 큰 박쥐 등 야생동물을 잡아 허기를 때우는 한편 진귀한 음식을 찾는 타이완(臺灣), 한국 관광객에게 험값에 팔아넘겨 생활비를 번다 하며
 - 산악들소 일종인 「아노아」, 돼지와 비슷

하게 생긴 「바비루사」, 코끼리 등은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휘귀종들이지만 굶주림 앞에서 「자연보호」는 「사치」.

- 야생동식물 보호구역도 의미를 잃어 홍콩 등지에서 한약재 재료로 인기 높은 호랑이는 울 들어 수마트라섬 웨이 캄바스 국립공원 한 군데서만 37마리가 밀렵돼 몰래 해외로 팔려 나갔고
 - 탕코코 국립공원 앞에서는 짧은 꼬리 원숭이가 한 마리에 13달러씩에 팔리며
 - 어민들은 물 속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거나 시안화수은을 풀어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이고 더 많은 카누를 만들기 위해 원시림을 베어넘긴다고.
- 문제는 이렇게 당장 끼니를 넘겨도 「내일」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뿐이라는 점이며 이는 1만7000여개 섬을 둘러싼 산호초가 파괴되고 어장이 황폐해질 뿐 아니라 정글이 파괴돼 홍수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

인도네시아, 광란의 살육참극

- 인도네시아 자바의 동부 일부지역이 수개월 전부터 계속된 미스터리의 연쇄살인과 주민들의 보복살인으로 끔찍한 피바다를 이루고 있다고.
 - 자바섬 동부 농촌지역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은 복면 자객에 의한 무자비한 한밤의 살인과 이로 인해 공포에 떠는 주민들의 잔인한 보복살인이 악순환을 이루며 광란의 유흥극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며

- 참극은 자바섬의 동쪽 끝자락 반뉴왕기에서 시작돼 당국의 무력한 대응 속에 인근 쟈베르, 파수루안, 시튜본도 등 서쪽지역, 마두라섬 등으로 확산.
- 지금까지 1백50명이 넘게 희생된 가운데 유흥극의 발단이 된 복면 자객들이 누구인지, 배후에 흑막이 있는지 등이 의혹에 싸여 있고
- 외신들은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조직인 나흐드라틀 올라마(NU) 소속 회원과 주술사들이 주로 희생된게 특징이라고 보도.
- 이와 관련 당국자는 '98년 10월 20일 살인극은 수개월 전 반뉴왕기에서 정체불명의 자객들이 이슬람지도자 등을 참혹하게 공격하면서 비롯됐고
- 이들 자객은 일본의 옛 무사인 「닌자」로 불리우며 주민들이 닌자를 주술사로 규정,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주술사를 집단공격함으로써 살육이 견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
- 살벌한 상황에 경찰도 아예 손을 들어버린 가운데 군중은 자경단을 구성해 정신질환자, 낯선 사람이나 신분을 대

지 못하는 기업인들까지 주술사로 몰아세워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등 무법천지화하고 있다고 발표.

- 튜렌지역에서만 18일 3명, 19일 또 3명이 주술사로 몰려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고
- 광분한 주민들이 목이 잘린 「주술사」의 시체를 2륜차에 매달고 대로를 누비는 엽기적인 장면도 볼 수 있었다 하며
- 이런 혼란 속에서 「닌자」의 배후에 대한 설이 난무.
- 수하르토 정권시절 집권당의 정치기구가 학살에 개입한 전례처럼 특정 정치집단 혹은 군부가 이슬람 비판세력을 제거하거나 혼란상황을 연출, 쿠데타를 시도하기 위해 「닌자」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도 그 가운데 하나이고 국방장관 위란토 장군도 지난 19일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정치지도층간의 권력투쟁이 배후에 있다”며 의미심장한 언사를 구사.

사우디아라비아, 「보석도적」문제로 태국과 분쟁

- “도적이 훔쳐간 보석을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사우디정부는 '90년 태국도적이 가져간 보석을 찾아올 현대판「알리바바」로 모하메드 호자(65)를 임명하면서 이런 특명을 내렸다고.
- 최근까지 태국과 사우디 양국의 심각한

외교분쟁을 야기하며 정상적인 수교마저 가로막고 있는 사우디 왕궁 보석절도사건은 '89년 태국출신의 정원사 테차몽이 2,000만달러(280억원)에 달하는 파이잘 파드왕자의 궁전 보석을 훔쳐 본국으로 도주한 것이 발단.

- 사우디는 즉각 수사의뢰를 했고 태국 당국은 테차몽을 체포한 다음 보석을 되돌려 보냈으나 정작 문제는 반송한 보석중 30%만이 진짜이고 블루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30kg에 달하는 보석이 가짜로 판명났으며
- 도난사건의 목격자인 사업가등 사우디인 5명도 태국에서 의문의 살해를 당한 것.
- 사우디는 급기야 국제법을 전공한 호자를 특사로 태국에 보냈으며
- 그는 천신만고 끝에 진짜 「40인의 도적」과 목격자 살해범이 정원사를 수사한 경찰관임을 알아 냈고
- 경찰관들이 수사과정에서 다량의 보석을 빼돌린 것도 발견.
- 호자는 정부에 탄원을 하는등 보석을 찾기 위해 「열려라 참깨」를 무수히 외쳤지만
- 그 앞에 나타난 것은 당국의 「증거 불충분」이라는 해명과 살해협박 뿐이었고
- 그의 노력은 태국경찰의 부패 벽에 막혀버렸던 것.

- 그가 태국에 있는 8년간 총리는 9명이나 바뀌었고 그의 「열려라 참깨」외침이 추안 리크파이가 총리에게 전달되면서 수사가 급진전되어 미회수된 보석중 75%를 찾게 됐고 목격자 살해범인 경찰간부도 체포.

- 사우디정부는 '98년 4월 13일 비로소 호자의 귀국을 허락하여 보석과 함께 귀국.

나이지리아, 도둑이 석유 훔치려다 송유관 폭발

-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송유관이 폭발해 500명이상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수백명이 크게 부상당했고 비슷한 시간 남미의 콜롬비아에서도 송유관 폭발사고로 45명이 죽고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중상.
- 나이지리아 정부당국은 '98년 10월 18일 석유 중심지인 와리 부근에서 국영 석유회사의 송유관이 폭발해 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쳤으며 불길은 부근 200여m를 초토화시켰다고 발표.
- 이는 석유도둑들이 기름을 빼내려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다 불꽃이 튀어 폭발이 발생한 것이라고.
- 그러나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지하 무장단체들이 석유회사 시설을 몇 차례 파괴했던 사례에 비추어 테러 단체들의 범

행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측.

- 콜롬비아에도 이날 송유관 폭발사고가 발생해 최소 45명이 불에 타 사망.
 - 사고는 수도 보고타에서 북서쪽으로 600km 떨어진 마추카 마을에서 있었고 새벽시간이어서 피해가 컸으며
 - 로드리고료 포레다 국방장관은 “송유관 폭발은 콜롬비아 제2의 무장반군세력인 민족해방군(ELN) 소속 좌익 게릴라들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
 - 대원 5,000명의 ELN은 콜롬비아 석유 산업에 다국적 기업이 관여하는 것에 반대, 지난 10년간 이와 유사한 테러를 자행.

케냐, 인육먹는 유괴범 파문

- 유괴범들에게 납치됐던 케냐의 한 10대 소녀가 유괴범들이 인육과 동물을 닥치는 대로 먹었다고 '98년 7월 법원에서 진술해 소동.
- 이 소녀는 자신이 3년 전인 9살때 유괴됐었으며 “유괴범 가족들은 사람을 마치 양을 도살하듯 살해한 뒤 가마솥에 넣고 끓였다”면서 이들이 자신도 잡아먹으려 했으나 극적으로 도망쳤다고 증언.
- 소녀는 또 범인들이 술취한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납치해 살해한 뒤 케냐 동부 키탈레 자신들의 집 침상 밑에 파놓은 구덩

이 속에 감추었다고 진술.

사우디아라비아, 절도범 오른 손 잘라

-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이슬람 성지 메카의 카바신전 부근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도중 물건을 훔친 이슬람교도가 '98년 10월 27일 유죄판결을 받아 「올법대로」오른 손을 절단당했다고 발표
- 아울러 올 들어 사우디에서만 「올법에 따라」 22건의 참수형과 4건의 절단형이 집행됐다고 설명.

이집트, 84세 남편 깔고 앉아 질식사

- 이집트의 한 60대 부인이 말다툼을 벌이다 84세 남편을 깔고 앉아 질식사시켰다고.
- 파와크 이브라힘 압텔 라티프(62)라는 이 부인은 '98년 9월 23일 밭일을 하던 중 남편이 전처 소생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상속시키려 하는데 격분, 일을 저질렀는데 이웃 농부가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체포됐다고.

이집트, 훔친 돈 써보지도 못하고 쇠고랑

-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한 주차장 관리인이 현찰 30만달러(약4억원)가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자신이 두 차례에 걸쳐 도둑을 맞고 빈털터리

- 가 된 채 '98년 8월 9일 경찰에 체포됐다고.
- 사브리 아트와(30)라는 주차장 관리인은 2주 전 한 기업인의 차안에서 현금이 가득 들어 있는 가방을 보자 그대로 집어 들고 항구도시 알렉산드리아로 도주, 여자 친구에게 훔친 돈을 자랑.
 - 그는 아파트를 사겠다며 2만달러를 요구한 여자친구의 청을 거절했으나 결국에는 그 돈을 도둑맞고 카이로에 돌아온 후 또 다시 택시기사에게 남은 28만달러를 몽땅 털리고 빈 손으로 귀가했다가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붙잡혀 철창행.

스와질랜드, 사형집행인 공개모집

- 아프리카 남부의 스와질랜드정부가 실시한 교수형 집행인 공개모집에 50명 이상의 외국인이 쇄도했으며 이들 응모자 중에는 영국, 캐나다, 일본인까지 포함돼 있다고.
- 스와질랜드정부는 13년 이상 근무했던 교수형 집행관이 그만 둔 뒤 자국민 중에는 아무도 뒤를 잇겠다는 사람이 없자 지난 '98년 2월 외국인을 상대로 공개모집에 나섰고 10월 10일 마감.
- 파울 쿠말로 법무장관은 선발기준에 대해 “경험이나 학위는 필요 없으며 단지 보통의 교육을 받은 용감한 사람이면 된다”고 설명.

아프카니스탄, 텍수염 깎았다가 채찍질형

- 단정하게 보이려고 텍수염을 깎았던 아프카니스탄 남성들이 회교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모진 채찍질을 감수해야 했다고.
- 지난 '96년 탈레반군에 의해 장악된 후 엄격한 회교율법이 시행되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수도 카불은 이번에 텍수염을 깎은 4백9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고무호스로 채찍질을 당했으며
- 몸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여성 1백10명도 처벌받는 등 그야말로 수난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비둘기로 다이아몬드 훔쳐

-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도둑질에 사용되고 있어 일제 소탕령.
- 남아공 북서부의 알렉산더만과 오렌지강 하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국영 광산 회사인 알렉스코르는
 - '98년 5월 8일 최근 2~3년 전보다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20% 줄자 광산내에 「비둘기 경계령」을 내리는 이색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 이는 광산 인부들이 긴 코트나 도시락통 속에 보석을 숨긴 채 검색대를 통과하던 종전방식을 탈피해 길들인 비둘기

다리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매달아 철조망 울타리 바깥으로 날려보내는 교묘한 수법을 쓰기 때문.

- 이 수법은 삼킨 뱃속의 보석까지도 적발해 내는 광산의 삼엄한 X-레이 검색대를 간단히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영내에 비둘기반입 금지조치와 함께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 소속 군인들에게 비둘기를 발견 즉시 사살하도록 명령.

남아프리카, 인권보고서 공개

-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TRC)가 '98년 10월 29일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정책) 시대의 인종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함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의 진실 규명을 통한 상처의 치유와 국민적 화해의 발판을 마련.
 -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TRC는 이날 '60년부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한 '94년 5월 사이에 저질러진 인권 남용 사례를 담은 5권(2천7백50쪽)의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한 뒤 만델라 대통령에게 제출.
 - '96년 4월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TRC는 지난 30여년간에 걸친 아파르트헤이트의 인권유린 희생자 2만여명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암살, 고문, 실종 등의 실상을 조사.
 - 또한 흑인해방을 위한 군사조직과 만델라 대통령이 이끄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가혹행위, 극좌 세력들의 테러행위들도 조사 대상.
-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는
 - '78~89년 남아공을 지배한 P.W.보타 전대통령이 수 많은 인권 위반행위를 저질렀으며
 - 특히 국가안보회의를 통해 암살을 비롯한 인권 위반행위를 모의하고 집행했다고 비난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
 - 보고서는 ANC도 '90년~'94년 정적들을 공격하고 살해했으며 특히 군사조직은 혐의자들을 고문하고 적절한 절차 없이 사형을 선고, 처형함으로써 심각한 인권위반을 자행했다고 주장.
- TRC의 이같은 활동은 남아공 흑백 국민 전체에 「집단치료」를 제공하고 과거의 불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 투투 주교는 이와 관련 보고서 공개로 인해 남아공이 정화되고 단결과 화해가 이룩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 만델라 대통령도 ANC의 이름으로 자행된 가혹행위에 집단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시인.

- 하지만 TRC 출두를 거부해 온 보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백인 우파세력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ANC 인사들도 이 보고서가 부정확하다고 불만을 토로.
- 아울러 이번 보고서 공개가 백인세력에 재집결의 계기를 제공, 남아공 전역에 걸쳐 인종주의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주목.

.....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데스모드 투투 진실화해위원회(TRC)위원장: 우리는 과거의 경험(백인정권시절 자행된 각종 인권침해 사례)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치유가 불가능함을 확신한다.
-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남아공의 집권당인 ANC는 아파르트헤이트 철폐투쟁 과정에서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않아 총체적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과오를 범했다. 이에 따라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었다.
- 언론매체: 영어권 언론매체들은 종종 광범위한 자기 검열을 통해 당시 정부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견지했다. 일부 아프리카어를 사용하는 매체들은 아파르트헤이트와 정보기관의 활동을 적극 지지, 총체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 사법부: 사법부와 법조계 인사들은 아파르트헤이트의 부당성에 대한 재판에서 나타내 보이듯 지나치게 피동적인 사고에 매몰돼 있었다.
- 종교계: 남아공 기독교는 성서 신학적 교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파르트헤이트의 이념체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 종교계의 윤리적 실패로 아파르트헤이트가 살아 남을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됐다.
- 화해에 관하여: 화해는 끝이 없고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며 또한 고통스럽기까지 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이 확립되어야만 이뤄질 수 있다. 화해는 보다 품위있고 애정이 넘치며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총성 없는 전쟁

- 지구촌의 첩보전 -

〈청장보좌관실〉 황수정

I. 첩보계 어록(語錄)

- 실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임박한 실험을 경고해줄 수 있는 인력부족이 문제였다.(’98년 5월 17일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포터 고스 위원장, 미 중앙정보국이 인도 핵실험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 인도 사람들도 우리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98년 6월 4일, 조지 테넷 미 중앙정보국 국장, 인도 핵실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중앙정보국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2. 첩보상식 손자(孫子)의 오간(五間)

- 적정(敵情)을 살피는데 첩자를 침투시키

는 용간(用間)을 방법으로 다룬 사람은 손자(孫子)이며 그는 간자(間者)를 오간(五間)으로 분류

- ① 적의 영토에 사는 자를 간첩으로 이용하는 향간(鄉間),
- ② 적의 벼슬아치를 매수해 이용하는 내간(內間)이 있고 이는 요즘의 고정간첩.
- ③ 적의 첩자를 이쪽 첩자로 활용하는 반간(反間)이 있으며 이는 2중 간첩.
- ④ 거짓정보를 이쪽의 첩자에게 준 다음 적에게 잡혀 발설케 하는 희생간첩은 사간.
- ⑤ 임무를 주어 살아서 돌아오게 하는 첩자는 생간.
- 우리나라의 간첩 백석(白石)은 생간(生間)이면서 반간(反間)을 겸했다.
- 고구려에서 무고하게 처형을 받고 죽은

추남(楸南)이라는 예언가가 있는데 그 원한의 변신이 신라에서 태어난 김유신 이요 그 원한으로 반드시 고구려를 침 공할 것이니 그를 유인해 돌아오라는 사명을 받고 남파됐던 것이라 하며

- 백석은 고구려를 토벌해야 한다는데 열 을 올리고 있는 열혈청년 김유신에게 접근해 그 뜻을 이루려면 적정을 염탐 해야 한다 하고 반간(反間)으로 표변해 동해안을 따라 대동입북의 길을 떠난 다.

- 도중에 세명의 호국신명이 나타나서 백 석이 고구려 첩자임을 계시하고 김유신 은 이 2중첩자를 처형.

○ 양자강의 절경인 삼협(三峽)에 철쇄관(鐵 鎖關)이라는 여울을 지나는데 강양편에 철쇄를 걸어 두었던 쇠기둥을 지금도 볼 수 있으며 이곳은 「삼국지」의 촉나라 유 비(劉備)와 오나라 육손(陸遜)이 대치하 고 있을 때 야음에 내려 보내는 유비의 간첩선들이 이 철쇄에 걸려 날날이 전복 당한 간첩전선(戰線)이다.

※ 세계의 정보기관

■ 미 CIA : ○ 워싱턴 D.C. 서쪽의 버지니아 주 랭글리에 위치한 미 중앙정보국(CIA) 본부 건물에는 CIA를 위해 일하다 순직 한 요원들을 기리는 기념물이 있다.

- 새겨진 이름은 대부분 익명(匿名)으로 표시돼 있다.

-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라」라는 성경구절이 새겨져 있다.

- 정보조직의 생명은 「비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CIA는 2차대전중 일본의 진주만 공습 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내지 못한데 대한 반성으로 1947년 7월 트루먼 대통 령이 창설했다.

- 냉전시절에는 소련을 비롯한 대(對) 공산권 작전과 제3세계에서의 해외 공 작이 주임무였다.

- 그러나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CIA의 임무는 안보중심에서 해외 경제첩보쪽 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였다.

- CIA가 일본에 파견한 산업스파이만 1 백명이 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 지난 '94년 9년동안 CIA에서 소련첩자 로 암약해오다 검거된 2중간첩 올드리치 에임스 사건은 CIA의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

- 제임스 울시 당시 CIA국장이 이 사건 으로 사임했고

- CIA는 전성기인 '80년대초에 비해 규 모가 25% 가량 축소됐다.

○ CIA의 개혁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 례는 정보활동예산의 공개.

- 조지 테넷 CIA국장은 '98년 회계연도

중 국가정보활동 관련예산은 총 2백67억달러(그중 CIA 예산은 30억달러로 추정)라고 밝혔다.

- 지난 해에 이어 두번 째 공개이며 테넷 국장은 “정보활동 예산의 총액을 공개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정보원 및 정보수집 방법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CIA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영 MI-5 및 MI-6 : ○ 영국의 정보기관도 국내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MI-5와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MI-6로 나뉜다.

○ 당초 육군성에 소속돼있었던 MI-5와 MI-6는 현재 각각 내무성과 외무성 소속으로 바뀌었으며 정식 명칭도 SS, SIS로 변경되었다.

○ 이들 기관의 실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설치 근거법 조차 없을 정도여서 예산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의회에 소환되거나 증언하는 경우도 없다.

○ 영국정부는 설치 근거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들 기관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다가 몇년 전에야 책임자의 사진과 이름만을 공개했다.

■ 프랑스 DST : ○ 지난 '75년 6월 27일 파리 중심 광테옹 신전 근처의 툴리에 거리에서 베네수엘라 출신의 한 남자에게 접

근한 프랑스 국토감찰국 (DST) 요원 2명이 상대의 저격을 받고 쓰러졌다.

- 냉전시대 「자갈」이라는 별명으로 악명을 떨친 테러리스트 일리치 라미네즈 산체스가 바로 그였으며

- 국민들은 이때서야 비로소 DST라는 생경한 이름을 알게 되었다.

○ 국토감찰국이 무엇을 하는 곳이며 그 본부가 파리 15구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드물었다.

○ 프랑스의 정보기관은 본연의 임무를 비공개 비밀주의원칙으로 집행한다.

-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공개적 대외접촉이 전혀 없으며

- 요원을 공개 모집하지도 않는다.

○ 프랑스의 정보업무는 형식상 국내와 해외가 구별돼 있다.

- 국내 방첩보안은 내무부 산하의 DST가 맡고

- 해외 정보수집과 공작은 국방부 산하의 대외보안총국(DGSE)이 전담한다.

- 직원수는 DST가 약1천여명, DGSE가 약7천여명이라고 한다.

■ 러 FSB : ○ FSB(러시아 연방보안국)의 전신(前身)은 KGB(국가보안위원회)다.

- KGB는 소련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속의 국가」, 「붉은 권부」(權府)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으며

- 1917년 10월혁명 이후 반혁명 세력을

거세하기 위해 세운 「체카」에서 비롯
돼 각종 정치공작과 반체제 인사 감시,
강제수용소 운영 등을 해왔다.

- '91년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글라스노스
트(개방)로 변화의 바람에 휘말렸으며
- 같은 해 위기를 느낀 KGB요원들이
크림반도 별장에 있던 고르비를 연금
(軟禁)시키지만 신(新)블세비키 분파
의 반란은 3일천하로 끝나고
- KGB는 설립자 제르진스키의 동상과
함께 무너졌다.
- 당시 정식요원만 70만명, 연간예산 49
억루블(22조7백억여원)이었던 이 공룡
은 쿠데타 실패와 소련 붕괴로 해체되면
서 국내공작을 담당하는 FSB, 대외공작,
국경수비, 통신감청조직으로 분리됐다.
- 이후 FSB 활동의 초점은 민주체제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무장범죄에 두었고
경제활동을 장악한 러시아 마피아를 담
당할 유일한 조직으로 활동중이다.

- **이스라엘 모사드** : ○ 「민족과 운명을 함
께 한다」는 모토하에서 전체 국민을 정보
원으로 둔 이스라엘 모사드는 세계 최고
의 정보기관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하다.
- 국민의 신뢰를 밑천으로 주변 아랍국들
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버팀목이다.
- 모사드는 1940년대 유럽 지역 유대인들
을 비밀리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겨

오는 일을 맡은 여행사에서 비롯됐고

- 2차대전 때는 무기를 밀수입해 공군 창
설의 바탕을 마련했으며
- '60년 나치 전범을 아르헨티나 부에노
스아이레스 대로에서 본국으로 납치,
2년후 교수형에 처해 「죄값은 꼭 치르
도록한다」는 무서움을 실증하였다.
- 역사와 한(限)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모
사드는 최근 잇따른 공작 실패로 고민하
고 있다.
- 스위스 베른시 친이란계 이슬람교 단
체 건물에 전화 도청장치를 설치하다
경찰에 발각돼 다니 야툼 국장이 사임
했고
-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지도자
할리드 마살을 암살하려던 요원 2명이
요르단 당국에 붙잡히는 등 악수(惡
手)를 거듭하고 있다.

■ **일 내각조사실** : ○ 일본에서는 내각 관방
장관 소속의 내각정보조사실이 국가정보
기관이다.

- 경찰과公安조사청, 외무성, 자위대 등
에서 파견된 1백20여명의 요원들이 활
동하고 있고 소규모인만큼 CIA나
KGB 처럼 정보수집활동을 직접 수행
하지 못하고 각 부처에서 올라온 정보
를 취합, 분석해 총리에게 보고한다.
- 풍족한 자금으로 세계경제조사회 등
외곽단체와 민간연구기관을 활용, 정

확한 정세판단과 신속한 대응은 미 CIA에 뒤지지 않는다.

○ 내각조사실의 손발은 공안경찰 법무성 외청인 공안조사청(1천8백여명), 방위청 정보본부(1천6백여명), 외무성 국제정보국(3백여명), 통산성 등에 퍼져 있다.

- 법무성 외청인 공안조사청은 국내 치안-대외정보를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관련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고

- 방위청 정보본부는 군사-안보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각 군별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통합하여 '97년 1월 발족했다.

■ **중 국가안전부** : ○ 중국은 당·정·군에 50여개의 정보기관이 있으며 국무원 산하 국가안전부가 최고기관이다.

- 각 정보기관을 통제하고 정보수집-처리하는 물론 방첩, 국가전복방어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 군 총참모부 산하 군사정보부와 공산당 산하 중앙조사부, 대외연락부, 통일전선부 등도 주요 정보기관이다.

○ '90년대 들어 중국은 경제정책, 산업기술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업정보 스파이 활동을 하는 나라도 중국이며

- 또한 미국 등 50여개국, 1백70여개 도시에 1천여명의 요원을 파견, 군사기

술 정보 획득을 위한 비밀공작을 벌이고 있다.

○ 정보기관의 규모와 예산, 활동내용은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이유로 비밀로 하고 있다.

■ **홍콩 보안국** : ○ 홍콩의 정보부서는 정무장관(政務司 司長) 직속인 특구행정부내 보안국(保安局) 산하에 있다.

- 장관급인 보안국장 밑에 제1부국장(방위·치안 담당), 제2부국장(정책·소방·교도행정-정부보안), 제3부국장(출입국 관리·마약)이 있고

- 일반적 정보수집·분석업무는 제2부국장이 주도하며 대외 관계는 제1부국장이 담당한다.

○ 홍콩 정보조직은 영국 통치 시절 영국의 막강한 MI-6(해외정보국)의 시스템, 전통 및 교육을 이어 받아 매우 효율적이고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재 홍콩 출신 정보요원들은 그대로 홍콩특구에 소속되어 과거 적으로 간주했던 중국의 사실상 정보조직인 신화사(新華社) 홍콩 분사요원들과 손잡고 기업·금융 정보, 마약, 대(對) 테러 방지 정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II. 첩보계 동향

일, 방위청에서 아시아지역 첩보활동 강화

- 일본 방위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중 정보관련 부문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편성하고 방위청산하 정보본부 직원 1백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 '98년 8월 24일 당국자에 의하면 방위청의 이같은 강화책은 지역분쟁이 빈발하는 동남아, 서남아, 중동지역에 대해 일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 하며
 - 일본 방위청은 올 5월 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날 때 이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 이번 조치는 특히 인도, 파키스탄의 핵실험으로 인해 불투명해진 아시아 안보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방위청산하 정보본부는 미국의 국방정보국(DIA)을 모델로 방위청 내국과 육해공자위대, 통합막료회의(합참) 등의 각 정보기관을 통합해 지난 해 1월 발족했으며 1천6백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일, 미제 정찰위성 도입

- 일본 자민당의 「정보위성에 관한 프로젝트

트팀」은 '98년 10월 29일 위성의 조기도입을 위해 미국제 구입을 검토하고 2~3년내에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금년도 3차 추경예산이나 '99년도 예산에 계상하기로 하는 등의 제언을 하였다.

- 자민당은 이 제언에서 정보수집위성의 개발은 일본 독자적으로도 4~5년 정도면 가능하지만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할 때 공백이 길어지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위성 선진국인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거나 협력을 얻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 제언은 또 우주개발의 이용을 평화 목적에 한정한 '69년 국회결의와의 관련성에 대해 위성도입이 안보정책에 공헌을 할 뿐 아니라 민간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호 배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 일본이 도입할 위성은 지상의 1m 크기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력을 갖춘 광학센서를 탑재해 동일지점을 1일 1회 이상 관측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최면술로 아라파트 암살계획

-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는 '68년

< 일본경찰의 정보활동 >

1. 근거법령

가. 경찰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공히 임무로서 “치안정보의 수집”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경찰법), “공안의 유지”(경찰관 직무집행법)로 표현하고 있으며 학설상·실무상 공안은 정보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 관련 조 문 -

- 경찰법 제2조(경찰의 책무) ① 경찰은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피의자의 체포,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것을 책무로 한다.
-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률은 경찰관이 경찰법에 규정된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및 타 법령의 집행등 직권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경찰청 조직령(1954. 6. 30 政令 제180호)에는 경찰청 경비국·과의 소관 사무로 情報를 규정하고 있다.

- 관련 조 문 -

- 제14조의 2(경비기획과) ⑤ 경비정보의 종합적 분석 및 이와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 제15조(공안 제1과) ① 정보(공안 제2,3과 및 외사과 소관 제외)의 수집·정리, 기타 정보에 관한 사항
 - 제15조의 2(공안제2과) ① 극단적인 국가주의적 주장을 토대로 한 폭력주의적 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정리, 기타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한 정보에 관한 사항
 - 제15조의3(공안 제3과) ① 극좌적 주장을 토대로 한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정리, 기타 정보에 관한 사항
 - 제17조(외사과) ① 극좌적 주장을 토대로 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정리, 기타 정보에 관한 사항
- 1호: 외국인에 관한 정보
- 2호: 외국인 또는 활동의 본거지가 외국에 있는 일본에 의한 테러리즘에 관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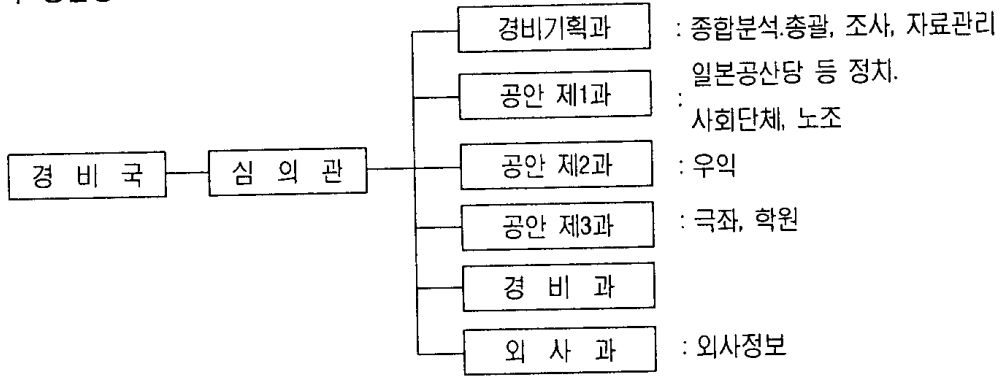
2. 정보업무 담당부서

경찰청 경비국 공안. 외사 기능 - 관구경찰국 공안부 - 도도부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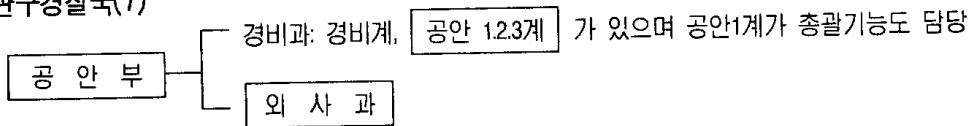
경시청 공안부, 기타 경비부 공안.외사 기능 - 경찰서 경비과 공안. 외사 기능의 시스템으로 조직

《국가경찰》

가.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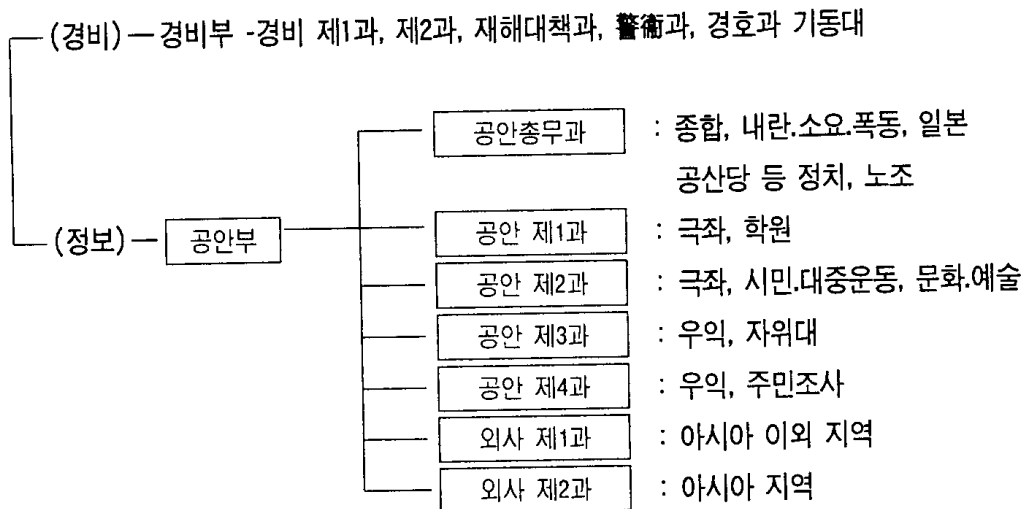
나. 관구경찰국(7)



《자치단체경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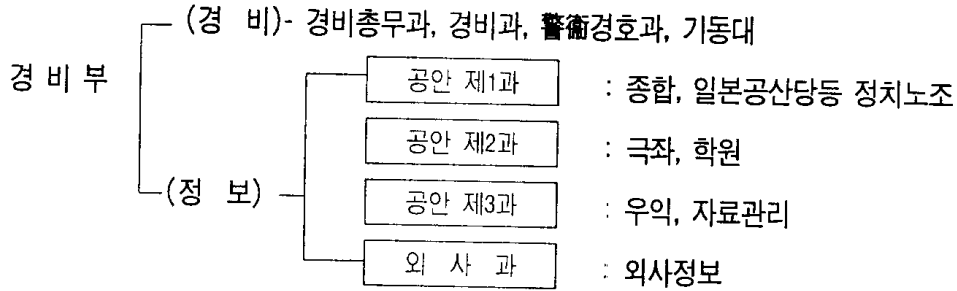
다. 都道府縣 경찰본부(47)

(1) 경시청(1)



(2) 기 타(46)

(2) 기 타(46)



라. 경찰서(1,263)

- 경비과에서 담당
- 경비과 조직

대도시 경찰서		중소도시 경찰서		농·어촌 경찰서	
경비(기획)계		경비(기획)계		경비(기획)계	
공안 1계	일본공산당등, 노조	공안 1계	일본공산당등, 노조, 자료관리	공안계	1, 2, 3 계 및 외사계 업무
공안 2계	우익, 극좌, 학원	공안 1계	우익, 극좌, 학원, 외사		
공안 3계	자료관리				
공안 4계	외사정보				

3. 활동범위

- 가.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외사)관계 등 공안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다루며 일본공산당.우익.극좌.학원.노조 대상 정보활동에 주력하고 공안은 국가의 안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찰청에서 전국 상황.활동을 직장하여 지휘.조정.통제한다.
- 나. 공개자료의 수집과 공식.비공식적인 견문보고는 물론 미행.잠복. 盜竊, 盜撮, 정보망(‘협력자’라 함)의 부식.운영, 수사까지 담당하며 지.파출소 직원을 비롯 모든 경찰관은 월1건 이상의 첩보를 제출한다.
- ※ 지.파출소 직원은 각각 담당구역이 있으며 호구조사.순회연락(방범조사)을 통하여서도 수집, 보고한다.
- 다. 전체 경찰관 228,656명(경찰청 1,333명 + 황궁경찰 922명 + 도도부현 경찰 226,401명) 가운데 공안요원은 약 30,000명(13.1%)이다.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 의장의 암살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 모사드는 아라파트의 추종자인 헤브론 출신의 한 팔레스타인 젊은이를 감근한 뒤 수개월에 걸쳐 그를 세뇌하는 작업을 벌였다.
- 코드명 「파티」로 불리는 이 남성에게 매일 최면을 건 뒤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의 적」이라는 말을 반복케 하였으며
- 파티는 아라파트의 사진을 표적삼아 총을 쏘는 훈련도 받았다.
- 모사드는 파티를 인접한 한 아랍국가에서 풀어준 뒤 임무수행을 지시했으나 그는 석방되자마자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달려가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누설했다.

○ 한편 모사드는 계획이 실패할 것에 대비해 파티의 무선기에 폭탄을 장착, PLO 간부들이 무선기를 점검하는 순간 이를 터뜨린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이 또한 실패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스라엘 - 북한 접촉에 제동

○ '93년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란과 시리아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던 이스라엘과 북한간의 비밀 접촉은 대외정보기관인 모사드의 방해로 무산됐다는 자

료가 '98년 6월 23일 공개되었다.

- 모사드가 당시 이츠하크 라빈 총리를 등에 업고 공작을 전개, 북한과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중이던 시몬 페레스 당시 외무장관의 계획을 좌초시켰다는 것이며
- 모사드는 페레스 장관이 추진중이던 대북한 교류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외무부가 추산한 수천만달러가 아니라 수억달러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라빈 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페레스 장관은 이에 앞서 이스라엘 대표단이 마련한 대북 협력협정 초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미 국무부의 여러 관계자로부터도 이미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였다고 이 자료는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일설에 의하면 당시 미국이 대북 접촉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계획에 반대했으며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과의 오슬로협정 마무리 작업으로 손이 달려 스스로 포기했다고 그 배경을 다르게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 구 KGB가 교황암살 기도

○ 구 소련 KGB(국가보안위원회)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암살을 기도했었던 것

으로 '98년 4월 7일 배포된 이탈리아 정보기구 문서들에 의해 밝혀졌다.

- KGB는 또 구 소련과의 최고 협상자였던 카사롤리 추기경에 대해서는 마이크로폰을 이용, 첩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81년 5월 성(聖)베드로광장에서 일어난 바오로 2세 암살기도 사건을 수사해 온 이탈리아 정보연락기구(Cesis)가 이날 배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 KGB는 역정보와 도발을 통해 가톨릭 교회와 바오로 2세의 신용을 손상시키려 했으며 필요한 경우 교황을 육체적으로 제거하려 했었고
 - 또한 KGB가 교황청 국무장관이며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시절 교황청 「동방정책」의 주요 추진자였던 카사롤리 추기경에 대해 추기경의 조카를 이용, 첩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북한, 러 군사정보 빼내기 암약

- 북한과 파키스탄, 리비아, 이란 등이 러시아국영 과학-기술연구소들에서 대량살상 무기 및 이의 수송기술과 관련된 군사계획에 연루돼 있으며 이중 많은 수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실이 '98년 5월 22일 공개된

자료에서 밝혀졌다.

- 그 내용은 FSB가 최근 시베리아 옴스크주에서 군사용 및 민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외국으로 빼내려고 한 외국사업가의 기도를 차단했으며
- FSB는 보리스 옐친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들 외국기업의 활동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아울러 FSB가 원자력부·경제부·통상산업부·러시아 우주국·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일련의 정부 기관에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된 군사계획에 연루돼 있는 외국 기업들의 명단을 배부하고 산하 기관들이 이들 기업과 특정분야의 수출거래를 하지 않도록 촉구했다고 하며
- 특히 북한과 파키스탄, 리비아, 이란 등 기업들이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해 추가로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FSB가 이같은 혐의로 영업행위를 중단시킨 곳은 현재까지 이란의 「사남」그룹 한곳 뿐이지만 다른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FSB의 「블랙 리스트」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러, FSB 방대한 기구로 재탄생

- 과거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는 세계 최대의 정보조직이었다.
 - 중앙정보국(CIA)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보조직이 25개 정보기관으로 분산돼

있는데 반해 소련은 KGB와 군 참모본부 정보총국(GRU) 두 기관에 집중돼 있었다.

- 특히 KGB는 별도로 국경수비 임무까지 맡아 30만 군병력까지 보유했다.

○ 이처럼 막강했던 KGB는 '92년 1월 소련 해체로 붕괴됐다.

-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구악(舊惡) 일소와 민주화를 명분으로 KGB 무력화에 착수했다.

- 옐친이 KGB를 배척한 것은 '91년 8월

보수파 쿠데타에서 KGB가 주역이었기 때문이다.

- 옐친은 KGB를 해외정보국(SVR)과 보안성(MD)으로 양분했으며

- '93년 MD를 다시 연방방첩부(FSK)로 격하시켰다.

- 옛 소련시절 42만명이었던 요원수는 8만명으로 줄어들었다.

○ 그러나 옐친의 정보기관 길들이기 작업은 러시아의 정보수집 능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아인슈타인은 소련 스파이를 사랑>

○ 최근 발견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1879~1955)의 편지에서 2차 대전 당시와 종전후 그가 소련 스파이와 사랑을 나누었던 사실이 '98년 6월 1일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 이 러브레터는 아인슈타인이 66~67세이던 '45년 11월부터 '46년 7월까지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소련 조각가 세르게이 코넨코프의 처 마르가리타 코넨코바(당시 51~52세)에게 보낸 9통이며

- 마르가리타는 아인슈타인으로부터 미국의 원자력 기밀을 알아내려 한 「1급 스파이」로 알려져 있고 코넨코프는 프린스턴 대학 구내의 아인슈타인 흉상을 조각한 인물이다.

○ 아인슈타인은 1945년 마리카리타 부부가 모스크바로 소환된 뒤 쓴 편지에서 “모든 것이 당신을 생각나게 한다. 알마리의 담요, 사진들,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근사한 파이프, 그리고 짐동사니 물건들과 고독한 등지 등...”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 「알마리」는 알베르트와 마르가리타를 합성한 이름

- 「등지」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내 아인슈타인 사무실을 가리킨다.

○ 아인슈타인은 '45년 12월 30일자 편지에서 “인류는 가득히 드리워진 새로운 위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앞서 경험한 공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음이 분명하다”고 적기도 했다.

○ 아인슈타인은 두번 째 부인 엘사가 죽기 1년전인 1935년 마르가리타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 애인의 스파이 신분과 임무를 알고 있었는지는 편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고

- 아인슈타인이 원폭 제조계획 「맨해튼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폭관련 기밀이 누설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체첸전쟁에서 러시아는 정보부족으로 많은 인적·물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 러시아 정규군은 체첸 게릴라에 대해 졸전을 거듭했다.
- 강력한 정보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한 엘친은 '95년 8월 FSK를 연방보안국(FSB)으로 개칭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 '97년 FSB는 조직개편을 통해 13개 부서를 거느린 방대한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 대통령 직속인 FSB는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법적 감독을 받지 않는다.
 - 현재 FSB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조직범죄 퇴치, 그리고 핵·우주항공·군사기술 등 러시아가 보유한 첨단과학기술의 보호이다.
 - 최근 들어 러시아가 영국·노르웨이 등과 산업스파이 공방을 벌이면서 외교관을 서로 추방하는 외교적 마찰을 빚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러, FSB 인터넷 검열 추진

-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러시아 국민들이 주고 받는 전자우편(E메일)과 웹페이지를 언제든지 검열할 수 있는 사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98년 7월 21일 밝혀졌다.
 - FSB가 SORM(수사보장체제의 약어)이라는 암호명으로 추진중인 이 계획은 러시아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자체 컴퓨터내에 「블랙 박스」를 설치, 이 블랙박스와 FSB통제실을 바로 연결하는 고속 전용 통신회선을 통해 FSB가 사용자의 모든 인터넷 서신과 웹페이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FSB 관계자는 SORM계획의 사실 여부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인터넷 러시아 통신망 서비스협회 관계자는 이 문제로 이미 네 차례나 회의를 가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FSB가 전자우편을 사찰하려 할 경우 법

< FSB의 주임무는 「스파이 추적」 >

-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구 소련의 KGB에 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 지난 '91년 소련붕괴와 함께 해체된 KGB는 러시아정부 출범후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FSB와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해외정보국(SVR)으로 분화되면서 사실상 부활했다.
 - FSB는 러시아의 핵, 우주항공, 고급 군사기밀을 빼내려는 스파이를 찾아내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 영장없이도 각종 단체나 기업, 주택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의심이 가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찰권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으로는 도청이나 개인서신 검열처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통제 없이 마음대로 전

자우편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법적 절차는 무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스파이혐의 외교관 추방사례>

- 러시아가 「스파이」운운하며 상대국과 외교관을 맞추방한 경우는 '91년의 소(蘇)연방 해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 가장 대표적인 것은 '96년에 있었던 영국과의 스파이 분쟁이며 그해 5월 러시아 당국이 스파이 활동으로 체포된 자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영국 정보기관 MI-6을 위해 일했다고 시인했다는 것이 추방이유였다.
 - 러시아 외무부는 앤드루 우드 러시아 주재 영국대사를 소환해 「엄중 항의」하고 관련된 영국대사관 직원 9명의 명단을 제시했다.
 - 그러나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실제로 추방한 것은 4명이었고 영국은 이에 대응해 영국 주재 러시아대사관 직원 4명을 추방했다.
 - 양국은 '94년 4월에도 러시아가 스파이활동을 한 혐의로 MI-6의 모스크바 책임자 존 스카렛을 추방하자 영국이 보복조치로 러시아 외교관 한 명을 추방하였으나 당시에는 어느 쪽의 외교관도 「비우호적 인물(persona non grata)」로 선언되지는 않고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었다.
- 미국과도 냉전종식 이후 지난 '94년 스파이 분쟁을 빚었다.
 - 이 사건은 미국측이 먼저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 케이스로서 미중앙정보국(CIA) 최대의 스파이사건인 올드리치 에이 스킨을 조사하던 미 당국은 워싱턴 주재 러시아대사관의 정보기관 책임자인 알렉산드르 뤼센코가 연루됐음을 밝혀내고 추방령을 내렸다.
 - 당시 에이 스킨은 러시아측으로부터 1백5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자 러시아측은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CIA 책임자인 제임스 모리스를 「비우호적 인물」로 지명해 추방했다.
- 가장 최근에 러시아와 갈등을 빚은 나라는 노르웨이이다.
 - 지난 3월 노르웨이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하였고 러시아 역시 2명의 노르웨이 외교관을 추방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 당시 러시아 정보기관 대변인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공개화한 노르웨이 정부의 태도는 품위가 없으며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 노르웨이와는 '96년 2월에도 「니키티 사건」으로 부딪친 바 있다.
 - 러시아의 퇴역 해군 장교 알렉산드르 니키티가 러시아가 북해에 핵 폐기물을 투척하고 있다는 자료를 노르웨이 민간환경단체에 전달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며
 - 노르웨이는 니키티에게 자유언론상을 수여하였고 러시아 상선 선장을 마약밀수혐의로 체포해 11개월간 구금하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러, FSB를 친위기관화

- 러시아 최고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이 요즘 KGB(국가보안위원회) 영광의 재현을 외치고 있다.
 - 지난 '98년 7월 25일 엘친 대통령의 신임을 듬뿍 받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전 대통령 행정실 제1차장)이 FSB 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어깨에 다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 「심복」을 정보기관 수장에 얹혀놓아야 예상되는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수월할 것이라는 크렘린궁의 「정치적 계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러시아 정보기관은 '91년 소련 붕괴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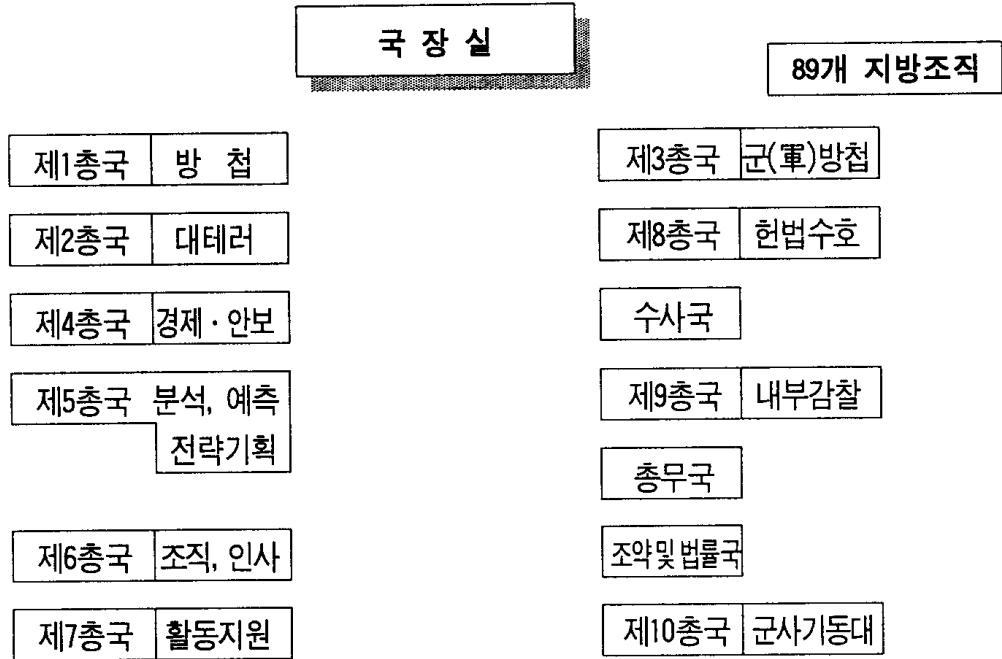
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 KGB 정보사찰의 피해를 경험하여 정보기관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엘친 대통령은 집권 초기 정보기관을 푸대접했다.
- 명칭만도 KGB에서 연방보안청(AFB), 보안부(MB), 연방방첩국(FSK), 연방보안국(FSB) 등으로 수 차례 바꿨다.
- 국장도 1년이 멀다 않고 교체되어 코발료프의 만 2년이 최장수로 기록될 정도였다.
- 인원도 KGB시대의 35만에서 7만으로 격감됐다.
- 그후 체첸전쟁 등을 겪으면서 엘친 대통령은 정보조직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다.

<신임 FSB 푸틴국장>

-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의 신임 국장으로 임명된 블라디미르 푸틴(46)은 옛 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신속히 적응하며 입지를 확보해 온 야심가적 인물이다.
 - '98년 7월 25일 니콜라이 코발료프의 후임으로 임명된 푸틴은 구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에서 일한 적이 있으나 무슨 일을 했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 그는 '75년 KGB 해외정보국에 들어가 곧바로 독일에 파견됐다가 '80년대 말 귀국했다.
 - 귀국후 레닌그라드대학 부총장을 역임하였고 '91년 소련 붕괴 이후 재빨리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이끌던 개혁주도 세력에 가담했다.
 - 아나톨리 소브차크 시장의 특별보좌관이 돼 개혁작업을 도왔고 그 뒤 부시장에 임명됐다.
- 그는 아나톨리 추바이스 전 재무장관과도 함께 손발을 맞췄다.
 - 지난 해 3월 대통령 행정실에 들어가면서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절 친분을 맺은 추바이스 전 재무장관, 나탈리아 데멘티예바 문화장관,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차관 등과 함께 「크렘린 궁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인맥」으로 주목을 받았다.
 - 지난 5월 대통령행정실 제1부실장에 오른 푸틴은 25일 마침내 자신의 친정에 최고 책임자로 복귀한 것이다.

〈FSB 조직〉



- '95년부터 FSB란 명칭하에 정보조직 재건작업이 본격화됐다.
- 이때 「KGB가 부활되고 있다」고 서방측

- 에서는 비난을 하였다.
- 그러나 재건작업을 지휘하던 미하일 바르수코프 전 FSB 국장이 권력투쟁에서

< 해외정보국 (SVR) >

- 러시아 해외정보국(SVR)은 '91년 소련 붕괴 후 KGB내 해외 정보 수집과 공작을 담당했던 제1총국의 업무를 넘겨받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승격했다.
- SVR의 주업무는 대량파괴 핵무기 제조 감시, 대(對) 테러활동, 마약거래 단속, 국제범죄단 감시, 불법무기 거래 감시와 러시아인 보호활동이다.
- '96년 열린 대통령이 SVR의 정보수집이 기대 이하라며 상업정보의 중요성을 역설한 뒤 우주기술 유출 방지와 플루토늄 등 원자재 유출 감시활동 업무가 추가됐다.
- 특히 미 중앙정보국(CIA)이나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을 포함한 각국의 정보요원 포섭공작도 하고 있다.
- SVR는 수십개국의 외국 정보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CIA와 치열한 정보수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밀려나면서 FSB는 다시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 그 후 FSB를 비(非)정치적 전문가 중심의 정보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코발료프가 국장으로 임명됐다
가 이번에 해임된 것이었다.

교황청, 피살된 근위대장이 「슈타지」요원

- 부인과 함께 지난 '98년 5월 4일 부하 대원에 의해 살해된 교황청 근위대장은 옛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유급스파이였다는 것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다.
- 그 내용은 에스테르만 대령(44)이 지난 '79년 슈타지를 위해 일했으며 '80년에는 스파이로 일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이며
 - 돈에 쪼들린 에스테르만 대장은 한달에 1천 5백마르크(약 8백33달러)를 지급받았고 암호명은 「베르데」를 사용했으며
 -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슈타지 조사를 담당했던 위원회의 한 대변인은 동독 비밀경찰이 지난 '79년 실제로 「베르데」 파일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프랑스, 첩보기관에서 「다이애나 암살」설

-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의 죽음에 대한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음모설이 '98년 6월 3일 제

기돼 다이애나 「암살론」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 최근 영국에서 방영된 한 TV 프로그램은 다이애나의 죽음에 프랑스 첩보기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영국 ITV가 3일 방영한 「다이애나-교통사고 뒤에 숨겨진 비밀」이며 이 방송은 교통사고 직전 차량 앞에 비친 플래시로 인한 눈부심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 더욱이 운전사 앙리 폴이 파리 리츠호텔에서 일했던 당시 프랑스 정보원들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그의 친구 증언을 인용하면서 교통사고가 프랑스 비밀첩보기관의 사주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암시했다.
 - 이 방송은 또 사고 당시 운전사가 만취 상태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혈중 알콜농도 테스트가 믿을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다이애나의 남자친구였던 제임스 휴이트가 “영국왕실로부터 다이애나와 관계를 끝내라고 협박받았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음모론을 부추겼다.
 - 무엇보다 지금까지와 다른 내용은 목격자였던 프랑수와 르비스트르의 증언으로서 그는 당시 알마교 지하차도 터널을 통과했을 때 사고 직전 차량 앞쪽에서 눈부신 섬광을 보았다는 것이다.
 - 방송은 이 섬광이 전시에 포로들을 고문

할 때 사용하는 플래시라고 설명했다.

- ITV의 방송에 대해 정치가와 TV평론가들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파파라초들의 추격을 피해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부딪혔다는 최초의 해석에서 운전사가 만취된상태, 다이애나의 임신 6주설, 아랍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영국왕실의 암살설까지 번지자 ITV의 프랑스개입설은 「그저 그런」또 하나의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영, 동물농장 작가 「오웰」리스트 공개

- 「1984」, 「동물농장」을 통해 전체주의를 통렬하게 풍자한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1903~50)이 2차 대전후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은밀히 정부에 보고한 문단·정계·언론계의 친공산주의자 명단이 그의 사후 50여년만에 최근 공개됐으며
 - 영국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자인 오웰이 냉전체제하에서 「빅브라더」의 하수인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이 「오웰 리스트」에는 작가 조지 버나드 쇼, 배우 찰리 채플린 등 진보적 성향을 지닌 문화계와 정계의 당대명사 1백30여명이 올라있으며 이중 30여명은

생존해 있다.

- 오웰은 명단에서 조지 버나드 쇼를 「확실한 친러시아주의자」, 계관시인 C 데이 루이스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언론인 킹슬리 마틴은 「타락한 자유주의자」, 희곡작가 션 오케이시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 등으로 평가했다.
- 오웰은 '49년 명단을 외무부 반(反)공산주의 선전실에 근무하는 친구 실리어 커원(81)에게 넘겼다.
 - 이것은 그 뒤 정부 공공기록보관소에 보관됐다가 깜쪽같이 사라졌다.
 - 그러나 피터 데이비슨 드몬트포트대 교수는 끈질긴 추적 끝에 공산주의자 동태파악 내용이 적힌 노트를 찾아냈다.
 - 데이비슨교수는 이수첩의 내용이 정부에 제출한 명단과 거의 일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 MI-5가 베일 벗어

- 90년 가까이 철저히 베일 뒤에 가려져 왔던 영국의 정보기관 MI-5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 MI-5는 '98년 7월 29일 인터넷에 자체 사이트를 열고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자신의 실체를 일부 공개했다.
 - 1909년 대내외 첩보활동을 위해 설립된 MI-5는 미국의 CIA 및 옛 소련의

< 영국의 군사위성 스카이넷 >

- 영국은 '98년 1월 최신형 군사위성 「스카이넷 4D」발사에 성공했다.
 - 이는 '80년대에 만들어진 「스카이넷 4A, 4B, 4C」를 대체하는 3기의 군사위성(스카이넷 4D, 4E, 4F)을 제작·발사하기로 한 프로젝트의 첫 단계이다.
 - 영국은 미국의 뒤를 잇는 군사위성 분야의 2인자이며
 - '60년대 구 소련과 미국이 「우주개발전쟁」을 벌이던 시절 영국은 「블루 스트릭」탄도미사일 개발포기를 선언하면서 경쟁불참을 밝힌 바 있다.
 - 당시 영국과 미국은 “지상판독사진 등 위성을 통해 미국이 수집한 정보의 대부분과 영국 지상정보기관이 얻은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는 정보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 스카이넷 4D의 성공적 발사 및 운용으로 영국은 유럽내 군사위성 경쟁에서 선두자리를 지키면서 해외군사활동 능력을 크게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 영국과 프랑스가 세운 컨소시엄「마트라 마르코니 스페이스」는 새 군사위성 개발사업에 7억1천만달러(약 9천5백억원)를 투입했다.
 - 이 회사는 지난 달 독일의 다임러벤츠항공과 추가로 통합해 종업원 4천 8백명에 연간 매출 22억달러인 초대형 회사로 변신하고 있으며
 - 향후 2년내에 70여개의 위성을 제작·발사할 계획도 갖고 있다.
- 지금까지 영국 스카이넷 위성들의 주요 임무는 유럽지역에 한정됐었다.
 - 따라서 수신용 안테나가 유럽지역을 향해 고정될 수밖에 없어 동아시아 등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신호를 받아드리기 위해서는 부득이 위성궤도를 수정해야 했다.
 - 이는 위성 운영상의 실수와 고장의 제1원인이었다.
- 새로운 스카이넷 4D, 4E, 4F 시리즈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다목적 활동에 유리하도록 기능을 갖췄다.
 - 이 시리즈는 우선 민간위성의 기능도 일부 담당한다.
 - 폭주하는 정보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초광역 주파수 대역과신형 전파뒤잉킴 방지장치가 채택됐다.
 - 또 궤도수정 없이 최상의 수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안테나가 스스로 방향을 조절하도록 설계됐다.
- '98년과 '99년 9월 각각 발사될 스카이넷 4E, 4F에는 아리안 로켓이 추진체로 사용돼 앞으로 7년간 적도 상공 3만3천km 지점에 배치될 계획이다.
- 특이한 점은 영국정부가 올 들어 처음으로 군사위성 여 주파수 대역의 민간목적 사용을 허가했다는 점이며 군사위성을 통해 대학에서 원격화상수업을 진행하고 대기관측 및 농작물 수확상황을 파악하게 한다는 것이다.
- 군사위성의 이용상 문제점으로 향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위성사용 수요 가운데 효과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점으로서 실제로 '96년 합동 군사훈련기간중 미 해병의 식량지원 요청은 프랑스 공군의 기상적군 전투기 정보요구와 동일한 비중이 매겨져 작전수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KGB와 함께 유명했지만 영화「007」속에서 제임스 본드가 소속된 기관 정도로만 알려져 왔다.

○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MI-5는 현재 44만건의 극비 파일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1만 3천명의 영국인과 7천명의 외국인을 「주시」하고 있다.

- 국장 아래 정보수집·스파이활동 등 6개 부서로 구성된 MI-5는 올해 1억4천 파운드(3천억여원)의 예산으로 북아일랜드와 관련된 테러(25%)·기술개발(17%)·국제테러(15%)·첩보(12%) 등에 지출하고 있다.

- MI-5는 영국 왕실이나 주요 정치인의 사생활을 사찰하거나 노동조합·민간단체와 그 지도부를 감시하는 활동을 「항상」수행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 음침한 정보기관이라는 일반인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MI-5는 최신의 근무환경을 가진 사무실과 냉방시설·매점·체육관 등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1천9백명의 직원중 47%가 여성임을 강조했다.

영, MI-6 우방상대 비밀첩보 활동

○ 영국 정보기관인 MI-6이 독일 분데스뱅크의 고위 간부를 포섭, 지난 12년간 독일 금리정책에 관한 정보를 빼냈다는 「블럼」활동이 폭로돼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 MI-6 요원 출신인 리처드 톰린슨이 영국 의회의 정보-안보위원회에 보낸 서한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언론에 까지 보도된 것이며

- 톰린슨의 폭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영국과 독일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들이어서 더 문제가 되고있다.

• 톰린슨은 서한에서 MI-6이 지난 '86년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뱅크의 고위 간부를 포섭, 「오케이더」란 암호명의 정보원으로 활용하면서 금리정책에 관한 정보와 함께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시 독일의 협상전략에 관한 정보를 빼냈다고 주장했고 분데스뱅크 간부가 MI-6에 포섭된 것은 순전히 돈 때문이었다 하며

• 그는 또 런던의 복스홀 크로스에 있는 MI-6의 본부 내에 10명 정도의 요원으로 구성된 UKB라는 비밀조직이 유럽 내 우방국들에 대한 첩보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 UKB는 분데스뱅크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했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등도 타깃으로 삼고 있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 톰린슨은 「입」이 가벼웠던 탓에 지난 '95년 MI-6에서 해고됐으며 올 들어 기밀누

설죄로 6개월간 복역한 뒤 현재 스위스에 머물면서 망명을 신청중이다.

- 그의 폭로에 대하여는 신뢰도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과거 세르비아 기업인이 영국 보수당에 정치헌금을 했다고 폭로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고
-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의무장관을 역임했던 오웬과 허드경 두 사람이 BBC TV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유럽 우방국들에 대한 첩보활동을 인정한 일도 있어 톰린슨의 이번 폭로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톰린슨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난 '96년의 카다피 리비아 대통령 암살계획과 '92년의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대통령 암살계획 등 MI-6의 비밀공작 활동을 폭로하였었고
- MI-6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톰린슨의 주장에 대한 보도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영국 언론들은 이를 다룰 수 없었다 하며
- 이번에 톰린슨의 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인터넷 때문으로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당했던 톰린슨은 제네바에 있는 한 인터넷 카페의 컴퓨터로 영국 의회에 보낼 서한을 작성했고
- 나중에 스위스 언론인 2명이 우연히 이 파일을 발견하고는 인터넷에 올림으로

써 MI-6의 보도금지 조치가 무의미해졌다고 한다.

미, CIA 어린이용 웹사이트 개설

- 미 중앙정보국(CIA)이 '98년 4월 22일 어린이들을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 CIA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물론 인터랙티브 스파이 게임과 지리 퀴즈게임, 독립전쟁 이후 첩보전의 주요 역사 등에 관한 설명도 담고 있어 첫날부터 전세계 어린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 CIA의 「어린이를 위한 홈페이지」는 지난해 4월 연방정부의 각 기관에게 어린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CIA의 어린이 웹사이트 주소는 「www.odci.gov/cia/ciakids」이다.

미, CIA 「해고자 입막기」골치

- 미 중앙정보국(CIA)이 해고된 정보요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 해고된 요원들이 국가기밀을 누설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외국정부에 기밀을 팔아 먹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고
 - 이 때문에 CIA는 해고자들의 복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최근 협박죄로 기소된 전직 CIA요원 더글

러스 그로트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 16년 전에 해고된 그는 오랫동안 CIA에 앙심을 품고 “외국 정부에 CIA의 암호 해독 기밀을 넘기겠다”고 협박, 50만 달러를 뜯어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그는 근무당시 외국 정부가 대사관과 전문을 주고 받을 때 사용하는 암호체계를 해독하는 일을 했다.
- CIA측은 그에게 갖은 설득을 다했으나 끝내 어쩔 수 없이 기소했다.
- CIA는 “해고자들의 협박에 굴복, 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 우선 문제를 일으켜 해고해야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3년 이상 월급을 주며 대기발령상태에 두면서 새 직장을 알선해 준다는 것이다.
- 만일 해고 대상자가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원한다면 최고 10만달러까지 지원하고 있다.
- 또한 해고대상자의 심리상태가 미덥지 못할 경우 정신과 치료까지 CIA의 예산으로 받게 해준다.
- 하지만 CIA의 해고자 처리 문제 역시 극비사항으로 구체적인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 정보기관 인권 · 환경단체까지 감시

- 유럽의회는 '98년 5월 11일 미국 정보기관이 인권감시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이나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들까지 첩보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정치통제술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의 미공개 보고서를 통해 비난 하였다.
-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국(NSA)이 일부 정보를 겨냥한 선별된 키워드를 이용해 인공위성 전송을 감시하는 암호명 「에셜론」(Echelon)이라는 사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키워드 중에는 앰네스티와 그린피스 등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존슨 월터 그린피스 통신국장은 암스테르담의 본부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했으며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아나타 티센 대변인은 정치범 석방과 관련해 정부에 보낸 메시지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았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유럽의회는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 에셜론은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뉴질랜드 및 미국에 있는 6개 전자도청 시설을 이용해 인터넷 원거리 통신위성을 통한 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며

- 잠재력이 큰 관심 정보사항은 워싱턴 근교 포트 미드에 있는 미 안전보장국 본부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의회 보고서는 또 에셀론이 산업스파이와 관련이 있을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기업들에 그들의 서비스를 대여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지난 '94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에어버스 항공기와 무기를 공급하려던 프랑스 상사들의 계약이 마지막 순간에 좌절된 배후에는 이런 산업상의 편의에 따른 영향이 미쳤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 CIA가 인도 「핵 은닉술」에 당해

- 인도의 핵실험 준비를 까마득히 몰랐던 미 중앙정보국(CIA)의 첩보능력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의 눈을 피한 인도의 은닉술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 미국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이 그 동안 중앙정보국의 핵실험 첩보취득 실패요인들을 조사해 온 중간평가를 보면 실패요인은 첩보위성을 피한 인도의 은닉술, 인도 내 미 중앙정보국 비밀요원의 부족, 첩보위성 분석가들의 과다한 업무 등이다.
- 정보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의 첩보사진

분석가들은 모든 첩보사진을 24시간 들여다 보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은 아니며 첩보사진을 즉각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자료용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게다가 인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첩보위성을 피하는 탁월한 은닉술 두 가지를 사용했다.
 - 하나는 미국의 첩보위성이 다른 분쟁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를 선택하여 핵실험 준비를 해왔다.
 -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모래바람이 휘몰아칠 때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 사막에서 일어나는 모래바람은 첩보위성의 「시야」를 가렸으며 또한 모래 위에 생긴 핵실험 준비 자국도 쉽게 지워졌던 것이다.
 - 물론 미국에는 모래바람이나 구름을 꿰뚫고 들어가 지상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라그로스)첩보위성도 있으나 이 위성의 움직임은 쉽게 감지될 수 있어 인도 전문가들은 이 위성이 인도 상공을 지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인도 상공을 지난 뒤 핵실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CIA 스파이 정리해고로 정보망에 구멍

- 인도 핵실험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망

신을 당했던 미 중앙정보국(CIA)의 허점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 공교롭게도 인도 핵실험 일주일 전인 '98년 5월 4일 조지 테넷 CIA국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스파이망을 활용하는 정보수집능력이 급격히 퇴보한 반면 첩보위성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며 표명한 우려가 인도 핵실험을 계기로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
- CIA는 냉전종식 이후 예산이 줄고 세계 각국에서 CIA의 간첩활동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자 첩보원이나 정보원을 활용해 수집하는 대인(對人)정보조직을 대폭 감축했다.
- 이 때문에 CIA가 생산하는 쓸만한 정보의 80%가 통신도청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 그러나 정찰위성이나 통신위성을 이용한 미국의 간첩행위가 첨단화할수록 각국의 방어력도 향상돼 기술로는 침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고 CIA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 게다가 인도는 '95년 핵실험 준비단계에서 미 정찰위성에 사진을 찍혀 좌절당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법을 구사했다.
- 최근 가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한 파키스탄에 대응하여 미사일 개

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처럼 미사일 실험기지에 인원과 차량을 집중배치하면서 실제로는 핵실험 준비를 한 것이다.

- 핵실험 관계자들은 미국의 도청을 막기 위해 전화로는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때문에 미 첩보위성들은 미사일 실험기지를 집중감시한 반면 핵실험 기지였던 포크란 사막은 사홀에 한 번꼴로 사진을 찍었다.
- 더구나 미국이 그 동안 고급정보원으로 활용해오던 인도의 대간첩기구 부서장의 간첩행위가 발각돼 지난 해 해임됨으로써 대인정보 인맥도 완전히 끊겼다.
- 이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테넷 CIA국장은 대인정보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과거 비밀작전에 투입됐다 은퇴한 베테랑요원들을 예비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 그러나 이 구상이 실행에 옮겨진다고 해도 CIA비밀작전 부서의 위상을 되찾는 데는 최소한 7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 2차대전시 최고 스파이는?

- 제2차 세계대전때 미국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스파이」는 독일주재 일본대사 라고 한다.

< 첩보위성의 능력 >

- '98년 8월 31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대포동 1호는 미국의 첩보위성에 위해서 '94년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 영변에 건설중인 지하시설이 핵시설일지 모른다는 사실도 역시 첩보위성을 근거로 했다.
 - 첩보위성은 전능한 감시자이며 차량의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설이 사실일까.
- 위성의 해상도(解像度)는 군사기밀이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미국 첩보위성 KH11은 해상도 15cm로 알려져 있다.
 - 해상도 1m가 사방 1m 크기의 물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해상도 15cm면 차량종류는 물론 위장물과 자연물까지 구별할 수 있다.
 - 15cm 해상도를 처음 내놓은 것이 '60년대 중반 발사된 KH8(암호명「갬빗」;선수(先手)라는 뜻)이고 보면 차량번호 식별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추정이다.
- KH11이 탑재한 카메라 렌즈는 직경 23m로서 나사의 허블 천체망원경과 비슷한 수준이다.
 - 고도도 정지위성(3만6,000km)과 비교하면 물론이거니와 저궤도위성 중에서도 낮은 300km에서 출발한다.
 - 고도가 낮으면 위성의 속도가 떨어지기 쉬워 추진연료가 필요하다.
 - 카메라등 기기의 비중도 커서 위성의 무게는 13톤이며 크기도 높이19m 직경 3m에 이른다.
- 우리나라에는 첩보위성이 없으며 통신위성 무궁화, 과학위성 우리별을 쏘아 올렸고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가 '98년 9월말 조립을 마치고 내년 8월께 발사될 예정이다.
 - 고도 685km 상공에서 남북으로 지구를 하루 14바퀴 도는 아리랑1호는 한반도와 해양관측, 한반도 지도제작, 과학 실험이 목적이다.
 - 위성에 탑재한 해상도 10m의 전자광학카메라(EOC)도 우리 기술로는 큰 의의를 갖으며 아리랑 2호는 해상도를 1m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고 미국정부가 해상도 1m를 군사적 목적 이외의 민간위성에 개방한 것은 '94년의 일이다.

미국 첩보 위성 개발사

- '58년 코로나/디스커버리 시리즈로 출발했다.
- 괄목할만한 카메라시스템은 '62년 KH4이고 KH라는 위성이름은 열쇠구멍(Keyhole)이라는 카메라이름을 딴 것이다.
- '63~67년 발사된 KH7은 해상도가 0.5m로 진정한 의미의 근접 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 KH7은 137km까지 고도를 낮춰 단 5일의 짧은 생을 날았다.
- 영국의 무기연감「제인스 웨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KH11 2~3기와 KH11개선판(KH12로 추정) 2기, 라크로스 레이더 위 위성을 운영중이다.
- 최근엔 장거리 휴대전화등의 전파자료를 도청할 수 있는 위성도 운영하고 있다.

- 510kg 중형위성(수명 3년)인 아리랑 1호의 제작비는 1,000억원이며 개발비까지 포함하면 2,000억원이 들었으므로 KH11 같은 메머드급 위성의 비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

- ① 본체: 위성의 방향, 온도, 궤도상 위치를 유지하도록 각종 제어계 구비
- ② 태양전지판: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전력공급
- ③ 전자광학카메라(EOC): 주목적은 지도제작. 정확한 지도를 전산 처리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이 궁극적 목표.
- ④ 해양관측카메라(LRC): 색깔을 구분할 수 있어 적조, 플랑크톤, 기름오염 등 탐사
- ⑤ 과학탐재체: 이온층 관측, 방사선, 측정등 간단한 우주실험 수행
- ⑥ 규모: 국산화율 60%로서 길이 6.9m, 너비 1.34m, 높이 2.35m에 무게 510kg(미국첩보위성 KH11은 아리랑 1호에 비하여 높이가 16배나 된다)

- 그러나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지하나 수중까지 꿰뚫어 보기는 어렵다.
 - 전자파 카메라는 투시가 가능하지만 구름을 투과, 날씨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정도이고 방사능물질을 검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 지상에서 진행중인 건설과정을 판독, 시설용도를 추정할 뿐이다.
 - 결국 아무리 성능 좋은 감시카메라도 사람의 눈이 결들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셈이다.

- 당시 베를린에 파견된 일본대사 히로시 오시마는 히틀러 및 독일군 수뇌부의 움직임을 암호전문으로 본국에 상세히 타전했으며
- 미국 정보기관이 이를 모두 도청했다는 사실이 '98년 10월 26일 기밀해제된 문서에서 밝혀졌다.
- 특히 대서양 연안의 독일군 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본의 아니게 미국측에 알려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을 가져 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 육군장성 출신인 히로시는 1934년 독일대

사관 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히틀러를 흠모, 독일의 정치·군사·산업계의 지도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 이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히로시는 '41년부터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독일대사를 지냈다.

- 그는 히틀러와 자주 접촉했던 것은 물론 군수뇌부와도 교류가 가능했던 덕에 독일군의 작전 및 의도 등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 본국에 보고했다.

○ 최고의 극비문서로 분류된 히로시의 보고서는

- 암호해독 즉시 대통령을 비롯 10명 안

밖의 고위층에만 배포됐고 읽은 뒤에는 즉시 파기해 원본만 보관돼 왔으며

- 미 국립 문서보관소의 존 테일러 연구관은 “히로시 오시마는 미국의 으뜸가는 정보소스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 독일의 패망후 일본으로 송환된 히로시는 '46년 전범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55년 사면된 뒤 '75년 89세의 나이로 숨졌으나 죽을 때까지도 자신의 보고서가 미국에 의해 도청된 사실을 몰랐다.

미, 인도 핵실험 탐지 못해 CIA 재정비 착수

- '98년 6월 11일 인도의 핵실험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해 망신을 당한 세계 최고·최대의 정보기관 미 중앙정보국(CIA)이 진통을 겪고 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CIA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정보수집체제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며
- 이에 따라 미국은 전면적인 정보수집체제 재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 조지 테넷 CIA국장에 의해 인도 핵실험

< CIA 사전에 감지했나 >

-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번 파키스탄 핵실험은 사전에 감지했을까?

- CIA는 2주전 인도 핵실험 징후를 간파, 낭패를 당했었다.
- 미국의 세계전략 자체를 뒤흔드는 주요 사건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죄로 CIA는 현재 특별감사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파키스탄 핵실험은 「예고」된 것이었다.

- 그래서 CIA는 파키스탄 일대를 집중 정찰, 지난 '98년 5월 26일 「핵실험 임박」경보를 발동한 바 있다.
- 하지만 과연 파키스탄의 정확한 핵실험 날짜를 맞혔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27일 저녁까지 파키스탄 총리와 전화하며 핵실험 철회를 종용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만약 CIA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정확히 인지했다면 클린턴이 보다 강도높은 설득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그래서 「CIA 실패설」이 또 한번 등장하고 있다.
- 물론 핵실험 태세를 마치고 리더십의 「결심」만 남아있는 상태까지 정보기관이 정확히 잡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특히 이번 인도-파키스탄 핵실험 사태의 시발이 「CIA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이 적지 않은 만큼 CIA의 곤경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전탐지 실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점
토록 위임된 분석팀은

- 정보요원들의 상상력 부족, 정보수집과 분석의 결합, 리더십과 훈련과정의 결합 등 총체적이고 만성적인 문제가 복합된 것이라고 결론지었으며
- 분석팀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제레미아 전 합참 부의장은 이달초 의회증언에서 인도 핵실험 탐지 실패의 원인으로
 - CIA는 인도에 스파이라고 할 만한 요원을 두고 있지 않았다.
 - 세계 각지에서의 정보수집능력이 떨어진다.
 - 첩보위성을 통해 입수되는 자료를 제대로 판독할 만한 전문가가 없다.
 - 인도의 경우 첩보위성과 판독전문가 모두가 핵실험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 고위정보관리가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서를 과소평가함으로써 부하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지시 하지 않았다

- 특히 고위 정책입안자들은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강조한 힌두 민족주의 정권이 인도에 들어섰는데도 핵실험 가능성 목살 등을 지적했다.
- 고든 윌러 전 CIA 핵확산금지센터 소장은
 - 첩보위성의 자료수집능력이 냉전시대에 비해 떨어지며 판독요원의 평균 근무경력도 18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그는 특히 클린턴 정부의 관리들이 핵문제와 관련한 결끄러운 사실들을 싫어해 자신들이 바라보는 세계의 모습과 잘 맞지 않는 정보는 주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그밖에 국방정보국, 육·해·공군의 정보국, 재무부 정보국등 연방정부내 13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CIA가 실질적으로 이들 정보기관을 제대로 관장하지 못함으로

<미 정보기관>

- | | |
|-------------|---------------|
| ① 중앙정보국 CIA | ② 국방 정보국 |
| ③ 국가 안보국 | ④ 육군 정보국 |
| ⑤ 해군 정보국 | ⑥ 공군 정보국 |
| ⑦ 해병대 정보국 | ⑧ 국립 영상지도 제작국 |
| ⑨ 국가 경찰국 | ⑩ 연방 수사국 |
| ⑪ 재무부 정보국 | ⑫ 에너지 정보국 |
| ⑬ 국무부 정보국 | |

써 정보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이처럼 CIA와 미국의 정보수집체제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테넷 CIA국장은

- 최근 각 정보기관간의 협조문제를 담당하는 부국장과 모든 정보기관에서 진행되는 분석과 보고서를 감독하는 부국장을 신설하고

• 전자에는 30년간 공작업무를 담당해 온 찰스 앨런을,

• 후자에는 국가정보위원회 위원장 존 개년을 각각 임명했다.

- 이와 함께 테넷 국장은 “앞으로 각 정보기관이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며 이것이 어떻게 종합되는지 직접 관장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 CIA에서 중국의 물(水)부족 집중분석

<냉전종식 이후의 CIA>

○ 미 중앙정보국(CIA)은 냉전이후 안보위주 정보수집에서 경제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예산을 공개하는 등 전반적인 변신의 와중에 있다.

- 2차 대전중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지난 '47년 7월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창설된 CIA는 냉전시절에는 옛 소련을 비롯한 대(對) 공산권 정보수집과 제3세계 해외공작이 주임무였다.

- 그러나 소련 붕괴후 “우리는 큰 용(龍) 한 마리를 쓰러뜨렸지만 지금은 여러 마리의 독사가 숨어 있는 밀림에 있다”고 한 제임스 울시 전 CIA국장의 말처럼 시대변화에 따라 CIA도 변화의 압력에 처했다.

○ '94년 모스크바 주재 CIA 첩보책임자였던 앨드리크 에임스가 미국의 비밀을 소련에 팔아넘긴 이중첩자임이 밝혀지면서 「CIA해체론」까지 나왔으며 의회는 미 정보체제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96년 국가정보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 「안보」보다 「경제」가 강조되면서 CIA는 요인암살·정치인 동향 탐지보다는 기업의 경제정보 수집과 경제스파이에 대한 방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환경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 특히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CIA에 미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경제정보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에 따라 CIA는 6개 경제관련 정보팀을 구성, 해외경제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현지 언어에 능숙한 석·박사학위 소지 경제전문가를 요원으로 선발하고 MIT·스탠퍼드대 등 유수의 대학에서 요원을 재교육시키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첩보전문가는 CIA가 일본에 파견한 산업스파이만 1백10명 정도라고 추정하기도 하였다.

○ 비밀공작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CIA도 지난 '97년 창설 50주년을 맞아 CIA의 예산이 2백66억달러(약 37조2천억원)임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이중 CIA본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30억달러며 각군 사령부 정보기관이 1백억달러, 도청·암호해독기관 예산이 40억달러 등이다.

- 미국 정보기관들이 중국이 수자원 고갈현상과 이같은 현상이 세계 식량공급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워싱턴 소재 환경감시기구인 월드 워치의 레스터 브라운 회장은 '98년 6월 21일 중국의 물 부족 사태는 세계 식량위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이 옛 소련 미사일 추적 때와 마찬가지로 집중적인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정보기관들은 13억의 세계 최대 인구국인 중국이 물 부족으로 식량위기를 겪게 될 경우 무엇보다 밀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주요 밀생산국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유럽연합(EU) 등을 제외한 다수 국가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브라운 박사는 이와 관련 세계 약 13억 인구의 1인당 하루 생계비가 현재 1달러도 못되기 때문에 곡물가격 상승은 곧바로 이들에 대한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고 특히 중국의 물 부족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식량폭동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지난 수년간의 위성사진 판독결과 중국 북부지역 수백개에 이르는 호수와 강물이 과도한 사용과 가뭄으로 인해 말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더욱이 향후 수년간 중국은 인구증가와 전국 규모의 산업화 추진으로 물 부족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이로 인해 2030년 2억t의 곡물수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 용수관리와 농업의 사유화, 환경 친화적 집약농업이 가능하도록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CIA에서 스파이 요원 급모집

- 냉전종식과 예산삭감으로 활동이 크게 위축됐던 미 중앙정보국(CIA)이 의회의 예산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98년 6월부터 대대적인 스파이 인력 총원 작업에 나서고 있다.
- CIA가 첩보수집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사상 최대규모의 신규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 CIA가 올해 충원할 인력은 냉전종식 이후 가장 적은 인원을 모집한 지난 '95년의 신규고용 인원의 5배나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는 비밀로 분류돼 있다.
- CIA는 인력 충원과 함께 '90년대초 구(舊)소련 붕괴 이후 폐쇄됐던 일부 해외 지국을 다시 개설할 계획이다.

- CIA가 신규 인력채용을 대폭 늘리게 된 데는 그 동안 미국 정보기관들이 정보수집을 하면서 스파이 위성, 전자 도청장치 등 기계적인 수단에 너무 의존해 왔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 CIA본부를 「부시센터」로 명명

- 미 중앙정보국(CIA) 청사가 「부시 센터」로 불리울 것 같다.
 - 미 상원은 '98년 6월 27일 워싱턴 DC근교의 버지니아주 랭글리에 있는 CIA 본부건물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 「조지 부시 센터」로 명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CIA 예산법안에 딸린 이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 CIA 청사는 이제까지 공식적으로는 그냥 「CIA본부」로 불리어 왔으며 외부에서는 청사가 위치한 지명을 따 「랭글리(Langley)」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 CIA 본부건물에 부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것은 물론 그가 CIA 국장을 지낸 유일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며 '89년~'93년 제41대 대통령으로 재직할 그는 지난 '76년에 CIA 국장을 역임하였다.

미, 「사이버전쟁」극비 추진

- 핵무기의 등장이 그랬듯이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개념이 싹트고 있다.
 -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적대국의 바이러스 침투를 막지 못했거나 컴퓨터의 오작동을 초래하는 「논리폭탄」(Logic Bomb)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더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
 - 이처럼 적도 보이지 않고 피 한방울 흘리지 않는 「하얀전쟁」인 사이버 워(Cyber-war)개념을 미국의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이 비밀리에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 미 국방부는 최근 국방장관실과 합참의장실 직속으로 지금까지 외국의 사이버공격(Cyberattack)으로부터 미국의 국가기간시설을 방어하는데서 나아가 미국도 다른나라를 공격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개발하는 팀을 설치했다고 한다.
 - 지난 해에는 군과 정보기관들의 상호 협력을 위해 외국에 대한 통신도청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보국(NSA)산하에 정보작전기술센터를 설치했었다.
- 이같은 개념은 '96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명백한 기습」(Evident Surprise)으로 명명된 작전에서 실험된 바 있다 하며
 - 사이버 워 개념은 사전에 적대국의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아직 실전배치에 들어가지 못한 극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 또 이 전쟁개념에는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없고 전선이 따로 없으며 타격목표도 민간과 군사시설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미, CIA에서 12개국 컴퓨터시스템 공격설 공개

- 중앙정보국(CIA)의 조지 테넷 국장은 '98년 7월 5일 비공개 의회보고에서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을 포함해 최소 12개 국가가 외국의 정보 및 컴퓨터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적이 바이러스 침투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해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12개 국가 가운데는 중국, 이란, 이라크, 리비아, 러시아가 포함돼 있으며
- 자세한 내용은 비밀에 부쳐졌으나 최근 보고된 전국 정보평가에 따르면 외국정부에 의한 사이버 테러가 적어도 한 건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연방수사국(FBI)이 조사중인 사이버 테러는 5백50건으로 '96년 1백 28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이 가운데는 민감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방부·항공우주국(NASA)등을 수시로 들락거리는 해커들이 저지른 사건도 적지 않아 적성국가들이 이들을 활용해 1급비밀을 빼내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통신망 마비, 전산자료 오기 등을 통해 치명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실제로 2년전 한 스위스인 해커가 런던과 애틀랜타를 거쳐 플로리다로 침입, 11개 카운티의 전화망을 움직이지 않게 해 911 긴급구호 연락망과 소방서·경찰서·병원 긴급연락망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
- 1년전에는 14살 난 소년이 매사추세츠주 월세스트에 있는 통신망을 교란해 6시간 동안 공항관제탑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미,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CIA 최고훈장 수여

- 한국전쟁 발발 48주년이었던 지난 '98년 6월 25일 버지니아주 랭글리에 있는 미 중앙정보국(CIA)에서는 의미 있는 훈장 수여식이 있었다.
-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두 CIA 전직 요원에게

CIA의 최고 영예훈장이 수여됐다.

- 이들은 CIA 창설 50주년을 맞아 생존해 있는 「CIA 가족」가운데 최고의 요원으로 선정된 것이다.
- CIA내에서 「CIA의 전설」로 불리는 보스턴 대학의 체육감독 리차드 펙토씨와 코네티컷주 판사 존 다우니씨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한국전이 혼미상태에 빠진 '52년 11월 29일 중국 만주 상공을 향해 날아갔다.
 - 중공군의 배후에서 군사적 동향을 살피던 CIA의 현지인 조직으로부터 긴급히 구조요청이 날아와 이들을 빼내기 위해 비밀리에 도쿄에서 비행기를 탔다
 -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두 요원은 그러나 이미 현지 조직원을 체포한 중국당국이 거짓 구조요청을 보낸 것을 모르고 있었다.
 - 이들이 탄 B-29는 만주상공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공군에 의해 격추됐다.
 - 중국법정에서 간첩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종신형을 선고받고 기나긴 암흑생활에 들어갔으나 공식적으로 이들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 미국 정부도 “이들은 군무원으로서 업무상 서울-도쿄를 오가던 중 비행기가 격추되어 사망했다”고 덮어버렸다.
- 미국은 장막 뒤에서 끊임없이 중국측과 협상을 벌이며 이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으나 닉슨대통령이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뒤에야 이들은 햇빛을 볼 수 있었다
 - 닉슨대통령이 이들의 신분이 CIA요원이었음을 중국측에 인정한 뒤 펙토씨는 '71년, 다우니씨는 '73년에 풀려나 미국땅을 밟았다.
 - 청춘을 중국의 감옥에서 보낸 이들은 그러나 거금을 제의하며 자서전 출판을 설득하는 출판사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 동안 입을 다물며 끝까지 CIA를 보호했다.
 - CIA 요원 가운데 적국에 억류된 사람으로 최장기 기록을 세운 이들이 조국인 미국에 대해 불만을 품을 법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 이미 40대가 넘은 몸으로 각각 보스턴대와 하버드법에 진학,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에 대해 CIA측은 “갓은 고초에도 불구하고 CIA의 기밀에 관해서 중국측에 털어놓지 않았다”고 높이 평가했다.
- 특히 다우니씨의 예일대 동창으로 함께 CIA에서 일했던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는 “CIA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과거의 선배 중에 이같은 영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이들의 훈장수여식을 적극 추진했다.

미, 사이버전쟁시대 대비책 본격착수

- 미국이 「사이버전쟁」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 '98년 7월 8일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등은 적국의 컴퓨터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바이러스 공격 등 다양한 사이버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며
 - 예컨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해 적국 주요도시의 단전 및 통신두절을 유도하고 적국의 컴퓨터에 자국의 병력배치 상황 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입려시킨다는 것이다.
- 지난 달 빌 클린턴 대통령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대책을 수립토록 관련부처에 지시했으나 국방부 등은 이미 극비리에 사이버공격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었다.
- 사이버공격을 위해서는 적국에 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 적국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비롯해 적국 정부 또는 군의 의사결정구조 및 관행 등에 관해 총체적인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 그러나 사이버공격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교한 작업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불과 10여명이 몇 주 동안만 준비하면 지금도 사이버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사이버 전사들이 지구촌 컴퓨터정보망을 이용해 국경없이 여러 나라를 넘나들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국가주권 개념도 흔들리고 있다.

- 사이버공격은 또한 사회 전반의 정보망에 침투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군과 민간분야로 대별되던 공격목표 개념도 바뀌고 있다.
 - 국방부는 지역사령부를 통해 과거의 재래무기를 사이버무기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 사이버전쟁을 외교적인 노력과 병행하면 적국과 실제로 전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 사이버전쟁에 대비한 법률적인 정비작업도 현안으로 등장, 사이버공격 대상물을 어떻게 선정하고 누가 그같은 결정을 내릴 것인지 등에 관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 정보기관 테러예측 못해 또 망신

- 지난 5월 인도의 기습적인 핵실험을 전혀 예측하지 못해 첩보력 부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세계 최고의 미국 정보기관들이 '98년 8월 7일 아프리카의 미 대사관 테러사건으로 또 다시 뼈아픈 일격을 맞았다.
- 미국은 사건발생후 연방수사국(FBI)요원, 테러전문가, 해병대 테러전담팀 등 40여명의 긴급대책반을 현지로 파견해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밝혔지만 테러단체에 대한 첩보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토머스 피커링 국무차관은 8일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검토하는 최고수준의 정보기관을 갖고 있지만 모든 사건과 일들을 포착할 수는 없다”며 정보기관들을 두둔했다.
-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엄청난 예산을 써가며 세계 곳곳에서 비밀공작을 벌여온 정보기관들의 업무능력이 고작 이 정도냐며 호된 질타를 퍼붓고 있다.
- 인도의 핵실험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대해 아무 정보도 없이 당한 것이 불과 3개월 전이라는 얘기가.
- 이번 대사관 테러사건의 범인들은 평소에도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의 미국 대사관들을 선택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 2년전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란 미 공군기지 폭탄테러사건을 조사했던 웨인 다우니 예비역 대장은 테러단체내에 첩보원이나 제보자가 없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미, 하마술드 UN사무총장 추락사 음모설

- 미국, 영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61년 더그 하마술드 유엔 사무총장 살해

음모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증거자료」가 데스먼드 투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주교에 의해 '98년 8월 19일 공개됐다.

- 「진실과 화해위원회(TRC)」를 이끈 투투 대주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수집한 정보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 하마술드 총장은 당시 콩고 내전을 중지시키기 위해 반군 지도자인 모이세 촘베를 만나러 가는 도중 북부 로디지아(현재 잠비아)의 느돌라 공항 상공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 「하늘 빛은 어떤가」라는 작전명의 문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영국 첩보기구 MI-5도 이 음모에 관여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투투주교는 지적.

미, 정보기관들 산업스파이 활동에 주력

- 미국 정보기관이 유럽을 무대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도청, 수집한 정보를 자국 기업에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정보수집 대상은 주로 유럽과 일본 기업이지만 일부 한국 기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98년 9월 18일 입수된 유럽연합(EU)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 미국 정보기관은 민간기업의 전화, 팩

< 세계는 지금 사이버전쟁 >

- 총성없는 전쟁 - 핵전쟁도 아니며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한 순간에 적군의 전략본부와 레이더망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주요 도시의 전력 및 통신망을 끊어 버리며 군사작전을 교란하거나 아군에게 유리하게 뒤집어 놓고 정찰·공격용 위성도 유용지물로 만들어 적국의 TV방송망을 통해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 「클릭」한번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바로 「사이버 워」(Cyber War)이다.
-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에 이은 「사이버 워」의 무기인 「사이버 무기」(Cyber Warfare)의 개발이 극비리에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 미 행정부는 현재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등을 중심으로 유사시 적국을 공격할 수 있는 사이버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 국가안보관련 기밀 가운데 최고로 분류되고 있는 이 무기의 핵심은 「사이버 폭탄(Cyber Bomb)」, 「논리 폭탄(Logic Bomb)」이라 이름 붙여진 일종의 컴퓨터 바이러스이다.
 - 국방부의 경우 합참본부 산하에 사이버 전쟁의 수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며 이미 각 지역사령관에게도 효과적인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의 작전을 지역 실정에 맞게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 지난 달 초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미국은 국가안전국(NSA)아래 「정보작전기술센터」를 창설하고 관련기관 합동으로 가상 적국 또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사이버 공격의 대비책도 마련중이다.
 - 그러나 어떤 기관이나 군이 사이버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 또한 어떤 경우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야 하는 것인지와 그에 따른 적국의 보복공격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등의 전략지침에 대해서도 백악관의 안보전문가들은 고심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사이버 무기의 효과 및 정확한 위력에 대해서도 관련기관들은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 핵무기처럼 실험을 통해 파괴력을 측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적국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종류, 정치·군사적 의사결정 방식의 차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미국의 군사전문가들 사이에 “인명을 살상하는 기존 개념의 전쟁발발에 앞서 전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이버 전쟁에 대한 공격과 방어 체계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

< 각국 「사이버전쟁」 동향 >

- 「사이버 워」에 대비한 세계의 움직임은 긴박하다.
 - 미 의회조사국은 컴퓨터 기술을 공격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이미 120개국에 달한다고 밝혔다.
 - 그중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이버 가상적국은 중국, 이란, 러시아, 이라크, 리비아, 등 10여개국이다.
 - 미 정보소식통의 극비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해 이름을 밝힐수 없는 국가가 배후인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 미국이 해킹을 포함한 각종 사이버 테러를 당한 횟수는 '96년 128건에서 올해 550건까지 늘어났으며 미국이 최근 FBI에서 차출한 125명의 특수요원을 핵심으로 정보작전기술센터(NIPC)를 설치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 미국 외에 암암리에 「사이버 워」부대를 만든 국가는 중국으로서 중앙군사위내에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부대를 이미 창설했고 미국 등에서 유학한 컴퓨터 전문가들을 투입해 컴퓨터 무력증강에 주력중이다.
 - 독일과 프랑스 등도 사이버 특수부대를 준비중이며 러시아도 최근 인터넷을 통한 공격을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 내무·국방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정례화하고 있다.
 - 미국을 적대시해 온 이란 등도 해킹 등 컴퓨터 교란을 위한 기술 축적에 노력하고 있다.
- 테러단체나 준군사조직의 기술 수준도 위협적이다.
 - 특히 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은 고출력 전자파를 이용한 「전파총」으로 '96년 런던선물시장의 전산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등 이미 가공할 위력을 드러냈다.
 - 일부 중동테러 조직이나 러시아 마피아도 기간 전산망이 뛰어난 선진국일수록 사이버 테러에 취약하다는 점을 역이용, 사이버 공격 능력을 키우고 있다.

스, 전자메일 등 모든 전기통신을 도청대상으로 삼고

- 민간기업의 업무연락 등 비군사적 정보도 입수하고 있으며
 - 미국 정보기관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국제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는 자국기업에 제공, 경쟁력 강화에 이용하여 왔다고 한다.
- 보고서는 작전(作戰)에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과 영국 정보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가 가담하고 있으며
- 약칭「ECHELON」인 이 도청활동의 내용은「UKUSA」라는 미국의 거대한 전기·전자첩보시스템에 축적되며

ECELON은 유럽대륙에서 얻은 정보를 영국을 거쳐 미국 메릴랜드주로 보내 분석과정을 밟는다.

- 도청활동은 유럽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모든 전기통신활동에 미치고 있다고 하며
- 예를 들어 프랑스의 전기메이커인 톰슨CSF사가 브라질과 협상중이던 레이더 판매상담을 포착, 교섭내용을 도청한 뒤 미국기업에 제공했고 이 계약은 그후 미국기업으로 돌아 갔으며
- 에어버스의 총액 10억달러 어치 여객기 매각교섭도 도청당해 미국 라이벌 회사가 선수를 쳤고
- 미국정부는 지난 '90년 일본 NEC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벌이던 전기통신 시설 정비 교섭을 도청한 뒤 인도네시아에 사업의 절반 정도를 미국 AT&T사에 넘기도록 압력을 가했다.

- 미국 정부가 이처럼 산업스파이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5년 이라고하며 당시 미국과 프랑스간 산업스파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자국이 산업스파이활동의 주요 피해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방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미, 펜타곤 「사이버 테러」방지 비상

- 인터넷은 양날의 칼로서 잘 활용하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다.
 - 미 국방부는 '98년 9월 17일 인터넷에 공개된 펜타곤의 모든 문건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 테러리스트나 적성국에서 약용할 소지가 있는 정보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 웹사이트에 대한 재검토는 지난 8월 20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화학공장을 폭격한 이후 테러 위협성이 높아지면서 촉발됐다.
 - 폭격이 있자마자 펜타곤의 컴퓨터 전문가들은 군대와 관련된 온라인 정보들 예컨대 사령관의 이름과 가족관계 및 주소 등이 보복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그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함대의 명세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군대관련 사이트들이 있을까.
 - 펜타곤도 아직 정확한 숫자와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여러 부서가 따로 따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미 국방부가 적(옛 소련)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었던 바로 그 인터넷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인터넷의 전신인 아르파넷(ARPANet)은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한 「분산형」네트워크였다)

미, CIA 냉전시대 오명씻고 대변신

-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중동평화협상 중재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 미소 대결시대에 제3국에서의 쿠데타 조종 및 요인 암살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CIA가 탈냉전시대를 맞아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 2년전 중동평화협상이 결렬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것도 CIA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오가며 막후에서 중재를 했기 때

문이라는 것이 미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조지 테넷 CIA국장은 지난 2년반 동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지도자인 야세르 아라파트를 4번이나 독대하는 등 이번 협상의 막후 주역으로 활약하였으며
-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에 있는 CIA분소는 중동평화협상의 요람으로 불릴 정도로 이곳에서 CIA의 주선으로 이스라엘과 PLO의 정보관계자들이 수 없이 회동하여 협상안에 대한 절충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 CIA가 중동평화협상에 개입하고 있는 사실은 중동지역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 이스라엘 언론 등에서 CIA 요원과 이스라엘 정보관계자들간의 접촉 사실이 널리 보도돼 왔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의 한 라디오방송은 CIA가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팔레스타인지역에 CIA분소를 신설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한 아랍계 신문은 CIA가 팔레스타인 정보요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하였다.
- CIA가 국가간 협상에 이처럼 깊숙이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정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CIA가 국가간 협상 중재역할을 맡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간 협상에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중동평화협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PLO측이 모두 CIA를 신뢰하고 있다.
 - CIA가 이 지역 테러억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으로부터 믿음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 게다가 CIA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PLO측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 양측간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미, 구 소련 스파이 체포 파문

- 미국 국방부의 특급비밀부서인 국가안보국(NSA)소속 전직 정보분석관이 지난 '88년부터 4년간에 걸쳐 미국이 핵무기 공격목표 목록 등 국방기밀을 옛소련에 팔아 넘긴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 미 법무부는 지난 '98년 10월 10일 육군중사로 전역하였던 데이비드 셀든 분(46)이 21년의 복무기간 대부분을 정보분석관으로 일하면서 미국 안보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기밀문서와 자료를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요원에

게 모두 6만달러를 받고 건넨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 법무부에 따르면 분은 지난 '88년 워싱턴 주재 소련대사관을 찾아가 스스로 스파이활동을 할 것을 제의했고 당시 NSA가 입수·해독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3백달러를 받고 건네면서 스파이활동을 시작했다.
- 분은 당시 부인과 이혼한 뒤 위자료 조건으로 급여의 전부를 부인에게 제공키로 한데다 빚까지 지는 등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려 소련 스파이를 자원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그후 같은 해 10월 부터 '91년까지 독일에서 근무하면서 1년에 4 차례씩 KGB요원을 만나 각종 정보를 건네고 이때마다 5천~7천달러를 받았다.
- 분은 지난 9월 초 독일에서 러시아 스파이로 위장한 연방수사국(FBI)요원로부터 스파이활동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10일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의 한 호텔에서 접선하려다 체포됐다.
- 그는 체포직전 스파이로 위장한 FBI요원에게 독일 근무당시 소련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미국 전술핵무기의 소련내 목표물과 미국 경찰-정보수집체제를 담은 소책자 등을 팔아 넘긴 사실을 털어놓는 등 스파이 활약상을 자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이스라엘 첩자 미 정보요원 석방

-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98년 10월 23일 중동평화협상 과정에서 최후의 걸림돌로 떠올랐던 이스라엘 스파이 조너선폴라드(44)를 석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미 해군 정보요원이었던 그는 중동국가들과 테러단체 등의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겨준 혐의로 '85년 미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돼 '87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스라엘은 '96년 그에게 국적을 부여하였으며
- 폴라드는 스탠퍼드대에서 역사철학을 전공하고 노트르담대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플레처 연구소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중 미해군에 의해 정보요원으로 특채되었었다.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총리는 미국이 폴라드를 석방할 경우 3천5백여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중 7백50명을 석방할 것을 약속하였다.

미, CIA 이·팔 합의이행 검증

- 그간 음지에서만 활동하여 온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98년 10월 21일 중동평화협상에서 잠정 합의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안보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양지에 나와 양측 합의사항의 이행을 검증하

<미, 「정보망 허점 너무 많다」>

- 대량 파괴무기의 확산은 인류의 장래를 크게 우려하게 한다.
 - 최근 이 분야 정보망에 구멍이 생긴 것은 특히 중대한 일이다.
 - 이를 계기로 우선순위를 전면 전환하고 현 활동을 실질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 탄도미사일 및 핵탄두 실험과 관련하여 올해에만 3건의 중요한 정보 허점이 발생했다.
 - 먼저 지난 '98년 5월 인도의 핵실험은 외국의 감시시스템을 기습했다.
 - 지하 핵실험에는 장기간에 걸쳐 특유의 준비작업들이 있게 마련이다.
 - 그러나 실험 몇 시간 전까지 어느 외국정부도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 같다.
 - 게다가 인도 새정부가 사전에 핵실험 의도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당시 허점은 더욱 더 충격적이었다.
 - 물론 인도 당국은 실험장소를 준비하면서 흔적을 감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 그러나 세상만사가 그렇듯 정보수집에 있어서도 그럴 의사가 없는 상대가 협조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 설상가상으로 핵실험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정보망 와해의 충격을 더했다.
 - 우리는 아직도 각국이 실제로 몇 차례 핵실험을 했는지, 폭발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알지 못한다.
-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두번 째 정보망 허점은 '98년 7월 이란의 이동형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실험과 관련된 것이다.
 - 당시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망이 준비작업을 포착하고 미사일 비행 자체도 탐지했지만 누군가 방심했던것 같다.
 - 이때문에 이란이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일정부분을 알아냈지만(우리는 이란이 미사일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이 당초 목표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검색해내지는 못했다.
 -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중동지역 안보측면에서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 세번 째 정보망의 허점은 '98년 8월 31일 북한의 다단계 로켓 발사를 둘러싼 획극적 실책들이다.
 - 이른 바 「깡패국가」(rogue state)로 지목되어 지속적으로 집중적인 감시를 받아온 바로 그 북한이 기습적으로 로켓을 발사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 일본은 로켓이 자국의 영토 위로 날아 갔는데도 깜깜하게 몰랐다.
 - 미국은 로켓 발사는 적절히 파악하고 비행궤도도 추적했지만 로켓 비행거리가 처음 언급했던 것보다 길고 3단계 추진 과정을 거쳤으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 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까지 2주이상 걸렸다.
 - 그 확인이라는 것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주장에 대해 며칠간 노골적으로 회의론을 표명한 뒤에야 나왔다.
 - 미국이 '83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별들의 전쟁」(스타워즈)연설이후 추진해 온 미사일방위의 특징인 순간적 탄두 판별능력과 비교하면 2주라는 시차는 무한대나 마찬가지다.
- 여기서 첫번 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83년 이래 미국은 효과적인 미사일요격 방위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실은 헛수고에 그칠 일에 5백억달러 이상을

허비한 셈이다.

- 15년뒤 전역 고도상공 방위(THAAD)로 알려진 전역 탄도미사일(TBM)방위프로그램은 6 차례 비행시험 모두 실패했고 제한적 미사일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개량형은 아직 실전배치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 투자와 수익을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 신뢰할 만한 탐지·추적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채 미사일 방위만 강조하는 것은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 누가 누구를 향해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발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방위정책에도 필수불가결하다
- 그 목적이 전쟁역지이든 보복, 선제공격, 민방위 혹은 스타워즈식의 집단방위망 구축이든 마찬가지다.
- 미사일요격 방위프로그램의 수준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순위측면에서 조기경보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 맨앞의 일을 어떻게 하든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알아야 그 다음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두번 째 교훈은 우선순위보다 초점쪽에 있다.

- 앞서 언급한 정보 허점 3건의 공통점은 기술적 수단의 결여라기보다 조직상의 문제이다.
- 수 많은 민간 및 군 기관이 각자 정보 모자이크를 만들어 내며 서로 경쟁한다.
- 「전(全)정보원 자료 취합」이라는 모자이크 조립과정은 대개 현실이 아니라 희망사항이다.
- 마찬가지로 인도의 경우가 시사하듯 정보수집자와 정보사용자간에는 큰 괴리가 있는 것 같다.
- 따라서 미국이 조기경보능력을 강화하려면 각 기관간을 조정하는 고위급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정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보허점은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이해가 걸린 문제이다.

- 미국은 프랑스의 엘리오 관측위성처럼 동맹국의 독자적 정보능력 개발시도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자료교환의 유용성을 강조하며 적극 권장할 일이다.

는 공개적 역할을 맡게 됐다.

- 지난 몇 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오가며 타협분위기를 유도했던 CIA는 이번에도 협상이 한때 결렬위기를 맞자 조지 테넷 국장이 특유의 막후 조정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 CIA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혐의를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팔레스타인 영토내에서 재판을 받고 수감되는 과정을 감독하게 된다.

○ 그러나 CIA 내부에서는 「비노출의 금기」를 깨게 된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여기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CIA국장 「공개활동 정당성」주장

- 미 중앙정보국(CIA)의 최고 책임자가 신문 기고를 통하여 CIA활동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는 조만간 CIA가 중동지역에서 맡게 될 새로운 임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 지난 '98년 10월 23일 타결된 중동평화 협상에 따라 CIA는 곧 팔레스타인의 테러 방지 노력을 감독할 계획이며
 - 이로써 그간 은밀히 임무를 수행해 온 CIA가 당당히 이지역 안보문제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 양지로 나온 CIA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제 정책집행까지 수행하는 것이냐”는 예민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 이에 조지 테넷 CIA국장은 '98년 10월 27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 “비밀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곤잘 오해를 산다”며 “그러나 평화협정 타결 전후로 CIA에 대한 비관적 추측이 너무 많아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운을 떼고
 - “이번 임무가 색다르다면 우리의 활동이 널리 홍보됐다는 점이며 그렇다고 테러근절이라는 전통적 역할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 CIA는 이 지역 안보문제에 관여할 자격이 충분하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라는 것이 요지.
- 타임스는 다음 날 사실을 통해 테넷에게 CIA 활동의 독립성을 지키라고 조언했으며 “국가기관으로서 백악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CIA가 결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

CIA, 중동평화 개입 「논란」

- 지난 '98년 10월 23일 체결된 중동 잠정 평화협정과 관련한 미 중앙정보국(CIA)의 역할을 놓고 공개적인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지 테넷 CIA국장은 '98년 10월 27일 뉴욕타임스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중동평화 과정에서 CIA가 부여받은 역할이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대 테러 투쟁은 CIA의 고유 업무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기관의 속성상 행보가 비밀스러울 수밖에 없는 CIA가 그것도 수장이 직접 설명서 형태의 글을 기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이는 지난 주 체결된 이른바 「와이 평화협정」이후 CIA가 외교정책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 CIA는 이 협정에서 팔레스타인 정부가 약속한 테러범 체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심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이 뿐만 아니라 CIA는 협정 체결과정에서도 테넷 국장이 양측 보안담당자들과 회합을 갖는 등 깊숙히 개입하였다.
- 미국 상원의 리처드 셀비 정보위원장은 이에 따라 협정 체결 직후 “CIA의 역할

은 중재자나 보디가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청문회에서 이를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 미 의회 내에서는 CIA의 임무가 정보 수집과 미국의 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중동의 치안유지까지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 그러나 테넷 국장은 CIA가 구 소련과의 군축협정을 모니터하고 인도-파키스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일한 전력을 지적, 이번 일이 새삼스럽지 않다는 입장이다.
 -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도 최근 CBS방송과의 대담에서 외교에서의 정보지원은 CIA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 그러나 CIA 내부에서도 이번 일로 냉전 체제 종식 이후 CIA의 역할이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정보기관 다시 비대화

- 미 정보기관이 다시 대형화하고 있어 미하원이 승인한 13개 미정보기관의 총 예산은 '97년에 비해 7%가 늘어난 290억달러
- 냉전종식 이후 계속 삭감되던 정보분야 예산이 15년만에 처음으로 확대된 것이자 규모면에서도 전성기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 이중 중앙정보국(CIA)에 들어가는 예

산은 10%인 29억달러.

- 미국이 이같이 정보기관 「재건」에 나선 것은 최근 잇단 「실패」 탓이다.
 - CIA 등 정보기관들은 지난 5월 인도의 핵실험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해 망신을 당했으며 북한의 로켓이 위성용인지 아니면 미사일인지 조차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는 무능을 노정
 - 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과 미, 대사관 테러에 대해서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따라 조지 테넷 CIA 국장은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냉전기와 같은 강력한 정보기관 부활」을 주장해 왔으며 그는 이번에 증액된 예산을 우수 인력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혀 「충성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정보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 장 제 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왜 문제인가? / 조길형
- 경찰단상 / 임호선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왜 문제인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3계장 경정〉 조길형

1. 문제의 제기

1)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집회 시위를 관리하고 규제해야할 위치에 있는 경찰관이 이런 말을 한다면 “통제하기가 힘들니까 행정편의적인 주장을 한다.”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즉 경찰은 시위만 보면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든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시위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이런 논리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한쪽 면만 보는 근시안적인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 세상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생각해보자.

삼복 더위에 그토록 두꺼운 방석복을 입고 쇠로 된 투구를 쓰고 방독면까지 뒤집어쓰고 하루종일 버스 안에서 또는 퇴약벌아래서 고생하는 것을 누가 즐겨하겠으며 엄동설한에 찬바람 몰아치는 거리에서 하루종일, 때로는 밤새도록 서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겠는가? 더구나 자신의 몸을 다쳐가며 몸싸움을 하고 몽둥이에 얻어맞고 쇠파이프와 화염병의 위협에 시달리기를 좋아하겠는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집회시위를 방치하면 할수록 편안한 것이다. 하든 말든 국민의 권리이니까 놔둔다. 폭력만 없으면 된다. 시끄러운 소음으로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도로가 마비되도록 가두 행진을 하고, 개인의 인격이 손상되는 주장이 난무하고, 온 사회가 온통 시위로 누비고 다니며 국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더라도 놔두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싸울 일도, 고생할 일도, 시국치안에 인력을 뺏긴다는 명예를 쓸 일도 없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라는 사명을 부여 받아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임무를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경찰관들은 환영받지 못할 시위 현장으로 고생을 감수하며 기꺼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시위 현장에는 경찰관을 만나러 온 민원인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들은 환경정책 노동정책 등 국가 정책담당자와 시청 구청 공무원들 그리고 기업의 책임자... 이런 사람을 만나서 따지려는 것이다. 어쨌든 경찰관은 남들이 환영하든 않든 시위 현장에 가장 먼저 기꺼이 나간다. 그들의 손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들려있지만 실제 위력을 발휘하는 유일한 무기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경찰이 수많은 인력이 있고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나 시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한 집시법 단 한 가지뿐인 것이다.

3) 집시법은 시위를 관리하는 유일한 무기

이 법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시위중 상당수가 문제가 있으며 이것을 적절히 통제하기에는 법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뜻도 된다.

이 사실은 문제의 접근 방법상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시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현행 집시법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규제 완화차원에서 더 풀어도 될 것이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조차도 판단하기 어렵지만 집시법에 대한 평가는 그 나라의 집회시위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져야한다.

영국 미국 같은 선진국과 같이 집회 시위가 하나의 이벤트 행사처럼 되어 철저하게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예 집시법 자체가 필요 없고 다른 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만 규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시위만 하면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는 좀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

그리고 이렇게 큰 문제 뿐만 아니라 시위 과정에서 선량한 다른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주고 있다면 최소한 그러지 않도록 해야한다.

법이 행패 부리는 사람을 보호하는 아이러니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본인은 서울 경찰청 정보 3계장으로 3년여 근무하면서 일년 평균 3000여건의 경제 사회 노동 분야의 시위를 처리했다. 이러한 시위에는 학생들이 이슈를 공유하며 많이 참가했었다. 이러한 경험상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고 적절한 조치가 있

어야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다.

이제 경찰청에서도 개혁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정부분 손을 보려한다는 시점에서 적어도 집회시위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관리해 보면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해본 본인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아 진솔한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2. 국민의 편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이렇게 말하면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비아냥도 있을 수 있다.

국민의 시위를 통제하는 경찰이 어떻게 국민의 편에서 집시법을 생각 하나고.... 그러나 앞서도 설명했듯이 경찰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기에 싸움을, 충돌을 좋아하지 않으며, 다만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집회시위를 관리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경찰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편에 서서 집회 시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란

물론 집회 시위를 하는 당사자 뿐 아니라 그러한 집회 시위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일반국민에게 좀더 비중이 있다. 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하면서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면 수사대상인 국민도 그 범위에 들지만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는 쪽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집회 시위하는 사람이 무슨 범죄자이나? 아직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지적 할 수 있다. 그렇다.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은 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 헌법상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무슨 범죄행위 비슷하게 취급해서는 안되고 법에 따라 적극 보호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다루는 범위는 그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의사표현의 범위를 일탈하여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는 것이며 이것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요망하는 것이다.

3. 집회시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1) 지금까지의 논리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시 의문이 생긴다.

도대체 집회 시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리고 현행법으로 이것을 조치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기에 집시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집회 시위를 관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보다도 집회시위로 한 피해를 당해 본 사람이라면 더 잘 알

수 있다. 그것은 크게 보아 가정평화 파괴, 시위소음, 교통장애 등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2) 그 중 교통 장애의 문제는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공지의 사실이므로 생략하고 일반 주민들이 “왜 이와 같은 일을 경찰이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 보호 하느냐?”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가정집앞 집회, 시위소음’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이외에도 집시법이 부적절하여 경찰관이 집회시위를 관리함에 있어 행정적으로 겪는 고충은 너무나 크지만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위한 것이지 일반 시민에게는 직접 영향이 없지 않는가?”는 논리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삼가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집시법의 나가야 할 방향은 논의의 대상으로 남겨 두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해서도 “그 정도의 피해는 집회 시위 권리를 위하여 감수되어야 한다.”고 결론이 난다면 달리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4.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

1) 현행 집시법은 89년3월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한마디로 이 법은 법을 제정하는 주체가 자신이 시위를 할 때에 어떤 장애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장애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조항이 이해가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경찰 등 정부의 의견도 일부는 가미되었겠지만 법 전체에 흐르는 정신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은 전문 22조항에 불과한 짧은 법률로서 집회시위를 하는 방법과 준수해야 할 사항 그리고 벌칙조항으로 되어 있다. 집회 및 시위의 방법은 간단하다. 관할 경찰관서에 가서 어떻게 집회하겠다고 소정의 서식을 써서 신고하면 그만이다. 여기에는 허가도 필요 없고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규제도 없다. 요즘 규제완화니 철폐니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법처럼 규제완화가 철저히 된 법도 없을 것이다. 어떤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방법에는 네거티브시스템과 포지티브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네거티브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허용할 경우를 예시하는 것이고 포지티브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금지할 경우만 예시하는 것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은 포지티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즉 모든 집회시위는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하되 특별한 경우는 신고를 하게 하고 일정한 목적 또는 위험성, 시간 장소에 따라 금지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다.

금지되는 경우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된 것은 거의 없다.

중요도로에서 일부 집회시위가 제한되는데, 주요도로의 지정을 시행령에 위임했을 뿐 다른 제한 사유는 모두 법률로 직접 정하고 있어 시대 조류에 맞지 않아도 법의 적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법은 국민의 집회시위 권리보호에 충실하다 보니 집회시위로 인한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제어할 방법도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극단적으로 남의 집 안마당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하여도 신고자체는 유효한 것이 되며 유효한 신고를 한 집회시위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법의 원칙에 따라 함부로 제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까지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대체로 전문적인 시위꾼들에게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역으로 이런 시위로 인한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고 야속해할 뿐이다.

5. 집회 시위는 일상화 되어있다.

1) 날마다 계속되는 시위

98년 11월들어 격일제로 한 번씩 수 만명 단위의 집회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은 나라 안에서, 서울 시내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집회 시위의 실상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서울시내에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 시위가 적게는 십 수건에서 많게는 수십 건까지 일년 내내 계속된다. 물론 계절과 요일에 따라서 그리고 정치경제 사회 노동 등 현상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집회 시위가 없는 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교원정년단축 반대,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반대, 농가부채 경감요구, 해직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노조원들, 생존권을 호소하는 노점상들, 당장 갈곳이 없다는 철거민들, 영업권이 침해된다는 상인들, 쓰레기 소각장이나 아파트 공사 등으로 주거환경이 침해된다는 집단민원인들, 등등 억울하고 절차에 의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아파트 앞마당에 모여 “갑시다!” 라는 대표자의 말에 의하여 행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다.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 전국구로 다니고 있으며 국가의 중심인 서울에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의 중추기능이 있는 고로 지방민원인들의 상경 시위도 허다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집단으로 몰려다닌다 하여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시위하는 *들은 모두 나쁜*이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찰은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시위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집단 의사표시를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유도할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 경찰의 사명

이라 할 것이다.

2) 시위의 방법을 가르쳐야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단의사표시를 유도하려면 시위의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시위는 물론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만약 부득이 하게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법 절차에 맞고 정당한 보호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야 이것을 이해하여 무리 없는 집회 시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직책에 3년여 있으면서 수천 건의 집회 시위를 처리해보았고 그 과정에서 집회시위를 관리해야 할 경찰관이나 집단의사표현을 하려는 민원인 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절한 상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위를 부추기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인 의사표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불법행동이 되게 해서도 안될 것이다.

6. 시위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1) 남의 집 앞에서 시위

가. 집, 그 평화스런 이름

집이란 단어는 어떤 느낌을 주는가?

안락함 , 내가 돌아가야 할 곳, 가족이 기

다리는 곳, 휴식, 평화, 사랑..등등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은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집에 대한 느낌은 이렇게도 사랑스럽고 평화롭게 다가올 것이다.

특히 그 집 앞 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향수를 준다.

그래서 그 집 앞이란 제목의 노래도 여러 개 있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그런데 요즘 집회 시위가 이런 평화로운 개념을 혼란시키고 있다.

각종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시위대는 먼저 그 요구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무실 앞으로 모인다. 여기에서 나름대로 시위를 해 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관계자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장소를 옮긴다. 이곳은 대기업 본사, 정당당사 또는 언론사앞 일 수도 있고 사법기관 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청와대 근처까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시위대가 가는 곳은 이제 제한이 없어진지 오래다. 시위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쳤을 10년 전 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을 할 수 없던 것이었다. 당시에는 해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모여 길바닥에 주저앉거나 말썽을 부려, 자신들의 억울한 심정을 세상에 알려보겠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몰려다녔던 것이 집단 민원이었다. 그때는 대체로 순진했었고 교묘한 비

인간적인 집단행동도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세상은 참으로 많이도 변했다.

우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늘어났고 이와 비례하여 집단 이기주의도 많이 늘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집단 민원과 이를 맞이하는 상대자들간에 끊임없는 머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 극치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개인의 집 앞에 와서 장기간 반복적인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그 집으로 가자

우리가 보통 남의 집에 몰려간다는 말을 들으면 빗쟁이를 생각한다. 古來로 빗을 주고 못 받았을 때의 최선의 방법은 남의 집 안방에 몰려가 구들장을 지고, 돈을 줄 때까지 가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그야말로 가장 악질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우리 민족의 정서이다. 물론 요즘은 해결사라는 더 무시무시한 말도 나오고 달아난 빗쟁이를 추적하여 해외까지 추적하는 국제적인 방법도 나왔지만 여전히 가족을 괴롭히고 동네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는 것은 최고의 수단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들볶이고 평온한 가정생활이 파괴되는데 버틸 인간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약점을 활용(악용)하는 것이 남의 집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도저히 만나 주지도 않고 자꾸 탄소리만 하면서 약을 올리고

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집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 행동에서도 인간성은 지켜야 한다. 가족과 이웃을 불모로 하여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것도 집시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합법을 가장한다면 인질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집회시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편법과 비인간적인 태도를 택하지 말고, 공개석상에 여럿이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뚝뚝이 알리는 것, 그것이 집회 시위의 본래 정신이다.

다. 남의 집 마당에 집회신고

어떤 사람이 나의 집 마당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하면 어떨까? 여러분 모두 상상을 해 보라. 다른 곳도 아닌 우리 집 마당에서 집회 시위를 하겠다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한다. 경찰에서는 그 신고서류를 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다. 마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集示法)은 어이없게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가능하게 해놓았다. 집시법은 시위를 아주 제한 적으로 금지 시켜 놓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장소는 모두 시위가 가능하다. 즉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제 11조에 규정되

어 있는데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1조(옥외집회 시위의 금지장소)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91.11.30)

1. 국회의사당,각급법원,헌법재판소,국내주재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국회의장공관,대법원장공관,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호에서 행진의 경우 예외로 한다는 것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앞 1백 미터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는 금지되지만 행진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법조문의 어디를 보아도 개인 마당이나 개인의 땅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없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법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집시법은 집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측면이 강하고 규제에 대하여는 극단적으로 제한을 해 놓았다.

이런 결과 이른 새벽 출근시간에 맞추어 팽과리와 확성기를 준비해서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피켓에 온갖 무시무시한 소리를 써가지고 개인의 집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집도 으리으리한 단독

저택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으나 아파트구역인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동네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신고를 하고 항의를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경찰의 집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다.”라고 항변하니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경찰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런 집회를 허가해주고 남은 피해를 보든 말든 방치하고 있는가? 우리가 언제 우리 땅에 들어와 집회를 하라고 승인했다 말인가?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것 아니냐?”라며 항의를 한다. 그들을 붙잡고 “집시법에 의하면 경찰은 모든 집회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접수해야한다. 경찰은 허가 권한이 없으며 국민들은 이미 집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금지 할 수는 있으나 당신 네 집 앞에서의 집회는 금지 할 수 없다. 어찌구 저찌구 해서 결국 방법이 없다.” 라는 유형의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해 봐야 이해가 갈 리가 없다. 법도 상식이 있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쪽이 어떻게 이해를 한단 말인가? 이런 사례는 여러 번 있었으며 그로 인한 경찰의 고충은 크다. 세종로 종합청사 후문 앞에 동화은행이 있다. 그 주차장은 이제 시위의 메카가 되어있다. 종합청사에 가장 가깝고 시내 대표적인 중심 가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소도 은행건물에 부설된 건축후퇴선 주차장이며 공공 장소

는 아니다. 은행의 입장에서조차 반복되는 시위로 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이며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권리를 경찰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라. 사생활을 지켜줘야

그렇다면 정녕 이러한 개인 집 앞의 시위, 개인 땅에서의 시위는 통제 방법이 없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현행 집시법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단언 할 수 있다. 경찰은 집회신고의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일단 접수 해놓고 서류에 미비점이 있으며 보완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금지되는 시위라고 판단되면 금지를 통고할 뿐이다. 금지가 되는 경우도 자의적인 해석이 불가하도록 구체적으로 제한적으로 열거 해 놓았다.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해야하고 금지 사유가 없으면 그 집회신고 자체는 합법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며 합법적인 시위는 철저히 보호되는 것이다. 물론 집회시위권리가 다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법 정신은 살아있다고 말 할 수도 있겠으나 그 판단을 경찰이 하기 어렵게 법을 만들었기에 다른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임의로 집회시위를 제한 할 수 없다.

이것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집시법을 개정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집회시위를 적절히 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개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간단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집시법

의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규제를 강화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더 푸는 방법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즉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시위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다른 범법행위를 하게되면 고발하는 등 형사문제로 대응하고 민사로는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법정에서 이끌어내 건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초가 될 수 있어 한번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民願人들은 이런 방법도 잘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허가는 당신들이 해줘 놓고 왜 우리보고 부담스런 일을 하라고 하느냐? 피해가 오면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국가의 할 일 아닌가?” 이런 말에 딱히 답할 것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2) 시끄러워 견딜 수 없다는 호소

가. 변방의 북소리

시위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또 하나는 소리와 깃발이다. 그 중 소리는 위력과 기세를 떨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큰소리를 조직적으로 내기 위해 갖은 방법이 다 동원된다. 즉 여러 가지 구호를 만들어서 한사람이

선창하면 나머지가 따라 외치며, 이것도 반복하다 보면 지루할 것에 대비하여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한다. 물론 집회 시위를 많이 해본 팀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듯 노래가 흘러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팀들, 특히 초보자들은 기존 노래를 개사 한 악보를 수백 장 복사해서 나눠주고 부르게 한다. 이렇게 노래와 구호를 제창하다 보면 사람들은 쉽게 지치게 마련이다. 뜨거운 날 햇볕 아래 앉아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큰 소리를 내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외국에서 벌어지는 축구 등 각종 운동 경기 과정에서 한국의 응원팀의 소리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그것이 사물놀이이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여기서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된다. 대부분의 집회 시위장소마다 사물놀이가 빠지는 법이 없다. 팽과리와 북 징의 소리를 상상 해보라 그것도 끊임없이 아침 일출 때부터 해가 넘어갈 때까지 계속된다면...둥둥둥 울려 퍼지는 북소리는 전운을 감돌게 하며 아련한 변방의 북소리처럼 무슨 일이 여기서 필연코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할 것이다.

나. 이벤트사까지 동원

그러나 소리를 크게 내려는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확성기란 무엇인가? 말 그

대로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한 것이다. 확성기의 목적은 다수가 모여 있을 때 그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소리를 고루 잘 듣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확성기는 공연 장소에서 가장 많이 쓰이며 공연을 기획하는 업자들은 예외 없이 확성기 임대 대여도 하고 있다. 자주 집회 시위를 하는 팀에서는 확성기 정도는 장만해 가지고 있고 차량에 설치한 방송차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민원인 들은 그 비싼 장비를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확성기를 빌려쓰게 된다. 그래서 집회장소에는 보통 이벤트 업자들이 확성기와 무대 장치를 싣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능숙한 솜씨로 음량을 조절하여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다. 들으려는 소리가 아닌, 들으라는 소리

앞서 확성기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잘 듣기 위한 음향 보조장치’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용도로만 쓰인다면 문제가 될 일도 없고 필자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더욱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시위대의 확성기는 자신들이 듣기 위한 소리보다는 자신들이 하는 소리를 듣기 싫다는 남에게 들으라고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즉 듣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충분한 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도구이다. 이 소리는 마땅히 들어야 할 사람 뿐 아니라 들을 이유도 없고 그 소리를 절대로

듣지 않을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까지도 듣기를 강요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확성기가 시위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시위대의 규모에 따라 그 출력이 커질 것이고 시위대가 작다면 클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2-30명의 시위대가 모이면서도 확성기는 수백 와트 내지는 수 킬로와트짜리를 트럭에 싣고 온다. highway star, smoke on the water 등으로 유명한 hard rock group인 Deep purple이 영국의 모 체육관에서 공연할 때에 백만 와트 단위의 확성기를 사용했다는 말이 있다. 이때 어항에 있는 붕어가 떠올랐다고 한다. 인간은 흥이 나면 이와 같이 짐승을 죽일 수 있는 소리를 듣고도 감동을 느끼며 즐거워 할 수도 있으나 듣기가 싫을 경우에는 시계소리에 조차도 잠을 설친다. 그런 소음을 들려주는 것이 이제 시위의 중요한 유형이 되고 있다. 모 단체의 단 3명의 시위대가 집회신고를 해놓고 엄청난 확성기를 트럭에 싣고 와 근 한달 간 어떤 회사의 건물을 향하여 방송을 한 적이 있었다. 그 회사의 종사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업무방해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결국 그 시위대는 성공을 해서 요구조건을 대부분 관철 시킨 것으로 안다.

라. 갈수록 자극적인 소리를

집회시위 소음은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산업소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기계, 차량 소리, 건축현장의 breaker치는 소리, 발파음 등 소음공해는 집단민원의 주요 요인이다. 아침에 공사소음에 잠을 설치고 밤이 되어도 공사를 하거나 모처럼 쉬는 일요일에도 여지없이 단잠을 깨우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면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트럭을 이용한 노점 행상의 소음, “먹고살려고 그러나 보다.” 하며 참아 넘길 수도 있으려면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이것도 포용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 그런데 집회시위소음은 이것보다 더 괴로운 소리이다.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야 우렁찬 함성에 가슴이 뭉클하고 결의가 저절로 다져지겠으나, 말끝마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구속하라, 처단하라, 자폭하라 등등 악의에 찬 표현이 따르고 뒤이어 북소리 팽과리 소리가 이어지며 확성기를 이용한 굉음이 하루종일 이어진다면 얼마나 듣기 어려운 것인가?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음 자체가 시위의 수단이 된지 오래된 현실에서 시위대들은 점점 자극적인 소리를 만들려고 머리를 짜고 있다. 작년에 어떤 노조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들이 호루라기를 목에 하나씩 걸고 다녔다. 순진한 사람들은 “자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가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 정당 당사 앞에서 일제히 호루라기를 힘차게 불었다. 그 시끄러움을 상상해 보았는가? 교통

경찰 한 명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호루라기를 불어도 차안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 시위대들은 자신들도 듣기 괴로웠던지 전체가 양쪽 귀를 막고 호루라기를 열심히 불어댔다. 경찰의 경고로 조금 하다가 중단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계속 될 수 있다. 기발한 소음은 이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부당하게 해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 단체는 최근 시위 장소에 만가(輓歌)를 녹음한 테이프를 가지고 왔다. 만가란 무엇인가? 상여 소리이다. 상여를 메고 갈 때 선두에서 죽은 자를 위로하는 노래이다. 이러한 노래를 녹음한 테이프를 어디에서 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을 구해 가지고 와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하루종일 방송하는 것이었다.

마. 소리로 인한 피해자들

시위대의 소리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호전적이며 적의에 가득 찬 구호소리에 팽과리 북 징 소리가 끊임없으니 심리적 충격이 어떨 것인가? 6.25때 중공군의 호적소리와 팽과리 소리는 듣는 사람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고 한다. 그런 소리를 일상적으로 듣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대기업 사장의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 관공서, 대기업 부근에 사무실을 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피해자이다. 물론 대기업 사장 등과 같은 당사자도 피해자이다. 다만 이들은

시위의 대상이니까 어느 정도는 감수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당연한 법의 정신 아닌가?

바. 집회시위의 소음 규제방안

결론부터 말하면 불행하게도 현행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로는 소음을 규제할 어떤 방법도 없다. 오히려 법이 소음을 보장하는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시법은 시위를 보호하는데 치중하여 그 규제는 거의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물며 소음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신고를 할 때 시위용품을 써내도록 하고 있으며 써낸 시위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집회시위행위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시위대들은 집회 신고할 때 반드시 확성기 몇 개라고 써낸다. 경찰은 이런 신고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하거나 금지하거나 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결국 신고한 시위용품을 이용하여 소음을 내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신고 된 대로 시위를 하는 정당한 행위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집회 시위 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과정에 타 법령으로 보호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다. 그래서 필자는 궁리 끝에 환경관련법인 소음진동규제법을 찾아냈고 이 법에서 확성기의 소음을 규제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과도한 시위소음을 규제해보려 하였

다. 그러나 이 법을 적용하려는 과정에 부처간 이견이 있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은 시위에 쓰는 확성기 소음도 분명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 서울시에서는 법의 취지로 볼 때 산업소음, 시설 확성기소음 등이 아닌 시위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집회허가를 해 줄 때 조건을 달아서 확성기 숫자를 제한하거나 소음정도를 한정해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은 필자의 가슴을 한창 더 답답하게 만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는가? 집시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집시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집시법으로 규제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중요하다. 유일한 규제방법인 소음진동규제법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시위소음규제를 위한 논의

가. 논의의 발단

시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되면서 이를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집시법으로는 어떤 근거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

지 말라는 경찰의 설득과 충고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법적 근거를 대라는 소리였다. 그래서 소리를 규제하는 법을 찾아보니 환경관련법인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하려면 소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적인 측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 소음 측정장비는 구청, 시청 등 행정기관의 환경담당 공무원이 운용하는데 경찰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협조를 요청하였다.

〈현행 집시법으로는 집회·시위장소 사용 제한을 할 수 없고 확성기사용도 제한할 수 없음을 악용, 주택가·관공서앞 등에서 집회·시위를 하며 의도적으로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음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경찰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및 동 시행규칙 57조에 의거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줄것을 요망함〉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반응을 얻은 것이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소음관련 업무는 (공장·사업장 등 소음발생시설 지도·점검 실시) (이동행상의 확성기, 행락객의 음향기기 등 이동소음원 지도·점검) (건설공사장 발생 소음관리)등이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집회 및 시위시 확성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 또는 이동소음원으로 관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 경찰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정하는 시위방법에 관한 조건 부여시 확성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 민원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고 騒音程度

측정이 필요할 시는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구청에 소음도 측정을 요구하여 그 결과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시는 관할경찰서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조치하기바란다.>

필자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는 신고된 집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주요도로에서 행해지는 집회 시위의 경우 교통질서유지를위한조건을 붙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몰 시간 이후의 집회를 허용할 경우 조건을 붙이는 것이다. 그 외에는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없다. 집회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행정행위가 아닌 것에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다만 금지된 것을 허용하는 것은 행정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도 경찰에서 조건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음을 측정하여 그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치하라는 것이다. 이것 또한 얼마나 답답한 소리인가? 집시법에 소음을 크게 냈다고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라도 있다면 경찰이 무엇 하러 행정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겠는가?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 그 어떤 규정도 없다.

그런데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으로는 시위과정의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합성, 노래와 같은 육성을 낼 경우에는 규제근거가 없으며 팽과리 양재기 같은 물건을 잔뜩 들고 와서 밤새도록 두들기는 행위도 이 법으로는 곤란하다. 그러나 이 법에는 확성기 소음에 관한 조항이 있어 이것을 생활소음이라 하고, 이동하는 확성기나 오토바이 등의 머플러 소리는 이동 소음이라 한다. 산업현장에서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과정에 나오는 소음도 규제하는데 하물며 남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적인 소음을 규제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구나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제대상 확성기 중에서 시위과정에 사용하는 확성기를 제외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본인은 시위현장의 확성기 소음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나. 생활소음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

A. 관련 법조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시·도지사는 주민의 靜隱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 ② 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 경부

령으로 정한다

- 동시행규칙 제29조의 2(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3. 수출자유지역방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수출자유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주택,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공장
- ②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

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옥내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 하되,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호의 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 또는 소방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③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7의 2와 같다(본조신설 97.10.22)

[별표 7의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9조의2 제3항 관련)

· 생활소음규제 기준

대상 지역	시간별		조 석 (06:00-08:00 18:00-22:00)	주 간 (08:00-18:00)	심 야 (22:00-06:00)
	소음원				
주거지역·녹지지역·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기타 지역안에 소지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사업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기 타 지 역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사업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70이하	75이하	55이하	

B. 집회·시위 활성화 소음의 규제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②항 1호의 ‘활성기에 의한 소음’은 활성기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어 옥내의 활성화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것도 포함하며 민방위 목적 등과 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시위시의 활성화 소음은 본조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므로 동 시행규칙 ③항에 의한 별표 7의2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시 규제가 가능한 것이다.
- 이 조항에서 시·도지사가 규제대상 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그 규제대상 지역을 시행규칙 29조의2 ①항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내 대부분의 장소가 해당될 것이므로 집회·시위 장소에 따라 규제대상 지역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

다. 이동 소음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

A. 관련 법조

-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의2(이동소음의 규제): ① 시·도지사는 이동소음의 원인을 야기하는 기기·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이동

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의 종류·규제방법·규제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 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동 시행규칙 제33조의2(이동소음의 규제): ① 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사용하는 활성화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기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 시·도 지사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시설·주거형태·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0.22)

B. 시위대의 활성화 소음의 규제

-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규제대상인 이동

간 소음은 행상의 소음, 행락객의 소음에 한정된다며 시위대의 소음을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33조의2 ①항 1호는 규제 대상을 단순히 '이동하며 사용하는 확성기' 라고만 정의 하였으므로 시위대가 차량 등에 확성기를 설치하여 이동간 사용하면 이동소음원으로 규제 가능하다.

- 또한 이를 받아 대상을 정하는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176호(98.5.25 개정,移動騒音源의 사용금지대상 및 지역지정)에서도, 이동소음원의 규제대상을, <이동하며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로 정하고 있어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동소음으로 규제 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위와같은 논리로 볼 때 고정 설치한 확성기 또는 차량 설치한 확성기를 이용하여 집회 시위를 하면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낼 경우 騒音震動規制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이 법을 이용하여 시위대가 과도한 소음을 내면 측정하고 설득도 하고 경고도 하면서 일반시민의 피해를 줄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여왔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이 있었던 것이다.

라. 환경부의 유권해석

집회시 연단 등에 설치한 확성기로 인한 소음발생시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규정의 생활소음진동으로 규제가능 여부를 검토한바

- 옥외집회 및 시위시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2(생활소음·진동의 규제)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규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는 법 제2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대상으로 하며, 확성기에 의한 소음도 종교시설 등의 일정한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함. 따라서 집회 및 시위시의 소음을 사업장 등 일정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보아 규제대상으로 정하기는 어려움.
- 또한, 규제기준의 초과시 적용하는 규제조치인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은 활동행위가 지속적이며, 시설이 설치된 규제대상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집회·시위에 적용하기 곤란함.
- 집회 및 시위 행위에서 발행하는 소음을 생활소음의 범위에 포함시켜 확대 해석

할 경우 경제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로 소음원을 관리코자 하는 소음·진동
규제법 기본취지에 배치되는 지나친 규
제 행위가 될 것임.

시위행진시 사용하는 확성기를 이동소음원
으로 규제가능 여부.

- 집시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
여 사용하는 확성기를 소음·진동규제
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소음원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동소음원의 규제는 학교·공동주택
등 정온을 필요로하여 이동 소음원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일정 지역내에서 확성
기의 사용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해칠 때 그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
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시위의 행진시 사용하는 확성기가 이동
소음원 규제지역에서 소음을 발생시킬
때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이동소음
원으로 볼 수 있으나 집시법에서 확성기
사용을 인정하여 시위 중 적법하게 사용
하는 확성기를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대상으로 보아 이를 규제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 행정조치라 할 수 있음.

집회·시위시 소음저감을 위한 환경부 의견

- 집시법 규정에 의거 주최자가 시위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 건전한
집회·시위를 하되 주변에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
람직 할 것임. 확성기의 사용을 가능하
면 자제하도록 하며, 집회·시위성격상
사용이 불가피하면 사용대수를 제한하
거나 낮은 음량으로 사용케 하여 주변지
역에 소음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행정지
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역시 마찬가지로의 이야기 밖에 나오지 않는다.
집시법으로 규제할 수 없어서 소음진동규제법
을 적용하려 했더니 집시법으로 규제하라는
답변이다. 소음진동규제법에 단순히 확성기의
소음을 규제한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어떤
확성기는 생활소음원이 되고 어떤 것은 안된
다고 선정한 것인지의 설명이 부족하다. 또,
이동소음원으로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도 집시법에 의거 허용했으니 집시법을 적용
하는 관서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도 법
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집시법에 의거 신고
된 집회 시위를 하면서 한강을 농약으로 오염
시키면 집시법으로 조치하여야 하는가?

4) 무분별한 집회신고로 경찰력 낭비-국민 의 혈세 낭비

가. 집회 신고는 약속이다.

누구든 집회 신고만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다. 법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집회 신고서를 경찰관서에 제출토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하여 집회를 하는 주최측과 이것을 관리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의 입장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 집회신고는 주최측의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부여된 집회 시위 권리를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신고 이후에 집회를 어떻게 하든 정부가 간섭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회신고는 단순히 경찰관서에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즉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집회를 할 것인가를 기재한 집회 계획을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것이다. 주최측에서 집회신고를 하는 이유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가장 보편적일 것이다. 실제로 집회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집회가 되어 해산명령을 받고 강제 해산 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체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집회를 관리하여야 할 경찰의 입장에서는 집회신고란 집회 계획서를 받는 것이라는 면이 허가서를 발급한다는 면보다 훨씬 강하다. 사실 신고 집회이든 미 신고 집회이든 현장에 군중이 모이고, 도로교통의 장애가 일고, 돌발 사태가 예상되는 문제점은 큰 차이가 없다. 신고집회라 해서 경찰이 대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며 미 신고라 하여 더욱 많은 경찰이 대

비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신고집회와 미 신고 집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이나 합법집회냐 하는 것이다. 합법집회일 경우 그 집회를 보호하는데 치중하여 경찰 활동이 이루어지고 불법 집회일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그 집회를 못하게 빨리 끝나게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가 된다. 두 번째의 차이점은 경찰이 그 집회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경찰의 임무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발생하는 문제를 법적 물리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의 사연 속에서 일을 처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모 신문이 처음 발행 될 때 이런 광고 카피를 내 보낸 것을 기억한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 근처에는 커다란 단지에 물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한 아이가 거기에 빠졌다 누군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돌로 항아리를 찼다. 이 경우 그 신문은 어떤 소년이 항아리를 찼다고 보도하지 않고 어린이를 구했다고 보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어떤 행동의 배경 목적을 알고 대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법의 잣대로 현재 그 행위가 적법이나 불법이냐를 따져서 불법이면 무조건 조치한다고 할 경우에 억울한 심정으로 시위하

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적개심만 더 높여줄 것이다. 대한 항공기가 괌에서 떨어졌을 때 그 유족들은 괌 현지에 가서 참을 수 없는 슬픔에 울부짖으며 몰려다녔는데 현지 경찰은 이를 일종의 집단적 소요 또는 소란으로 보고 출동하여 제지하려고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또 예를 들어 어느 노조원 500여명이 한강시민 체육공원에 모여 간단한 결의 대회를 한 후 체육행사를 하기로 하였다 가정할 때 경찰이 이와 같은 사정을 잘 모른다면 노조원이 시위를 하다가 인근 88도로를 점거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회 신고란 자신들의 집회 시위권리를 담보 받기 위한 법적 요식 절차일 뿐 아니라 집회시위가 이루어질 모양을 미리 경찰관서에 신고함으로써 집회방식에 대한 공개적인 문서의 약속을 하는 것이다.

나. 약속이 무시되는 풍조

이와 같이 집회신고는 약속이므로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신고 내용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생각을 해 보자 누가 주최를 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종류의 사람 몇 명이 모여 어떤 시위용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고행진을 하겠다는 신고를 해서 적법한 집회 권리를 확보한 다음 실제 할 때는 제 멋대로 한다면 어찌 법치국가라 하겠으며 그런 집회 신고를 해서 무엇에 쓴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

의 현실은 이와 같은 약속 무시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집회 시위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모여 흥분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한 그대로 100%이루어 질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경찰도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며 현장 대처도 이것을 감안하여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닌 의도적인 비신사적인 행위가 빈발한다는 데 있다. 이것은 범질서 무시 풍조인가? 아니면 약속을 우습게 아는 태도인가? 아니면 경찰관서에 신고한 내용쯤은 관심 없다는 태도인가? 현실은 이 모든 경우가 다 포함 되어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 때문에 경찰은 많은 고충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 또한 엄청나다. 이와 같은 비 신사적인 엉터리 집회에 대비하는 경찰력을 선량한 시민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보다 나은 치안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가 개선 될 점이 많기에 아쉬움이 많은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약속을 어기는 사례를 들어가며 그로 인한 폐해가 어떤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 위장 신고

집회신고는 A라는 단체로 해 놓고 현장에 가서는 엉뚱한 사람들이 대부분 참가한 경우이다. 특히 대학생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자주 한다. 현행 집시법은 대학생이라 하여 집

회를 못하게 하는 법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집회 시위 권리가 헌법에 보장 되어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면 흡사 경찰이라는 공권력 앞에 굴복한다거나 타협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생각했는지 신고 후 집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집회를 정정당당하게 신고하고 떳떳이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단체에게 집회신고를 하도록 시킨 후 현장에 와서는 마이크를 쥐고 주도권을 행사한다. 이 경우 전체 참가자가 수 백명이 되어도 신고한 주최측에서는 10여명이 나올 뿐이다. 이것은 약속의 위반 정도를 벗어난 중대한 기만행위이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만을 할 이유가 없는 데도 이런 행위가 그치질 않는 것을 보면 열린사회, 개방된 법 집행의 취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런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내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있지 않은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다.

라. 신고인원 허풍, 무시

‘집회신고 참가인원 2,000명, 실제 개최인원 20명’ 이것은 장난이나 코메디가 아니다. 실제로 서울시내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2,000명이 도심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경찰은 그 숫자를 감안하여 많이 동원되어

야 할 것이다. 즉 다른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집회현장에 몰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2시간 전에 와서 대비를 한다. 그런데 실제 나타난 시위대는 20여명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라면 경찰력이 필요 없는 수준일 수도 있다. 그만큼 비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찰력이 낭비된 것이다. 물론 경찰은 주최측에서 집회 신고한 내용을 다 믿지는 않는다. 경찰에는 정보기능이 있어서 주최측의 집회신고 내용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할 능력이 있으며 심지어는 신고하지 않고 불쑥 불쑥 나타나는 불법집회도 대부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회 신고쯤 틀리면 어쩌냐고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경찰이면 국민이 한 말을 믿어줘야 하고 더구나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확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신고한 내용을 믿지 않으면서 뒤를 조사하여 별도의 대책을 세운다면 경찰이나 민원인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이다. 철저한 불신만이 실수를 방지해주고 있다. 집회신고를 자주 하는 단체는 여러 번의 집회 과정에서 인원을 동원할 능력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경찰은 “귀 단체의 동원능력은 100명 이내인데 2,000명이 어떻게 오겠는가? 사실대로 신고를 하시오” 라고 설득을 한다. 그러나 이런 신고인들은 대부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다. “신고한대로 참가하면 될 것 아니

냐.”는 억지주장을 반복 할 뿐이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게 압포를 놓는 목적인 경우이다. 즉 “우리가 너희네 사무실 앞에서 2,000명을 동원하여 집회를 할 것이다. 어디 견디봐라.” 하는 것이다. 사정을 잘 모르는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그 허풍에 놀라 굴복하기도하여 어느 정도 효과도 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일종의 장난을 친다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정반대로 100여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놓고 1,000명이 오는 경우도 있다. 즉, 처음에는 순수하게 자신들의 집회로 할 생각을 했다가, 후에 여기 저기 다른 단체에 “우리가 어디에 신고를 해 놓았으니 그리로 모여라.” 는 선전을 하여 생각지도 않던 인원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주최측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 될 우려가 많다. 주최측은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지만 다른 단체에서 신고된 집회의 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 주로 운동권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 물론 주최측에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이 저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 주의·주장이 비슷한 사람들이므로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

마. 감정적 집회 신고

감정적 집회신고라 하면 무슨 소리인가 하

고 의아할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핫김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다. 일 예로 어느 단체원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경찰에 연행되어 처벌을 받았다거나 행정관청에서 철거를 하였을 때에 또는 어떤 기업이나 회사대표에 대하여 감정이 있을 때에 경찰관서 앞이나 행정관서 앞에서 또는 해당 기업이나 기업인의 가정집 앞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규탄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다. 이것을 노동계나 운동권에서는 ‘타격투쟁’ 이라 한다. 이들의 집회신고서에 집회에 참가한다는 인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많으며 때로는 장기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일주일 또는 수십 일치를 한꺼번에 신고하기도 한다. 이러한 집회 신고는 실제 개최 목적보다는 당사자를 괴롭게 하여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개최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의사표시를 관청 항의방문 형태로 그것도 법을 빌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구나 실제 개최할 의사도 없는 집회신고를 항의 표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법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극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 (끝)

경 찰 단 상

〈청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임 호 선

■ ‘易地思之’의 정신으로

지난 4월부터 24주간의 수사교육을 마치고 고향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왔습니다. 그동안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늘 위로와 성원을 보내주신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은 꾀통더위도, 물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향떠난 사람 누구나 그러하듯 고향으로부터의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벼이삭조차도 밤이면 어두워야 속살을 찌우듯 충분히 아파해야만이 새살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서로 친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는 기분이 좋을 때면 꼬리를

세우고 흔들며 댑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화가 났을 때 꼬리를 세웁니다. 개가 ‘기분이 좋다’는 싸인을 보내면 고양이가 화를 내고, 고양이가 ‘화가 나있다’는 싸인을 보내면 개는 ‘좋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다보니 서로 친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지요.

우리네 사는 일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충북경찰, 나아가 전국경찰 모두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易地思之’의 정신으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 걸음이라도, 아니 한 뼘이라도 서로에게 다가가기에 애쓰며,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여기면서...

■ 그러나, 경찰은 영원하다

일년 삼백육십오일, 다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좀 특별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경찰의 날]도 그런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제 TV 뉴스에서 ‘대통령은 5년이지만, 경찰은 영원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이 메아리처럼 긴 여운으로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잠시 동안인 것이 어디 대통령노릇 뿐이겠습니까? 경찰관노릇도.... 아니, 모든 세상살이가 또한 그러할 터. 결국엔 잠시 다녀가는 것일 뿐. 그럼에도 무슨 미련과 집착들이 그리도 많은 것인지.... 이렇게 좋은, 제53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다만 하루라도 우리 모두가 ‘경찰은 영원하다’는 말의 속뜻을 가슴깊이 되새겨보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산대사의 시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今日我行跡 遂行後人程’이라는.... 이는 지금 내가 내딛는 발자국이 뒤따라 오는 이에게는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누구나 잠시 조직에 몸담았다 떠나가는 것이지만 ‘영원하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문일 것입니다.

점과 점이 이어져 선이 되고,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순간 순간이 이어져 장구한 세월이 되듯 ‘영원하다’는 것 또한 우리네 하루하루가 보태지고 이어져서야 가능한 일이고

보면, 문득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 지가 보일 듯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다움’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를 감히 가늠해 보면서....

■ 無消息이 喜消息이라지만....

세상의 많고 많은 직업 가운데서도 우리 경찰만큼 다양한 경험을 맛보는 직업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는 이것을 ‘警察의 매력’이라고도 하지만, 그 경험이라는 것이 대부분 골치아픈 일들이고 보면 선뜻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관객의 입장에서야 ‘감동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 비극의 주인공은 그저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것처럼....

세상은 어느 詩人이 노래했듯 ‘햇볕半, 그늘半’이라지만, 우리 경찰은 해가 거듭되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그늘’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인가 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찰과 교직에서 물러난 분들이 퇴직금을 사기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참, 엇그제 어느 기자분을 뵈었더니 기자라는 직업도 그렇다더군요.) 여하튼, 선생님들과 달리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경험했을 경찰이 그만큼 ‘어리숙하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햇볕半, 그늘半인 세상’이 아닌 ‘그늘진 세상’을 살아온 당연한 귀결

인 지도 모르며, 달리보면 그만큼 더 ‘인간적이다’는 말이 될 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세월이 더해 갈수록 마치 고치를 짓는 누에와 같이 스스로의 틀 속에 더 스스로가 갇히고 마는 것이 우리네 주어진 삶이지만 그러기에 그 혼한 전화 한 통, 작은 쪽지 한 장이 더욱 마음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그저 ‘無消息이 喜消息’이려니 하는 마음만으로 점점 서로에게 소홀해 지는 것은 아닌지를 염려하면서.....

■ 느낌은 전달된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노래가 있지만 토요일밤만 되면 온갖 불량배들이 늦은 시간까지 시내를 배회하는 탓에 저희 형사는 ‘토요일은 밤이 싫어’라고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옛그제도 성안길이며, 중앙공원, 족발골목 등을 배회(?)하다 들어와 잠시 티브이를 켜니까 인간의 몸에 기생하는 외계인을 다룬 ‘토탈 컨트롤’인가 뭔가하는 영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속에서 외계인들은 마치 개미처럼 신경대사물질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의사전달을 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문득, 인간이 개미와 대화할 수 없는 이상 외계인과의 대화는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책에선가 이 비슷한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돌고래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이상 우주에 외계인이 실재한다 하더라도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 두 그루를 심어놓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기른다 하더라도 더 좋아하는 나무의 성장이 빠르다는..... 이것을 기(氣)의 작용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냥 느낌이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돌고래든, 개미든, 외계인이든, 한 포기 풀이거나 한 그루 나무이든간에 비록 인간능력의 한계로 인해 대화를 나누지는 못 하더라도 ‘느낌은 전달된다’는 믿음만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잊은 듯, 잊혀진 듯 지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만나거나 못 만나거나, 전화 한 통 걸거나 받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항상 좋은 느낌을 간직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당직근무라 후배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어 축의금 전달을 위해 그 동기인 파출소장을

다녀가라 일렀습니다. 녹차 잔이 다 식도록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돌려보낸 후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10년전 우리가 지내야 했던 그 시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그 시간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했던 그 고민으로 뒤척이도록 그간 나는,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던 말인가? 많이 미안했습니다.

며칠 전 신문 [인권에 '漸進'은 없다]라는 칼럼에 인용된 마틴 루터 킹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문제를 내일에 가서 해결하자는 것은 해결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어쩌면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기획부서에서의 술한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한 채 ‘기획 맨’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제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근무교대후, 잠시 낮잠이나 즐기려고 침대에 눕습니다. 머리맡의 자명종 시계를 맞추려다 보니 秒針은 저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데도 時針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새삼스러워 보입니다. 문득 나는 秒針일까, 時針일까를 생각합니다. 바쁘게는 산 것 같은데..... 순간 노크소리가 들립니다. 앞 사무실에서 일 때문에 출근한 경무계 직원이 커피 한 잔을 보내옵니다. 잠이 달아납니다. 커피를 마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켵니다.

앞으로는 ‘아직은’이라고 말로 오늘을 변

명하려 들지 말았으면.....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당장 서둘러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무엇일까를 먼저 헤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Als Ich Kann’)만이라도.....

허면, 온 길 돌아보며 한숨짓기보다는 내쳐 씩씩하게 가야 길이 보일런 지.....

*** 프로경찰만들기**

1) 이렇게 하자

- ① 민원업무처리는 “친절하게, 신속하게, 공정하게“
- ② 모든 사건은 먼저 범인의 입장에서 접근한다. “왜 그 장소를, 그 시간에 택하였을까?”
- ③ 경찰외근활동은 어부가 그물과 낚시를 준비해 놓는 것과 같다. “준비되어 있는가?”
- ④ 同苦同樂이라지만 ‘同樂’보다는 ‘同苦’에 더욱 마음을 써야.....

2)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 ①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것은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 ②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것

은 지혜의 샘이기 때문에.

- ③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에.
- ④ 주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이기엔 하루가 너무 짧기 때문에.
- 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것은 지상 최대의 힘이기 때문에.

3) 명탐정의 8요소

- ① 고상한 품위
- ② 깊이있는 사고
- ③ 치밀한 두뇌
- ④ 풍부한 상식
- ⑤ 예민한 기지
- ⑥ 발달된 추리력
- ⑦ 고도의 판단력
- ⑧ 민활한 행동

3)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 ① 좋은 느낌은 서로 나누어 가질 때 더욱 좋아진다는 것을....
- ② 늦잠 자고 싶을 때는 항상 그럴 수 없을 때 뿐이라는 것을....
- ③ 인간관계가 어떤 법률이나 규칙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4) 이 일초 정도의 짧은 말로

- ① ‘처음 뵙겠습니다’ 이 일초 정도의 짧은 말로 인생의 가슴설렘을 느낀다.
- ② ‘고맙습니다’ 이 일초 정도의 짧은 말로 우유같은 부드러움이 넘쳐난다.
- ③ ‘힘내세요’ 이 일초 정도의 짧은 말로 용기가 솟구친다.
- ④ ‘용서하세요’ 이 일초 정도의 짧은 말로 지난 잘못이 눈녹듯 사라진다.

치안정책연구

발행일 : 1998년 12월

발행인 : 이 규 식

발행처 : 치안연구소

인쇄처 : 대한문화사

본지 수록 내용은 치안연구소나 경찰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비매품>

